

최종보고서

---

# WTO/FTA 대비 어업인·어촌 지원대책 세부실천방안 수립(2차년도)

---

2007. 12.



**해양수산부**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 제 출 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WTO/FTA 대비 수산업·어촌 지원대책 세부실천방  
안 수립(2차년도)』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 1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 이 정 환

주관 연구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책임자 : 최 성 애

연구진 : 김 정 봉

홍 현 표

박 상 우

김 봉 태

이 현 동

마 창 모

채 동 렬

남 수 민

전 희 성

공동연구기관 : 부경대학교(제6장)

연구책임자 : 장 영 수

연구진 : 박 철 형

김 경 식

공동연구기관 : 씨엔시스템

연구책임자 : 최 규 범

연구진 : 손 혜 림

문 현 주

한 슬 기

위탁연구기관 : IRC 리서치



# 목 차

요 약 ..... ①

##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1.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 추진체계 ..... 4

    1. 연구 방법 ..... 4

    2. 연구 추진전략 ..... 4

    3. 연구 추진체계 ..... 5

    4. 연구기관별 주요 연구내용 ..... 7

## 제2장 수산보전제 도입 세부방안 검토 / 9

제1절 개 요 ..... 11

제2절 수산보전제 도입의 타당성 ..... 13

    1. 수산보전제 도입 필요성 ..... 13

    2. 수산보전제 도입 타당성 ..... 18

    3. 수산보전제 도입 의의 ..... 22

    4. 수산보전제 도입의 기본방향 ..... 22

제3절 외국의 수산보전제 사례연구 ..... 27

    1. 현 황 ..... 27

    2. 국가별 사례 ..... 30

    3. 시사점 ..... 59



제4절 수산보전제 세부시행방안 검토 .....	61
1.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 .....	61
2. 친환경부표(부자) 수산보전제 .....	74
3. 재해예방 수산보전제 .....	81
4. 고령어가은퇴 수산보전제 .....	88
5. 휴어 수산보전제 .....	97
6. 어장휴식 수산보전제 .....	103
제5절 수산보전제 시행 관련 법제도 검토 .....	114
1.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1995년) 검토 .....	114
2. 농림부의 직접지불제 시행 관련 법률사례 검토 .....	115
3. 수산보전제 관련 제도적 기반마련 .....	119
제6절 수산보전제 DB화 방안 검토 .....	120
1. 수산보전제 DB화의 필요성 .....	120
2. 수산보전제 DB화의 기본방향 .....	121
3. 농업부문 DB화(농가등록제) 사례 .....	122
4. 수산보전제 DB화 방안 .....	126
제7절 수산보전제 추진방향과 로드맵 .....	132
1. 기본방향 .....	132
2. 연도별 추진 로드맵 .....	134
3. 대략적 소요예산 추정 .....	135
4. 관련 담당부서 .....	137
제8절 수산보전제별 세부사업 시행(안) .....	139
1.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 .....	139
2. 친환경부표 수산보전제 .....	140
3. 재해예방 수산보전제 .....	142
4. 고령어가은퇴 수산보전제 .....	143
5. 휴어 수산보전제 .....	145
6. 어장휴식 수산보전제 .....	146

**제3장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확산방안 / 149**

제1절 개 요 ..... 151

제2절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과 유형 ..... 152

    1. 개념 ..... 152

    2. 비즈니스 모델의 의의 ..... 152

    3.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 ..... 153

    4. 농업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의 사례분석 ..... 157

제3절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 사례분석 ..... 160

    1. 비즈니스모델 사례의 수집 및 선정 ..... 160

    2. 사례분석 결과 ..... 166

    3. 우수사례의 특징 및 유형화 ..... 269

제4절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의 현장활용 및 확산방안 ..... 272

    1. 현장활용 시스템의 개요 ..... 272

    2. 비즈니스 모델의 접근성 제고 방안 ..... 275

    3.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지원 방안 ..... 279

    4. 확산체제 지원 방안 ..... 284

**제4장 수산벤처산업 활성화전략과 육성방안 / 287**

제1절 개 요 ..... 289

제2절 수산벤처 현황과 비활성화 원인 ..... 290

    1. 수산벤처기업 현황 ..... 290

    2. 수산벤처 육성정책 현황 ..... 296

    3. 수산벤처기업 경영현황과 비활성화 원인 ..... 309

제3절 농업부문 벤처활성화 사례와 시사점 ..... 321

    1. 창업보육사업 확대 ..... 321

    2. 농업전문투자펀드 조성 ..... 323



3. 벤처농업 저변확대 .....	324
4. 시사점 .....	325
<b>제4절 수산벤처산업 활성화 전략 및 육성방안 .....</b>	<b>327</b>
1. 수산벤처산업 활성화 전략 .....	327
2. 수산벤처산업 육성방안 .....	330
3. 세부추진계획 .....	335
<b>제5절 벤처기업 등록 절차 .....</b>	<b>339</b>

## **제5장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방안 / 341**

<b>제1절 개 요 .....</b>	<b>343</b>
<b>제2절 어업인 삶의 질 관련 정책현황과 시사점 .....</b>	<b>344</b>
1. 정책 및 사업현황 .....	344
2. 시사점 .....	353
<b>제3절 어업인 삶의 질 실태 .....</b>	<b>354</b>
<b>제4절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지원 과제 .....</b>	<b>359</b>
1.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사업 및 대책의 이행여부 검토 .....	359
2. 주요 설문결과와 시사점 .....	374
3.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지원 방안 .....	385

## **제6장 수산가공 및 유통 활성화 방안 / 393**

<b>제1절 개 요 .....</b>	<b>395</b>
<b>제2절 외식산업 및 수산물 식재료 산업 육성 .....</b>	<b>398</b>
1. 서 론 .....	398
2. 외식산업 및 수산물 식재료 산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 .....	405



3. 시푸드 마케팅 .....	412
제3절 수산가공업 현황 및 발전 방안 .....	419
1. 수산가공품의 생산 현황 .....	419
2. BCG 매트릭스를 이용한 수산가공품 시장구조 .....	433
3. 지역별 수산가공품 생산량 동향 .....	438
4. 지역별 수산가공품 생산고 동향 .....	447
5. 수산가공업 육성 및 지원방안 .....	459
제4절 수산가공벤처 육성 및 지원 .....	462
1. 개    요 .....	462
2. 수산가공벤처 현황 .....	462
3. 수산가공벤처 현황과 지원정책 .....	465
4. 수산가공업의 벤처기업을 위한 실증연구 .....	470
5. 수산가공벤처 육성 및 지원 방안 .....	481
제5절 FTA 추진 국가별 맞춤형 가공·유통업의 구조개편 방향 .....	491
1. 수산물 수출구조 변화 .....	491
2. 주요국 수산물 수출 .....	499
제6절 브랜드 중심의 수산물 소비촉진 .....	521
1. 서    론 .....	521
2. 농산물 브랜드 연구 .....	521
3. 수산브랜드 .....	524
4. 브랜드 마케팅 전략의 응용 .....	527
5. 수산물 소비홍보와 브랜딩 전략 .....	530
6. 한국형 수산물 소비특성 개발 .....	533
7. 브랜딩과 소비특성 개발에 대한 추진 계획 .....	535
8. 수출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사업 추진방안 .....	536
제7절 원산지 표시제 강화 방안 .....	541
1. 원산지표시제도에 관한 체계와 현황 .....	541
2.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	545
3.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운영 현황 .....	550



4.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한 이론적 배경 .....	556
5. 수산물원산지 표시제 강화 방안 .....	559
<b>제8절 산지유통시설 현황 및 육성방안 .....</b>	<b>564</b>
1. 산지시장의 정의 및 역할 .....	564
2. 산지시장의 구조 .....	567
<b>제9절 생산자 단체 소매 유통시설 구축 및 지원 .....</b>	<b>607</b>
1. 바다마트 구성 .....	607
2. 매출추이 .....	610
3. 바다마트 수산물 구성 .....	613
4. 유통과정 .....	616
5. 차별화 전략 및 경영전략 .....	618
6. 활성화 방안 .....	620
<b>제10절 수산물 판매점 및 음식점 인증제도 .....</b>	<b>622</b>
1. 연구 대상 .....	622
2. 음식점인증제 .....	628
3. 수산물 판매점 및 음식점 인증제 방안 .....	632
<b>제11절 수산물직거래 시장과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한 실천계획 .....</b>	<b>634</b>
1. 필요성 .....	634
2. 실천계획 .....	635

## 제7장 결론 및 건의사항 / 659

<b>제1절 결론요약 .....</b>	<b>662</b>
1. 수산보전제 도입 세부방안 마련 .....	662
2. 수산업·어촌비즈니스 모델개발 및 활용방안 .....	662
3. 수산벤처산업 활성화 전략 및 육성방안 .....	663
4.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방안 .....	663
5.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	664

제2절 건의사항 ..... 665

참고 문헌 ..... 666

**부 록 / 669**

<부록 1> 수산보전제 도상연습결과 ..... 671

<부록 2> 수산보전제(조건불리지역수산보전제 관련 서식) ..... 677

<부록 3> 수산업·어촌 비즈니스모델 우수사례의 요약 ..... 689

<부록 4>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매뉴얼 ..... 702

<부록 5> 수산 가공 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설문조사 ..... 725

<부록 6> 음식점 인증제에 대한 실증분석 ..... 730

<부록 7> 음식점인증제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 740



## 표 목 차

[표 1-2-1]	연구기관별 주요 연구내용 .....	7
[표 2-2-1]	농정의 비전과 정책수단 .....	20
[표 2-2-2]	국제규범에 적합한 수산보전제 기준 .....	24
[표 2-2-3]	수산보전제와 농업직불제의 차이점과 공통점 .....	26
[표 2-3-1]	주요 국가별 수산부문 직접지불금 변화(2000년과 2003년 비교) .....	29
[표 2-3-2]	캐나다의 수산보조금 종류별 지원액 변화 .....	31
[표 2-3-3]	미국의 수산보조금 종류별 지원액 변화 .....	35
[표 2-3-4]	EU의 수산보조금정책(Fisheries Subsidy Policy) 변화 .....	37
[표 2-3-5]	EU의 수산보조금정책(Fisheries Subsidy Policy) 변화-계속 .....	38
[표 2-3-6]	노르웨이의 수산보조금 종류별 지원액 변화 .....	40
[표 2-3-7]	소득보전 직접지불 지원액 변화(2001~2004) .....	41
[표 2-3-8]	운송비 지원 직접지불 지원액 변화(2001~2004) .....	42
[표 2-3-9]	어선감척(허가권 환수) 직접지불 지원액 변화(2001~2004) .....	43
[표 2-3-10]	노르웨이 어선감척(허가권 환수) 직접지불 신청건수 및 어선감척수 .....	44
[표 2-3-11]	연승어업 미끼 직접지불 지원액 변화(2001~2004) .....	45
[표 2-3-12]	소득지원 직접지불 지원액 변화(2001~2004) .....	45
[표 2-3-13]	이탈리아의 수산보조금 유형별 지원액 변화 .....	46
[표 2-3-14]	어선감척 직접지불 예산 및 지급액 변화(2001~2004) .....	47
[표 2-3-15]	사회경제적 지원 직접지불 예산 및 지급액 변화(2000~2004) .....	48
[표 2-3-16]	금어기간 소득보전 직접지불 예산 및 지급액 변화(2001~2004) .....	49
[표 2-3-17]	어업분야 피해보전 직접지불 예산 및 지급액 변화(2001~2004) .....	49
[표 2-3-18]	스웨덴의 수산보조금 유형별 지원액 변화 .....	50
[표 2-3-19]	프랑스의 수산보조금 유형별 지원액 변화 .....	52
[표 2-3-20]	스페인의 수산보조금 유형별 지원액 변화 .....	54
[표 2-2-21]	아일랜드의 수산보조금 유형별 지원액 변화 .....	56
[표 2-3-22]	일본의 수산보조금 유형별 지원액 변화 .....	57
[표 2-4-1]	EU의 조건불리지역 지정기준 .....	62
[표 2-4-2]	대안 1 : 취약지역 현황 .....	64
[표 2-4-3]	대안 2 : 지정도서 현황(2004년 12월 기준) .....	64
[표 2-4-4]	조건불리지역 지원조건의 비교 .....	65
[표 2-4-5]	조건불리지역의 현황(2006) .....	67

[표 2-4-6] 어가소득의 구성과 비율 ..... 68

[표 2-4-7] 단계별 대략적 소요예산 추정(안) ..... 70

[표 2-4-8]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에 대한 해양수산부(지방청) 의견 수렴  
결과 ..... 72

[표 2-4-9]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에 대한 시도 의견수렴 결과 ..... 73

[표 2-4-10] 품종별 부표 사용량 추정 ..... 75

[표 2-4-11] 태·폭풍으로 인한 어선피해현황(2000~2005) ..... 81

[표 2-4-12] 주요 시군별 피항 실태조사 결과(예시) ..... 83

[표 2-4-13]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수(1904~2004년) ..... 84

[표 2-4-14] 고령어가은퇴 수산보전제와 경영이양직불제의 도입목적 비교 ..... 89

[표 2-4-15] 양식어가의 연령별 평균소득 비교(최근 3년 평균) ..... 92

[표 2-4-16] 농업부문 경영이양직불제(한·미 FTA 이후 국내대책) ..... 93

[표 2-4-17] 유형별 휴어 대상 어종 및 대상어업 ..... 98

[표 2-4-18] 휴어 지원 기본방향 ..... 99

[표 2-4-19] 휴어 수산보전제 단계별 추진계획 ..... 101

[표 2-4-20] 휴어 수산보전제 대략적 소요예산 추정(1년/1회/1달 또는 2달 휴어) ..... 102

[표 2-4-21] 강진만 피조개의 어장휴식 효과 ..... 106

[표 2-4-22] 통영 양식어장의 오염도 분석 결과 ..... 106

[표 2-4-23] 시범사업 대상 품종(해역)별 어업권 현황(2006년) ..... 108

[표 2-5-1]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 116

[표 2-5-2]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 117

[표 2-5-3] 직불제 관련 법률 조문 비교 ..... 118

[표 2-6-1] 농가등록제 등록내용 ..... 124

[표 2-6-2] 농림사업 유형별 등록정보 현황 ..... 125

[표 2-6-3] 수산보전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 129

[표 2-6-4] 수산보전제 DB화를 통한 기대효과 ..... 131

[표 2-7-1] 수산보전제 추진 로드맵 ..... 135

[표 2-7-2] 수산보전제 대략적 소요예산 추정 ..... 136

[표 2-7-3] 수산보전제별 담당 부서 ..... 138

[표 3-2-1]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 구분 ..... 156

[표 3-2-2] 농업 비즈니스 모형의 유형 ..... 159

[표 3-3-1] 1차 수산업 우수사례 선정결과 ..... 161

[표 3-3-2] 1차 우수 어촌사례 선정결과 ..... 164

[표 3-3-3] 수산업 비즈니스모델 2차 선정결과 ..... 165



[표 3-3-4]	어촌 비즈니스모델 2차 선정결과 .....	166
[표 3-3-5]	(주)중앙수산·(주)중앙씨푸드 개요 .....	167
[표 3-3-6]	(주)중앙수산과 (주)중앙씨푸드의 연혁과 발전과정 .....	167
[표 3-3-7]	(주)중앙수산·(주) 중앙씨푸드 요약 재무제표 .....	170
[표 3-3-8]	(주) 중앙씨푸드의 주요재무비율 .....	170
[표 3-3-9]	참바다영어조합법인 개요 .....	174
[표 3-3-10]	참바다영어조합의 연혁과 발전과정 .....	175
[표 3-3-11]	참바다영어조합법인의 재무적 특성(2005~2006년) .....	177
[표 3-3-12]	광천수산영어조합법인 개요 .....	180
[표 3-3-13]	광천수산영어조합법인의 연혁과 발전과정 .....	180
[표 3-3-14]	멸치 건조 방식 비교 .....	182
[표 3-3-15]	광천수산영어조합법인의 재무적 특성(2005~2006년) .....	183
[표 3-3-16]	고창영어조합법인 개요 .....	186
[표 3-3-17]	고창영어조합법인의 연혁과 발전과정 .....	187
[표 3-3-18]	고창영어조합법인의 재무적 특성(2005~2006년) .....	190
[표 3-3-19]	일성수산 개요 .....	193
[표 3-3-20]	일성수산의 연혁과 발전과정 .....	194
[표 3-3-21]	(주)일성수산의 재무적 특성(2005~2006년) .....	196
[표 3-3-22]	유명수산영어조합법인 개요 .....	200
[표 3-3-23]	유명수산영어조합법인의 연혁과 발전과정 .....	200
[표 3-3-24]	유명수산영어조합법인 요약재무제표 .....	202
[표 3-3-25]	유명수산영어조합법인의 재무회계분석 결과 .....	202
[표 3-3-26]	아침가리 개요 .....	205
[표 3-3-27]	아침가리의 연혁과 발전과정 .....	205
[표 3-3-28]	(주) 아침가리 요약 재무제표 (2006년) .....	208
[표 3-3-29]	(주) 아침가리의 재무적 특성 .....	208
[표 3-3-30]	곰소젓갈 지역브랜드의 특징과 성공요인 .....	216
[표 3-3-31]	디노빌 영어조합법인의 양어현황 .....	219
[표 3-3-32]	디노빌 영어조합법인의 시설현황 .....	219
[표 3-3-33]	미라자울관리공동체 사업추진 내용 .....	225
[표 3-3-34]	미라자울관리공동체 현황 .....	226
[표 3-3-35]	미라자울관리공동체 성공요인 .....	228
[표 3-3-36]	어촌종합개발사업 개요 .....	230
[표 3-3-37]	물치 어촌의 성공요인 .....	232

[표 3-3-38]	정자어촌계 현황 .....	234
[표 3-3-39]	활어직판장 임대 현황 .....	236
[표 3-3-40]	어촌계원의 활어직판장 운용 소득 .....	237
[표 3-3-41]	선감 어촌체험마을 주요 투자 현황 .....	243
[표 3-3-42]	주요 체험프로그램 및 가격 .....	245
[표 3-3-43]	주요 투입 사업 현황 .....	252
[표 3-3-44]	어촌관광 사업 추진 현황 .....	254
[표 3-3-45]	저도 마을의 마케팅 현황 .....	255
[표 3-3-46]	연도별 마을 방문 관광객 추이 .....	256
[표 3-3-47]	사업별 수입 현황 .....	256
[표 3-3-48]	체험마을 운영에 따른 고용효과 2006년 .....	263
[표 3-3-49]	송계마을 2006년 총소득 현황 .....	263
[표 3-3-50]	어촌체험마을 기반조성사업 .....	264
[표 3-3-51]	혁신인력육성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	264
[표 3-3-52]	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 .....	265
[표 3-3-53]	체험 프로그램 내용 및 사업내역 .....	265
[표 3-3-54]	연도별 체험마을 소득현황 .....	266
[표 3-3-55]	수산업·어촌의 경영체 사례별 비즈니스모델 유형 .....	270
[표 3-4-1]	창업 희망자의 초기 투자자본금 규모 유형 .....	275
[표 3-4-2]	창업 희망자의 경영형태별 특징 .....	276
[표 3-4-3]	창업 희망자의 유형별 비즈니스모델 사업화 메뉴얼 .....	277
[표 3-4-4]	지역 대학별 수산업 및 수산경영관련 과정 개설현황 .....	281
[표 4-2-1]	벤처기업 유형의 변화 .....	291
[표 4-2-2]	벤처기업의 유형과 기준요건 및 확인기관(2006년 6월 개편) .....	292
[표 4-2-3]	해양수산벤처기업 현황(2006년 12월 기준) .....	293
[표 4-2-4]	수산업 관련기업의 벤처등록 현황(2007년 9월 기준) .....	294
[표 4-2-5]	수산벤처기업의 유형별 등록현황(2007년 9월 기준) .....	295
[표 4-2-6]	지원대상분야별 분류기준 .....	297
[표 4-2-7]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술개발 지원사업 내역 .....	298
[표 4-2-8]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비 내역 .....	299
[표 4-2-9]	수산기술개발사업 지원내역 .....	299
[표 4-2-10]	수산기술개발사업 지원범위 .....	300
[표 4-2-11]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주요 성과(산업화한 과제) .....	300
[표 4-2-12]	마린바이오21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	301



[표 4-2-13]	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활성화센터 단계별 추진계획	302
[표 4-2-14]	전남 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304
[표 4-2-15]	경북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설립 연혁	306
[표 4-2-16]	부산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사업내용	307
[표 4-2-17]	벤처 창업 및 경영의 어려움	313
[표 4-2-18]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3단계	315
[표 4-2-19]	지역별 창업보육센터 및 입주/졸업기업 현황 (2007년 현재)	316
[표 4-2-20]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특례제도	317
[표 4-4-1]	수산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337
[표 4-4-2]	수산벤처 지원정책 추진 로드맵 Matrix	338
[표 4-5-1]	벤처기업 확인평가수수료	340
[표 5-2-1]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계획추진과제현황(2006)	345
[표 5-2-2]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과제 현황	346
[표 5-2-3]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분야 세부사업	347
[표 5-2-4]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분야	348
[표 5-2-5]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	350
[표 5-2-6]	농어촌 복합산업 활성화 분야	352
[표 5-3-1]	어업인 삶의 질 실태분석 요약	357
[표 5-3-2]	어업인 삶의 질 실태 비교(5점 척도)	358
[표 5-3-3]	어업인 삶의 질 만족도 비교(5점 척도)	358
[표 5-4-1]	표본크기 및 표본추출 방법	360
[표 5-4-2]	표본의 지역별 분포현황	360
[표 5-4-3]	응답자의 일반사항	361
[표 5-4-4]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관련 사업 어업인 인지 및 수혜 여부	375
[표 5-4-5]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관련사업 어촌 내 필요성 여부	376
[표 5-4-6]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관련사업 어촌유형별 인지 및 수혜 여부	377
[표 5-4-7]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관련사업 어촌 내 필요성 여부	379
[표 5-4-8]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관련사업 어촌유형별 인지 및 수혜 여부	380
[표 5-4-9]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관련사업 어촌내 필요성 여부	381
[표 5-4-10]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관련사업 어촌유형별 인지 및 수혜 여부	382
[표 5-4-11]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관련사업 어촌내 필요성 여부	383
[표 5-4-12]	도시 및 농촌과 비교를 통한 격차가 나타난 부문	385
[표 5-4-13]	의료·사회안전망·복지부문 세부지원방안	388



[표 5-4-14]	교육부문 세부지원방안 .....	389
[표 5-4-15]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부문 세부지원방안 .....	390
[표 5-4-16]	복합산업 및 문화·여가부문 세부지원방안 .....	391
[표 6-2-1]	품목별소비지출금액구성(가구당 월평균) .....	400
[표 6-2-2]	주요 시푸드 패밀리레스토랑의 현황 .....	402
[표 6-2-3]	기타 시푸드 패밀리레스토랑의 현황 .....	403
[표 6-2-4]	주요 퓨전 해산물 전문점 현황 .....	403
[표 6-2-5]	퓨전 해산물 주점 현황 .....	404
[표 6-2-6]	주요 생선초밥 전문점의 현황 .....	404
[표 6-2-7]	주요 대형소매점이 생선초밥 판매 현황 .....	405
[표 6-2-8]	수산업의 위기와 기회 .....	412
[표 6-2-9]	수산물 시장 구분 .....	414
[표 6-2-10]	재래시장 수요 확대 전략 .....	415
[표 6-2-11]	대형 유통 판매점 수요 확대 전략 .....	415
[표 6-2-12]	수산식품전문회사 수요 확대 전략 .....	416
[표 6-2-13]	외식산업 수요 확대 전략 .....	416
[표 6-2-14]	한우 마케팅 .....	417
[표 6-2-15]	추진전략사업 .....	418
[표 6-3-1]	어업생산 현황 .....	419
[표 6-3-2]	품종별 수산 가공품 생산량 .....	421
[표 6-3-3]	소건품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	422
[표 6-3-4]	염건품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	423
[표 6-3-5]	자건품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	423
[표 6-3-6]	염장품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	424
[표 6-3-7]	염신품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	425
[표 6-3-8]	통조림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	426
[표 6-3-9]	해조제품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	427
[표 6-3-10]	한천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	428
[표 6-3-11]	연제품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	429
[표 6-3-12]	조미가공품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	430
[표 6-3-13]	어유분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	431
[표 6-3-14]	기타가공품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	431
[표 6-3-15]	냉동품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	432
[표 6-3-16]	86년~96년 가공품의 평균(수입자유화 전) .....	435



[표 6-3-17]	97년~05년 가공품의 평균(수입자유화 후) .....	435
[표 6-3-18]	수산 가공품의 시장성장과 상대적 시장점유율 .....	435
[표 6-3-19]	지역별 수산가공품 생산량(2006년) .....	439
[표 6-3-20]	지역별 수산 가공품 생산량 평균 증감율(2001~2006) .....	440
[표 6-3-21]	수산피혁품의 연도별 생산량 변화추이 .....	441
[표 6-3-22]	염건품의 연도별 생산량 변화추이 .....	442
[표 6-3-23]	염장품의 연도별 생산량 변화추이 .....	442
[표 6-3-24]	소건품의 연도별 생산량 변화추이 .....	443
[표 6-3-25]	자건품의 생산량 변화 .....	444
[표 6-3-26]	해조식품의 생산량 변화 .....	444
[표 6-3-27]	조미가공품의 생산량 변화 .....	445
[표 6-3-28]	연근해 가공품 생산량 중 평균증가율이 높은 품목 .....	446
[표 6-3-29]	전남 가공품 생산량 중 증가율이 높은 품목 .....	446
[표 6-3-30]	부산 가공품 생산량 중 증가율이 높은 품목 .....	447
[표 6-3-31]	2006년도 지역별 수산가공품 생산고 .....	448
[표 6-3-32]	2001~2006 지역별 수산가공품 생산고 평균증가율 .....	449
[표 6-3-33]	서울 생산고 변화 추이 .....	450
[표 6-3-34]	대구 가공품 생산고 변화 추이 .....	451
[표 6-3-35]	인천 수산가공품 생산고 변화 추이 .....	451
[표 6-3-36]	충남 수산가공품 생산고 변화 추이 .....	452
[표 6-3-37]	전남 수산가공품 생산고 .....	453
[표 6-3-38]	부산 수산가공품 생산고 .....	454
[표 6-3-39]	경남 수산가공품 생산고 .....	455
[표 6-3-40]	제품별 가공공장 현황 .....	461
[표 6-3-41]	가공공장 및 가공품 생산량 .....	461
[표 6-4-1]	벤처의 정의 .....	463
[표 6-4-2]	벤처 인증기준과 평가기관 .....	463
[표 6-4-3]	벤처기업 육성 지원 제도 .....	464
[표 6-4-4]	벤처기업의 애로요인 .....	465
[표 6-4-5]	벤처기업 현황(2005년) .....	466
[표 6-4-6]	업종별 벤처 기업 현황 .....	466
[표 6-4-7]	수산벤처와 수산가공업 .....	466
[표 6-4-8]	수산벤처와 가공산업의 추진 방향 .....	468
[표 6-4-9]	추진전략 .....	469

[표 6-4-10]	HACCP 수산가공업체 .....	470
[표 6-4-11]	설문조사 내용 .....	471
[표 6-4-12]	설문지 배포 및 회수 현황 .....	471
[표 6-4-13]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에 대한 정보 및 인식 정도 .....	472
[표 6-4-14]	귀사는 수산가공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	472
[표 6-4-15]	수산가공업의 사업 분야 .....	472
[표 6-4-16]	수산가공업의 사업 종사 년수 .....	473
[표 6-4-17]	수산가공업 운영에 있어 최근 경영상의 어려움 .....	473
[표 6-4-18]	수산가공회사의 연간 매출액 .....	474
[표 6-4-19]	최근 5년간 사업 경영 성과 .....	474
[표 6-4-20]	사업 경영 성과 변동의 주된 원인 .....	475
[표 6-4-21]	현재 수산물가공과 관련된 정책 중 개선되어야 할 부분 .....	475
[표 6-4-22]	획득 인증제 .....	476
[표 6-4-23]	향후 운영의 중점 방향 .....	476
[표 6-4-24]	수산가공기업의 벤처육성을 위한 1차 성공요인분석 결과 .....	477
[표 6-4-25]	신뢰성 분석결과 .....	478
[표 6-4-26]	수산가공기업의 벤처육성을 위한 2차 성공요인분석 .....	479
[표 6-4-27]	벤처기업의 유형별 조건 .....	488
[표 6-5-1]	주요 국가별 수출 실적(2006년 금액 기준 순위) .....	493
[표 6-5-2]	국가별 수출 변동 비율 .....	494
[표 6-5-3]	제품별 수출실적 .....	495
[표 6-5-4]	제품 분류별 수출 변동 비율 .....	496
[표 6-5-5]	주요 품종별 수출실적(2006년 금액 기준 순위) .....	497
[표 6-5-6]	어종별 수출 변동 비율 .....	498
[표 6-5-7]	일본 수출 추이 .....	499
[표 6-5-8]	일본 수출 물량, 금액 5순위 어종 .....	500
[표 6-5-9]	일본 수출 수산물 구성 .....	501
[표 6-5-10]	일본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가공·유통업의 대응 전략 .....	506
[표 6-5-11]	미국 수출 추이 .....	507
[표 6-5-12]	미국 수출 중량, 금액 순위 5위 .....	508
[표 6-5-13]	미국 수출 수산물 구성 .....	509
[표 6-5-14]	수산물 미국 수출 확대 전략 .....	513
[표 6-5-15]	중국 수출 추이 .....	515
[표 6-5-16]	중국 수출 중량, 금액 순위 5위 .....	516



[표 6-5-17]	중국 수출 수산물 구성 .....	516
[표 6-5-18]	중국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가공·유통업의 대응 전략 .....	520
[표 6-6-1]	브랜드 전략 .....	527
[표 6-6-2]	삼성전자 브랜드 마케팅 .....	528
[표 6-6-3]	수산물 브랜딩 전략 .....	531
[표 6-6-4]	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 아이디어 .....	534
[표 6-6-5]	추진 사업명 및 접근방법 .....	535
[표 6-6-6]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539
[표 6-6-7]	해외상설판매장 개설운영 투자계획 .....	540
[표 6-7-1]	품질 표시와 원산지 표시와의 차이 .....	541
[표 6-7-2]	상품 분류별 통관·유통 단계에서의 적용 법률 .....	543
[표 6-7-3]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위반관련 처벌내용 .....	544
[표 6-7-4]	원산지 표시 대상 국산 수산물 .....	550
[표 6-7-5]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가공품 .....	550
[표 6-7-6]	연도별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추이 .....	553
[표 6-7-7]	수산물별 위반건수(2006년) .....	553
[표 6-7-8]	지역별 원산지 위반 건수 (2006년) .....	554
[표 6-7-9]	시·도별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현황(2006년) .....	555
[표 6-7-10]	업체별 원산지 위반 건수 (2006년) .....	556
[표 6-7-11]	외식식자재 및 즉석수산가공식품 .....	560
[표 6-8-1]	수산물 생산량 및 계통판매 현황 .....	568
[표 6-8-2]	양식수산물의 비계통 판매 현황 .....	568
[표 6-8-3]	수산물 시장의 종류와 분포 .....	569
[표 6-8-4]	양륙량 기준 규모별 산지 수협의 현황 .....	570
[표 6-8-5]	양륙금액 기준 규모별 산지 수협의 현황 .....	571
[표 6-8-6]	양륙금액 규모별 수협 .....	572
[표 6-8-7]	산지 수협의 규모 계층별 양륙량·양륙금액의 비율 .....	573
[표 6-8-8]	투입변수 및 산출변수 .....	590
[표 6-8-9]	CCR 효율성 점수에 따른 위(공)판장 분류 .....	592
[표 6-8-10]	효율적 DMU들의 참조횟수 .....	593
[표 6-8-11]	CCR모형을 이용한 투입지향적 효율성 분석결과 및 참조기관 .....	594
[표 6-8-12]	단위 위(공)판장의 투입요소의 절감 목표치 .....	596
[표 6-8-13]	단위 위(공)판장의 산출요소의 증대 목표치 .....	598
[표 6-8-14]	BCC모형을 이용한 투입지향적 효율성 분석결과 .....	600

[표 6-8-15]	순기술적 효율성 점수에 따른 위(공)관장 분류 .....	602
[표 6-8-16]	규모의 효율성 점수에 따른 위(공)관장 분류 .....	603
[표 6-9-1]	수협 중앙회에서 관리하는 마트 .....	608
[표 6-9-2]	회원조합 바다마트 .....	609
[표 6-9-3]	바다마트 연도별 실적현황 .....	611
[표 6-9-4]	일반 마트 수산물 SKU의 구성 .....	614
[표 6-9-5]	바다마트 상품구성 .....	615
[표 6-9-6]	바다마트 사업추진방향과 전략수립 .....	619
[표 6-10-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수산물도매업 .....	623
[표 6-10-2]	식품 중개업 및 도매업 사업체수(개소) .....	624
[표 6-10-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수산물소매업 .....	625
[표 6-10-4]	식료품 소매업 사업체수(개소) .....	626
[표 6-10-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수산물 음식점업 .....	627
[표 6-10-6]	음식업점 사업체수(개소) .....	627
[표 6-10-7]	지역별 모범Hits 지정 상한 업체수 .....	629
[표 6-10-8]	모범Hits(업소) 지정현황(2006.12.31) .....	631
[표 6-10-9]	수산물판매업 및 음식점업의 인증제 대상 및 추진단계 .....	632
[표 6-11-1]	직거래 비중 .....	637
[표 6-11-2]	전자 상거래 유형 .....	639
[표 6-11-3]	농산물 전자상거래액 .....	639
[표 6-11-4]	사업부문별 E-마켓플레이스 수 및 거래금액 .....	640
[표 6-11-5]	수산기관주도형 전자상거래 장의 현황 .....	641
[표 6-11-6]	수산물 특징과 유통구조 .....	642
[표 6-11-7]	수산물 관련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 마켓 현황 .....	644
[표 6-11-8]	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에 따른 기대효과 .....	646
[표 6-11-9]	수산물 전자상거래 발전방안 .....	647
[표 6-11-10]	사이버 쇼핑몰 거래액 추이 .....	648
[표 6-11-11]	사이버 쇼핑몰 사업체수와 거래액 .....	648
[표 6-11-12]	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략 .....	649
[표 6-11-13]	지자체 제휴 사례 .....	650
[표 6-11-14]	수산물 전자 상거래 아웃소싱과 물류 .....	655
[표 6-11-15]	수산물 전자상거래를 위한 CFS .....	656
[표 6-11-16]	추진사업 과제명 .....	657



## 그림 목차

[그림 1-2-1]	연구추진 체계도 .....	6
[그림 2-2-1]	수산업·어촌의 다면적 기능 .....	16
[그림 2-3-1]	OCED 회원국의 수산보조금 내용별 지원액 추이(1996~2003) .....	28
[그림 2-3-2]	캐나다 수산보조금 유형별 지원액 비중의 변화 .....	31
[그림 2-3-3]	미국 수산보조금 유형별 지원액 비중의 변화 .....	35
[그림 2-3-4]	노르웨이 수산보조금 유형별 지원액 비중의 변화 .....	40
[그림 2-3-5]	이탈리아 수산보조금 유형별 지원액 비중의 변화 .....	47
[그림 2-3-6]	스웨덴 수산보조금 유형별 지원액 비중의 변화 .....	51
[그림 2-3-7]	프랑스 수산보조금 유형별 지원액 비중의 변화 .....	53
[그림 2-3-8]	스페인 수산보조금 유형별 지원액 비중의 변화 .....	54
[그림 2-3-9]	아일랜드 수산보조금 유형별 지원액 비중의 변화 .....	56
[그림 2-3-10]	일본 수산보조금 유형별 지원액 비중의 변화 .....	58
[그림 2-4-1]	고령어가은퇴 수산보전제의 사업추진체계 .....	95
[그림 2-4-2]	어장휴식에 따른 소득보전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109
[그림 2-6-1]	어가등록제에 연계한 경영정보관리체계마련 .....	121
[그림 2-6-2]	수산보전제 DB화 모델 .....	127
[그림 3-3-1]	(주)중앙씨푸드 경영전략구조 .....	169
[그림 3-3-2]	(주) 중앙씨푸드 가치사슬구조 .....	171
[그림 3-3-3]	참바다영어조합법인의 비즈니스모델 .....	179
[그림 3-3-4]	광천수산영어조합법인의 경영전략 .....	182
[그림 3-3-5]	광천수산영어조합법인의 가치사슬 분석 .....	184
[그림 3-3-6]	고창영어조합법인의 성공요인 .....	191
[그림 3-3-7]	고창영어조합법인의 비즈니스모델 .....	192
[그림 3-3-8]	(주)일성수산의 경영전략 구조 .....	195
[그림 3-3-9]	(주)일성수산의 가치사슬 분석 .....	197
[그림 3-3-10]	(주)일성수산의 비즈니스 모델 .....	199
[그림 3-3-11]	유명수산영어조합법인 경영전략구조 .....	201
[그림 3-3-12]	유명수산영어조합법인 가치사슬구조 .....	204
[그림 3-3-13]	(주)아침가리 경영전략구조 .....	207
[그림 3-3-14]	(주)아침가리 가치사슬분석 .....	209
[그림 3-3-15]	디노빌 양어동 .....	220

[그림 3-3-16] 철갑상어 ..... 221

[그림 3-3-17] 철갑상어의 부위별 용도 ..... 222

[그림 3-3-18] 물치 어촌계 전경 ..... 229

[그림 3-3-19] 선감어촌체험마을 전경 ..... 240

[그림 3-3-20] 저도어촌계 낚시터 및 민박 전경 ..... 250

[그림 3-3-21] 송계 마을 지도 ..... 259

[그림 3-3-22] 무안 송계어촌계 일출몰 광경 ..... 260

[그림 3-4-1] 비즈니스 모델의 3단계 활용 방안 ..... 272

[그림 3-4-2]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및 3단계 지원체계 개요 ..... 274

[그림 3-4-3] 비즈니스모델 사업화 추진을 위한 「매뉴얼」의 내용 구성 ..... 278

[그림 3-4-4]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지원을 위한 초기 관리체계의 구축(단기) ... 285

[그림 3-4-5]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 확산전략 추진(중장기) ..... 286

[그림 4-2-1] 지역별 수산벤처기업 현황 (2007년 9월 기준) ..... 295

[그림 4-2-2] 수산벤처기업의 창업이후 현황 ..... 310

[그림 4-2-3] 창업 후 벤처등록까지 소요된 기간 ..... 310

[그림 4-2-4] 수산벤처기업의 종업원 규모 ..... 311

[그림 4-2-5] 자본금 규모 ..... 311

[그림 4-2-6] 매출액 규모 ..... 312

[그림 4-4-1] 수산벤처기업 활성화 전략 ..... 327

[그림 4-4-2] 수산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 330

[그림 4-4-3] 수산벤처펀드의 조성과정과 운영 ..... 334

[그림 4-4-4] 수산벤처기업 발전단계 ..... 336

[그림 4-5-1] 벤처기업 등록절차 ..... 339

[그림 5-2-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중점과제 ..... 344

[그림 5-4-1] 어촌 입지유형별 우선 정책추진 ..... 386

[그림 5-4-2]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지원방안 ..... 387

[그림 6-2-1] 연도별 시푸드 패밀리레스토랑 점포 수 및 매출액 추이 ..... 401

[그림 6-2-2] 공동 물류 시스템 개념도 ..... 406

[그림 6-2-3] 외식식자재 SCM 구축 절차 ..... 406

[그림 6-2-4] 수산물 SCM 프로세스 ..... 407

[그림 6-2-5] 수산물 식자재 SCM 시스템 ..... 408

[그림 6-2-6] 수산물 물류센터 콜드 체인 개념도 ..... 408

[그림 6-2-7] 인터넷을 통한 수산물 수집정보 시스템(Pull모델로 활용) ..... 409

[그림 6-2-8] 실시간 차량 위치추적 정보 시스템 ..... 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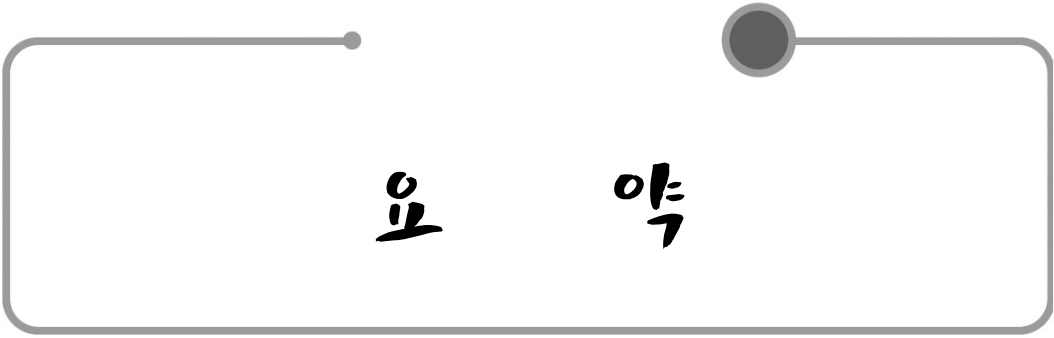


[그림 6-2-10]	하림의 SCM 체계 .....	411
[그림 6-2-11]	수산물 마케팅 전략도 .....	413
[그림 6-2-12]	3PL 개념도 .....	413
[그림 6-3-1]	수산가공품 생산량 추이 .....	420
[그림 6-3-2]	소건품의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	422
[그림 6-3-3]	염건품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	423
[그림 6-3-4]	자건품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	424
[그림 6-3-5]	염장품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	425
[그림 6-3-6]	염신품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	426
[그림 6-3-7]	통조림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	427
[그림 6-3-8]	해조식품의 변화추이 .....	428
[그림 6-3-9]	한천의 변화 추이 .....	428
[그림 6-3-10]	연제품 변화량 추이 .....	429
[그림 6-3-11]	조미가공품 .....	430
[그림 6-3-12]	조미 가공품 변화량 추이 .....	430
[그림 6-3-13]	어유분의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	431
[그림 6-3-14]	냉동품의 변화추이 .....	432
[그림 6-3-15]	BCG 매트릭스 .....	436
[그림 6-3-16]	수산가공품의 BCG 분석 .....	437
[그림 6-3-17]	수산 피혁품의 연도별 생산량 변화추이 .....	441
[그림 6-3-18]	염건품의 연도별 생산량 변화 추이 .....	442
[그림 6-3-19]	염장품의 연도별 생산량 변화추이 .....	443
[그림 6-3-20]	소건품의 연도별 생산량 변화추이 .....	443
[그림 6-3-21]	자건품의 생산량 변화 .....	444
[그림 6-3-22]	해조식품의 생산량 변화 .....	445
[그림 6-3-23]	조미가공품의 연도별 생산량 변화추이 .....	445
[그림 6-3-24]	전남의 생산량 추이 .....	447
[그림 6-3-25]	서울 생산고 변화 추이 .....	450
[그림 6-2-26]	대구 수산가공품 생산고 변화 추이 .....	451
[그림 6-3-27]	인천 수산가공품 생산고 변화 추이 .....	452
[그림 6-3-28]	충남 가공품 생산고 변화 추이 .....	453
[그림 6-3-29]	전남 생산고 변화 추이 .....	454
[그림 6-3-30]	부산 수산가공품 생산고 변화추이 .....	455
[그림 6-3-31]	경남 수산가공품 생산고 변화 추이 .....	455



[그림 6-3-32]	가공생산량 기준 수산가공품 산지 구조 .....	457
[그림 6-3-33]	가공생산고 기준 수산가공품 산지 구조 .....	458
[그림 6-4-1]	수산가공벤처의 외부 지원 .....	467
[그림 6-4-2]	수산가공기업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단계론적 접근방안 .....	480
[그림 6-4-3]	수산가공업의 벤처화 과정 방안 .....	482
[그림 6-4-4]	벤처 확인 공지 지원 사이트 사례 .....	483
[그림 6-4-5]	기업의 가치사설 구조 .....	484
[그림 6-4-6]	기업의 가치사설 분할과 시장에서 최적의 분야를 찾아 아웃소싱 하는 모델 .....	484
[그림 6-6-1]	농산물 브랜드 전시관 사이트 .....	522
[그림 6-6-2]	식품 브랜드화 필요성 .....	524
[그림 6-6-3]	브랜드 유형의 포지셔닝 .....	526
[그림 6-6-4]	일차산품의 브랜드 형성의 틀 .....	526
[그림 6-6-5]	기업의 로고 변천 사례 .....	529
[그림 6-6-6]	싱싱회 로고 .....	530
[그림 6-6-7]	수산물 홍보 촉진 활동 상징도 .....	533
[그림 6-6-8]	수산물 소비 촉진 전략 흐름도 .....	535
[그림 6-7-1]	원산지제도 관련법령 체계 .....	542
[그림 6-7-2]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체계 .....	549
[그림 6-7-3]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 지각·태도 모형 .....	557
[그림 6-7-4]	원산지 표시제 확대 및 강화 논리 .....	559
[그림 6-8-1]	BCC 예제 .....	583
[그림 6-9-1]	수협계통 조직도 .....	607
[그림 6-9-2]	일반 대형 마트의 수산물 구매 경로 및 판매 방식 .....	616
[그림 6-9-3]	일반 대형 마트의 유통과정과 경로 .....	617
[그림 6-9-4]	중앙회 수협 바다마트 유통경로 .....	617
[그림 6-9-5]	회원조합마트 유통경로 .....	618
[그림 6-11-1]	수산물 전자상거래의 life cycle .....	634
[그림 6-11-2]	일본의 수산물 생산 및 이용여분구조 .....	635
[그림 6-11-3]	수협직거래의 수산물 수매거래 형태 .....	636
[그림 6-11-4]	수산물 전자 상거래 성립 조건 모델 .....	642
[그림 6-11-5]	인터넷 서비스 단계 .....	643
[그림 6-11-6]	오픈 마켓 .....	645
[그림 6-11-7]	SCM과 Value Chain .....	651

[그림 6-11-8] 최대의 가치사슬 개념도 .....	651
[그림 6-11-9] 아마존의 아웃소싱 .....	652
[그림 6-11-10] 수산의 전자상거래 아웃소싱 개념도 .....	653
[그림 6-11-11] 오픈 마켓과의 연결 .....	653
[그림 6-11-12] 쇼핑몰 오픈 마켓 통합 솔루션 서비스 사례 .....	654
[그림 6-11-13] 4자 아웃소싱 .....	654





#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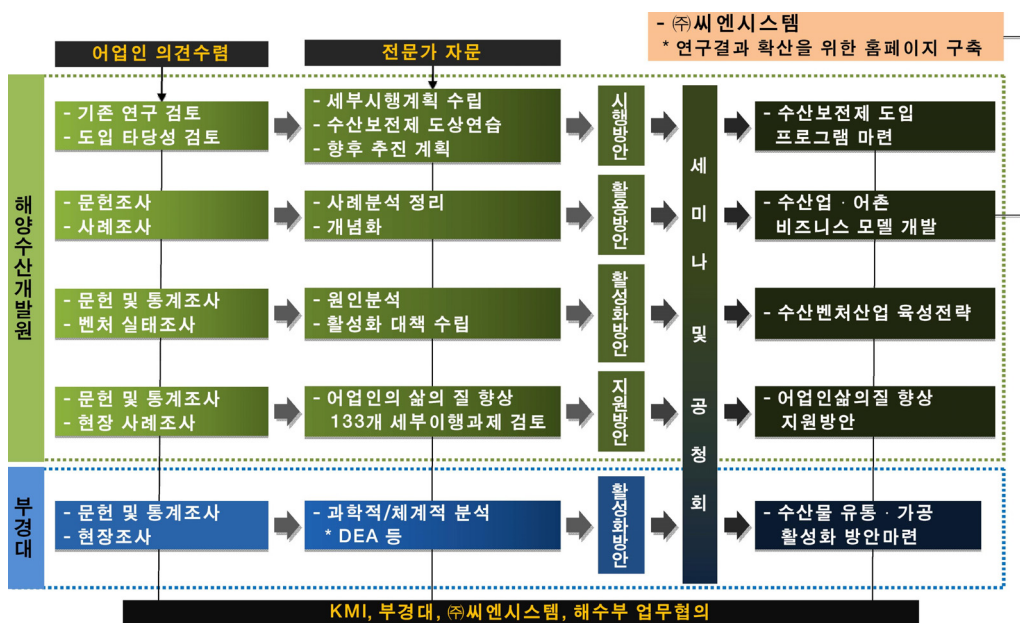
## 가. 필요성 및 목적

- WTO/FTA 체제하에서 어업인·어촌 연착륙을 위한 대책마련 시급
  - WTO/FTA 대비
  - 수산경영 안정
  -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 어업인·어촌지원대책 세부실천방안 마련

## 나. 연구방법

- 관련 분야에 관한 기존 연구보고서 및 논문 등의 문헌조사를 통한 선행연구
-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한 경험적 자료 활용
- 새로운 개념 도출을 위해 사례분석 등을 통한 개념화
- 실태조사 실시 및 어업인 의견 수렴
- 자문회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 반영
- 해양수산부 업무담당자와 연구업무의 협조체계 구축

## 다. 추진전략





## 2. 수산보전제 도입 세부방안 마련

### 가. 도입 필요성 및 타당성

- 도입배경
  - WTO/DDA 협상으로 수산보조금의 일부 감축 또는 철폐에 대한 대책마련
  -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어업인 소득보전 정책 필요
  - 농업분야 직불제 확대에 따른 형평성 차원의 지원 필요
- 도입필요성
  - 시장지향적 수산정책으로의 전환
  - 외부경제효과(수산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
  - 식량안보 유지
  - 지속가능한 어업경영의 이행촉진
- 도입타당성
  - 수산정책 변화에 대한 보상적 측면
  - 시장실패에 대한 보상적 측면
  - 세계 수산보조금 정책변화에 순응하는 측면
- 농업직불제와의 차이점 및 공통점

구 분	차 이 점	공 통 점
수산보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 중립적 보전제</li> <li>- 수산자원보전, 어장환경개선, 양식업구조조정, 재해예방 등 무역왜곡이 없는 생산 중립적 지원을 기본으로 함</li> <li>○ 수산업 기반강화를 위해 노력한 대가성 차원</li> <li>○ 어업인의 노력 또는 실천 등의 준수사항이 포함된 체계적 계획수립에 의거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전</li> <li>○ 공익기능 유지</li> <li>○ 어가경제안정</li> </ul>
농업직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농가 소득보전형 직불제가 핵심</li> <li>- 생산한 결과물에 대한 가격차액을 보전하는 소득보전으로 과잉생산의 소지가 많음</li> <li>○ 농가소득보전형의 경우 준수사항이 없거나, 대가성 지원의 경우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직불금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전</li> <li>○ 공익기능 유지</li> <li>○ 농가경제안정</li> </ul>

## 나. 해외사례

- 직접지불의 수산보조금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OECD, 2006)
  - OECD 수산예산의 평균 29%가 직불금(2003)
- 각 국 직접지불의 수산보조금 사례

국 가	내 용
캐나다	허가권 환수, 조기은퇴, 비고용보험, 금어기 소득보전 등
미국	허가권 환수, 자원감소와 관련된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한 조정기금 등
EU	어획능력 감소, 자원조성, 어업구조조정, 친환경어구, 조건불리지역 지원 등
노르웨이	허가권 환수, 소득보전, 운송비지원(조건불리지역), 연승어업 미끼비 지원 등
이탈리아	허가권 환수, 사회경제적 지원(조기은퇴), 금어기 소득보전, 자연재해 보전 등
스웨덴	비고용보험, 소득보전, 어업구조조정 등
프랑스	소득보전(휴어제 실시에 따른 어업소득 보전)
스페인	허가권 환수, 조기은퇴
아일랜드	허가권 환수, 영세어업지원, 소득보전
일본	휴어, 이도지원재생교부금(조건불리), 환경친화적 어구개발 등

## 다. 세부시행 방안 검토

### 1)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

- 지원대상
  - 조건불리지역 : 취약지역(수협중앙회 분류평정)
  - 취약지역 내 어가 및 어촌공동체
- 지원수준
  - 어가소득 지원단가 : 어업소득 차액의 30%
  - 어촌공동체 지원단가 : 어업소득 차액의 70%
  - ※ 조건불리지역과 비조건불리지역의 어업소득차액
- 기대효과
  -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
  - 어촌공동체의 유지 및 활성화 도모



## 2) 친환경부표 수산보전제

- 지원대상
  - 고밀도 스티로폼 부표를 이용하는 양식어업인
  - ※ 2012년부터 고밀도 스티로폼 부표 사용 의무화
- 지원수준
  - 기존 스티로폼(0.020g/cm<sup>3</sup> 이하)과 고밀도 스티로폼(0.020g/cm<sup>3</sup> 이상) 부표 가격차이
  - ※ 고밀도 스티로폼(3,700원)과 저밀도 스티로폼(3,000원)의 차이는 700원 정도(60ℓ 기준)
- 기대효과
  - 어업인의 규격제품 부표 사용의무 이행을 촉진
  - 어장관리 의무 강화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경감
  - 스티로폼 부표 사용량 감축으로 수거·처리비 저감

## 3) 재해예방 수산보전제

- 지원대상
  - 피항능이 미흡한 열악한 도서지역에서 외부(타항)로 대피를 위해 출항한 연근해 어선
  - ※ 일정거리 이상 피항하는 어선(선적항에서 대피항까지 1시간 이상 또는 20km 이상의 거리)
- 지원수준
  - 피항시 지출한 소요경비(유류비 등)의 60%
  - 태풍 내습빈도(3.1회 고려)를 고려하여 연간 3회로 한정
- 기대효과
  - 어업인의 어업경영 안정에 도움
  - 재해예방 노력으로 비용부담 경감

## 4) 고령어가은퇴 수산보전제

- 지원대상
  - 10년 이상 양식어업에 종사한 65세~75세 미만의 경영주 가운데 희망 신청자
  - ※ 개인면허(어업허가 포함) 또는 어촌계면허 내의 지분을 보유한 자
  - 대상어업 : 수산업법 제8조 면허어업, 제43조 허가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에 국한)
  - ※ 어선어업은 향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재검토



- 지원조건
  - 은퇴를 조건으로 기존의 면허(허가)권을 포기해야 하며, 면허·허가의 재취득 금지
- 기대효과
  - 고령 어업인의 노후생활 안정화 기여
  - 어업권 환수 및 감축을 통한 양식어업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
  - 양식어장의 환경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

## 5) 휴어수산보전제

- 지원대상
  - 수산자원회복대상 어종을 어획하는 어업인
  - 미성어 어획어업인
  - 소형어 어획어업인
- 지원수준
  - 휴어기간 동안 상실되는 어업소득의 70%
  - ※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어업인 책임 1/3 반영
- 기대효과
  - 어가소득안정 및 어촌사회 유지
  - 수산자원 증대

## 6) 어장휴식 수산보전제

- 지원대상
  - 어장관리특별해역 내에서 양식어장을 경영하는 어업인
  - 환경악화로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 품종
  - 어장정화사업과 병행 실시하고 양식주기가 1년인 품종 : 굴(통영), 김, 미역, 다시마(완도)
  - ※ 어장정화사업 전후에 어장휴식을 실시하여 환경 개선에 상승효과 기대, 사업효율성 제고, 양식시설물 철거·재시설 비용 절감
- 지원수준
  - 기본적으로 해당 품종(지역) 평균 어업소득의 50%
  - 휴식어장 규모화 위해 인접어장 동시 참여 유도 : 50% + 10%(대단위)
  - ※ 개인 면허일 때 어업면허 당 평균 면적의 4배수 이상이 참여 또는 어촌계 면허



- 기대효과
  - 어장휴식·어장정화 사업이 활성화 되어 해양환경개선, 어장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
  - 부수적으로 과잉공급 상태에 있는 품종의 수급균형에 기여

## 라. 관련법률 검토

### 1)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1995년)

-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제2항 : 생산자 지원규정의 변경필요
  - '영세농 등을 위한 보조'에서 '영세농어가 등을 위한 보조'
  -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에 대한 지원'에 어장을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조항설치
  - 자원회복 및 자원관리와 관련된 지원조치 내용이 새로운 조항으로 설치보완
  -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보조 규정 준용
  - 동 법 수정 및 개정과 동시에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에 관련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 2) 농림부의 직접지불제 시행관련 법률사례 검토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1997년)
  - 1장 총칙, 2장 경영이양직불제, 3장 친환경농업 직불제, 제4장 논농업직불제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1997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2007년)

### 3) 수산보전제 관련 제도적 기반마련

- 농림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함
- 수산보전제의 법적 근거를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의 제11조 제2항에 둔다면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동 법을 어업인 또는 수산업에 적합하도록 개정·보완해야 함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지원정책시행으로 수산보전제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농림부처럼 '수산물의 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및 규칙'을 마련해야 함

## 마. 관련자료 확보 및 DB구축방향

### 1) 수산보전제 DB화의 필요성

- 수산보전제 사업시행의 효율성을 높임
  - 어가대상 정책사업과 제도는 어가별 자료를 매 사업마다 신청서를 받아 별도로 관리
  - 중복과 분산으로 인한 행정비용이 과다, 자료의 부정확성 발생
- 평균적이고 획일적인 어업정책을 통해 어가유형별 차별화된 정책마련
- 어가관련 자료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필요
- 부당한 예산집행방지

### 2) DB와의 목적 및 기본방향

- 어가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로 효율적 사업추진
- 새로운 수산보전제 도입용이(어가경영자료 통합적 관리)
- 기초정보의 상시적·체계적 갱신으로 정확하고 유효한 자료축적
- 단계적 DB화 전략마련(우선적으로 사전확보 자료 및 정보마련, 사후관리자료 마련)
- 어가등록제에 대비하여 수산보전제 대상자에 어업인 카드 및 어업인 번호 부여

### 3) 농업부문 DB화(농가등록제) 사례

- 농업사례 : 농가등록제 추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임의등록
  - 2단계(기본정보, 상세정보)로 분리하여 등록

구 분		등록정보
직불제 사업	과수산업소득보전	- 지원조건/필요정보 : 시설포도, 키위재배 면적과 생산량
	경영이양	- 경영주 연령, 영농경력, 농지면적, 매매계약서,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사본, 현지거주 여부, 기지급 경영이양보조금환수여부, 쌀전업농육성대상자여부,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사업 수혜여부
	친환경농업	- 친환경농업인증(유기,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규모(1,000m <sup>2</sup> ), 연간 판매액(100만원 이상)
	논농업	- 1998~2000년 논농업 이용농지 경작면적
	조건불리지역	- 조건불리지역내 농지와 초지 경작면적
	친환경축산	- 축종별 사육규모, 발생분뇨환원, 이행기록장부기장, 환경·방역관련 교육이수
	쌀생산조정제	- 2002년도 기준 논벼재배 농지경작 면적



#### 4) 수산보전제 DB화 시행방안

○ 수산보전제 실시를 위한 사전확보 및 필요정보

구분		내용	
사전확보자료 및 정보		- 양식어장의 지역별·품종별 표준 어업소득 자료 - 지역별·품종별 어업권 실거래가격을 근거로 한 표준거래가격 - 지역별·업종별 어업소득 표준화 자료 - 조건불리지역 재분류, 취약지구 내 어촌계, 어가수, 조건불리지역과 비조건불리지역의 표준어업소득자료 - 불법어업 적발여부 - 유희양식어장 자료	
사후 관리 자료	기본정보	- 어업인 공통으로 주민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주소 등), 면허종류, 면허번호, 생산량, 어업조수입, 어업외 소득여부 - 양식어업의 경우 양식품종, 면적, 시설량 등 추가 - 어류양식어업인은 어류양식현황조사 통계와 맞추어 작성 · 양식면적, 양식품종, 입식량, 출하량, 폐사량, 판매금액, 현사육량, 사료투입량 등	
	상세 정보	조건불리지역	- 조건불리지역내 어가정보
		친환경부표	- 현재 부표사용량 및 부표종류
		재해예방	- 대상자 리스트 확보(1시간 이상 운항거리 20km 이상 피항 어선) - 지원대상 어선정보(선적항, 대피항, 선주명, 톤급 등)
		고령어가은퇴	- 양식업종(어류, 패류, 해조류 등), 양식품종, 경영주 연령, 양식어업 종사기간, 면허취득일자, 면허유형(개인, 어촌계), 면허지분을 및 면허면적(ha), 지원금 수령방식(매월 또는 분기), 지원금 수령계좌번호
		휴어	- 어업의 종류, 어획대상어종, 월별 생산량
어장휴식	- 어장관리정보 : 어장청소, 어장정화사업, 어장휴식 이력 - 재해피해정보 : 연도, 재해종류, 피해규모(피해면적, 피해액), 복구비 수해액		

○ 기대효과

- 맞춤형 정책지원 : 어가소득안정책 시행으로 정책자료 기반마련
- 어가경영 모니터링 기능 : 수산보전제 대상 어가의 경영정보 취합 및 모니터링 가능
- 행정업무 효율화 : 자료의 통합적 관리로 개별 정책사업 신청의 중복·분산 최소화
- 차별화 정책지원 : 어가소득안정에 기여

## 바. 수산보전제 추진방향 및 로드맵

- 기본방향
  - 관련 법령 마련
  - 적용 기준의 명확화
  - 사전 신청제 또는 사전 예고제
  - 사전 필요 자료 확보(입찰에 의한 지원방식)
  - 현행 정책 및 관련 제도 연계
  - 사전준비 - 시범사업 - 본사업의 단계적 추진
  - 보전제별 예산확보 노력
  -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사업시행
  - 홍보 및 교육(공무원, 어업인 대상)

### ○ 단계별 추진계획(로드맵)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관련 법률정비		시행규정, 규칙마련	수산기본법(가칭) 또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등에 근거 조항 마련				
수산 보전제	조건불리지역 (예산확보)	세부사업방안마련		시범사업(2년)		본 사업	
	친환경부표지원 (예산확보)	세부사업방안마련	본 사업(1단계)			본 사업(2단계)	
	재해예방	세부사업방안마련	시범사업	본 사업			
	고령어가은퇴	세부사업방안마련		시범사업(2년)		본 사업	
	휴어	세부사업방안마련			시범사업(3년)		본 사업
	어장휴식	세부사업방안마련		시범사업(2년)		본 사업	
DB화 등		사전자료 및 정보 확보		사후관리자료 확보(기본정보, 상세정보)			

## 3. 수산업 · 어촌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확산방안

### 가. 개념 및 목적

- 개념
  - 수산업 · 어촌의 제반자원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모든 사업조직의 핵심논리



## ○ 목적

- 고유한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수한 어업인 및 어촌 발굴·홍보
- 타어업인 및 어촌단위 등이 응용 가능하도록 확산체제 구축
- 어업 경영체 사례분석을 통해 어업경영체 성공조건과 성공모델 구축

## 나. 우수사례 선정 및 사례분석 결과

## ○ 사례 선정 과정

- 1차 사례 선정 후 선정위원회를 통한 2차 사례 선정을 통해 총 7개의 수산업 우수사례와 총 8개의 어촌 우수사례를 선정함

## ○ 수산업 우수사례(7개)

회 사	매출규모	품목/업종	지 역
중앙씨푸드	13,944	굴(생산, 판매)	경남 거제
참바다영어조합법인	12,621	고등어숙성(가공, 판매)	전북 고창
광천수산영어조합법인	3,695	액젓, 김, 멸치(생산, 가공, 판매)	충남 보령
고창영어조합법인	2,947	장어구이(생산, 가공, 판매)	전북 고창
일성수산	2,526	과메기(가공, 판매)	경북 영덕
유명수산영어조합법인	1,500	고추장굴비(가공, 판매)	전남 영광
아침가리	9,200	김, 멸치(가공, 판매)	전남 진도

## ○ 어촌 우수사례(8개)

구 분	지 역	구 분	지 역
곰소젓갈협회	전북부안	선감어촌계	경기안산
디노빌영어조합법인	경남함양	송계어촌계	전남무안
미라자울관리공동체	전남완도	저도어촌계	경남사천
정자어촌계	경남울산		
물치어촌계	강원양양		

○ 사례분석결과

구분		특징(성공요인)
수산업	중앙씨푸드	자체어장, 품질경영, 브랜드개발, 이미지경영
	참바다영어조합법인	홈쇼핑 판매 특화, 씨푸드 체인점 사업확대
	광천수산영어조합법인	서울영업소 가동, 입소문 마케팅, 이익재투자
	고창영어조합법인	장어구이 특허기술 보유, 산학협력 연구개발 지속
	일성수산	품질경영, 다양한 판매채널, 장기계약 고정고객
	유명수산영어조합법인	특허기술, 소비자 직거래, 상품다양화
	아침가리	자체생산, 기술개발, 판매채널 확보
어촌	곰소젓갈협회	관광객 판매(70%), 협회차원의 위생관리
	미라자울관리공동체	공동기금 마련, 어장정리사업, 공동판매
	정자어촌계	공동활어직판장, 평준화된 영업이익 보장
	물치어촌계	재투자를 통한 이익극대화, 보조사업으로 관광기반 마련
	디노빌영어조합법인	독자적 기술, 새로운 지역자원 창출
	선감어촌계	목표시장에 맞는 체협장 조성
	저도어촌계	바다낚시공원을 마을공동체 자원화
	송계어촌계	비어촌계 주민과 협력, 핵심인력육성(사무장 등)

다.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 우수사례의 유형화

1) 유형화 절차

- 총 15개 우수사례 검토시 고려사항
  - 핵심 역량을 제공하는 공통요소의 도출(수요측면, 공급측면 등)
  - 잠정적 사업자의 여건 고려(경영형태 및 자본규모 등)
  - 총 4개 그룹 10개 유형 분류
-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구분

전략유형	공급자 특화전략(S)	시장수요특화전략(D)
초기여건		
수산업 연계형(F)	수산업연계 공급자특화형(FS) -FS-P/O, FS-T/O, FS-I/O, FS-JS/C	수산업연계 시장특화형(FD) -FD-IB/O, FD-JB/C, FD-N/O
어촌자원 연계형(P)	어촌자원연계 지역화형(PS) -PS/A, PS/C	어촌자원연계 배후소비자 활용형(PD) - PD/A

주: 뒤쪽의 첨자 P(지역특산물), O(오너경영), C(협동경영), A(공동경영), T(신기술형), I(생산판매통합형), N(물류혁신 및 네트워크형), JS(공동판매형), JB(공동브랜드형), IB(개별브랜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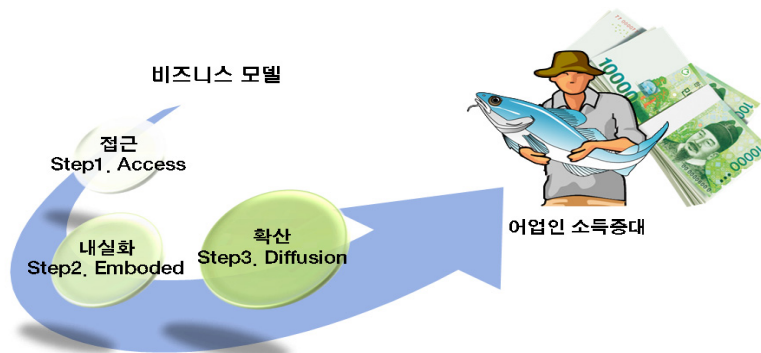
○ 수산업·어촌 사례별 비즈니스모델 유형

우수 사례 경영체	소재지	특징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		
		개인의 자본 규모	경영 형태	세분류 유형	약어	대분류 유형
고창영어조합법인	전북 고창	중규모	오너경영	지역특산물활용형	FS-P/O	수산업연계공급자 특화형 (FS)
(주)일성수산	경북 영덕	중규모	오너경영	지역특산물활용형	FS-P/O	
유명수산영어조합법인	전남 영광	소규모	오너경영	지역특산물활용형	FS-P/O	
디노빌영어조합법인	경남 함양	대규모	오너경영	신품종·신기술도입형	FS-T/O	
광천수산영어조합법인	충남 보령	중규모	오너경영	생산·판매 통합형	FS-I/O	
(주)아침가리	전남 진도	중규모	오너경영	생산·판매 통합형	FS-I/O	
미라자올관리어촌계	전남 완도	소규모	협동경영	공동판매형	FS-JS/C	
정자어촌계	경남 울산	소규모	협동경영	공동판매형	FS-JS/C	수산업연계시장 특화형 (FD)
(주)중앙씨푸드	경남 거제	중규모	오너경영	브랜드차별형	FD-IB/O	
곰소젓갈	전북 부안	소규모	협동경영	공동브랜드형	FD-JB/C	
참바다영어조합법인	전북 고창	중규모	오너경영	물류혁신및네트워크형	FD-N/O	어촌자원연계 지역사업화형 (PS)
저도어촌계	경남 사천	소규모	공동경영	자원연계지역사업화형	PS/A	
송계어촌계	전남 무안	소규모	공동경영	자원연계지역사업화형	PS/A	
물치어촌계	강원 양양	소규모	협동경영	자원연계지역사업화형	PS/C	
선감어촌계	경기 안산	소규모	공동경영	자원연계배후소비지활용형	PD/A	어촌자원연계배후 시장활용형(PD)

라. 정책제언 : 비즈니스 모델의 현장 활용방안

1) 비즈니스 모델의 3단계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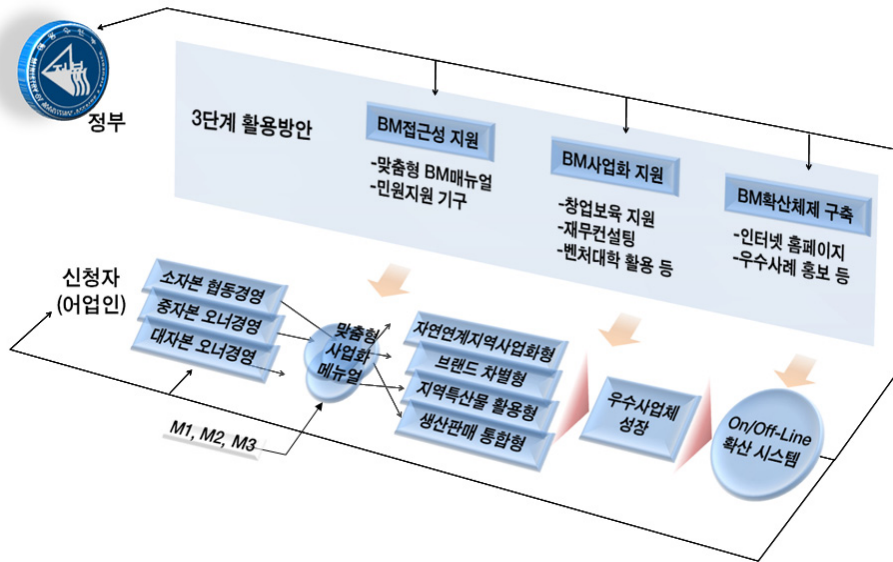
○ 접근성, 내실화, 확산의 3단계





## 2)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및 3단계 지원체제 개요

○ 비즈니스 모델 사업추진시 지원체제



## 3) 접근단계(비즈니스 모델의 접근성 제공 방안)

○ 맞춤형 비즈니스모델 메뉴얼 제공(software)

- 사업 희망자의 여건과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을 고려하여 맞춤형 메뉴얼 제공

유형		특징	비고
창업자 유형	메뉴얼의 유형		
소규모자본 오너경영형	M 1	5천만원 미만의 자기자본. 창업희망자 자신이 직접 경영	
소규모자본 협동경영형	M1 2	5천만원 미만의 자기자본 일정 분야의 기능은 어촌계등의 공동체와 협력	공동 판매기능(시설, 업무 등)을 어촌계 / 수협 등에 게 위임
소규모자본 공동경영형	M 3	어촌계등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공동 경영 추진 (자기자본은 5천만원 이내)	주로 어촌계 추진 사업 (체험장운영 등)
중규모자본 오너경영형	M 4	5천만원~5억원 규모 자기자본으로 창업희망자가 직접 경영	
대규모자본 오너경영형	M 5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으로 직접 경영	대규모 시설투자 등 기타 경영형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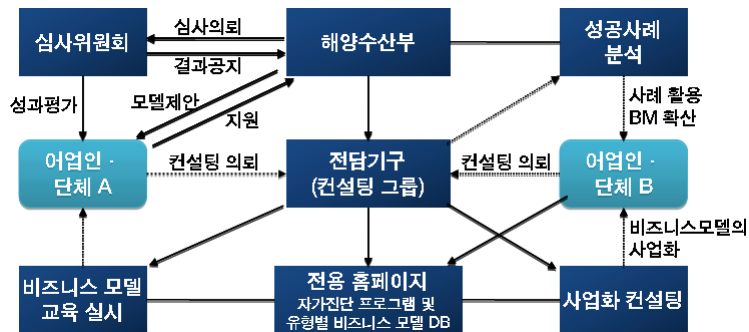
- 창업정보의 지원시설 구축(hardware)
  - 정보·지방자치단체 내 창업정보 지원 및 알선조직의 설치
  - 지역 수협내 창업지원팀 운영
  - 전문 연구기관 컨설팅 사업 활용 및 관련정보 제공체제 구축

#### 4) 내실화단계(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지원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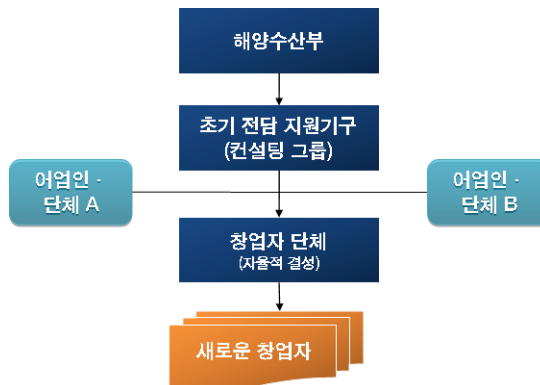
- 비즈니스 모델의 창업보육 지원
- 벤처대학의 활용
- 우수 경영자 지원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의 활성화
- 재무컨설팅 지원체제의 구축
- 마케팅 활동강화를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

#### 5) 확산단계(우수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지원 방안)

- 초기 관리체제의 구축(단기)
  -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지원을 위한 초기 관리체제 구축



-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 홍보 및 확산전략의 추진(중장기)



## 4. 수산벤처산업 활성화 전략 및 육성방안

### 가. 수산벤처산업의 현황

#### 1) 해양수산부 벤처산업 육성정책

-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 목적 : 해양수산분야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 대상 : 해양생명공학, 수산, 해양 및 항만건설·운영, 해양환경, 해양조사 및 해양무생물자원, 해양문화·관광·레저
- 수산특정 연구개발사업
  - 목적 : 수산분야 선진기술 개발 및 보급
  - 대상 : 수산기술개발사업, 수산정책연구사업
- 마린바이오21
  - 목적 : 해양생명공학 핵심기술 확보 및 특화기술의 산업화 지원
  - 대상 :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신의약, 신소재 개발 및 대량생산 공정개발
-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부설 기업활성화 센터 설립(예정)
  - 목적 : 해양수산분야 사업화연계기술(R&D) 지원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기술거래 지원, 기술상용화 지원, 산업정보화, 기술인증

#### 2) 지자체별 수산벤처 관련사업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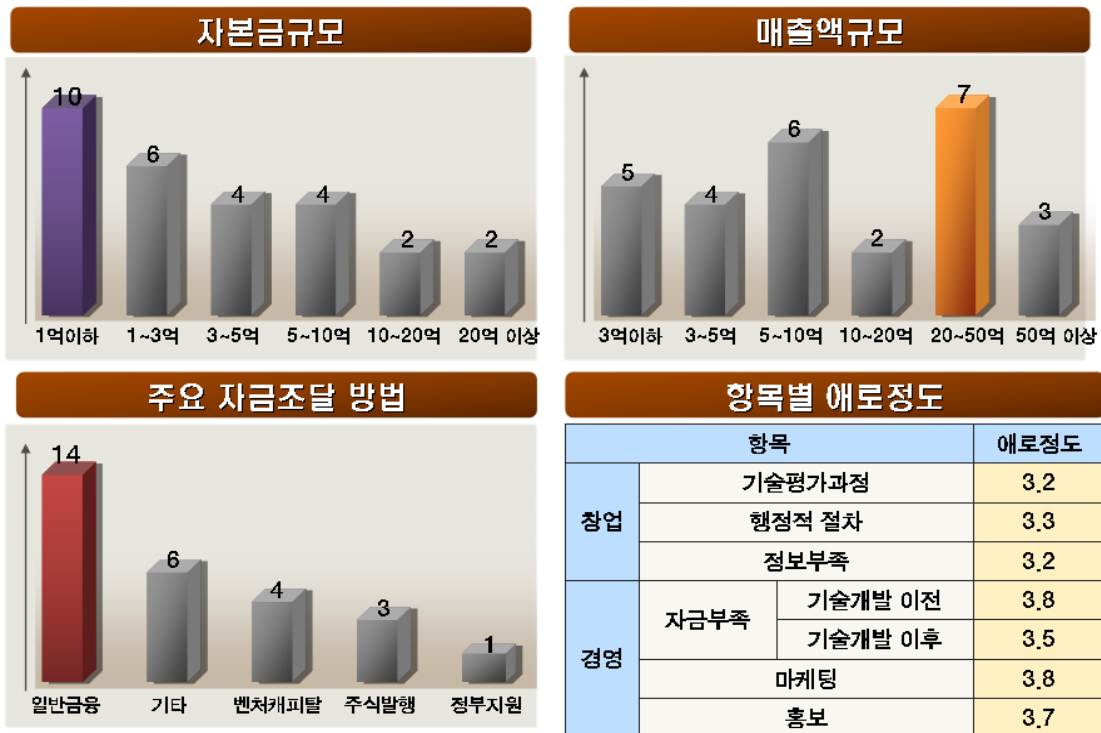
### 3) 수산벤처기업 현황

○ 수산업 관련기업의 벤처등록 현황(2007년 9월말 현재)

업 종		등록 벤처기업
수산식품 제조가공업	수산동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12
	식용해조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12
	원료 및 건강보조식품 제조업	10
양식(관련)업	양식 및 종묘생산	4
	사료 및 먹이생물 제조업	6
수산관련 기기제조	수산식품 가공기계 제조업	8
	어구 및 양식용 자재 제조업	5
기타	얼음제조업	1
	어류질병소독치료제 제조업	1
	어군탐지기 제조업	1
	양식어장 퇴적물 정화처리	1
	수산물생산이력시스템	1
	홍조류이용 펄프 제지 제조업	1
계		63

자료 : 벤처등록시스템 (www.venturein.or.kr)

### 4) 수산벤처기업 경영현황(설문조사 결과)



## 나. 농업분야 사례분석

- 창업보육사업 확대
  - 농림부 예산지원 : 창업보육센터 건축비 및 연간 운영비 일부(개소당 6천만원) 지원
  - 농업전문 창업보육센터 9개소 설립(수도권 3개소, 지방 6개소) 지원
- 농업전문 투자펀드 조성
  - 2001년 1호 펀드는 운영실패로 조기청산
  - 2002년 2호 펀드(80억원)는 2006년말 청산시 147.5% 수익률 달성, 3개사 코스닥 등록
  - 2007년 3호 펀드(100억원) 운영중(농림부 40억원, 농협 등 민간 60억원 출자)
- 벤처농업 저변확대
  - 창업경연대회 개최(200년부터 매년 시행, 농림부 개최)로 벤처붐 조성
  - 농민의 자발적 노력으로 한국벤처농업포럼 결성 및 민간 벤처농업대학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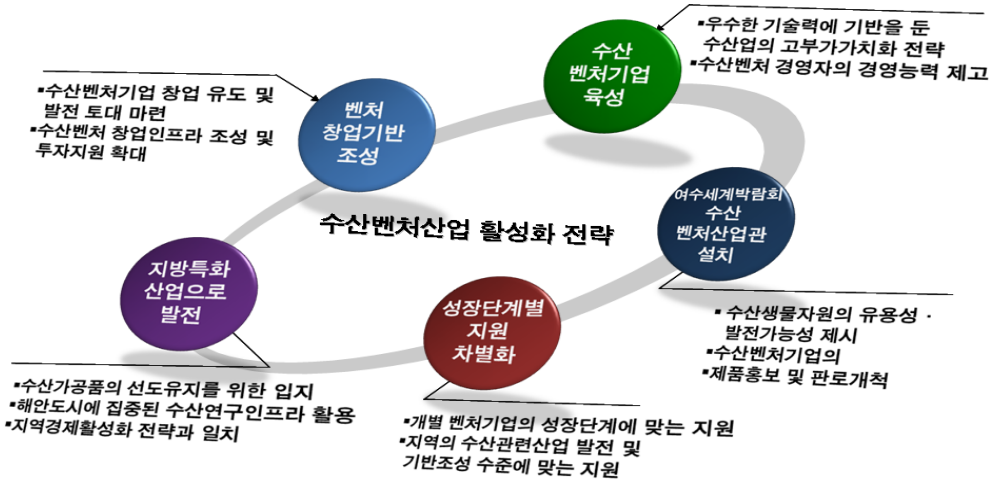
## 다. 비활성화 원인분석

- 해양수산부 지원부족
  - 설문조사대상 28개 기업중 11개 기업만 정부지원
  - 총 13건 지원 : 해양수산부(5), 산업자원부(7), 보건복지부(1)
- 수산벤처 창업지원 인프라 부족
  - 조사대상 기업 28개사 중 6개사만 창업보육센터 입주
  - 수산전문 창업보육센터 미설립
- 수산관련 기업의 벤처캐피탈 투자에서 소외
  - 수산업의 투자위험은 높으나 기대수익은 낮을 것이라는 인식
  - 벤처캐피탈이 투자와 함께 지원하는 각종 경영지원으로부터 소외
- 수산기업 경영자의 문제
  - 기업경영능력 부족 및 경영전략의 부실로 시장적응 실패
  - 벤처에 대한 관심부족(벤처기업에 대한 특혜와 정부지원내용을 인지하지 못함)



## 라. 수산벤처산업 활성화 전략 및 육성방안

### 1) 수산벤처산업 활성화 전략



- 벤처창업기반 조성
- 기술력과 시장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수산벤처기업 육성
- 지방특화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유도
- 성장단계별 지원 차별화
- 여수세계박람회 수산벤처산업관 설치

### 2) 수산벤처 육성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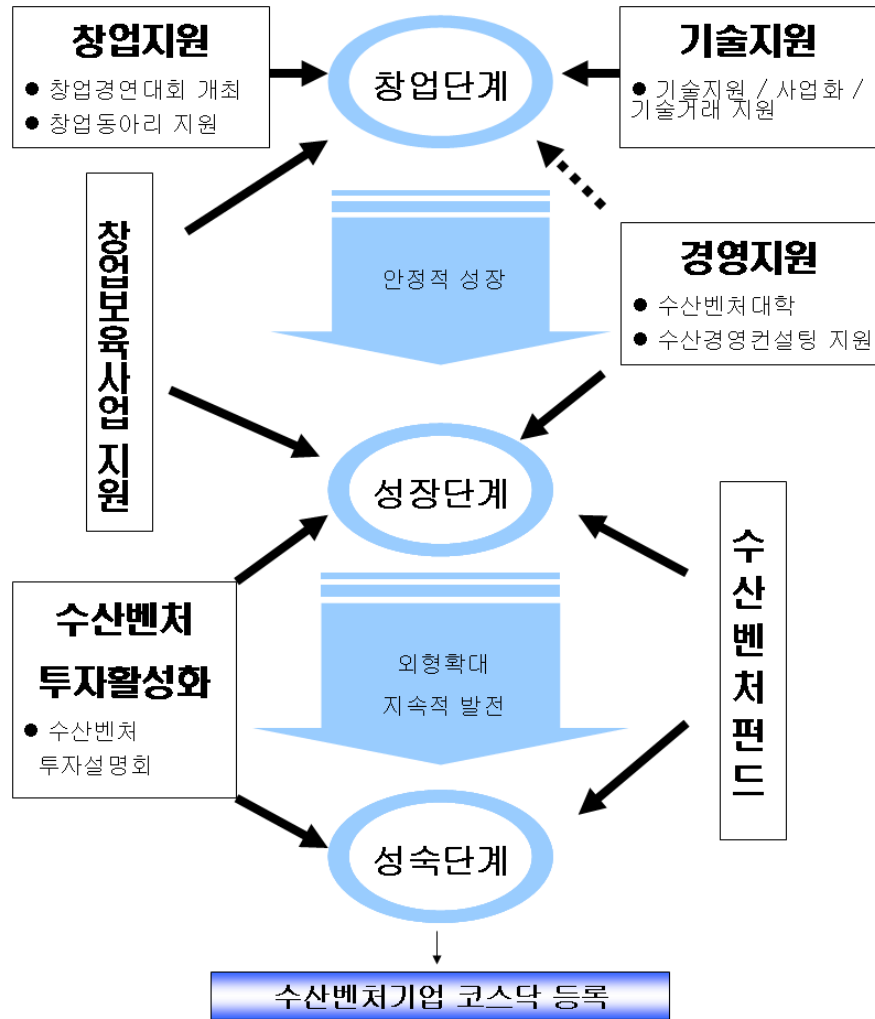


- 기술지원(기업활성화센터 활용)
  -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부설 기업활성화 센터(가칭)
  - 국립수산물과학원, 한국해양연구소 등 국가연구기관의 기술자문/평가
  - 수산분야 특화대학을 활용한 지역별 기술지원체제 확립
- 창업지원을 통해 수산분야 벤처붐 조성
  - 수산벤처 창업경영대회 개최
  - 창업동아리 지원(대학내)
- 창업보육사업지원
  - 수산전문 창업보육센터 설립 지원
  - 동·서·남해 및 제주 각 1개소씩, 4개소 설립지원
- 경영지원
  - 수산벤처대학 설립
    - \* 수산벤처 경영인 육성
  - 수산벤처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 금융지원
  - 수산벤처펀드 조성(해양수산부 출자 + 수협 등 기타기관 출자유도)
  - 수산벤처 투자설명회 개최(해양수산부 주관)



### 마. 세부 추진계획

#### ○ 수산벤처기업 발전단계





○ 수산벤처기업 육성 세부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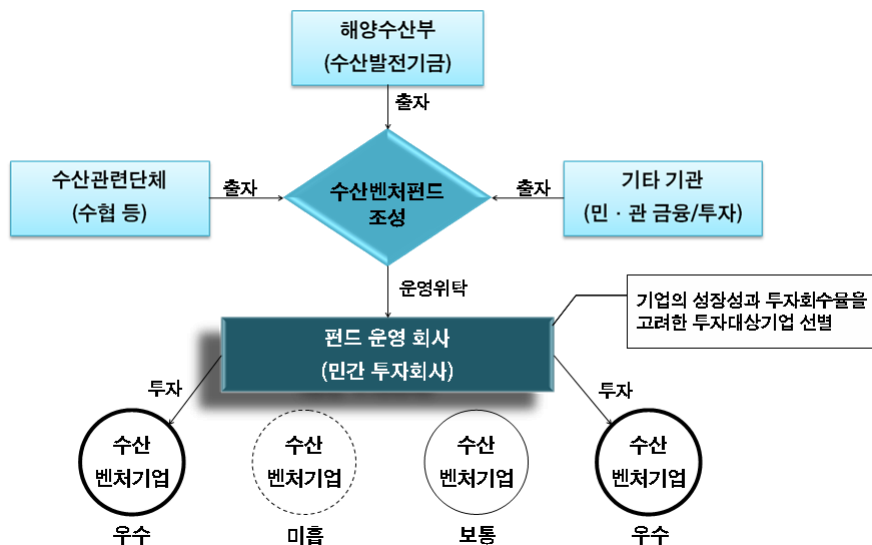
수산벤처기업의 발전단계	사업	내용	비고
창업단계	기술지원사업	기술이전 / 산업화 / 기술거래 지원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부설 기업활성화센터 시행
	수산벤처 창업경연대회	연1회	수상자 상금 지급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10개 수산벤처 창업동아리 결성지원	수산관련 과정이 개설된 대학 및 대학원 우선지원
	창업보육사업	수산전문 창업보육센터 설치 - 동·서·남해 및 제주 각 1개소 (총 4개소)	1개소 당 10개 수산관련 창 업기업 입주(총 40개 기업 입주)
	수산벤처대학 설립	완도 수산벤처대학 정부지원개시 동남해안권 수산벤처대학 1개소 추가 설립(통영)	과정 당 40인씩 총 80인의 수산벤처경영인 양성
성장 / 성숙단계	수산벤처펀드 운영	50억원 규모의 수산벤처펀드 조성	해양수산부 60% 출자 (수산발전기금) 기타기관 40% 출자유치
	수산벤처 투자설명회	연1회	향후 수산벤처박람회로 발전
	수산경영컨설팅지원	연간 50개 기업 대상 경영컨설팅비용의 일부를 국고 지원	50개사 × 1,000만원 = 5억원 소요



○ 추진 로드맵(실천계획)

수산벤처기업 발전단계	사업	2008	2009	2010 이후
창업단계	수산벤처 창업경연대회	제1회 대회 개최 (상반기 대회준비, 9월 개최)	계속 추진	
	창업동아리 지원	창업동아리 지원방안 검토	10개 동아리 선정 운영·활동비 지원	평가후 지원확대 결정
	창업보육사업	창업보육센터 도입방안 마련 및 예산 확보	수산전문 창업보육센터 설립(동·서·남해 및 제주 등 4개소)	창업보육사업 내실화
	기술지원사업 (KIMST)	기업지원 서비스 기반조성 및 기업활성화센터 세부 운영로드맵 확정	기업활성화센터 설립 사이버기술거래소 오픈	기술인증사업 실시
	수산벤처대학 설립지원	완도 수산벤처대학 정부지원 수산벤처대학 설립 검토 (동남해안권)	신설 수산벤처대학 신입생 모집 및 개강 (정원 40명, 1년 과정)	수산벤처대학 강의록 인터넷 열람서비스 개시
성장 / 성숙단계	수산경영컨설팅 지원	수산경영컨설팅 인력풀(전문가) 확보	수산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개시 (매년 5억 지원)	수산경영컨설팅 인증제 도입
	수산벤처펀드	수산벤처펀드 조성방안마련 (투자자 확보)	제1호 펀드 조성 및 운영시작 (50억 규모)	1호펀드 운영결과에 따른 2, 3호 펀드 조성
	수산벤처 투자설명회	제1회 대회 개최	계속 추진	수산벤처박람회로 발전 (여수엑스포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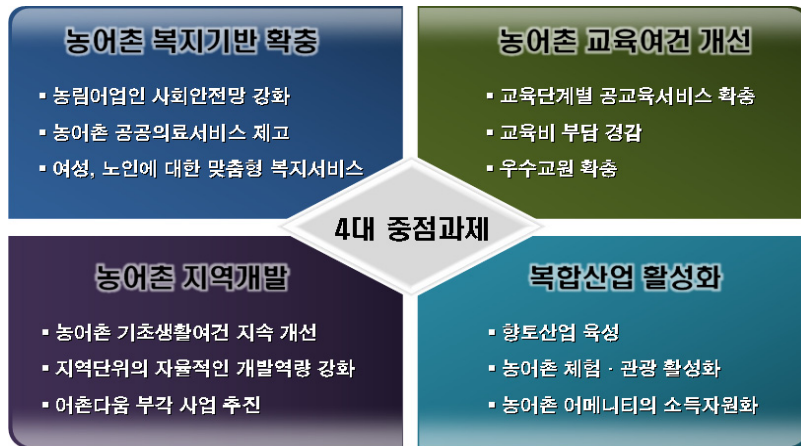
○ 수산벤처펀드 조성(안)



## 5.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방안

### 가.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진 정책현황 및 시사점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국가 기본계획



○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계획 추진과제

구분	해양수산부	농림부	교육부	문광부	복지부	농진청	행자부	기타	합계
과제	7	31	17	8	6	14	8	17	106
예산 (억원)	1,009 (2.4%)	41,737(97.6%)							42,7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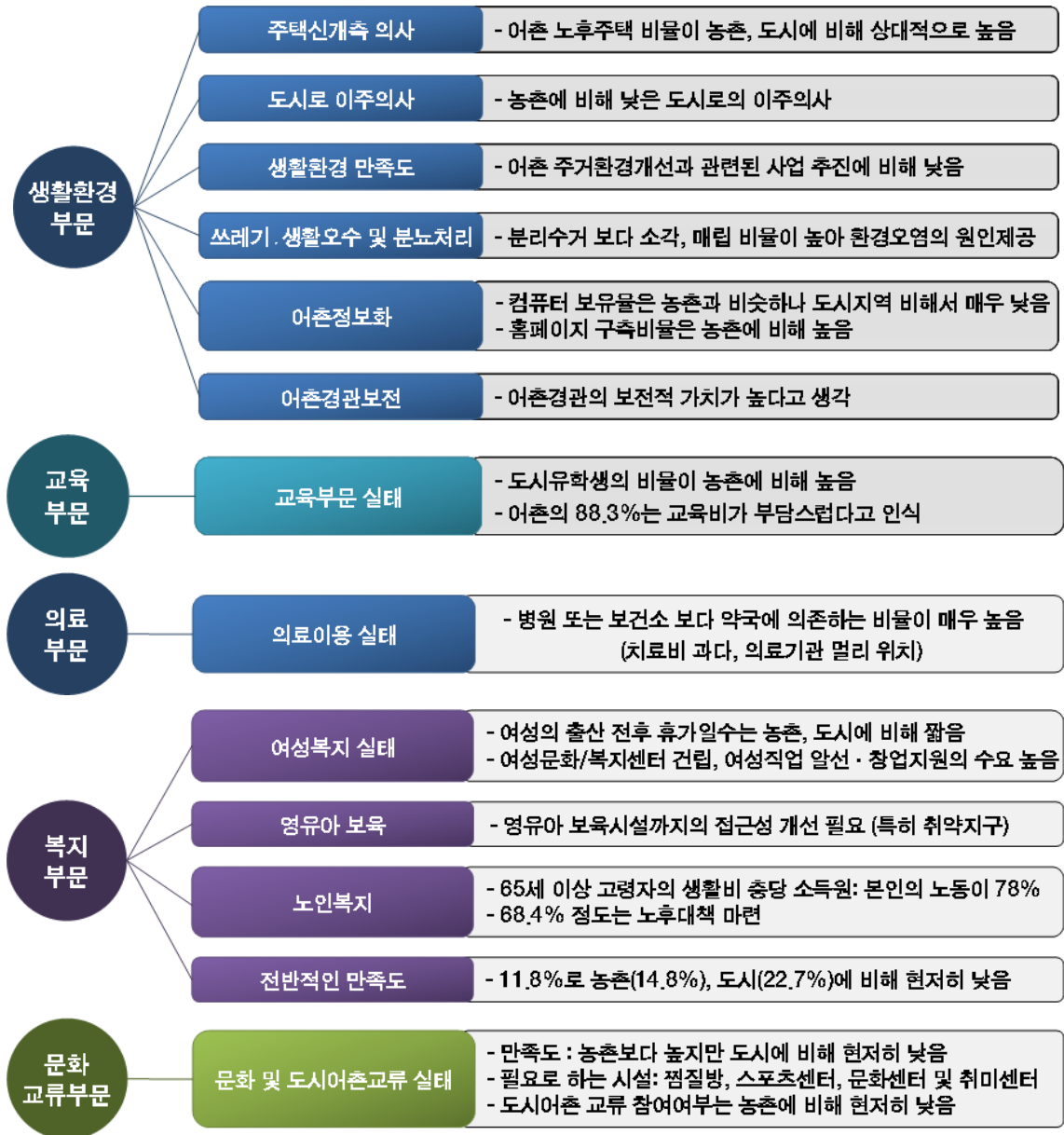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 어업인 수혜범위

추진과제	세부사업(계)	수혜범위	
		농업인	어업인
소계	106	100	68
농어촌 복지기반 확충분야	24	23	12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분야	22	22	20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	35	32	25
농어촌 복합산업 활성화	25	23	11



## 나. 어업인 삶의 질 실태

### ○ 부문별 어업인 삶의 질 실태



○ 어업인 삶의 질 실태비교

구분	어촌·농촌·도시 비교			어촌의 입지유형별 비교		
	어촌	농촌	도시	도시근교	연안촌락	취약지구
전체	2.70	2.76	3.65	2.65	2.41	2.11
의료·복지	2.67	2.96	3.58	1.50	1.31	1.18
의료(건강)	2.85	2.88	3.27	3.90	3.22	2.69
안전	2.35	3.11	3.54	2.34	2.33	2.00
사회안전망(공적연금·보험)	3.22	2.72	3.06	3.22	3.22	3.22
복지(여성·노인)	2.76	3.71	4.13	2.96	2.61	2.79
교육	2.68	2.70	3.64	3.22	2.72	2.50
생활환경	2.75	2.83	3.56	3.28	3.07	2.88
주거·생활	2.53	2.97	3.59	3.02	3.07	2.82
정보화	3.34	2.43	3.48	3.98	3.09	3.06
문화·여가	2.71	2.32	3.97	2.92	2.88	1.92

주 : 5점을 해당 지역의 사회실태가 최상인 것으로 1점을 최하인 것으로 표준화하였고 각 평가항목간의 점수 비교는 의미가 없고, 어촌 입지유형별 비교에서 일부 평가항목이 추가되어 있으므로 농촌·도시와 직접 비교할 수 없음

다. 삶의 질 향상 세부과제 어업인 대상 시행여부 조사

1) 조사개요

- 표본크기 : 1,032명 어촌계 계원(전국)
- 설문조사 내용

구분	설문조사 대상사업	설문내용
농산어촌복지기반 확충사업(14개)	농작업 재해보상지원,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지원, 여성농업인센터, 농어가 도우미, 취약농가 인력지원,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농업인 건강관리실,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여성농업인 생산제품 품질향상 지원,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노인봉사원활동 프로그램 개발, 농촌 건강장수마을 조성, 농산어촌 보육시설, 농산어촌 만5세 유아 무상보육지원	인지여부 수혜여부 필요성
농산어촌교육여건 개선사업(12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방과후 교육활동, 방학캠프 운영, 농산어촌 공립 병설유치원, 초중고학생 급식비 지원, 농산어촌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보조지원, 농업 전문학교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사업(8개)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확대, 마을단위 생활용수 개발, 폐비닐 수거지원, 농산어촌 주거환경개선(농어촌주택개량, 마을정비, 빈집정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사업(9개)	지역부존 자원을 활용한 사업, 농산어촌 체험박람회 개최, 농산어촌 체험관광홍보, 경관보전 직불제, 농산어촌 경관주택 발굴·보급, 도시민 농산어촌 주택갯기 활성화, 도농교류 참여프로그램 및 마케팅 확대, 도농교류센터 운영, 농어업인 고용촉진 훈련	



## 2) 시사점

- 농업인 및 농촌에 특화된 독자적인 사업 발굴·추진
  - 향후 해양수산부의 정책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큼
- 홍보 부족으로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 주요 사업에 대해 홍보 강화
- 타 부처의 사업에 대한 어업인의 관심과 이용률 낮음
  - 찾아가는 의료·복지 지원, 재해보상지원, 건강관리실, 노인봉사원 활동프로그램 필요
- 어촌 내 체육시설, 문화공간이 필요하지만 어촌 내 가용부지 부족
  - 어항의 다목적 활용 등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발굴 필요
- 어촌환경과 실정에 맞는 쓰레기 처리방안 등 정책발굴 필요
- 어촌지역개발은 하드웨어와 인적자원 육성 및 확대 필요
- 어촌·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정책발굴 필요
- 고부가가치의 체험·관광자원 발굴 미흡
- 어촌과 어업인 삶의 질에 관한 실태파악
  - 어촌·어업인 필요사업 발굴(어촌기초조사 적극 활용)
- 해양수산부 차원의 차별화된 새로운 정책개발 절실히 필요

## 라.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지원 과제

- 의료·사회안전망·복지부문 지원과제

구분	정책개선방향	정책사업	추진주체	우선순위	
복지	작업재해	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지원강화	수산작업재해 보상지원	수산경영과	1
	인력지원	취약어가 인력지원	-	수산경영과	
	여성복지	여성직업 알선 및 창업지원 여성문화/복지시설 건립	여성어업인 양성지원사업(확대)	수산경영과	
	노인복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 어업인 건강관리실 도입 노인봉사원활동 프로그램	맞춤형 어촌복지 Voucher 제도	수산경영과	
	문화여가시설	찜질방, 건강센터 조성	맞춤형 어촌복지 Voucher 제도	수산경영과	
사회 안전망	조건불리	조건불리지역 소득보전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	수산경영과	2
	재난 및 자연재해 예방	재해예방 및 안전교육 지원	재해예방 수산보전제	수산정책과	3
	안전공제 지원	안전공제 가입 장려	-	-	5
의료	의료기관 접근성 의료교통비 지원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 취약지역 긴급의료 수송 수산보전제	수산경영과	4	

○ 교육부문 지원과제

구분	정책개선방향	정책사업	추진주체	우선순위	
교육	어업인 특화교육	비어업 시기 교육프로그램 눈 높이에 맞는 사회교육 노인 및 저학력자를 위한 교육	어업인 교육정보 포털구축 추진	수산경영과	1
	방과후 교실	방과 후 교육 확대		교육인적 자원부	2
	교통수단 교통비	교통수단 또는 교통비 지원		해수부	3
	학습 도우미	학습도우미 지원확대		교육인적 자원부	4
	교육여건	수산업전문학교 운영 수산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지원		해수부	5
	교류확대	방학캠프 운영		교육인적 자원부	6

○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부문 지원과제

구분	정책개선방향	정책사업	추진주체	우선순위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	어촌정보화	컴퓨터 보유율 제고 홈페이지 구축률 제고 컴퓨터 교육 증대	정보화 마을사업 디지털어촌구축사업	행자부 해양수산부	1
	기반시설	유통시설, 교통시설 확충	낙후어촌 생활환경 개선	어촌어항과	2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 개편 매립, 소각 대체방안 마련			
	생활오수	방류 대체방안 마련			
	분뇨처리	방류 대체방안 마련			
	인적자원 육성	기존 사무장 제도 확대 건설팅제도 개선	1어촌 1멘토 제도	어촌어항과	3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	수산경영과	4
	주거모델	환경친화형 어촌주거모델	-	어촌어항과	5

○ 복합산업 및 문화·여가 부문 지원과제

구분	정책개선방향	정책사업	추진주체	우선순위	
복합산업 및 문화·여가	교류	지역활성화 센터 조성	도시어촌교류활성화	어촌어항과	1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마케팅	도시어촌교류활성화	어촌어항과	2
	자원발굴	어촌부존자원 발굴 및 활용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활용	어촌어항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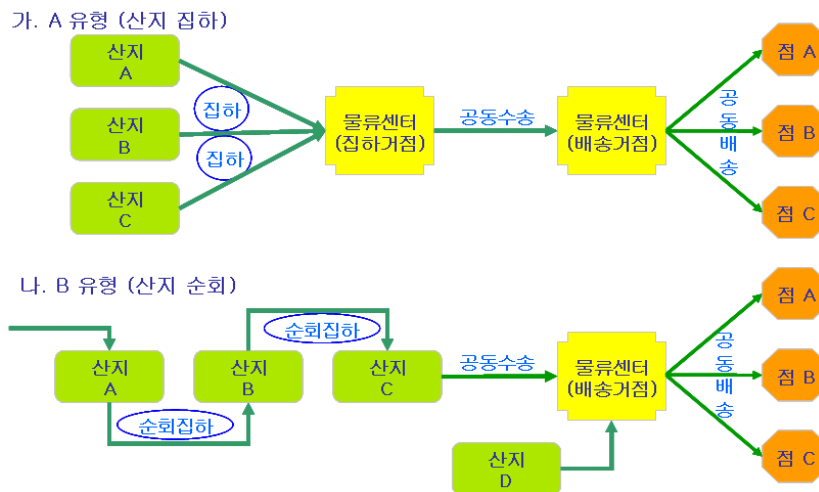


## 6. 수산가공 및 유통 활성화 방안

### 가. 외식산업 및 수산물 식재료 산업 육성

#### 1) 수산물 제품화 단계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

○ 공동물류시스템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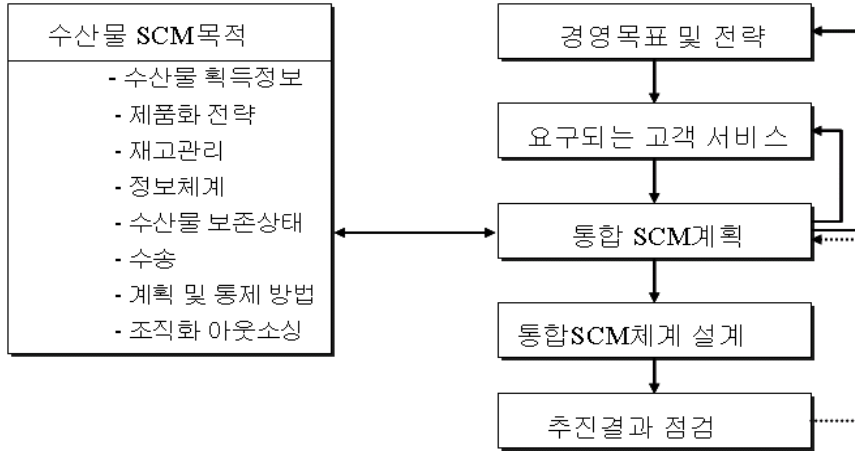
#### 2) 외식식자재를 중심으로 하는 수산물 생산과 물류전반을 관리하는 SCM

○ 외식식자재 SCM 구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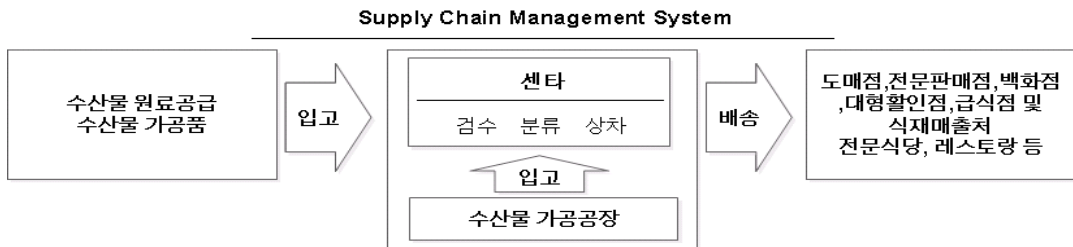
단 계	구축프로세스	추진내용
1	교육 프로그램 작성	SCM에 대한 전사적 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2	공급사슬 비전 확립	현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변화 - 핵심 역량의 결합, 공급사슬 미래 조망
3	경영전략의 평가	현재 전략의 평가 프로세스 개발, 보유 자원 평가
4	SCM의 부가가치 창출전략 개발	공급사슬 전략설정, 인적 기술자원 개발, 성과 측정
5	최적의 파트너 구성	최적 파트너 선정 기준 확보
6	최고 경영진의 적극 참여 확보	최고 경영진의 역할 명확화
7	SCM 조직의 개발	부서간 기업간 통합을 위한 프로세스팀 설립
8	정보 네트워크 구성	정보통신 네트워크 명확화, 표준화
9	SCM 구축 전략 구성	구축 프로세스의 지속적 추진
10	성과 측정 방법 개발	성과측정 프로그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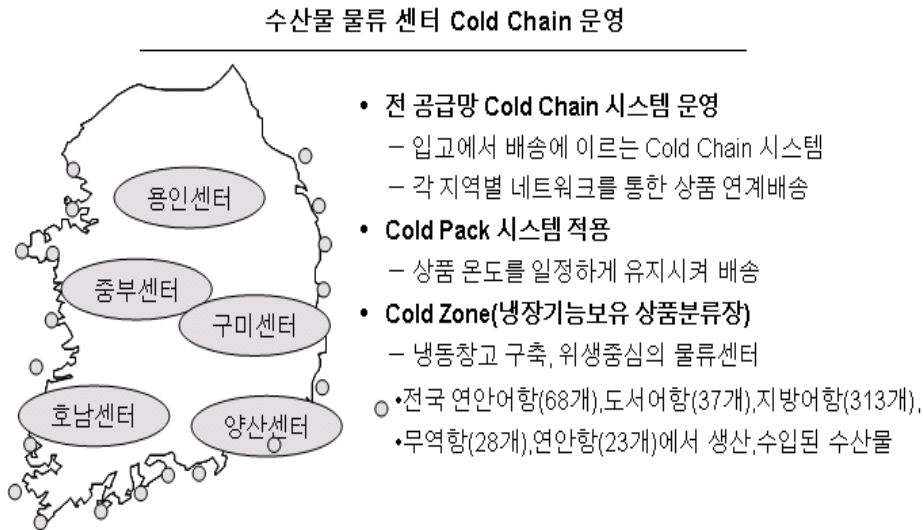
○ 수산물 SCM 프로세스



○ 수산물 식자재 SCM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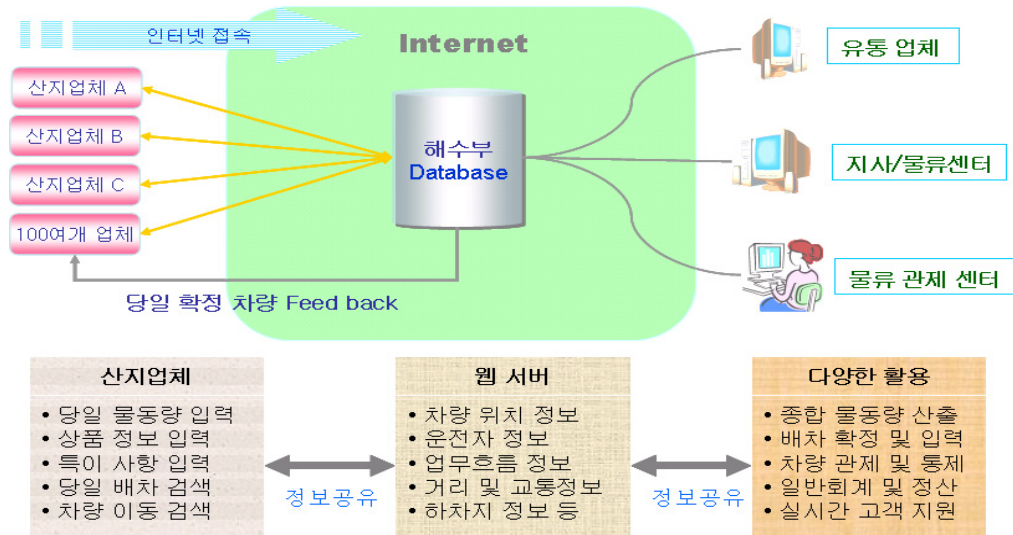


○ 수산물 물류센터 콜드체인 개념도





○ 인터넷을 통한 수산물 수집정보 시스템(Pull모델로 활용)



3) 씨푸드 마케팅 수요 확대 전략

○ 재래시장

수산물 수요 형태	수요 내용	주요 특징
재래시장 수요	산지 직거래, 재래시장 상인	정확한 판매 내용 파악 어려움, 고객과 1차적인 접근가능하고 숫자가 많다.
판매확대 전략	판매점 전문화시킴 → 기존시장상인 ↳ 전문 판매점 등록하게 지원(교육과 시설 지원) ↳ 신선제품 판매점에 판매지원(기존 판매 채널 활용)	

○ 대형유통 판매점

수산물 수요 형태	수요 내용	주요 특징
대형 유통 판매점	백화점, 할인점, 전문점, 도소매점	제품형태로 진열해서 소비자 직접 마케팅, 소비자가 제품 확인, 고급품, 국내산, 수입산 선택 → 생산자와 유통업체에서 초기 시장진입을 위해 브랜드와 제품화 작업을 진행
판매 확대 전략	판매자의 선별작업과 매장에서의 소비구조에 의해 조정되기에 수산물에 대한 자체 마케팅 활동 강화로 판매를 확대할 수 있지만, 국민의 식생활 소비패턴의 변화에 의한 수산물 소비 트렌드 홍보가 필요하다. → well-being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 ↳ 수산물 이력제 도입    ↳ 수산가공에 대한 R&D 강화	

○ 수산물식품전문회사

수산물 수요 형태	수요 내용	주요 특징
식품전문회사	단체급식	오피스, 관공서, 산업체, 학교(초, 중, 고, 대학교), 병원 대기업의 자본과 경영참여(시장지배, 사업다각화: 식자재물류)
판매 확대 전략	삼성 에버랜드, 아워홈, CJ푸드시스템, 현대푸드시스템, 신세계푸드시스템 등 상위 업체들이 수산물식자재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수산물식품전문회사 지원 → 최종수요자의 수산물 선택 → 수산물 소비 확대 ↳ 수산제품의 규격화로 경쟁력 향상 → 국산수산물 구입확대 ↳ 품질과 가격 경쟁력 ↳ 구매시스템과 연동(B2B지원)	

○ 외식산업

수산물 수요 형태	수요 내용	주요 특징
외식산업	패스트푸드, 패밀리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식당	수산물 식자재 일부사용, 가공식품 선호 원가절감을 위해 수입수산물 많이 사용
	푸드서비스업체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수산물 식자재 일부사용, 조리의 간편성을 요구
	수산 전문점 (씨푸드 레스토랑)	‘외식 열풍’에 영향 받아 해산물 요리 전문점이 급속도로 확대됨, 가맹점 숫자를 지역별로 증대시켜 수산물소비를 촉진시킴. 대표적인 레스토랑 : 아시안키친의 토다이, CJ푸드빌의 씨푸드오션, 치킨점 BBQ의 제너시스 오션스타, 마리스꼬, 신세계푸드의 보노보노, 마키노 차야, 군산회집의 로하스뱅크, 일본 식자재 유통회사의 가토키치, 미나도, 무스쿠스-원가 비율은 판매 금액의 40% 이상(신선한 식재료를 공급 → 원가 비중이 수익의 45~50% )
주요 판매 확대 전략	웰빙 건강 관심 고조, 시장개척과 시장확대(국내 생산자들과 가격, 품질면을 협의하여 국산을 사용하도록 지원), 간편 요리 방법을 개발, 식자재 원료 공급물류체계 구축 ↳ 외식산업에서 사용되는 식자재에서 수산물 비율 증대(현재 10% → 30% 이상) ↳ 소비 트렌드 Shift (축산물 → 수산물)	

나. 수산가공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

1) 지역 수산가공기술의 고도화 사업 추진

- 지역수산물의 이용확대 및 지역브랜드화 추진
  - 이미 수산가공업의 탈산지화, 즉 탈지역원료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수산물 원료를 기반으로 하는 수산가공품 개발 및 지역 공동브랜드 개발 추진
- 지역수산가공기술 및 품질관리의 통합화 추진
  - 공동브랜드 개발의 전제 조건으로 지역수산가공기술 및 가공생산품에 대한 공동품질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화



- 지역수산물의 다용도 이용 소재화를 위한 기술개발
  - 소비자들의 새로운 건강 영양 기능성 가공품에 대한 관심 고조로 계껌질, 굴패각, 가공부산물 등과 같은 수산가공물의 부산물이나 다시마, 미역, 메생이 등 지역수산물의 새로운 다용도 이용 소재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요구됨
- 수산가공업의 벤처화 추진
  - 수산가공산업을 수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고소득 창출과 어촌활성화에 기여토록 벤처화를 추진하여 자금운용 및 경영구조의 고도화를 추진

## 2) 수산가공품의 품질 위생관리 고도화 정책 전략

- 소비자들의 수산가공품에 대한 신뢰 회복 및 고취를 위해 HACCP 관리시스템 도입 확대가 필요하고, 현재 진행되는 HACCP 관리시스템 도입 가공공장 설립을 위해서는 개별적 컨설팅 비용지불 및 제한적 용자 지원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음
- 수산가공식품의 위생관리, 환경문제 등을 고려한 차세대형 수산가공공장의 모델 개발과 도입·확산을 위한 “수산가공품 품질고도화 촉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식약청 HACCP 식용 사업장을 위한 수산가공 공장의 공통기준 구축 및 기준의 공개와 비용의 표준화를 통해 실질적 확대가 요구됨

## 3) 수산가공업의 SCM화 추진

- 수산가공업의 주산지 개념이 원료지향적 수산가공업의 입지성격에서 마케팅과 물류지향적 수산가공업으로 변화하고 있음
- 따라서 수산가공품의 원료공급, 가공생산,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공급사슬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시스템 구축
- 수산가공지역진흥을 위한 가공원료의 안정적인 공급확보를 위한 지역원료공급업체와 가공업체 사이의 제휴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임. 이와 함께 유통업체와의 연계 제휴하여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를 즉각 반영하여 신상품 개발, Just in Time 물류망 구축, 통합품질 관리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수산가공업유통구조재편사업” 추진할 필요가 있음.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추진 전략이 요구됨
  - 품목구매 및 수배송 시스템 구축
  - 소규모 가공업체를 위한 재택 유통거래 결제 전산 정보망 구축
  - 대형마트와의 거래를 위해 지역도매시장의 공동 물류유통가공처리장으로 시설 개선 및 활용
  - 상품 보전성 유지를 위한 콜드체인운송수단 도입

#### 4) 정부지원 정책

- 수산가공업 시설개량자금 융자사업 추진
  - 품질위생 고도화를 위한 수산가공공장의 시설개량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현재 약 2,900여개 업체의 시설개선을 점차적으로 추진
- 수산가공원료수매자금 융자사업 추진
  - 수산물의 생산 특성상 연중 원료수매가 어려운 만큼 수산물 원료생산 집중시기의 일시적 가공원료 확보부담 경감과 어업생산자의 가격유지를 위해 원료수매자금지원사업이 필요함
- 가공기술 및 경영 고도화 지원사업을 통한 벤처화 추진
  - 개별 수산가공업체의 가공기술 및 경영고도화는 무리가 있어, 산학연을 연결하는 공동기술개발 및 경영컨설팅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벤처화를 추진

#### 다. 수산 가공벤처 육성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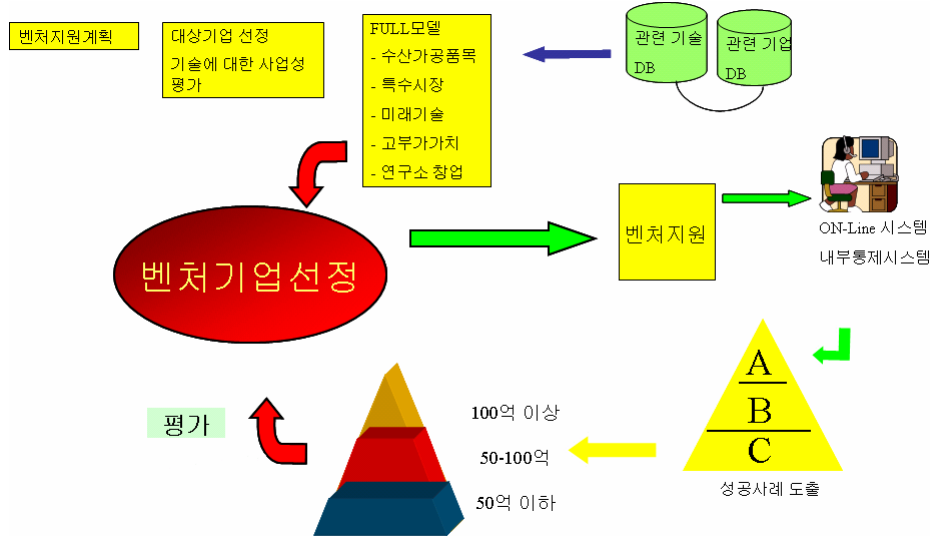
- 수산 가공벤처 추진방향

	추진 방향
수산 벤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성목표 : 벤처 10개소 매년 발굴 지원(10개소×매출목표 20억=200억)</li> <li>○ 해양수산 벤처는 초기단계로 교육을 강화하여 관심을 유도하고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한 후 벤처 지정 및 창업을 지원(한국 해양수산기술진흥원)</li> <li>○ 영어조합법인(986개소)과 신지식어업인(95명)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 및 연구개발 성공업체를 벤처기업으로 육성</li> <li>○ 성장가능성 높은 분야 집중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 신물질·신품종·식음료·의약품, 생명공학 등</li> </ul> </li> </ul>
가공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공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지원으로 원가절감</li> <li>○ 가공공장의 원료 공동 구매, 공동 판매 추진 방안 검토</li> <li>○ 원료수급의 안정화와 소비자 지향 기호도 조사</li> <li>○ 핵가족 및 간편화 추세에 맞춰 소량 다품종 생산체제</li> <li>○ 기술,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여 경영 활성화 도모</li> <li>○ 판매처 다양화에 따라 공격적 마케팅 및 홍보 강화</li> <li>○ 수산물 가공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경쟁력 강화.</li> </ul>
수산 가공 벤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가공기업의 벤처등록과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을 위한 산학연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li> <li>- 기업 인프라를 위한 중소기업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li> <li>- 수산가공산업에 대한 장단기적인 비전을 갖는 우수한 인력 공급</li> </ul> </li> </ul>

자 료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수산벤처·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2006. 12.



○ 수산가공업의 벤처화 방안



○ 수산가공벤처 활성화 방안

- 수산벤처기업지원 포털을 open market으로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벤처기업의 부족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스피드경영과 행정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임
- 수산가공벤처기업 기준과 대상기업 발굴
- 벤처기업지원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공개성과 법적책임)
- 수산가공산업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강화 방안
- 산학연 연결프로그램 운영방법
- 프로젝트금융시스템 도입방법(수산가공벤처 금융회사 설립 → 펀드조성)

○ 수산가공벤처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방안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서 벤처 인정기준으로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 29조에 의한 기술개발 지원사업(해양수산부)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기준에 적합한 신생벤처기업이 수산가공벤처기업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투자여력이 있는 중견기업을 수산가공벤처기업으로 인정하는 특별조항이 필요함
-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이 2006년 설립되어 해양수산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평가의 관리,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등을 담당하기 시작했는데 비록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민간기업처럼 비용센터가 아닌 수익사업개념에서 철저한 사업평가를 통한 정부연구기관으로 자리잡을 필요가 있음

## 라. FTA 추진 국가별 맞춤형 가공유통업의 구조개편 방향

### 1) 일본

#### ○ 가공업

- 한국 수출 전략 상품의 공동 브랜드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가공품의 일본 원산지 강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산 브랜드 고품질 인지도 제고
- IQ제도에 대응하는 수량 조절 전략 - 초고품질 한정 판매 가공품 생산 수출 전략
- 일본 수산물 국제 박람회 참가를 통한 한국산 홍보 전략
- 다량어 가공 수출 등 익일 물류 배송을 전제로 하는 신선 냉장 가공 수산물 생산 수출 전략

#### ○ 유통업

- 수출 수산물 전문 유통 시장 조성을 통한 가격 협상력 강화
- 공동 수출 유통 물류업 지원을 통한 가공비/물류비 경쟁력 강화
- 국제 마케팅 강화 - 유통 물류 채널의 시스템화 및 구조화
- 활어 수출을 확대를 위한 물류 장비의 현대화 사업(현대식 활어차, 냉장 수송차 등)
- 일본 시장내(특정 대형유통업체를 지정) 한국 우수 수산물 전문 판매 코너 설치(한류와 함께 우리 수산물 요리 강좌 홍보 및 판매 전략)

### 2) 미국

#### ○ 수출확대전략

	기존제품	신제품
기존시장	<시장침투전략> •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미국 거주 한국인 교포 시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 • 미국 현지인 중심의 굴 시장 확대 전략	<제품개발전략> • 미국 거주 한국 교포 시장을 타겟으로 수산물 신제품을 출시 판매하는 전략 • 미국 현지인을 위해 수산물 신제품을 생산 수출 판매하는 전략
신시장	<시장개발전략> • 기존 한국 교포에게 제공된 수산물을 미국 현지인을 중심으로 마케팅하는 전략	<다각화전략> • 완전히 신제품을 생산하여 미국 현지인 또는 한국 교포 시장 내의 틈새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 판매하는 전략



### 3) 중국

#### ○ 가공업

- 한국 수출 전략 상품의 공동 브랜드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전복, 해삼, 김, 미역 등 초고품질 한정 판매 양식 가공 수산물 생산 수출 전략
- 양식 가공품의 한국산 브랜드 고품질 인지도 제고
- 중국 수산물 국제 박람회 참가를 통한 한국산 홍보 전략

#### ○ 유통업

- 중국 수출 수산물 전문 유통 무역업체 육성을 통한 수출 시장 확대
- 공동 수출 유통 물류업 지원을 통한 가공비/물류비 경쟁력 강화
- 활어 수출을 확대를 위한 국내 물류의 중국 진입 사업(ex : 활어차, 냉장 수송차 등의 중국 운송)
- 중국 시장 진출 국내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한국 우수 수산물 전문 판매 코너 설치(한류와 함께 우리 수산물 요리 강좌 홍보 및 판매 전략)

## 마. 브랜드 중심의 수산물 소비촉진

### 1) 수산물 소비홍보와 브랜드 전략 세부실천 내용

#### ○ 브랜드 중심의 수산물

- 브랜드의 기능(정의+대표브랜드+세부브랜드)
- 대표브랜드: 기업 CI형태로 해양수산부 공동 브랜드
- 세부브랜드: 해수부내 사업부별, 제품별, 지역별 브랜드
- 브랜드 확산: 사업계획(미션+홍보전략+고객반응 체크+장단기 목표설정+구체적인 실천계획+자원할당+피드백 프로세스 개발)

#### ○ 미션

- 수산물 소비브랜드를 수산물소비로 확대시켜 생산자에게 실질적인 부를 증가시킴

#### ○ 장단기 목표 설정

- 장기목표: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로 육성(브랜드 가치 1조원)
- 단기목표: 스타급 브랜드 선정 및 집중육성(판매액 1억 원 이상)

#### ○ 장단기 목표달성 방법

- 수산물 대표브랜드 발굴과 CI작업(수산물특성+소비자 반응+고유 아이덴티티+디자인+



재질선정)

- 수산물 브랜드 전문 reference site운영(해수부 브랜딩과 브랜드중심의 포털 사이트 운영)
- 공동 브랜드와 세부브랜드 분류체계 형성하여 단일 홍보 채널 육성
- 수산물 인증제, 이력관리 시스템, 지역의 명품브랜드를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 개발
- 수산물 인정 세부브랜드에 대한 분류와 콘텐츠 DB 시스템 구축(pull 모델: 실질적 도움, 등록 유도)
- DB작업의 표준화
- 우수 브랜드 기업에 대한 on-line마케팅(사이버 우수 수산물 전시회 출품기회 제공, 분기별 진행)
- 전문 브랜드 홍보와 판매지원 사이트 아웃소싱

## 2) 漁라 水요일 소비촉진 홍보

- 수산물 대표브랜드 발굴과 CI작업(수산물특성+소비자 반응+고유 아이덴티티+디자인+재질선정)
- 수산물 브랜드 전문 reference site운영(해수부 브랜딩과 브랜드중심의 포털 사이트 운영)
- 공동 브랜드와 세부브랜드 분류체계 형성하여 단일 홍보 채널 육성
- 수산물 인증제, 이력관리 시스템, 지역의 명품브랜드를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 개발
- 수산물 인정 세부브랜드에 대한 분류와 콘텐츠 DB 시스템 구축(pull 모델: 실질적 도움, 등록유도)
- DB작업의 표준화
- 우수 브랜드 기업에 대한 on-line마케팅(사이버 우수 수산물 전시회 출품기회 제공, 분기별 진행)
- 전문 브랜드 홍보와 판매지원 사이트 아웃소싱

## 3) 한국형 수산물 소비특성 개발

- 한국인들의 수산물 소비특성을 연구하면 이런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분석, 수산물 식문화의 스토리 및 역사성을 중심으로 한국형 수산물 소비문화를 새롭게 발굴하고 개발
- 비근한 예로 해양수산부에서 최근에 싱싱회를 새로운 소비 형태로 개발코자 하나 아직 확대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이러한 소비특성이 단기간에 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음



- 장단기적인 특성개발전략과 지속적인 자원의 투입
- 수산물소비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가능한 많이 소비자에게 노출되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

#### 4) 공동브랜드 개발

- 기본방향
  - 한국산 수산물의 청정웰빙 이미지 및 우수수산물 가치 지향
  - 세계시장에서의 한국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수출증대 의지 표현
  - 편향된 이미지 지양, 호감이 가는 브랜드 네이밍 및 디자인
  - 네이밍 및 디자인 후보(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 후 최종안 확정
  - 브랜드개발과 함께 시범사업 대상품목의 품질위생안전 기준 마련
- 개발 개요
  - 사업명칭 : 우수 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 사업기간/주관기관 : 2008. 2~7월(6개월)/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 예산소요 : 200백만원(개발비 1억원, 품위기준 50백만원, 사후관리 50백만원)
  - 사업내용
    - 브랜드 네이밍(brand name), 상징(symbol), 디자인 등 개발
    - 시범사업 대상인 조미 김의 품위기준 마련
    - 공동브랜드 상표 국제 등록 등 사후관리
  - 추진방식 : 사업주관기관에 위탁하여 용역 추진
  - 기대효과 : 공동브랜드 적용 대상품목의 상품 확인 및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파워를 형성시켜 수산물 수출증대 도모

○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한 협조체제 구축

구분	담당업무	비고
관리기관 (해양수산부)	○ 운영위원회 주관 ○ 관련기관 사업수행 관리·감독	※ 운영위원회 - 품목선정 및 사업방향 등
운영기관 (공사 또는 수출입조합)	○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운영총괄 ○ 사업자 선정, 지원 및 사후관리 ○ 품위확인 관리감독 ○ 관련기관간 협력체제 구축·관리 ○ 브랜드사용권 및 ID부여 관리 ○ 공동브랜드 홈페이지 구축·운영	
협조기관 (수검원, 지자체)	○ 품목별 공동브랜드 품위기준 관리 ○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지원 - 품질 및 안전성 교육 및 지도 - 잔류농약검사	○ 잔류농약검사증명서 발급
협력기관 (수협, 조합, 품목별협의회)	○ 공동브랜드 개선 및 발전방향 협의 ○ 품목별 공동브랜드 품위기준 준수지도	
수출업체	○ 사업수행 및 성과보고 ○ 자사제품의 공동브랜드 품위기준 준수	○ 생산이력 공사 통보

사. 원산지 표시제 강화방안

1) 정확한 원산지 표시 및 대상 범위 확대

- 외식수산물 및 즉석수산가공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적용 방안
- 이식용 수산물에 대한 관리 규정 마련 방안
  - 현재 미꾸라지, 실뱀장어와 같은 이식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비식용 이식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관리 규정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식용 수입 수산물에 대한 어종별 적정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소, 돼지의 원산지 규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기준에 따르고 있음

2) 적발 확률을 높이는 방안

- 농산물 품질 관리법 제12조 (표시 정지 등의 처분)의 확대 개정
  - 농산물 품질 관리법과 제3장 원산지 등의 표시와 같이 독립된 원산지 관리 규정을 마련
  - 농산물품질관리법과 같이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원산지 표시 조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2원화 체계를 구축



- 수산물에 있어서도 시도지사의 강력한 단속 체계를 구축
- 신고포장제의 적극 활용
  - 신고포장제의 적극적인 유도로 원산지 위반에 따른 적발 확률의 제고와 이에 따른 부정이익 획득에 대한 위험요소의 인식제고
- 단속 및 과태료 관리체계의 단순화
  - 위반 적발시 시도지사 경유가 아닌 시장, 군수에게 바로 통보하고 처분 의뢰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 과학적 원산지 판별기준 마련
  - 축산물과 같이 유전자 감식에 따른 과학적 원산지 판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원산지 표시 단속 전담반제도의 도입
  - (가칭) 원산지 특별사법 경찰관제 시행
- 위장판매에 대한 단속 규정 마련
  - 미표시와 함께 구두로 원산지를 위장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단속 조항 마련

### 3) 부정이익 환수 및 과태료 상향 조정 방안

- 현재 부과되는 과태료가 미표시의 경우 건당 평균 61,000원(2006년) 수준으로 지극히 낮음
  - 이러한 사실은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강력한 단속과 부정 이익 환수 및 그 이상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 수산물의 경우 부정 판매를 추가 가공비용이 제로인 미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06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의 98.5%가 미표시 위반임

### 4) 국산수산물의 경쟁력 강화 방안

- WTO의 원산지 규정에서는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고, 각종 무역정책수단에 사용되는 법적 행정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아직 수산물에 대해서는 미흡의된 상태이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연안에서 12해리 내에 있는 영해에서 잡은 수산물은 연안국에, 200해리 밖의 공해에서 잡은 수산물은 선박기국에 원산지를 부여하는데 동의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자연산 수산물의 원산지는 어선의 국적(flag)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어획된 수산물의 경우도 어선의 국적에 의해 원산지를 부여하여 자국 어업생산자의 경쟁력 강화라는 무역정책정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현행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방안인 3원화 체계(국산, 원양, 수입)를 2원화 체계(국산, 수입)로 재편하여 국내 원양어업생산자의 어획물은 국산(원양)으로 표기함에 따라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개정안

(개정안)시행령 제18조 (원산지 표시사항 및 방법 등)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산수산물중 제2호의 수산물을 제외한 수산물은 “국산”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국내 경제수역 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국산(연근해산)”과 같이 표시하거나 그 수산물을 생산한 시·군명 또는 해역명을 표시할 수 있다. 국산수산물 중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어획한 수산물은 “국산(원양산)”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역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 아. 산지유통시설 현황 및 육성방안

### 1) 산지유통시설 효율성 제고 방안

- 효율성점수 평가결과 최하위그룹( $0 \leq E \leq 0.19$ )인 9개 위(공)판장에 대한 경영혁신 권고안
  - 9개 위(공)판장 가운데 경인북부(0.134), 신희(0.136)의 경우 순수 기술적 효율성의 점수는 1로 나타나 비효율성의 원인이 모두 규모의 비효율성에 기인하고 경영활동의 특성도 규모에 대한 수확 체증의 형태를 보이므로 우선적으로 구조재편의 대상이 됨
  - 나머지 7개소 가운데 6개소인 진동(0.046), 부안(0.103), 경기남부(0.14), 영광(0.167), 양양(0.168), 고성(0.159)의 순으로 비효율성의 원인이 규모의 비효율성에 우선하고 있으므로 구조재편의 가능성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이들 역시 모두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의 구간에서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도 참조)
- 효율성점수 평가결과 차하위그룹( $0.2 \leq E \leq 0.39$ )인 18개 위(공)판장에 대한 경영혁신 권고안
  - 태안남면(0.217), 제3,4구(0.226), 사천(0.229), 서천(0.251), 영흥(0.286), 나로도(0.286), 안면(0.318)의 7개소의 경우 최하위그룹의 경인북부나 신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효율성의 원인이 100% 규모의 비효율성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인 구조재편의 대상으로 고려하여야만 함
  - 진해(0.264), 금일(0.371)의 2개소의 경우도 비효율성의 원인이 순수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규모의 비효율성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므로 구조재편을 고려할 수도 있다.
  - 강진(0.302), 포항(0.352) 인천(0.37) 울산(0.372), 제1,2구(0.368), 웅진(0.281), 울릉(0.337), 고흥(0.25), 거제(0.368)의 나머지 9개소의 경우는 비효율성의 원인이 규모의 측면보다는 투입요소의 결합상에 나타나는 순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비효율성의 더욱 큰 것



으로 분석되었으므로 구조재편을 통한 효율성의 제고보다는 기술적인 경영혁신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2) 산지 위판장 다기능 역할 방안

### ○ 수산물관광기능

- 실질적인 산지위판장의 기본 유통기능(양륙-진열-경매-분산)을 수행하기 어려운 소규모 위판장은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수산물관광기능과 연계하여 아침/주말수산물시장을 열어 지역 수산물의 판매, 홍보를 담당하게 하면서 지역수산물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또한 수산 체험(갯벌체험, 스킨스쿠버, 다이빙 등)을 위한 준비장으로 활용하거나 체험 후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장으로서의 기능 수행도 검토할 수 있음

### ○ 수산물류기지기능

- 산지위판장의 기본 기능은 어업자 생산물의 유통기능으로 현실적으로 타지역/수입수산물의 반입 및 경매 등은 어렵다. 오늘날 대형할인점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소매점의 구매형태는 산지 구매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산지시장으로서 역할하는 산지위판장의 개방화 요구는 높은 게 현실임
- 이러한 수요 측의 요구를 반영하여 산지위판장을 수산물류기지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이는 경매와 같은 가격/거래기능을 제외한 타지역수산물, 수입수산물의 상품구색기능, 선별, 재포장 등과 같은 유통 가공 기능, 배송 및 운송기능 등을 수행하는 산지물류기지로서 활용 가능함
- 여기에서 창출되는 부가 사업(예를 들면 선별, 포장 가공업 등)은 지역어업인이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 지역수산물도매시장화 방안

- 산지위판장의 종합 다기능화
- 지금까지 어업자의 생산물 공동판매기능을 수행하여 온 산지위판장 기능을 보다 종합적이고 다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도매시장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지역도매시장화란 수협법상에서 이루어지는 수산물판매사업장으로서의 산지위판장을 농안법(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의 도매시장화를 추진하는 의미임
- 이를 통하여 지역도매시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곳에서는 산지위판장의 도매시장화를 추진함에 따라 지역수산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타지역수산물의 반입 및 거래, 수입수산물의 반입 및 거래 등이 가능하게 되면서 산지위판장의 실질적인 수산물종합시장화

가 가능하게 될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산지위판장의 도매시장화 전환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신중히 검토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자. 생산자단체 소매 유통시설구축 및 지원

- 중앙회 바다마트와 회원조합 바다마트 간의 교류가 전혀 없어, 공동기획, 상품구매, 공동판매 등과 같은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바다마트 기획팀 구성(중앙회+회원조합)
  - 공동수산상품기획, 공동구매, 공동판매(카탈로그, 우편, 인터넷 등), 공동배송, 공동점포관리 등을 추진
  - 슈퍼마켓 성격의 바다마트와 특산물 판매 바다마트의 구분 전략을 수립, 추진
- 산지직거래 비중 확대
  - 산지직거래 비중을 확대하여 가격(물류비 상승)보다는 선도, 품질 경쟁력을 강화
- 공동브랜드 판촉 활동 촉진
  - 바다애찬 브랜드의 촉진 활동을 통해 수협 브랜드 가치의 제고
- 수협경제사업 중 유통사업단의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
  - 신유통물류기법의 습득 및 정신 고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진행함
  - 내부 승진 등의 인사에 반영

### 차. 수산물 판매점 및 음식점 인증제도

- 수산물 판매업 및 음식점의 인증제 대상 및 추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산물도매업	활어도매업	나머지 수산물도매업 검토	나머지 수산물도매업 검토	나머지 수산물도매업 검토
수산물소매업	종합소매점(대형마트) 내의 수산물판매코너	체인 형태의 슈퍼마켓 내의 수산물 판매코너	활어소매점	수산가공품소매점, 젓갈소매점, 신선 냉장 냉동수산물 소매점
수산물음식점업	횃집	일식횃집	생선초밥집	확대 적용 검토



## 카. 수산물 직거래 시장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천계획

### ○ 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발전방안

세부 항목	현황	발전 방안	비고
취급품목의 다양화	대부분의 수산물 쇼핑몰이 취급하고 있는 품목은 배송과 취급이 편리한 건어물, 반건조식품, 젓갈류, 수산가공식품등	생물판매(생낙지, 생문어, 생태, 생고등어등), 활어판매(광어, 우럭, 도미, 농어 등), 활패류(활꽃게, 대하, 낙지, 소라 등) 등으로 취급상품을 다양화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 넓어짐
배송망 확보와 배송수단의 다양화	대부분이 택배회사를 통해 배송, 고객에게 상품의 배달현황을 알려줄 수 있으며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신속한 배달이 가능	취급상품의 종류와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택배회사, 우체국, 자체배송, 산지직송 시 소요비용을 비교하여 최적의 배송망 확보	생물, 활어, 활패류 등으로 취급품목이 다양화된다면 냉장, 냉동차 활어차등의 다양한 배송수단 필요
수산물의 품질유지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되므로 웹사이트 상에서 제공되는 품질과 실제 수령했을 때의 품질의 차이가 발생	소비자 불신이 수산물 전체로 이어져 구매 욕구를 창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에 제품의 품질유지에 엄격한 기준	생산자 배상 책임 정책, 품질검사 제도 마련(인증, 이력관리 강화)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전략수립	종합쇼핑몰에 비해서 수산물쇼핑몰은 상품소개와 간단한 수산상식 그리고 계시관운영등 대체로 단순하고 획일적으로 운영	수산물 쇼핑몰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어 단순히 물건만 사고파는 전시기능의 차원을 넘어 수산물소비문화 창조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로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어 모아 앞으로 더욱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고객관리 강화, 홍보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DB를 구축, 일대일 마케팅과 회원제 도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생산자, 유통기한 및 보관 방법 등 표시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재 구매 유도	수산물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인식 향상
정보시스템의 활용	정부주도에 의한 민간 참여방식으로 기술비용과 시스템의 낙후성 (투자개념보다 비용으로 작용, 농업부분 등 답습하여 후발시스템)	전문가 집단을 통한 시스템 아웃소싱, 선진 정보시스템 회사 지분 인수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예 : 인터넷 경매, 무선정보)	선도적인 신기술 도입으로 새로운 서비스제공 (생산자, 중간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



○ 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략

형태	주요 현황	수산물 전자상거래 적용 방안	비고
B2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 전시기능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으며, 또한 소규모 위주로 판매 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어렵다.</li> <li>• 접근도가 떨어지고 상품 및 서비스정보 부족, 교환환불에 대한 신뢰감 부족</li> </ul>	<p>개별적으로 구축된 쇼핑몰을 통합할 수 있는 e-Marketplace 구축 : 검정을 마친 제품에 대하여 자동등록 기능 추가</p>	<p>기존 쇼핑몰의 제품DB를 자동으로 주요 오픈마켓에 등록되도록 기술지원<sup>1)</sup></p>
B2C (물인물) (물온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인물(Mall in Mall)은 종합쇼핑몰에 입점한 소규모 서브 쇼핑몰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단일품목의 상품을 취급하며 오픈마켓플레이스로 알려져 있음</li> <li>• 물인물의 유행으로 소규모 물인물 쇼핑몰의 운영자가 많이 생기고 있으며 G마켓, GSeStore 같은 물인물만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쇼핑몰도 생김.</li> <li>• 물온물(Mall on Mall)은 여러 종합쇼핑몰의 상품을 한 곳에서 매장별, 상품군별로 둘러보며 쇼핑할 수 있는 거대한 메타쇼핑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마켓, 옥션에 수산물 전문종합쇼핑몰을 만들어 우수 수산물 쇼핑몰을 입점 시킴.</li> <li>참고) 롯데닷컴의 유기농 전문매장 ‘이그린마트’</li> <li>• G마켓과 옥션내 2001아울렛과 홈에버의 인테리어 전문매장 ‘모던하우스’</li> </ul>	<p>인터파크, 롯데닷컴, 엠플, GS이숍, G마켓, 옥션 등 주요 오픈마켓에 물인물, 물온물형태로 수산물 전문매장을 입점 시켜, 소비자의 선택과 가격비교가 편리하게 서비스 가능</p>
B2B	<p>상품공급 능력을 갖춘 생산자단체와 대형 유통업체가 참여, 수산물 전문 정보, 관련 콘텐츠 제공하고 공동 마케팅 및 홍보하며, 수산물 수출입업무, 경매방식을 도입 수산물 거래 활성화</p>	<p>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수요자가 참가, SCM과의 연계, 인프라 구축 : e-Marketplace</p>	<p>유통단계 단순화, 대규모 : 수송비, 냉동비 등 유통비용 절감(가격경쟁력 확보)</p>
B2B2C	<p>대규모 수산물수요업체가 자체 조달을 전자상거래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후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직접 판매와 배송</p>	<p>수산물생산과 소비구조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과 조직을 통해 경영</p>	<p>공공의 성격을 띤 민간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함.</p>

주 : 1)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5장의 전문기업 아웃소싱에서 설명



○ 수산물 전자상거래 아웃소싱과 물류

구분	제3자, 4자 전자상거래 아웃소싱	3자물류	4자물류
서비스 범위	수산물 오픈 마켓의 운영과 e-Marketplace & SCM 서비스	창고나 수송 등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	SCM, 컨설팅, 물류네트워크 개선 등 물류 전반을 서비스
특징	3자, 4자 물류내용과 동일 수산물 전문가 집단의 참여로 특화된 서비스 제공, 기존 마켓과 차별화해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	특정부문의 비용절감에 치중할 뿐 공급체인 전반의 지속적인 비용절감 및 효율증진에는 한계가 있고 IT, 보관, 운송 등 물류활동의 최적조합에 의한 통합서비스 제공	제3자물류에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물류회사, 컨설팅회사, IT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물류비 절감과 서비스 증대에 주력하는 전략. 전체적인 공급연쇄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기업의 경영자원, 능력, 기술을 관리하고 결합하는 공급연계 통합
발전 방향	SCM형태로 발전해서, 수산물 규격화 제품화하여 소비자 신뢰성을 확보함.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수산업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현실화시킴. 수산물 전자상거래 사업모델, 생산과 소비에 대한 통합적인 시스템을 세계에 수출함. 브랜드파워를 유지하며, 글로벌한 수산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감.	하주기업이 고객서비스의 향상, 물류관련비용의 절감, 그리고 물류활동에 대한 운영효율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공급체인 (supply chain)의 전체 혹은 일부를 특정 물류전문업체에게 위탁하는 고도의 물류서비스. (outsourc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점유율이 낮고, 물류가 핵심기능이 아니며, 여러 부문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발전 가능성이 많음</li> <li>- 인터넷에서 물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임</li> <li>- SCM의 아웃소싱이다. 기술발전 및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라 SCM의 통합을 위해 4자물류가 등장(위탁자의 경영자원 및 기술과 수탁자의 경영자원, 능력, 기술 등을 결합하여 공급체인 전반을 관리)</li> </ul>

○ 수산물 전자상거래를 위한 CSF(critical success factor)

	현황	개선방안	비고
수산정보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정부 및 민간의 정보화 마인드 부족</li> <li>- 수산정보화 전문 인력 및 운영요원 절대 부족</li> <li>- 수산정보공유(공동 활용)체계 미흡</li> <li>- 수산정보시스템의 기술적 결함, 시스템간의 정보연계 미 구축으로 수산정보 활용 저조</li> <li>- 원시자료 제공자와의 협력체계 미흡으로 다양한 수산정보제공의 한계</li> <li>- 민간위탁 정보화사업의 경우, 운영비용 과다발생</li> <li>- 수산정보 생산주체가 다양하여 통신망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복투자 우려와 제공되는 상이한 정보로 수산정보 신뢰성 문제</li> </ul>	<p>수산정보를 통합하여 관리·운영하는 전문 전담조직을 설립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제공되고 있는 수산정보를 중복투자 없이 타 기관에서도 활용 가능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고 수산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접속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운영 → 수산물유통정보화 사업 강화, 수협의 수산물유통정보 사이트 활성화</p>	<p>농업부분보다 10년 정도 뒤져있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 어촌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 개발(공동구매, 콘텐츠개발, 교육지원금). 기업 사회참여지원(KT, SK 등의 특활 활동)</p>
수산물의 단위 화와 규격화 추진	<p>어종별, 상품속성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부피와 중량이 크고 무거우며, 부패하기 쉬운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수산물의 규격화·표준화가 어려운 실정</p>	<p>산지생산자, 수협, 도매시장법인, 도소매업자간의 거래단위를 단위 화 및 규격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통일된 표준규격을 규정</p>	<p>정부의 정책 집행의지 요구</p>
수산물 물류표준화와 물류시스템 구축	<p>수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와 관련된 기기, 용기, 설비를 규격화 기계화와 단위화물적재시스템(ULS: Unit Load System)에 맞는 장비 시설을 보급되지 않아 소비자 구매단가가 일반유통채널과 비슷함</p>	<p>산지에서부터 파렛트 적재, 하역기계화를 할 수 있도록 일관수송체계 구축 향운노조의 독점 노무 공급에 따른 경영 수익원 상실 및 물류현대화에 따른 편익 상쇄의 불합리성</p>	<p>전자상거래 확대(소비자 구매단가 하락)</p>
수산물품질인증과 원산지 표시	<p>거래상품에 대해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품질과 원산지에 대한 신뢰부족(부패하기 쉬워 신선도 유지어려움) 수입수산물도 많이 유통</p>	<p>단계별로 진행(소비자의 구매원가에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술개발)</p>	<p>제품에 대한 고객의 신뢰성 제고</p>
유통전문가의 육성	<p>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이 대체로 고령화이며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점차 감소 추세</p>	<p>수산물의 상품화 개발 및 마케팅활동과 전자상거래를 이해하는 유통전문가 육성</p>	<p>어업후계자 교육, 수산 벤처대학운영</p>
정보화 교육	<p>어촌의 정보인프라 구축과 어업인 정보화 교육, 전자상거래, 응용서비스의 보급이 적절히 구현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부재</p>	<p>수산물유통정보 사이트</p>	<p>사용하지 쉬운 시스템개발 보급</p>



# 제 1 장

##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절 연구방법 및 연구 추진체계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시장개방 확대, 어장축소, 수산자원감소 및 고유가 등으로 어업소득 및 경영기반의 약화에 따른 탈어업·탈어촌 현상이 심화되고, 수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향후 WTO 및 FTA 협상 타결 등 시장개방의 확대로 수산물 관세가 대폭 인하되고 수산보조금이 감축됨으로써 우리나라 수산업과 어촌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장개방의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 하에서 어업인·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수산업 경영을 안정시키고,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및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국내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WTO/FTA 등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3차(3개년)에 걸쳐 국내 대책 마련의 계획을 세우고 2006년도에 ‘WTO/FTA체결에 따른 수산업·어촌 국내대책 수립’(1차년도)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1차년도의 종합적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보다 심화된 세부실천 방안으로서 국내대책(안)마련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본 연구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WTO/FTA 협상에 대비하여 수산업 자생력확보를 위한 어업인·어촌 지원대책 세부실천 방안 마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1차년도 연구에서 어업인·어촌 지원대책으로 제안된 수산보전제, 수산업·어촌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확산방안 등을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동시에 수산가공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 수산벤처 활성화 전략,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

그리고 동 연구의 결과는 이미 수립되어 있는 『수산업·어촌종합대책』을 수정·보완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 추진체계

### 1.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원활히 수행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관련 분야에 관한 기존 연구보고서 및 논문 등의 문헌조사를 통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둘째,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경험적 자료를 축적한다.

셋째, 필요시 거시적 및 미시적인 분석과 각종의 계량 경제적 분석 방법(econometric methods)을 활용한다.

넷째, 연구 중 선행연구가 풍부한 과제는 이를 토대로 연구를 추진하되, 과제의 특성상 새로운 개념 도출 등이 필요한 경우는 사례 분석 등을 통한 개념화 및 방법론 도출과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

다섯째, 실태조사 실시 및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여섯째, 자문회의를 통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다.

일곱째,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업무 담당자와 연구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전에 각 사안별 의견조율을 해 두고자 한다.

### 2. 연구 추진전략

연구내용이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제시된 5개 세부 과제는 서로 관련성이 적은 독립된 과제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연구기관들과 공동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WTO/FTA 어업지원 대책 관련 주요 과제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는데 1차년도 연구기관이며, 정부정책개발 및 지원 등에 전문연구기관인 해양수산개발원이 5개 세부과제 중 4개 과제를 담당한다. 나머지 1개 과제인 수산물유통 및 가공분야 과제는 이 분야의 연구실적이 많은 전문연구기관인 부경대학교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그리고 연구결과의 활용 및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등은 (주)씨엔시스템이 맡도록 한다.



이와 같은 공동 연구기관의 구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진 업무협의회’를 상설 운영하도록 한다. 이 연구진 업무협의회는 KMI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진, 해양수산부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또한 제시된 과제가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수용하고 분석하여 정책 방안을 효율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별로 전문가를 선정하여 자문을 수시로 받도록 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 과제의 성격상 정책 수혜대상자가 광범위하므로 필요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어업인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2회 정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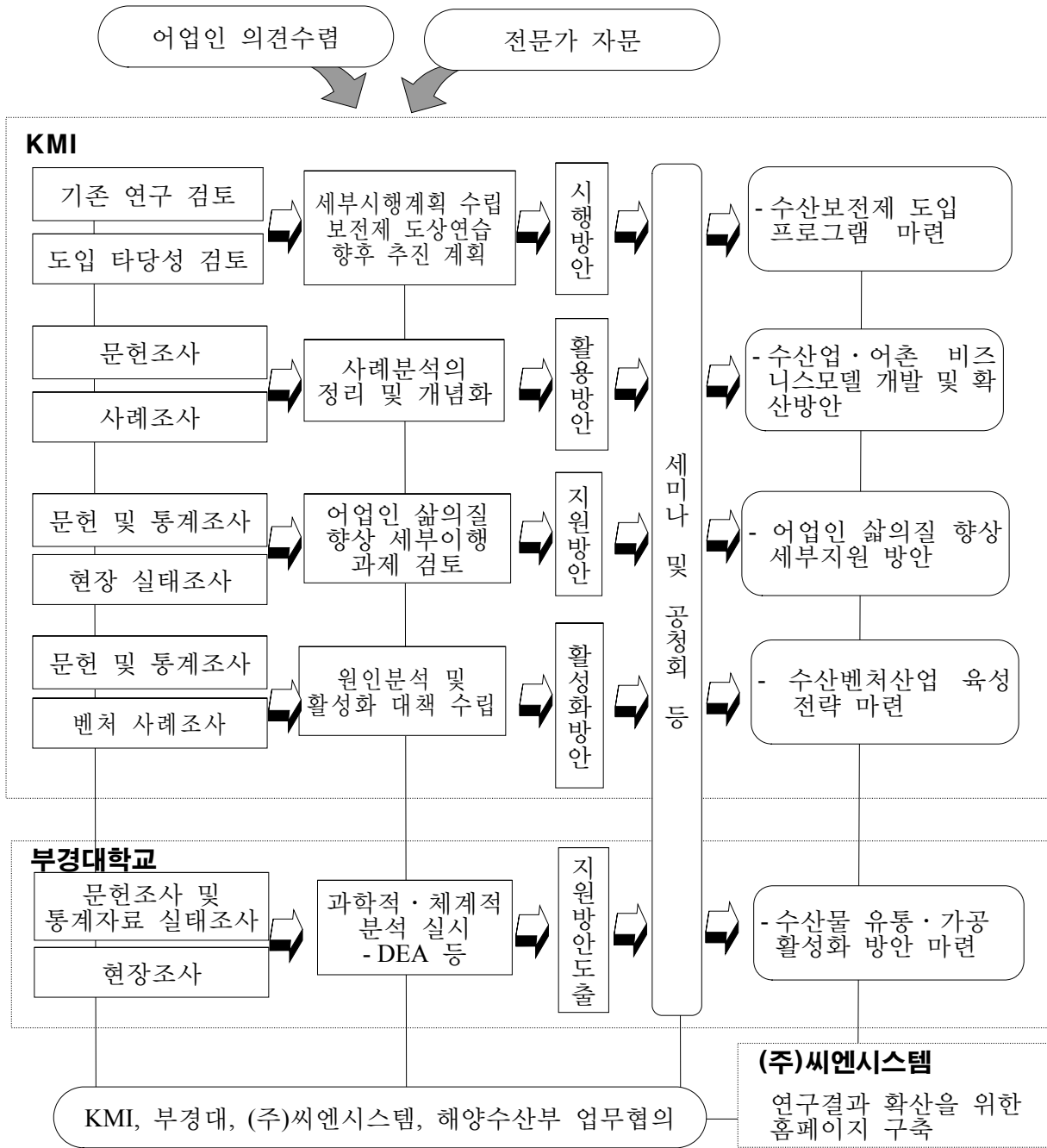
### 3. 연구 추진체계

WTO/DDA 및 FTA 협상 타결 시 실질적으로 어업인·어촌 지원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5개의 세부 과제로 구분하여 과제별 추진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과제의 연구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

수산보전제 도입계획 마련, 수산업·어촌비즈니스 모델 개발·보급, 수산벤처사업 육성 전략 및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은 최근 이에 대한 연구 경험을 광범위하게 확보하고 있는 주관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수행토록 한다.

그리고 수산가공 및 벤처산업 육성 과제와 유통체계 발전방안 과제 등에 대해서는 부경대학교의 관련 분야 전문가 그룹이 추진하도록 한다. 각 과제별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진 업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연구 방향을 협의하도록 한다. 또한 세부 추진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어업인 등 정책수혜 대상자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한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어업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연구에 반영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어업인·어촌 지원 대책으로 연계되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 대책을 수립·추진토록 한다.



[그림 1-2-1] 연구추진 체계도

#### 4. 연구기관별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용역은 주관연구기관으로 해양수산개발원과 공동연구기관 부경대학 그리고 (주)씨엔시스템과의 공동연구로 추진되며, 각 연구기관별 주요 연구를 정리하여 제시해보면 [표 1-2-1]과 같다.

[표 1-2-1] 연구기관별 주요 연구내용

주요 연구 내용	세부 연구 내용	기관별 업무분담
수산보전제 도입 세부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율적 수산보전제 도입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입의 필요성, 타당성 검토</li> <li>- 국내외 도입·운영사례 분석 및 시사점</li> <li>- 도입 기본방향</li> </ul> </li> <li>○ 수산보전제별 세부시행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보전제별 도입 프로그램 마련 (근거규정검토, 소요예산 및 예산확보 방안 등)</li> <li>- 우선 도입가능한 보전제 도상연습 실시</li> <li>-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li> </ul> </li> <li>○ 향후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 실시 및 단계별 추진 계획</li> </ul> </li> </ul>	KMI
수산업·어촌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확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업·어촌 고부가가치 창출 사례 분석</li> <li>○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화</li> <li>○ 유형화된 비즈니스 모델 현장 활용 시스템 구축</li> </ul>	KMI
수산벤처산업 활성화 전략과 육성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벤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활성화의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li> </ul> </li> <li>○ 수산벤처 활성화 대책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과제 도출</li> <li>- 지원 및 제도개선</li> </ul> </li> </ul>	KMI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지원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촌지역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 중에 있는 어업인삶의질향상 및 지역개발사업을 평가</li> <li>- 어업인과 농업인지원, 어촌과 농촌 지역개발사업 비교 검토</li> <li>- 어촌어업인의 특성이 반영된 새로운 지원과제 발굴</li> </ul> </li> </ul>	KMI
수산가공 및 유통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수산물 부가가치 제고</li> <li>○ 수산물 소비촉진으로 내수기반 구축</li> <li>○ 브랜드 중심의 고품질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li> </ul>	부경대
의견수렴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인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li> </ul>	KMI 부경대
홈페이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 구축</li> </ul>	(주)씨엔시스템



## 제 2 장

# 수산보전제 도입 세부방안 검토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수산보전제 도입의 타당성
제 3 절	외국의 수산보전제 사례연구
제 4 절	수산보전제 세부시행방안 검토
제 5 절	수산보전제 시행 관련 법제도 검토
제 6 절	수산보전제 DB화 방안 검토
제 7 절	수산보전제 추진방향과 로드맵
제 8 절	수산보전제별 세부사업 시행(안)





## 제1절 개 요

수산물 시장개방이 진전됨에 따라 경쟁력이 취약한 수산업 및 어촌은 상대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은 적고 오히려 소득정체 또는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그 동안 수산보조금에 의해 어느 정도 어업경영을 유지해 올 수 있었으나 자원, 시장 또는 무역왜곡을 초래하는 수산보조금 등은 향후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어가 및 어업경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산업 및 어촌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어가 또는 관련 단체에 국가재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수산보전제를 도입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지되는 수산보조금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수산보전제는 향후 유력한 수단 중의 하나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수산보전제는 농업분야의 직접지불제와 유사한 것으로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도중에 수산업과 어촌의 특징과 실정에 맞게 그 명칭을 수산보전제로 새로이 명명하였다. 농업분야에서는 직접지불제를 이미 1997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착오의 개선 및 예산확대 등을 통해 직접지불제를 농업의 주요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수산분야에서는 농업에 비해 10년이라는 뒤처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산보전제가 도입·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개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동일한 1차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어촌·어업인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형평성 문제와 어업인의 불만 등이 제기되면서 수산분야에 있어 직접지불에 의한 수산보전제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는 수산보전제에 대한 연구가 작년에 이어 계속되었는데 올해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사전검토가 본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TO/FTA 체결에 따른 수산업·어촌 국내 대책 수립(2006, 1차연구)’에서 제기된 여러 수산보전제에 대하여 추진 가능성 중심으로 검토하고, 새로이 발굴한 수산보전제 등을 추가하여 7개의 수산보전제에 대하여 세부시행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7개의 수산보전제는 조건불리지역, 친환경부표지원, 재해예방, 고령어가은퇴, 휴어 및 어장휴식 등이다.

이들 7개 수산보전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검토는 예를 들면 수산보전제별로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기준, 지원수준 및 시행절차 등이다. 동시에 이의 시행을 위한 법제도 검토 그리고 향후 수산보전제를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방향과 실천계획인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약하여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세부시행(안)을 첨부해 두었는데 향후 정책적으로 추진할 때 이 자료를 중심으로 수정·보완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수산보전제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검토는 현시점에서 여러 가정 및 전제하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소요예산은 추정일 뿐이다. 실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본 연구를 토대로 추가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시행 전의 연구라는 점에서 나타난 한계점 및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해 기본원칙 및 기준 등 본 연구에서 확정짓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사항으로 정리하여 제시해 두었다. 아울러 수산보전제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수산보전제 DB화 시행방안도 검토하였는데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가 추진되는 도중에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 및 친환경부표지원 수산보전제의 사업예산이 확보되는 등 수산분야에서도 드디어 직접지불의 수산보전제가 도입·시행되게 되었다. 이 연구를 계기로 수산보전제가 WTO/FTA 체결에 따른 수산업·어촌 국내 대책의 주요 정책으로 확대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 제2절 수산보전제 도입의 타당성

### 1. 수산보전제 도입 필요성

2001년부터 시작된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의 결과에 따라 기존의 수산보조금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허용가능한 보조금과 금지보조금의 분류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무역 및 시장왜곡 그리고 자원감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산보조금은 감축 또는 철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보조금 중에는 감축 및 철폐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조금이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수산업 경영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수산보조금 정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새로운 수산보조금 정책수단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직접지불(Direct Payment)의 형태를 띠고 있는 수산보전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직접지불에 의한 보조금이 기존의 가격지지 수단과 달리 소비자가 아닌 납세자(정부재정)로부터 생산자로 직접 소득을 이전시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즉, 다른 보조금 정책수단에 비해 자원배분을 최대한 왜곡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어 WTO 세계 수산업 개혁(시장개방 및 자유경쟁)을 위한 시장지향성 목표에 잘 부합되는 정책수단이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산보전제의 특징인 직접지불에 대해 살펴보면, 이는 정부가 재정자금을 교부하여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는 기존의 가격정책이나 생산기반에 대한 지원, 기술 개발 및 보급과 같이 지원의 효과가 간접적이거나 집단적이 아니라 특정 그룹에 속하는 어업인 개개인에 대한 소득보조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산보전제는 시장에 대한 정책의 중립과 함께 어업인들의 소득을 지지하는 정책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단어로는 직접소득지지(direct income support), 직접소득지불(direct incomes), 디커플링(decoupling),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지지(decoupled income support) 등이 있는데 국가나 지역에 따라서 이들 유사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직접지불제는 주로 외국의 농업부문에서 많이 활용되었는데,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OECD에서 가격지지 중심의 농정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 중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되었고,<sup>1)</sup> WTO 체제에서 농정 개혁의 대안으로 인정되었다. 우리나라 농업부

1) 1987년 5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 시장 및 무역을 왜곡하는 농업보조를 감축하여 생산 중심에서 시장원칙 중심의 농업정책으로 개혁하기로 결정함. 이 선언에서 회원 국가는 농민에 대한 소득지지를 가격보장이나 생산



문의 경우도 2001년부터 WTO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에 따라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직접지불제에는 생산중립적 소득보장, 조건불리 지역 지원, 환경보전 지원, 소득보험과 소득안정화 계획, 자연재해 구호, 탈농 및 휴경 지원, 구조조정 투자지원과 기타 생산자에 대한 직접보조 등이 있다.<sup>2)</sup>

OECD(1994)에 따르면 직접지불제의 일반적 특징은 첫째, 납세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 둘째, 지불금액은 원칙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 셋째, 직접지불이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라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순수한 직접소득지지를 ‘공공재정으로 특정어가 또는 농가집단에 제공하는 화폐적 소득이전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생산이나 생산요소와 연계되지 않으며, 보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규정도 없는 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정책적 적용은 특정품목에 대한 가격지지나 생산 또는 생산요소와 연계된 경우가 많아서 경제적으로 생산, 무역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적은 방식으로 지원되는 생산자 보조를 직접소득지지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직접지불제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 농업부문의 경우 이러한 직접지불을 적용할 수 있는 조성분야로서는 구조조정 프로그램, 농업의 소득 안정화계획, 재해복구시책, 최저소득보장을 위한 지불, 환경재에 대한 직접지불제<sup>3)</sup> 등을 들고 있다.

특히 농업부문에서 활발하게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직접지불제를 벤치마킹하여 직접

과 연계된 조치가 아닌 직접적인 소득지지 형태로 실시하기로 합의함

- 2) UR 농업협정문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분류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광의의 직접지불과 간접보조로 구분됨. UR에서 허용하는 직접지불은 생산중립적 소득보조, 재해보상지원, 조건불리지역 지원, 환경농업 지원 등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것임. 예외적으로 생산제한 하의 직접지불과 개도국의 농업투자를 허용하고 있음. 또한 가격지지, 투입재 보조 등 일반적 소득보조는 감축대상이며, 간접보조 중 연구, 지도, 식량안보를 위한 비축제도와 같이 정부의 일반서비스 정책에 대한 보조는 감축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음

보조형태	분류	관련 규정	관련 정책	비고
광의의 직접지불	허용대상 (협의의 직접지불)	부속서 2의 5~13항 (Green Box)	· 생산중립적 소득보조 · 재해보상 지원 · 이탈농 지원 · 조건 불리지역 지원 · 환경농업 지원 등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접지불 (관련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6조 5항 (Blue Box) 6조 2항	· 생산제한 하의 직접지불 · 개도국의 농업투자	EU의 보상직불제 농업 및 농촌 개발투자
	감축대상	6조 1항 (Amber Box)	· 투입재보조 등 일반적 소득보조	최소허용보조금(de-minimis)비율 내에서의 보조허용(6조 4항)
간접 보조	감축대상	6조 1항	· 가격지지 등	
	허용대상	부속서 2의 2~3항	· 연구, 지도 등 일반서비스 · 식량안보 비축제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5)

지불이라는 특징을 살리고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산부문에서는 그 명칭을 수산보전제라 한다. 수산보전제<sup>4)</sup>를 크게 4가지 측면 즉 시장 지향적 수산정책으로의 전환, 외부경제효과에 대한 보상, 식량안보의 유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어업경영의 이행 촉진 등에 있어 그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 가. 시장 지향적 수산정책으로의 전환

WTO, OECD, FAO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수산보조금 제도로 인해 유발되는 무역 및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메커니즘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경험적으로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수산물의 가격이나 생산요소에 대한 보조금,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 등은 시장기능을 왜곡시켜 제한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시킨다는 것이 경제적 논리이다. 그런데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중에서도 지불(부과) 방식에 따라서 효율성의 손실을 절감시킬 수 있다. ‘시장 지향적’ 방향이란 이처럼 배분적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정책과 제도의 도입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위 지속가능한 경쟁우위 전략으로서의 적극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시장주의를 지향하는 WTO 출범과 함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수산부문도 시장지향적인 수산정책을 사전에 구축해 두는 것이 향후 보조금 협상에 참여하는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산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수산물 생산 및 거래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금지보조금 혹은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조치가능보조금 등을 단계적으로 감축 혹은 철폐해 나감으로써 수산물시장 메커니즘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시장주의에 부합하는 보조금이 허용가능성이 높은 보조금으로 직접지불 형태의 수산보전제가 이에 해당된다. 이에 기존의 보조금 중 시장을 왜곡하는 보조금을 직접지불의 수산보전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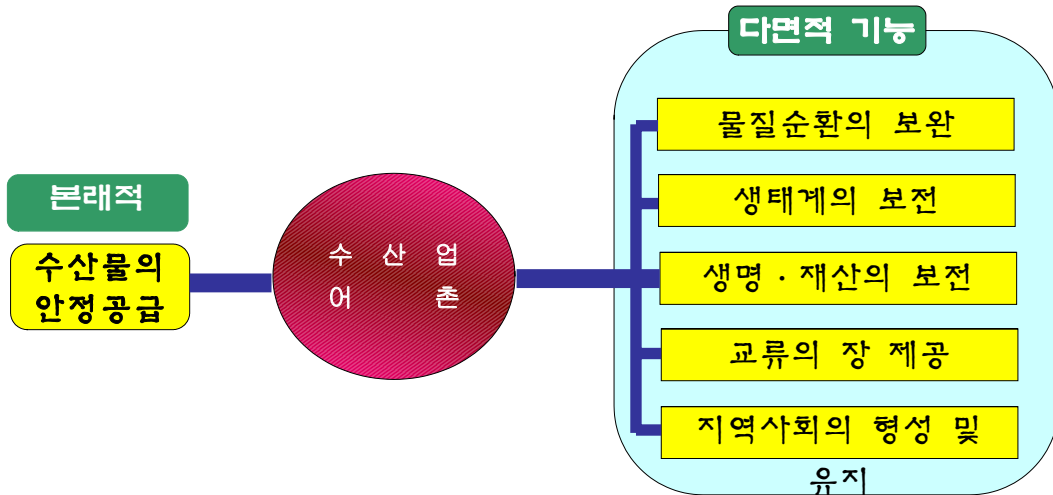
### 나. 외부경제효과(수산업·어촌의 다면적 기능)에 대한 보상

수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어촌은 어업을 기간산업으로 해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 외에 타산업의 입지가 적은 곳에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4) 수산부문에 있어 직접지불 보조금은 세계적으로 EU, 캐나다, 미국, 일본 등에서 시작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음. 다만, 200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양식업 배합사료에 대한 직접지불의 보조금이 전국 가두리 및 육상수조식 양식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음



에 기여하고 있다. 즉, 수산업과 어촌 본래의 어업생산 기능 외에도 다면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산업·어촌의 다면적 기능은 ‘수산업·어촌이 가진 수산물의 공급’이라고 하는 본래 기능 외의 물질순환의 보완, 생태계의 보전, 생명·재산의 보전, 교류의 장 제공, 지역사회의 유지 및 형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sup>5)</sup>



[그림 2-2-1] 수산업·어촌의 다면적 기능

이는 수산업은 생산과정에서 어업경영체 집단의 공동조업 효과 창출, 해양환경 보전, 국토 보전 및 개발, 어촌관광 개발효과 등과 같은 다양한 경제적 외부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역할은 시장에서 평가되지 않고 있다. 또한 어업인들의 소비 생활 과정에서도 인근 어장과 해양자원의 보전, 어촌관광 및 유어 환경의 제공 등에 결정적인 외부

- 5) • 물질순환의 보완 기능(자원의 재생기능) : 인간의 활동 등에 의해 발생되어 육지로부터 바다에 배출되는 대량의 질소, 인은 바다 생태계에 의한 식물연쇄작용을 통해 어류 등의 수산생물로 태어나고, 이들을 어획함으로써 자원의 재생기능이 촉진됨과 동시에 부영양화가 방지되는데, 이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어업뿐임
- 생태계 등 환경보전 기능 : 다양한 생물의 산란장이나 생육장, 또는 해수정화나 투명도 회복 기능이 있는 ‘조장(藻場)’이나 ‘간석(干潟)’은 고도경제성장과 함께 대부분이 소멸하였음. 하지만 어업인들이 주체가 되어 ‘조장’ 만들거나 ‘간석’ 관리활동을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기된 쓰레기 등의 회수 및 청소, 산림·하천·연안역을 하나의 생태계로 한 해수림(어류의 산란·보호·서식을 위하여 해안 등에 조성한 숲) 조성활동, 유류오염 사고 등에 의한 기름의 회수 등을 통하여 해양생태계 환경을 보전하고 있음
- 생명·재산의 보전 기능 : 어업인들에 의한 광대한 정보와 감시 네트워크에 의해 해난구조, 재해방지 및 구조, 해역환경 모니터링, 국경 감시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교류 등의 장 제공 : 어촌은 해양 레크리에이션, 체험학습 등의 무대가 되고, 어획된 수산물의 직판이나 각종 행사 등을 통해서 도시민과 지역민, 젊은이나 어린이 등 다양한 사람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또한 백사장 등의 아름다운 해안전경, 어선이나 생선을 햇볕에 말리는 등의 아름다운 어촌풍경은 도시민들에게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해 심적(心的) 효용을 크게 만들어 줌
- 지역사회의 형성 및 유지 기능 : 어촌에서는 바다의 조업안전과 풍어(豊漁)를 기원하는 축제, 어종이나 어장의 상황에 맞게 발달한 다양한 전통어법, 어류나 패류 등을 이용한 독특한 조리 및 가공법에 의한 향토음식 등 지역에 뿌리박힌 전통적 문화를 창조하고 계승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경제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지역사회의 공동자원으로서 어촌계의 형성, 연근해 해양오염의 관리 책임과 무임승차의 자체 해소 등 공공재(public goods)적인 기능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원적 기능을 보유하고 수행하고 있는 수산업·어촌의 생산 활동을 기존의 시장기능 만으로는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산보전제와 같은 직접지불에 의한 허용가능 보조금으로 생산자의 소득을 보전해 줄 필요성이 큰 것이다.

#### 다. 식량안보(food security) 유지

환경에 의존하는 해양자원의 특성상 수급불안정으로 인한 식량안보 문제의 야기를 국가차원에서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세계 수산물 수급예측(FAO 2010)을 보면 낙관적인 시나리오(세계 전 해역의 어업관리시스템 개선, 어획투기의 현저한 감소 등)를 상정할 경우 수요와 공급이 비슷한 수준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현재의 어업관리시스템 유지) 수요가 1억 톤~1억 2천 톤인 것에 반해, 공급은 9천만 톤으로, 평균적으로 2천 톤~3천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어업의 어획능력 수준을 통제하여 어업자원의 어획가능 자연 밀도를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인 어업자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놓아야 한다. 외국 선진수산국의 경우도 수산부문에 있어서 식량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어업자원의 회복 및 관리, 어획능력의 통제, 어업자원 조사 등에 대한 보조를 수산보전제를 통해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효율적인 어업자원의 관리와 이에 근거한 식량안보를 위해서 직접지불의 수산보전제와 같은 어업인 소득보전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라. 지속가능한 어업경영의 이행 촉진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어업구조조정, 기르는 어업의 육성, 해외어장의 개발, 어업경영 안정 및 어업인 육성지원 등 일련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어장상실 및 환경악화, 어업자원 감소로 인해 연근해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고, 그 결과 어업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어획량 감소에 따른 어업수입 하락과 더불어 유류비, 인건비, 어선·어구 수선유지비 등의 어업경비는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어업경영 상황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

예를 들어, 근해어업의 경우 총자본어업이익률은 1980년대 초 20~30% 수준에서 2000



년대 이후에는 10% 이하로 급감했고, 30~40%대를 유지하던 부채비율 또한 최근에는 50%대를 넘어섬으로써 어업경영체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연안 어가들의 어업 수입도 어획량 급감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부채비율 또한 1997년 58.6%에서 2003년에는 약 80%대로 증가하는 등 1990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9%였던 어가소득이 2003년도에는 약 65% 수준으로 하락했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3).

또한 수산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면서 어업인력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었으며, 생산량 감소와 이에 따른 소득 감소로 후계자 확보조차 곤란한 실정이다. 더욱이 어가소득의 감소, 교육 및 생활기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어촌민의 이어(移漁)가 빈발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도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어촌지역의 황폐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수산업의 낙후성은 전적으로 수산업 내부적인 열악한 경쟁력 수준에 기인한다기보다는 불균형적인 산업정책의 역사적 귀결임을 감안할 때, 산업간 형평성 측면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될 수 있다. 즉, 산업간 불균형적인 발전이라는 현실 앞에서 국가적 차원의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수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정책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각종 국제협정에 따른 어장축소 및 자원감소로 인해 어업경영체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시행 중인 어업구조개선사업 등 일련의 수산정책은 사회복지 증진보다는 대규모 어업경영상의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어가경제 내부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되고 있으며(최성애 외 2인, 2006), 영세어가의 경우 어업경영의 존립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산업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동종 산업 내 계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수산업 전체적인 지속가능한 어업경영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직접지원의 수산보전제의 도입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2. 수산보전제 도입 타당성

### 가. 수산정책 변화에 대한 보상적 측면

수산보전제 도입 타당성의 근거로는 우선 수산정책 변화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즉, 이는 정부의 수산정책이 외부 환경이나 국내적 필요에 의해 변경되면서 발생하는 어업인들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21세기를 맞아 세계 경제는 개방화 및 국제화가 가속화되어 국가간 장벽 해소를 통한

세계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수산업 부문에서도 예외가 아니고 10여 년 전 우루과이 라운드(UR)에서 개방경제에 편입된 수산업은 WTO/DDA 협상에서 개방의 실적인 진전을 요구받고 있다. WTO/DDA 다자간 협상 외에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을 통한 국가간·지역간 무역자유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칠레, 미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일본, 싱가포르, 아세안 등과의 FTA 협상도 진행단계에 있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개방화 및 국제화는 시장개방의 확대뿐만 아니라 수출보조 폐지, 국내보조금의 감축 등 국내 수산업 부문에 대한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흐름은 국경보호 하에서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은 채로 지속되어 온 국내 수산업의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다.

어업인들은 정부의 정책이 상당기간 존속되리라는 전제 하에 특정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어선이나 어구 등 고정생산요소를 구입하고 기술을 익히는 등 최적화를 위한 선택을 하고, 그에 따른 생산을 영위해 왔으며 향후에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속적인 어업생산을 영위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수산정책의 변화가 어가경제활동에 부정적인 피해를 끼치게 된다면 국가는 이를 보상해야할 정책적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고통을 받는 집단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롤스(Rawls)의 ‘차등이론(difference theory)’과 ‘정의의 우선적용(primacy of justice)’ 이론<sup>6)</sup>에 근거를 둔 것으로 경제학적인 ‘파레토 최적’의 조건과도 통하는 것이다.

## 나. 시장실패에 대한 보완적 측면

분권화와 가치관의 다양화 등 세계화에 상반되는 흐름도 부상하고 있다. 생명·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선 수산업의 다원적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분권화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원칙이 천명되면서 국토공간의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연안 어촌지역의 유지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나아가 생활수준 향상과 도시생활의 스트레스 해소의 대안적 관광과 여가활동의 장으로서 어촌지역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직접지불제가 널리 시행되고 있는 농업부문의 경우 이미 국내·외적으로 시장개입적 수단이 축소되고, 직접지불제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직접지불제는 국경보호의 축소 또는 가격개입형 보조금의 축소에 대응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부하를 축소하고 긍정적인 환경효과를 제고하는 방향, 낙후지역의 유지를

6) 롤스의 정의 이론의 핵심은 사회의 모든 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적 평등은 당연한 것이고, 상대적 평등도 사회의 소외계층에게 유리하게 배분되어야만 정의라고 하였다.



위한 직접지불제 등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농업·농촌의 활로와 농정방향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2002년 12월 농어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농정의 비전을 ① 지속가능한 생명산업, ② 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소득의 실현, ③ 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수단으로서 시장지향적 구조 재편, 직접지불제 확충 등 9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표 2-2-1] 농정의 비전과 정책수단

구 분	비 전	정책수단
농업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	시장지향적 구조 개편 친환경 및 고품질 농업
농업인	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소득 실현	직접지불제의 확충 경영안정장치 강화 농외소득 증대
농촌	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	농촌지역 개발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인프라 확충

수산분야의 경우도 이미 앞서 언급한 ‘수산업·어촌의 다면적 기능’과 같이 생산과정에서 어업경영체 집단의 공동조업 효과 창출, 해양환경 보전, 국토 보전 및 개발, 어촌관광 개발효과 등과 같은 다양한 경제적 외부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역할은 시장에서 평가되지 않고 있다. 또한 어업인들의 소비 생활 과정에서도 인근 어장과 해양자원의 보전, 어촌관광 및 유어 환경의 제공 등에 결정적인 외부경제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지역사회 공동자원으로서 어촌계의 형성, 연근해 해양오염의 관리 책임과 무임승차의 자체 해소 등 공공재(public goods)적인 기능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원적 기능을 보유하고 수행하고 있는 수산업의 생산 활동을 기존의 시장 기능만으로는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산보전제와 같은 허용가능 보조금으로 생산자의 소득이 보전되어야 한다.

또한 수산업이 외부경제효과(다면적 기능)를 생산·수행하는 반면, 어업자원의 공유재로서의 성격에 따른 어업자원의 남획, 어류양식에 있어서의 생사료 사용 등에 따른 어장 및 해양환경오염, 어구 유실에 따른 해양생태계 문제 등 수산업의 부정적인 외부경제효과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외부경제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수산보전제의 도입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농업의 경우 WTO에서 정부의 환경 또는 토양보전 정책에 따라 특정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비용이나 소득 손실에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EU, 미국, 일본 등에서는 1970년대 이후 자연적, 경제적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농업존속이 갖는 긍정적 외부성에 대한 보정을 하는 한편 집약적 농업방식이 갖는 부정적 외부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지원하는 직접지불정책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외국의 수산부문 직접지불의 보조금에서도 어장환경 보전 및 개선, 친환경 어구개발 및 사료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EU 공동수산보조금정책, 일본 등). 이와 같이 우리나라 수산부문에서도 부정적인 외부경제효과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수산보전제를 도입하여 시장실패를 보완하여야 한다.

#### 다. 세계 수산보조금정책 변화에 순응하는 측면

UR은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를 수립한다는 목표 하에 시장개방, 국내 수산보조금 및 수출보조금 감축을 규정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WTO/DDA 협상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수산보조금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 공동어업정책 하에서는 가격지지정책을 철폐하거나 축소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감소를 직접지불의 보조금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고 있다. 특히 수산보조금의 경우 공동어업정책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어획능력(어획노력량 수준) 증강이나 어업자원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보조금(예를 들어, 신조선 건조지원 보조금, 어선의 제3국 수출지원 보조금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어획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조금과 자원조성을 위한 인공어초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등은 긍정적인 보조금으로 직접지불 형태의 지원규모를 확대해 가고 있다. 이 외에도 자원회복계획에 따른 어업구조조정 필요에 따라 단기적인 보조금(어업소득지원 등)을 직접지불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조업안전 등을 위한 어선의 개조 및 현대화, 환경친화적인 어구개발 등은 어획능력이 증강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허용되어 지원되고 있다.

이 외 캐나다, 미국, 일본 등에서도 가격지지정책을 철폐하거나 축소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감소분을 직접지불의 보조금을 통해 대응해 가고 있는데, 자원회복계획 하에서 어업자원의 회복을 위한 소득직접지원,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환경보전 및 어업구조조정을 위한 직접지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산보조금정책도 이러한 세계 수산선진국들의 수산보조금정책 변화에 맞추어 직접지불의 수산보전제를 적극 도입하고 시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수산보전제 도입 의의

이상 직접지불 보조금형태를 띠는 수산보전제의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수산보전제(직접지불)의 의의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 확대에 따른 소득감소에 대응하여 어업소득을 안정화시키는 수단으로 서의의가 있다. 향후 관세가 인하되고, 각종 수산보조금 수단이 금지될 우려 속에서 지속적이고 경영안정적인 어업소득을 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업자원을 회복시키고, 어획능력을 증강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어업소득 보전을 위한 수산보전제를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인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해 가야 한다.

둘째, 수산업(어업 및 양식업)의 부정적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국토보전, 지역사회의 유지 등과 같은 수산업의 다면적 기능을 최대화하도록 유인하는 수단으로서 수산부문 직접지원을 활용해 가야 한다.

셋째, 수산보전제를 수산업 구조조정을 촉진 또는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산보전제의 확대는 구조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지적이 있지만, 노령·영세어업의 조기 은퇴 지원, 비고용보험 지원 등을 통해 수산업의 구조조정을 보다 빨리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어업 및 양식업의 기술개발, 친환경적 어구개발 및 개량, 어선의 노동조건 향상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도 수산부문의 구조조정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WTO/DDA 협상은 국내 수산보조금 지원의 실질적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가·지역간 FTA가 급격히 확산될 전망이다. 그 결과 국경 보호를 포함한 가격지지, 영어자금 지원 등의 수준이 크게 줄어들면서 대외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산업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따라서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및 대외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는 WTO 시장 지향성 목표에 가장 잘 부합되는 수산보전제를 통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 4. 수산보전제 도입의 기본방향

#### 가. 수산보전제의 개념 및 목적

수산보전제<sup>7)</sup>란 정부가 시행하는 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조의 일종으로 생산과 연계되지

7) 영문표기로 수산보전제는 preservation (direct) payment, conservation (direct)payment 등이 가능함

않거나 수산정책이 가지고 있는 자원 및 시장왜곡적인 측면을 줄이고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자금의 지불에 의하여 어가 소득을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부문에서 도입하고 있는 직접지불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는 수산보전제는 자원보전, 환경보전, 공익기능유지, 어가경제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수산업 기반강화를 통한 수산업 자생력 확보라는 수산정책 목표 달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 나. 수산보전제의 지원 및 추진방향

수산보전제는 생산중립적 지원으로 가격지지 또는 어업생산비보조 등 시장왜곡 또는 자원왜곡을 초래하는 지원은 그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즉, 과잉어획을 유발하지 않고 생산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자원보존 및 증강, 환경보전 및 관리, 재해 또는 보험, 공익적 기능제고 그리고 WTO 수산보조금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양식어업 및 가공 산업에 대한 직접지불에 의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수산보전제는 어업인의 노력에 대한 대가성 소득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수산보전제의 수혜대상자인 어업인 또는 단체는 보전제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또는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행여부 및 조건충족의 대가로서 직접지불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수산보전제의 추진방향은 여러 가지 유형의 수산보전제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도입 가능성이 높은 수산보전제부터 도상연습,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으로 나아가는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한다. 이때 수산보전제의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 수산보전제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추진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수산보전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산보전제 추진계획과 이행 로드맵에 대하여는 제7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도록 한다.

#### 다. 수산정책에 부합

수산보전제는 수산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수산정책에 부합되는 제도적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 시장개방 확대, 수산자원감소,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웰빙문화 확산 등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수산정책으로 ‘수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어촌·어업인 지원대책 강화’, ‘소비자 수요에 대응한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제 확립’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수산정책에 부합하고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수산보전제여야 한다.



## 라. 국제규범과의 적합성

수산 보조금 제도의 한 형태인 수산보전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범과의 적합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는 WTO 수산 보조금 협상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WTO 수산보조금 규범을 준수하는 제도이어야 한다. WTO 수산보조금 규범에 의하면 특정성 없는 보조금은 허용될 가능성이 높는데 특정 보조금의 허용여부는 무역 및 생산왜곡 그리고 자원왜곡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내용에 따라 검토되고 있으며 지급형태 및 수혜자는 각국의 재량에 맡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산자원의 남획 또는 고갈을 초래하는 등 과잉생산을 유도하는 자원왜곡의 보조금 또는 가격지지 등의 무역 및 시장왜곡을 초래하는 보조금 지원은 금지하는 것을 국제적 규범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현재 허용으로 거론되고 있는 수산보조금을 [표 2-2-2]에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근 자료에 의하면 어업인 사회안전망, 수산연구, 수산자원증대, 선박과 선원의 안전증진, 선박감척, 생산과 간접적으로 연계된 보조금 그리고 자연재해 등과 관련하여 직접지불형태의 수산보조금 즉 수산보전제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WTO 보조금 규율에서 제외되고 있는 양식업 및 가공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분야에 대한 수산보전제 도입은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표 2-2-2] 국제규범에 적합한 수산보전제 기준

구 분	조치 가능성이 높은 보조
어업인 사회안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기은퇴(early retirement schemes)</li> <li>• 재교육, 훈련 또는 타 업종으로 고용 전환지원</li> <li>• 사회안전(social security)</li> <li>• 생명보험(life insurance)</li> <li>• 실직 또는 수산업 활동의 중지에 따른 생계지원(livelihood income support)</li> </ul>
수산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수집, 설문조사, 자료분석, 자원모니터링, 샘플링 및 측정</li> </ul>
수산자원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 보존 및 보호, 해양환경복원, 인공어초 및 친환경어망 등 관련 장치를 포함</li> </ul>
선박과 선원의 안전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진은 국제적 또는 국내 표준에 따라서 이행되어야 함 ex) 선박구조 및 안전장치</li> </ul>
선박감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선감척사업</li> </ul>
생산과 간접적으로 연계된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항시설 및 수산식품을 위한 내륙 가공시설</li> </ul>
자연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보조금 금지조항에 적용되지 않음</li> </ul>

자료 : 보조금과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위한 부속서(2007.2)

### 마. 농업직불제와의 차별성

수산업과 농업은 그 산업적 특질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이라는 산업분류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 수산보전제 역시 농업의 직불제와 차별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도입에 있어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직불제가 비판을 받아오던 부분 즉 문제점을 수산보전제에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차별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농업분야에 있어 직불제는 1997년부터 폭넓게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2013년까지 전체 농업예산의 23%를 직접 지불제 예산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등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주요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국내 직불제 실시로 농업구조개선의 지체, 직불제간 상충성, 논과 밭의 형평성, 관리체계의 분산과 기반미비, 보조금의 비농업인의 전가 등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해외에서도 현행의 농업직불제가 구조조정에 역행한다는 문제, 생산과잉을 부추긴다는 문제, 임차료 및 생산자본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셋째,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과 절차,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정책실시가 매우 어려우며, 설령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집행과 모니터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정책목표 달성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업직접지불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림부에서는 중장기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하나는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가 유형별 특성 및 목적에 따라 직불제를 체계화하여 확충하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장기적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로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직불제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농가소득보전유형 직불제는 여전히 과잉생산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2-3]에 제시한 것처럼 수산보전제는 생산중립적 보전제가 핵심보전제임과 비교하여 과잉생산의 소지가 많은 농가 소득보전형 직불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농업직불제와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표 2-2-3] 수산보전제와 농업직불제의 차이점과 공통점

구 분	차 이 점	공 통 점
수산보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 중립적 보전제</li> <li>- 수산자원보전, 어장환경개선, 양식업구조조정, 재해예방 등 무역 및 자원왜곡이 없는 생산 중립적 지원을 기본으로 함</li> <li>- 수산업 기반강화를 통한 수산업 자생력 확보에 역점을 둠</li> <li>○ 보전제 지원금은 수산업기반강화를 위하여 노력한 대가성 지원의 성격을 가짐</li> <li>- 지원은 준수사항 이행여부 결과에 따라 지급</li> <li>○ 보전제는 어업인의 노력 또는 실천 등의 준수사항이 포함된 체계적 계획수립에 의거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전</li> <li>○ 공익기능 유지</li> <li>○ 어가경제안정</li> </ul>
농업직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농가 소득보전형 직불제가 핵심</li> <li>- 생산한 결과물에 대한 가격차액을 보전하는 소득보전으로 과잉생산의 소지가 많음</li> <li>- 구조조정형 직불제의 추진 저조로 농업직불제가 농업경쟁력 강화 기여에는 미흡하다는 지적</li> <li>○ 농가소득보전형의 경우 준수사항이 없거나, 대가성 지원의 경우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직불금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전</li> <li>○ 공익기능 유지</li> <li>○ 농가경제안정</li> </ul>

### 제3절 외국의 수산보전제 사례연구

#### 1.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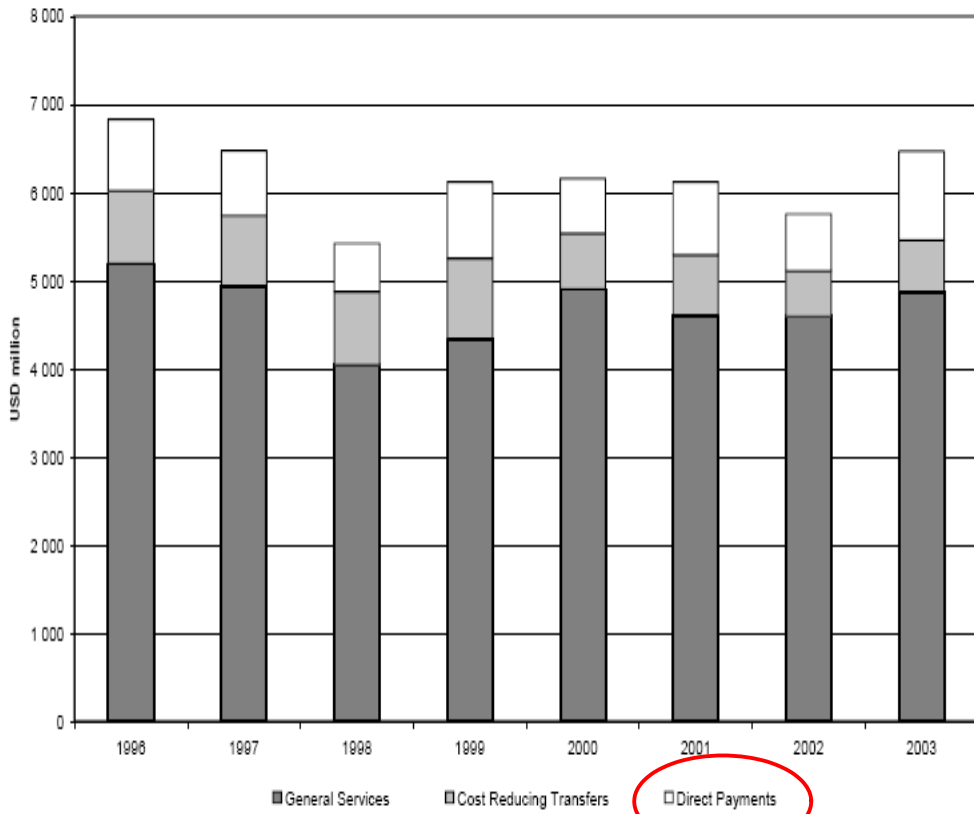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산보조금(fishery subsidies) 중 직접지불(direct payment)은 어업인들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출로서 어업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수산보조금이 수산부문에 대한 금전적, 비금전적(서비스) 지원을 총칭하는 개념인 반면,<sup>8)</sup> 직접지불은 어업인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적(금전적) 지출을 의미한다.

외국의 직접지불 지원배경으로는 수산부문에 있어 수산자원회복, 어획능력(fishing capacity) 감축, 환경친화형 어업구조조정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어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기존 소득보전 관련 지원정책이 없거나 WTO에서 제한하는 가격지지(price-support) 수준 등을 통한 소득보전의 대체수단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국제적으로 수산부문에 있어 활용되고 있는 직접지불의 종류로는 어선감척 및 허가권 환수에 대한 직접지불(direct payment for vessel decommissioning and license retirement), 비고용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은퇴자 및 재교육에 대한 직접지불(direct payment for retirement and retraining of fishers), 금어기·조업기간 단축 및 휴어기에 대한 소득보전 직접지불(direct payment for closed or reduced seasons and temporary withdrawal of fishing vessels), 재난구호 직접지불(direct payment for disaster relief), 영세어업 소득보전 직접지불(direct payment to small fisheries) 등이 있다.

최근 들어서는 수산자원회복 및 어획능력 감축에 대한 필요성 증대에 따라 어선감척 및 허가권 환수에 대한 직접지불, 금어기 및 조업기간 단축 등을 위한 소득보전 직접지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외에도 환경친화형 어업구조조정을 위한 어구개량, 환경친화형 기자재 사용 등에 대한 직접지불과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어획할당량 축소, 어획노력량 삭감 등에 대한 소득보전 직접지불이 향후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OECD, 2006).

8)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의 제1조 1(Article 1)에서는 보조금을 “a subsidy is defined as a financial contribution by a government or any public body that confers a benefit to a (set of) producer(s), where a financial contribution can involve a direct transfer of funds, a potential direct transfer (such as through a loan guarantee), foregone government revenue, government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 other than general infrastructure, and government purchases of goods.”로 정의하고 있음. 2003년 현재 OECD 국가들의 수산보조금은 미화 총 64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수산물 총 생산금액의 20.4%에 해당됨.



[그림 2-3-1] OECD 회원국의 수산보조금 내용별 지원액 추이(1996~2003)



[표 2-3-1] 주요 국가별 수산부문 직접지불금 변화(2000년과 2003년 비교)  
(단위: 천 달러, %)

국가	2000년		2003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캐 나 다	211,812	44.3	259,000	49.5
덴 마 크	6,627	14.5	28,647	31.2
핀 란 드	49	0.4	1,910	9.5
프 랑 스	1,553	2.2	25,955	14.5
벨 기 에	5,911	79.0	1,202	29.1
독 일	797	1.2	2,247	4.8
그 리 스	17,659	28.3	54,207	45.8
아일랜드	2,437	2.8	6,416	10.3
이탈리아	92,549	61.6	126,793	85.4
네덜란드	84	8.4	4,285	69.4
포르투갈	1,689	6.6	655	2.4
스 페 인	108,484	38.0	279,627	55.5
스 웨 덴	852	4.0	3,342	10.9
일 본	19,010	0.7	18,121	0.8
노르웨이	1,591	1.5	4,435	3.1
미 국	66,800	8.3	175,600	13.6

\* 비중은 국가의 수산부문 전체 지원액 중 직접지불금의 비율을 의미  
자료: OECD, Financial Support to Fisheries, 2006.



## 2. 국가별 사례

외국의 지역별 직접지불의 수산보조금 활용사례를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북미 지역 캐나다의 경우 어획능력 감축을 위한 대서양 저서어업 허가권 환수 직접지불, 대구어업 및 대서양 어업의 조기 은퇴(early retirement) 직접지불, 비고용보험, 동부 해역 소득보전 직접지불, 금어기간 동안 소득보전 직접지불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획능력 감축을 위한 허가권 환수 직접지불, 재해구호 직접지불, 영세어업에 대한 직접지불 등이 행해지고 있다.

유럽 지역의 경우는 EU의 ‘수산업의 재정적 지원 지침(financial instrument for fisheries guidance)’에 따라 소득보전, 재해보상, 조건불리지역, 실업지원 등 다양한 직접지불이 행해지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는 어획능력 감축을 위한 어선감척사업 직접지불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획노력량 삭감(금어기/휴어기 등)에 대한 직접지불, 조기 은퇴 및 재교육 직접지불, 비고용보험, 영세어업 소득보전 직접지불 등도 실시되고 있다.

이 외 아시아 지역의 경우 일본에서는 어획능력 감축을 위한 어선감척사업에 대한 직접지불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휴어기 동안의 소득보전 직접지불, 어구개량 및 폐어구 처분 등에 대한 직접지불이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3개월(4.1~6.30)간의 휴어기간 동안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의 수산보조금 등이 지원되고 있다.

### 가.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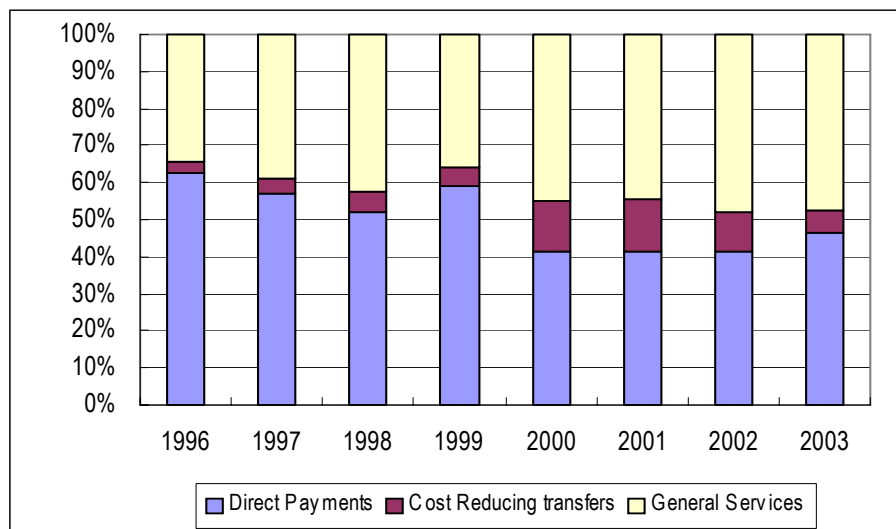
캐나다의 수산보조금 지원규모는 2003년 기준 총 560백만 달러 정도로, 지원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보조금은 일반서비스(general services) 보조금으로, 어업자원의 조사·관리 및 감시감독(Research, Management and Enforcement)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산보조금 중 직접지불(direct payment)의 비중은 약 40% 수준으로, 연간 지원규모는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대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직접지불의 지원종류로는 허가권 환수 직접지불, 조기 은퇴(early retirement) 직접지불, 비고용보험, 금어기간 동안 소득보전 직접지불 등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3-2] 캐나다의 수산보조금 종류별 지원액 변화

(단위 : US 천 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직접지불 (Direct Payment)	340,294	247,266	213,682	310,940	211,812	213,419	204,586	259,000
비용절감보조금 (Cost Reducing Transfers)	17,044	17,698	21,318	25,839	69,195	72,839	52,102	34,000
일반서비스보조금 (General Services)	187,963	168,345	174,358	189,329	229,396	228,903	238,599	266,286
합 계	545,301	433,309	409,358	526,108	510,403	515,161	495,287	559,286



[그림 2-3-2] 캐나다 수산보조금 유형별 지원액 비중의 변화

### 1) 대서양 저서어업 허가환수 직접지불(Atlantic Groundfish License Retirement Program)

이 직접지불의 수산보조금은 캐나다 해양수산국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어업자원의 수준에 맞도록 어획능력을 감축시켜 대서양 연안의 지속적인 어업발전 도모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직접지불의 대상은 6.5ft 이하 어선을 소유한 대서양 연안 저서어업 어업인들로, 허가환



수에 대해 신청을 하면 독립검사기관에서 검토하여 허가환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만약 허가환수 절차가 최종 승인되면, 해당어업인은 허가권 환수와 동시에 어업에서 완전히 떠나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의 재진입이 불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1998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22.7백만 달러 정도가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2,332개의 허가권이 환수되었다.

## 2) 북방 대구어업 조기은퇴 직접지불(Northern Cod Early Retirement Program)

이 직접지불의 수산보조금 역시 캐나다 해양수산국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북방 대구어업의 조업금지에 대한 어업인들의 지원과 해당어업에 대한 의존도 감소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방 대구어업 조기 은퇴 직접지불은 어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것으로, 연금(annuity)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직접지불의 주된 대상은 55~64세의 북방 대구어업 어업인, 가공업자, 그리고 트롤업자로서, 65세부터는 캐나다 연금계획(Canada Pension Plan)이나 경로 안전 보장(Old Age Security) 등의 연금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지원하여 생활소득을 보전하게 된다. 조기 은퇴 직접지불을 신청한 어업인들은 저서자원의 허가권을 포기해야 하며, 어업등록증, 그리고 타어업의 허가권 등도 모두 반납을 해야 한다.

현재까지의 직접지불 규모를 살펴보면 2000~2001년 기간동안 총 US\$3.7백만 달러가 지원되었으며, 2001~2002년 기간동안 총 US\$2.3백만 달러, 그리고 2002~2003년 기간동안 총 0.67백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총 677명의 어업인과 759명의 가공업 노동자 및 트롤업자들이 조기 은퇴 직접지불을 지원받았다.

## 3) 대서양 어업 조기은퇴 직접지불(Atlantic Fishers Early Retirement Program)

이 직접지불의 수산보조금 또한 캐나다 해양수산국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대서양 저서어업의 붕괴 위기에 대한 어업인들의 지원과 해당어업에 대한 의존도 감소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방 대구어업 조기 은퇴 직접지불과 마찬가지로 대서양 조기 은퇴 직접지불 프로그램의 경우도 대서양 저서어업 어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것으로, 연금(annuity)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직접지불의 주된 대상은 65ft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55~64세의 대서양 연안 저서어업 어업인들로서, 65세부터는 캐나다 연금계획(Canada Pension Plan)이나 경로

안전 보장(Old Age Security) 등의 연금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지원하여 생활의 소득을 보전하게 된다. 조기 은퇴 직접지불을 신청한 어업인들은 대서양 저서어업의 허가권을 반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업등록증 및 타 업종의 어업허가권도 모두 포기해야 한다.

대서양 조기 은퇴 직접지불 지원액 규모를 살펴보면 2000~2001년 기간동안 총 US\$1.9백만 달러가 지원되었으며, 2001~2002년 기간동안에는 US\$1.75백만 달러, 그리고 2002~2003년 기간동안 총 1.5백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총 333명의 어업인들이 조기 은퇴 직접지불을 지원받았다.

#### 4) 비고용 보험 직접지불(Unemployment Insurance for Fishers Program)

비고용 보험 직접지불의 수산보조금은 캐나다 인적자원부(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금어기간 동안 자영(self-employed) 어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고용 보험 직접지불제는 주로 연안의 상업적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어업의 계절성이나 어획량 변동 등 어업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영 어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고 있다. 직접지불은 대상어업인들로 하여금 일년에 최대 26주 동안 어획량 실적 등으로 고려하여 행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비고용 보험 직접지불액을 살펴보면 2000~2001년 기간동안 총 US\$238백만 달러가 지원되었으며, 2001~2002년 기간동안에는 US\$272백만 달러, 그리고 2002~2003년 기간동안 총 297백만 달러가 지원되는 등 지원액 규모는 매년 증가되고 있다. 2003년도의 경우 총 35,877명에 대한 직접지불이 행해졌으며, 향후 직접지원액 규모 증대에 따라 지원자(수혜자) 규모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5) 대서양 저서어업 소득지원 직접지불(TAGS Income Support Program)

이 직접지불의 수산보조금은 캐나다 인적자원부(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동해안 저서어업의 붕괴 위기에 대한 어업인들과 가공업자들의 소득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대서양 저서어업 소득지원 직접지불은 대서양 저서어업 회복전략(The Atlantic Groundfish Strategy, TAGS) 하에서 대서양 저서자원 감소에 따른 어업인, 트롤업자, 그리고 가공업자들에 대한 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직접지불 대상자들은 TAGS 하의 노동조



절 프로그램(Labour Adjustment Programs)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지금까지 총 15,599명의 어업인들과 24,391명의 가공업자 및 트롤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되었다.

#### 6) 수산공장 노동자 조기은퇴 직접지불(Early Retirement Program for Fish Plant Worker)

이 직접지불의 수산보조금 또한 캐나다 인적자원부(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직접지불의 주된 목적은 대서양 저서어업자원의 감소에 따른 수산공장 노동자들의 소득보전과 수산업으로부터의 조기 은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주된 직접지불 대상자들은 대서양 저서어업 관련 수산공장 노동자들이지만, 다른 조기 은퇴 직접지불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연금계획(Canada Pension Plan)이나 경로 안전 보장(Old Age Security) 등의 연금수급 이전의 55세~64세의 노동자로 제한하고 있다. 수산공장 노동자 조기 은퇴 직접지불 지원은 2000~2001년 기간동안 총 약 US\$3.6백만 달러가 지원되었으며, 2001~2002년 기간동안에는 약 US\$3.2백만 달러, 그리고 2002~2003년 기간동안에는 총 US\$2.8백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 나. 미국

미국의 수산보조금 지원규모는 2003년 기준 총 약 1,290백만 달러 정도로, 수산보조금 지원액 총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산보조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보조금은 일반서비스보조금(general services)으로, 전체 수산보조금 지원액 중 평균 약 8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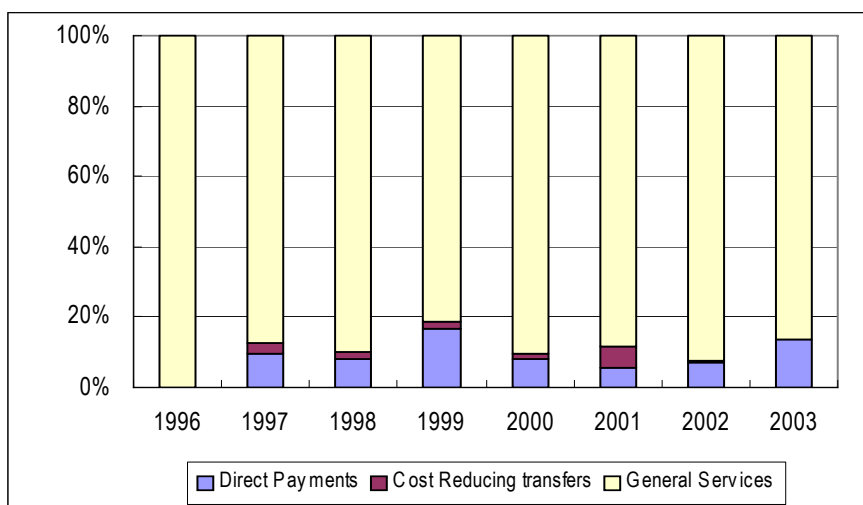
미국의 수산업에 대한 지원은 연방정부의 재정이전인 해양대기청 수산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NMFS)과 타기관에 의한 재정이전으로 분리되어 행해지고 있다. NMFS에 의한 연방정부의 재정이전은 현재의 과도어획에서 지속적이고 환경친화형 어업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어업인들에게 지급된다. NMFS는 연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내어업관련 프로그램, 정책, 규범 등을 총괄하고 있는데, 1996년 지속가능어업법(Sustainable Fisheries Act)이 통과되고 난 뒤 생산량 증대와 개발위주의 정책에서 지속적 개발을 위한 어업자원의 보호로 방향이 전환되는 등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수산보조금정책의 목적과 수혜대상이 변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NMFS의 수산보조금 지원사업은 크게 4가지의 범주로 나뉘지는데, ① 어업 자원의 정보 및 수산업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 ② 어업자원보호, 어류 서식지 보존, 해양관리프로그램 등 수산관리활동을 위한 자원보존 및 관리, ③ 수산업관련 과학활동 및 관리활동 지원, 수산업 개발을 위한 주정부 및 수산업지원, ④ 수산업금융프로그램, 어선엔진손상기금, 어업인의 우발적 손해기금 등을 위한 특별회계 등이다.

이 외 타 기관에 의한 재정이전으로는 첫째, 미국 연안경비대(coast guard)에 의해서 어업법 및 관련규제를 현장에서 집행하기 위한 수송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지원하는 기금, 둘째, 농림부가 관할하는 시장촉진 프로그램과 잉여상품처리 프로그램 등, 셋째, 세무성에서 주관하는 유류판매세에서 비도로사용자에 대한 면세 프로그램, 넷째, 국무성이 지원하는 어항건설 및 하수처리 등 수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 등이 있다.

[표 2-3-3] 미국의 수산보조금 종류별 지원액 변화

	(단위 : US 천 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직접지불 (Direct Payment)	-	59,700	54,800	120,700	66,800	49,900	81,280	175,600
비용절감보조금 (Cost Reducing Transfers)	250	19,000	13,000	12,300	12,250	51,800	3,500	3,500
일반서비스보조금 (General Services)	545,960	548,280	596,000	584,100	726,080	774,240	1,046,030	1,111,340
합 계	546,210	626,980	663,800	717,100	805,130	875,940	1,130,810	1,290,440



[그림 2-3-3] 미국 수산보조금 유형별 지원액 비중의 변화



수산보조금 중 직접지불(direct payment)의 비중은 약 9% 수준으로, 연간 지원규모는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1997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3년도 직접지불 총 지원액은 175백만 달러로 급격히 증가되었는데, 이는 1997년 수준에서 무려 194% 정도가 증가된 것이다.

직접지불의 지원종류로는 어선감척 직접지불, 자원감소와 관련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한 조정기금, 그리고 재난구호사업 등이 있다. 여기서 어선감척 직접지불제는 어업자원의 상황에 맞도록 어획능력(어선척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속적인 어업관리와 경영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자원감소와 관련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한 조정기금은 미국 연근해어업의 어업자원 감소 위기에 따른 어업인들의 경제적 지원과 해당어업에 대한 의존도 감소를 주된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 다. EU

유럽지역에서는 EU(European Union)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공동어업관리를 행하고 있는데, EU에서는 2003년 1월 공동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olicy)을 개정하여<sup>9)</sup>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어획능력과 가용한 어업자원간의 균형을 맞추는데 목적을 두고, 관련 어업정책 및 수산보조금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수산보조금의 경우 공동어업정책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어획능력(어획노력량 수준) 증강이나 어업자원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보조금(예를 들어, 신조선 건조지원 보조금, 어선의 제3국 수출지원 보조금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어획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조금[예를 들어, 어선감척사업(vessel decommissioning program)이나 휴어제(temporary cessation of fishing) 등] 그리고 자원조성을 위한 인공어초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등은 긍정적인 보조금으로 직접지불 형태의 지원규모를 확대해 가고 있다. 이 외에도 자원회복계획에 따른 어업구조조정 필요에 따라 단기적인 보조금(어업소득 지원 등)을 직접지불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조업안전 등을 위한 어선의 개조 및 현대화, 환경친화적인 어구개량 등은 어획능력이 증강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지원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EU 공동어업정책 변화에 따른 수산보조금정책의 변화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공적 지원(public aid)에 의해 감축된 어획능력(fishing capacity)은 반드시

9) 이는 기존 공동어업정책이 어업자원의 보호, 해양환경의 보호, 수산업의 경제적 기반 확충 및 양질의 수산물 공급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고조되어 왔기 때문이다.



시 다시 증강될 수 없도록 강력히 규정하고 있다. 단, 2006년 수산보조금정책 개정 시 공적(公的) 지원에 의해 감소된 어획능력의 일부분이 선상 어로작업의 안전성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는 다시 증강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어획노력량 수준의 증대를 도모하는 수산보조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신조선 건조 보조금 지급의 경우 2002년 개정 시에는 2004년까지는 400톤 이하의 어선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제한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2006년 개정 시에는 신조선 건조에 대한 보조금을 완전 폐지하고자 하였지만, 몇몇 회원국들이 어선을 처음으로 건조하는 젊은 어업인들에게는 제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여 논의 중에 있다.

[표 2-3-4] EU의 수산보조금정책(Fisheries Subsidy Policy) 변화

2002년 수산보조금정책 (2002 CFP Reform Agreement)	2004년 수산보조금정책 (2004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on a European Fisheries Fund 2007~2013)	2006년 수산보조금정책 (2006 European Fisheries Fund proposal compromise text March 2006)
공적지원(public aid)으로 인해 감소된 어획능력은 다시 증강될 수 없음	변화 없음	변화 없음 (단, 공적지원에 의해 감소된 어획능력의 일부분은 어로작업의 안전성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증강될 수 있음)
수산보조금 수단은 어획노력량 수준을 증대시켜서는 안 됨	유럽어업기금(European Fisheries Fund)의 지원에 의한 수산보조금 수단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획노력량 수준을 증대시켜서는 안 됨	유럽어업기금(European Fisheries Fund)의 지원에 의한 수산보조금 수단은 어획노력량 수준을 증대시켜서는 안 됨
2004년부터 신조선 건조에 대한 보조금 폐지(단, 2004년까지 400톤 이하의 어선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제한적으로 지급)	신조선 건조에 대한 보조금 폐지	신조선 건조에 대한 보조금 폐지(단, 몇몇 회원국들은 어선을 처음으로 건조하는 젊은 어업인들에게는 제한적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
어선감척사업 등 어업활동의 영구적 제한(permanent cessation of fishing)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그리고 2004년까지 합작투자(joint venture) 하에서 등제3국으로의 어선 수출을 위한 보조금 지급	어선감척사업(scraping vessels)에 대한 보조금 지급	어선감척사업(scraping vessels)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인공어초(artificial reef) 조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
자원회복계획(recovery plans) 하에서 추가적인 어선감척에 대한 보조금 지급	변화 없음	변화 없음



[표 2-3-5] EU의 수산보조금정책(Fisheries Subsidy Policy) 변화-계속

2002년 수산보조금정책 (2002 CFP Reform Agreement)	2004년 수산보조금정책 (2004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on a European Fisheries Fund 2007~2013)	2006년 수산보조금정책 (2006 European Fisheries Fund proposal compromise text March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어제 보조금 지급</li> <li>- 2000~2006년 기간동안 생물학적 요인 등에 의해 예상치 못한 어업상황 하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간 보조금 지급</li> <li>- 어업협정이 갱신되지 않았거나 중단되어 있을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지만 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추가적인 6개월간 지급 가능)</li> <li>- 자원회복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1년간(1년간 연장 가능)보조금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어제 보조금 지급</li> <li>- 자원회복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1년간(1년간 연장 가능)보조금 지급</li> <li>- 자연재해나 예외적인 어업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간 보조금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어제 보조금 지급</li> <li>- 자원회복계획 하에서는 1년간(1년간 연장 가능) 보조금 지급</li> <li>- 긴급계획(emergency plans) 하에서는 3개월 혹은 6개월간 보조금 지급</li> <li>- 어업협정이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6개월간(6개월 연장 가능)보조금 지급</li> <li>- 자연재해나 대중의 건강 문제로 인한 어업 폐쇄 혹은 예외적인 어업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간 보조금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선의 장비 등 현대화 보조금 지급</li> <li>- 원칙적으로 어선의 어획능력(톤수 및 마력수)을 증대시키거나 어구의 어획효율을 증대시키는 보조금 지급 금지</li> <li>- 하지만 어획효율을 증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업활동의 안전성, 노동 조건의 개선을 위한 보조금은 제한적으로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보조금 지급 가능</li> <li>- 어선의 선령이 5년 이상 되고, 조업의 안전성, 선상 노동조건의 개선, 어획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어선 개조의 경우(이 경우 어선의 톤수는 증대될 수 있으나, 어획효율이 증대되어서는 안 됨)</li> <li>- 선상의 어획물이 폐기되어서는 안 됨</li> <li>-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li> <li>- 해양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할 경우</li> <li>• 자원회복계획(recovery plans) 하에서 어구개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 한데, 보조금은 첫 번째 어구개량시에만 지급가능하도록 하고 있음</li> <li>- 또한 환경친화적 어구개량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보조금 지급 가능</li> <li>- 어선의 선령이 5년 이상 되고, 조업의 안전성, 선상 노동조건의 개선, 어획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어선 개조의 경우(이 경우 어선의 톤수는 증대될 수 있으나, 어획효율이 증대되어서는 안 됨)</li> <li>- 선상의 어획물이 폐기(discard)되어서는 안 됨</li> <li>-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li> <li>- 비상업적(non-commercial) 어종에 대한 어업의 영향을 감소할 경우</li> <li>- 해양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할 경우</li> <li>• 자원회복계획(recovery plans) 하에서 어구개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 어구개량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li> <li>- 보조금은 두 번째 어구개량 시까지 지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li> <li>- 단, 어구개량은 EU의 기술법(technical law)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함</li> </ul>

어획능력(어획노력량 수준) 감소를 위한 보조금은 직접지불의 형태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어선감척사업 등 어업활동의 영구적 제한(permanent cessation

of fishing)을 위한 보조금의 경우 어선감척사업에 대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감척 대상어선의 이용 등 인공어초(artificial reef) 조성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재미있는 사항은 2002년 수산보조금정책 개정 시 합작투자(joint venture)에 의해 제3국으로의 어선 수출에 대한 보조금도 지급되도록 하였으나, 2004년 개정 시부터 이에 대한 내용은 금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휴어제에 대한 직접지불 보조금의 경우 어업상황에 따라 달리 지원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6년 개정안에 따르면 자원회복계획(recovery plan) 하에서는 1년간(1년간 추가 연장 가능), 긴급계획(emergency plan) 하에서는 3~6개월간, 그리고 자연재해 및 대중 건강상 등의 이유로 인한 어업 폐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6개월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어선의 장비 등 현대화 보조금은 어선의 어획능력(톤수 및 마력수)을 증대시키거나 어구의 어획효율을 증대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2002년 수산보조금정책 개정 시에는 어획효율을 증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업활동의 안전성,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보조금은 제한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6년 개정 시에는 첫째, 어선의 선령이 5년 이상 되고, 조업의 안전성, 선상 노동조건의 개선, 어획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어선 현대화의 경우, 둘째, 새로운 어선장비기술에 대한 시범사업의 실시, 셋째, 비상업적(non-commercial) 어종에 대한 어업의 영향을 감소할 경우, 넷째, 해양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할 경우 등에 대해 보조금이 제한적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자원회복계획 하에서의 어구개량 및 환경친화적 어구개량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은 EU 공동어업정책(CFP) 하의 수산보조금정책 내용을 살펴본 것으로서, 전반적인 EU의 수산보조금정책은 어획능력의 증강이나 어업자원의 감소를 도모하는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반해 어업자원의 회복을 도모하고, 어획능력 감축을 위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의 형태로 그 지원규모를 증대시키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어선감척사업이나 휴어제 등에 대한 보조금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며, 자원회복계획 하의 어구개량사업, 자원조성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어획효율을 증대시키지 않는 전제 하에서 조업활동의 안전성 등을 고려한 어선 현대화 보조금 지급, 해양환경이나 비상업적 어업자원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어구개량 등에 대한 보조금도 허용보조금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짓고, 그 비중을 점차 증대시켜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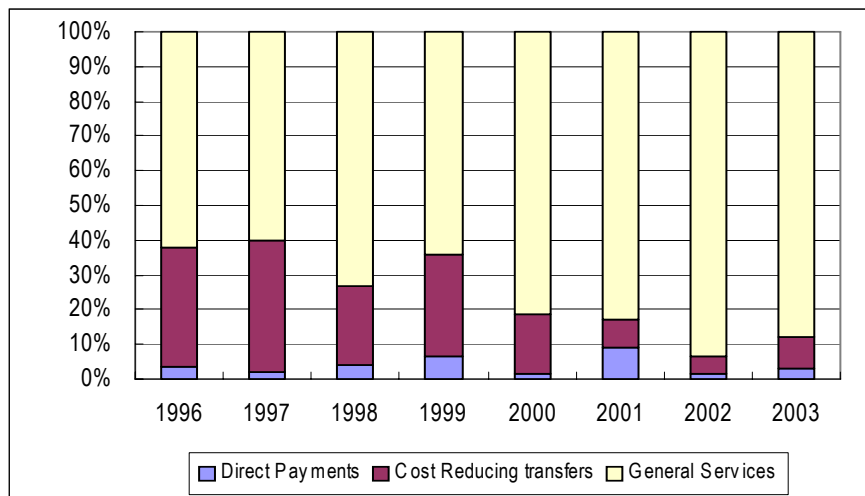
## 라.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수산보조금 지원규모는 2003년 기준 총 142백만 달러 정도로, 지원규모는 연간 증감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2003년도 수산보조금 지원규모는 1996년도의 약 82% 수준).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보조금은 일반서비스(general services) 보조금으로(전체 수산보조금의 75% 차지), 어업자원의 조사·관리 및 감시감독(Research, Management and Enforcement)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산보조금 중 직접지불(direct payment)의 비중은 약 4% 수준으로, 연간 지원규모는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직접지불의 지원종류로는 허가권 환수 직접지불, 소득보전 직접지불, 운송비 지원 직접지불, 연승어업 미끼 직접지불, 그리고 소득지원 직접지불 등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3-6] 노르웨이의 수산보조금 종류별 지원액 변화

	(단위 : US 천 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직접지불 (Direct Payment)	5,867	3,211	6,490	11,795	1,591	9,266	2,478	4,435
비용절감보조금 (Cost Reducing Transfers)	59,412	62,079	34,702	52,949	17,955	7,795	7,956	12,611
일반서비스보조금 (General Services)	107,415	98,147	111,854	116,218	85,018	82,224	144,816	125,177
합 계	172,694	163,437	153,046	180,962	104,564	99,285	155,250	142,223



[그림 2-3-4] 노르웨이 수산보조금 유형별 지원액 비중의 변화

## 1) 소득보전 직접지불(Income Guarantee Compensation Program)

이 직접지불의 수산보조금은 해당어업이 부분적 혹은 완전히 붕괴되었을 기간 동안 어업인들의 최소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다. 지불내용은 해당어업에 부분적 혹은 완전한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 후 13주 동안 주당 약 US\$370씩 관련어업인에게 직접 지불된다.

이 직접지불의 수산보조금 프로그램은 노르웨이 중앙정부와 어업인 연합회(Fishermen's Association)가 체결한 협약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관련 행정비용(administration costs)도 이들 기금에서 지출된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질수록 어업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보조금액은 많아질 수 있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특정 어업에만 한정되지 않고 노르웨이 모든 어업에 적용되고 있으며, 노르웨이 어선명부에 등록된 15세 이상의 어업인 혹은 6m 이상의 어선에서 일하는 어업자들은 모두 직접지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

2001년부터 2004년 기간동안의 직접지불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표 2-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보전 직접지불액 규모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비용은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7] 소득보전 직접지불 지원액 변화(2001~2004)

(단위 : 백만 US\$)

	2001	2002	2003	2004
직접지불액 (Direct Payment)	1.33	1.36	1.67	1.85
행정비용 (Administration Cost)	0.49	0.32	0.29	0.20
합계 (Total)	1.82	1.68	1.96	2.05

소득보전 직접지불 지원액 규모는 매년 노르웨이 중앙정부와 어업인 연합회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소득보전 직접지불 수혜자 규모를 살펴보면, 2001년 689명에서 2002년 532명으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2003년에는 총 572명으로 2002년보다 수혜자 규모가 약 8% 정도 증가되었다.



## 2) 운송비 지원 직접지불(Transportation Support Program)

운송비 지원의 직접지불 수산보조금은 지리적으로 혹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지역의 운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직접지불 프로그램은 다른 업종간 어선들의 경영안정과 수산가공공장으로의 원활한 어획물 공급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어획물 과잉공급지로부터 수산물 초과소비지로 어획물을 운송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운송비 지원 직접지불 보조금은 판매 기관들(Sales Organizations)에 의해 지원되고 있고, 내륙지 도매상과 어업인들이 운송비를 포함한 시장가격을 최종 결정하여 운송하게 되면 운송비만큼이 어업인들에게 직접 지불된다. 그리고 이 직접지불 프로그램의 행정비용은 직접지불 총 기금에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 기관들이 따로 부담하고 있다.

운송비 지원 직접지불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판매기관은 그들 관할지역에서 필요한 운송비 총 지원규모를 예측하고, 이러한 판매기관들의 예측치를 바탕으로 어업인 연합회(Fishermen's Association)는 노르웨이 수산부(Ministry of Fisheries)와 운송비 지원 직접지불액 규모에 대해 협상을 하게 된다. 이후 합의된 총 운송비 직접지불 지원액은 각 판매기관들의 신청 수준(예측치)에 맞추어 분배되고, 판매기관들이 운송비 지원 직접지불의 사용내역에 대해 수산부의 최종 승인을 얻게 되면 1년간의 회계 기간동안 직접지불 프로그램이 운용되게 된다.

2001년부터 2004년 기간동안의 직접지불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표 2-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보전 직접지불액 규모는 연간 증감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행정비용은 운송비 지원 직접지불 기금에서 운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각 판매기관들이 부담) 운송비 지원 직접지불 총 지원규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2-3-8] 운송비 지원 직접지불 지원액 변화(2001~2004)

(단위 : 백만 US\$)

	2001	2002	2003	2004
직접지불액(Direct Payment)	5.45	4.44	7.10	4.21
행정비용(Administration Cost)	-	-	-	-
합계(Total)	5.45	4.44	7.10	4.21

판매기관들(sales organizations)이 어업인들에 대한 운송비 지원 직접지불을 담당하고 있고, 이들이 해당 지역의 어업인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노르웨이 판매기관들로는 Norway's Raw Fish Organization, Fish Sales Association for Sunnmøre og Romsdal, Fish Sales Association for Western Norway, Fish Sales Association for Rogaland County, Fish Sales Organization for the Skagerrak Coast, 그리고 Norway's Herring Sales Association 등이 있다. 특히 이들 중에서 Norway's Raw Fish Organization과 Norway's Herring Sales Association이 운송비 지원 직접지불 기금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

### 3) 어선감척(허가권 환수) 직접지불(Decommissioning Program)

어선감척(허가권 환수)의 직접지불 수산보조금은 어업자원의 상황에 맞도록 어획능력(어선척수)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속적인 어업관리와 경영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노르웨이 전 업종의 어선들이 직접지불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2001년 이후부터는 선체 28m 이하의 연안 어선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되어 왔다. 하지만 2003년부터는 활용 가능한 어선감척사업 기금의 수가 줄어들어 따라 허가권을 가진 15m 이하의 연안 어선들에게만 지원되어 오고 있다. 특히 2003년 이후의 15m 이하 연안 어선들을 대상으로 한 어선감척사업에 있어서는 잔존 어업인들도 감척 기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체 기금 중 50%를 업계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어선감척(허가권 환수) 직접지불 신청 어업인은 반드시 어업허가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허가권이 환수되면 어업으로의 재진입이 거의 불가능해지게 된다.

2001년부터 2004년 기간동안의 어선감척(허가권 환수) 직접지불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표 2-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지불액 규모는 2002년 다소 감소하였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4년도에는 2003년에 비해 지원규모가 159%나 증가되었다. 행정비용은 전체 기금의 평균 약 2% 미만 수준으로, 직접지불 기금 증대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표 2-3-9] 어선감척(허가권 환수) 직접지불 지원액 변화(2001~2004)

(단위 : 백만 US\$)

	2001	2002	2003	2004
직접지불액(Direct Payment)	2.33	1.96	4.47	11.72
행정비용(Administration Cost)	0.07	0.07	0.08	0.08
합계(Total)	2.40	2.03	4.55	11.80

주 : 2003년부터는 업계가 기금의 50%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은 2003년 2.23백만 US\$ 그리고 2004년 5.86백만 US\$임.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선감척(허가권 환수) 직접지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26건, 2002년 17건, 그리고 2003년도에는 70건으로 2002년에 비해 무려 311%나 증가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어선감척(허가권 환수) 직접지불 지원건수는 노르웨이 어업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2-3-10] 노르웨이 어선감척(허가권 환수) 직접지불 신청건수 및 어선감척수

	2001	2002	2003
어선감척 직접지불 신청건수	36	25	136
감척된 어선척수	26	17	70

#### 4) 연승어업 미끼 직접지불(Support to Long-line Baiting Centers)

연승어업 미끼 직접지불의 수산보조금은 연승어업 조업경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끼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연승어업의 경영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지불내용은 연승 바늘 100개당 US\$1.84가 직접 지불된다. 이 직접지불 보조금은 노르웨이 중앙정부와 어업인 연합회(Fishermen's Association)가 체결한 협약(General Agreement)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관련 행정비용(administration costs)도 이들 기금에서 지출된다. 따라서 직접지불제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질수록 어업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보조금액은 많아질 수 있게 된다.

연승어업 미끼 직접지불은 노르웨이 모든 어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승바늘에 미끼꽂이를 수작업으로 행하는 연승어업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것으로, 노르웨이 북부지방의 연안 연승어선들이 가장 큰 직접지불 대상이 되고 있다. 2001년부터 2004년 기간동안의 직접지불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연승어업 미끼 직접지불액 규모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연승어업 미끼 직접지불의 지원규모가 감소한 원인으로는 2004년부터 연승어업 어획대상종의 TAC가 강화됨에 따라 어업경영의 안정을 위해 연승어선들이 아주 값싼 미끼를 대부분 이용하게 되었고, 또한 인건비 등의 절감을 위해 연승바늘에 미끼를 끼우는 수작업을 기계자동화로 대체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연승어업 미끼 직접지불 수혜자 규모를 살펴봐도 2001년 1,134명에서 2002년 1,085명, 그리고 2003년 1,004명으로 그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표 2-3-11] 연승어업 미끼 직접지불 지원액 변화(2001~2004)

(단위 : 백만 US\$)

	2001	2002	2003	2004
직접지불액(Direct Payment)	2.06	1.82	1.74	0.35
행정비용(Administration Cost)	0.03	0.08	0.07	0.02
합계(Total)	2.09	1.90	1.81	0.37

## 5) 소득지원 직접지불(Compensation Program)

소득지원의 직접지불 수산보조금은 유류관련 산업에 의해 발생한 어구 및 어장 손실 등의 경우 재정적 피해보상을 기다리는 동안 관련 어업인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지불내용은 어구 및 어장의 손실에 따른 어업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리 지불된다.

소득지원 직접지불 대상자는 유류관련 사고에 의해 발생한 재정적 피해를 조사하고 파악하여 노르웨이 수산부에 관련 피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수산부는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어업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적정 지원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최종적인 직접지불금 지원은 어업이사회가 맡아서 수행하게 된다.

[표 2-3-12] 소득지원 직접지불 지원액 변화(2001~2004)

(단위 : 백만 US\$)

	2001	2002	2003	2004
직접지불액(Direct Payment)	0.18	0.10	0.33	0.35
행정비용(Administration Cost)	0.02	0.02	0.02	0.02
합계(Total)	0.20	0.12	0.35	0.37

지금까지 소득지원 직접지불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직접지불액 규모는 2002년 다소 감소하였지만,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3년도의 소득지원 직접지불 지원규모는 2002년에 비해 무려 200%나 증가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2003년도에 비해 약 4% 정도 증가하였다. 행정비용의 경우 소득지원 직접지불 지원규모 변화에 관계없이 약 US\$0.02백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마.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수산보조금 지원규모는 2003년 기준 총 148백만 달러 정도로, 지원규모는 연간 증감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2003년도 수산보조금 지원규모는 1996년도의 약 91% 수준). 수산보조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보조금 유형은 직접지불(direct payments) 보조금으로, 전체 수산보조금 지원액 중 평균 약 6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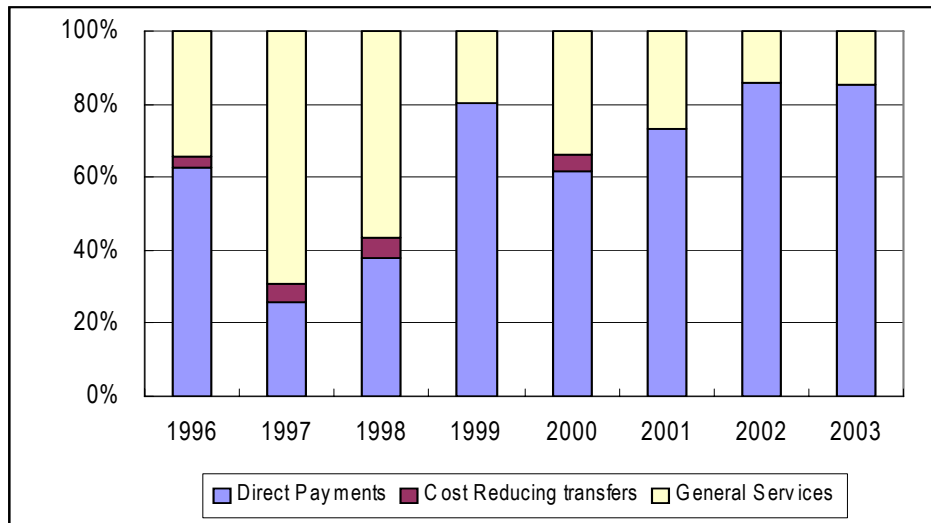
[표 2-3-13] 이탈리아의 수산보조금 유형별 지원액 변화

(단위 : US 천 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직접지불 (Direct Payment)	101,602	23,594	46,022	60,671	92,549	170,237	93,436	126,793
비용절감보조금 (Cost Reducing Transfers)	4,838	4,578	6,615	-	7,107	-	-	-
일반서비스보조금 (General Services)	56,185	63,640	69,018	14,798	50,576	61,444	15,310	21,665
합 계	162,625	91,812	121,655	75,469	150,232	231,681	108,746	148,458

이탈리아의 수산보조금정책은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EU의 구조기금 'FIFG(Financial Instrument for Fisheries Guidance)'에 의해 지원되는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이탈리아 국가 3년간 계획(National Triennial Plans)에 의해 운용되는 프로그램이다. FIFG에 의해 지원되는 보조금 내용에는 어선감척사업, 어선 현대화, 어업 자원 보전, 양식업, 어항시설, 어획물의 가공 및 유통, 영세어업, 새로운 시장개발, 기술개발 등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반해 National Triennial Plans에 의해 지원되는 보조금에는 금어기간의 소득보전 보조금, 어업피해에 따른 소득보전 보조금, 마케팅 촉진에 관한 보조금, 이자환급, 어업관리, 조사연구 보조금 등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산보조금 중 직접지불(direct payment)의 비중은 1997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 이탈리아 수산부문에 직접지불의 지원종류로는 어선감척(허가권 환수) 직접지불, 사회경제적 지원 직접지불, 금어기간 소득보전 직접지불, 그리고 어업분야 피해보전 직접지불 등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2-3-5] 이탈리아 수산보조금 유형별 지원액 비중의 변화

### 1) 어선감척 직접지불(Decommissioning Scheme)

어선감척의 직접지불 수산보조금은 어업자원의 상황에 맞도록 어획능력(어선척수)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어업관리와 경영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탈리아 전 업종의 어선들이 어선감척 직접지불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우선권은 연안 트롤어업에 있다. 그리고 어선감척 직접지불의 대상으로 되기 위해서는 선령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2001년부터 2004년 기간동안의 어선감척(허가권 환수) 직접지불 예산과 지급액 변화를 살펴보면, 직접지불 예산은 2003년까지 감소하였지만, 2004년도에 다소 증가되었다. 하지만 지급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금까지 감척된 어선척수는 총 1,764척이다.

[표 2-3-14] 어선감척 직접지불 예산 및 지급액 변화(2001~2004)

(단위 : 천 US\$)

	2001~2002	2003	2004
예산(Budget)	160,032	35,305	49,082
지급액(Payments)	81,463	79,036	20,682
지급율(%)	50	223	42

### 2) 사회경제적 지원 직접지불(Socioeconomic measures)

사회경제적 지원 직접지불제는 조기 은퇴한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업인들이



어업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어선을 처음으로 소유한 젊은 어업인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원 직접지불을 수혜할 수 있는 대상(어업인)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어선을 소유하고 있고, 최소 과거 12개월 동안 어업활동에 종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어업인

둘째, 과거 최소 5년 기간 이상 어업활동에 종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어업인

셋째, 처음으로 어선을 소유하고, 과거 최소 5년 기간 이상 어업활동에 종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35세 미만의 어업인(선체의 크기가 평균 7~24m이어야 하고, EU 어선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어선의 소유권 이전이 동일한 가족 사이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됨)

2000년부터 2004년 기간동안의 사회경제적 지원 직접지불 예산과 지급액 변화를 살펴보면, 직접지불 예산과 지급액이 모두 증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2004년도 예산이 2000~2003년도에 비해 약 175% 정도 증가되었으며, 지급액은 2000~2003년 기간동안 행해지지 않고, 2004년도에 미화 479천 달러가 행해져 2000~2004년 기간동안의 지급율은 약 42% 정도였다.

[표 2-3-15] 사회경제적 지원 직접지불 예산 및 지급액 변화(2000~2004)

(단위 : 천 US\$)

	2000~2003	2004
예산(Budget)	299.35	826.57
지급액(Payments)	-	479.24
지급율(%)	-	57

### 3) 금어기간 소득보전 직접지불(Compensation for Closed Seasons)

금어기간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어획노력량 수준을 일정 기간동안 감축시켜 어업자원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탈리아에서는 국가 자원회복계획(National Recovery Plan) 하에서 특히 저층 및 표층 트롤어업에 대한 금어기간을 설정하여 어업자원의 회복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금어기간 설정을 통한 어획노력량 통제는 어업자원의 회복에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특히 복수어업관리에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어기간 소득보전 직접지불 대상어업으로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탈리아 전

업종의 어선들이 될 수 없고, 저층 및 표층 트롤어선만이 대상으로 될 수 있다. 금어기간은 매년 어종의 산란시기에 따라 달리 설정되는데, 주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그리고 어종에 따라서는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설정된다.

2001년부터 2004년 기간동안의 금어기간 소득보전 직접지불 예산과 지급액 변화를 살펴보면, 직접지불 예산은 2002년에 비해 2004년도에 다소 감소하였고(약 38% 정도), 지급액 규모도 2002년에 비해서 2004년도에 감소하였다(약 28%).

[표 2-3-16] 금어기간 소득보전 직접지불 예산 및 지급액 변화(2001~2004)

(단위 : 천 US\$)

	2001	2002	2003	2004
예산(Budget)	-	25,823	-	16,005
지급액(Payments)	-	12,938	-	9,299
지급율(%)	-	50.1	-	58.1

#### 4) 어업분야 피해보전 직접지불(Compensation for Damage to the Fishery Sector)

어업분야 피해보전에 대한 직접지불의 수산보조금은 자연재해나 해양환경의 예외적인 부정적 영향 등으로 어업분야에 있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특히 어업분야 피해보전 직접지불은 이탈리아 국가 3년간 계획(National Triennial Plans)에 의해 운용되는 수산보조금 직접지불 프로그램으로, 자연재해나 해양환경의 예외적인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수산분야 모든 업종이 직접지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표 2-3-17] 어업분야 피해보전 직접지불 예산 및 지급액 변화(2001~2004)

(단위 : 천 US\$)

	2001	2002	2003	2004
예산(Budget)	3,462	1,456	3,890	5,095
지급액(Payments)	-	901	268	1,016
지급율(%)	-	61.9	6.9	19.9



2001년부터 2004년 기간동안의 어업분야 피해보전 직접지불 예산과 지급액 변화를 살펴보면, 직접지불 예산은 2002년도에 다소 감소하였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급액은 2002년 미화 901천 달러에서 2003년 미화 268천 달러로 감소하였지만, 2004년에는 미화 758천 달러로 다시 증가되었다.

## 바. 스웨덴

스웨덴의 수산보조금 지원규모는 2003년 기준 총 약 31백만 달러 정도로, 지원규모는 연간 증감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수산보조금 지원액은 감소한 반면, 이후부터는 증가추세에 있다(2001년 19백만 달러 → 2003년 31백만 달러). 수산보조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보조금은 일반서비스보조금(general services)으로 전체 수산보조금 지원액 중 평균 약 8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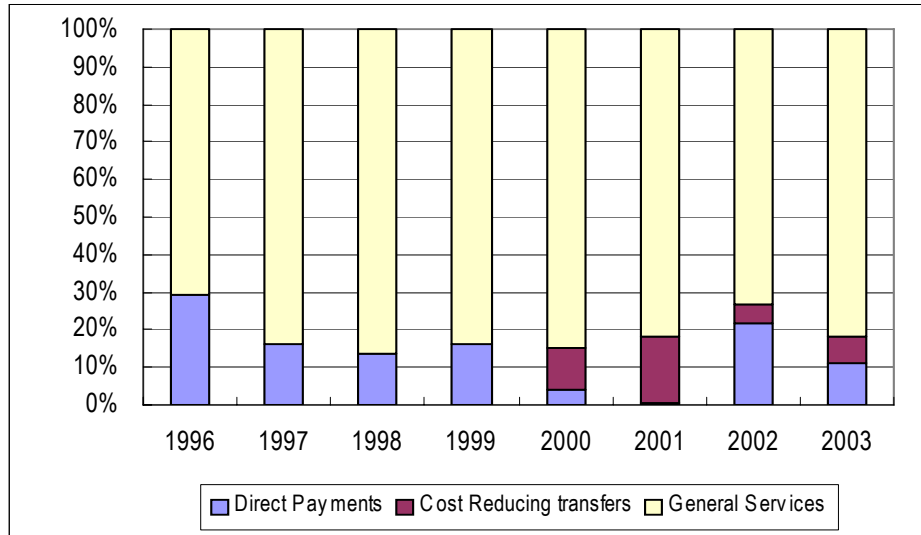
스웨덴의 수산보조금정책은 대부분 EU의 구조기금 ‘FIFG(Financial Instrument for Fisheries Guidance)’ 프로그램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수산보조금정책의 주된 목표는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도모하고,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경영의 안정, 자연산 및 양식산 어획물의 부가가치 향상, 그리고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두고 있다. FIFG에 의해 지원되는 스웨덴 수산보조금 범주로는 크게 자본 및 하부구조 지원 보조금(어선 현대화 보조금, 어항기반시설 보조금), 직접지불, 마케팅 및 가격지지 보조금, 어업관리 및 보존 보조금(어업기술개발 보조금, 어업관리 보조금, 자원조성 보조금, 어업감시 및 통제 보조금 등) 등이 있다.

[표 2-3-18] 스웨덴의 수산보조금 유형별 지원액 변화

(단위 : US 천 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직접지불 (Direct Payment)	18,256	8,574	3,723	4,231	852	87	5,062	3,342
비용절감보조금 (Cost Reducing Transfers)	-	-	-	-	2,358	3,317	1,142	2,203
일반서비스보조금 (General Services)	44,064	44,878	23,236	22,312	17,893	15,580	16,955	25,099
합 계	62,320	53,452	26,959	26,543	21,103	18,984	23,159	30,644

보다 구체적으로 수산보조금 중 직접지불(direct payment)의 비중은 연간 증감변화를 반복하고 있는데, 전체 수산보조금 지원액 가운데 약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스웨덴 수산부문 직접지불의 지원종류로는 크게 비고용보험 직접지불, 소득보전 직접지불, 그리고 어업구조조정 직접지불 등이 있다.



[그림 2-3-6] 스웨덴 수산보조금 유형별 지원액 비중의 변화

비고용보험 직접지불은 금어기간과 같이 특정 기간동안 조업활동을 중단하거나 혹은 허가권 환수 등 영구적인 조업활동 중단, 그리고 조기 은퇴한 어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소득보전 직접지불 보조금은 휴어제 실시에 따른 어업소득 보전이나 관련어업 붕괴 등에 따른 어업인들의 재정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어업구조조정 직접지불 보조금은 어업이나 양식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소득지원이나 어구개량 등 관련비용 지원 등의 목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 사. 프랑스

프랑스의 수산보조금 지원규모는 2003년 기준 총 약 179백만 달러 정도로, 지원규모는 연간 증감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수산보조금 지원액은 감소한 반면, 이후부터는 다소 증가추세에 있다(2000년 156백만 달러 → 2003년 179백만 달러). 수산보조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보조금은 일반서비스보조금(general services)으로, 전체 수산보조금 지원액 중 평균 약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수산보조금 정책은 EU의 구조기금 ‘FIFG(Financial Instrument for Fisheries Guidance)’ 프로그램과 자국내 보조금 프로그램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데, 수산보조금 정책의 주된 목표는 EU의 공동어업정책이나 다른 EU 회원국들의 수산보조금 정책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도모하고,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경영의 안정, 자연산 및 양식산 어획물의 부가가치 향상, 그리고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두고 있다.

프랑스의 수산보조금 범주로는 크게 직접지불(Direct Assistance to Fishers and Fisheries Workers), 자본 및 하부구조 보조금(Capital and Infrastructure Support Programmes), 그리고 어업관리 및 보존 보조금(Fisheries Management and Conservation Programmes)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자본 및 하부구조 보조금 하에서는 어선 현대화 보조금, 어항시설개발 보조금 등이 있으며, 어업관리 및 보존 보조금 내역에는 새로운 어업기술개발 보조금과 어업관리 및 통제 등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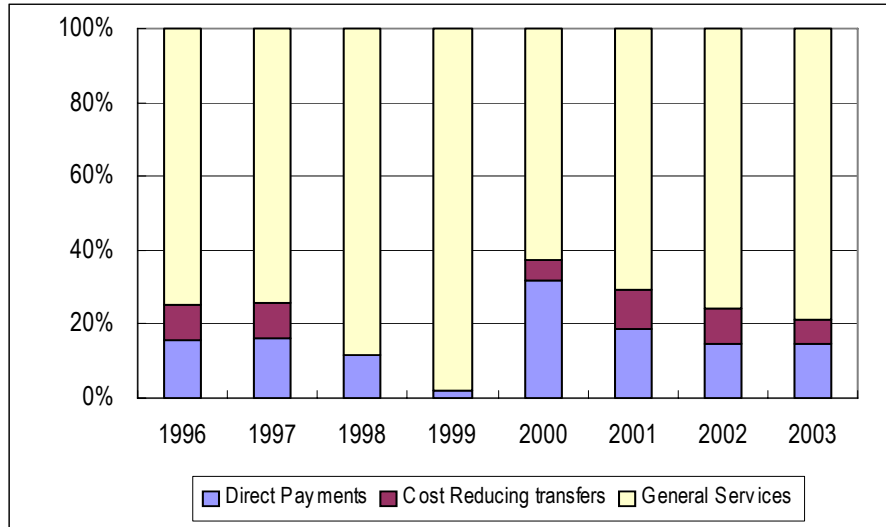
[표 2-3-19] 프랑스의 수산보조금 유형별 지원액 변화

(단위 : US 천 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직접지불 (Direct Payment)	25,060	22,497	11,942	1,553	49,817	23,750	20,943	25,955
비용절감보조금 (Cost Reducing Transfers)	15,245	13,685	-	-	8,716	14,018	14,151	11,910
일반서비스보조금 (General Services)	117,889	104,625	88,750	70,112	97,706	90,625	108,868	140,899
합 계	158,194	140,807	100,692	71,665	156,239	128,393	143,962	178,764

프랑스의 수산보조금 중 직접지불(direct payment)의 비중은 연간 증감변화를 반복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1999년까지 크게 감소되었다가 이후 2000년에 크게 증가한 뒤 다시 감소추세에 있다(2003년도 수산보조금 지원규모는 1996년도의 약 104% 수준). 그리고 전체 수산보조금 지원액 가운데 직접지불의 비중은 약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수산부문 직접지불제는 소득보전 직접지불(Income Support Programmes)로, 이는 휴어제 실시에 따른 어업소득 보전이나 관련어업 붕괴 등에 따른 어업인들의 재정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림 2-3-7] 프랑스 수산보조금 유형별 지원액 비중의 변화

## 아. 스페인

스페인의 수산보조금 지원규모는 2003년 기준 총 약 504백만 달러 정도로, 지원규모는 연간 증감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수산보조금 지원액은 감소하였지만, 2003년도 504백만 달러로 1998~2002년 평균에 비해 무려 89% 정도 증가하였다. 수산보조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보조금은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직접지불(direct payments)로 전체 수산보조금 지원액 중 평균 약 4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스페인의 수산보조금 정책은 EU의 구조기금 ‘FIFG(Financial Instrument for Fisheries Guidance)’ 프로그램과 국내 보조금 프로그램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데, 수산보조금 정책의 주된 목표는 EU의 공동어업정책이나 다른 EU 회원국들의 수산보조금 정책의 목적과 동일하게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 도모, 어업구조조정을 통한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업경영 안정, 어획물의 부가가치 향상, 그리고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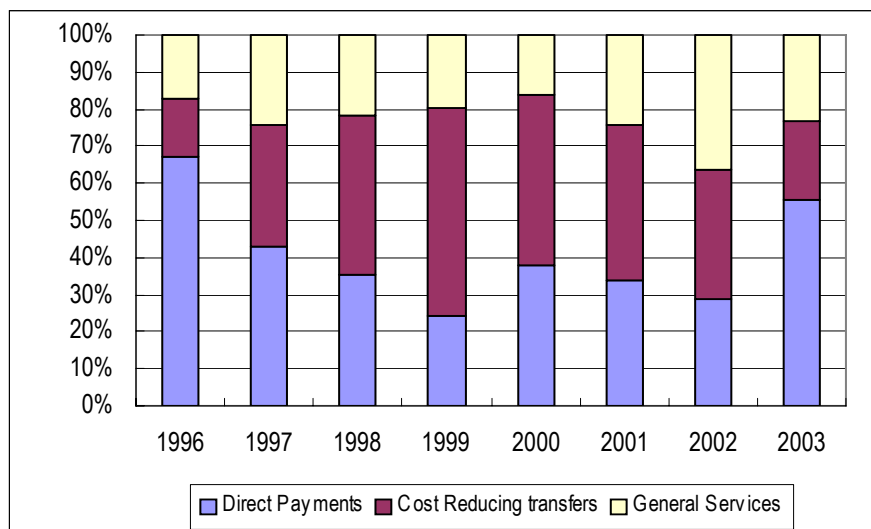


[표 2-3-20] 스페인의 수산보조금 유형별 지원액 변화

(단위 : US 천 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직접지불 (Direct Payment)	165,987	104,540	104,416	71,464	108,484	90,563	53,458	279,627
비용절감보조금 (Cost Reducing Transfers)	38,247	80,358	127,695	166,400	130,996	113,881	65,564	107,907
일반서비스보조금 (General Services)	42,241	59,683	64,530	58,608	46,208	64,702	67,760	116,272
합 계	246,475	244,581	296,641	296,472	285,688	269,146	186,782	503,806

스페인의 수산보조금 범주로는 앞서 프랑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크게 직접지불(Direct Assistance to Fishers and Fisheries Workers), 자본 및 하부구조 보조금(Capital and Infrastructure Support Programmes), 그리고 어업관리 및 보존 보조금(Fisheries Management and Conservation Programmes)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본 및 하부구조 보조금 하에서는 제3국 수역 일시적 혹은 영구적 합작투자 지원을 위한 보조금, 어항시설개발 보조금, 신조선 건조를 위한 보조금(2004년까지), 어선 현대화를 위한 보조금 등이 있다. 그리고 어업관리 및 보존 보조금 내역으로는 새로운 어업기술개발 보조금, 어업관리 보조금, 어업통제 보조금, 어업조사 보조금, 자원조성(artificial reef, marine reserves) 보조금 등이 지원되고 있다.



[그림 2-3-8] 스페인 수산보조금 유형별 지원액 비중의 변화

스페인의 수산보조금 중 직접지불(direct payment)의 비중은 연간 증감변화를 반복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1999년까지 크게 감소되었다가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2003년도 수산보조금 지원규모는 1996년도의 약 168% 수준). 스페인의 수산부문 주요 직접지불에 의한 지원으로는 조기 은퇴 직접지불, 소득보전 직접지불(Income Support Programmes), 어선감척(허가권 환수) 직접지불 지원 등이 있다.

여기서, 조기 은퇴 직접지불은 스페인 수역 내 관련어업의 붕괴 위기에 대한 어업인들의 소득지원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 지원, 그리고 해당어업에 대한 의존도 감소를 주된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소득보전 직접지불은 자원회복계획 하의 어업자원의 회복을 목표로, 휴어제 실시 등에 따른 어업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어선감척 직접지불은 어업자원의 상황에 맞도록 어획능력(어선척수)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속적인 어업관리와 경영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 자.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수산보조금 지원규모는 2003년 기준 총 약 68백만 달러 정도로, 지원규모는 연간 증감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원액 규모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감소추세에 있는데, 2003년도 지원수준은 1996년에 비해 약 61% 수준이다. 수산보조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보조금은 일반서비스보조금(general services)으로 전체 수산보조금 지원액 중 평균 약 92% 정도(1996~2003 평균)를 차지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수산보조금 정책은 EU의 구조기금 ‘FIFG(Financial Instrument for Fisheries Guidance)’ 프로그램과 국내 보조금 프로그램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데, 수산보조금 정책의 주된 목표는 EU의 공동어업정책이나 다른 EU 회원국들의 수산보조금 정책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 도모, 어업구조조정을 통한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업경영 안정, 어획물의 부가가치 향상, 그리고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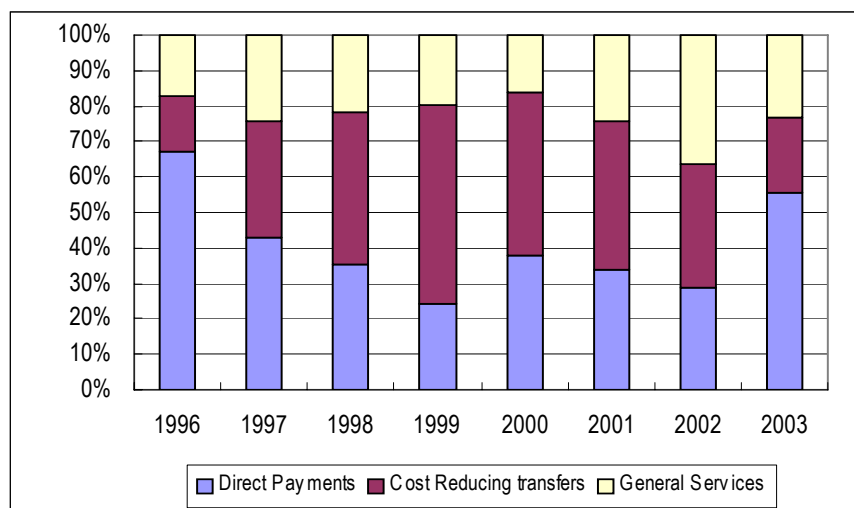


[표 2-2-21] 아일랜드의 수산보조금 유형별 지원액 변화

(단위 : US 천 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직접지불 (Direct Payment)	5,314	4,446	3,268	2,026	2,437	3,043	3,925	6,416
비용절감보조금 (Cost Reducing Transfers)	2,877	2,597	3,371	3,191	2,752	2,679	2,830	3,371
일반서비스보조금 (General Services)	104,482	91,836	105,037	112,926	82,447	65,700	54,057	58,539
합 계	112,673	98,879	111,676	118,143	87,636	71,422	60,812	68,326

아일랜드의 수산보조금 범주로는 다른 EU 회원국들과 거의 유사하게 크게 직접지불(Direct Assistance to Fishers and Fisheries Workers), 자본 및 하부구조 보조금(Capital and Infrastructure Support Programmes), 그리고 어업관리 및 보존 보조금(Fisheries Management and Conservation Programmes)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본 및 하부구조 보조금 하에서는 어항시설개발 보조금, 어선 현대화를 위한 보조금 등이 있다. 그리고 어업관리 및 보존 보조금 내역으로는 새로운 어업기술개발 보조금, 어업관리 보조금, 어업통제 보조금, 그리고 어업조사 보조금 등이 지원되고 있다.



[그림 2-3-9] 아일랜드 수산보조금 유형별 지원액 비중의 변화

아일랜드의 수산보조금 중 직접지불(direct payment)의 비중은 연간 증감변화를 반복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2002년까지 크게 감소되었다가 이후 2003년도에 크게 증가되었다(2003년도 수산보조금 지원규모는 1996년도의 약 121% 수준). 아일랜드의 수산부문 주요 직접지불의 보조금은 어선감척(허가권 환수) 직접지불, 영세어업 지원 직접지불, 그리고 소득보전 직접지불 등의 보조금이 있다.

여기서 어선감척(허가권 환수) 직접지불 보조금은 어업자원의 상황에 맞도록 어획능력(어선척수)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속적인 어업관리와 경영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영세어업(small fisheries) 지원 직접지불은 연간 영세어업의 어업상황 변화에 따른 소득안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소득보전(direct aid) 직접지불은 자원회복계획 하 등의 어업자원의 회복을 목표로 휴어제 실시 등에 따른 어업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차. 일 본

일본의 수산보조금 지원규모는 2003년 기준 총 약 2,312백만 달러 정도로, 지원규모는 연간 증감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수산보조금 지원액은 감소하였고, 이후 2000년도에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다시 감소경향에 있다. 2003년도 수산보조금 총 지원액은 1996~2002년 평균의 약 87% 수준이다. 수산보조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보조금은 일반서비스보조금(general services)으로 전체 수산보조금 지원액 중 평균 약 9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2-3-22] 일본의 수산보조금 유형별 지원액 변화

(단위 : US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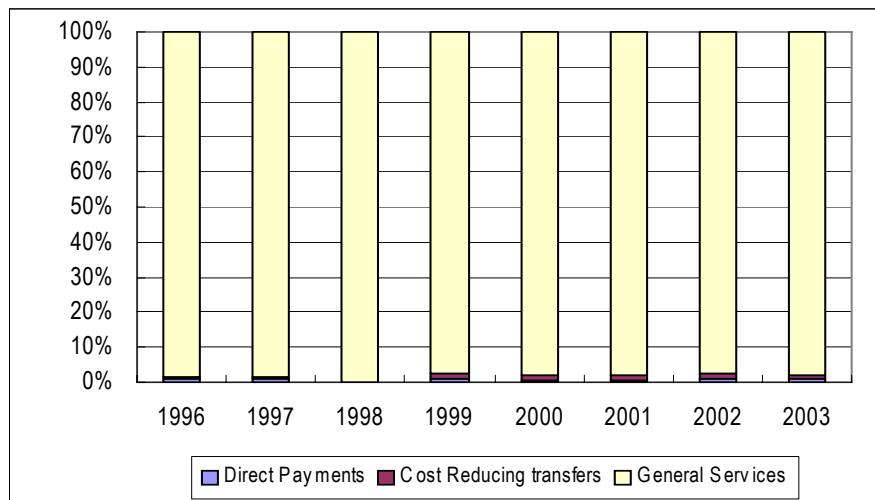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직접지불 (Direct Payment)	27,568	24,793	-	26,341	19,010	16,875	27,090	18,121
비용절감보조금 (Cost Reducing Transfers)	27,017	21,818	-	35,122	37,491	32,178	30,387	25,556
일반서비스보조금 (General Services)	3,131,777	2,899,174	2,135,946	2,476,073	2,807,057	2,483,149	2,266,124	2,267,983
합 계	3,186,362	2,945,785	2,135,946	2,537,536	2,863,558	2,532,202	2,323,601	2,311,660



일본의 수산보조금 범주로는 크게 직접지불(Direct Payment), 비용절감보조금(Cost Reducing Transfers), 그리고 일반서비스보조금(General Services)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용절감보조금 중에서 지원금액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저리의 영어자금 용자와 어선 및 어구장비 현대화에 대한 지원 등이다. 특히 여기서 저리의 영어자금 용자의 경우는 연안어업의 구조조정을 목표로 지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안 영세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어선 및 어구장비 현대화 보조금은 연안 영세어업의 조업조건 개선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이 보조금 지원으로 어획능력이 증강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있다(이미 일본에서는 어선척수 및 어선의 규모가 허가권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임).

수산보조금 총 지원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서비스보조금 중 일부는 연안어업 기반시설 조성에 지원되고 있다. 즉, 어항의 신설이나 확장, 다른 연안어업관련 시설물들의 신축에 활용되고 있다. 이 외의 일반서비스보조금의 내역으로는 어업통제 및 관리, 어업조사, 정보수집, 교육, 국제기구의 부담금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행해지고 있다.

일본의 수산보조금 중 직접지불(direct payment)의 비중은 연간 증감변화를 반복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2001년까지 감소되었다가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2003년도 수산보조금 지원규모는 1996년도의 약 66% 수준). 일본의 수산부문 주요 직접지불의 보조금으로 어선감척 직접지불, 소득보전 직접지불(Income Support Programmes), 환경친화적 어구개량 직접지불 등이 있다.



[그림 2-3-10] 일본 수산보조금 유형별 지원액 비중의 변화

어선감척 직접지불 보조금은 어업자원의 상황에 맞도록 어획능력(어선척수)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속적인 어업관리와 경영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소득보전 직접지불은 자원회복계획 하의 어업자원의 회복을 목표로, 휴어제 실시 등에 따른 어업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친화형 어구개량 직접지불제 역시 자원회복계획 하의 어구개량이 필요할 경우 폐어구 처분에 대한 비용지원과 새로운 어구구입에 대한 경영비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 3. 시사점

국제적으로 수산부문에 있어 수산자원의 회복, 어획능력의 감축, 환경친화형 어업구조조정, 그리고 지속적이고 경영안정적인 어업경영의 실현을 위해 직접지불의 수산보조금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가격지지나 비용절감 수산보조금 등의 경우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등에 따라 제한 혹은 금지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접지불의 수산보전제의 유용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직접지불의 보조금의 경우 다른 보조금 정책수단에 비해 자원배분을 최대한 왜곡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어 WTO 세계 수산업 개혁을 위한 시장지향성 목표에 잘 부합되는 정책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WTO 농업협정문에서도 일정 조건을 부가하여 직접지불제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산부문 직접지불 보조금으로는 어선감척 및 허가권 환수에 대한 직접지불, 비고용보험, 은퇴자 및 재교육에 대한 직접지불, 금어기·조업기간 단축 및 휴어기에 대한 소득보전 직접지불, 재난구호 직접지불, 영세어업 소득보전 직접지불 등이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수산자원회복 및 어업구조조정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어선감척 및 허가권 환수에 대한 직접지불, 소득보전 직접지불, 친환경어업을 위한 직접지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세계 각국이 적정 어획능력 수준에 맞춘 어업자원의 회복 및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어업구조조정을 위해 직접지불제를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도 적정 어획능력 수준에 맞춘 어업자원의 회복과 어업경영안정을 위한 어업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수산자원회복계획(recovery plan)을 통한 어업자원 회복을 도모해 나가고 있으며, 어선감척사업 등 어업구조조정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원활히 도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산보조금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외국의 사례와 같이 직접지불의 수산보조금 즉 수산보전제를 적극 활용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WTO/DDA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가 인하되고, 기존의 각종 수산 보조금 수단이 금지되어 경영안정적인 어업소득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업 자원을 회복시키고, 어획능력을 증강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어업소득 보전을 위한 수산보전제를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인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해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산업의 부정적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국토보전, 지역사회의 유지 등 수산업의 다면적 기능을 최대화하도록 유인하는 수단으로서 수산부문에 있어 직접지불의 수산보전제를 적극 활용해 가야 한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어업 및 양식업의 기술개발, 친환경적 어구개발 및 개량, 어선의 노동조건 향상 등을 위해서도 수산보전제를 적극 활용하여 수산부문의 구조조정을 보다 촉진시키는 등 세계 수산선진국들의 수산보조금정책 변화에 맞추어 직접지불제를 적극 도입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제4절 수산보전제 세부시행방안 검토

어가, 어업인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지원하는 수산보조금을 직접 지불하는 형태를 가지는 수산보전제는 자원보전기능, 환경보전기능 그리고 공익적 기능 등의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의 다양한 유형의 구체적 사업이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1차년도 연구의 결과 도출된 수산보전제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수산보전제 중에서 정책적으로 시행 가능한 수산보전제에 대한 세부시행 사업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여기에서 검토대상의 수산보전제는 6개로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 ‘친환경부표(부자) 수산보전제’, ‘재해예방 수산보전제’, ‘고령어가은퇴 수산보전제’, ‘어장휴식 수산보전제’ 그리고 ‘휴어 수산보전제’ 등이다.

그리고 각 보전제별 세부시행을 위한 사업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는데 이는 수산보전제를 정책적으로 도입하여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였을 때 어떠한 기준, 절차 그리고 방법 등이 필요한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고자 하며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입의 필요성

둘째, 추진방안

- 사업목적, 사업내용(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기준 및 수준, 근거법 및 관련 규정)

셋째, 추진방식

- 단계별로 추진하며 시범사업 실시 후 본 사업 실시 등의 추진년도 제시
- 대략적 소요예산 및 재원검토
- 집행주체 및 사업추진 절차 검토

넷째, 기대효과

다섯째, 고려 및 건의사항

### 1.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

#### 가. 도입의 필요성

수산업과 어촌은 국민 식생활의 기초가 되는 수산물을 생산하는 것 이외에도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국경감시, 재난재해 구조기능, 전통문화의 계승 등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나라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주요한 산업과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산업을 주 생산기반으로 하는 어촌지역은 농촌,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정



주기반 여건과 낮은 생산성 등 소위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어촌인구 및 어업종사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저소득 등으로 어촌지역사회의 존립마저 위태롭다. 수산업과 어촌이 가지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촌주민의 지역이탈을 방지하고 지역수산업의 존속을 위한 직접지불에 의한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분야에서는 농가소득보전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2003년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여 2006년 도서지역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업인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대부분의 연안촌락의 경우 반농반어의 현실에서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방안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수산업분야의 조건불리지역 지원은 일본의 “離島어업재생지원교부금”이 있으며, 이는 수산업·어촌의 다면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를 시행하고자 할 때 연안어촌 중에서 조건불리지역을 선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현재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통일된 명확한 개념은 없다. 다만, 농업의 경우에는 경지조건(경사도 등)과 사회적조건(인구밀도, 소득수준 등)을 포함시켜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EU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은 크게 산악지역, 일반조건불리지역, 특별헨디캡지역으로 대별되며 그 지정구분 기준은 [표 2-4-1]과 같다.

이러한 조건불리지역 선정기준에 관한 농업 및 EU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연안어촌의 조건불리지역 선정 또는 지정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표 2-4-1] EU의 조건불리지역 지정기준

구 분	지정구분 기준
산악지역	토지이용 가능성에 상당한 제한이 있고, 노동 코스트가 상당히 높은 특징을 가지는 다음 각각의 지역 ① 해발 및 어려운 기후조건에 의해 작물의 생육기간이 상당히 짧은 것 ② 기계사용이 어렵고, 고액의 특별한 기계사용이 필요한 급경사지가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등
일반조건불리지역	다음의 모든 특성을 가지는 지역 ① 생산성이 낮고, 경작에 부적합한 토지의 존재 ② 자연환경에 기인하여 농업의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주요지표에 관해서 생산이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것 ③ 인구의 가속적인 감소로 해당지역의 활력 및 정주의 유지가 위협해지고 있는 지역
특별헨디캡지역	홍수가 정기적으로 일어난 소지역 2000년부터 환경규제지역 포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건불리지역 발농업 직접지불제 세부 시행방안, 2002.

## 나. 추진방안

### 1) 사업목적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의 목적은 어업여건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해 어가경제 안정 및 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어촌내 조건이 불리한 지역 즉 취약지역(낙도, 오지 등)에서 어업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국가가 직접 지불에 의해 지원하는 수산보전제로 조건불리지역과 비조건불리지역 간의 어업소득 격차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 2) 사업내용

#### (1) 지원대상

조건불리지역 도입의 필요성에서도 언급했듯이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를 추진하고자 하면 이 제도의 대상 즉 지원대상을 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연안어촌 중에서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어업생산성이 낮은 조건불리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대안1과 대안2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대안1을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의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 ① 대안 1 :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의 취약지역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의 지원대상으로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의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 및 어촌공동체, 어업인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에 의하면 취약지역의 분류기준은 교통통신이 불편한 낙도,<sup>10)</sup> 벽지<sup>11)</sup> 및 접경지역내 위치한 어촌지역을 의미하고 있어 연안어촌 중에서 조건불리지역에 해당된다. 이러한 조건불리지역의 취약지역은 311개·311개 어촌개로 전남 170개, 경남 62개, 인천 28개, 전북 21개, 충남 15개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대부분은 서남해안의 도서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2005년도 수협의 ‘어촌계분류평정’에 의하면 311개 취약지역에는 311개 어촌계가 위치해 있고 어촌계에 가입하고 있는 어가수는 2006년 현재 12,123개로 집계되고 있다. 조건불리지역은 311개이며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 지원 대상은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12,313어가라 할 수 있다.

10) 낙도는 교량이나 제방에 의하여 연속되지 아니한 도서(면단위 이하 도서)

11) 벽지는 정기교통수단이 없거나 1일 편도 3회 이하 운행하고 있고 군·면사무소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지역



[표 2-4-2] 대안 1: 취약지역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소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강원	제주
취약지역	311	-	28	2	3	15	21	170	62	4	-	6
어가수*	12,123											
시		-	-	-	2	2	1	2	4	2	-	2
군		-	2	-	-	3	2	8	2	2	-	-
구		-	1	1	-	-	-	1	-	1	-	-
읍		-	-	-	1	1	-	4	1	-	-	2
면		-	8	-	1	6	3	29	12	3	-	1
동		-	-	-	-	-	1	3	3	-	-	-
리		-	24	-	2	13	19	151	32	4	-	6

자료 : 수협, 어촌계분류평정 2005. 12

주 : 단, 어가수는 2006년 자료의 결과임.

## ② 대안 2 : 도서개발촉진법상 “지정도서”의 어가 및 어촌공동체

조건불리지역 선정의 대안2로서 ‘도서개발촉진법상’ 지정도서의 어가 및 어촌공동체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지정도서란 10인 이상 상시 거주도서 및 10인 미만이라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도서로 단, 육지와 연결된 지 10년 지난 도서는 제외된다. 이러한 기준을 가진 지정도서는 육지에서 떨어져 있어 생활 및 교통의 불편 등 정주여건이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총유인도서 492개소 가운데 도서개발촉진법상 지정도서는 410개소로 총 가구수는 91,313개로 나타났다.

[표 2-4-3] 대안 2 : 지정도서 현황(2004년 12월 기준)

(단위 : 개소, 개, 명)

구분	도서수	총가구수	총인구	비고
총유인도서	492	278,720	833,493	-
비지정도서	82	187,407	570,502	-
지정도서	410	91,313	262,991	-

## ③ 검토결과

대안 1과 대안 2는 지리적, 경제적 불리성을 감안하였으나 취약지역은 육지와 도서의 구분 없이 조건불리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지정도서의 경우에는 도서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육지의 조건불리지역을 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입지 및 경제적 여건의 관점에서 볼 때 지정도서의 경우는 조건불리지역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취약지역의 경우에는 지정도서에 비해 조건불리지역의 개념이 더 명확하고 비조건불리지역과의 어업소득차액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기초자료 등이 있어 지원금액을 산출하기 용이한 점 등이 있다. 따라서 취약지역을 조건불리지역 즉 지원대상 지역으로 삼고자 한다. 이들 지원대상 지역이 정해지면 동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와 어촌공동체 즉 어촌계가 세부적인 지원대상이 된다.

그러나 수협중앙회의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에 있는 취약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할 경우 손쉽게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동일 권역에 해당하는 취약지역일지라도 인근 지역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보다 정밀한 조사 및 검토를 통해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의 대상과 규모를 새로이 정해야 할 것이다.

## (2) 지원조건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의 지원조건은 수산업·어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측면과 다원적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측면에서 국가가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장관리, 경관보전, 재난구호, 지역활성화 등을 위한 대상 어업인의 의무부여가 필요하다. 조건불리지역과 같은 공익적 기능의 수산보전제는 수혜자에게 일정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일반국민(납세자)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전년도 불법어업 3회 이상 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어업인의 기본적인 의무를 강화하는 조건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농업의 조건불리지역과 일본의 조건불리지역 지원에 있어서도 이러한 지원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표 2-4-4]와 같다.

[표 2-4-4] 조건불리지역 지원조건 비교

구 분	농업(한국)	수산업(일본)
지원조건	<필수의무> - 농지관리의무(최소한의 생산 유지) - 마을공동기금조성(보조금의 30%) <선택의무> - 마을활성화 실천(마을협약서 작성)	- 종묘방류 - 산란장, 육성장 정비 - 수질유지개선 - 해안해저청소 - 어장감시 등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 시행과 관련하여 예시로 지원조건인 의무사항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어업인의 경우는 어업질서 준수(불법어업 3회이상시 지원대상 제외), 해안청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지원대상이 어촌공동체 즉 어촌계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고 우리나라 농업사례처럼 마을협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원조건으로 의무사항 등을 대략적으로 제시하였는데 향후 사업으로 시행할 때는 이러한 지원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정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 (3) 지원방법 및 수준

#### ① 지원기준 및 수준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의 지원기준 및 수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기준은 조건불리지역과 비조건불리지역의 어가평균 어업소득의 차액을 지원한다.

둘째, 지원금에 해당하는 어가평균 어업소득 차액을 어가와 어촌계에 나누어 지원한다.

셋째, 지원수준은 어가와 어촌계의 분배비율을 3:7로 한다. 즉 어가는 어가평균 어업소득 차액의 30%, 어촌계는 70%를 지원받게 된다.

#### ② 산출방법

앞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수준 등을 근거로 하여 산정방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필요로 하는 기초 자료는 지원대상으로 어가 및 어촌공동체 수, 지원기준의 어가소득 및 어업소득자료 등이다.

여기에서는 예시적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 지원금의 산출방법을 2006년도 자료를 기초로 하여 검토해 본다. 2006년도 조건불리지역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 [표 2-4-5]인데 이 현황을 통하여 지원금 산출방법에 필요로 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구할 수 있다. 즉 조건불리지역의 어가수와 어촌계수 그리고 어가평균소득차액 등의 자료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소득 자료는 어업소득 자료인데 조건불리지역의 어업소득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에서는 구할 수 가 없다. 따라서 우선 조건불리지역의 어가평균소득차액을 구하고 난 다음 어업소득차액을 구해야 한다.

[표 2-4-5] 조건불리지역의 현황(2006)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득	어가 수	어촌계 수	어가 평균소득	어가평균소득차액 (a)-(b)
조건불리지역 (취약지역)	6,737,535	12,123	310	21,734(a)	△1,204
비조건불리지역 (비 취약지역)	38,054,553	151,624	1,659	22,938(b)	

자료 : 수협, 어촌계분류명정 2006. 12

어가소득은 어업소득, 어업외 소득, 이전소득 그리고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산식으로 표시하면 어가소득 = 어업소득 + 어업외소득 + 이전소득 + 비경상소득 이다. 이 산식에서 어업소득을 구할 수 있다.

단, 조건불리지역의 어가는 전업어가와 겸업어가로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여 소득차액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전업어가의 어업소득 차액은 어가 평균소득차액에서 비경상소득과 이전소득을 뺀 차액으로 산출하고, 겸업어가의 어업소득 차액은 어가 평균소득차액에 통계청 발표 어업소득비중을 곱하여 산출한다. 전업, 겸업어가, 어업소득,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등의 비율은 통계청의 어가경제통계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표 2-4-6] 참조).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 지원단가(2006년 기준) 산출방법 : 예시〉

- 전업어가의 평균어업소득 차액(881천원) = 어가 평균소득차액(1,204천원) - 어가 평균소득차액 × [(비경상소득분(17.7%) + 이전소득분(9.1%)]
- 겸업어가의 평균어업소득 차액(466천원) = 어가 평균소득차액(1,204천원) × 통계청 발표 어업생산소득비중(38.7%)
- ※ 어가소득 = 어업소득 + 어업외 소득 + 이전소득 + 비경상소득



[표 2-4-6] 어가소득의 구성과 비율

구 분	비율(%)	정 의
전업어가	31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어업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어가
제1종 겸업어가	35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어업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어가로 어업총수입이 어업외 수입(겸업수입 및 사업외 수입)보다 많은 어가
제2종 겸업어가	34	영리를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상 어업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어가 중 어업총수입이 어업외수입보다 적은 어가
어업소득	38.7	어업총수입에서 어업경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어가의 당해연도 어업생산 활동의 최종 성과이며, 투입된 생산요소에 대한 총소득을 의미
어업외소득	34.5	어가가 어업외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성과로서 겸업소득과 사업외 소득을 합산한 금액
이전소득	9.1	어가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경상적 수입으로서 공적보조금, 사적보조금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
비경상소득	17.7	어가가 비경제활동으로 얻은 수입 중 비경상적인 수입으로서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재산수증

자료: 통계청, “어가경제통계”. 2007.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의 지원은 크게 어가소득 지원과 어촌공동체 지원으로 대별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 전체 지원금액을 산출하여 어가소득 지원은 30%, 어촌공동체 즉 어촌계지원은 70%로 나누면 된다.

어촌공동체 지원금의 활용은 어촌소득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사업과 어촌복지 서비스 제공 등 마을공동사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 (4) 근거법 및 관련규정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40조를 들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는 국내지원 정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이다. 제11조를 인용하면, ①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출품에 대한 신용보증과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등 협정이 허용하는 수출시장개척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1. 생산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 2. 영세농 등을 위한 보조 3.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에 대한 보조 4. 농림수산업 재해에 대한 지원 5.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가 있다.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40조는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과 관련된 사항이다. 제40조에 의하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농업소득이 낮은 농산어촌(이하 “조건불리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건불리지역의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경관보전활동, 농산어촌관광,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3) 추진방식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는 '08년부터 '17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해 본다. 사업추진단계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1단계는 2008년에 행정조사 등 세부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다. 2단계는 2009년도에 Database를 구축하고, 3단계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마지막 4단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본 사업을 실시하되 매년 또는 3년마다 지원대상 규모 등을 새로이 보정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검토한 지원기준, 지원수준 및 지원 단가 등을 자료로 하고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대략적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해 보면 [표 2-4-7]과 같다.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의 총 소요예산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508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소요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로 그 재원이 조달되는데 본사업과 시범사업의 총 소요예산 491억원 중 국비가 444억 원(90%), 지방비가 47억 원(10%)으로 검토되었다.

#### 〈추진방식〉

- 시행주체 : 지자체, 해양수산부
- 사업기간 : 2008년 ~
  - '08~'09년 : 세부사업 방안마련
  - '10년~'11년 : 시범사업 실시(2년)
  - '12년 이후 : 본격적인 사업 추진
- 사업규모 : 조건불리지역(취약지역) 311개소
- 대략적인 소요예산(추정) : 508억원
  - 행정조사 등 용역(2008년) : 5억원
  - DB화 등 행정비용(2009년) : 12억원
  - 시범사업(2010~2011년) : 132억원(어가소득보전, 공동체 지원, 사업평가 및 행정비)
  - 본 사업(2012~2017년) : 359억원(어가소득보전, 공동체 지원, 사업평가 및 행정비)



[표 2-4-7] 단계별 대략적 소요예산 추정(안)

(단위 : 억 원)

년 도	금 액	산출 근거
합 계	508(461)	
2008	5(5)	○ 행정조사 등 용역 5억원
2009	12(12)	○ database 구축 등 행정비용 12억원
2010~2011	132(120)	○ 어가소득 보전 : 2,162백만원(국비1,513, 지방비 649) - 전업어가 : 993백만원 = 3,758가구×881천원×30% - 겸업어가 : 1,169백만원 = 8,365가구×466천원×30% ○ 공동체 지원 : 3,954백만원=12,123가구×466천원×70% ○ 사업평가 및 행정비 : 500백만원
2012~2014	248(224)	○ 어가소득 보전 : 1,937백만원(국비1,356, 지방비 581) - 전업어가 : 819백만원 = 3,100가구×881천원×30% - 겸업어가 : 1,118백만원 = 8,000가구×466천원×30% ○ 공동체 지원 : 3,621백만원=11,100가구×466천원×70% ○ 사업평가 및 행정비 : 500백만원
2015~2017	111(100)	○ 어가소득 보전 : 1,735백만원(국비 1,214, 지방비 521) - 전업어가 : 687백만원 = 2,600가구×881천원×30% - 겸업어가 : 1,048백만원 = 7,500가구×466천원×30% ○ 공동체 지원 : 3,294백만원=10,100가구×466천원×70% ○ 사업평가 및 행정비 : 50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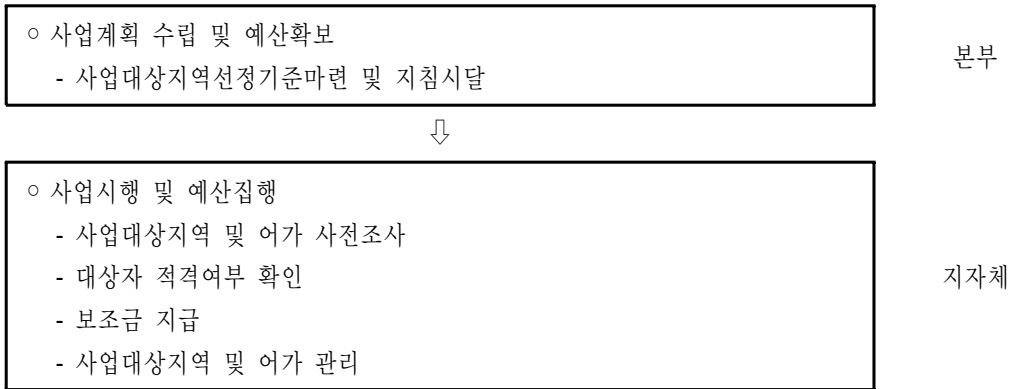
주:( )는 국비

### (3) 집행주체 및 사업추진 절차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의 집행주체 및 사업추진 절차는 어가소득보전과 어촌공동체 지원으로 분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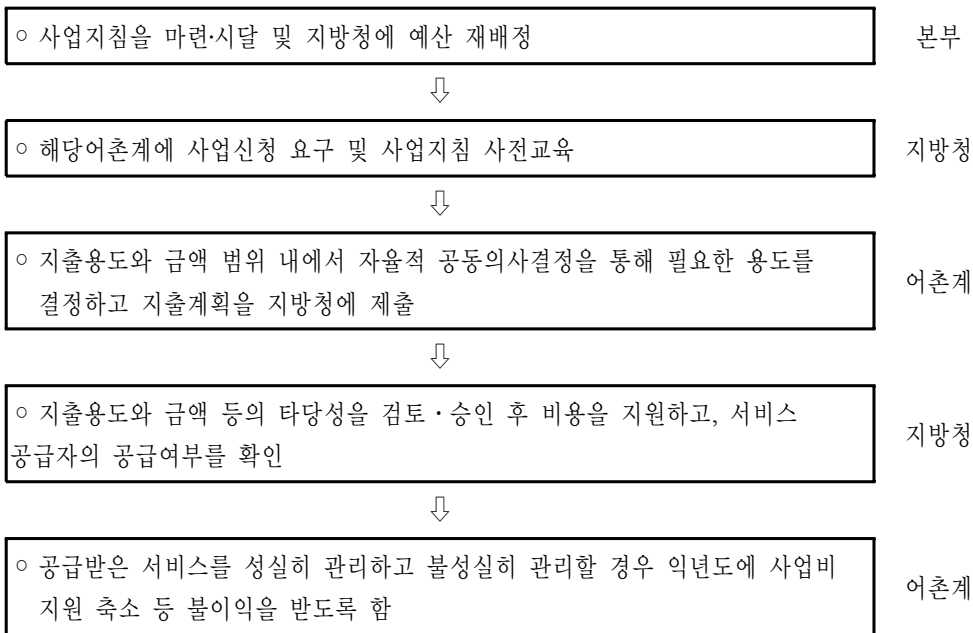
#### ① 어가소득 지원

어가소득 보전의 사업시행주체는 지자체로 다음과 같은 추진절차를 통해 사업을 시행한다.



② 어촌공동체 지원

어촌공동체 지원의 사업시행주체는 해양수산부(지방청)로 다음과 같은 추진절차를 통해 사업을 시행한다.



다. 기대효과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는 어업여건이 열악한 조건불리지역의 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조건불리지역내 어촌공동체의 유지·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라. 고려 및 건의사항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가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대상어가 선정과 관련하여 면허, 허가, 신고어업의 포함여부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고어업 포함여부 등 대안 1<sup>12)</sup>, 대안 2<sup>13)</sup>를 놓고 지방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뿐 일관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4-8]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에 대한 조건해양수산부(지방청) 의견 수렴 결과

구분	제1안	제2안	비고
대산청	○		개인면허 배제 내수면 지원방안 강구
인천청		○	합동평가단(민관) 구성하여 대상어를 선정하는 방안마련 요구 신고어업들이 실제 어업종사 여부에 대해 전문컨설팅을 통해 성과와 책임소재 강화 필요성
울산청	○		수산보전 지원대상지역이 매립 및 간척 등으로 인해 마을어장이 소실된 형식적인 어촌계의 경우 어가소득은 지원하되 어촌공동체소득지원 배제 검토 요구
부산청		○	별도의견 없음
평택청	○		각종 간척사업과 국가시책사업 등으로 인하여 연안환경조건이 불리한 지역도 본 지원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
동해청		○	별도의견 없음
마산청		○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개념 불명확 (시군단위, 읍면동 단위, 마을단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필요) 도서지역이 많은 경우 주소지는 섬이지만 학교 및 생활여건상 인근 시내에 거주하는 사례가 많음
목포청		○	1안 : 진도, 강진 2안 : 목포, 완도, 영광, 해남
포항청		○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를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자료 공유
합계	3	6	여수청, 군산청 미응답

12) 면허, 허가의 등록 어업인으로 한정

13) 면허, 허가, 신고 등록 어업인

[표 2-4-9]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에 대한 시도 의견수렴 결과

구분	제1안	제2안	제출의견
강원도		○	조업사실 확인 필요 신고어업 중 나잠어업 포함 면허, 허가, 신고어업 중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 대상
경상남도		○	내수면 어업계 포함 요구 일정규모 이상의 어업소득자는 지원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지원형태 → 국비 100% 어가소득지원 및 어촌공동체 소득지원의 사업시행주체는 지자체(시군)에서 담당
충청남도	○		1안 : 보령, 논산, 천안, 부여, 태안 2안 : 서산, 서천, 당진
경기도		○	별도의견 없음
전라북도		○	별도의견 없음
부산광역시		○	별도의견 없음
울산광역시	○		별도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		면허, 허가에 우선 시범실시 후 점진적으로 신고어업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 마련하여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	별도의견 없음
합계	3	6	전라남도, 경상북도 미응답

둘째, 사업 지원대상의 재분류 및 대상자 리스트 Database화가 필요하다. 수협중앙회의 어촌계분류평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취약지구는 그 입지적, 경제적 여건상 형평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세부적인 검토가 추후 필요하다. 사업 지원대상의 재분류가 이루어지면 지원대상자의 리스트가 체계적으로 Database화 되어야 하며, 그 대상은 개별어가와 어촌공동체로 나누어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어촌공동체 지원사업의 세부 시행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촌공동체 지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 소프트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원기준의 합리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어가평균 어업소득의 차액을 매년 어촌계분류평정을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지 직접 실태 조사한 결과의 활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친환경부표(부자) 수산보전제

### 가. 도입의 필요성

연안 양식어장을 중심으로 한 스티로폼 부표(부자)의 파손으로 인해 수거가 힘든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어 해양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스티로폼 부표는 그 자체가 파도에 노출되어 있어 파도, 태풍 및 어업활동으로 잘 부서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스티로폼 부표 중에서도 고밀도 스티로폼의 경우에는 저밀도 스티로폼에 비해 잘 부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서질 때 파편이 크게 형성되어 해양쓰레기의 수거시 용이한 점이 있다. 그러나 저밀도 스티로폼의 경우에는 잘 부서져서 교체시기가 짧을 뿐 아니라 밀도가 낮아서 부서질 때 파편이 작게 형성되어 수거가 거의 불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관상으로도 저밀도 스티로폼의 지속적인 사용은 해양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식어장용 부표는 1995년도에 기술표준원에서 산업표준규격을 정하였으나, 당시 유통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표준화하였기 때문에 강도가 낮은 실정이고, 양식어장용 부자의 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표준규격보다 낮은 제품을 유통하더라도 규제가 곤란한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장관리법 5조의 개정으로 2011년 이후에는 저밀도 스티로폼 부표의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어업인들은 고밀도 스티로폼 부표를 당연히 사용해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해양쓰레기 수거비용을 줄이고, 수거가 힘든 종류의 해양쓰레기를 만들어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밀도 스티로폼에서 고밀도 스티로폼 사용을 유도하고, 향후 더 높은 단계의 친환경 부표로의 이행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지방자치단체 이양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량부자 보급사업이 지역에 따라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표와의 가격차이 및 새로운 양식기자재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저밀도 스티로폼에서 고밀도 스티로폼 부표로의 이행과 고밀도 스티로폼에서 피복부표로의 이행 등 단계적인 친환경 양식부표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개량부자 사업으로 개량부자로의 교체를 희망하는 어업인에게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실시하여 궁극적으로 어민 전체가 친환경부표를 사용하도록 하는 목표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친환경부표 지원사업과 개량부자 보급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재 연안 양식어장에서 사용되는 부표의 양은 무려 27백만 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스티로폼 부표의 사용량은 23백만 개(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약 15%의 부표는 합성수지제(PVC, PE), 합성수지피복제, 나무, 드럼통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에는 스티로폼 부표 중에서도 고밀도 스티로폼 부표의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고밀도 스티로폼 부표 사용자는 30%에 불과<sup>14)</sup>한 것으로 나타나서 고밀도 스티로폼으로의 이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10] 품종별 부표 사용량 추정

품종별	면적(ha)	소요량(개/ha)	사용규격(ℓ )	총소요량(천개)
굴·홍합	6,212	670	32	4,108
김	52,749	364	62	19,201
우렁챙이	1,802	660	40~62	1,101
기타해조	15,047	44	40	662
어류	1,300	400	300~400	520
정치망	7,142	200	70~100	1,428
합 계	77,140			27,020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 나. 추진방안

### 1) 사업목적

친환경부표 수산보전제는 연안 양식어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스티로폼 조각 등 해양쓰레기 문제의 일정 부분을 해소하여 해양의 심미적 가치를 유지하도록 양식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연안 양식 어업인이 어장에서 사용되는 양식어업용 스티로폼 부표의 구입 시 환경오염을 저감 시킬 수 있는 일정한 규격의 스티로폼으로 대체하기 위해 지불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어업인에 의한 규격제품 부표사용 의무의 이행을 촉진하여 연안 어장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4)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 2) 사업내용

### (1) 지원 대상

#### ① 양식 어업인(1안)

친환경부표 수산보전제는 고밀도 스티로폼의 사용을 통해 연안의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연안에서 스티로폼 부표(부자)를 사용하여 양식하는 어업인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때 어업인은 양식면허를 가지고 당해 연도에 실제 양식어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굴·홍합, 김, 우렁챙이, 기타해조류, 어류, 정치망 등 품목 및 어업방식과는 상관없지만, 양식용 부표(부자)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이어야 한다.

#### ② 스티로폼 부표 생산업자(2안)

친환경부표 수산보전제가 어업용 부표로 생산되는 스티로폼의 고밀도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것이 친환경부표를 이용하게 하는 중요한 목표이므로 스티로폼 부표 생산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현재 스티로폼 생산업체는 약 20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업체 중에서 공모를 통해 스티로폼 부표 생산업체로 해양수산부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 대상으로 한다.

#### ③ 1안)과 2안)의 비교

친환경부표 수산보전제의 지원 대상을 2안)과 같이 인증된 스티로폼 부표 생산업체로 하게 되면, 지원 및 관리가 용이하고 저밀도 스티로폼을 고밀도 스티로폼으로 속여서 파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수산보전제의 도입사유가 자원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제도도입의 본래적인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어업인의 소득보전에 있으므로 어업인이 아닌 스티로폼 부표(부자) 생산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은 수산보전제의 도입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부표 수산보전제의 지원 대상을 어업인으로 할 경우 기존의 개량부자보급사업 시스템과 동일하게 시행할 수 있어 사업 추진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

### (2) 지원 조건

지원조건은 1안)과 2안)의 검토 결과, 2안)의 경우 수산보전제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어업인의 소득보전이라는 측면의 정책효과가 반감할 수 있으므로 지원 조건과 관련하여서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1안)에 대해서만 고려하였다.

이와 같이 어업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첫째, 친환경부표 수산보전제는 실



제 양식시설에 사용된 부표를 고밀도 스티로폼으로 교체하여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직접적으로 양식업을 행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둘째, 해당 어업인은 친환경부표 교체를 위한 신청서(품종, 면적, 부표수량)를 시군에 제출해야 하고, 어업인으로서 시군의 승인물량에 대해서 지정 부표 생산업자에게서 물량을 구입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서를 읍면에 제출하면 읍면은 군(수산조정위)에서 계약확인을 하여 어촌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지정부표 생산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티로폼 부표 생산업체는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업체로서 기업의 건전성 및 생산가능 시설 유무가 확인된 생산업체여야 하고, 지자체별 어업인 수요조사의 결과로 파악된 연간 필요 수량만큼의 고밀도 스티로폼 부표를 생산하고, 밀도에 대한 무작위 샘플 검사를 통과한 업체이어야 한다.

### (3) 지원 방법 및 수준

친환경부표 수산보전제는 1차적으로 저밀도 스티로폼 부표를 고밀도 스티로폼 부표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고밀도와 저밀도 부표의 가격차이 만큼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해당 양식장에 사용되는 부표의 크기가 상이하고,  $l$  당 가격차이가 상이하므로 지원의 형평성을 위해서 시군별 할당 예산에 따라서 어업인의 수요 물량을 파악하여 지원 시에는 각 개인별로 한정된 재원안에서 교체할 부표의 크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가장 대표적인 양식장 부표인 60 $l$  를 기준으로 볼 때, 기존 저밀도 스티로폼 ( $0.020g/cm^3$  이하) 부표의 가격은 약 3,000원이고, 고밀도( $0.020g/cm^3$  이상) 스티로폼 부표의 가격은 3,700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당 평균 가격 차이는 약 70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장관리법 개정(2006. 12. 28)으로 어업인의 친환경부표 사용은 의무사항이지만, 본 지원제도의 목적이 어업인의 사용의무를 촉진하여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와 개인의 책무가 동시에 있으므로 지원수준을 국고 70%, 지방비 20%, 개인 10%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2011년까지 단기간 동안의 어업인의 고밀도 스티로폼으로의 이행촉진이 본 사업의 목표이므로 개인의 부담을 없애고 국비 70%, 지방비 30%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어장관리법〉

제5조(어장부표의 규격)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어구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부표(이하 “어장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1. 발포 부표(폴리스타일렌 부표)의 경우 파손을 줄일 수 있는 고밀도(0.020g/cm<sup>3</sup> 이상) 제품
2. 비발포 부표의 경우 경제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합성수지를 재료로 성형(成形)하거나 피복(被服)된 제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하여 어업인에게 보급되는 친환경 개량 부표

② 제1항에 따른 어장부표에는 규격, 부피, 밀도 및 제조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격이 표시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4) 근거법 및 관련규정

친환경부표 수산보전제는 기르는어업육성법 제6조(자금의 보조 등)에 기르는 어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규정, 제6조 (자금의 보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자원조성 또는 양식어장의 개발·확충 등 기르는 어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규정, 어장관리법 제25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5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여 줄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WTO의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자원보호 및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급은 예외로 인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 3) 사업추진방식

친환경부표 수산보전제의 사업기간은 2009년~2011년까지로 하고, 이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는 2012년부터는 고밀도 스티로폼의 사용이 의무규정이므로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항을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 때문이다. 따라서 본 사업은 2009년부터 3개년 간 시행되므로 이 기간 중에는 친환경부표의 개념을 저밀도 스티로폼에서 고밀도 스티로폼으로의 전환의 개념으로 사업을 지속하고, 2012년 이후에는 법적인 의미의 친환경부표 사업이 아닌 스티로폼 부표에서 타재질의 부표 또는 피복부표 등으로의 진화된 친환경부표로의 이행을 위한 수산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09~2011년까지의 사업 중에 전체 부표를 교환하여야 하므로 양식용 부표(부

자) 23백만 개 중 1년간 매년 40%씩 교체하도록 하여 100% 고밀도 스티로폼으로 교체하고, 태풍 및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3년간 약 20%의 여유를 두도록 한다. 현재의 보완대책으로 나온 예산으로는 전체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다고 해서 선택적으로 친환경 부표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보다는 사업예산을 늘려서 전체적으로 한번 고밀도 스티로폼으로 교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사업은 사업시행 주체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70%와 30%로 할 필요가 있다.

#### 〈추진방식〉

- 사업기간(2008년~)
  - 2008년 : 사전 자료 확보 및 DB화
  - 2009~2011년 : 1단계 본사업 실시
  - 2012년 이후 : 2단계 본사업 실시
- 사업규모 : 양식용 부표(부자) 23백만 개 중 1년간 매년 40%씩 교체
- 대략적인 소요예산(추정)
  - 사전 자료 확보 및 DB화 (2008년) : 1억원
  - 1단계 본사업(2009~2011년) : 193억원(연간 64억원)
    - 총사업비 = 스티로폼 부표 사용량(230백만 개) × 교체율(30%) × 저밀도 스티로폼과의 단가차이(700원)
  - 2단계 본사업(2012년 이후) : 연간 32억원
    - 2단계 사업부터는 단가차이의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사업의 추진방법에 있어 사업계획의 수립은 사업 집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수요조사, 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 세부 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신청자격은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상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필하고 친환경부표로 교체하고자 희망하는 양식경영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어촌계, 영어조합법인)로 한정하며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업주관기관이 친환경부표 대체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전체 교체물량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예산상의 제약을 감안하여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희망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친환경부표 수산보전제의 사업에 있어서 사업 집행주체(지자체)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 추진상황을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 까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 집행주체(지자체)는 사업 성과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매 반기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을 위한 관련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비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1부(양식장 면적 및 부표사용 물량)
- 부표생산공장과의 구입계약서 1부(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어업인의 경우)
- 판매증명서 1부(어구 생산업체로 지정된 경우)

#### 다. 기대효과

친환경부표 수산보전제의 도입을 통해 저밀도 어업용 스티로폼 부표를 일정 규격제품으로 교체하여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어업인의 규격제품 부표 사용의무이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어장관리 의무 강화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어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가 예상되며, 저밀도 스티로폼 부표 사용량 감축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 라. 검토사항 및 건의사항

친환경부표 수산보전제와 관련된 검토사항 및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한미 FTA 보완대책으로 제시된 친환경부표 수산보전제는 기한을 2011년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지원이 중단된 이후 법적인 근거만을 가지고 어업인들이 친환경부표 사용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가 의문시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2011년 이후 친환경부표 사용이 의무화 되었을 때, 저밀도 스티로폼 사용여부를 해상에서 확인하기 힘든 측면이 있으므로 스티로폼 부표 생산업체에게 친환경 스티로폼 부표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 등 식별장치를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친환경부표 수산보전제의 개념을 첫 단계 사업에서는 고밀도 스티로폼 부표로의 변화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그 다음은 스티로폼 부표에서 다른 재질의 부표로의 변환을 통해 환경오염을 없애는 방안으로 확대시켜서 2012년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부표 수산보전제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한 절차는 기존의 개량부자 지원사업과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되므로 별도의 시행준비 사항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전체 수산보전제의 지원금액 및 어가당 지원정도, 향후 양식부표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품종별 ha 당 부표사용 정도 및 부표의 종류 등에 대한 DB화를 통해 사업이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DB화는 사업시작 전 친환경부표 물량 수요조사 시에 실시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 3. 재해예방 수산보전제

#### 가. 도입의 필요성

어촌은 기상조건에 매우 민감한 지역이면서 자연재해에는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 특히 여름철 태·폭풍 내습시 피항여건이 좋지 못한 도서지역의 연근해어선은 피항에 따른 과도한 경비지출 또는 대피항 부족으로 인해 피항을 갈 수 없어 어선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울릉도와 같은 경우는 태풍내습시 포항지역으로 피항을 가게 되는데 1회 피항시 척당 150~2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매년 평균 3회 정도의 태풍이 온다고 볼 때 피항으로 인한 경비가 매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도서지역 5톤 미만 소형선박의 경우에는 멀리 피항을 갈 수도 없고 인양기 시설이 부족하여 육지로 대피시키기도 쉽지 않아 그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4-11] 태·폭풍으로 인한 어선피해현황 (2000~2005)

(단위 : 척, 백만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척수	피해액	척수	피해액	척수	피해액	척수	피해액	척수	피해액	척수	피해액
계	1,147	7,546	53	999	851	10,187	5,831	34,785	31	581	63	848
부산	15	90	-	-	14	141	896	10,643	-	-	9	129
인천	27	735	-	-	-	-	-	-	-	-	-	-
울산	7	10	-	-	2	41	49	128	7	67	9	73
강원	1	8	2	4	43	772	3	4	-	-	2	6
경기	66	330	8	6	36	171	-	-	2	12	-	-
충북	1	0.4	-	-	8	12	-	-	10	20	-	-
충남	82	951	-	-	15	180	-	-	-	-	1	6
전북	217	1,543	-	-	44	555	2	16	-	-	-	-
전남	518	3,162	41	266	260	2,456	272	1,330	12	133	-	-
경북	5	4	-	-	5	77	72	133		40	34	431
경남	181	642	-	-	315	3,023	4,480	22,144		301	8	202
제주	27	71	2	722	109	2,757	57	388		8	-	-



태·폭풍과 같은 자연재해는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재산피해와 복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대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표 2-4-11]에서 나타나듯 태·폭풍 내습으로 인한 어선피해는 연도별,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피해규모는 수 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고 있어 재해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개인과 국가 모두 공동의 책무가 있으므로 재해에 대한 사전예방 시스템 강화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 내습하는 태풍은 지구 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태풍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어 기 조성된 피항기능 어항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타 지역으로 피항을 가는 어선이 늘어남에 따라 어업인들의 어업외경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 나. 추진방안

### 1) 사업목적

재해예방 수산보전제의 목적은 피항기능을 갖추지 못한 열악한 (도서)지역에 태·폭풍 등 자연재해가 예상되어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타 지역으로 피항을 가는 어선에 한해 발생한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매년 불가피한 어업외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어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어업인의 인명피해를 예방하는데 있다.

### 2) 사업내용

#### (1) 지원대상

재해예방 수산보전제의 지원대상은 「피항기능을 갖추지 못한 열악한 (도서)지역에 태·폭풍 등 자연재해가 예상되어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피항을 가는 연근해어선」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피항 기능을 갖추지 못한 열악한 (도서)지역일 경우라도 대피항이 인근지역 즉, 어선으로 1시간 미만 운항거리 또는 20km 이내의 지역으로 피항을 가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근지역으로 피항하는 어선을 지원대상에 포함할 경우 많은 행정적·재정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해예방 수산보전제의 지원대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로 실태조사를 실

시하여야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입지여건상 타 지역으로 피항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그 내용은 [표 2-4-12]와 같다.

[표 2-4-12] 주요 시군별 피항 실태조사 결과(예시)

(단위 : 척, km, 천원)

구분	피항척수	피항거리	피항시간	1회 척당 대략적 소요경비
울릉군	183	220~240	-	1,500~2,000
신안군	-	-	-	-
진도군	-	-	-	-
완도군	64	20	1~2시간	300~400
통영시	87	10~12	1시간	300~400

주) 해당지역의 어촌계장 명부를 토대로 전화조사에 응답한 결과만을 정리한 것임

## (2) 지원조건

재해예방 수산보전제의 지원조건은 불법어업의 실적이 최근 1년 동안 없는 연근해어선 가운데 다음의 2가지 요건을 제출한 선박소유자에 한해 지원토록 한다. 첫째, 출항의 목적이 태풍을 피해 외부로 대피하는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출항 신고서류(출발항과 대피항이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함)와 피항기간내 지출한 유류비, 숙박비, 식비 영수증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영수증은 반드시 본인이 지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신용카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 (3) 지원방법 및 수준

재해예방 수산보전제의 지원수준은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개인의 책무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는 모든 선박(어선포함)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하고 개인은 어선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공동의 책무가 있는 것이다. 국가와 개인의 공동책무를 고려하여 「피항 기능을 갖추지 못한 열악한 (도서)지역에 태·폭풍 등 자연재해가 예상되어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피항을 가는 연근해어선」이 소요하는 제반경비 즉, 유류비 등 소요경비의 50~80% 정도를 국가가 수산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첫째, 유류비는 대피항까지의 왕복 유류비를 의미하며 면세유 기준(약 100,000원/드림)으로 적용한다. 단, 피항 후 즉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류비의 1/2만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둘째, 숙박비는 1인 40,000원을 적용하되, 태풍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 어선의 운항이 가능한 시점까지 적용한다. 셋째, 식비는 1인 3회, 5,000원으로 적용한다. 또한, 5톤 이하 소형어선들의 경우에는 피항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어항의 배후 육지로 이양할 수 있는 시설의 지원요구가 있어 이를 검토하였으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어항내 이양기 설치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 수산보전제를 통한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한편, 기상여건에 따라 지원되는 재해예방 수산보전제는 그 빈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다른 기상여건에 비해서 어선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태풍의 내습빈도는 약 3회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원수준을 태풍의 내습빈도 3회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

[표 2-4-13]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수(1904~2004년)

(단위 : 횟수)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연평균
횟수	-	-	-	-	2	20	89	119	78	8	-	-	316	3.1

자료 : 기상청(www.kma.go.kr)

- ① 대안1 : 당해 연도 최초 1회에 한해 소요경비의 80%를 지원하고 2회부터는 소요경비의 60%를 지원하는 방안

지원수준을 3회로 한정하되 최초 1회는 수산보전제 보조금의 지급비율을 80%로 함으로써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2번째와 3번째는 보조금의 지급비율을 60%하는 방안이다.

- ② 대안2 : 당해 연도 3회에 한해 소요경비의 60%를 지원하는 방안

지원수준을 3회로 한정하되 수산보전제 보조금의 지급비율을 균등하게 60%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재해예방에 대한 국가와 개인의 책무가 동등하게 있다는 전제하에서 제시된 것이다.

#### (4) 근거법 및 관련규정

태·폭풍과 같은 자연재해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한 지원 등의 근거법령으로는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 해양수산부 「재난관리업무처리규정(훈령)」에서 정하고 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제5조에서는 태풍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와 개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 등의 책무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동법 제3조제5호의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한편 국민의 책무로는 국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의 「자연재난관리업무처리규정」제6조, 제7조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재난예방조치, 선박대피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6조에서는 재난예방조치로 재난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수산소관시설에 대하여 자연재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 매년 5월말까지 본부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 1. 공사장(사업장)방재활동을 수행할 시설별 방재(수방)단 설치지원 2. 해양수산시설 방재를 위하여 현장에서 독려활동을 수행 할 현장 독려반 편성 3. 방재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방재용 물자의 비축 및 정비 5.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개량 및 방재대책 강구 6. 소관시설에 대한 재해예방점검 및 취약개소 시정 조치 7. 자연재해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8. 그 밖에 재해의 예방을 위한 「자연재해특별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관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 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시설에 대한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기상악화 예상시 해양수산시설 재해예방을 위하여 기상정보 전파 및 선박(어선포함) 안전대피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선박대피분과위원회는 재박선박(어선포함)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지방청장소속하에 선박대피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선박대피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지방청의 선박대피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해양수산담당공무원,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장, 한국해안조합지부장, 한국선주협회지부장, 수협중앙회 담당과장, 도선사, 선박대리점업자, 예선업자, 선박소유자 등 해양수산관계자 중 지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선박대피분과위원회는 다음사항을 협의·수행한다. 1. 재박선박(어선포함)의 재해예방 및 안전대피에 관한 사항 2. 선박대피시기 및 대피장소 지정 3. 선박대피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 3) 사업추진방식

재해예방 수산보전제의 사업시행은 '08년부터 '17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사업추진 단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되며, 1단계는 2008년 시범사업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후 2009년에는 시범사업을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다른 수산보전제 보다 도입에 따른 준비과정이 용이하고 사업시행의 목적이 분명하며,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가 예산투입 규모에 비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2단계는 2009년에 시범지역 1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해 봄으로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3단계 2010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해예방 수산보전제의 시행주체는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추진하되 그 재원은 전액 국비로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연간 약 5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매년 태·폭풍으로 발생하는 어선피해규모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이를 예방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 〈추진방식〉

- 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기간(2008년~)
  - 2008년 : 세부사업방안 마련
  - 2009년 : 시범사업 실시(1년)
  - 2010년 이후 : 본사업 실시
- ※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재해예방 수산보전제 추진의 문제점 검토 및 시행기반 조성
- 재원확보 : 국비 100%
- 사업규모 : 3,643척
- 대략적인 소요예산(추정) : 455억원
  - 사전 자료 확보 및 DB화(2008년) : 5억원
  - 시범사업(2009) : 10억원
  - 본사업(2010년 이후) : 연간 55억원
    - 총사업비 = 지원대상어선수(3,643척) × 해당 소요예산 추정비(84만원) × 지원율(60%) × 태풍내습빈도 3회
- ※ 연간 도서지역어선의 10%(약 3600여척)를 지원대상으로 가정하여 추정한 금액임

## 다. 기대효과

재해예방 수산보전제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피항기능의 어항개발과 사후 피해보상 보다는 사전예방에 수산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 태풍의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되는 추세에서 사전예방을 통한 어선피해 최소화는 국가적으로 매우 주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연중 3회 이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잦은 피항으로 어업외경비가 어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되었으나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분담함으로써 어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재해예방 지원을 통해 낙후지역 어업인의 어업경영여건에 큰 도움이 예상된다.

## 라. 고려 및 건의사항

재해예방 수산보전제가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어선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피항기능을 갖추지 못한 열악한 (도서)지역에서 대피항이 어선으로 1시간 이상의 운항거리 또는 20km 이상의 지역으로 피항을 가는 연근해어선의 조사를 통해 DB화가 필요하다. 사업주체(해당 시군구)가 지원대상을 파악하고 지원대상의 어선이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대피를 목적으로 지출한 소요경비를 지급하는데 지원대상의 DB화는 필수적인 자료로 사업 시행 전에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지원대상의 Database는 사전에 대상자를 신청받아 이를 토대로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며, 그 자료는 선적항, 대피항, 선적항과 대피항까지 소요시간 및 거리, 선주명, 톤급 등 세부적인 자료를 DB화 하여야 한다.

둘째, 피항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입출항 신고서, 지출경비 영수증은 사후 정산을 위한 확인서류로 이를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추후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태·폭풍 등의 기상악화로 피항을 가는 경우 6월~10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행정비용의 절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당해연도 지원규모를 파악하고 차기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방안도 추후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4. 고령어가은퇴 수산보전제

### 가. 도입의 필요성

최근 수산업의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어가의 경영환경 악화, 어업소득의 정체, 어촌사회의 양극화 문제 등으로 영세한 고령어가의 생활유지 및 노후대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고령 어업인을 어업현장에서 은퇴시키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어촌에서 안정된 노후생활과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농업부문에서는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규모화 촉진을 위한 직접지불제’가 도입되었으며, 1999년에 ‘경영이양직접지불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산부문에서도 농업의 경영이양직불제와 비슷한 형태의 수산보전제 도입을 통해 고령 어가의 은퇴를 유도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령어가의 은퇴는 어업면허권의 환수 또는 감축을 전제로 추진되므로 과잉생산 및 가격하락, 채산성 악화 등 구조적 문제가 상존하는 수산업의 체질 개선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어선어업은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 등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미흡하나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양식어업은 적정 수급에 대응하지 못하는 면허제도,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 및 어업소득 저하 등으로 보다 합리적인 구조재편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양식어장의 과도한 편중개발로 인해 양식어업은 고비용·저효율의 취약한 구조로 고착화되는 한편, 일부 품종의 경우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 등으로 채산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또한 장기 연작으로 인한 어장의 노후화, 사료 및 약품, 폐어구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도 심각하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양식어업(면허어업)에 대해 우선 고령어가은퇴 수산보전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어선어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어선어업 구조조정사업 완료 이후 도입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러한 고령어가은퇴 수산보전제는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이양직불제와는 생산의 억제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고령어가 및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두 제도가 유사하지만, 어업권의 환수를 통한 생산 억제효과 측면에서는 경영이양을 통한 전업농 육성이라는 농업부문 직불제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4-14] 고령어가은퇴 수산보전제와 경영이양직불제의 도입목적 비교

구 분	유사점	차이점
고령어가은퇴 수산보전제(수산)	고령어가 소득안정 도모	어업권 환수를 통한 생산 억제효과
경영이양직불제(농업)	고령농가 소득안정 도모	경영이양을 통한 전업농 육성

## 나. 추진방안

### 1) 사업목적

고령어가은퇴 수산보전제는 양식면허를 국가에 반납하고 어업현장에서 은퇴하는 어업인에게 생활자금을 지원하여 고령 어업인의 은퇴를 유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즉, 정부의 일방적 지원이 아닌 면허권의 반납 또는 어업활동 은퇴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지원에 대한 타 부문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사업목적과 연계하여 양식면허권의 감축 및 적정시설 유도 등을 통해 양식어업의 구조개선, 양식어장 환경개선이라는 목적도 부수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 2) 사업내용

#### (1) 지원대상

고령어가은퇴 수산보전제는 65세 이상~75세 미만의 양식어업 경영주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지원기간은 최장 80세까지로 하여 어가의 생계가 지속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한다. 대상이 되는 양식어업은 『수산업법』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어업,<sup>15)</sup> 『수산업법』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어업)을 사업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동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양식어업을 고려하되, 어선어업으로의 확대는 추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한편, 통계청의 2005년 어업총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양식어업 경영주 어가는 전체 양식어가의 24.5%인 5,909어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5) 수산업법 제8조의 면허어업에는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마을어업이 포함되며, 한정면허를 발급받아 양식어업을 하는 어업인은 본 사업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대상〉

- 2005년 어업총조사 결과, 총 79,942어가의 30.1%인 24,075어가가 양식어업에 종사하며, 이중 65세 이상~75세 미만의 양식어업 경영주 어가는 5,909어로 전체 양식어가의 24.5%를 차지

참고로 농업 경영이양직불제의 경우, 지원대상은 10년 이상 벼농사에 종사한 63세~69세의 농업인으로 한정하였으며, 대상자가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던 농업진흥지역 내의 2ha 이내 논을 한국농촌공사 또는 경작규모가 2ha 이상이고, 55세 이하인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 (2) 지원조건

고령어가은퇴 수산보전제의 지원 대상 어업인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수산업법』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어업, 『수산업법』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어업)에 10년 이상 종사해야 하며, 개인면허를 보유하거나, 어촌계면허 내의 지분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10년 이상 양식어업에 종사한 것에 대한 인증은 어촌계(사업추진위원회 별도 구성)에서 자체적으로 인증한 내역과 수협위판실적, 면허취득일자 등의 증빙자료를 각 단위수협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수협의 인증확인을 거쳐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둘째, 동 사업의 신청자는 어업경영 은퇴를 조건으로 어업면허권을 포기하여야 하며, 기존 면허권의 재취득 및 신규 면허의 취득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지속적으로 어업을 영위할 경우, 기 지불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조치하며, 별도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또한 면허권이 환수된 어장에서 불법으로 양식 시, 이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관할 지자체 및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사업 위반여부를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 (3) 지원방법 및 수준

고령어가 은퇴에 대한 지원은 지원 총 금액을 일시불보다는 매월 또는 분기별 연금형식으로 분할 지급함으로써 고령 은퇴어가의 노후 생계안정을 도모한다. 지원수준은 은퇴 후 고령어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주를 이루며, 시설물 철거비(어류가두리양식) 또는 별도의 인센티브(개인면허)까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단가의 현실성 등을 감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어가은퇴 수산보전제의 핵심은 지원단가의 현실성이라 할 수 있다. 어업면허 포기

를 대가로 매월 연금형식으로 수령하는 지원금이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업을 통해 달성 가능한 소득수준에 근접하고, 최소한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현실성이 있다면 사업신청자가 많을 수 있으나 지원수준이 이상의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 사업의 실효성에 한계를 노출할 수 있다.

따라서 지원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전체 평균 어업소득 기준이다. 이는 통계청의 공식통계를 적용하기 때문에 명확한 지원기준에 의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업종 및 품종의 구분이 없이 모든 지원자에 대해 동일한 지원단가를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는 문제가 있다.<sup>16)</sup> 둘째, 면허권 거래가격 기준이다. 이는 현실에서 거래되는 면허권 실거래가격에 근거하여 지원함에 따라 어업인들이 희망하는 가장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역별·품종별 어업권 실거래가격 정보에 대한 파악의 현실적 어려움, 업종·품종·면허면적 등에 따른 어업인간 지원의 형평성 및 갈등 야기, 천문학적 액수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문제점 또한 논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계면허 어장의 경우 어업소득기준을 적용, 개인면허 어장의 경우 면허권 실거래가격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수준을 산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지원수준 및 기준은 향후에도 각계의 전문가, 사업추진주체인 중앙·지자체의 담당 공무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면허권 실거래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업소득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소요예산만을 파악하였다.

어업소득<sup>17)</sup>(어촌계면허 어장 대상)을 적용할 경우, 1차 년도는 60세 이상 양식어가 어업소득<sup>18)</sup>의 100%를 지원하고, 2차 년도부터는 60세 이상 양식어가 어업소득의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어업소득 대비 지원비율도 향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통계청의 「어가경제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04년~2006년) 60세 이상 양식어가의 어가소득은 20,958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어업소득은 6,699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

16) 농업 경영이양직불제의 경우, 소득에 대한 공식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지원단가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쌀 1개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기준이 명확하며, 업종 및 품종이 매우 다양한 양식어업의 지원단가 산정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

17) 어업소득은 어업총수입에서 어업경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어가의 당해 연도 어업생산활동의 최종 성과이며, 투입된 생산요소에 대한 총보수를 의미함. 통계청(어가경제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04~2006) 양식어가의 어업소득 평균은 14,952천원임

18) 어가소득에는 어업외소득 등이 포함되므로 어업권 포기를 대가로 지원하는 금액은 순수한 어업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당함



다. 따라서 어업소득의 100%를 지원하는 경우 어가당 연간 수령금액은 약 670만원(월평균 약 56만원), 어업소득의 70%를 지원하는 경우 어가당 연간 수령금액은 약 470만원(월평균 약 39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sup>19)</sup>

[표 2-4-15] 양식어가의 연령별 평균소득 비교(최근 3년 평균)

단위 : 천 원

구분	어가소득	어업소득	어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40세 미만	39,979	18,465	16,620	911	3,983
40~59세	30,999	15,275	9,933	1,498	4,294
60세 이상	20,958	6,699	7,246	3,167	3,845
전국평균	28,064	11,837	9,643	2,150	4,435

주 : 어가소득 = 어업소득 + 어업외소득 + 이전소득 + 비경상소득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한편, 개인면허 어장의 경우 면허권 거래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어촌계면허 어장과 달리 개인면허 어장은 지역별·품종별로 면허면적이 크게 다를 수 있고, 각 세부 품종별로도 평균소득이 차이가 있으므로 획일적인 어업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지원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동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할 경우에도 두 가지의 대안을 고려하였다.

첫째, 1안으로서 품종별 ha당 어업권 매각대금(ha당 단가 × 양식면적)만을 지원하는 경우이다. 이때 매각대금은 품종별로 구분하여 전국 평균 면허권 거래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품종별 평균 면허권 거래가격이 파악되어야 어가당 연간 수령금액 및 사업추진 예산 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2안으로서 1안에서의 품종별 ha당 어업권 매각대금 및 시설물 철거비에 추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까지 지원하는 방안이다. 여기서 인센티브는 최근 3년간 양식어가 평균 어업소득<sup>20)</sup>의 50%<sup>21)</sup>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각대금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참고로 농업 경영이양직접지불제에서는 농지를 매도할 경우, 농지 매도금액에 추가하여 ha당 월 25만원의 인센티브를 75세까지 지급하고 있다.

19) 통계청의 어가경제통계에서 5세 단위로 양식어가 소득에 대한 통계가 제공되지 않고 60세 이상(10세 단위)로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65세 이상 어가에 대한 어가소득이 60세 이상 어가소득과 비슷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지원단가를 산정하였음  
 20) 어업소득은 어업총수입에서 어업경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어가의 당해 연도 어업생산활동의 최종 성과이며, 투입된 생산요소에 대한 총보수를 의미함  
 통계청(어가경제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04~2006) 양식어가의 어업소득 평균은 14,952천원임  
 21) 농업 경영이양직접지불제에서 명예퇴직금 지급비율(50%)을 적용



[표 2-4-16] 농업부문 경영이양직불제(한·미 FTA 이후 국내대책)

구분	현행	개선
대상지역	진흥지역 논	진흥지역 논과 밭
조건	농지매도 조건	매도·임대은퇴 동일단가
신청연령	63~69세	65~70세
지급기간	70세까지(최장 8년)	75세까지(최장 10년)
지급금액	(매도) 월 241천원/ha <sup>1)</sup> (임대) 2,977천원/ha <sup>2)</sup> 지급상한 2ha	(매도) 월 250천원/ha (임대) 월 250천원/ha 지급상한 : 2ha
시행기간	1997~2013년	협정 발효 후 5년

주 1) 자가영농 시 평균소득과 임대시 평균소득 차액의 70%를 적용하여 산출

2) 쌀소득(순소득)의 5개년 평균(7,240천원/ha)×60대 노동환산계수(0.8)× 명예퇴직금 지급비율(50%)을 적용하여 산출

#### (4) 근거법 및 관련규정

WTO 수산보조금협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일본 등과 공동으로 제안한 내용 가운데 허용보조로 분류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어업인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보조금(subsidies for social safety net for fisherman), 수산자원 증대 및 해양환경 보호에 관련된 보조금(subsidies for fisheries stock enhancement and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등이 있다. 고령어가은퇴 수산보전제의 목적이 고령어의 은퇴를 통한 생계안정, 어장환경 개선 등에 있으므로 이러한 제안내용이 향후 수산보조금협상에서 수용될 경우 고령어가은퇴 수산보전제 도입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에서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정이 허용하는 지원조치에는 생산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 영세농 등을 위한 보조,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에 대한 보조, 농림수산업 재해에 대한 지원,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와 같다.

한편, 농업 경영이양직접지불제의 경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1997년 2월 제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7년 2월 일부 개정)을 통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 3) 사업추진방식

고령어가은퇴 수산보전제의 추진을 위하여 2008년~2009년까지 세부 사업시행계획(시범사업 계획 포함)을 마련하여야 하며, 2009년~2011년과 같이 2년간 특정 지역 및 품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2012년 이후 우리나라 전 지역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확대하도록 한다.

동 사업의 지원대상 어가수는 2005년 어업총조사 자료에 의거, 65세~75세 미만 양식 어업 경영주인 약 5,900여 어가로 추산된다. 사업의 시행주체는 개별 지자체이며, 총사업비는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추정이 불가능하나, 어촌계면허어장에 대한 1차 년도의 총사업비를 개략적으로 추정하면 약 3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sup>22)</sup> 여기서 시설물 철거비용을 별도로 지원할 경우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 〈추진방식〉

- 사업시행 주체 : 지자체(시·군)
- 재원확보 : 국비 100%
- 지원대상 어가수 : 5,909어가(65세~75세 양식어업 경영주)
- 지원기준 : 최근 3년간 60세 이상 양식어가 어업소득의 70%(1차 년도는 100% 지원)
- 연간 소요예산의 대략적 추정(어촌계 면허 어장의 경우)
  - 1차 년도(2012년) : 5,909어가 × 670만원 × 100% = 약 396억 + 시설물 철거비용
  - 2차 년도(2013년 이후) : 5,909어가 × 670만원 × 70% = 약 277억 + 시설물 철거비용
- 사업단계별 추진
  - 2008~2009년 : 세부시행계획 마련 및 예산확보
  - 2010~2011년 : 시범사업 실시
  - 2012년 : 본격적인 사업 추진

고령어가은퇴 수산보전제의 사업추진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양수산부는 보전제의 실시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 보전제 총괄 관리·감독 등을 수행하며, 사업주체인 지자체에서는 사업신청 대상자에 대한 접수, 적격여부 심사 및 최종선정, 보전제 지원금의 지급 및 대상어장에 대한 주기적 감시·감독, 어업면허 실거래가격에 대한 자료수집 등을 수행한다. 한편, 어촌계가 중심이 되어 산지수협의 협조 하에 보전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적격여부(10년 이상 양식어업 종사여부)를 인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22) 개인면허 어장의 경우 지역별·품종별 면허권의 실거래가격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여 추정이 불가능하며, 추후 조사가 필요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어가은퇴 수산보전제 실시계획수립 및 예산확보</li> <li>○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li> <li>○ 보전제 총괄 관리·감독</li> <li>○ 지자체 담당자 교육(KMI)</li> </ul>
지자체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신청접수, 적격여부 심사 및 최종 선정</li> <li>○ 참가 희망자 교육(사업내용, 지원서류 작성 등)</li> <li>○ 보전제 지원금 지급</li> <li>○ 보전제 지원금 지급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li> <li>○ 지원금 지급여가의 어장에 대한 주기적 감시·감독</li> <li>○ 어업면허 실거래가격에 대한 자료 수집</li> </ul>
산지수협 (어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전제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 인증</li> </ul>

[그림 2-4-1] 고령어가은퇴 수산보전제의 사업추진체계

#### 다. 기대효과

고령어가은퇴 수산보전제 추진에 따른 고령어가의 퇴출경로 마련을 통해 심화되고 있는 어촌의 고령화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고령 어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사업의 추진을 통해 부수적으로 기대되는 효과로는 양식시설의 감축을 통한 양식어업의 구조조정 및 양식 수산물의 수급조절, 양식어장의 환경 개선 등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라. 검토사항

고령어가은퇴 수산보전제의 도입에 앞서 정책당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지원금의 적정 수준 산정에 관한 것이다. 고령어가은퇴 수산보전제는 어업권 포기를 조건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지원수준이 본인의 연간 어업소득이나 면허권 실거래가격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경우 신청자가 적어 사업 자체의 실효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지원수준이 과도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며, 어업인의 도덕적 해이 및 타 부문과의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연근



해어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선감척사업과 같이 입찰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 하에서 공시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어촌계면허어장에서 특정 어가가 본인의 면허지분을 포기하고, 고령어가은퇴 수산보전제를 신청할 경우, 당해 어장을 타 어업인에게 이양할지, 아니면 국가가 환수하여 면허권 지분만큼 소멸시킬지의 여부이다. 개인면허는 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나, 1개 면허권 내에 다수의 어업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어촌계면허의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어촌계 면허어장 내에서 고령양식어가가 양식어업을 포기할 경우, 당해 어장을 어촌계 내의 타 어업인 또는 외부의 어업인에게 이양할 것인지 등의 문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농업 경영이양직불제에서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경작규모가 2ha 이상이고, 55세 이하인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쌀 전업농 육성 및 영농의 규모화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어가은퇴 수산보전제에서도 대상어장의 이양을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어장을 이양하여, 개별 경영체의 규모화를 도모할 것인지는 어업권 환수를 통한 양식어업 구조조정의 정책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셋째, 사업 추진에 앞서 지역별·품종별 양식면허권 거래가격에 대한 기초자료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확한 면허권 거래가격에 대한 실태파악이 전제되지 않으면, 초기 사업추진에 있어서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어가은퇴 수산보전제는 개인면허어장의 경우 양식어업권에 대한 소멸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양식어업 정책의 일대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매우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목적,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지원수준, 지원방법 등의 세부사업내용 수립에 있어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지역 및 특정 품종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체계적인 수산보전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5. 휴어 수산보전제

### 가. 도입의 필요성

휴어 수산보전제는 수산자원회복 또는 수산자원관리수단인 휴어제와 밀접한 관련에서 추진된다. 따라서 휴어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수산자원보전 및 관리측면에서 휴어제는 수산관련법제도에 의해 어업활동이 금지된 금어기가 아닌 어업활동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시기에 어업을 하지 않고 쉬으로써 수산자원보호 또는 회복을 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휴어제는 생산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생산을 억제하는 것이며, 과잉투하된 어업노력량을 조절, 감축하는 성격을 가진다. 또한 단기적인 자원변동에 자원량과 노력량의 균형을 이루도록 탄력적, 즉시적, 유연한 대응으로 단기간에 수산자원의 회복을 도모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산란어미, 치어의 보호를 위하여 해당 시기에 단기간, 융통성 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이 휴어제의 장점이다. 또한 휴어제는 자원과 어장의 특성, 지역과 어업경영 상황을 고려하며 특히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맞춤형 어업관리수단으로서 적절한 시기에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한 차원 수준 높은 어업관리정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상업적으로 가치가 크고 자원상태가 열악한 어종을 대상으로 수산자원회복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는데 수산자원회복의 다양한 수단 중 하나로 휴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휴어제는 수산자원회복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휴어제 대상 어종은 자원회복대상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주요한 수단인 휴어제는 어업활동을 쉬어야 하는 참여 어업인의 희생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 없이는 휴어제 실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휴어제 실시로 상실되는 어업소득 감소분에 대해서는 어업인의 생계유지, 어업경영안정 및 유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원기반이 마련되어야 휴어제는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 나. 추진방안

#### 1) 사업목적

수산자원의 보존 및 자원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중 특정 어종 또는 어업에 대한 어업활동을 금지토록 하고 이로 인해 상실되는 어업소득 감소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어업경영안정 및 어촌사회를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휴어제는 어업생산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생산을 억제하는 것이며, 과잉 투하된 어업노력량을 조절 감축하는 수산자원관리 및 자원회복의 수단으로 이에 대한 지원보조금은 WTO-DDA에서 조치 가능한 보조금 범주에 해당되므로 휴어 수산보전제는 보조금에 관한 국제규범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 2) 사업내용<sup>23)</sup>

### (1) 지원대상

휴어 수산보전제의 지원대상은 [표 2-4-17]에 제시하는 휴어대상어종을 어획하는 어업자이다. 지원대상은 휴어제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데 우선 첫째, 휴어 목적이 어획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단기간에 해당 자원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의 휴어제는 주로 수산자원회복계획의 핵심적인 관리수단이다. 따라서 수산자원회복대상 어종을 어획하는 어업자가 휴어 수산보전제의 지원대상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미성어 또는 소형어 보호를 위한 휴어로 미성어 또는 소형어를 어획하는 어업자가 지원대상이 될 것이다.

[표 2-4-17] 유형별 휴어 대상 어종 및 대상어업

유형	대상어종 / 대상 어업종류	목적	휴어시기, 휴어방법
자원회복대상 어종어획 휴어(유형 I)	○ 자원회복대상 28개 단독어종(어종별) - 대상 어업(23개 어업) - 근해어업(10개 어업), 연안어업(13개 어업)	• 산란어미보호 • 치어보호	성어기, 산란어미 또는 치어 어획이 많은 시기에 휴어를 통해 어획노력량과 어획량 제한
자원회복대상다수어종어획휴어(유형 II)	○ 자원회복대상 복수어종 어획어업(어업별) - 대상 어업(14개 어업) - 근해어업(7개 어업), 연안어업(7개 어업)		
미성어 어획휴어(유형 III)	○ 눈볼대 - 대상어업 : 외끌이대형기저, 외끌이서남구기저, 대형트롤 ○ 붕장어 - 대상 어업 : 근해통발, 연안통발	미성어보호	미성어 어획이 많은 시기에 휴어를 통해 어획노력량과 어획량 제한
소형어 어획휴어(유형 IV)	○ 소형어 어획어업 - 대상 어업 : 근해안강망어업	소형어보호	소형어 어획이 많은 시기에 휴어를 통해 어획노력량과 어획량 제한

자료 :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업 휴어제 도입에 관한 연구', 2006

23) 해양수산부의 '연근해어업 휴어제 도입에 관한 연구'(2006)에서 검토된 내용을 중심으로 언급함

## (2) 지원조건

휴어 수산보전제의 지원조건은 휴어기간 중 지원대상자는 모든 어업활동을 중단하고 어선을 어항에 정박시켜 두어야 한다. 휴어기간 중 어장청소 등의 의무 부과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어선어업의 경우 어장청소의무가 적절하지 않으며, 어장청소를 빌미로 어업활동을 할 개연성이 크므로 전면 휴어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3) 지원방법 및 지원수준

휴어 수산보전제에 의한 지원방법 및 지원수준을 포함한 휴어제 지원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휴어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수산자원감소에 대한 책임론에 입각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어업인 등이 각각 1/3씩 균등 분담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균등분담의 방식은 재원부담에 대한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휴어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책임있는 어업을 적극 유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여 부담할 수 없는 경우는 정부가 지자체 부담분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한다.

[표 2-4-18] 휴어 지원 기본방향

구 분	기본 방향	비 고
공평한 지원	- 수산자원감소책임론에 입각한 지원 - 정부1/3, 지자체1/3, 어업인1/3 (또는 정부2/3, 어업인1/3)	- 어업고유의 불확실성 고려 (어업인의 높은 시간 선호율) - 설문조사결과 반영 - 일본 사례 준용
지원방식	- 휴어기간 중 상실되는 어업소득에 대한 직접 지원	- 어가생계 안정차원 - 어업경영 유지차원
지원보조금 성격	- WTO/DDA 수산보조금 규율에 합치	- 수산자원회복 지원보조금을 조치가능 보조금으로 분류
지원수준	- 근해어업 : 휴어기간*(어업이익+인건비)×2/3+휴어기간의 고정비 전액 - 연안어업 : 휴어기간*어업이익×2/3	- 근해 및 연안어업 대상

둘째, 지원수준은 휴어 참여를 높이는 주요한 척도로 참여 어업인의 많은 관심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휴어 수산보전제는 휴어로 손실되는 어업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휴어 지원수준은 휴어기간 중 상실되는 어업이익과 변동비에 대하여는 수산자원감소책임론에



입각하여 일부 어업인도 부담하고, 고정비에 대하여는 전액 지원하는 수준으로 정하였다. 이 지원수준은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연안어업의 경우는 고정비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 (4) 근거 법 및 관련규정

휴어 수산보전제는 휴어에 따른 손실되는 어업소득을 지원하여 어가생계유지 및 어업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법은 ‘수산자원관리법’과 ‘세계무역기구의이행에관한특별법’의 2개의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수산자원관리법’은 휴어실시의 근거법이기도 한데 동 법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은 휴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며, 제3항에 휴어 실시에 따른 어업소득 감소분에 대한 지원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휴어 수산보전제는 그 지원방법이 어가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세계무역기구의이행에관한특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동 법 제11조에 의하면 휴어수산보전제는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에 해당된다. 휴어는 생산을 억제하는 의미에서 동 조항이 적합하지만 휴어의 주 목적이 자원회복 및 자원관리임을 감안한다면 휴어목적에 부합하는 지원조치 내용 즉 자원관리 및 자원회복의 노력에 대한 지원 등의 형태로 동 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3) 사업추진방식

휴어 수산보전제는 휴어제 유형별 단계적 추진과 함께 실시되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표 2-4-19]에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 추진계획은 휴어제 실시 추진계획에 맞추고 있으며, 휴어 대상의 모든 어종과 어업을 검토하여 제시된 것으로 향후 실제 휴어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개별 휴어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표 2-4-19] 휴어 수산보전제 단계별 추진계획

휴어제 유형	대 상	단 계 별 추 진		
		1단계 (2011~2013)	2단계 (2014~2016)	3단계 (2017~2019)
자원회복 어종어획휴어	어 종 (28개)	낙지, 꽃게, 도루묵, 갯장어, 홍어, 중하, 성게류, 말쥐치	서대류, 해삼, 키조개, 강달이류, 개량조개, 가 자미류, 자리돔, 참돔, 젓새우, 임연수어	가오리, 보리새우, 갑 오징어, 까나리, 꽃새 우, 골뱅이류, 양태, 뱅어류, 전어, 밴댕이
자원회복다수어종어 획휴어	어 업 (14개)	근해자망, 쌍끌이대형 기저, 근해안강망, 외 끌이대형기저	동개구기저, 서남해구기 저, 연안자망, 정치망, 연안통발	연안개량안강망, 잠수기, 연안복합 형 망, 새우조망
미성어어획휴어	어 종 (2개)	붕장어, 눈볼대		-
소형어어획휴어	어 업 (1개)	근해안강망		-

자료 :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업 휴어제 도입에 관한 연구', 2006.

휴어제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종료 이후인 2011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하는데 휴어는 3년 정도해야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3년을 한 단계로 설정하고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한다. 그리고 시범사업(1단계 포함)을 실시하여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제도 실시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추진방식〉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기간(2008년~2019년)
  - 2008년~2010년 : 사전자료 확보 및 DB화
  - 2011년~2013년 : 1단계 사업(10어종, 5개 어업), 시범사업 포함
  - 2014년~2019년 : 2~3단계 사업실시(20개 어종, 10어업)
- 재원확보 : 국비 50%, 지방비 50%(또는 국비 100%)
- 대략적인 소요예산(추정) : 1,059억원
  - 사전 자료 확보 및 DB화(2008년~2010년) : 9억원
  - 1단계 사업(2011년~2013년) : 약 274억원
  - ※ {205.8억원(1년/1회/1달 기준 3년간 자원회복 어종어획 휴어실시 금액) + 68.4억원(1년/1회/1달 기준 3년 간 자원회복 다수어종어획 휴어실시 금액)}
  - 2~3단계 사업(2014년~2019년) : 776억원
  - ※ 총 휴어제 추정예산 258.5억원 × 3년(휴어실시기간을 3년으로 잡을 때)



전체 휴어대상 어종 또는 어업 중 10%만 휴어를 한다고 가정 하에서 대략적인 지원소요예산을 추정해보면 약 259억원(1년/1회/1달 또는 2달)이며, 한 어종 또는 어업이 3년간 휴어를 한다면 2011~2019년까지 총 776억 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표 2-4-20] 휴어 수산보전제 대략적 소요예산 추정(1년/1회/1달 또는 2달 휴어)

휴어제 유형	대 상	단 계 별 추 진(억원)		
		1단계 (2011~2013)	2단계 (2014~2016)	3단계 (2017~2019)
자원회복 어종어획휴어	어 종 (28개)	68.6	59.7	72.7
자원회복다수어종어획휴어	어 업 (14개)	22.8	8.0	8.9
미성어어획휴어	어 종 (2개)	8.3		
소형어어획휴어	근해안강망	9.5		
합 계		258.5		

자료: 해양수산부, '연근어어업 휴어제 도입에 관한 연구', 2006. 수정

#### 다. 기대효과

휴어 수산보전제는 휴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어업인에게 직접 지원함으로써 어가생계 유지 및 어가경영 안정에 도움이 된다. 또한 휴어제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수산자원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라. 검토사항

휴어 수산보전제는 수산자원회복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휴어는 수산자원관리 및 회복의 주요수단으로 그 기대되는 바가 큰데 어종별, 어업별로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원과 관련하여 휴어기간 중 상실되는 어업소득분을 어가별로 지원해야 하므로 매우 복잡하고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원을 간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모든 어가별로 지원금액을 차별화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입찰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입찰에 의한 지원방식을 위해서는 휴어 대상어종 또는 어업의 지역별 어업별 어업소득 표준화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두

어야 한다. 즉 해양수산부는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어업소득 표준화 자료를 만들고 매년 물가 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보정하며, 5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휴어 수산보전제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대상어업인에 대하여 어업종류, 어획대상어종, 월별 생산량 및 조수입액 등 관련 자료를 DB화해야 한다.

## 6. 어장휴식 수산보전제

### 가. 도입의 필요성

어장휴식 수산보전제는 어장휴식제에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다. 어업인의 생계 유지를 위해 휴식기간 동안 어업을 계속할 때 발생하는 소득의 일정 수준 이상을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어장휴식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어장관리법」은 어장휴식제 시행에 앞서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시기·기간·방법에 대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경제적인 유인책 없이 제도 시행을 행정적인 명령에만 의존할 경우 어업인의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어장휴식제의 시행 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상황을 염려하여 제도 시행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어장휴식 수산보전제의 도입은 어장휴식제 시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이처럼 어장휴식 수산보전제는 어장휴식제를 보조하는 정책 수단이다. 따라서 그 표피적인 필요성이 어장휴식제의 보조라면 근원적인 필요성은 곧 어장휴식제의 필요성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어장관리법」은 ‘어장휴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어장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중략)

4. “어장휴식”이란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병해(病害)가 자주 생기고 생산성이 떨어진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을 일정 기간 쉬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통해 볼 때 어장휴식의 목적은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병해가 자주 생기고 생산성이 떨어진 어장에 대하여 일정 기간 어업을 쉬게 함으로써 어장환경을 복원하여 생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장관리법」은 어장휴식 대상 어장을 ‘어장관리특별해역’ 내의 어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어장휴식과 어장관리특별해역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장관리법〉

제5조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간의 양식, 잦은 병해 발생 등 어업 여건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어장의 생산성 회복을 위한 면허·허가동시갱신 등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어장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하략)

제6조 (어장환경의 조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어장관리해역별로 어장환경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하략)

제7조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어장환경을 조사한 결과 어장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어장휴식이나 새로운 어업면허의 금지 등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장관리해역을 어장관리를 위한 특별해역(이하 “어장관리특별해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하략)

제9조 (어장휴식)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이 있는 어장관리특별해역에 대하여 어장휴식에 관한 계획(이하 “어장휴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하략)

이상의 「어장관리법」 제5조~제7조에 따르면 어장관리조치가 필요한 ‘어장관리해역’을 대상으로 어장환경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로 볼 때 특별한 관리조치가 필요한 어장을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어 어장환경조사 후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이는 「어장관리법」에 규정된 어장휴식 대상 어장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해양수산부의 ‘어장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2009~2011년 동안 매년 10개소의 어장관리해역 지정을 전제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그에 따라 어장관리특별해역도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어장관리법」에 근거한 어장휴식제는 빨라도 2009년이나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어장휴식제와 어장휴식 수산보전제의 시범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논의도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 나. 추진방안

### 1) 사업목적

어장휴식 수산보전제는 어장휴식 기간 동안 어업인의 어업소득 손실분을 일정 수준 보전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때 어업소득 손실분은 어장휴식을 하지 않고 어업을 계속할 경우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다.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어장휴식제

에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병해가 자주 생기고 생산성이 떨어진 어장의 환경을 복원하고 생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사업내용

현재는 어장관리특별해역이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대상을 한정하여 양식어업의 생산성을 회복하고 어장환경 개선 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환경 여건 악화로 생산량이 급감한 품종에 대해 어장휴식을 통한 양식어업 복원 가능성을 시험하고, 둘째, 어장정화사업 시행과 함께 어장휴식제 실시를 장려함으로써 어장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 (1) 지원 대상

#### ① 선정 기준

어장휴식 수산보전제는 어장휴식제에 참여하는 어업인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때 어업인은 어장휴식 직전에 양식어업 면허를 받아 실제로 양식어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시범사업 지원 대상의 일반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준 1 : 어장휴식의 효과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어장
- 기준 2 : 어장휴식의 효과가 큰(또는 클 것으로 기대되는) 어장
- 기준 3 : 어장휴식제(또는 어장휴식 수산보전제) 도입이 쉬운 어장

어장휴식의 효과가 크면 그 효과도 쉽게 측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준 1과 기준 2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기준 3은 시범사업인 만큼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제도 시행이 어렵지 않아야 함을 뜻한다.

#### ② 선정 대상

기준 1과 기준 2에 따라 특정 품종으로는 남해군(강진만)의 피조개 어장, 전국의 어류가두리어장을 들 수 있고 어장환경 개선 효과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어장정화사업 대상 어장이 모두 포함된다.<sup>24)</sup>

특정 품종 가운데 피조개는 2006년 남해해양수산사무소가 어장휴식에 대해 수행한 연

24) 어장정화사업과 어장휴식을 동시에 실시하면 어장휴식의 효과를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장정화사업만 한 곳과 어장휴식을 병행한 곳을 비교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구 결과가 있다. 그에 따르면 어장휴식으로 2년산 강진만 피조개의 생존율이 2배 가까이 향상되었다.

[표 2-4-21] 강진만 피조개의 어장휴식 효과

구 분	휴식어장		연작어장	
	1년산	2년산	1년산	2년산
생존율(%)	4.5	2.2	2.4	1.2
소득(만원/ha)	622	741	175	251

주 : 50만미/ha 살포 기준임  
자료 : 남해해양수산사무소

이러한 결과는 지난 10년 사이 환경여건 변화로 생산이 급감한 피조개 양식어업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폐사율이 급증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이 2005~2009년에 ‘피조개 양식산업 복원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아직 폐사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으나 환경 악화, 장기 연작, 과도한 종패 살포 등이 원인으로 제기된다. 따라서 실험적으로 어장휴식의 효과가 입증된 자료에 기초하여 어장휴식제를 시범도입함으로써 피조개 양식의 복원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어류 가두리는 인위적인 사료 투입, 배설물 퇴적 등으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잘 알려져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도 여럿 제시되고 있다. 한 예로 2004년 감사원이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한 오염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영 주변 어류 가두리 양식어장의 경우 대부분의 오염물질에서 일본수산환경기준인 지각 중 평균 농도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22] 통영 양식어장의 오염도 분석 결과

지 역	중금속 원소 (mg/kg)								AVS
	구리	카드뮴	납	크롬	비소	셀레늄	아연	수은	
통영 어류 양식어장	291.44	0.54	42.26	89.43	9.67	0.62	197.46	0.02	0.87
통영 굴 양식어장	16.15	0.18	24.33	92.22	7.87	0.58	113.81	0.01	0.02
지각 중 평균농도	55	0.2	12.5	100	1.8	0.05	70	0.08	0.20

주 : AVS는 산화발성황화물로 배합사료 등 유기물이 분해되어 무산소상태가 되면 발생하는 유독성가스  
자료 : 감사원, 해양오염방지 및 어장정화사업 추진 실태, 2005.

그런데 기준 3에 의해 어류 가두리어장은 시범 사업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 어류의 양식주기가 보통 2년이어서 어장휴식 후 양식어업을 재개했을 때 1년 이내에 소득이 창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어장휴식 기간 동안만 지원을 하는 어장휴식 수산보전제에 보완책이 필요함을 뜻한다. 그런데 시범사업의 취지로 볼 때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시행하기 복잡한 품종을 일부로 택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해 기준 3에 따라 어장휴식 수산보전제의 제도적 관점에서 도입이 용이한 어장은 양식주기가 1년인 품종의 어장이다. 1년이면 어장휴식 후 1년 내에 소득이 창출된다. 그러나 1년 이상이면 어장휴식 수산보전제의 지원을 받는 시기와 소득이 창출되는 시기 사이에 소득이 없는 공백 기간이 길어 어장휴식제에 참여하려는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는 어장휴식 대상에서 이러한 품종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시범사업 대상은 제도 시행이 쉬운 어장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양식주기가 1년인 품종에 한정하는 것이 좋다.

양식주기가 1년인 품종의 범위 내에서 어장정화사업 대상 어장도 동시 사업 시행으로 어장환경 개선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시범사업 대상으로 타당성이 있다. 어장정화사업은 사업 시행 이후에 해역 및 품종의 특성에 따라서는 부유물 발생으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성 저하가 나타나는데 이때 어장휴식을 실시함으로써 부유물을 가라앉히고 생산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어장정화사업 시점 전후에 어장휴식을 함께 실시함으로써 일괄적인 어장정화사업을 유도하여 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따로 어장휴식을 할 경우 소요되는 시설 철거비·재시설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런데 어장정화사업 대상 어장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특성상 양식어장이 밀집되어 있는 통영시와 완도군으로 한정한다. 양식주기가 1년인 품종이므로 굴, 김, 미역, 다시마가 여기에 해당한다.

## (2) 지원 조건

기본적인 지원 조건은 어장휴식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어장휴식 기간 동안 해당 양식어장에서 양식 시설물을 철거하고 어장을 전혀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어장휴식제의 관리가 쉽도록 면허권 단위로 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지분권자가 여럿이면 이들이 합의하여 하나의 면허권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기준 1과 관련하여 효과 측정이 쉽도록 인접한 여러 어장이 동시에 어장휴식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시범사업 단계에서 이를 강하게 적용하기 힘들므로 최소 참여조건에 해당하는 면적은 정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인접한 여러 어장의 동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유인책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당 면허면적의 4배수가 되는 면적이 될 때로 정한다.

기준 3과 관련하여 어장정화사업 대상 어장이 어장휴식에 참여하면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인책도 제시한다. 한편 어장휴식제에 지나치게 많은 어장이 참여할 경우 수산물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상 품종 어장의 10%를 상한으로 설정한다.

[표 2-4-23] 시범사업 대상 품종(해역)별 어업권 현황(2006년)

(단위 : 건, ha)

품종	면허건수	면허면적	건당 면적
굴(통영시)	298	1,354	4.5
피조개(남해군)	125	751	6.0
김(완도군)	127	11,331	89.2
미역(완도군)	65	1,101	16.9
다시마(완도군)	234	3,466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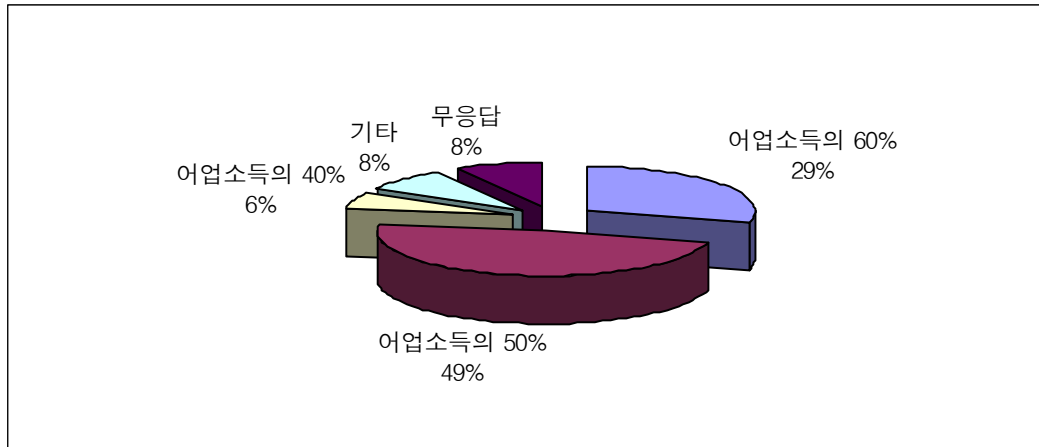
자료 : 전라남도청 집계자료; 경상남도청 집계자료

### (3) 지원 방법 및 수준

어장휴식 수산보전제는 휴식 기간 동안 어업을 하지 못함에 따라 잃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때 지원 수준이 가장 큰 관건이 된다. 이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어업인도 공유수면의 배타적인 이용자로서 그 관리에 책임이 있다는 점, 어장휴식에 따른 생산성 회복의 효과를 자신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누린다는 점, 어장휴식 동안 다른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안어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해양수산부, 2006)를 참고하면 지자체의 어장관리 담당 공무원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최소한 어업소득의 50%이상 지원되어야 어장휴식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해양수산부, 「연안어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그림 2-4-2] 어장휴식에 따른 소득보전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상의 여러 사항에 근거하여 50%를 기본적인 지원수준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개인 면허의 경우 인접한 어장이 동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건당 면허면적의 4배수가 되는 어장이 동시에 참여하면 10%p를 상향하여 지원한다. 어촌계 면허의 경우 면적이 넓으므로 독자적으로 참여해도 10%p 상향 지원한다. 한편 굴, 김, 미역, 다시마의 경우는 시설 철거비가 소요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되 어장휴식 후 재시설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품종별로 구체적인 지원 수준은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통영 해역의 굴 양식어업의 소득은 2,288만원/ha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보전액은 보전비율 50%를 적용한 1,144만원/ha이다.<sup>25)</sup> 건당 면허면적의 4배수 이상의 인접한 어장이 동시에 어장휴식을 하거나 어촌계 면허어장이 참여하면 보전비율 60%를 적용하여 1,373만원/ha이다.

남해해양수산사무소의 자료에 따르면 남해군(강진만)의 피조개 양식어업의 소득은 426만원/ha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보전액은 213만원/ha이다.<sup>26)</sup> 건당 면허면적의 4배수 이상의 인접한 어장이 동시에 어장휴식을 하거나 어촌계 면허어장이 참여하면 256만원/ha이다.

완도 해역의 김, 미역, 다시마도 마찬가지로 산출된다. 이들 품종의 소득은 각각 856만원/ha, 342만원/ha, 312만원/ha이다.<sup>27)</sup> 따라서 기본 보전액은 각각 428만원/ha, 171만원/ha, 156만원/ha이다. 건당 면허면적의 4배수 이상의 인접한 어장이 동시에 어장휴식을 하거나 어촌계 면허어장이 참여하면 보전 비율을 60% 적용하여 각각 514만원/ha, 205만원/ha,

25) 해양수산부, 「양식어업의 합리적 구조재편 방안 연구」, 2008(미발간자료)

26) 남해해양수산사무소, 내부자료, 2006

27) 해양수산부, 「양식어업의 합리적 구조재편 방안 연구」, 2008(미발간자료)



187만원/ha을 지원한다.

〈지원수준〉

- 굴(통영) 일반 :  $2,288\text{만원/ha}(\text{평균소득}) \times 50\%(\text{소득보전율}) = 1,144\text{만원/ha}$   
 - 건당 면허면적의 4배수 이상 어장이 동시 참여, 어촌계 어장 참여  
 -  $2,288\text{만원/ha}(\text{평균소득}) \times 50\%(\text{소득보전율}) + 10\%(\text{동시 참여 인센티브}) = 1,144\text{만원/ha}$
- 피조개(남해) 일반 :  $426\text{만원/ha}(\text{평균소득}) \times 50\%(\text{소득보전율}) = 213\text{만원/ha}$   
 - 건당 면허면적의 4배수 이상 어장이 동시 참여, 어촌계 어장 참여  
 -  $426\text{만원/ha}(\text{평균소득}) \times 50\%(\text{소득보전율}) + 10\%(\text{동시 참여 인센티브}) = 256\text{만원/ha}$
- 김(완도) :  $856\text{만원/ha}(\text{평균소득}) \times 50\%(\text{소득보전율}) = 428\text{만원/ha}$   
 - 건당 면허면적의 4배수 이상 어장이 동시 참여, 어촌계 어장 참여  
 -  $856\text{만원/ha}(\text{평균소득}) \times 50\%(\text{소득보전율}) + 10\%(\text{동시 참여 인센티브}) = 514\text{만원/ha}$
- 미역(완도) :  $342\text{만원/ha}(\text{평균소득}) \times 50\%(\text{소득보전율}) = 171\text{만원/ha}$   
 - 건당 면허면적의 4배수 이상 어장이 동시 참여, 어촌계 어장 참여  
 -  $342\text{만원/ha}(\text{평균소득}) \times 50\%(\text{소득보전율}) + 10\%(\text{동시 참여 인센티브}) = 205\text{만원/ha}$
- 다시마(완도) :  $312\text{만원/ha}(\text{평균소득}) \times 50\%(\text{소득보전율}) = 156\text{만원/ha}$   
 - 건당 면허면적의 4배수 이상 어장이 동시 참여, 어촌계 어장 참여  
 -  $312\text{만원/ha}(\text{평균소득}) \times 50\%(\text{소득보전율}) + 10\%(\text{동시 참여 인센티브}) = 187\text{만원/ha}$

지원 방법은 소득 보전 목적이므로 일시불이 아닌 분기별 또는 월별로 분할 지급하여 어가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도록 한다. 어촌계면허이거나 지분으로 나뉜 개인면허의 경우 지원금을 면허의 보유지분만큼 개인별로 배분한다.

#### (4) 근거법 및 관련규정

어장휴식 수산보전제는 「어장관리법」제25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장정화·정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여 줄 수 있다는 규정, 「기르는어업육성법」제6조(자금의 보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자원조성 또는 양식어장의 개발·확충 등 기르는어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규정,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관한특별법」제11조(국내지원정책의 시행)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WTO의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자원보호 및 해양환경개선

을 위한 보조금 지급은 예외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국제적으로도 보조금으로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사업추진방식

어장휴식 수산보전제는 2008년에 시범사업 세부 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및 도상 연습을 하며 2009~2011년에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실시 후 효과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동안 어장관리특별해역이 지정되면 시범사업 후 어장휴식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어장관리특별해역이 아니더라도 어장휴식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어장휴식제 및 어장휴식 수산보전제의 시범사업은 시·군·구가 사업시행 주체가 된다. 이는 어장관리특별해역 대상 어장의 어장휴식제 사업시행 주체와 같다. 수산보전제의 재원은 국고 80%, 지방비 20%로 구성된다. 지원율 50~60%를 기준으로 하고 시범사업 대상 어장의 10%가 참여한다고 할 때 연간 약 73억~8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sup>28)</sup>

#### 〈추진방식〉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기간(2008년~)
  - 2008년 : 사전자료 확보 및 DB화
  - 2009년~2011년 : 시범사업(굴, 피조개, 김·미역·다시마), 효과분석
  - 2012년~ : 본사업(어장관리특별해역)
- 재원확부 : 국비 80%, 지방비 20%
- 대략적인 소요예산(추정)
  - 사전 자료 확보 및 DB화(2008년~2010년) : 5억원
  - 시범사업(2011년~2013년) : 연간 80억원
    - ※ 통영 굴, 남해 피조개, 완도 김과 미역어장의 10%가 휴식한다고 가정하고 산출
  - 본사업(2014년~2019년) : 연간 320억원
    - ※ 본 사업은 시범사업의 4배 정도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정한 금액임

사업의 추진방법에 있어 사업계획의 수립은 사업 집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수요조사, 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 세부 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 추진계획

28) 시설철거비는 고려하지 않았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신청자격은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상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필하고 어장휴식을 희망하는 양식경영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어촌계, 영어조합법인)로 한정하며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업주관기관이 어장휴식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전체 어장휴식 규모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연차별 예산상의 제약이 있으므로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희망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어장휴식 수산보전제의 사업에 있어서 사업 집행주체(지자체)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 추진상황을 매 반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 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 집행주체(지자체)는 사업 성과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매 반기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을 위한 관련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구비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1부(품종, 양식어장 면적, 면허 소재지 등)
- 약정서 1부

## 다. 기대효과

어장휴식 수산보전제의 도입으로 어장휴식제의 도입이 원활해져 어장휴식을 통한 어장환경 개선 및 생산성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어장정화사업 대상 어장에 유인책을 부여함으로써 어장정화사업의 효율이 높아지고 어장휴식제의 병행 실시에 따른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굴과 같이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품종은 수급균형에 기여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라. 검토사항

어장휴식 보전제가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용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금을 산정했으나 본격적인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서는 해당 품종의 평균적인 소득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본 지원 비율인 50%가 적정한 지원 수준인지는 모의실험을 통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원수준이 너무 낮으면 지원자가 없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과도할 경우 신청자가 많아 막대한 예

산이 소요되어 어업인의 도덕적 해이 및 타 부문과의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소득 지원과 별개로 수산정책자금의 이자비용 등이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어장휴식 기간 동안 계속 부담해야하는 수산정책자금의 이자비용이 크면 소득 지원만으로 사업 활성화에 장애가 생길 수 있으므로 품종에 따라 이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휴식 기간 동안 어업 경영활동 중단으로 수협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정책자금의 조기 상환 의무 등의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sup>29)</sup>

셋째, 유희어장 위주의 사업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 사업이 실시되면 어업권을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양식어업을 경영한 어업인이 다수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대했던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피조개 양식어업이 그러하므로 이를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양식 주기가 1년 이상인 품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어류·멍게 등 양식 주기가 1년 이상인 품종으로 확대할 경우 어장휴식 후 소득이 창출되는 데 시일이 많이 걸려 휴식 기간 동안만 소득을 지원하면 어장휴식이 활성화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양식 주기를 고려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어류는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장휴식제의 유력한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29)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자격)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요건인 어업인의 범위는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5절 수산보전제 시행 관련 법제도 검토

### 1.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1995년) 검토

수산보전제 시행과 관련된 법률로서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WTO법 이라고도 함)있는데 이 법은 1995년 1월에 제정과 동시에 공포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동 법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규범인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동 협정의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함을 그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다.

수산보전제와 관련된 법조문 내용은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제2항으로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의 각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호의 지원조치란 다음과 같다.

- ① 생산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직접지불
- ② 영세농 등을 위한 보조
- ③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에 대한 보조
- ④ 농림수산업 재해에 대한 지원
- ⑤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현재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수산보전제는 예산이 확보되어 시행이 확정적인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와 친환경부표수산보전제를 포함하여 고령어가은퇴 수산보전제, 재해 예방수산보전제, 휴어 수산보전제 그리고 어장휴식 수산보전제로 총 6가지 유형의 수산보전제이다. 수산보전제는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이 그 목적이므로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의 제11조 제2항의 강구해야하는 각 호의 지원조치 사항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보완사항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국내지원은 농어업인 모두에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므로 제2호의 ‘영세농 등을 위한 보조’를 ‘영세농어가 등을 위한 보조’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친환경부표수산보전제는 어장의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이므로 제3호 ‘토양 등 환

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에 대한 보조'내용에 어장을 포함시켜 조항을 보완하거나, 별도의 조항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 바람직하다.

셋째, 휴어수산보전제의 주 목적은 수산자원회복 및 자원관리의 노력에 대한 지원으로 WTO/DDA 규범에도 합치되는 지원이므로 동 법에 누락되어 있는 자원회복 및 자원관리와 관련된 지원조치 내용이 새로운 조항설치로 보완되어야 한다.

넷째, 조건불리지역수산보전제, 재해예방수산보전제 등은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에 해당되므로 이를 준용할 수 있다.

다섯째,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은 농업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농림부에서는 이미 동법에 근거한 국내지원 정책으로 직접지불제를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산부문에서도 빠른 시일 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어업인 지원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우선 동 법을 수정 및 개정해야 함과 동시에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먼저 시행하고 있는 농림부로부터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 2. 농림부의 직접지불제 시행 관련 법률사례 검토

### 가.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1997년)

농림부는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을 농림부령으로 신설하였다. 동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를 국가경제의 수준,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재정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다.

농림부의 '직접지불제' 명칭이 동 규정의 제1조 목적에서 처음으로 정해짐을 알 수 있으며, 현재 동 규정에 의거하여 농림부는 쌀소득보전, 조건불리지역, 경관보전, 친환경농업, 친환경축산 그리고 경영이양 등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직불제를 더욱 확대 발전시킬 방침을 세우고 있다.

동 규정은 그 동안 6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는 등 수정·보완이 뒤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 규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2-5-1]과 같다. 동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직접지불제는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와 친환경농업직불제도의 2개 이며, 현재 가장 중요시 되고 직불제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도는 2005



년에 삭제되고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이관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원적 기능이 목적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경관보전 직불제의 경우는 ‘농업·농촌기본법’ 제 39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아래에서 알 수 있듯이 동 규정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향후 수산보전제를 시행함에 있어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수산보전제의 명칭을 규정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표 2-5-1]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구 성	주 요 내 용	비 고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2장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요건 - 경영이양보조금의 산정기준 -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의 선정 -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등 - 약정의 해지 및 해제 등 - 경영이양보조금의 반환 등 - 경영이양보조금지급에 따른 사후관리 등	
제3장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농산물 - 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요건 - 환경농업보조금의 산정기준 - 환경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신청 - 환경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의 선정 - 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제4장 논농업 직접지불제도	- 삭제(2005.7)	-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
제5장 보칙		

#### 나.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1997년)

농림부는 동시에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을 신설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다. 동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5-2]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주요 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li> <li>- 경영이양보조금지급계획의 수립</li> <li>- 경영이양보조금지급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li> <li>- 농작물의 범위</li> <li>-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li> <li>- 경영이양후의 경작허용규모 등</li> <li>-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기간</li> <li>- 경영이양보조금의 선정신청, 서류 등</li> <li>-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의 조사 등</li> <li>-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의 선정</li> <li>-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li> <li>- 약정의 해지 및 해제 등</li> <li>- 경영이양보조금의 반환</li> <li>-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 받은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li> <li>- 환경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의 선정신청</li> <li>- 환경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의 선정</li> <li>- 농농업실천기준</li> <li>- 농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의 선정신청</li> <li>- 농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의 선정</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별표1-3 서식1-15호</p>

경영이양직불제의 경우 매우 상세하게 동 규칙에서 다루고 있는데 경영이양보조금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경영이양직불제는 매매 또는 임대와 관련되어 그 시행에 있어 복잡하므로 보다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영이양후의 경작허용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직불제와 유사한 고려어가은퇴 수산보전제를 시행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sup>30)</sup>

최근 농림부는 기존의 ‘농업·농촌기본법’(1999년)을 전면 개정하여 법률명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하면서 법률의 주요 내용 중에 ‘농업인 등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제 40조 3항)을 새로이 첨가하였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WTO 농업에 관한 협정에서 허용하는 농업소득보험제도, 농업활동에 따른 재해의 보상, 특정 품목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정책 등의 도입 근거가 필요하고 둘째, 농업소득보험 및 농업활동에 따

30) 2007년 10월 18일 차관회의 상정을 목표로 법제처 심사 완료, 11.13-16 중 농수해위에 정부개정안 상정 추진 예정



른 재해보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단위 소득보조 정책에 관한 근거가 필요하며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지원방식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함 등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와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2항(국내지원정책의 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원대상을 농업인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체<sup>31)</sup>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원주체를 정부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표 2-5-3] 직불제 관련 법률 조문 비교

법 률 명	조 문 내 용
‘농업·농촌기본법’	<p>제39조 :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세농 등을 위한 지원</li> <li>2. 토양 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원</li> <li>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li> <li>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li> <li>5.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li> <li>6. 기타 농업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li> </ol>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p>제40조 제3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농업경영체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지원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양 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원</li> <li>2. 농업재해·소득보험 및 농업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li> <li>3. 농업경영의 규모화, 고령농업인의 농업경영은퇴 및 농업생산자원의 폐기 등을 위한 지원</li> <li>4. 농업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li> <li>5. 농업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li> <li>6.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단위 소득보조</li> </ol>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관한특별법’	<p>제11조 제2항 :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 각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산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li> <li>2. 영세농 등을 위한 보조</li> <li>3.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에 대한 보조</li> <li>4. 농림수산업 재해에 대한 지원</li> <li>5.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li> </ol>

31) 농업경영체란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3. 수산보전제 관련 제도적 기반마련

수산보전제를 도입하여 시행함에 있어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과 농림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해양수산부 소관의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물 전면개방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이 향후 주요한 수산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 농림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수용할 수산관련 법률은 없으므로 수산기본법(가칭)을 새로이 제정하여 이 법률에 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사료된다.

둘째, 수산보전제의 법적 근거를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의 제11조 제2항에 둔다면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동 법을 어업인 또는 수산업에 적합하도록 개정·보완되어야 한다. 즉 자원회복 및 자원관리, 어장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어업과 관련된 수산보전제에 적합하도록 그리고 영세농을 영세농어가로 내용이 수정되어야 한다.

셋째,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지원정책시행으로 수산보전제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농림부처럼 해양수산부도 ‘수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및 규칙’(가칭)을 마련해야 한다.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소관의 관련 시행규정과 규칙 없이는 수산보전제는 시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 제6절 수산보전제 DB화 방안 검토

### 1. 수산보전제 DB화의 필요성

#### 가. 수산보전제 사업 확대에 대비

UR 협상 이후 수산분야에서는 대외개방이 가속화되어 수산물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최근 WTO/DDA 협상 및 FTA에 의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업인 소득안정과 어촌생활 유지를 위한 수산보조금으로서 허용가능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형태인 수산보전제의 도입을 통해 어가소득을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해양환경보전, 수산자원보호 및 수산업·어촌이 갖는 다원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부문에서도 농업부문의 직불제와 같이 허용가능한 보조금으로서 수산보전제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산보전제의 확대에 대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본 제도가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나. 어가관련 자료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수산보전제와 유사한 성질의 보조금인 농업부문의 직불제는 이미 10년 전부터 시행해 왔으며 전체 농업예산의 20%를 넘을 정도로 대표적인 농민 지원사업으로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직불제 지원 대상인 농가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어려움으로 직불금액을 중복 지원한 사례 및 허위신고에 의한 잘못된 지원의 문제 등이 빈발하게 발생되었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산보전제도 제도시행 초기부터 데이터베이스화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어가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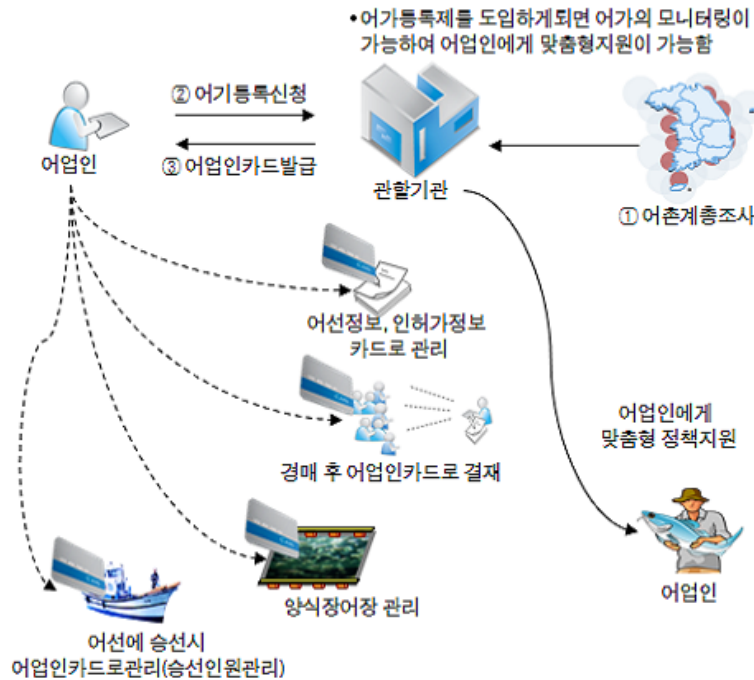
## 2. 수산보전제 DB화의 기본방향

### 가. DB화의 목적

수산보전제의 DB화는 어가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수산보전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차적으로는 어가의 경영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새로운 수산보전제 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어업인에 의해 자발적으로 신고된 기초정보는 상시적, 체계적으로 갱신함으로써 정확하고 유효한 자료가 축적되도록 한다.

### 나. 어가등록제에 연계

향후 수산보전제의 DB화를 타지원사업을 포괄하는 어가등록제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어가경영정보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어가등록제(안)을 살펴보면, 어촌계 총 조사를 통하여 어업인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관할기관에 어가등록을 하게 되면 어업인에게 카드를 발급해 주고, 발급받은 어업인 카드로 어선등록, 인·허가, 불법



[그림 2-6-1] 어가등록제에 연계한 경영정보관리체계마련



어업, 면세유 정보 통합조회 및 승선인원 등의 관리가 가능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어가등록제가 실시되면 어가 모니터링으로 성장 가능한 전업어가의 집중 육성이 가능하며, 고령층과 빈곤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양식 어장의 배합사료 직불제와 연계해 어장경영정보 관리 및 임의상장을 추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가능해 질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어가등록제(안)의 어가경영정보관리체계에 맞추어 현재의 수산보전제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다. 단계적 DB화 전략마련

수산보전제의 실시를 위해서는 정부가 제도 시행 전에 습득해야 할 자료와 제도시행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자료가 모두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수산보전제의 실시를 위해 정부가 미리 확보해야 하는 자료는 양식어장의 지역별·품종별 평균 어가소득(휴식년제), 지역별·품종별 실거래가격(고령어가은퇴지원수산보전제), 업종별 조수입액(휴어수산보전제), 취약지구 재분류 자료 및 취약지구 내 어촌계, 어가수, 어업소득격차(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 등이 있으며, 이들 자료들은 일정기간 이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 없이는 사업시행이 힘들뿐 아니라 고령어가은퇴지원 수산보전제 등의 시행에 있어 입찰제 등의 대상자 선정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기준이 될 자료의 미비로 올바른 사업시행이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 자료에 대한 조사를 각 수산보전제의 사업시행 이전까지 실시해 나가면서 우선 실시하게 될 친환경부표 수산보전제와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의 기본자료 및 상세자료의 DB화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수산보전제의 DB화는 그 형태가 어가등록제(안)의 자료포맷에 맞도록 작성해서 어가등록제의 포맷과 배치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간다.

### 3. 농업부문 DB화(농가등록제) 사례

#### 가. 개요<sup>32)</sup>

농림부는 농가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지원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가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2007년 11월 현재 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연말에 평가, 제도를 보완하여 내년도 전국을 대상으로 등록 농가를 확

32) 농림부 ‘보도자료’. 및 ‘07 농가등록제 시범사업 계획’ 2007.7

대하고, 2009년 이후 등록제를 바탕으로 농가유형별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다.

농가등록제는 농가의 주민정보, 경영정보, 농지이용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관리하는 제도로 EU, 미국, 일본 등의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농가등록은 농가의 신청에 따라 임의등록의 방식으로 추진되며, 등록 및 정보관리는 농가의 주 농장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출장소에서 담당한다. 등록된 정보는 향후 각종 농림정책사업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정보로 활용되어 농가 지원 예산이 농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된다. 농가등록제가 정착되면 농가경영정보가 통합 관리되어 각종 농림정책사업의 집행이 효율화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 집행이 체계적으로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농가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농림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지원 정책을 뒷받침하게 된다.

#### 나. 농가등록제의 필요성과 활용성

농가등록제 도입의 필요성은 다음의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직접지불제 등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농가별 경지면적, 재배작물의 종류, 가축사육두수 등에 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미래농정의 핵심인 정예인력과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경영교육과 창업자금지원, 지속적인 투융자 지원 및 경영컨설팅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농가의 경영·교육이력을 객관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농가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농가등록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직접지불제와 같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과 제도에서는 필요한 농가별 자료를 매 사업마다 신청서를 받아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중복과 분산으로 인한 행정비용이 과다하고 자료의 부정확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셋째, 농가들의 인적조건과 영농능력, 영농목적, 경영체로서의 발전가능성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평균적이고 획일적인 농업정책으로는 농업인의 정책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되며 농가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한데 농가등록제는 이러한 차별화 정책 실행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가등록제의 활용은 첫째, 직접지불제의 근거가 되고, 둘째, 농가의 유형별 차별화된 정책의 기반이 되며, 셋째 전업농 육성과 소득안정정책의 기반이 되게 하는 것들을 들 수 있다.



## 다. 시행방안

농가등록의 등록 대상 농가는 기본적으로는 농업·농촌기본법 상의 농업경영체인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농가등록제의 등록방법은 임의등록의 원칙하에 등록을 정책사업 신청의 계약조건으로 하는 방식을 택한다. 정책사업의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사전에 농가등록을 하고 등록번호를 교부받은 뒤, 그 번호로 정책사업을 신청하게 한다. 정책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등록내용도 정책사업의 종류(유형)에 따라 기본정보와 상세정보의 2단계로 분화하여 등록하도록 한다.

농림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범사업 계획을 통해 등록사항을 농가유형 구분 및 맞춤형 농정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구성하고 농림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정보를 우선 등록하고 상세정보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기본정보와 상세정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6-1] 농가등록제 등록내용

구 분	등 록 내 용
기 본 정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사업 신청을 위한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으로 농가유형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li> <li>- 주민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주소 등</li> <li>- 농지정보: 지번, 지목, 재배작목, 수확면적, 농업조수입 등</li> <li>- 축산정보: 축종, 사육두수, 연간 출하량 등</li> <li>- 농외소득정보: 전업·부업 여부 판단 등에 필요</li> </ul>
상 세 정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한 농림사업 신청시 선택적으로 등록이 필요한 정보</li> <li>- 교육정보: 영농기술 교육이수, 창업농·후계농업인 육성</li> <li>- 농림사업 정책자금 수혜정보: 시설자금, 운영자금, 농지구입자금 등</li> <li>- 재해보험 가입관련 정보</li> <li>- 기타 신청사업에서 요구되는 정보: 친환경인증 정보 등</li> </ul>

자료: 농림부

한편 개별 농림사업별로 신청 시 요구하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3)</sup> 농가등록의 등록내용은 기존의 농림사업에서 사업별로 등록하는 정보를 추출하여 여기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거나 공통항목에 속하는 것을 선별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먼저 농림사업을

33) 농촌경제연구원, '농가등록제 도입에 관한 연구', 2006



① 직접지불 관련사업, ② (광의의)전업농 육성관련 사업, ③ 기타사업으로 유형을 나누고, 각 유형 내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개별 사업에 기입하는 농가정보를 추출한다.

[표 2-6-2] 농림사업 유형별 등록정보 현황

구 분		등 록 정 보
직 불 제 사 업	과수산업소득보전	- 지원요건/필요정보 : 시설포도, 키위재배 면적과 생산량
	경영이양	- 경영주 연령, 영농경력, 농지면적, 매매계약서,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사본, 현지거주 여부, 기지급 경영이양보조금 환수여부,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여부,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수혜여부
	친환경농업	- 친환경농업인증(유기,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규모(1,000m <sup>2</sup> 이상), 연간 판매액(100만원 이상)
	논농업	- 1998~2000년 논농업 이용농지 경작면적
	조건불리지역	- 조건불리지역내 농지와 초지 경작면적
	친환경축산	- 축종별 사육규모, 발생분뇨환원, 이행기록장부기장, 환경·방역관련 교육이수
	쌀생산조정제	- 2002년도 기준 논벼재배 농지경작 면적
전업농육 성관련사 업	영농규모화 사업	- 쌀전업농육성대상자, 농과계대학교졸업, 경종분야 후계농업인, 경영주 연령, 벼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회사법인, 기타 전업농육성대상자
	과원영농규모화 사업	- 과원경영능력/기술력, 연령, 농업후계인력, 출자액, 과원규모 등
	농업융합자금지원	- 해당분야 사업수행능력/타당성 인정, 친환경/품질인증농가(우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병역필(면제), 35세미만(여성), 영농종사5년미만, 산업기능요원, 학력, 교육훈련실적, 영농사업계획, 자격증, 농산물관련 경력
	농업경영컨설팅지원	- 재배작목, 경영규모, 영농경력, 종합자금지원여부, 정책자금지원현황, 컨설팅 경험 등
기타사업	농기계구입지원	- 쌀전업농, 고품질벼생산농가여부(친환경 인증 또는 품질인증)
	농기계사후관리지원	- 대형농기계보유, 영농규모, 보관대상농기계
	마늘경쟁력제고지원	- 마늘주산단지내 영농규모(재배면적)
	과원폐원지원사업	- 품목(시설포도, 키위, 복숭아)별 경영면적, 나무수령, 관련장비
	축산분뇨처리시설	- 축종별 두수 및 축사 면적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 사업규모, 기본시설(영농체험), 자유회관(숙박/편의), 기반시설 등
	기타	- 농업인자녀 영유아양육비 지원, 농업인재해공제,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등 복지성 지원

자료 : 농림부



## 라. 시행의 법적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림부는 이러한 농가등록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되어 입법예고를 기다리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동 법 제41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에 정부는 '농업·농촌에 관련된 자금을 융자받거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정부지원시책의 수혜농업인을 관리·지원하는 추세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농림부는 농업·농촌관련 융자금이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농업인 등에게 농지·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이러한 취지를 갖는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농가등록제)은 농업인의 다양한 농업경영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각 농업인의 특성에 맞는 정부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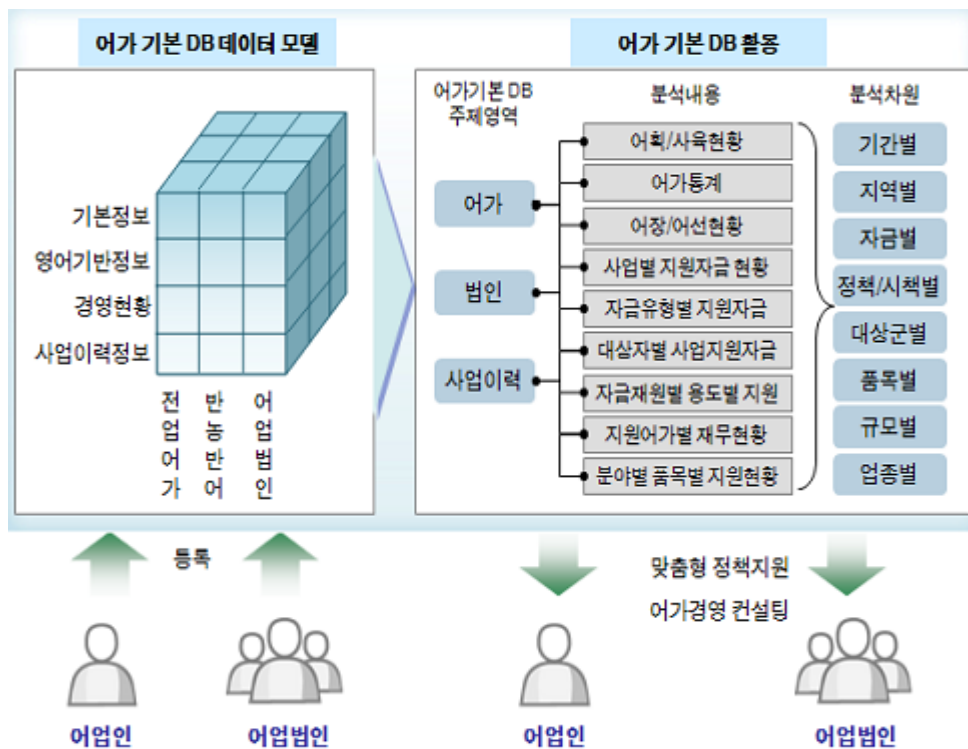
## 4. 수산보전제 DB화 방안

### 가. DB화 모델 및 내용

#### ① 어가등록제와 연계한 DB화 모델

어가등록제에 연계한 수산보전제 DB화 모델은 기존의 전업어가, 반농반어, 어업법인에 대한 기본정보, 영어기반정보, 경영현황, 사업이력 정보가 포함된 어가기본 DB데이터 모델에서 어가기본DB 주제영역인 어가, 법인, 사업이력에 대해서 어획/양식현황, 어가통계, 어장/어선현황, 사업별 지원자금현황, 자금유형별 지원자금, 대상자별 사업지원자금, 자금재원별 용도별 지원, 지원어가별 재무현황, 분야별 품목별 지원현황 등이 분석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이들 분석내용에 대해서는 기간별, 지역별, 자금별, 정책/시책별, 대상군별, 품목별, 규모별, 업종별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여 어가기본 DB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로 인해 맞춤형 정책지원 및 어가경영 컨설팅이 가능한 어가등록제로의 확장 및 활용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DB화는 수

산보전제에 사용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업무 담당자는 어가별로 정확한 생산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정책 사업 신청에서의 중복과 분산을 최소화하여 체계적인 어가 경영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어업인/대국민에게 어가별 맞춤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여 어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정확한 현황에 기초한 어가 직접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기업은 어가 경영정보 관리를 통해 금융기관의 대출신청 첨부서류 등을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2-6-2] 수산보전제 DB화 모델

## ② 수산보전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농림부는 10년에 걸쳐 직접지불제 및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와 중복지원 등을 개선하고 농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가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농업의 직접지불제와 유사한 수산보전제는 이제 도입이 결정되었으며 그 관련 사업은 2010년에 시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향후 2년 동안 수산보전제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각 수산보전제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자료 및 정보에 대한 DB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본 연구를 통해 각 수산보전제 실시예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등을 정리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수산보전제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는 크게 사전에 확보해야 할 자료와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전에 확보해야 할 자료 및 정보로는 수산보전제별로 상이하지만 양식어업을 대상으로 하는 어장휴식수산보전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양식어장의 지역별·품종별 표준어업 소득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며, 고령어가은퇴지원 수산보전제의 실시를 위해서는 지역별·품종별 어업권 실거래가격을 근거로 한 표준거래가격이 필요하다. 이는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에서와 같이 입찰제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표준거래가격이 어느 정도에서 형성되는지를 파악해야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근해어업을 대상으로 하는 휴어수산보전제의 실시를 위해서는 지역별·업종별 어업소득 표준화자료가 필요하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휴어기간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이미 예산이 확보된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의 경우에는 수협 어촌계분류평정에 근거하고 있는 취약지구에 대한 재분류가 필요하고, 이들 취약지구 내 어촌계, 어가수 등의 자료가 새롭게 조사되어야 할뿐 아니라 조건불리지역과 비조건불리지역의 표준어업소득 차를 산출해야 한다. 또한 일부 수산보전제 사업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불법어업 적발여부, 유희양식어장 자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자료 및 정보들은 해양수산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할 자료들이며,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화 자료는 기본정보와 상세정보로 구성된다. 사후관리를 위한 기본정보는 수산보전제의 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기입해야 되는 정보이다. 여기서 어업인 공통사항으로는 주민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주소 등), 면허종류, 면허번호, 생산량, 어업조수입, 어업외 소득여부 등이 기입되어야 하며, 양식어업의 경우에는 양식품종, 면적, 시설량 등을 추가해서 기입해야 한다. 또한 양식어업인 중 어류양식어업인의 경우에는 현재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어류현황조사 통계(양식면적, 양식품종, 입식량, 출하량, 폐사량, 판매금액, 현사육량, 사료투입량)와 맞추어 작성하여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사후관리자료 중 상세정보는 각 수산보전제별로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는 조건불리지역 내 어가정보, 친환경부표 수산보전제는 현재 부표사용량 및 부표종류, 재해예방 수산보전제는 1시간 이상 운항거리 20km 이상 피항 어선에 대한 대상자 리스트 및 지원대상 어선의 정보(선적항, 대피항, 선주명, 톤급 등) 등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어가은퇴 수산보전제의 시행관리를 위해서는 양식업종, 양식품종, 경영주 연령, 양식어업 종사기간, 면허취득일자, 면허유형(개인, 어촌계), 면허지분율 및 면허면적(ha), 지원금 수령방식(매월 또는 분기), 지원금 수령계좌번호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장휴식년제의 시행을 위해

서 어장청소, 어장정화사업, 어장휴식 이력 등의 어장관리정보, 재해피해정도(연도, 재해 종류, 피해규모, 복구비 수해액) 등의 자료가 DB화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3] 수산보전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구분		내용	
사전확보자료 및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식어장의 지역별·품종별 표준 어업소득 자료</li> <li>- 지역별·품종별 어업권 실거래가격을 근거로 한 표준거래가격</li> <li>- 지역별·업종별 어업소득 표준화 자료</li> <li>- 조건불리지역 재분류, 취약지구 내 어촌계, 어가수, 조건불리지역과 비조건불리지역의 표준어업소득자료</li> <li>- 불법어업 적발여부</li> <li>- 유희양식어장 자료</li> </ul>	
사후 관리 자료	기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인 공통으로 주민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주소 등), 면허종류, 면허번호, 생산량, 어업조수입, 어업의 소득여부</li> <li>- 양식어업의 경우 양식품종, 면적, 시설량 등 추가</li> <li>- 어류양식어업인은 어류양식현황조사 통계와 맞추어 작성 ·양식면적, 양식품종, 입식량, 출하량, 폐사량, 판매금액, 현사육량, 사료투입량 등</li> </ul>	
	상세 정보	조건불리지역	- 조건불리지역내 어가정보
		친환경부표	- 현재 부표사용량 및 부표종류
		재해예방	- 대상자 리스트 확보(1시간 이상 운항거리 20km 이상 피항 어선) - 지원대상 어선정보(선적항, 대피항, 선주명, 톤급 등)
		고령어가은퇴	- 양식업종(어류, 패류, 해조류 등), 양식품종, 경영주 연령, 양식 어업 종사기간, 면허취득일자, 면허유형(개인, 어촌계), 면허지분율 및 면허면적(ha), 지원금 수령방식(매월 또는 분기), 지원금 수령계좌번호
		휴어	- 어업의 종류, 어획대상어종, 월별 생산량
어장휴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장관리정보 : 어장청소, 어장정화사업, 어장휴식 이력</li> <li>- 재해피해정보 : 연도, 재해종류, 피해규모(피해면적, 피해액), 복구비 수해액</li> </ul>		

현재로서는 농림부와 유사한 형태의 어가등록제는 불가능하나 향후 수산보전제가 수산 정책에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는 어가등록제를 염두에 둔 수산보전제 관련 자료 및 정보에 대한 DB구축이 요구된다.

따라서 추진방안으로는 수산정책과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업인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행정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을 줄이는 데 효과를 볼 수 있는 어가등록제를 추진하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DB화한다. 이러한 어가등록제를 바탕으로 향후 수산보전제가 시행되었을 때 관련 자료와 정보를 DB화 하도록 한다. 물론 어가등록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는 새로운 검토 및 연구가 필요하다.

## 나. DB화를 위한 관련제도 마련

수산보전제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 및 사후관리로 반드시 관련 자료 및 정보에 대한 DB 구축을 통한 중복지원 및 행정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어가등록제의 등록방법은 임의등록의 원칙 하에 등록을 정책사업 신청의 계약조건으로 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책사업의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가는 사전에 어가등록을 하고 등록번호를 교부받은 뒤 그 번호로 정책사업을 신청하게 한다. 정책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등록내용도 정책사업의 종류(유형)에 따라 농림부처럼 기초등록과 상세등록으로 2단계로 나누어 등록하도록 한다.

이러한 어가등록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으로는 크게 수산보전제의 근거법령에 명시하는 안과 등록제 자체를 위한 별도의 법령을 두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구상중인 어가등록제는 수산보전제보다는 수산정책 및 관련 시책의 효율적 집행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수산보전제의 근거법령에 명시하는 안은 적합성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큰 틀에서 어가등록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행 수산관련 법률 중에 어가등록제의 법적 근거가 될 적합한 법률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림부처럼 수산관련 기본법<sup>34)</sup> 등을 새로이 제정하여 수산보전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다. 기대효과

수산보전제 DB화를 통해 업무 담당자는 어가의 수산보전제 지원현황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고, 수산보전제의 확대시 어가별 맞춤형 정책지원이 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수산보전제의 DB화가 어가등록제와 연계되어 실시된다면, 어가경영모니터링이 가능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을 올릴 수 있다.

34) 농어업특별대책위원회에서 2007년도 과제 ‘수산기본법(가칭) 제정방안’에서는 어가등록제를 다루고 있음

또한 정부의 어가경영 실태 및 지원정도에 대한 파악을 기반으로 한 정책 실시로 어가의 소득안정에 궁극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6-4] 수산보전제 DB화를 통한 기대효과

해결방안	수혜대상	기대효과	기대효과 상세내용
DB화	업무담당자	맞춤형 정책지원	· 어가소득안정정책을 시행 시 정책자료 기반 마련 가능함
		어가경영 모니터링 가능	· 수산보전제 대상 어가의 경영정보 취합 및 모니터링이 가능함
		행정업무 효율화	· 수산보전제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별 정책 사업 신청에서의 중복과 분산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가능함
	어업인	차별화 정책지원	· 궁극적으로 어가소득안정에 기여



## 제7절 수산보전제 추진방향과 로드맵

### 1. 기본방향

수산보전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및 실시를 위하여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현 연구단계에서 제안된 수산보전제 종류는 6개이며 이중 친환경부표수산보전제는 2009년에,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는 2010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들 수산보전제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통의 근거 법으로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이 있으며, 또한 각 수산보전제별로 근거 법이 있지만 수산보전제를 시행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소관의 관련 법령이 요구된다. 즉 ‘수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및 규칙’이 해양수산부령으로 2008년에는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산보전제가 향후 수산정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해양수산부 소관의 법령에 근거 조항인 ‘어업인 등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 조문을 수산기본법을 제정하거나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담도록 해야 한다.

둘째, 수산보전제는 어업인에게 직접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합리적 지원과 함께 어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따라서 대상자 및 지원수준 등을 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원칙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명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산보전제별로 향후 각 담당부서에서 행정적으로 기준 또는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할 과제를 제안해 두었으므로 시범사업 등을 시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이러한 과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조건불리지역의 경우 대상어가에 포함될 어업의 범위(신고어업 포함여부), 사업지원 대상인 취약지역의 재분류 그리고 지원근거자료인 어업소득차액자료를 수협자료 또는 통계청자료 혹은 실사를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효율적 추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사전 신청제와 사전 예고제를 실시한다. 수산보전제를 시행함에 있어 각 수산보전제 프로그램에 의견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사전에 신청하도록 하여 이를 DB화 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수산자원회복 또는 관리를 위해 강제성이 강하거나 어업활동의 중단 등으로 어업인의 희생이 요구되는 수산보전제의 경우는 사전 예고제를 통하여 참여 어업인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사전에 반드시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수산보전제 중에서 어가별로 차별적 지원을 해야 하는 고령어가은퇴, 휴어 및 어장휴식 수산보전제는 지원방식을 간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찰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입찰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표준화된 단가 및 지원수준 등이 지역별, 품목별 및 어업별로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범사업 전에 충분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자료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현행의 정책 및 관련 제도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고령어가은퇴와 휴어의 경우는 현행의 어선감척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어선감척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어가은퇴 수산보전제는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고령어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어장휴식 수산보전제는 ‘어장관리법’에 의거하여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되어야 어장휴식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된 어장관리특별해역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어장휴식 수산보전제는 어장생산성 향상 및 어장정화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는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휴어 수산보전제는 어선감척사업의 종료 시점을 고려하고 수산자원회복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여섯째, 친환경부표지원은 2011년에 사업이 완료되는데 어장환경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은 WTO/DDA 수산보조금 규정에서도 허용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2단계사업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2단계 사업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량부자사업과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일곱째, 사전준비-시범사업-본사업의 단계별 추진 및 시행하기 용이한 수산보전제를 우선 추진하도록 한다. 수산보전제는 어업인에게 직접 재정지원하는 제도로 매우 세심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므로 시범사업 전에 세부사업방안을 마련해서 접근해야 한다. 본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세부사업방안은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사전준비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시행이 용이한 재해예방, 고령어가은퇴의 순으로 우선적으로 도입하는데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여덟째,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수산보전제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건불리지역과 친환경부표지원을 제외한 4개 수산보전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하여 이들 4개 수산보전제에 대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수산보전제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수산보전제별로 관련 담당부서가



말아서 추진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해양수산부내 통상협력팀이 수산보전제를 총괄해 오고 있는데 예산 확보 등 그 동안 수산보전제가 수산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데 통상협력팀이 많은 기여를 했으며 그 역할은 다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는 관련 부서로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내용 중에는 통상협력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제부터는 관련 담당부서가 전담해서 세부사업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수산보전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열째, 수산보전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 막 도입된 새로운 정책으로 수산보전제는 국제무역자유화가 진전되는 현 시점에서 기존의 수산보조금을 대체하고 어가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유용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담당자 및 지자체 그리고 어업인 대상으로 사전에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 2. 연도별 추진 로드맵

앞에서 언급한 수산보전제 추진의 기본방향과 각 수산보전제별로 본 연구에서 검토한 내용 그리고 관련 제도 및 DB구축 방향 등을 바탕으로 수산보전제 추진 로드맵을 제시해 보면 [표 2-7-1]과 같다. 이 로드맵을 참고로 하여 각 담당부서에서는 수산보전제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이다. 이 로드맵을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에 수산보전제사업이 시행되므로 2008년도에 해양수산부령의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예산이 확보된 2개를 제외하면 시행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재해예방, 고령어가은퇴, 휴식 그리고 어장휴식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특히 재해예방은 지원에 필요한 사전자료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교적 도입이 용이하므로 내년에 도상연습 등 세부사업방안을 마련하면 2009년에는 시행 가능할 것이다. 고령어가은퇴, 휴어 및 어장휴식의 경우에도 각 담당부서에서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다. 단 비교적 지원금 지급이 용이한 입찰제에 의한 지원방식을 채택한다면 사전에 해양수산부는 표준화된 지원단가 자료 등을 확보한다면 로드맵에 제시한대로 추진할 수 있다.

셋째, 합리적 추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자료 및 정보의 DB 구축이 필요하다. 수산보전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자료와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가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원단가 자료 등 확보에 필요한 추가 연구 등이 요구된다.

[표 2-7-1] 수산보전제 추진 로드맵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관련 법률정비		시행규정, 규칙마련					수산기본법(가칭) 또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등에 근거 조항 마련
수산 보전제	조건불리지역 (예산확보)	세부사업방안마련		시범사업(2년)		본 사업	
	친환경부표지원 (예산확보)	세부사업방안마련	본 사업(1단계)			본 사업(2단계)	
	재해예방	세부사업방안마련	시범사업 (1년)	본 사업			
	고령어가은퇴	세부사업방안마련		시범사업(2년)		본 사업	
	휴어	세부사업방안마련			시범사업(3년)		본 사업
	어장휴식	세부사업방안마련		시범사업(2년)		본 사업	
DB화 등		사전자료 및 정보 확보		사후관리자료 확보(기본정보, 상세정보)			

### 3. 대략적 소요예산 추정

본 연구에서 여러 가지 전제 또는 가정 하에서 대략적으로 소요예산을 추정해 보면 [표 2-7-2]와 같다. 시행하기 전에 각 수산보전제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요예산을 산정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시행 년도가 확정된 조건불리지역과 친환경부표지원의 소요예산은 비교적 합리적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지원대상 수 등에 있어 자의적인 감소율을 적용시켜 산정하고 있어 향후 실제 사업추진 시 이를 고려하여 소요예산을 새로이 추정할 필요가 있다.

각 수산보전제별로 대략적인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2010년에 시범사업이 확정된 조건불리지역은 2008~2009년의 2년 동안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기간에 사전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사전자료란 지원대상인 조건불리지역인 취약지역과 대상 어가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원기준이 되는 표준 어업소득 차액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예산은 5억 정도이다. 그리고 사전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어가 등에 대한 DB화에 1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시범사업에서는 13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2010년 이후에는 2017년까지 본사업의 총예산은 35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친환경부표지원은 2009~2011년 3년 동안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데 이 때 소요



예산은 193억원으로 산정되었다. 그리고 2단계사업의 경우 개량부자사업과 통합하여 연간 대략 3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1단계는 친환경부표사용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지원단가의 100%를 지원하고 2단계사업에서는 이미 법제도적으로 친환경부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다.

셋째, 재해예방의 경우 울릉군과 완도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에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본 사업 소요예산은 연간 55억원으로 이는 도서지역어선의 10%(약 3600여척)를 지원대상으로 가정하여 추정한 금액이다.

[표 2-7-2] 수산보전제 대략적 소요예산 추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수산 보전제	조건불리지역	사전 자료 확보 (행정조사) (5억원)	DB화 (12억원)	시범사업 (132억원)		본 사업(~'17년) 359억원
	친환경부표지원	사전 자료 확보, DB화(1억원)	1단계 본 사업(193억원)			2단계 '12년-(연간 32억원)
	재해예방	사전 자료 확보, DB화 (5억원)	시범사업 (10억원)	본 사업(연간 55억원)		
	고령어가은퇴	사전 자료 확보, DB화 (5억원)		시범사업 (연간 80억원)		본 사업 '12년(연간 396억원) '13년-(연간 277억원)
	휴어	사전 자료 확보, DB화 (9억)			1단계 '11~'13년 (274억원)	2~3단계 '14~'19년(776억원)
	어장휴식	사전 자료 확보, DB화 (5억원)	시범사업 (연간 80억원)			본 사업 '12년~(연간 320억원)

넷째, 고령어가은퇴수산보전제는 어촌계어장 개인어장에 따라 2가지 지원방법으로 구분해야 하는데 [표 2-7-2]에 제시된 대략적 소요예산은 어촌계어장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고령어가를 지원대상으로 추정한 것이다. 2년에 걸쳐 시범사업이후 2012년부터 본 사업의 경우 연간 첫해는 대략 396억원, 다음 해부터는 27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대상어가 5900어가에 대해 첫해의 경우는 100%지원, 그 다음해부터는 70%지원하는 조건으로 추정하였다. 대략적 지원소요금액은 시설물 철거비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현재의 지원단가로 산정하였다. 그리고 개인어장의 경우는 어업권

을 국가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어장가격이 바로 지원소요예산인데 이 부분 또한 제외되어 있다. 향후 고령어가은퇴의 개인어장의 경우는 입찰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사전에 지역별, 품종별 어장의 시장거래 가격을 파악해 두어야 한다.

다섯째, 휴어 수산보전제는 자원회복 또는 자원증대의 목적으로 수산보전제가 지향하는 목적에 가장 적합하지만 어가별 지원금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보다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입찰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사전에 지역별 어업별 표준화된 어업소득 자료가 필요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로 3년(2008~2010년) 동안 9억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대략적인 소요예산은 모든 대상어가 중 10%정도가 휴어에 참여한다고 가정하여 추정한 금액이다.

여섯째, 어장휴식 수산보전제는 어장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어장휴식 수산보전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시범사업을 굴, 피조개, 김, 미역을 대상으로 3년(2009~2011년) 동안 8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시범사업의 소요예산은 통영의 굴 어장, 남해의 피조개어장 그리고 완도의 김과 미역어장의 10%가 휴식한다고 가정하여 추정한 금액이다. 그리고 본 사업은 이 시범사업의 4배 정도 확대할 것을 예상하여 추정한 금액이다. 어장정화 후 휴식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향후 세부사업방안 마련 시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 4. 관련 담당부서

수산보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대상확정, 지원수준 그리고 소요예산 등과 관련하여 세부사업방안을 마련해야 하므로 해양수산부내 관련 담당부서가 말도록 해야 한다.



[표 2-7-3] 수산보전제별 담당 부서

명칭 (담당부서)	유형	이행(지급)요건	목적
조건불리지역 (수산경영과)	◦ 다원적 기능유지	◦ 어장관리 등 - 불법어업 3회 이상시 미지급	◦ 지역균형발전 - 어업인·어촌 소득지원
친환경 부표지원 (양식개발과)	◦ 어장환경보전	◦ 친환경부표 사용	◦ 지속가능한 수산기반 강화 - 안전한 수산물 생산효과
재해예방 (수산정책과)	◦ 다원적 기능유지	◦ 재해 최소화 노력 - 불법어업 3회 이상시 미지급	◦ 지속가능한 수산기반 강화 - 어업경영안정화 효과
고령어가은퇴 (양식개발과, 어업정책과)	◦ 다원적 기능유지	◦ 수산업 은퇴 - 어업권 반납	◦ 어업인 사회안전망 - 고령자생활안정 효과 - 양식어업 구조개선 효과
휴어 (어업정책과)	◦ 자원보전·관리	◦ 어업활동 쉽(어선어업)	◦ 지속가능한 수산기반 강화 - 수산자원증대 효과
어장휴식 (양식개발과)	◦ 어장환경보전·개선 ◦ 자원보전·관리	◦ 어업활동 쉽(양식어업)	◦ 지속가능한 수산기반 강화 - 생산조정 효과

수산보전제별로 담당부서를 제시한 것이 [표 2-7-3]이다. 수산경영과는 조건불리지역, 양식개발과는 친환경부표지원, 고령어가은퇴, 어장휴식으로 3개의 수산보전제를 각각 담당한다. 수산정책과는 재해예방 그리고 어업정책과는 휴어와 고령어가은퇴(어선어업부문)을 각각 담당하도록 한다.

## 제8절 수산보전제별 세부사업 시행(안)

### 1.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

#### □ 사업목적

-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해 어가경제 안정 및 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취약지역(조건불리지역)내 어가 및 어촌공동체
  - 취약지역 : 수협중앙회 「어촌계분류평정」에 의함
  - 취약지역내 어가소득 및 어촌공동체지원
- 지원대상 규모 : 311개소('06년 기준)
  - ※ 전남 170개소, 경남 62개소, 인천 28개소, 전북 21개소, 충남 15개소임
- 지원조건
  - 어장관리, 경관보전, 재난구호, 지역활성화 등 의무사항 이행
  - 전년도 불법어업 3회 이상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킴
- 지원기준
  - 조건불리지역(취약지역)과 비조건불리지역(비취약지역)의 어가평균 어업소득의 차액을 지원
- 지원방법
  - 어가소득지원단가 : 어업소득차액의 30%
  - 어촌공동체지원단가 : 어업소득차액의 70%
- 지원형태
  - 어가소득지원 : 국비 70%, 지방비 30%
  - 어촌공동체지원 : 국비 100%
- 어촌계별 총소요 예산 = 어가소득지원금 + 어촌공동체지원금
  - 어가소득지원 : 지원단가(어업소득차액의 30%) × 어가수
  - 어촌공동체지원(어촌계) : 지원단가 × 어가수



## □ 집행주체

- 어가소득지원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시장·군수)
  - ※ 지자체(시군)에서 어업면허(허가, 신고) 등을 취급
- 어촌공동체지원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지방청)
  - ※ 어촌계 관리 및 지도·감독업무 등을 취급

## □ 사업방식

- 시행주체 : 지자체, 해양수산부
- 사업기간 : 2008년~
  - '08~'09년 : 세부사업 방안마련
  - '10년~'11년 : 시범사업 실시(2년)
  - '12년 이후 : 본격적인 사업 추진
- 사업규모 : 조건불리지역(취약지역) 311개소
- 대략적인 소요예산(추정) : 508억원
  - 행정조사 등 용역(2008년) : 5억원
  - DB화 등 행정비용(2009년) : 12억원
  - 시범사업(2010~2011년) : 132억원(어가소득보전, 공동체 지원, 사업평가 및 행정비)
  - 본 사업(2012~2017년) : 359억원(어가소득보전, 공동체 지원, 사업평가 및 행정비)

## 2. 친환경부표 수산보전제

### □ 사업목적

- 연안 어장에서 사용되는 양식어업용 스티로폼 부표를 환경오염을 저감 시킬 수 있는 일정한 규격의 스티로폼으로 대체하기 위해 대체 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어업인의 규격제품 부표 사용의무이행을 촉진하여 연안 어장환경을 개선함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어업용 고밀도 스티로폼 부표를 이용하는 어업인에게 직접 지원
- 사업대상 규모
  - 저밀도 스티로폼 부표 : 전체 어업용 부표의 사용량은 약 27백만 개로 추정되고, 이 중 스티로폼 제품은 23백만 개(85%)에 달하고 있음
- 지원조건
  - 친환경부표 교체를 위한 신청서(품종, 면적, 부표수량)를 시군에 제출한 어업인으로서 시군의 승인물량에 대해서 지정 부표 생산업자에게서 물량을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을 시군에 제출한 어업인
- 지원수준
  - 기존 스티로폼( $0.020\text{g}/\text{cm}^3$  이하) 부표 가격과 고밀도( $0.020\text{g}/\text{cm}^3$  이상) 스티로폼 부표 가격의 차이 중 일부를 지원함
    - 개당 평균 가격차 : 700원
    - (고밀도 스티로폼 3,700원 - 기존 스티로폼 60l 1개당 3,000원)
- 지원방법
  - 고밀도 스티로폼 부표와 저밀도 스티로폼 부표의 가격차이의 일정 부분을 어업인에게 직접 지원하여 고밀도 스티로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
- 지원형태
  - 국고 70%, 지자체 30%

## □ 사업방식

- 시행주체 : 지자체
- 사업기간(2008년~)
  - 2008년 : 사전 자료 확보 및 DB화
  - 2009~2011년 : 1단계 본사업 실시
  - 2012년 이후 : 2단계 본사업 실시
- 사업규모 : 양식용 부표(부자) 23백만 개 중 1년간 매년 40%씩 교체
  - ※ 3년간 100% 교체를 목표로 매년 40%씩 교체를 가정하는 이유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분 등을 감안하여 년 간 5% 정도 여유를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대략적인 소요예산(추정)
  - 사전 자료 확보 및 DB화 (2008년) : 1억원
  - 1단계 본사업(2009~2011년) : 193억원(연간 64억원)
    - 총사업비 = 스티로폼 부표 사용량(230백만 개) × 교체율(40%)  
× 저밀도 스티로폼과의 단가차이(700원)
  - 2단계 본사업(2012년 이후) : 연간 32억원
    - 2단계 사업부터는 단가차이의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3. 재해예방 수산보전제

#### □ 사업목적

- 피항기능을 갖추지 못한 열악한 도서지역에 태풍 등 자연재해가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타 지역으로 피항하는 경우에 한해 발생한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매년 불필요한 어업외비용 발생의 부담과 인명피해를 경감시키는 등 어가경제 안정과 자연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함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태풍내습시 어선대피 수산보전제의 대상범위는 “피항기능이 미흡한 열악한 도서지역에서 외부(타항)로 대피를 위해 출항한 연근해어선”에 한함
  - ※ 도서지역의 경우일지라도 대피항이 인근 지역(1시간 미만의 운항거리 또는 20km이내의 거리)인 경우 대상범위에서 제외
  - 행자부 전국도서현황(2000년) 기준으로 도서지역의 어선수(동력)는 총 36,435척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10%정도가 1시간 또는 20km이상 떨어진 곳으로 피항을 간다고 가정할 경우 3,643척 정도로 예상됨
- 지원 수준 및 단가
  - 지원대상의 어선이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대피를 목적으로 지출한 소요경비 중 유류비, 숙박비, 식비의 일부분을 지급함
  -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개인의 책무가 동시에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소요경비의 50%를 지원

-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태풍 내습빈도는 약 3.1회로 나타나 지원수준을 3회까지로 한정함
- 지원방법
  - 국비 100%
  - 태풍의 피해가 7월~10월에 집중되므로 매년 연말에 사업주체(시·군·구)가 신청자로부터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정산하여 지급

#### □ 사업방식

- 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기간(2008년~)
  - 2008년 : 세부사업방안 마련
  - 2009년 : 시범사업 실시(1년)
  - 2010년 이후 : 본사업 실시
- ※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재해예방 수산보전제 추진의 문제점 검토 및 시행기반 조성
- 사업규모 : 3,643척
- 대략적인 소요예산(추정) : 455억원
  - 사전 자료 확보 및 DB화(2008년) : 5억원
  - 시범사업(2009) : 10억원
  - 본사업(2010년 이후) : 연간 55억원
- 총사업비 = 지원대상어선수(3,643척) × 해당 소요예산 추정비(84만원) × 지원율(60%) × 태풍내습빈도 3회
- ※ 연간 도서지역어선의 10%(약 3600여척)를 지원대상으로 가정하여 추정한 금액임

## 4. 고령어가은퇴 수산보전제

#### □ 사업목적

- 고령 어업인의 은퇴를 유도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
  - 양식면허를 국가에 반납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에게 생활자금을 지원
  - 정부의 일방적 지원이 아닌 면허권의 반납 또는 어업활동 은퇴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



하여 타 부문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

#### □ 사업내용(양식어업)

- 지원범위
  - 은퇴 후 고령어가 생활자금 지원(기준 : 어업소득 또는 면허권 거래가)
  - 양식시설물 철거비용(어류가두리양식의 경우)
- 지원대상
  - 연령 : 65세 이상~75세 미만의 양식어업 경영주 가운데 사업희망 신청자
  - ※ 개인면허(어업허가권) 또는 어촌계면허 내의 지분을 보유한 자
- 지원기간 : 최장 80세까지 지원
- 지원조건
  - 은퇴를 기준으로 기존의 면허(허가)권을 포기해야 하며, 신규면허의 취득을 금지함

#### 〈지원대상자 규모〉

- 2005년 어업총조사 결과, 총 79,942어가의 30.1%인 24,075어가가 양식어업에 종사하며, 이중 65세 이상~75세 미만의 양식어업 경영주 어가는 5,909어가로 전체 양식어가의 24.5%를 차지

- 지원 수준
  - 어촌계 어장 : 60세 이상 양식어가 평균 어업소득의 70% 지원(1차년도 100% 지원)  
+ 시설철거비(별도)
  - ※ 통계청 「어가경제통계」의 양식어가 연령별 소득통계 기준(최근 3년 평균)
  - 개인어장 : 품종별 ha 당 어업권 실거래가격 + 시설철거비(별도)
- 지원방법
  - 매월 또는 분기별 연금형식으로 분할지급
  - 개인어장의 경우 연근해어선 감척사업과 같이 입찰방식(공시가격)으로 추진

#### □ 사업방식

- 시행주체 : 지자체(시·군)
- 사업기간(2008년~)
  - 2008년~2009년 : 사전자료 확보 및 DB화
  - 2010년~2011년 : 2년간 시범사업 실시(특정지역 및 품종선정)
  - 2012년 이후 : 본사업 실시

- 사업규모 : 5,909어가(65세~75세 미만 양식어업 경영주)
- 대략적인 소요예산(추정)
  - 사전 자료 확보 및 DB화(2008년~2009년) : 5억원
  - 시범사업(2010년~2011년) : 연간 80억원
  - 본사업(2012년 이후)
    - 2012년 연간 396억원(5,909어가 × 670만원 × 100%)
    - 2013년 이후 : 연간 277억원(5,909어가 × 670만원 × 70%)

## 5. 휴어 수산보전제

### □ 사업목적

- 수산자원의 보존 및 자원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중 특정 어종 또는 어업에 대한 어업활동을 금지토록 하고 이로 인한 어업소득 감소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어촌사회를 유지시킴
  - 휴어제는 어업생산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생산을 억제하는 것이며, 과잉 투하된 어업노력량을 조절 감축하는 수산자원관리 및 자원회복의 수단으로 이에 대한 지원보조금은 WTO-DDA에서 조치가가능한 보조금 범주에 해당

### □ 사업내용

- 지원대상(4개의 유형별 상이함)
  - 수산자원회복대상어종 어획어업 휴어(유형 I, 유형 II)
  - 미성어 어획어업 휴어(유형 III)
  - 소형어 어획어업 휴어(유형 IV)
- 지원조건 : 휴어기간 중 모든 어업활동 쉽
- 지원수준
  - 휴어기간 동안 상실되는 어업소득의 70%를 지급함
  - ※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어업인 책임 1/3 반영
- 지원방법
  - 근해어업 휴어지원금액 산정방법(기본원칙)
  - 휴어지원 금액 = 휴어기간중(어업이익 + 인건비) × 2/3 + 휴어기간 중 고정비



※ 휴어지원 금액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담 금액임

## □ 사업방식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기간(2008년~2019년)
  - 2008년~2010년 : 사전자료 확보 및 DB화
  - 2011년~2013년 : 1단계 사업(10어종, 5개 어업), 시범사업 포함
  - 2014년~2019년 : 2~3단계 사업실시(20개 어종, 10어업)
- 대략적인 소요예산(추정) : 1,059억원
  - 사전 자료 확보 및 DB화(2008년~2010년) : 9억원
  - 1단계 사업(2011년~2013년) : 약 274억원
  - ※ {205.8억원(1년/1회/1달 기준 3년간 자원회복 어종어획 휴어실시 금액) + 68.4억원(1년/1회/1달 기준 3년간 자원회복 다수어종어획 휴어실시 금액)}
  - 2~3단계 사업(2014년~2019년) : 776억원
  - ※ 총 휴어제 추정예산 258.5억원 × 3년(휴어실시기간을 3년으로 잡을 때)
- 기타소요예산
  - 세부이행계획수립 및 일반관리비
  - 휴어제 사후관리를 위한 어획실적 DB구축 및 관리비용, 자원평가비용 등
  - 사전준비로서 합리적 지원을 위한 어업경영체별 어업소득 등에 대한 정보, DB구축 및 활용에 대한 연구사업 및 사업비용 등

## 6. 어장휴식 수산보전제

### □ 사업목적

- 어장휴식 수산보전제 도입을 통해 어장휴식제와 어장정화사업을 활성화하여 해양환경의 보전·개선과 어장 생산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함
- 어장휴식을 실시하는 양식어장에 대해 소득감소분의 일정 금액을 어업인 생계유지 차원에서 보조

##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어장관리특별해역 내에서 양식어장을 경영하는 어업인
  - 환경악화로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 품종(남해의 피조개 등)
  - 어장정화사업과 병행실시하고 양식주기가 1년인 품종(통영의 굴, 완도의 김, 미역, 다시마 등)
  - ※ 어장정화사업 전후에 어장휴식을 실시하여 환경 개선에 상승효과가 기대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양식시설물 철거·재시설의 비용이 절감됨
- 사업대상 양식어장의 범위
  -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하는 해역이 대상이므로 사전적으로 양식어장의 범위를 한정할 수는 없음
  - 그리고 대상 양식어장의 사업 단위는 지분으로 나뉜 어업인의 경영 단위가 아닌 면허단위임(지분권자가 여럿인 경우 이들이 합의하여 사업을 신청함)
- 지원기간 : 2년 이상(어장관리법상의 휴식기간 고려)
- 지원조건
  - 어장휴식 기간 동안 해당 양식어장에서 양식 시설물을 철거하고 어장을 전혀 이용하지 않음
- 지원수준
  - 어장휴식 기간의 소득 감소에 대해 해당 양식어가 평균 어업소득의 50%를 지원함
  - 휴식어장 규모화를 위해 인접어장 동시 참여유도 시에는 양식어가 평균 어업소득 50%에 10%를 더하여 지원함
- 지급방법
  - 소득 보전 목적의 지원은 일시불이 아닌 분기별 또는 월별로 분할 지급하여 어가의 생계안정을 도모함
  - 어촌계면허이거나 지분으로 나뉜 개인면허의 경우 지원금을 면허의 보유지분만큼 개인별로 할당·배분

## □ 사업방식

- 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기간(2008년~)
  - 2008년 : 사전자료 확보 및 DB화



- 2009년~2011년 : 시범사업(굴, 피조개, 김·미역·다시마), 효과분석
- 2012년~ : 본사업(어장관리특별해역)
- 대략적인 소요예산(추정)
  - 사전 자료 확보 및 DB화(2008년~2010년) : 5억원
  - 시범사업(2011년~2013년) : 연간 80억원
  - ※ 통영 굴, 남해 피조개, 완도 김과 미역어장의 10%가 휴식한다고 가정하고 산출
  - 본사업(2014년~2019년) : 연간 320억원
  - ※ 본 사업은 시범사업의 4배 정도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정한 금액임



## 제 3 장

#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확산방안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과 유형
제 3 절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 사례분석
제 4 절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의 현장활용 및 확산방안



## 제1절 개 요

최근 WTO/DDA 및 FTA 등의 개방화 협상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수산업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방화 협상이 추진되면, 국내 수산업에 지원되고 있는 상당부문의 보조금이 금지되거나 감축될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타국에 비해 경쟁력이 열악한 업종이나 품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자원감소 및 고유가 등에 따른 어업경비 상승 등으로 수산업·어촌의 현실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수산업·어촌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변화 속에서 수산업·어촌의 자생력을 조기에 회복시키지 않으면 수산업·어촌의 존립기반이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수산업·어촌의 자생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능력 또는 어촌의 지역 특색에 따라 다양한 수익창출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갈수록 심화되는 국제 경쟁체제 하에서 이와 같은 여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확대하여 블루오션(Blue-Ocean)의 이익을 향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수익발생 모델 분석을 통해 타 업종·지역 등에서 이를 재창조하여 활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사업은 일회적인 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공사례의 발굴, 유형화, 홍보, 적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대적 변화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용이하도록 할 뿐 아니라, 수산업·어촌 부문에서 성공할 수 있는 본질적인 요인들을 밝혀내서 어업인, 어촌계에서 그들의 실정에 맞추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컨설팅 기능 등을 포함한다.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의 추진목적은 수산업·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본격적인 개방화 시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추으로써, 지속적인 수익창출 및 어촌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산업·어촌은 경쟁력이 약한 분야라는 막연한 인식에서 탈피하여, 기술적·사업적 전략 혹은 비즈니스모델을 적극 응용하여 수익창출이 가능한 업종 및 공간으로서 수산업·어촌을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에도 고유한 수익모델을 이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어업인 및 어촌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을 적합하게 유형화 하여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 제2절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과 유형

### 1. 개념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에 관해서는 “이익창출을 위한 기업조직의 핵심논리<sup>1)</sup>”,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여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 또는 “제품, 서비스, 정보 흐름을 위한 구조물로 정의하되, 이 구조물을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의 역할 및 부가가치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sup>2)</sup>”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은 해당 경영체의 특정전략 하에서 각 사업단위 별로 경쟁우위의 확보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추진 방법으로서, 이미 창출된 가치를 현재 혹은 미래의 경쟁자로부터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법에 주안점을 두는 ‘전략’(Strategy)과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은 “수산업·어촌의 제반 자원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모든 사업조직의 핵심 논리”라고 정의하여 사용되었으며, 이 분야에서의 사업화 추진을 위한 교두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2. 비즈니스 모델의 의의

사실 불확실성(Uncertainty)과 위험(Risk)이 산재해있는 시장경제에서 특정의 우수 비즈니스 모델이라 해서 모든 상황에서 다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이다.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라 하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창업가의 자세와 노력, 그리고 당시 주어진 경영환경 등이 결합하여 전혀 다른 경영성과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산기업 및 어촌의 사례들 중에서 성공하고 있는 주요 요인에 대한 분석 없이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업전략을 한 치도 도출할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도 무엇이 걸림돌이고 무엇이 성공요인인지 전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현재 상황에 대한 성공요인의 명시적 패턴을 구체화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하에서 현재 성공을 거두고 있는 자신들만의 비즈니스 모

1) Linder, J. C., & Cantrell, S.(2000),” Changing Business Models : Surveying the Landscape, Institute for Strategic Change, Accenture

2) Timmers, P.(1998),” Business Models for electronic markets”, Journal on Electronic Markets, vol.8(2), pp.3~8

델을 명확하게 구체화할 수 없다면, 향후 변화에 적응하는 올바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sup>3)</sup>. 향후 불확실한 모든 상황 하에서 각종 사업 아이템들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사업전략의 패턴과 경험적 출발점을 사전에 만들어 놓는 것이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성공기업 또는 어촌계의 성공요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유형화 하는 등의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및 확산체제 구축 연구는 일반 어업인들에게 성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현재 성공하고 있는 기업에게도 향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3.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

#### 가. 비즈니스 모델 분류 기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서, ① 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어업인의 초기조건(initial conditions)과 ② 사업화 추진시 주로 취하게 될 전략의 유형(type of strategy) 등을 이용하여 2-차원적 유형화 기법(2-dimensional stratification method)을 적용하였다.

##### 1) 사업자의 초기조건

우선 사업을 시작하려는 어업인의 초기조건으로는 본래 해당 지역에서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① 수산업과 연계되는 사업 아이템에서 출발하고자 하는 경우와, ② 수산업과는 무관하지만 해당 지역의 어촌수계나 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사업화에 연계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가 소위 ‘수산업 비즈니스모델(Fisheries BM)’로서 과메기·장어 등의 지역특산물을 가공·처리하여 판매하는 사업화 방안 등이 이런 유형이다.

그리고 후자가 ‘어촌 비즈니스모델(Fishing Community BM)’로서, 사업자 거주 어촌지역의 어촌계 등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각종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공동경영 혹은 협동경영으로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 된다.<sup>4)</sup>

3) Vickers, M(2000), “Models from Mars”, Business Week, 4.Sep. pp.58~59

4) 단, 여기서 ‘공동경영’이라 함은 해당 지역 내 어촌계 등의 공동체 자체가 사업주체로서 경영을 추진하여 어촌계원들이 공동으로 역할을 수행하되,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배받는 경영형태로 정의하여



## 2) 전략의 형태

이와 함께 전략적 유형의 기준으로는 사업화를 추진할 어업인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주로 취하게 될 전략적 특성에 따라서 공급자 특화전략(supply-side strategy)과 시장특화 전략(Demand-side strategy)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컨대 전자와 같이 공급자 특화전략이란 해당 지역의 수산물이나 관광자원 등의 활용가치가 높은 자원을 더욱 특화시키는 전략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장특화 전략이란, 비즈니스 모델의 추진시 산출물을 소비하려는 수요자 혹은 시장의 조건에 부응하려는 각종의 전략을 강화함으로써 사업화의 성공모델로 삼으려는 경우를 말한다.

### 나.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 분류 기준에 따라 4가지 범주로 유형화가 가능해 진다. 즉,

- ① 수산업연계 공급자특화형 비즈니스 모델
- ② 수산업연계 시장특화형 비즈니스 모델
- ③ 어촌자원연계 지역사업화형 비즈니스 모델
- ④ 어촌자원연계 배후소비지활용형 비즈니스 모델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4 가지 범주의 비즈니스 모델 유형별로 특징을 제시하였다.

#### 1) 수산업연계 공급자특화형 비즈니스 모델(FS-type)

‘수산업연계 공급자특화형 비즈니스 모델’이란 사업의 원천을 수산물·수산업에 두되, 이를 사업화하는 핵심 전략을 사업자 자체의 역량강화에 두는 비즈니스모델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경우로는 지역 수산물을 특산물화하여 사업화하는 경우, 신품종·신기술 도입을 통해 원천적인 기술 및 품질 향상을 확보하는 경우, 생산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각종의 공동판매 혹은 생산과 판매의 통합전략을 추진하는 경우 등이 있다.

---

사용토록 함. 그리고 ‘협동경영’이라 함은 해당 지역내 어촌계 등의 공동체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업화를 추진하되, 개인 구성원 하나하나가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되어 생산 및 성과취득이 개인으로 귀속되는 경영형태로 정의하여 사용함. 따라서 후자의 공동체는 개인 사업자들이 각출하는 일정의 공동경비를 재원으로 하여 공동 이익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이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업자 자신에 의한 ‘오너경영’ 형태를 갖추되, 소요 자본규모는 세부적인 비즈니스모델에 따라 다소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신규 기술개발이나 신제품 도입시 이를 위한 시설건축, 신제품 개발 등에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급자 특화 전략을 노하우나 기존 기술의 응용 등으로 비용을 최소화할 경우 작은 규모의 자본으로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수산업연계 시장특화형 비즈니스 모델(FD-type)

‘수산업연계 시장특화형 비즈니스 모델’은 수산물 아이템을 사업화하되, 성공 전략을 시장 특화에서 찾는 모델을 말한다. 이와같은 시장 특화전략으로는 개별사업체 생산물에 대한 브랜드화 전략, 유사 업체간 공동브랜드화 전략 등을 통해 고객과 시장의 로열티를 제고시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사업전략을 말한다. 이와 같은 시장특화형 모델에서는 대고객 접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물류 혁신 및 네트워크화 등의 전략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산업 연계 비즈니스 모델의 공통적 특징은 주로 개별사업자가 경영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업화 초기부터 ‘오너경영’ 형태를 갖추고 추진된다. 이와 같은 시장특화형의 경우 오너경영자가 마련해야 하는 자본규모는 브랜드화를 위한 전략 구축에 소요되는 것이므로 중규모 혹은 소규모 자본이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

## 3) 어촌자원연계 지역사업화형 비즈니스 모델(PS-type)

‘어촌자원연계(province-oriented) 지역사업화형 비즈니스 모델’은 해당 사업자 거주 어촌 지역의 자연경관 및 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특색에 알맞은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는 사업화의 원천이 지역의 수계, 어항 혹은 관광자원 등의 공공재(public goods)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공동체가 사업화 주체를 맞거나,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해당 어촌계 마을의 갯벌을 이용하여 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개인사업자 단위보다는 어촌계 단위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어촌계원들의 ‘공동경영’의 성과를 사후에 배분하되, 사업 추진 주체는 ‘어촌계 등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공동어시장 신설을 통한 공동판매 사업과 같은 경우는 어촌계원 혹은 개인이 각기 개인적으로 사업화를 추진하되 일정의 역할만 공동체가 담당하는 ‘협동경영’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화하는데는 대부분 공동 내지 협동경영 형태이므로, 개인(혹은 어촌계원)의 입장에서는 각출금이나 사업자금이 소규모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 4) 어촌자원연계 배후소비지 활용형 비즈니스 모델(PD-type)

‘어촌자원연계 배후소비지 활용형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화의 원천으로서 어촌지역의 공공재적 자원을 활용하되, 그 가치 실현 전략을 인근의 배후 소비지에서 집중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말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은 공급 측면의 어촌지역 자원의 활용 방안도 중요하지만 인근 대도시 소비지 시장을 목표로 하여 판로를 확보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하다.

[표 3-2-1]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 구분

전략 유형 초기 조건	공급자 특화 전략 (Supply-side strategy)	시장 특화 전략 (Demand-side strategy)	비고
수산업 연계형 (Fisheries-oriented)	<b>수산업연계 공급자 특화형 (FS)</b> 지역 수산특산물 활용, 수산물 신제품·신기술 도입, 생산·판매시의 비용절약 추진 등	<b>수산업연계 시장 특화형 (FD)</b> 개별브랜드화, 공동 브랜드화, 물류혁신 및 네트워크화를 통한 시장접근 강화 등	어획·양식 수산물의 사업화
어촌자원 연계형 (Province-oriented)	<b>어촌자원연계 지역사업화형 (PS)</b> 지역의 어촌수계·관광자원 등의 활용, (어촌계원 단위사업, 어촌계원 공동사업 등의 형태)	<b>어촌자원연계 배후소비지 활용형 (PD)</b> 배후 소비지 활용	어촌수계·관광자원 등의 사업화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단위로는 곤란하므로, 해당 지역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동경영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 어촌계 등의 공동경영 방식이므로 개인적으로는 사업자금이 크게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4. 농업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의 사례분석

### 가. 개요

최근 농업부문에서는 노동·토지·자본 등 인적·물적 요소의 확대에 치중하는 기존의 농업경영과는 달리 아이디어와 기술, 창의력에 기초한 지식기반농업이 서서히 태동하고 있으며, 틈새시장 등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마케팅 혁신을 유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 성공한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연 매출액 160억원 규모의 「풍년농산」의 경우 '5°C 이온쌀'을 만들어 다른 미국종합처리장과 차별화되는 기업으로 포지셔닝을 하여 성공하였다. 또한 연 매출액 35억원 규모의 「장생도라지」의 경우 21년 이상된 다년생도라지의 재배법을 개발하여 의약품과 각종 약제 제품 등 가공제품을 생산하여 독자적인 틈새시장을 개척하여 성공하였다. 이외에도 20~30대의 젊은 직원으로 구성된 「학사농장」은 과학적인 영농기법을 이용하여 유기농 채소류를 생산하고, 1만 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주말 농장을 운영하여 성공하였으며, 「e-사이버팜」의 경우에도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제2의 고향을 주겠다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인터넷 쇼핑과 농촌체험이 결합된 형태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성공을 거두었다.<sup>5)</sup>

이러한 농업부문의 성공기업들은 농산물을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며 안전하게 생산하고 있으며, 계약재배 농가와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계약재배농가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농업부문에서는 업(業)의 개념으로서 Eat(食)과 Entertainment(樂)을 합친 Eatertainment로 신시장을 창출해야 한다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농산물의 소비방식을 벗어나 먹거리로서의 농산물과 이를 통한 즐거움을 만족시키는 신시장 창출로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는 농산물의 판매방식으로 자리잡아 갈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으며, 일부 선도적인 농민들은 이러한 개념혁신으로 성공을 거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농업의 비즈니스 유형

농업의 비즈니스모형은 크게 농가단위 성공모형, 신가치창조 성공모형, 생산·가공·유통기업형, 대규모 계열화 경영체형 등으로 유형화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5) 농촌진흥청, “벤처농업 경영모델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05.



농가단위 성공모형의 대표적인 회사는 최초의 인터넷 쌀가게 설립으로 모든 쌀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뿐 아니라 쌀생산비를 혁신적으로 절감, 수익을 평균적인 쌀재배농가 보다 50% 향상시킨 「해드림」과 유리온실 및 비닐온실에서 무농약 베이비 채소를 생산하여 호텔과 백화점에 판매하고 베이비 채소시장의 50% 정도를 확보한 「건강나라」를 꼽을 수 있다.

신가치창조 성공모형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감나루」와 「장생도라지」를 들 수 있으며, 「감나루」는 뚝은감을 딱딱한 홍시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농업벤처로 홍시의 상품성 개선에 큰 기여를 하여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생도라지」에서는 독과점 특수작물인 장생도라지를 건강증진용 식품으로 재배한 뒤, 가공, 판매업종으로 개발하여 가공특허를 보유한 대표적인 농업벤처이다.

또한 생산·가공·유통기업형 모델에는 농산물 순환식 복합유기농업 단지를 조성하여 생산, 가공, 유통을 통합한 영농조합법인으로 60개 품목을 40만평에서 생산하고 유통회사 유기데이터를 통해 대형할인점을 중심으로 유통하는 「학사농장」과 키위재배 및 유통조직으로 출발하여 상품화 및 유통을 통합하여 국내시장을 60% 확보하고 고구마와 감귤, 사과 감자 등 농산물 가공 및 공동마케팅 업체로 발전한 「참다래 유통사업단」이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꼽히는 대규모 계열화 경영체형인 「하림」과 「도드람」이 있다. 「하림」은 양계, 도계, 사료 및 육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1위의 닭고기 전문업체로 세계최대육계회사인 「Tyson사」를 벤치마킹하여 종란의 생산에서부터 부화, 사료, 육계사육 등 최종 제품의 유통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를 수직적으로 계열화했으며 국내 최초 KS마크를 획득하고 2000년 HACCP인증을 받은 회사이다.

또한 「도드람 양돈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양돈농가로 구성된 양돈조합으로 출발하여 규모의 경영체 형성으로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고 사료생산, 도축장 도입을 통한 공동출하, 계열화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전북과 전남 양돈조합을 통합완료한 기업형 협동조합으로 소유구조는 협동조합이나 경영구조는 기업형 조직으로 발전하고 사료공장은 코스닥에 상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부문 사례분석을 통한 성공모형 도출”, 2005.

[표 3-2-2] 농업 비즈니스 모형의 유형

비즈니스 모형	관련 회사
농가단위 성공모형	헤드림, 건강나라
신가치창조 성공모형	감나루, 장생도라지
생산, 가공, 유통기업형	학사농장, 잠다래
대규모 계열화 경영체형	하림, 도드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부문 사례분석을 통한 성공모형 도출」, 2005.

#### 다. 유형별 성공모형의 사례

농가단위 비즈니스 모형에서 성공요인으로서는 규모화 된 생산기반을 활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안, 경영자의 관리능력 및 생산기술을 통해 고품질 생산을 추구하는 경우, 신가치 창조형 지식기반 기업의 경우에는 신물질 특허 등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자원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 안정화까지의 위기관리 능력 등이 잘 이루어진 경우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생산, 가공, 유통을 묶은 조합형 생산기반 유통기업은 계열화를 통한 규모화, 조직화, 전문화 등이 가능했고, 유통부문 확보를 통한 가치획득이 주요한 성공요인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도 대규모 계열화 경영체로서 성공한 축산관련 기업들은 집중적인 대규모 투자, 생산농가의 계열화, 체계화된 경영시스템의 확보 등이 중요한 성공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제3절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 사례분석

### 1. 비즈니스모델 사례의 수집 및 선정

#### 가. 자료수집 방법

수산업·어촌의 우수모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전국 시군 관내 우수 수산회사 및 어촌사례를 추천받았고,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신지식인 100인의 사례, 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된 2000여개 수산회사 사례, 어항협회 등을 통해 입수된 우수 어촌계 사례, 어촌종합개발사업 우수사례, 자율관리공동체 우수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이들 사례들을 토대로 전화조사로 조사에 응할 의사 및 기본사항이 파악가능한 업체, 생산을 위주로 가공·유통·판매가 연계된 업체(단순 생산과 2차 가공은 제외), 수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한 업체, 독자적인 기술개발 업체, 어업외 소득 또는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어촌 및 영어조합법인 등을 기준으로 1차적인 우수사례 선별작업을 하였다.

#### 나. 1차 우수사례의 선정

##### 1) 1차 우수사례 선정방법

수산업비즈니스 모델 관련 1차 우수사례의 선정방법은 전국 시군이 추천한 관내 우수 수산기업 중 경영실적이 우수한 회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신지식인 100인에 대해서 전화인터뷰를 통해 모델 선정가능성을 타진하고, 경영상태 및 해수부 평가를 감안하여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된 2000여개 수산회사 중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경영실적이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범위를 압축시켰으며, 원양 및 연근해 생산 어업인 또는 업체는 제외하고, 광역시권 사업장 소재 업체를 제외하였다. 이렇게 남은 업체를 대상으로 ROIC(투자자본수익율) 비율이 높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어촌비즈니스 모델 관련 1차 우수사례의 선정방법은 어촌의 소득증대 기여정도,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수산물 소비확대 기여정도, 어촌계원 또는 조직의 결속력, 관광객 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 2) 수산업 우수사례의 특징

1차 수산업 우수사례 선정결과를 살펴보면, 시군에서 추천한 10개 업체와 신지식 어업인 14인, 신용평가회사 조사 7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시군 추천사례, 신지식인 사례, 신용평가회사 조사사례가 중복되는 업체가 3개 있었다.

[표 3-3-1] 1차 수산업 우수사례 선정결과

연번	회사명/신지식인명	특 성
1	곰소젓갈협회	- 협회 회원의 70%는 직접생산 - 가족단위의 개별경영 업자들이 만든 단체 - 젓갈타운으로 리모델링
2	중앙씨푸드	- 모기업인 중앙수산이 생산 - 생산부터 판매까지, 포장의 간편화를 통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다량공급 - 일본, 미국, 뉴질랜드, 동남아시아 등지로 수출 - 바다 양식장에서 배까지, 배에서 하역한 후 공장까지 레일을 통해 하나로 연결
3	참바다 영어조합법인	- 부산과 여수에서 고등어 구입 - 바나나 잎을 이용한 복분자 고등어, 1차 가공, 판매, 농수산물쇼핑 및 우체국 카다로그 판매 - 지역 주민 40명 고용 - ISO9001, HACCP 획득
4	해우수산	- 원재료인 김 일부 생산하고 부족한 부분은 구매 - 청국장 맛김, 김만두 등 직접 개발 판매 - 지역 주민 8명 고용 - 온라인 판매 및 동원 F&B 납품
5	(주)해우촌	- 가공회사 - 올리브김, 포도씨유 김 등 자체 제품개발 - 대형마트 납품, 온라인 판매, HACCP 인증
6	해송수산 영어조합법인	- 바지락을 상품화하여 생산, 가공, 판매(온라인 판매 50%) - 신선하고 안전한 바지락 생산으로 차별화 · 바닷물을 끌어와 해수처리 시 오존기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 · 신선도유지를 위해 냉동/냉장 창고 제빙기를 도입 진공 포장 · 오존살균 및 자체 개발한 필터로 유기물질 살균·정제 · 금속 탐지기 통한 이물질 제거 - 경기도지사로부터 G마크 획득(전국유일)
7	(주)환공식품	- 생선살을 구입하여 어묵생산 - 전국 30개 대리점 확보 - 불량률 0.5%이내 목표로 다양한 포장설비, 원료 육의 가공-포장-출고 기계설비 시스템 단일화 - 국내최초 스파이럴 냉각기(급냉장비) 사용



[표 3-3-1] 1차 수산업 우수사례 선정결과-계속

연번	회사명/신지식인명	특 성
8	광천수산영어조합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액젓, 김, 멸치 생산, 가공, 판매</li> <li>- 어선을 소유하고 있어 직접 생산</li> <li>- 원료 생산단계 부터 직접관리</li> <li>- 정직원 6명 외 일용직 등 지역주민 고용</li> </ul>
9	부래영어조합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가공-판매</li> <li>- 오투기 식품에 100% 납품</li> <li>- 지역주민 20명 고용</li> </ul>
10	섬마을간월도 어리굴젓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굴 구입하여 어리굴젓으로 가공, 공장 및 판매장 소유</li> <li>- 인터넷 판매 병행</li> <li>- 정직원 6명 및 일용직 고용</li> </ul>
11	고창영어조합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어 양식 및 직접 판매</li> <li>- 국내 최초 일본의 장어구이시설 도입</li> <li>-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기술, 경영컨설팅을 받아 선운산 풍천 장어구이라는 브랜드로 개발</li> <li>- 풍천장어구이, 복분자숙성장어구이, 장어뼈튀김 판매</li> <li>- 본사에 100평 규모의 셀프 장어구이장 운영,</li> <li>- 특히 2건(장어구이 제조 및 장치, 장어부산물(뼈스낵) 비린내 제거)</li> </ul>
12	(주)일성수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메기 가공</li> <li>- 영덕군 수산 특산물 생산영어조합대표</li> <li>- 과메기 냉동진공포장 개발 및 홍보책자 발간</li> <li>- 전자상거래 판매, 2012년까지 총판매량의 50% 온라인판매 위해 노력</li> <li>- 직원 30명에서 겨울에는 200명까지 고용</li> <li>- 한방과메기, 키토산과메기 등 기능성 과메기 개발에 중점</li> <li>- 농협, 우체국, 수협, 재래시장, 대형할인마트, 농수산물쇼핑 등에 납품</li> <li>- 해외시장 개척 등</li> <li>- 특히 : 5건(키토산 과메기 등)</li> </ul>
13	해성영어조합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어 종묘생산 시 바이러스 감염 예방법 개발</li> <li>- 22억 원을 들여 고창군 심원 앞바다 6만여평에 ‘바다목장’을 조성</li> <li>- 15~20명 지역 주민 및 외지인 고용</li> </ul>
14	군산꽃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선과 계약하여 꽃게 구입</li> <li>- 각종 ISO, 특히, 품질인증, 꽃게 소면 개발 출시 예정</li> <li>- 지역주민 5명 고용</li> </ul>
15	예당수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복 대규모 양식</li> <li>- 황복 양식의 선구자</li> <li>- 황복 삼계탕 개발, 출시 예정</li> </ul>

[표 3-3-1] 1차 수산업 우수사례 선정결과-계속

연번	회사명/신지식인명	특 성
16	유명수산물영어조합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조기로 고추장굴비 만드는 기술에 대해 특허보유</li> <li>- 가공기간 단축으로 대량생산가능이 가능해서 가격경쟁력 확보</li> <li>- 미국, 일본 등에 수출</li> <li>- 정규직 1명, 일용직 7명 고용</li> <li>- 지역실업고등학교에 관련학과 신설</li> </ul>
17	궁전꽃게장영어조합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게를 3차에 걸쳐 숙성함</li> <li>- 궁전 꽃게장 식당 연계 운영</li> <li>- 판매 대리점 보유 및 인터넷 판매</li> <li>- 지역 주민 5명 및 일용직 고용</li> </ul>
18	멸치신랑새우각시영어조합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멸치(5월~11월), 새우 12월~4월), 굴 (석화 11월~3월) 생산, 가공, 판매</li> <li>- 멸치는 냉장망을 이용, 잡은 즉시 선상에서 바로 삶아 햇볕에 자연 건조</li> <li>- 새우는 싱싱한 새우를 선별하고 건조하여 백화점, 할인점 등 납품(온라인 판매병행)</li> </ul>
19	태영수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리비 양식 및 직접 판매</li> <li>- 97년 해양 변화로 6~7년 동안 폐사, 이후 과학원과 연계한 기술개발로 극복</li> </ul>
20	삼양수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 종자의 국내브랜드 개발</li> <li>- 육상채묘와 냉동망 양식방법 접목에 대한 독자적 기술특허보유</li> <li>- 전국 각지에 기술지도</li> <li>- 파래김 개발예정</li> <li>- 일본 수출 계획</li> </ul>
21	박진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뱅에돔, 강담돔, 돛돔 등 신어종·고성장 물고기 개발</li> </ul>
22	이현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복, 뱀장어 생산</li> <li>- 생산에서 유통, 판매까지 확장 계획</li> </ul>
23	김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사가두리를 이용한 복어 생산</li> <li>- 아쿠아토피아인터내셔널 운영(개인)</li> <li>- 복어 해사가두리 양식 기술 인턴제로 인력육성</li> <li>- 특허 1건 : 전복양식용 쉼터</li> </ul>
24	황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망어업을 통한 멸치 생산과 판매병행(택배판매)</li> <li>- 고객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li> </ul>
25	강원전복양식영어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해안형 순환여과식 전복 양식 시스템’사용에 관한 특허 획득(3건)</li> <li>-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인증</li> <li>- 강릉도립대학교와 연계하여 기술개발</li> </ul>



### 3) 어촌 우수사례의 특징

1차 우수 어촌사례 선정결과, 어촌종합개발사업 우수사례가 3개소,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우수사례 5개소, 자율관리공동체 우수사례 1개소, 영어조합법인 사례 1개소, 시군 우수사례 1개소가 선정되었다.

[표 3-3-2] 1차 우수 어촌사례 선정결과

연번	어촌명	주요 소득원	사업주체	사업성과
1	사천시 저도 (딱섬)	공동작업 유료낚시터 민박 체험프로그램	자율관리어업공동체 18가구 36명	- 어가 평균소득 50백만 원
2	울산시 정자 어촌	활어직판장	어촌계 72명 어촌계원 참여	- 총수입 40억 원 - 총지출 32억 원 - 순수익 8억 원 - 어업 외 소득 11백만 원
3	양양군 물치 어촌	회센터 운영 점포 임대	어촌계 35명 어촌계원 참여	- 이용객수 : 10만 명 - 점포당 순수익 1억원 매출 - 어촌계 수익 6억 원
4	서귀포시 오조 어촌	향토음식점 민박	어촌계 90명 어촌계원 참여	- 순수익 4억 원(2003년 기준) - 배당액 1인당 200만원
5	화성시 궁평 어촌	갯벌체험 슬로우푸드 체험	어촌계 108가구 참여	- 방문객수 34만 명 - 체험객수 24,069명 - 체험소득 11억 원 - 간접소득 1,656백만 원
6	안산시 선감 어촌	민박(수련회) 갯벌체험프로그램 고기잡이체험 (후리질)	어촌계 120명 어촌계원 참여	- 총 방문객 40만 명 - 체험객 15,527명 - 체험소득 200백만 원 - 간접소득 50백만 원
7	서천군 월하성 어촌	갯벌체험	어촌계 52명 어촌계원 참여	- 고용효과 22명 - 체험소득 140백만 원 - 간접소득 130백만 원
8	무안군 송계 어촌	숙박형 갯벌체험 농촌체험 병행	어촌계 69명 참여	- 체험소득 97백만 원 - 간접소득 292백만 원
9	고창군 하전 어촌	갯벌체험	마을운영위원회 어촌계 10명 참여	- 고용효과 9명 - 체험소득 209백만 원 - 간접소득 15백만 원



[표 3-3-2] 1차 우수 어촌사례 선정결과-계속

연번	어촌명	주요 소득원	사업주체	사업성과
10	논산 강경읍 (13개 리)	젓갈타운 (발효젓갈 산업특구)	지자체	- 06년 1,004천명 관광객 - 356억 원 매출
11	디노빌 영어조합법인	철갑상어 테마파크	영어조합법인	-
12	미라자울 관리공동체	전복판매	미라자울관리공동체	- 어가당 1억 원 이상 수익창출

#### 다. 2차 우수사례의 선정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개발을 위한 우수사례 최종 선정시에는 관련분야 교수, 업단체, 공무원 등 전문가 9인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수산업체 및 어촌을 선정하였다.

수산업 비즈니스모델은 12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나 현장조사결과 우수사례로서 적합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7개 사례가 선정되었으며, 신지식 어업인으로 추천된 사례들은 대부분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경영성과를 크게 내지는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분석을 우수사례와는 별도로 시행하였다.

[표 3-3-3] 수산업 비즈니스모델 2차 선정결과

연번	선정회사	매출규모 (백만원)	품목/업종	지역
1	중앙씨푸드	13,944	굴(생산, 판매)	경남거제
2	참바다영어조합법인	12,621	고등어숙성(가공, 판매)	전북고창
3	아침가리	12,000	김, 멸치, 다시마(가공, 판매)	전남진도
4	광천수산영어조합법인	3,695	액젓, 김, 멸치(생산, 가공, 판매)	충남보령
5	고창영어조합법인	2,947	장어구이(생산, 가공, 판매)	전북고창
6	일성수산	2,526	과메기(가공, 판매)	경북영덕
7	유명수산영어조합법인	1,500	고추장굴비(가공, 판매)	전남영광

어촌비즈니스 모델은 최종적으로 8개 사례가 선정되었으며, 어촌비즈니스모델은 지역형과 관광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역형에는 곶소젓갈협회, 디노빌영어조합법인, 미라자울관리어업공동체, 정자어촌계, 물치어촌계 등이며, 관광형으로 성공한 어촌계는 선감어촌계, 송계어촌계, 저도어촌계 등이다.



[표 3-3-4] 어촌 비즈니스모델 2차 선정결과

연번	지역형	지역	연번	관광형	지역
1	곰소젓갈협회	전북부안	1	선감어촌계	경기안산
2	다노빌영어조합법인	경남함양	2	송계어촌계	전남무안
3	미라자울관리어업공동체	전남완도	3	저도어촌계	경남사천
4	정자어촌계	경남울산			
5	물치어촌계	강원양양			

## 2. 사례분석 결과

### 가. 수산비즈니스모델 우수사례

#### 1) (주)중앙씨푸드

##### (1) 개요

중앙씨푸드는 거제시 둔덕면 어구리 소재 사업장에서 생굴, 냉동굴 등 굴가공품을 전문으로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모기업인 (주)중앙수산의 내수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주)중앙수산과 (주)중앙씨푸드는 장부상으로 독립된 경영체이나, 생산 및 고용 등 전반적인 회사의 경영에 있어서 공동생산/공동경영체제를 이루고 있어 실질적인 회사의 구분은 불가능하다.<sup>7)</sup>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우수경영사례로 제시하는 (주)중앙씨푸드의 비즈니스 모델은 (주)중앙수산의 경영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2006년 말 현재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주)중앙수산은 자본금 4억원에 매출규모는 68억원이고, (주)중앙씨푸드는 자본금 5천만 원에 매출규모는 136억원이다. 두 회사가 공동으로 고용한 종업원의 수는 정규직 52명 / 계약직 및 일용직 250여명으로서, 수산가공 분야의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거제시의 어촌사회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7) 1998년 (주)중앙씨푸드를 설립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에 ‘중앙수산’이라는 명칭을 가진 업체가 다수 존재하여 타 회사와 차별된 회사 명칭을 가지기 위해서이고, ‘(주)중앙수산’이라는 이름을 포기하지 못한 원인은 40년 가까이 미국과 일본 등에 ‘(주)중앙수산’으로 수출을 하였으므로 외국바이어들에게 익숙한 이미지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임. 따라서 1998년 이후 생산은 공동으로 하되 판매에 있어서 (주)중앙씨푸드는 내수를 (주)중앙수산은 수출을 담당하게 되었고, 2003년 장석씨가 (주)중앙씨푸드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러한 공동생산·공동경영체제는 유지되고 있음

[표 3-3-5] (주)중앙수산·(주)중앙씨푸드 개요

구분	(주)중앙수산	(주)중앙씨푸드	비고
주 소	경남 거제시 둔덕면 어구리 142번지		
경영형태	주식회사		1998년 3월 (주)중앙씨푸드 설립
주력상품	생굴, 냉동굴, 굴가공품		
관련홈페이지	<a href="http://www.singsings.co.kr">http://www.singsings.co.kr</a>		
특이사항	공동생산·공동경영		

[표 3-3-6] (주)중앙수산과 (주)중앙씨푸드의 연혁과 발전과정

연도	내용
1969.06	- 중앙수산 주식회사 설립
1970.05	- 굴양식 시설 완료 및 양식 시작
1972.03	- 굴 박신공장 준공
1974.01	- 굴제품 미국 수출 시작
1976.01	- 굴제품 일본 수출 시작
1977.04	- 냉동공장 및 기숙사 준공
1978.01	- 미국 FDA 지정공장으로 등록 (KR-6-SP)
1979.09	- 국내시장용 생굴 소포장 제품 개발 및 출하 시작
1984.01	- 수출입 무역업 등록(제844905호)
1987.04	- 유망중소기업 선정(제일은행)
1990.11	- 제27회 무역의 날 500만불 수출의 탑 및 대통령표창 수상
1992.03	- 폐수 정화처리시설 준공 (일 300M/T 처리)
1994.06	- EU 수출 수산물 가공시설 등록 (KORP-036호)
1995.02	- 경상남도 추천 상품 지정(생굴) 및 QC마크 획득(제9503005호)
1995.09	- 굴 박신공장 신축 준공
1998.03	- 국내판매전문 자매회사 중앙씨푸드(주) 설립
1998.09	- 생식용 대일수출 가공시설 등록(KOYT-002호)
2001.11	- 냉동굴제품 산업자원부주관 <세계일류화상품>선정(산자부2001-179호)
20002.11	- 최첨단 자동화 공장인 남수관 신축 준공
2004.02	- 한국능률협회인증원(KMAR)에서 품질경영시스템(ISO9001)인증 획득 - 한국능률협회인증원(KMAR)에서 품질경영시스템(ISO14001)인증 획득
2004.02	- 중앙씨푸드 웹사이트 개편 오픈
2004.03	- 온라인 쇼핑몰 싱싱샵 오픈



## (2) 경영자 능력 및 경영전략

### ① 경영자 및 주주구성

(주)중앙씨푸드의 최고경영자인 장석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1979년부터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고 2003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창업자의 지도아래 회사경영에 참여함으로써 굴가공회사의 경영노하우를 전수받은 전문경영인이라 할 수 있다. 동사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A 44%, B 40%, C 16%로 3인 모두 가족관계에 있다.

### ② 경영전략

(주)중앙씨푸드의 경영전략의 핵심은 품질경영이다. 이는 생산라인을 같이하는 모기업 (주)중앙수산이 수십 년에 걸쳐 이룩한 굴가공품 품질관리기법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동사는 굴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원료의 질, 가공과정에서의 위생관리, 신선도 유지를 위한 첨단설비, 그리고 생산 공정을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모기업인 (주)중앙수산은 자체 굴 양식장을 보유하여 양질의 원료를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가공시설의 자동화와 위생관리에 투자한 결과, 1978년 미국 FDA의 지정공장으로 등록(KR-6-SP)되었고, 1994년에는 EU 수출 수산물 가공시설로 등록(KORP-036호)되었으며, 1995년 경상남도 추천 상품 지정(생굴) 및 QC 마크를 획득(제9503005호)하였다. 또한 1998년 생식용 대일수출 가공시설로 등록(KOYT-002호)되는 등 대내·외에서 생산품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2002년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설비의 첨단화에 과감히 투자하여 미국 패류위생관리모범법령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최첨단 자동화 공장인 남수관을 신축 준공하였다. 2004년 한국능률협회경영인증원으로부터 품질경영시스템(ISO9001)인증 획득 및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인증을 획득하여 생산품의 품질과 환경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있으며, 특히 ISO14001은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 환경성과를 개선하는 일련의 경영활동을 위해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 국내 농수산업계에서는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것이다.

가공과정에서의 위생관리를 위해 자체 저장탱크를 보유하여 굴을 세척하는 해수(염수)와 육수(담수)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생산공정에 유입되는 모든 용수라인에 클린 PVC를 사용하여 용수오염에 의한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있다. 생산직 종업원의 위생관리를 엄격히 하여 조리하지 않고 먹어도 안전한 생굴을 생산한다. 특히, 생산직 종업원은 탈의실에서 위생복과 자체 제작한 2중 위생모를 착용한 후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통로에서 알코올/염소소독과 에어샤워실 통과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생산품의 오염

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또한 (주)중앙씨푸드는 대표이사가 총괄관리하고 생산이사가 현장에서 관리하는 자체 HACCP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식품위해요소를 관리·점검·차단하는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실행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3-3-1] (주)중앙씨푸드 경영전략구조

### (3) 재무적 특성

(주)중앙씨푸드는 2006년 말 현재 33.5억원의 자산규모를 보유하는 경영체로서, 그중 부채는 27억원, 자본은 6.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무제표상 부채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두 기업의 공동생산라인이 모기업인 (주)중앙수산의 소유로 되어 있어 장부상 (주)중앙씨푸드의 자본금의 규모가 적은데 원인이 있다. 따라서 (주)중앙씨푸드의 재무구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중앙수산의 재무구조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주)중앙수산은 2006년 말 현재 59억원의 자산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부채는 36억원, 자본은 23억원이다. 두 회사의 자산합계는 92.5억원이며 이 중 부채는 63억원, 자본은 29.5억원으로, 두 회사의 재무구조는 건전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두 회사의 공통된 특징은 자본에서 이익잉여금의 비중이 높는데, 2006년 현재 (주)중앙씨푸드의 자본금 내역은 자기자본은 5천만 원에 이익잉여금 6억원, (주)중앙수산의 자본금 내역은 자기자본 4억원에 이익잉여금 1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생긴 순이익을 배당이나 상여 등의 형태로 사외로 유출시키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금액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3-7] (주)중앙수산·(주) 중앙씨푸드 요약 재무제표

단위:백만원

항목	(주)중앙수산	(주)중앙씨푸드	항목	(주)중앙수산	(주)중앙씨푸드
유동자산	2,341	3,117	매출액	6,827	13,564
고정자산	3,594	233	매출총이익	1,117	2,781
자산총계	5,935	3,349	영업이익	263	215
유동부채	1,925	2,702	영업외수익	116	15
고정부채	1,672	0	영업외비용	260	133
부채총계	3,597	2,702	경상이익	119	97
자본금	400	50	특별이익	-	-
자본잉여금	0	0	특별손실	-	-
이익잉여금	1,937	598	법인세	-	-
자본총계	2,337	648	당기순이익	132	97

[표 3-3-8] (주) 중앙씨푸드의 주요재무비율

구분		2004	2005	2006
수익성 분석	영업이익율	1.51	1.87	1.59
	ROE	30.64	23.57	15.92
	ROIC	84.16	152.51	34.07
활동성 분석	매출채권회전율(회)	9.11	8.43	6.67
	재고자산회전율(회)	77.04	75.24	89.33
	총자산회전율(회)	5.46	4.88	4.17
성장성 분석	총자산 증가율	19.90	23.15	6.19
	매출액 증가율	39.11	8.71	-2.73
	순이익 증가율	17.59	-3.35	-2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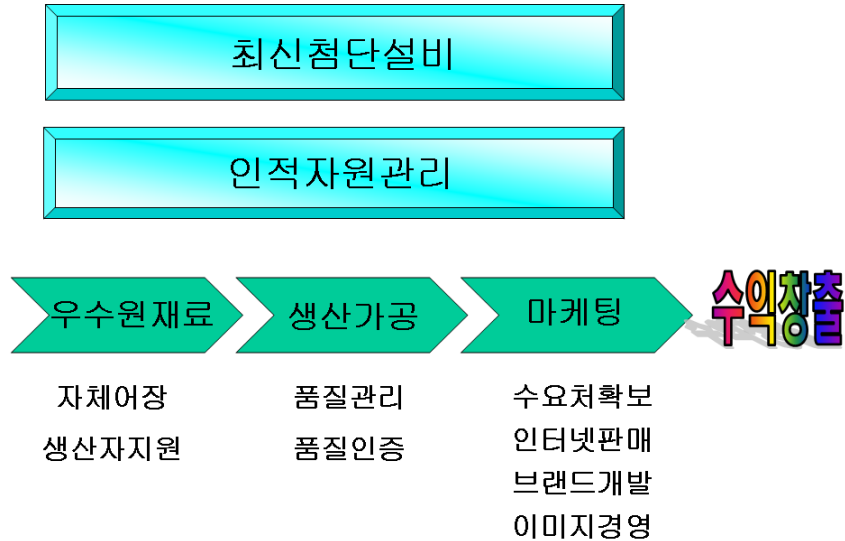
※(주)중앙수산 제외

(주)중앙씨푸드의 재무분석결과, 동사는 총자산에 대한 매출액이 커 총자산의 활용도가 매우 높고, 투자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익성 측면에서 총자산에 대한 경상이익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최근 3년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과 순이익증가율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양식굴 생산의 과잉으로 인한 생산자간 과다경쟁의 시장여건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약조건 속에서도 동사는 품질우위를 바탕으로 한 제품경쟁력과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꾸준한 영업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자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수익구조도 안정적인 편이나, 현금흐름은 다소 낮은 수준이므로 개선노력을 통해 현금흐름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

(4) 가치사슬 분석

(주)중앙수산과 (주)중앙씨푸드의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가치창출 메카니즘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3-2] (주) 중앙씨푸드 가치사슬구조

① 우수 원재료 조달

동사는 업계최고등급의 원재료를 확보하고 있다. 1972년 한국과 미국간에 패류위생협정이 체결된 후, 남해안에는 현재 7개 해역의 청정해역이 지정되어 우리 정부와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식품의약품관리청)의 공동 관리와 점검을 받고 있다. (주)중앙수산과 (주)중앙씨푸드는 수출은 물론 내수용 굴제품도 FDA지정해역에서 생산된 원료만을 사용하여 굴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다. 품질 좋은 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굴양식업자에게 자금지원, 종패 채묘시 편의제공 등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원료공급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회사가 자체어장을 보유(20ha)하고 있어 고품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 ② 체계적인 품질관리

최고경영자가 지휘하는 HACCP팀에 의한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장 내에 반입되는 생굴은 세균검사/관능검사/패독검사/온도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다음 세척, 선별의 과정을 거쳐 냉각수통에서 7.2℃이하로 출고전까지 보관한다. 출고할 굴은 냉각멸균 해수를 사용한 자동계량포장설비로 포장되고, 출고전 관능검사/품질검사/중량검사/염분농도검사를 거쳐 제품의 이상 유무를 다시 확인한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전국의 유통매장으로 배송되며 배송 다음날까지만 판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최신첨단설비

좋은 시설에서 좋은 상품이 나온다는 최고경영자의 신념하에 동사는 최신첨단설비에서 양질의 굴가공품을 생산한다. 거제시에 위치한 공장은 생굴제품 1일 최대생산량 15톤, 원료 보관고 저장량 30톤, 냉동굴제품 1일 최대생산량 15톤, 냉동고 저장량 100톤 규모의 시설로서, 공장의 설비는 최신식으로 갖추어져 있다.

공장내부로 들어오는 모든 통로에는 오버헤드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2중으로 설치된 출입문(스피드셔터)이 있어 외부 먼지와 해충이 공장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으며, 냉장, 냉동시설은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굴제품의 신선도를 최적으로 유지한다.

굴제품의 공정에 필요한 해수는 급속여과기, NaOCl소독, 자외선살균의 3단계 과정을 거친 후 냉각한 다음 다시 한외분리막여과와 냉각멸균처리후 박신굴 세척과 소포장에 사용된다. 제품의 포장에는 컴퓨터제어 자동포장기를 도입하여 세균감염을 최소화한다.

### ④ 인적자원관리

동사는 인적자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사명감이 높은 직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품질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29년째 (주)중앙수산에 몸담고 있는 김남구 공장장과 27년째 생산부서에 근무중인 고덕열 생산이사의 생산·품질관리 능력은 중앙수산만이 가진 인적자산이다. 안정적인 보수와 편안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종업원으로 하여금 국내 최상의 굴가공 제품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하여 동종업계의



높은 이직률을 극복하고 있다. 굴의 생산시기가 가을부터 봄까지이므로 연중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일용직 근무자의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지만, 숙련된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타 공장보다 높은 보수를 제공하고 있는 등 인적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⑤ 마케팅

동사는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에 지속적인 납품을 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다. 2004년부터 온라인 쇼핑몰인 ‘싱싱샵’을 자체구축하여 전자상거래분야에 진출하였으며, 최근에는 우체국택배, 농수산물쇼핑 등 소비자와의 직거래도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40여 년간 굴가공품을 생산해 온 굴전문기업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굴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주력상품인 생굴과 냉동굴 이외에 굴튀김, 굴무침, 굴석화, 파티용 굴패키지 등 2차 가공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2002년도에는 마케팅 전문가의 도움으로 7.2℃싱싱제조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숨”브랜드를 탄생시켰다. 숨은 「숨쉬는, 살아있는」을 뜻하는 순 우리말로,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숨을 쉬는 듯 한 상태 그대로의 가장 신선한 굴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회사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또한, 숨굴, 숨굴냉동, 숨굴튀김 등 숨굴제품은 단일한 보라색과 단정한 수직모양의 로고를 사용하는데, 보라색은 굴과 조개류의 껍질 내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색상으로서 신비하고 독특한 생명의 의미를 전달하는 동시에 시장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운 코드로서 중앙씨푸드의 제품들을 즉각적으로 구분해주고 차별화한다는 이미지마케팅의 주요 포인트가 되고 있다.

#### ⑥ 비즈니스 모형의 특징

지금까지 (주) 중앙씨푸드의 경영성공요인을 검토·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 모형의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동사가 굴가공식품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제품의 품질경쟁력이다. 동사는 잉여금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설비에 재투자함으로써 업계 최상의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엄격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최고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굴’ 단일어종의 생산만으로 3년 연속 100억원 이상의 내수판매를 실현하고 있다.

두 번째로 소비자의 신뢰를 들 수 있다. 40여 년간 쌓아온 (주)중앙수산의 굴전문기업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탄생한 ‘숨’ 브랜드, 그리고 품질경영시스템인 ISO9001뿐만 아니라, 환경경영시스템인 ISO14001까지 인증 획득하여 환경친화적인 기업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지는 점은 제품의 위생과 안전이 생명인 수산물의 판매에 대단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 기업은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다.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전국 80여 개 대형할인점과, 7개 백화점 식품코너에 골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 우체국택배, 농수산홈쇼핑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한 매출의 비중도 늘이고 있다.

## 2) 참바다영어조합법인

### (1) 개 요

참바다영어조합법인은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에 소재한 수산물 전문 가공업체로서 최신 위생시설을 갖춘 가공공장을 기반으로 고등어, 새우, 장어, 해물철판요리 등 다양한 수산물을 가공·판매하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안전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대대적인 조리시설을 갖추고 차세대 반가공 식품에 대한 사업성을 모색하는 등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표 3-3-9] 참바다영어조합법인 개요

구분	내용	비고
설립일자	1997년 1월	
본사 주소	전북 고창군 신림면 세곡리 525-1번지	
사업장 규모	1공장(본사) : 1,550m <sup>2</sup> , 2공장(임실) : 1,653m <sup>2</sup> 3공장(고창) : 868m <sup>2</sup>	직원수 106명 (2007. 8월)
주력상품	고등어, 새우, 장어 외	
생산능력	연간 약 150억 수준	
관련홈페이지	<a href="http://www.chambada.com">http://www.chambada.com</a>	
특이사항	바나나잎을 이용한 염장식품 및 그 제조방법으로 특허 획득	2007. 3월

1997년 후포수산물가공공장 준공을 시작으로 2002년 1월 참바다영어조합법인으로 상호를 변경한 이 회사는 ‘작지만 큰 회사’라는 경영이념 아래 고객중심, 직원중심, 사회

환원이라는 경영목표를 가지고 있다. 2007년 8월 현재 총 106명의 직원이 종사하며, 매출은 연간 약 150억 수준이다. 본사를 포함하여 임실의 2공장, 본사 부지의 3공장까지 경영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최근에는 서울 및 부산, 베트남의 호치민시에까지 사무실을 개설하였다.

참바다영어조합의 주요 연혁 및 발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후포수산물 가공공장에서 2002년 1월 참바다영어조합법인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ISO9001 인증을 획득하였다. 이후 농수산물홍쇼핑에서 최우수업체상 및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소비자선택 100대기업 등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2007년 3월에는 ‘바나나잎을 이용한 염장식품 및 그 제조방법’이라는 명칭으로 특허를 획득하였다.

[표 3-3-10] 참바다영어조합의 연혁과 발전과정

연도	내용	비고
1997. 1	- 후포수산물가공공장 준공	
1999. 1	- 현대택배 참바다영업소 개설	
2002. 1	- 참바다영어조합법인 상호변경	
2002. 1	- ISO9001인증 획득	
2002. 12	- 농수산물홍쇼핑 최우수업체상 수상	
2003. 1	- HACCP인증 획득	
2004. 3	- 참바다 2공장(임실) 설립	
2004. 12	- 농수산물홍쇼핑 대상 수상	일간스포츠
2004. 12	- 중소기업경영대상 수상	
2004. 12	- 소비자선택 100대 기업 선정	
2005. 1	- 2005년을 이끌 기업선정, 신지식인 선정	스포츠서울
2005. 11	- 3공장 완공	
2006. 1	- 서울사무실 개설(목동)	
2006. 11	- 농수산물홍쇼핑 최우수업체상 수상	
2007. 3	- 특허 획득(바나나잎을 이용한 염장식품 및 제조방법)	특허청
2007. 4	- 식약청 HACCP 지정업소	식약청
2007. 5	- 부산사무실(압남동) 및 베트남(호치민) 사무실 개소	

## (2) 경영자 능력 및 경영전략

김종학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산물을 홍쇼핑에서 판매한 장본인이다. 1998년도에 홍쇼핑 사업의 무한한 가치를 예견해 홍쇼핑 판매를 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수산물



의 홈쇼핑 판매는 수산물의 특성상 부패 및 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김 대표는 포장지를 고급화하여 상품을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만들었으며, 당시에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1박 2일 택배발송을 최초로 시도하였다. 그 당시 택배를 보내면 최소 3~5일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현대택배를 설득하여 1박 2일 만에 상품을 고객이 전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합의하게 되었다. 이 합의를 들은 LG홈쇼핑에 가서 수산물을 홈쇼핑에 런칭하는 개가를 올리게 되었다.

최근 참바다영어조합법인의 핵심적인 경영전략은 공격적 경영에서 안정적 경영으로의 전환, 시푸드레스토랑과 같은 체인사업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첫째, 홈쇼핑 사업 이후 매출이 급격히 신장되었으나 2004년부터 숨고르기에 들어가 철저히 이익이 남는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회사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노력하였지만 앞으로는 이윤 창출에 노력할 계획이다. 둘째,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직접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시푸드레스토랑 체인점 사업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 (3) 재무적 특성

참바다영어조합법인은 2006년 말 현재 총 자산은 5,301백만원, 부채는 3,729백만원, 자기자본은 1,571백만원으로 구성된 경영체이다. 총매출액은 2006년 12,621백만원(2005년 10,974 백만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006년 159백만원(2005년 133백만원) 수준이다.

최근의 재무적 특징을 2005년 및 2006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산 및 영업활동에 투자한 자본으로 어느 정도 이익을 확보했는가를 나타내는 투자자본수익률(ROIC)은 2006년 7.41%로 2005년의 8.07%보다는 다소 낮아졌으나 큰 변동을 보이지는 않았다. 순수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인 자기자본수익률(ROE)도 2006년 11.82%로 2005년의 12.67%에 비해 감소하였다. 비록 수익성 지표가 감소하였으나 동종업종을 비교하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6년도의 총자산 증가율은 24.00%로 2005년의 5.78%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및 순이익의 증가율도 2005년에는 각각 -16.68%, -7.44%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2006년에는 각각 15.01%, 19.69%로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성장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부채비율은 2006년 현재 237.33%로 2005년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총자산에 대한 효율성이 양호하며, 재무구조에 있어서 자기자본

비율이 산업내 평균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11] 참바다영어조합법인의 재무적 특성(2005~2006년)

구분	수익성 분석			성장성 분석			안정성 분석		
	투자자본 수익률 (ROIC)	자기자본 순수익율 (ROE)	매출액 영업 이익율	총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부채비율	이자보상 배율	차입금 의존도
2005	8.07	12.67	2.27	5.78	-16.68	-7.44	284.19	2.15	54.64
2006	7.41	11.82	2.07	24.00	15.01	19.69	237.33	2.85	56.89

#### (4) 가치사슬 분석

##### ① 생산·가공

참바다영어조합법인은 자체적으로 수산물을 생산하지는 않고, 국내산 및 수입산 수산물을 전량 구매하여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주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지만, 감자말이 새우 등과 같이 노동력이 많이 드는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는 과감히 OEM방식을 도입,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생산하여 냉동으로 제품을 들어오고 있다.

주력 품종인 고등어 및 장어의 가공에 있어서는 특히 제10-0698790호(바나나잎을 이용한 염장식품 및 그 제조방법)의 기술이 이용된다. 이는 염장과정에 바나나잎을 이용하여 수산물의 비린내를 제거함은 물론 참숯과 자외선오존수를 이용하여 탈취 및 살균하고 복분자를 가미하여 맛을 진하게 함으로써 수산물 고유의 맛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한편, 가공에 있어서 최신식 설비와 함께 전 직원이 연구실에 버금가는 위생복 착용은 물론 이곳에서 사용하는 물을 전량 자외선 오존수로 하며, 내부 온도와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외부 공기차단을 위한 에어샤워장치 도크와 자동살균·건조시설, 쓰레기는 따로 취합해 배출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 ② 유통·판매

주로 홈쇼핑 및 대형할인점을 중심으로 한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97년 뉴코아 및 김스클럽 납품을 시작으로, 1998년 이마트, 1999년 LG홈쇼핑, 2001년 농수산홈쇼핑, 2002년 LG마트 및 메가마트, CJ홈쇼핑 및 CJ푸드시스템, 2006년 홈플러스 전 매장에



납품을 하고 있다. 특히 농수산홈쇼핑에서 월별로 15~20회 방송하여 2007년 상반기에만 70억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우수협력업체(1위)로 등록되기도 하였다. 판매에 있어서는 ‘참바다’ 브랜드를 이용한 일관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고객지원팀을 운영하며 A/S 및 고객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 (5) 비즈니스 모형의 특징

#### ①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

참바다영어조합법인의 상품개발팀에서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기능성 상품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주력품종은 고등어, 새우, 장어이지만 후속상품으로 꼼장어, 오징어, 해물철판요리 등이 있으며, 감자말이 새우나 새우완당과 같은 제품들은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모듬초밥, 전복죽 및 떡배기, 주꾸미, 낙지떡볶이, 새우불낙, 조기매운탕, 웰빙해초 등 매우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 ② 홈쇼핑에 특화된 판매전략

참바다영어조합법인은 매출의 약 70% 이상을 홈쇼핑을 통한 판매에서 얻고 있다. 홈쇼핑 판매를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소비자들의 인지도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농수산홈쇼핑에 런칭 대기중이며, 저가 대량판매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 ③ 철저한 품질관리

참바다영어조합법인은 ISO9001인증, HACCP 국제인증, 식약청의 HACCP 적용업소에 지정되었으며, 원료 입고시부터 제품출하 시까지 철저한 관리감독, 원료나 제품을 자체시험실에서 검사하며 공인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등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④ 시푸드사업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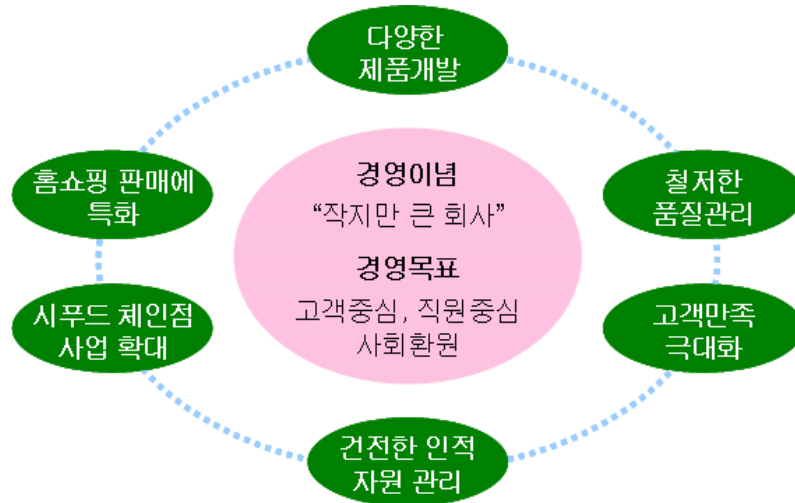
참바다영어조합법인에서는 향후 수익창출모델로 시푸드 레스토랑 체인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과거 어업인에게 원료를 받아 제품을 가공하고, 이를 할인점 및 홈쇼핑에 납품하는 유통단계를 과감히 줄일 생각으로 회사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1호점을 정읍에 오픈하였으며, 2호점은 전주에 오픈 예정이다. 서울시장 진출에 앞서 음식의 고장인 전라도에서 성공해야 서울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업성과를 철저하게 분석한 후 대도시에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⑤ 택배 영업소 직영을 통한 고객만족 극대화

참바다영어조합법인에서는 자체적인 택배영업소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 배송에 따른 원가절감에 유리하며, 고객관리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택배로 인한 고객들의 클레임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조치가 가능하여 이로 인한 고객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있다.

⑥ 인적자원 관리를 통한 직원들의 주인의식 고취

참바다영어조합법인에서는 외주업체를 통한 직원들의 지속적 전문교육 실시,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기술 습득 및 신제품개발, 직원별 팀 교차업무 실시로 팀별 업무이해도의 증진, 철저한 직원평가로 인재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김 대표는 직원들의 인격적 대우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 인격적 대우를 받으려면 자신이 먼저 인격적 대우를 남에게 해야 한다는 교육을 직원들에게 항상 실시하며, 아무리 어린 주부에게도 반드시 ‘여사님’이라는 호칭을 쓰게 하였다. 이러한 결과 가장 하위직급인 생산직 라인의 주부들도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제품에 대한 위생청결 의식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한다.



[그림 3-3-3] 참바다영어조합법인의 비즈니스모델

3) 광천수산영어조합법인

(1) 개요

광천수산영어조합법인은 액젓, 멸치, 김 가공업체로 충청남도 보령에 사업장이 있다. ‘광천’은 본래 인근 홍성에 있는 읍으로 토굴에서 숙성한 새우젓이 유명한 곳이다. 따라서 ‘광천’에서 상호를 따온 것은 이 영어조합법인이 젓갈을 전문으로 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실제로 이 기업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량 유통되지 못하고 해안의 일부 어업인이 자급하던 까나리 액젓을 1984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하여 주로 재래시장의 도매업체에 공급하는 사업 형태를 장기간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2000년을 전후하여 제품의 품질을 인정받아 수산가공 대기업에 원재료를 납품하고 주요 백화점, 우체국쇼핑 등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면서 2001년 영어조합법인으로 전환하였다. 그와 함께 젓갈뿐만 아니라 마른멸치, 조미김 등으로 제품 생산을 다각화하고 있다.

[표 3-3-12] 광천수산영어조합법인 개요

구분	내용	비고
대표자 성명	전성기	
주 소	충남 보령시 남곡동 899-2	
경영형태	영어조합법인	2001. 2 전환
주력상품	젓갈, 마른멸치, 조미김	
관련홈페이지	<a href="http://www.kwangchen.com">http://www.kwangchen.com</a>	
특이사항	해양수산부 신지식인	2006년 선정

[표 3-3-13] 광천수산영어조합법인의 연혁과 발전과정

연도	내용
1984년	- 까나리 액젓절임 가공시작(광천수산)
1985년	- 재래시장 도매업체 젓갈공급
1998년 4월	- 한성기업(주) 새우, 조개젓 원재료 납품
1998년 9월	- 롯데백화점 행사판매 개시
2000년 2월	- 신세계백화점 행사판매 개시
2000년 5월	- 현대백화점 행사판매 개시
2001년 2월 12일	- 광천수산영어조합법인 설립 (증좌:105,000,000)
2001년 3월 1일	- 서울영업소(물류센터)개설
2001년 7월	- 우체국 쇼핑센터 입점
2002년 3월	- 해양수산부 바다로21 쇼핑 젓갈업체 선정
2003년 10월	- 수원농협농수산물유통센터 식자재 도매매장 운영
2003년 11월	- 성남농협농수산물유통센터 입점
2004년 4월 8일	- 농협중앙회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납품
2004년 4월 26일	- 해양수산부 efishvil 쇼핑센터 입점
2004년 5월 1일	- 분당하나로마트 납품
2006년	- 해양수산부 신지식인 선정



이 영어조합법인은 2006년 현재 매출규모는 37억원에 이르고 종업원 수는 7명이다. 5명의 조합원은 모두 친인척관계이고 종업원 가운데 3명을 제외한 나머지도 그러하여 전형적인 가족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대표이사를 비롯해 조합원이 어선어업에 종사하여 원재료의 상당 부분을 직접 조달하고 있어 원재료와 가공이 일체화된 수직통합의 이점을 누리고 있다. 2006년에는 새로운 멸치 건조기술을 개발하여 해양수산부가 선정하는 신지식인에 선정되었다.

## (2) 경영자 능력 및 경영전략

광천수산영어조합법인은 2001년 설립 당시 조합원 5명이 20%씩 총 자본금 1억 500만 원을 출자하여 설립하였다. 1997년부터 대표를 맡아온 J씨가 영어조합법인 설립 이후에도 계속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분구조와는 달리 대표이사가 대부분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대표이사는 2000년 12월부터 근해안강망 어업에도 종사하여 가공에 필요한 신선한 원재료를 직접 조달하고 있다. 대표이사 외에도 다른 조합원이 조업한 어획물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부족한 원재료는 일선 수협 등을 통해 구입한다.

이처럼 상당 부분의 원재료를 직접 조달하고 근거리에서 구입하여 원가를 크게 절감하고 있으며, 동시에 수협 등에서 구매하는 원재료도 수입물을 배제하고 인근에서 어획된 재료를 까다롭게 선별하고 있어 원재료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생산관리 전담 조직을 두고 있으며 공정 전반에 걸쳐 국제품질인증인 ISO 9001:2000을 획득하여 품질 경영의 기본을 갖추고 있다. 이는 제품별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품질인증에서도 알 수 있다.

주력 상품인 액젓은 양질의 원재료와 소금을 적합한 양으로 배합하여 숙성시키는 것이 핵심인데 오랜 경험에서 쌓인 생산기술을 보유하여 까나리액젓, 멸치액젓이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충남도지사 품질추천 특산품 지정도 받았다. 마른멸치에 대해서는 수산물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는 이 기업에서 자체 개발한 멸치 건조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예전에는 멸치의 비늘 탈락이 많아 품질이 떨어졌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어서 인건비와 시간이 많이 들었으나 새로 개발한 기술은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였고, 이는 결국 2006년 신지식인에 선정되는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한편 조미김도 수산전통식품 품질 인증을 받았다.



[표 3-3-14] 멸치 건조 방식 비교

기존 방식 : 고추 건조 방식	새 방식 : 송풍 건조 방식
밀폐된 공간에서 80~90℃로 썰서 건조	송풍기를 돌려 45~50℃에서 자연 건조
펼치는 데 시간과 노동력 많이 투입됨	시간과 노동력 적게 듦
비늘이 떨어지는 등 품질 저하	비늘 탈락 문제 해결

그러나 아직 규모가 영세하여 기존의 설비만으로는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시험 생산을 통해 새로운 제조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특히 소비자의 선호 변화를 반영한 저염 젓갈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재료의 직접 조달에 따른 원가 절감, 고품질 기술 보유가 경영전략의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다양한 유통망의 확보라 할 수 있다. 이 기업은 인터넷 쇼핑몰과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등 온라인, 오프라인에 걸쳐 다양한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 판매 전담부서를 두어 수도권의 시장정보를 얻어 활용하고 소비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고객 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액젓의 경우 대표이사의 형이 경영하는 액젓 가공공장에 반제품을 납품하는 등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어 재고가 쌓일 틈이 없이 매년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등대지기’라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으나 광고를 하기 보다는 “소비자가 홍보요원이고 제품이 홍보물이다”라는 모토로 품질을 앞세운 ‘입소문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림 3-3-4] 광천수산영어조합법인의 경영전략

경영자금은 차입금에 많이 의존하여 2006년 현재 부채비율이 153%이나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운용하고 있고 매년 매출액과 순이익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차입금과 함께 순이익에서 창출된 여유자금을 사업규모를 확장하는 데에 계속 재투자하고 있다. 한편 조합원과 직원들 상당수가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친인척 관계에 있어 혈연에 기초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직원들의 성실한 근무 태도로 소규모 가족기업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경영의 특징이다.

### (3) 재무적 특성

광천수산업어조합법인은 2006년말 현재 자산규모가 13억원이고 이 가운데 8억원이 부채이고 5억원이 자본이다. 영어조합법인 설립 이후 매년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순이익 확대에 따른 잉여금(자본) 증가와 정책자금 차입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따른 재무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투자자본수익률은 2006년 17.56%로서 2005년의 12.78%보다 크게 높아졌다. 이는 2006년에 매출액과 순이익이 전년대비 각각 28.38%, 41.25%로 크게 늘어난 데 힘입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기자본수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등도 2006년 들어 일제히 상승하였다.

[표 3-3-15] 광천수산업어조합법인의 재무적 특성(2005~2006년)

구분	수익성 분석			성장성 분석			안정성 분석		
	투자자본 수익률 (ROIC)	자기자본 순수익율 (ROE)	매출액 영업 이익율	총자산증 가율	매출액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부채비율	이자보상 배율	차입금 의존도
연도 (’06/’05년)	17.56/ 12.78	27.05/ 24.84	4.24/ 3.96	23.63/ 8.99	28.38/ 6.95	41.25/ 14.97	153.14/ 167.56	5.25/ 4.06	60.34/ 62.47

앞서 언급한 대로 매출액, 순이익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총자산도 20%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 전체적인 성장성 지표도 2005년 대비 2006년에 크게 향상되었다. 2006년에 설비 투자에 따라 부채도 늘어나긴 했으나 큰 폭의 순이익 증가로 부채비율과 차입금의 의존도가 2005년에 비해 떨어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은 2005년보다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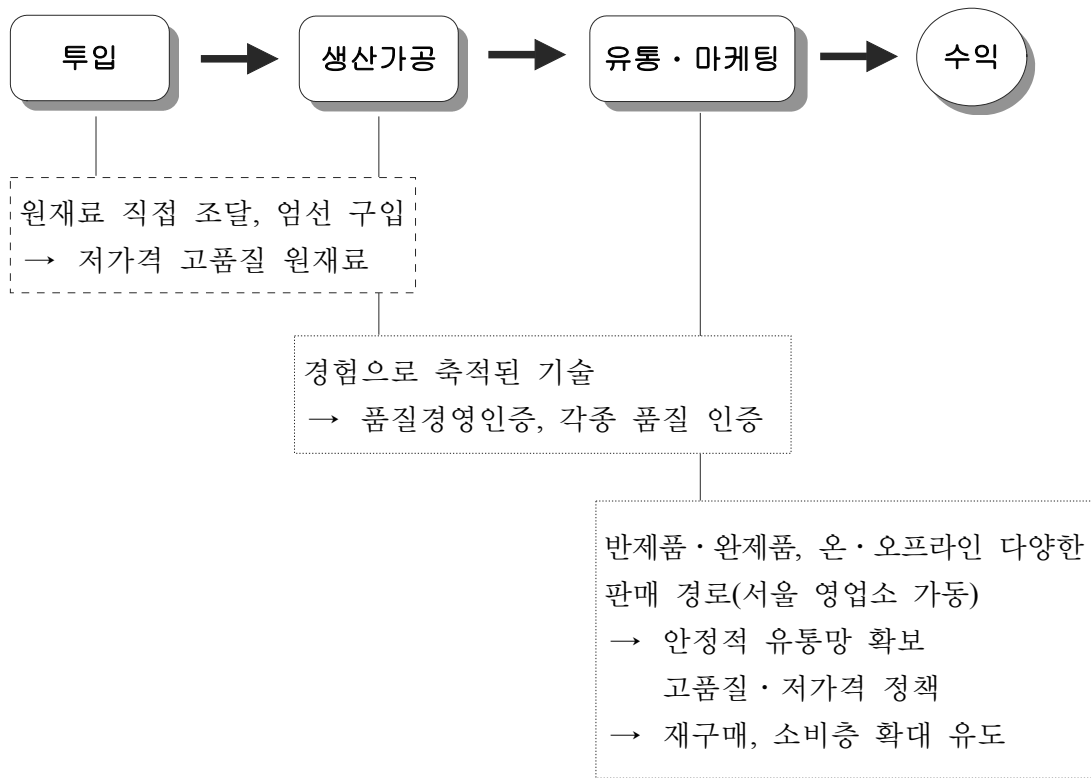
좋은 품질을 기반으로 한 폭넓은 판매망이 구축되어 있는 데다 매년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향후 지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 (4) 가치사슬 분석

광천수산영어조합법인의 가치사슬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조합원이 직접 어획한 원재료와 수협 등에서 엄선하여 구입한 원재료를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공하고 이를 다양한 판매 경로를 통해 안정적으로 유통시킴으로써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치창출 메커니즘은 핵심적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1) 저렴하고 우수한 원재료 조달, 2) 축적된 생산기술, 3) 다양한 판매망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3-3-5] 광천수산영어조합법인의 가치사슬 분석

##### ① 저렴하고 우수한 원재료 조달

광천수산영어조합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원재료 생산과 가공이 일체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영어조합법인 설립 이후 대표이사가 직접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조업에 나서고 있고 다른 조합원들도 직접 원재료를 생산하고 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원재료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 일부는 수협 등을 통해 구입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자신이 어획한 수산물을 가공하는 것이어서 믿을 수 있는 원재료를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원가의 50%를 차지하는 원재료비용을 절감하고 그 품질도 보장받음으로써 원재료 조달 단계에서 비용과 품질이라는 경쟁력의 두 원천을 확보하고 있다.

### ② 축적된 생산기술

원재료의 질도 중요하지만 이를 가공하는 기술에 따라서 최종 제품의 품질이 결정된다. 광천수산영어조합법인은 오랜 기간 액젓을 생산해오면서 축적된 기술력이 있다. 마른멸치도 가공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품질을 높이는 건조 방식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가동하고 있다. 특허를 보유한 기술은 없지만 생산하는 대부분의 제품이 수산물품질인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충청도지사 품질추천 특산품 등의 각종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그 기술력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 ③ 다양한 판매망

광천수산영어조합법인은 초기에 재래 도매시장이나 수산가공 대기업에 주로 납품하다가 롯데·신세계·현대 등 주요 백화점에서 행사판매를 시작하고, 우체국 쇼핑센터와 농협하나로마트에 입점하는 등 기존의 판매망을 유지하면서 계속 확대해왔다. 수도권과 가까워 이를 겨냥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 서울에 영업소를 개설하여 이곳에서 판매망 구축을 전담하고 있다. 가족 중심의 작은 기업이 소비지에 전문화된 판매 부서를 두고 있는 점이 이 기업이 유통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인터넷 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직접 주문을 받기도 하고 해양수산부가 개설한 인터넷 직거래 장터에도 입점해있다. 지난 2006년 말에는 충청남도과(주)옥선이 충청남도 농수산물에 대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멸치·까나리 액젓이 인기리에 판매되기도 하였다. 인터넷 구매 고객은 구매 실적을 기록에 남겨 전담 직원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편 이 기업은 ‘등대지기’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으나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지는 않다. 비용을 들여 광고를 하기보다는 가격을 낮춰 많은 소비자들이 구입하게 함으로써 품질에 만족하고 이들의 평판을 통해 제품을 자연스럽게 광고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 ④ 비즈니스 모형의 특징

지금까지 광천수산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초로 해당 경영체의 비즈니스 모형의 특징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형의 핵심적 요소는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원재료 확보에 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는 비용을 줄이고 품질을 높이는 것으로, 비용(가격)과 품질이라



는 전통적인 두 경쟁력의 요소를 한 번에 해결하는 토대로 작용한다.

둘째, 또 하나의 요소는 고품질로 인정받게끔 하는 기술력이다. 이 기업은 내세울만한 특허기술은 없으나 오랜 기간 축적된 제조기술과 새 기술의 발명으로 높은 품질을 구현하면서도 비용을 줄이는 공정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위생안전 면이 강화된다면 품질은 더욱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끝으로 이 기업은 온·오프라인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수산가공 대기업에 반제품을 납품하는 것에서부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택배 판매까지 다양하면서도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판매 전략은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과 가격에 만족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재구매를 유도하고 소비층 확대를 꾀하는 것이다.

#### 4) 고창영어조합법인

##### (1) 개요

고창영어조합법인은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에 위치하며 고창지역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풍천장어를 자체 생산하고, 가공·판매까지 하는 장어구이 전문업체이다. 이 회사는 소비자들 주로 외식을 통해 맛볼 수 있었던 장어구이를 가정에서도 손쉽게 맛볼 수 있도록 상품화하였으며, 엄선된 장어만을 선별하여 세척, 양념, 굽기 등 자동화시설을 거쳐 생산된 장어구이를 급속냉동·포장하여 판매하고 있다. 주 생산품목으로는 복분자숙성 장어구이, 풍천장어구이(간장·고추장), 민물장어중탕, 장어뼈튀김 등이 있다.

[표 3-3-16] 고창영어조합법인 개요

구분	내용	비고
설립일자	1997년 1월 8일	
주 소	전북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996번지	
사업장 규모	5,737m <sup>2</sup> (1,735평)	양만장 700평
주력상품	복분자숙성장어구이, 장어뼈튀김, 풍천장어구이(간장, 고추장), 장어중탕 등	
생산능력	뱀장어 양식(연간 60톤), 구이(1일 1톤) 중탕(1일 450kg)	
관련홈페이지	<a href="http://www.poongchun.co.kr">http://www.poongchun.co.kr</a>	
특이사항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획득 장어구이 제조방법 및 장치로 특허 획득	2003년 2월 2004년 3월

1997년 1월에 조합원 11명이 약 5억 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고창영어조합법인은 현재 13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으며, 2006년도 매출액은 약 30억 원 수준이다. 고창산 장어만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며, 2003년 2월에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표 3-3-17] 고창영어조합법인의 연혁과 발전과정

연도	내용	비고
1984. 3	- 성내양식장 개시 운영	
1989. 3	- 전라북도 시범양어장 선정 및 지원	
1995. 10	- 선도어업 경영체 지정	농림수산부
1997. 1	- 고창영어조합법인 설립	
1997. 5	- 뱀장어 양식장 자동화 시설 도입	
1999. 1	- 수산물 산지가공업체 선정	해양수산부
1999. 10	-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기술·경영 컨설팅	
2000. 2	- 특허청 상표등록 출원	특허청
2000. 2	- 영업신고	고창군
2000. 7	- 서울사업소 개소	
2000. 9	- 대표이사 신지식인 선정	해양수산부
2001. 3	- 국군복지단 납품 선정	국군본부지원단
2001. 5	- 대표이사 산업포장 수상	대통령
2002. 7	- 우편주문판매업체 등록	
2003. 2	-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획득	해양수산부
2003. 10~11	- 서울건강식품박람회, 부산국제수산물무역 EXPO 참가	
2004. 3	- 특허획득(장어구이 제조방법 및 그 장치)	특허청
2004. 3	- 서울국제식품기술전, 부산국제수산물무역 EXPO참가	
2004. 12	- 장어뼈 스펙(튀김) 개발(전북대 연구용역)	
2005. 9	- ISO 14001인증 획득	
2005. 11	- 제3회 부산국제수산물무역 EXPO참가	
2007. 4	- 전라북도 BUY상품 선정	전라북도지사
2007. 5	- 대한민국 철탑산업훈장 수훈	대한민국

고창영어조합법인의 이재정 대표는 과거 현대중공업 품질보증부에서 근무하다 1983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에서 본격적인 양식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대표는 고향에 있는 382ha 규모의 동림저수지를 이용, 소득사업으로 연계하고자 초기에 가물치양식을 시도하



였다. 그러나 경험부족 및 장마에 독이 유실되어 고기가 떠내려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다 1986년에 21명의 양식어가를 모집해 성내새마을 양식계를 조직하여 양식기술의 보급에 노력하였으며, 1989년부터 현재의 부지에 양어장을 신축, 뱀장어 양식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게 되었다.

1997년에 고창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고 뱀장어 가공설비 기술을 고안하였으며, 1999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지수산물 가공시설사업에 선정되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뱀장어 가공공장을 설립하였다. 한편, 2003년에는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이듬해 ‘장어구이 제조방법 및 장치’와 관련된 특허를 획득하는 등 고창 풍천장어의 브랜드화 및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7년에는 전라북도 BUY상품에 선정되었고, 동년 5월에는 대한민국 철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수산 기업으로서 발돋움하고 있다.

## (2) 경영자 능력 및 경영전략

대표이사는 1999년 일본에서 설비를 도입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뱀장어구이 가공공장을 설립하였으며, 2000년 9월 수산분야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2004년~2005년 동안 한국수산경영인증연합회 유통가공분과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04년부터 (사)해양수산신지식인 중앙연합회의 초대회장직을 맡아 수산물 가공분야에 있어서 기술보급 및 정보교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등의 강의를 통해 양식기술 정보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198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업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는 경영에 있어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및 관련 자료를 통한 창의적 연구와 더불어 산학 협력을 통한 제품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뱀장어 만(鰻)자를 ‘하루에(日) 네 번(四) 먹어도 또(又) 먹고 싶은 고기(漁)’로 풀이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는 등 제품 홍보에 있어서도 독자성을 구축하였다.

이 대표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경영전략을 간략히 요약하면 좋은 원료를 이용한 제품생산, 지역브랜드의 최대한 활용, 철저한 기존고객 관리, 생산-가공-유통-판매의 일원화 시스템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전략 보다는 입소문과 지역브랜드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한번 제품을 구매·시식한 고객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생산-가공-유통-판매의 일원화를 통해 비용절감 및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처음 양어장을 시작하면서 4차선 도로 바로 앞에 부지를 신축하고 대형



간판을 걸어 풍천장어를 홍보한 점이다. 고창 관내에서 교통량이 많은 곳에 위치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큰 홍보효과를 거두었으며, 실제로 이는 자체 운영 중인 셀프 장어 구이의 매출증가로 이어졌다. 광고비를 전혀 들이지 않고 시작한 셀프식당의 연간 매출은 약 6억 원 수준이며, 주말에는 1일 4~500만원, 평일은 2~3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 (3) 재무적 특성

고창영어조합법인은 2006년말 현재 총 자산은 2,477백만원, 부채는 1,535백만원, 자기자본은 943백만원으로 구성된 경영체이다. 총매출액은 2006년 2,947백만원(2005년 3,096백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006년 87백만원(2005년 92백만원) 수준이다.

최근의 재무적 특징을 2005년 및 2006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산 및 영업활동에 투자한 자본으로 어느 정도 이익을 확보했는가를 나타내는 투자자본수익률(ROIC)은 2006년 5.42%로 2005년의 5.95%보다는 다소 낮아졌으나 큰 변동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2006년부터 양식장 HACCP시설을 도입하는데 자본이 투입되었으나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일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동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인 자기자본수익률(ROE)도 2006년 9.68%로 2005년의 11.42%에 비해 감소하였다. 반면,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지표로서 경영체 고유의 영업활동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06년 3.07%로 2005년의 2.98%에 비해 미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6년도의 총자산 증가율은 12.97%로 2005년의 4.31%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출액 및 순이익은 2005년에 10% 이상을 실현하였으나 2006년에는 매출의 감소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비록 큰 폭의 감소는 아니나 이러한 매출감소에 대해 회사측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매출의 급신장을 예상하고 있다. 기업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부채비율은 2006년 현재 162.77%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그 동안의 설비확충 및 연구개발 등에 많은 비용을 부채로 조달하였기 때문인데, 향후 매출확대를 통한 이익 실현으로 부채비율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총자산에 대한 매출액의 규모가 적정하고 재무구조에 있어서 자기자본비율이 산업내 평균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18] 고창영어조합법인의 재무적 특성(2005~2006년)

구분	수익성 분석			성장성 분석			안정성 분석		
	투자자본 수익률 (ROIC)	자기자본 순수익율 (ROE)	매출액 영업 이익율	총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부채비율	이자보상 배율	차입금 의존도
2005년	5.95	11.42	2.98	4.31	17.20	12.43	156.27	2.47	59.67
2006년	5.42	9.68	3.07	12.97	-4.83	-5.82	162.77	2.97	59.95

#### (4) 가치사슬 분석

##### ① 생산

고창영어조합법인은 뱀장어를 자연산에 가깝게 기르기 위하여 인동초, 허브 등을 이용 사료에 첨가하여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차별화된 장어양식을 시도하고 있다. 연간 60톤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자체 양식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장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수요 확대에 따른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 ②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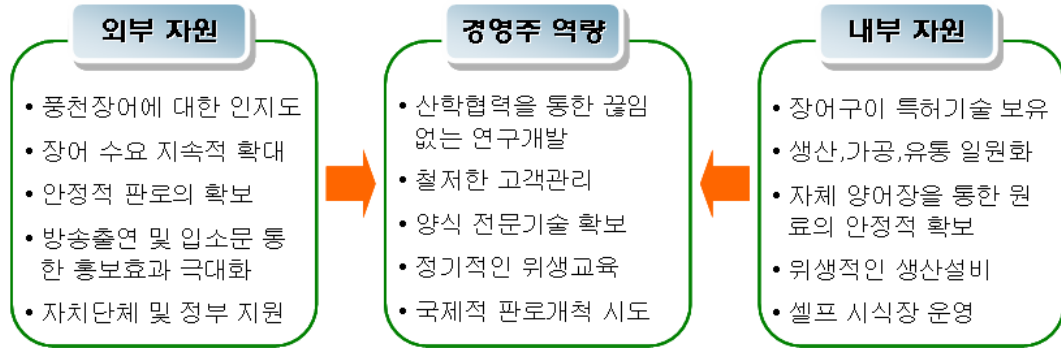
고창영어조합법인에서는 품질인증을 받은 장어구이 원료만을 사용하여 모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가공에 있어서 다른 제조기업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원적외선 원리를 이용하여 구웠기 때문에 영양손실이 적으며, 지방질은 빠지고 수분은 그대로 유지되어 맛이 담백하며, 장어 육질 내부까지 양념의 깊은 맛이 배어 있다. 일반 가스방식으로 가공하는 경우 겉부터 익기 때문에 원료가 타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극복한 것이다. 그리고 영하 30℃에서 급속동결시켰기 때문에 장어 고유의 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 있으며,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 ③ 유통·판매

고창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및 대도시 마트, 백화점 등으로까지 판매망을 구축한 상태이며, 우체국을 통한 통신판매도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농협 하나로마트, 메가마트, 신라호텔 등에 독점 납품하고 있으며, 향후 가공공장에 대한 HACCP 도입을 통해 타 대형 백화점 및 마트로의 판매가 급신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처별 판매비율을 살펴보면, 대형마트가 45%, 음식점 15%, 온라인(전자상거래) 20%, 전화주문 10%, 자체 식당(셀프 장어구이) 10% 수준이다.

(5) 비즈니스 모형의 특징

고창영어조합법인의 비즈니스 모형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내·외부 자원 및 경영주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3-6] 고창영어조합법인의 성공요인

외부자원으로는 장어 및 복분자에 대한 지역적 인지도, 판로의 안정적 확보, 홍보효과 등이 있으며, 내부자원으로는 생산-가공-유통-판매의 일원화 시스템 구축, 기술력의 보유, 셀프 시식장을 통한 고정적 수입의 확보 등이 있다. 또한 산학협력을 통한 제품개발, 철저한 고객관리, 기술력의 확보 등 경영주의 역량도 성공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고창영어조합법인의 핵심적인 비즈니스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생산·가공·유통·판매 시스템의 일원화

가장 핵심적인 성공전략으로서 뱀장어의 양식생산에 이어 가공, 그리고 유통과 판매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원화하였다. 이를 통해 비용절감 및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으며, 생산감소에 따른 공급물량 부족이나 판로개척의 애로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②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1999년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1년간 기술·경영컨설팅을 통해 ‘풍천장어구이’라는 뱀장어 가공품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선운산풍천장어구이란 상표로 시판되는 제품의 양념도 고추장맛, 간장맛으로 구분하였으며, 지역특산품인 복분자를 이용, ‘복분자숙성 풍천장어구이’ 제품을 개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전북대 바이오식품 소재개발 연구센터와 ‘복분자 훈제 풍천장어’, ‘복분자 훈제 고등어’, ‘장어뼈튀김’ 등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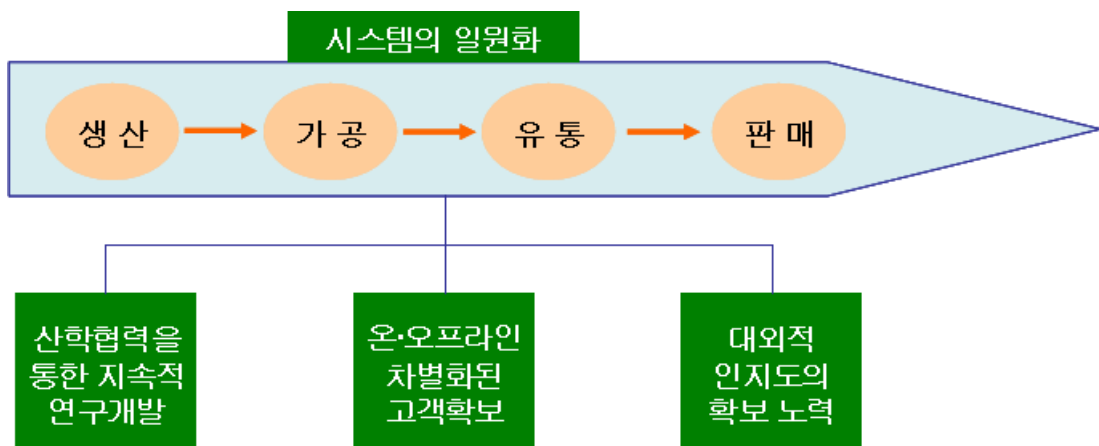
한 제품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양어장에 대한 HACCP 설비구축을 전남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이며, 향후 가공공장에 대한 HACCP사업도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 ③ ON/OFF라인별 차별화된 고객확보

오프라인에서의 제품판매는 ‘셀프식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고창영어조합법인에서 운영중인 약 1백평 규모의 셀프식당은 말 그대로 손님이 뱀장어를 구입하여 직접 구워먹는 형태이다. 손님들은 저렴한 값에 신선한 채소와 장어구이를 마음껏 맛볼 수 있고, 경영 측면에서는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온라인 ([www.poongchun.co.kr](http://www.poongchun.co.kr))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도 생장어, 장어구이, 뼈튀김, 중탕 등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판매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한번 구매한 고객은 우수고객으로 등록하여 다양한 할인혜택과 선물세트를 보내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

### ④ 대외적 인지도의 확보

고창영어조합법인은 교통량이 많은 곳에 위치하여 관광객, 관내 및 인근 지역의 주민들까지 방문하고 있다. 특별한 홍보전략이나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지리적 여건의 유리함과 더불어 방문객들의 입소문을 통한 홍보가 큰 몫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방문한 사람들의 재방문율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는데, 이는 엄선된 원료의 사용 및 저렴한 가격에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찾아라 맛있는 TV’(MBC), ‘체험 삶의 현장’(KBS1), ‘VJ 특공대’(KBS2), ‘6시 내고향’(KBS1) 등 각종 TV 프로그램에 모두 방송되는 등 전국적으로 그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그림 3-3-7] 고창영어조합법인의 비즈니스모델

## 5) (주)일성수산

## (1) 개 요

본 회사는 경상북도 영덕군 소재 과메기 가공업체로서 2007년 5월, 주식회사로 법인전환하였다. 그밖에도 명태, 가자미, 양미리, 학꽂치 등의 건어물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조제식품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2006년 말 현재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자본금 18억원에 매출규모는 25억원이며 종업원 수는 연평균 약 35명 수준이로서, 수산가공 분야의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영덕군의 어촌사회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표 3-3-19] 일성수산 개요

구분	내용	비고
주 소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67-6	
경영형태	주식회사	2007.5 전환
주력상품	과메기 제조	
관련홈페이지	<a href="http://www.ganngu.net">http://www.ganngu.net</a> <a href="http://www.gwameginara.com">http://www.gwameginara.com</a>	
특이사항	해양수산부 신지식인 지정	2001년 선정

(주)일성수산은 현재의 대표이사가 부친의 가업을 이어받으면서 1988년 개인사업자로 창업되었다. 이후 자연건조 및 진공포장 기술을 활용하여 과메기, 양미리 및 오징어 등의 동해안 어획 주요 어종을 대상으로 가공품을 제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기초로 최근까지 그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경영규모를 확장하여 왔다.

당초 자연건조 및 진공포장 등의 가공기술을 토대로 가공업에 진출한 이후, 1992년에는 오징어 및 대게잡이 어선을 인수하여 직접 가공원재료를 조달하는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을 시도하였다. 이후 2002년 5월 영어조합법인으로 전환되기 까지 일성수산은 우체국 통신판매망 확충, 전국 특산물 경진대회 출품 등을 통해 다각도로 제품 알리기 및 판로 확보에 나섰다.

2002년 영어조합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일성수산은 공장확장 및 기술개발과 시설확충, 관련조직 통합 등을 거치면서 과메기 전문 생산업체로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공고히 다져왔다.



또한 동 사업체 대표는 2001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신지식인’ 선정을 받아,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에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도입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3-3-20] 일성수산의 연혁과 발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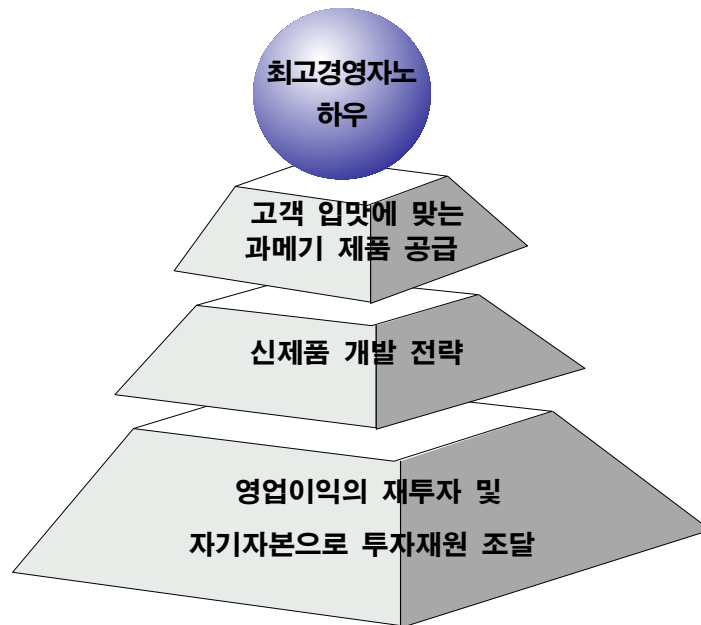
연도	내용
1988. 8	- 일성수산 설립
1988.10	- 명태 역거리 및 양미리 자연건조 생산시작
1989.11	- 과메기 자연건조 생산시작
1990.7	- 현재의 장소로 덕장이전
1990.9	- 오징어 자연건조 생산및 진공포장 생산시작
1992.5	- 오징어 및 대게잡이 선박인수 운영
1993.10	- 과메기 진공포장 생산시작
1994.3	- 돌미역 속포장 생산시작
1995.3	- 냉풍 건조기 도입 가동 시작
1996.4	- 4계절 과메기 생산시작
1997.3	- 영덕군수 추천상품 인증
1998.1	- 우체국 통신판매 등록(과메기, 오징어, 양미리)
2001.6	- 전국 특산물 경진대회 참가
2002.4	- 대한민국 농수산 박람회 참가
2002.5	- 영덕군 수산특산물생산영어법인조합 설립
2002.9	- 영덕군수산특산물유통행사 지성업체로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관
2003.6	- 2003년 6월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67-6으로 본사 및 공장 확장이전
2003.8	- 맥반석 훈제기 도입 제품생산
2003.9	- 과메기 냉,건 훈연법으로 특수 가공 제품생산
2004.1	- 강구면 금호리에 일성 상사 설립
2004.5	- 일성수산·상사 및 건어물 대학교 통합
2004.9	- 키토산 과메기 생산시작
2007.6	- 이노비즈 기업인증, ISO 9001 : 2000인증, KSA 9001 : 2001인증
2007.7	- 벤처기업 인증

## (2) 경영자 능력 및 경영전략

(주)일성수산은 2007년 5월 2일, 현물출자를 통한 주식회사 자본금 납입을 완료함으로써 법인전환을 완료하였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메기 생산시설 및 부지 등의 현물출자를 통해 17억 9,500만원의 자본금을 불입하였다. 따라서 상기 법인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현재 제1대 주주인 서원명 대표가 99.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밖의 임원진

이 0.001%를 보유하여 제1대주주가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주)일성수산의 최고경영자인 서원명 대표는 2001년에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과메기 제조관련 연구 논문을 제출하여 고급관리자과정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sup>8)</sup>. 다시말해 상기 경영체의 최고경영자에 대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자체적인 노력과 기술, 연구 과정 등이 적잖이 쌓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노하우와 경험을 보유한 최고경영자의 지휘아래, 일성수산의 경영목표는 국내 과메기시장에서 최고의 생산자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과메기 시장의 수요와 공급 조건을 감안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품질과 매출량 등에 있어서 1위 업체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경영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3-3-8] (주)일성수산의 경영전략 구조

이를 위해 동 업체가 최대의 노력과 자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는 소비자 입맛에 맞는 과메기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며, 실제로 이와 관련된 특허를 현재 7건 보유하고 있으며 계류 중인 것만도 3~4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는 맥반석 훈제기 도입을 통한 특수가공제품을 본격 생산하여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웰빙형 키토산 과메기를 생산하여 출시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동사는 고품질 과메기 제품 생산을 위하여 2006년에 8억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도입하여 한

8) “전통적인 청어 관목의 유래와 가공과정”, 안동대학교 행정경영대학원, 서원명, 2000.2



단계 높은 시설 현대화를 구축하였다.

이처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과메기 제조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기 업체는 소요 자금의 대부분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하는 자금조달 전략을 마련하여 구조적인 차입금 상환 압박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2006년에도 약 10억원 규모의 신규 고정시설 도입을 위해 영업이익을 재투자하는 등 자기자본 조달 방식으로 13억원 증강시켰으며,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2006년말 현재 44.1%에 불과하다.

### (3) 재무적 특성

(주)일성수산은 주식회사 전환 전인 2006년말 현재 26억원의 자산규모를 보유하는 경영체로서, 그중 부채는 8억원, 자기자본은 1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우량한 수산가공업체이다. 재무제표상에 나타난 대규모 기계장치 증설은 2006년에 시행되었으며 그 규모는 8억원으로서 최근 재무비율의 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일성수산의 설비증설을 위한 자금은 대부분 그동안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하여 조달하였으며, 자본금 및 단기차입금도 일부 조달재원으로 활용했으나 그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따른 재무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투하자본수익률은 2006년 3.71%로서 직전년도 6.26%보다 크게 저하되었다. 이는 2006년도에 도입된 기계설비 확충으로 투하자본 자체가 커졌으나 그 경제적 효과는 당 기간에 일부만 발생했기 때문에 동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자기자본수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등도 2005년 대비 2006년 들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앞과 동일한 요인이 작용한 때문이다.

[표 3-3-21] (주)일성수산의 재무적 특성(2005~2006년)

구분	수익성 분석			성장성 분석			안정성 분석		
	투하자본 수익률 (ROIC)	자기자본 순수익율 (ROE)	매출액 영업 이익율	총자산증 가율	매출액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부채비율	이자보상 배율	차입금 의존도
연도 (’06/’05년)	3.71/ 6.26	4.24/ 6.78	3.01/ 4.56	120.76/ 19.34	69.53/ 0.20	81.48/ -38.64	44.13/ 139.88	3.30/ 1.66	30.62/ 58.31



그러나 성장성 지표는 2005년 대비 2006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산증가율은 2005년에 19.34%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에는 최신설비 도입 효과로 인해 자산증가율이 120.76% 증가했으며, 일부 매출확대 효과로 인해 매출액 증가율도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동사는 추후 최신시설 도입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익성 지표의 지속적 향상이 예상되고 있으며, 안정성 지표도 계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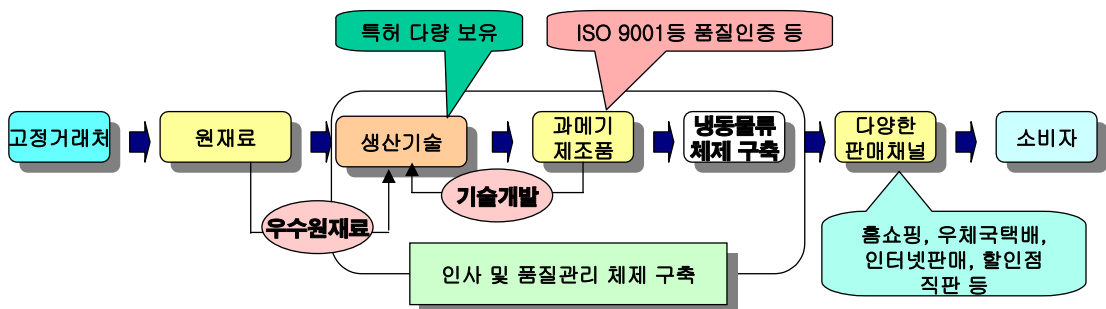
(4) 가치사슬 분석

(주)일성수산의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가치창출 메카니즘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즉 고정거래처로부터 우수 원재료를 엄선하여 조달한 투입물을 근간으로 하여, 특허 확보를 통한 기술개발의 결과를 접목시킨 과메기 제조기술을 도입하여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소비자 입맛에 알맞은 과메기 제품을 공급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치창출 메카니즘은 핵심적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1) 원재료 조달, 2) 신기술 개발 및 효율적인 생산관리 체제, 그리고 3) 다양한 판매 채널 등의 마케팅 전략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① 우수 원재료 조달

(주)일성수산의 가치창출의 핵심 요인 중 하나가 우수한 원재료를 적기에 확보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원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우수한 품질의 것으로 적기에 조달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정거래처를 확보하되, 필요시 우수 원재료 조달을 위해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하기도 한다. 고급 과메기 완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원재료 상태의 풍치 품질도 우수한 것이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3-3-9] (주)일성수산의 가치사슬 분석



## ② 신제품 개발 및 효율적 생산관리 체제의 구축

(주)일성수산의 신제품 개발 전략은 매우 집요할 정도로 노력을 많이 경주하고 있다. 최근 소비패턴에 맞춘 웰빙형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키토산 과메기의 생산기술 개발, 이를 위한 특허 보유 등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현재 동사의 특허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키토산과메기 제조방법’, ‘과메기이용한방숙성액 제조방법’, ‘과메기 훈제설비’ 등의 특허 등 7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특허 출원계류 중인 것도 3건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전문 연구인력을 3명 확보하고 있으며, 기타 생산직 종업원들도 기술력 확보 및 체화를 위한 동기가 매우 높아서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이 상시화 되어있다.

또한 이와 같은 고품질 기술개발 전략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즉 매주 단위로 품질관리 상황을 체크하는 한편,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일일 방제 및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동사는 2007년 4월에 ISO9001:200과 KSA9001:2001 등의 품질 인증을 받았으며, 2007년 6월에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그리고 동년 7월에 벤처기업 인증을 각각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신기술이 체화된 과메기 완제품의 핵심적 성공 요인은 우수한 원료 구매 이외에도, 효율적 커팅을 통한 생산수율의 향상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과메기 가공기술 및 생산설비는 이와 같은 훈연(燻煙) 노하우 및 수율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렇게 생산되는 과메기 제품은 국내 업계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 ③ 다양한 판매 채널을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

(주)일성수산의 마케팅 전략은 40~50대 고객 및 기능성 과메기를 선호하는 웰빙수요 등을 겨냥하여 이들의 욕구에 알맞은 과메기 제품을 출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출하되는 제품들을 우체국 통신판매, 자사 인터넷 판매, 이마트·농협 등 대형할인점 납품, 홈쇼핑 판매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가 및 대량으로 판매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냉동차 2대를 보유하고 있어, 신선한 완제품 및 원재료 등의 수송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 비용절감 및 차별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동사의 과메기 제품의 품질 우수성에 기인하여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고가로 판매되어 부가가치가 높은 편이며, 아직까지는 브랜드가 없으나 향후 상표 등록 등을 통해 점차 브랜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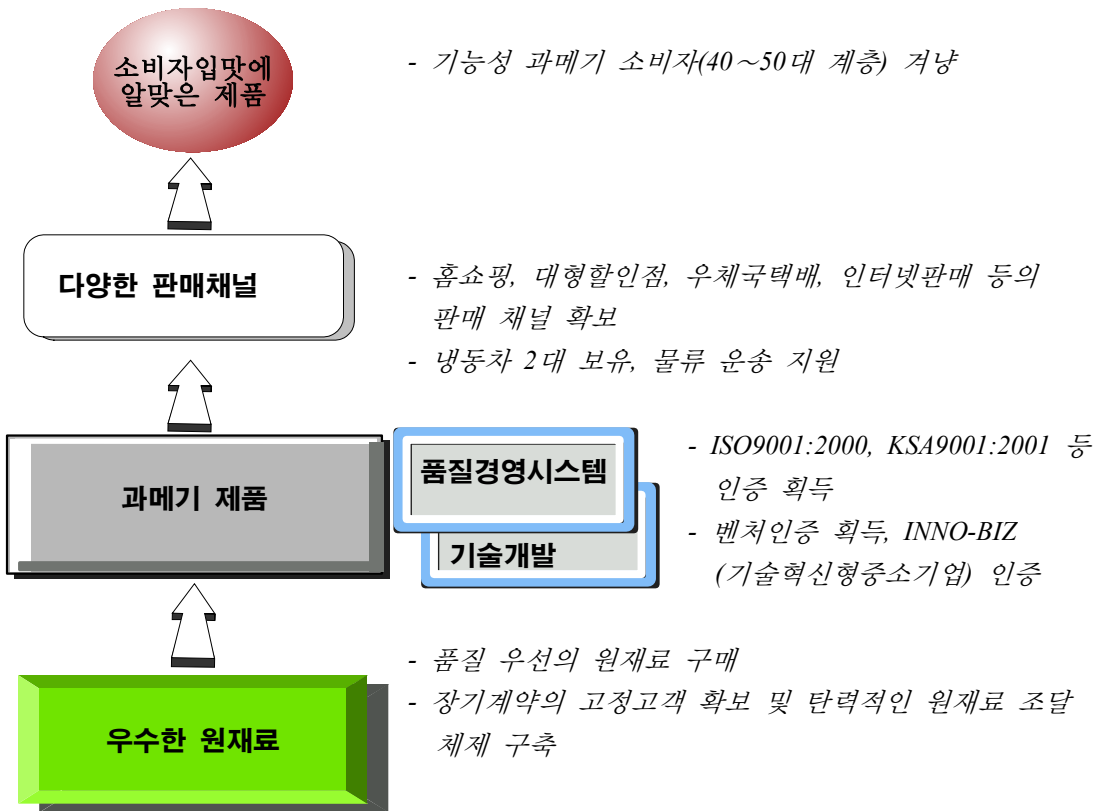
(5) 비즈니스 모형의 특징

지금까지 (주)일성수산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결과를 기초로 해당 경영체의 비즈니스 모형의 특징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사의 비즈니스 모형의 핵심적 요소는 우수한 원재료 확보전략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투입요소로 인한 품질우위를 바탕으로 고가의 판매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둘째, 동사의 비즈니스 모형의 또 하나의 요소는 고품질 확보를 위한 신기술 개발 능력이다. 동사는 각종의 기술인증 및 품질인증 등을 통해 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종업계 내에서 최고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주)일성수산의 비즈니스모형의 세 번째 특징은 온·오프라인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대량의 안정적 판매 채널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량의 불특정 구매 채널과 함께, 다량의 고정적 구매 채널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그림 3-3-10] (주)일성수산의 비즈니스 모델



## 6) 유명수산물영어조합법인

### (1) 개요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에 위치한 유명수산물영어조합법인은 2005년 6월 설립된 굴비가공업체이다. 개인기업 유명수산과는 서류상 독립적인 2개의 경영체이나 실제로 제조와 판매의 구분은 없다. 현 유명수산 대표이사는 법성포지역에서 나고 자란 지역인으로서, 운수업체를 경영으로 자수성가한 후 굴비제조업의 사업성과 지역특산물 개발과 보전에 대한 사명감을 느껴 굴비가공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영어조합법인의 2006년 말 현재 매출액 규모는 4억원이며 종업원수는 6명이다.

[표 3-3-22] 유명수산물영어조합법인 개요

구분	내용	비고
주 소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1149-4	
경영형태	영어조합법인	2005.6 설립
주력상품	생굴, 냉동굴, 굴가공품	
관련홈페이지	<a href="http://www.gulbimoa.co.kr">http://www.gulbimoa.co.kr</a>	
특이사항	(주)유명수산의 자매회사	

[표 3-3-23] 유명수산물영어조합법인의 연혁과 발전과정

연도	내용
1996.06	- 유명수산 설립
2001.05	- 갈아만든 고추장굴비 제조방법 특허등록 (특허제0296790호)
2003.03	- HACCP 인증 (k1077.03)
2003.11	- 미국 수출 시작
2005.01	- 전라남도 공동브랜드인 '남도미향' 지정업체 선정
2005.08	- ISO9001 인증획득

### (2) 경영자 능력 및 경영전략

#### ① 경영자 및 주주구성

유명수산(개인기업, 1996년 설립)을 운영하는 B씨의 장녀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현재 해외연수중이므로 유명수산영어조합법인의 경영은 B씨가 맡고 있다. 경영자 B씨는 운수업으로 자수성가한 지역 기업인으로, 지금은 화물운수업은 정리·처분하고 법성포터미널만 보유중이다. 배씨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국제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광주대), 마케팅박사과정을 수료(조선대)한 경영전문가이다. 배씨 부녀 이외에 다른 투자자는 없다.

## ② 경영전략

동 법인은 고추장굴비 단일제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경영체로, 특허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품질좋은 굴비가공품을 저가에 공급하는 것이 경영전략의 핵심이다. 또한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에 납품하던 기존의 판매체계를 탈피하여 온라인을 활용한 소비자직거래를 추구하여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맛이 다른 여러 가지 신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꾸준한 영업실적을 올리고 있다. 또한 경영자인 배현선씨는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경영전문가로서 현재 수산가공품의 수출관련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농수산무역대학에서 수출입 전문교육과정을 배우는 등 꾸준한 지식투자를 통하여 최신정보를 획득하고 경영기법을 향상시킨다.



[그림 3-3-11] 유명수산영어조합법인 경영전략 구조

## (3) 재무적 특성

유명수산영어조합법인은 2006년말 현재 약 9천만원의 자산규모를 보유하는 경영체로서, 그중 부채는 32백만원, 자본은 57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채비율이 57.3%로 재무구조가 건전하다.



[표 3-3-24] 유명수산영어조합법인 요약재무제표

항목	금액(원)	항목	금액(원)
유동자산	79,115,392	매출액	396,079,811
고정자산	10,000,000	매출총이익	40,079,286
자산총계	89,115,392	영업이익	4,942,504
유동부채	32,447,982	영업외수익	0
고정부채	0	영업외비용	0
부채총계	32,447,982	경상이익	4,942,504
자본금	50,000,000	특별이익	0
자본잉여금	0	특별손실	0
이익잉여금	6,667,410	법인세	0
자본총계	56,667,410	당기순이익	4,942,504

[표 3-3-25] 유명수산영어조합법인의 재무회계분석 결과

유동성분석	수익성분석				활동성분석		
	총자본 순수익율	자기자본 순수익율	매출액 순수익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총자본 회전율	자기자본 회전율	부채자기자본 회전율
244%	8.72%	9.89%	1.25%	1.25%	689.9%	792.2%	444.4%

유동성 분석결과 유동비율이 244%로 유동성이 양호하며, 수익성측면에서 총자본 순수익율 8.72%, 자기자본순수익율 9.89%로 높은편이며, 매출액순수익율은 1.25%,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율은 1.25%이다. 활동성 측면에서 총자본회전율이 약 700%, 자기자본 회전율은 약 800%, 부채와 자기자본의 회전율은 약 440%로 높게 나타나 경영체의 활동성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 (4) 가치사슬 분석

수산물 가공업계의 소규모 경영체로서 유명수산영어조합법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가치창출 메커니즘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특허기술을 이용한 생산비 절감

전통적 고추장굴비의 제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제조원가가 비싸고 대량생산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명수산 배현선대표는 1998년 한국식품연구원에 위탁연구를 의뢰하여 고추장굴비 가공기술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이를 생산에 적용하여 사업화에도 성공하였다. 배씨가 보유한 갈아만든 고추장굴비 제조방법은 특허제 0296790호로 등록되었으며, 유명수산의 굴비가공공정은 2003년 HACCP 인증 (k1077.03)을 받아 2003년 11월부터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재래식 고추장굴비의 경우 굴비를 건조하는데 3~5개월이 소요되고, 뼈를 발라내어야 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므로 생산원가가 높아 대중적이지 못하였다. 유명수산이 보유한 갈아만든 고추장굴비 기술은 굴비를 통째로 갈아서 고추장에 섞어 넣으므로 전통의 맛과 향은 유지하면서 제조기간을 단축하고, 단가를 낮추며 대량생산을 가능케 하였다. 그 결과 재래식 고추장굴비(시중판매가 1g당 120원)와 비교하여 저렴한 가격(1g당 53원)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2005년 1월 전라남도 공동브랜드인 ‘남도미향’ 지정업체로 선정되었고 2005년 8월에는 한국능률협회경영인증원으로부터 품질경영시스템인 ISO9001을 인증획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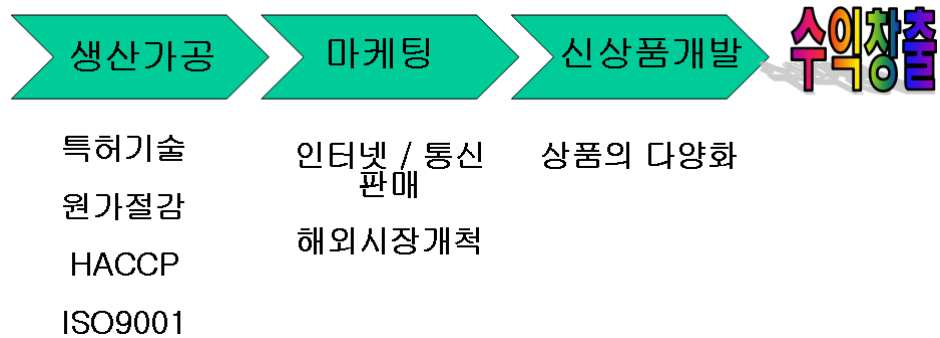
## ② 마케팅전략

대형할인점과 백화점 등 대자본의 유통업체와 거래할 경우 생산자간 과잉경쟁을 유도하여 납품원가를 하락시키므로 철저한 소비자직거래원칙을 유지함으로써 고수익을 달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체국택배와 인터넷판매, 농수산물쇼핑 등 다양한 판매경로를 개척하였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였으며 2006년 현재 내수와 수출은 5대 5의 비율이다. 지금은 주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지만, 중국수출을 위해 현지 유통업체와 협의중에 있으며, 향후 수출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 ③ 신상품개발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하기 위해서 식품첨가제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맛을 내는 고추장굴비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배맛, 매실맛, 양파맛, 인삼맛, 더덕맛 의 5가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굴비의 비린맛을 제거하고 입안에서 개운한 맛을 느끼게 하는 자일리톨 성분을 추가하는 등 품질의 향상과 새로운 맛에 대한 연구도 계속 시도하고 있다.



[그림 3-3-12] 유명수산물영어조합법인 가치사슬구조

### (5) 비즈니스 모형의 특징

지금까지 유명수산물영어조합법인의 경영성공요인을 검토·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 모형의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유명수산물 영어조합법인이 제조하는 고추장굴비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은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산비 절감에 있다. 전통적인 제품의 장점인 굴비의 맛과 향을 살리면서, 제조기간을 단축하고 대량생산을 가능케 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고 국내 굴비시장에서의 과잉경쟁으로 인한 수익하락을 해외시장 개척으로 극복하는 등 마케팅에 있어서 차별적인 비즈니스 모형을 구축하였다. 국내 수산물식품은 대부분 대형할인점에 납품하는 구조이므로 생산자간의 납품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불가피하다. 동 법인은 철저한 소비자직거래위주의 판매전략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하였으며,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굴비시장을 개척하여 지속적인 매출액 증가를 이루고 있다.

## 7) (주)아침가리

### (1) 개요

1992년에 설립된 (주)아침가리는 전남 진도군에 본사를 둔 수산물 가공업체이다. 사명인 ‘아침가리’는 ‘아침’과 ‘갈다’의 합성어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을 간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주로 해조류와 건어물을 생산·가공하여 대형할인점에 납품하는데, “행복한 식탁”, “식탁위의 작은 행복”, “바로찬” 등의 자체브랜드를 개발·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납입자본금 12억원, 자산 65억원, 2006년 매출액 120억원의 중소기업체로 95명의 종업원과 함께 수산물 가공·분야의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진도의 어촌사회 및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표 3-3-26] 아침가리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주 소	전남 진도군 고군면 향동리 321-5	
기업형태	주식회사	1994.04
주력상품	김, 멸치	
관련홈페이지	www.sanjiro.co.kr	

[표 3-3-27] 아침가리의 연혁과 발전과정

연 도	내 용
1992	- 동산농어민유통 설립
1994	- 주식회사 아침가리 설립.(동산농어민유통 승계 통합)
1996	- 주식회사 아침가리 서울지사 설립, 완도사업장 개장 - 주식회사 아침가리 광주지사 설립
1998	- 직영바다목장 멸치류, 미역류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 품질인증 획득
1999	- 주식회사 아침가리 산지물류센터 개장.(대지 3,000평. 건평 1,300평)
2001	- 롯데쇼핑(주) 거래 개시. -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운영 수출협회 가입 - 중소기업청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제2001-39호)
2002	- 6개품목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품질인증 획득 - 국민은행 지정 우수중소기업 선정 - 해양수산부 지정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획득. - (해양수산부 전통제 2002-53호)
2003	- 중소기업진흥공단 선정 이전기술 개발사업 수행기업(연구과제:천연조미료 가공) - ISO9001:2000(국제표준화기구)시스템 인증(인증번호:K/Q00138) - 중소기업청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제2003-09호) - 중소기업진흥공단 선정 특허사업화자금 지원업체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전기술개발사업 성공판정 : 천연조미료 - 기술신용보증기금 선정 우량기술기업 - 한국수산물품질인증대전 대상 수상 : 조미김부문 - 수출기업화 단지 사업체(사업비:15억) 선정 : 해양수산부 - 중소기업청 선정 Inno-Biz기업 인증 획득(제4041-0220호) - 한국무역협회 회원 가입(무역업고유번호:30241077) - 수출기업화 사업 지원업체 선정(중소기업청)
2004	- 남세우수기업 표창장 수상(국세청) - 전라남도지사 인증 통합상표 사용허가 취득(허가번호04-21-26-70) - 제2회 광주·전남 중소기업대상 수상(경영혁신부문) - 중소기업청 지정 벤처기업(제041421034-1-00055호)
2005	- 다시마 환 품질인증 획득(S-15-26-01) - 2005년도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1순위 사업 선정
2006	- 전라남도 공동브랜드 “남도미향” 사용권 획득 (조미재래김, 식탁김 등) - 진도군, (주)롯데햄·롯데우유社와 공동상품 매매계약 체결(3자계약) - 지역선도기업 연구개발업체 선정 : 기능성 조미김 연구개발 업체 선정 - (주)GS홈쇼핑(GSeshop.co.kr) 2006년 1/4분기 서비스우수업체 선정(식품부문 1위)



## (2) 경영자 능력 및 경영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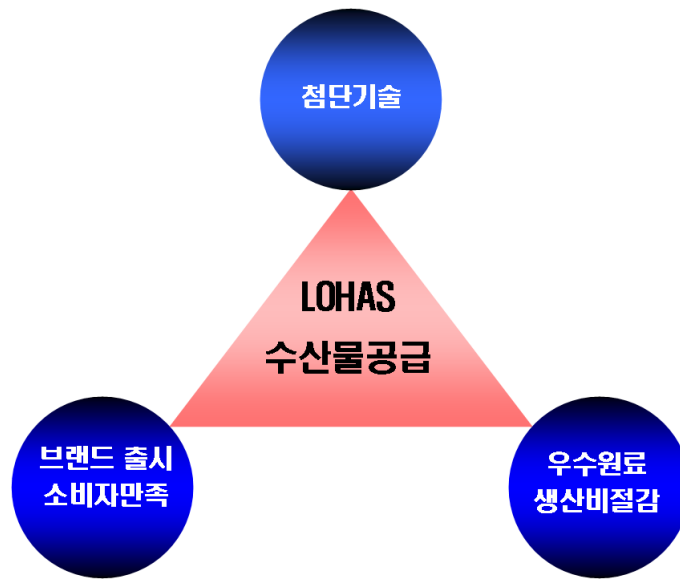
### ① 경영자 및 주주구성

(주)아침가리의 대표이사는 대표주주로서 회사 지분의 99%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1%는 배우자인 B씨의 지분이다. 대표이사는 대학에서 무역학을 전공하고 농산물유통업에 종사하던 중 1992년 동사의 전신인 ‘동산농어민유통’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1994년 (주)아침가리를 창업하였다. 창립이후 현장경영을 통해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업 관련 지식 획득에 매진하였고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는 등 끊임없는 자기계발로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 내고 있다. 이는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졌으며, 지역경제와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4년 광주은행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국민은행 기업금융 최우수경영자모임인 CEO커뮤니티 회원으로 위촉, 2007년 전라남도 하이테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전남지역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사업을 발굴·유치하는 임무를 부여받는 등 대외적으로 경영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 ② 경영전략

대표이사가 추구하는 (주)아침가리의 경영전략은 “LOHAS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sup>9)</sup>시대에 부응하는 수산물 공급”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첫째, 직영어장을 운영하고 산지 직거래로 원재료를 조달함으로써 우수한 원재료를 저가에 공급받고 있다. 둘째, 동사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위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조리가 간편한 수산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적시에 출시한다. 멸치의 경우 염도가 높고 철분 흡수가 잘 안된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철분 배출을 막는 천일염을 이용한 멸치, 저염도 멸치를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여 식품소비의 웰빙바람이라는 메가 트렌드와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고 있다. 동사의 제품은 유형에 따라 세 가지의 브랜드로 출하되는데, 조미김은 “행복한 식탁”, 1차식품/생식품류는 “식탁위의 작은 행복”, 가공식품류는 “바로찬”이라는 자체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사는 (주)롯데햄과 진도군이 참여하는 3자 협약을 체결하여 “롯데진도김” 브랜드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9) LOHAS라는 용어는 건강, 생태, 환경,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의 생활스타일과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제품군의 시장을 의미함



[그림 3-3-13] (주)아침가리 경영전략구조

### (3) 재무적 특성

(주) 아침가리는 1994년 설립당시 100백만원이던 납입자본금을 꾸준히 증자하여 2004년 8월 1,200백만원으로 성장하였다. 동사는 2006년말 현재 약 58억원의 자산규모를 보유하는 경영체로서, 2006년 매출액은 약 92억원, 당기순이익은 4억 1천만원으로 이는 1000원의 상품을 팔아 45원의 순이익을 남긴 셈이다. 총자산은 부채 35억원, 자본 2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무제표상 부채비중은 152%로 양호한 수준이다.

특히 동사의 자본금 내역은 자기자본 12억원에 이익잉여금 9억원, 자본잉여금 2억원으로 구성되어 이익잉여금의 비중이 크다. 이는 동사가 영업활동에서 생긴 순이익을 배당이나 상여 등의 형태로 사외로 유출시키지 않고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위해 사내에 유보한 금액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07년 7월 현재 동사의 여신규모는 총 55억 5천만원인데 전체의 67%에 해당하는 37억원을 제1금융권으로부터 용자하였으며 제2금융권비중은 33%인 18억 5천만원으로 회사의 규모대비 이자부담이 크지 않으며 양호한 신용을 유지하고 있다.



[표 3-3-28] (주) 아침가리 요약 재무제표 (2006년)

항목	금액(백만원)	항목	금액(백만원)
유동자산	3,480	매출액	9,175
고정자산	2,345	매출총이익	2,225
자산총계	5,825	영업이익	351
유동부채	2,911	영업외수익	34
고정부채	600	영업외비용	172
부채총계	3,511	경상이익	212
자본금	1,200	특별이익	198
자본잉여금	215	특별손실	-
이익잉여금	899	법인세	-
자본총계	2,314	당기순이익	410

[표 3-3-29] (주) 아침가리의 재무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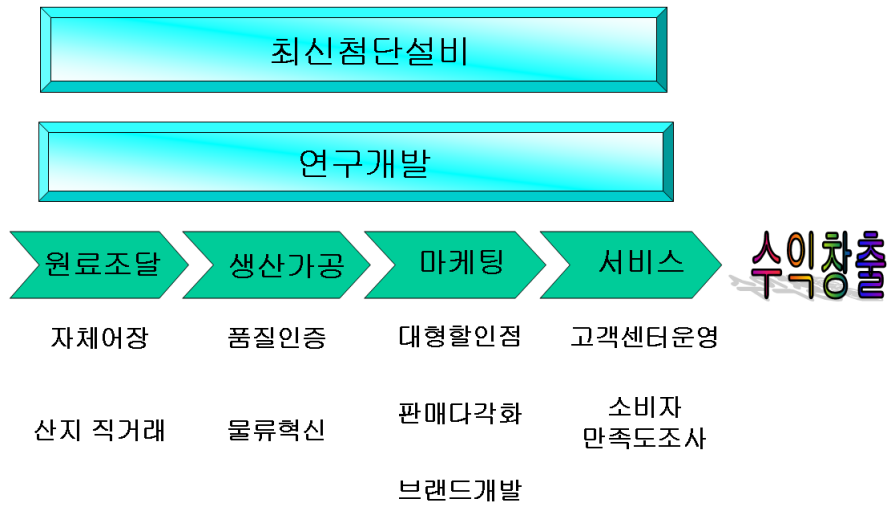
구분		2004	2005	2006
수익성 분석	영업이익율(%)	3.16	3.58	3.83
	ROE	8.70	9.09	19.28
	ROIC	12.55	15.41	15.63
활동성 분석	매출채권회전율(회)	6.76	7.29	7.98
	재고자산회전율(회)	6.41	5.62	6.84
	총자산회전율(회)	1.71	1.61	1.73
성장성 분석	총자산 증가율(%)	48.65	11.09	21.88
	매출액 증가율(%)	10.48	18.67	25.32
	순이익 증가율(%)	14.95	34.96	147.07

재무분석 결과, 동사는 총자산에 대한 매출액의 규모가 적정하고, 재무구조에 있어 자기자본조달비중이 양호하여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총자산에 대한 경상이익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및 유출의 균형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현금흐름구조상 문제가 없다. 성장성 측면에서 3년 연속 두

자리 이상의 매출액 증가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순이익 증가율은 2004년 15%에서 2005년 35%, 2006년 147%로 크게 증가하여 내실 있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가치사슬 분석

(주)아침가리의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가치창출 메카니즘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3-14] (주)아침가리 가치사슬분석

① 직영어장과 물류혁신으로 생산비용 절감

동사는 진도앞바다의 직영멸치어장에 낚장망 5틀과 4척의 어선과 대형멸치건조기를 갖추어 싱싱한 원재료를 조달하고 원료구입비를 절감한다. 진도군 수산업협동조합과 비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수협중매인39호) 김, 다시마, 멸치 등 양질의 원료를 저가에 공급받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주)아침가리의 물류센터는 대지 9천9백m<sup>2</sup>, 건평 3천9백m<sup>2</sup> 규모로 어장과 근접한 곳에 위치하여 원료수집, 집하, 가공을 일원화한 시설로서 13종의 수산물을 가공처리한다. 여기서 가공처리된 제품은 온라인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거나 공급계약이 체결된 대형할인점으로 직송된다. 동사는 소비자 직거래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였다. 돌미역, 멸치 등 진도의 특산품을 대상으로 1994년 8월부터 우편주문판매를 시작, 국립수산물검사소로부터 받은 품질인증을 앞세워 1997년에는 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이후 대형할인점과의 공급계약체결로 온라인 매출액은 증가하지 않



고 있으나 꾸준한 판매를 유지하고 있다.

포장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2~3kg의 박스로 포장되던 멸치를 500g 단위의 소규모포장 제품을 출시하여 신세대 주부들의 생활패턴에 맞추는 한편, 멸치에 탈산소제를 동봉하여 냉장고에 넣지 않더라도 변색이 덜되도록 조치하고 지퍼백을 도입하여 보관성을 높이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을 개선하려고 노력한 점이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 ② 벤처첨단기술

(주)아침가리는 수산물 가공분야의 벤처기업으로서, 자체 식품연구소를 갖추어 매년 매출액의 3%를 연구개발비로 투자한다. 그 결과 동사의 식품연구소는 2006년 4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증(제20065220호)받았다. 또한 산학협력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대학인 동신대, 전남대, 목포대와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천연조미료 개발에 5천만원(2002), 해조추출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비 1억원(2002), 멸치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비 2억 4천만원(2005), 기능성 조미김 개발비 5천만원(2006), 완전조리식품 가공기술 연구비 1억원을 투입, 특히 7건을 출원하였고, 특히 4건을 출원준비중이며 상품등록 6건을 출원하는 등 수산식품 가공기술의 연구개발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노력의 결과, 2004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노비즈(Inno-Biz)기업(제4041-0220호) 및 수산바이오벤처기업으로 인증(제041421034-1-00055호)받았다.

### ③ 품질인증

동사는 생산에 있어서 현대적인 가공설비와 엄격한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동사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보건우수등급 기준에 맞추어 관리하고 있으며 2003년 국제표준화기구 시스템인 ISO 2001:9001을 획득하였다. 그 결과, 2001년 국립수산물검사원으로부터 6개품목에 대한 품질인증을 획득, 2002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획득, 2003년 한국수산물품질인증대전 대상 수상(조미김부문), 2004년 전라남도지사인증 통합상표 사용허가 취득(04-21-26-70)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현재 HACCP인증획득을 목표로 15억원을 투자하여 13개 공장설비를 정비하고 있으며 진도소재 공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확보하여 2006년 7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작업환경기준을 만족하는 “CLEAN 사업장 인정서”를 수여하는 등 품질좋은 수산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④ 마케팅

동사의 마케팅 성공전략은 온·오프라인 양측 모두에 있어서 판매망을 다각화한 것이다. 온라인 판매망은 진도에 위치한 온라인 마케팅본부에서 총괄하여 우체국쇼핑, (주)하

이리빙, GS-eShop 등 70여 개 거래선을 통해 조미김, 김, 멸치 등 건해산물을 판매한다. 오프라인 판매는 영업본부와 대형할인점 공급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요 거래처는 롯데마트이며 이 외에도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GS리테일, 농협유통 등 100여개 거래선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광주에 위치한 호남지사에서는 80평 규모의 도소매 직매장을 운영하여 호남지역 물류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등 판매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사는 자체브랜드를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1차식품 또는 생식품류는 “식탁위의 작은행복”이라는 브랜드로, 조미김, 자반, 건미역, 사각미역, 자반볶음 등 해조류와 멸치, 새우, 진미채, 북어채, 황태채 등 건어물류, 그리고 다시마환, 다시마액기스 등 가공식품은 “행복한 식탁”이라는 브랜드로 출시되고 있으며, 2005년에는 건어물과 소스를 함께 제공하여 반찬으로 바로 조리할 수 있는 상품군을 “바로찬(Baro Chan)” 브랜드로 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건어물 간편 조리상품 10여 종, 천연조미료 1종, 소스류 26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특허 6건을 출원하였다. 또한 2006년에는 자사브랜드외에 (주)롯데햄과 진도군, (주)아침가리간의 3차협약을 체결하여 “롯데진도김” 브랜드를 출시하였다.

또한 동사는 제품의 홍보와 디자인에도 관심을 기울여 2002년 광주전남 산업디자인대전 포장디자인분야 장려상을 수상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개발사업 선정업체로 지정되는 등 타 수산물가공업체와는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을 구사한다.

#### ⑤ 고객서비스

서울과 광주에 영업본부를 두고 지점 콜센터를 운용하여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정기적으로(분기1회) 고객의 wants를 조사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신제품개발에 반영하는 체제를 마련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경쟁기업보다 먼저 출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고객서비스활동을 인정받아 동사는 2006년 GS홈쇼핑 서비스우수업체로 선정되었다. 또한, 2006년에는 진도군 고군면 지수마을과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어 기업의 지역사회봉사를 실천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3년 연속 국세청으로부터 납세우수기업 표창장을 받는 등 성실한 기업의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다.

#### (4) 비즈니스 모형의 특징

지금까지 (주) 아침가리의 비즈니스모형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사는 직영어장과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는 우수한 원재료와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로 이룩한 기술적 우위를 기반으로 가격과 품질 양면에서 제품의 경쟁력을 갖추었다.



둘째, 최고경영자의 끊임없는 경영혁신노력이 동사의 성장을 주도하였다. 회사의 창립 초기에는 산지직거래의 이점과 지역특산품의 인지도를 최대한 활용한 마케팅으로 이윤을 축적하였으며, 온라인판매의 초창기부터 건어물과 건해조류 등 보관과 운송이 용이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제품 포장단위의 소량화 및 디자인혁신 등 타사에 비해 한발 앞서나가는 경영전략이 주요한 성공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사는 수산물소비에 있어서 큰 흐름을 파악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신상품을 적시에 출시하여 꾸준한 매출액 증가를 달성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소비함에 있어서 조리준비과정의 불편함과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심리가 있음을 파악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간편하고 안전한 수산식품을 공급하고자 간편조리식품 “바로찬” 브랜드를 출시한 것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간파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 나. 어촌비즈니스모델 우수사례

### 1) 곰소젓갈영어조합 사례(전북 부안 : 지역브랜드)

#### (1) 개요

2005년에 영어조합법인으로 등록된 곰소젓갈협회는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곰소에 위치하고 있다. 승용차로 서울에서 부안 곰소까지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부안IC로 나와 30번 국도로 3시간 정도 소요된다. 곰소에는 영어조합법인 곰소젓갈협회 회원 45명의 젓갈점포를 포함하여 총 57개 점포로 젓갈 타운이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젓갈은 곰소지역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협회 회원은 45명으로 이들이 각각 1개의 젓갈점포를 경영하고 있다. 약 15년 전에 남편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고, 부인은 집에서 만든 젓갈판매를 부수입으로 하고 있었던 14어가가 주축이 되어 모임을 갖게 된 것이 곰소젓갈협회의 시초였다. 그 이후 곰소젓갈이 유명해지면서 외지인이 들어와 젓갈판매 점포가 늘어나는 등 현재는 주로 젓갈판매에 전념하고 있으며 어업겸업 회원은 약 4-5명에 불과하다.

영어조합법인이 발족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본격적인 조합운영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매월 조합비로서 회원당 3만원 정도의 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정도이며, 조합법인에 대한 별도의 출자금이 없으며, 영어조합법인의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현재 없었지만 향후 사업구상 중에 있다.

영어조합법인 곰소젓갈협회 회원 45명은 젓갈점포 47개<sup>10)</sup>를 각각 경영하고 있으며, 젓



갈생산시설과 판매점포를 개별로 보유하고 있다. 한 점포당 연간 젓갈판매 매출액은 평균 5억 원 정도이고 순수익은 30%정도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인근에는 채석강, 내소사, 적벽강, 변산온천, 곰소항, 격포항, 모항, 상록해수욕장, 모항갯벌해수욕장, 격포해넘이해수욕장, 변산해수욕장, 개암사, 직소폭포, 월명암, 봉래구곡, 부안호, 솔섬낙조 등의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다.

## (2) 젓갈판매사업 및 성공요인 분석

### ① 제품생산방법

판매되고 있는 젓갈 중 50% 정도는 전통적인 재래식 방법으로 각자의 집에서 만들고 있고, 나머지 50%는 젓갈생산자의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다. 생산의 협업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젓갈은 보통 3종류로 분류되고 있다. 액젓류는 까나리액젓, 멸치액젓, 갈치속액젓이며, 무침젓갈류(양념젓갈)는 명란, 창란, 오징어, 바지락, 어리굴, 아가미, 갈치속, 소라 그리고 꽃게무침이 있다. 그리고 소금에 절이는 일반젓갈류에는 새우, 멸치, 갈치, 밴댕이, 꼴뚜기, 황석어 및 조개 등의 젓갈이 있다.

액젓 또는 일반젓갈을 1차 가공품이라고 하며, 양념무침 젓갈을 2차 가공품이라고 한다. 1차 가공품은 주로 개별로 집에서 전통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2차 가공품은 1차 가공품을 받아서 양념하여 제품으로 생산된다.

젓갈판매 점포와 생산공장은 분리되어 있으며, 생산시설은 주로 외진 곳에 설치되어 있고 자동화 설비의 미비로 생산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기적으로 젓갈생산은 봄철에 60일, 가을철에 30일 정도 연간 90일 정도이며 특히 봄철 젓갈생산 철에는 최소 8명에서 최대 20명까지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다.

젓갈은 좋은 원료가 생산될 때 젓갈을 담아서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데 젓갈은 발효식품으로 일정한 생산기간을 필요로 한다. 액젓과 일반젓갈은 최소 18개월 이상의 발효기간이 필요하며 이때 저장시설비 등의 추가 경비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황석어와 밴댕이는 채산성이 없어 액젓으로 가공하지 않는다. 반면에 어리굴젓은 30일정도, 새우젓은 계절식품으로 1~2달 정도 발효기간이 필요하나 당해연도에 원료구입에서 젓갈제품생산 그리고 판매가 가능하다.

10) 2개의 점포를 경영하는 회원이 있음



## ② 판매 및 마케팅

젓갈판매는 영어조합법인 또는 협회차원이 아닌 주로 개인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형태는 2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관광객 상대 판매로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며, 나머지 30%의 판매형태는 개별 거래처 판매이다. 거래처 판매는 농협, 백화점, 회사단체, 우체국통신판매, 인터넷판매 그리고 택배주문 판매 등이 있다. 과거에 협회차원에서 직영점을 운영한 적이 있으나 대부분 실패하였다.

고객관리는 개인 점포별로 하고 있으며, 가격관리는 업체자율에 맡기고 있어 약간의 가격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그리고 협회차원에서는 판매 및 마케팅 질서를 위해 호객행위를 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제명하는 규칙을 정하여 나름대로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2006년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젓갈판매 및 마케팅 전략이 찾아오는 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매출감소의 이유라 할 수 있다.

한계에 달한 관광객을 이벤트, 활성화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과 고평소젓갈이라는 지역브랜드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여 거래처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협회차원에서 고평소젓갈 지리적 표시제 등록 신청을 부안군에 요청하고 있고, 공동으로 고평돌이마크 상표를 등록하는 등 판매 및 마케팅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 ③ 품질관리

고평소젓갈이라는 지역브랜드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지만 지역차원 또는 협회차원에서 공동의 품질관리보다는 지금까지 전통방식으로 개인별로 젓갈을 생산해 오고 있어 각 가정의 김치맛이 다르듯이 젓갈맛도 각양각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전래의 고유한 맛을 보전하는 장점을 가지는 동시에 품질관리에 단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다양한 제조방법으로 젓갈 품질인증에 필요한 위생요건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만의 젓갈생산기술이 최고라고 여겨 기술을 개방하지 않고 있어, 공동 품질관리가 용이하지 않고 균일한 젓갈 맛을 낼 수 없어 공동의 브랜드를 만들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많다. 그러나 전국 추세는 건강 웰빙 붐으로 젓갈은 고염에 의한 보존·유지보다는 저온저장시설에 의한 저염화 추세이므로 이에 부응한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동의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협회차원에서 위생관리를 준수하지 않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회원은 제

명하고 있지만 외지에서 들어와 젓갈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고객행위와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비조합원인 이들은 품질이 낮은 저가의 원료로 생산된 젓갈을 판매하는 등 젓갈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회원들은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회원의 저가 제품판매-소비자피해-소비자불신-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차원에서 공동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 ④ 소득현황

현재 한 점포당 젓갈 매출액은 평균 5억 원 정도이며 이 중 순수익은 약 30%로 한 가구당 1억 5천만 원의 고수익을 초래하고 있다. 곰소젓갈협회 창립 초기에는 전국시장점유율이 약 16%이며, 전체 매출액이 그 당시 265억 원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작년부턴 전체 매출액이 250억 원 정도로 줄어들면서 개별 점포당 순수익도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전체 매출과 개별점포의 소득감소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년 외지인에 의한 젓갈점포가 늘어나면서 개인별 소득은 감소하고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둘째,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접근성이 향상되어 관광객에 있어 곰소지역이 오지 또는 생소함의 신비스러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스쳐지나가는 장소로 바뀌고 더 이상 관광객이 증대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전체 매출액은 떨어지고 있다. 셋째, 인근 관광자원 특히 변산해수욕장 등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광거리가 부족하고, 특히 숙박요금 및 식대 등이 비싸 찾는 관광객수가 줄어들어 전체 매출부진에 따른 개별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⑤ 홍보 및 명품 브랜드화 노력

협회주체로 젓갈축제를 매년 10월 11일~14일까지 개최하여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다. 작년까지는 부안군내 소규모 축제에 머물렀으나 올해부터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국적 규모로 젓갈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대중문화예술진흥회 주관으로 전라북도 및 부안군의 예산지원을 받아 젓갈축제의 규모를 확대하여 곰소젓갈의 홍보에 주력하고자 한다.

지역브랜드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곰소젓갈이지만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산되었지만 전라북도 지역특화사업 육성으로 명품 브랜드화를 시도한 적이 있다. 품질의 고급화 및 표준화, 품질관리 및 제조기술 애로사항 해결, 젓갈생산 및 판매종사자의 외국어 및 컴퓨터 교육실시 그리고 대학연구소와 연구협력을 통한 명품브랜드 생산 등이 주 내용이었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된 명품브랜드화 시도는 지역의 이해를 얻지 못해 애석하게도 농업부문에 그 자리를 내주어야 했던 것이다. 수산부문이 신활력사업으로 적극 추진되어



지역경제 및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3) 성공요인 및 향후 과제

#### ① 성공요인

곰소젓갈협회 회원 45명은 곰소지역에서 젓갈점포 타운을 형성하여 지역브랜드로 어느 정도 명성을 얻고 있는 곰소젓갈을 판매하고 있다. 전체 57개 점포 중에서 비회원점포 제외하고 47개 점포는 협회 회원으로서 연간 평균 순수익 1억 5천 만 원이라는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들의 성공요인을 다음의 [표 3-3-30]으로 정리해 보았다.

각 분야별로 성공요인을 분석해 보면 현재까지 곰소젓갈은 전통적인 수작업에 의한 젓갈생산방법에 의한 관광객 대상 판매 전략이 주된 성공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여건변화 등으로 이러한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3-30] 곰소젓갈 지역브랜드의 특징과 성공요인

구 분	성 공 요 인
원료 및 제품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안인근 해역에서 생산되는 원활한 품질 좋은 원료공급</li> <li>- 전통적 방법에 의한 제품생산으로 젓갈제품종류의 다양화</li> <li>- 고유한 젓갈제조 기술보유</li> </ul>
판매 및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객 판매(70%)</li> <li>- 거래처 판매(30%) : 농협, 백화점, 우체국통신, 인터넷, 택배</li> <li>- 호객행위 및 원산지 미 표시의 경우 회원자격 박탈</li> <li>- 곰돌이마크 상표 등록</li> <li>- 곰소젓갈 지리적 표시제 등록 신청</li> </ul>
제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회차원에서 위생관리</li> <li>- 원산지 표시제</li> </ul>
인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부의 가족중심</li> <li>- 도시 젊은이 유입으로 인력난은 없는 편임</li> <li>- 젓갈주생산시기인 봄철 또는 판매시기인 10월에 일용직 고용</li> </ul>
자금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별 자금조달(영어자금대상이 아님)</li> </ul>
홍보 및 명품 브랜드화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규모의 젓갈축제로 확대</li> <li>- 신활력사업 등과 연계하여 명품 브랜드화 추진시도</li> </ul>
핵심성공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회(영어조합법조직)를 통한 공동대응 능력을 갖추</li> <li>- 관광객 판매</li> <li>- 전통의 고유한 젓갈제조 방법</li> </ul>

## ② 효과

곰소젓갈 지역브랜드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지역특산물 및 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어촌마을 안정화, 어촌인구증가 및 도시의 젊은이 유입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어가로서는 1억 5천만 원이라는 고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뒤를 이을 후계자를 확보해 두고 있는 등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위기에 처해 있는 타 어촌지역과 비교하여 어촌문제가 심각하지 않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 ③ 향후 과제

곰소젓갈 지역브랜드는 고수익을 올리는 한편 젓갈판매의 점포 증가로 인한 경쟁심화, 관광객 감소 등으로 발전과 퇴보의 기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작년부터 매출감소가 당장 또는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매출이 감소하는 이유는 첫째, 매년 젓갈점포가 늘어나 개별 점포의 매출이 감소, 둘째,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용이해져 오지 또는 생소한 지역이미지가 사라져 관광객이 스쳐지나 가는 곳으로 바뀌어 관광객 감소, 셋째, 재투자를 통한 인근 해수욕장 등 관광시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비싼 숙박요금 등 관광객 감소에 있다.

이러한 매출 감소이외에 회원과 비회원간의 갈등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회원 45명, 비회원 8명으로 곰소젓갈의 지역브랜드를 지키고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판매 질서, 제품관리 및 홍보 등에 있어 공동으로 대처해야 얻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곰소젓갈협회가 안고 있는 매출감소 및 비회원과의 갈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

첫째, 다용도 부지내 건립예정으로 있는 곰소항 종합수산물 센터 내에 젓갈물류센터로 입주하여 관광객을 위한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구매 및 판매환경을 조성함

둘째, 다용도 부지내 수산발효식품연구소 또는 젓갈연구소를 건립하여 산·관·학의 협력으로 젓갈 명품브랜드화를 추구함. 젓갈에 대한 전문 연구로, 저염성 젓갈 및 기능성 젓갈 개발, 품질의 고급화와 표준화에 머무르지 않고 마케팅 개념도입 및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인 방법에서 탈피하여 판매처의 다변화 등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도입함

셋째, 영어조합법인 사업의 일환으로 젓갈원료의 공동구매로 회원에게 저렴하게 제공하여 제조원가 절감을 통한 순수익의 비중을 높임

넷째, 낙후되어 있는 개인 시설보다는 공동의 현대식 저온저장시설을 도입하여 고품질 제품 생산 및 생산의 협업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다섯째, 비회원의 가입을 유도하여 회원과 비회원간의 갈등문제를 완화하도록 노력함

## 2) 디노빌 영어조합법인

### (1) 개요

2003년 12월에 영어조합법인으로 등록된 디노빌은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에서 경남 함양까지는 3시간, 그 외의 지역은 2시간 이내로 88고속도로와 대전 고속도로의 교차점에 위치하여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창원, 진주 등 대도시와 고속도로 접근이 용이하다.

총 72,600m<sup>2</sup>(약 2만 2천평)의 부지에 설립된 디노빌은 함양군의 유치산업체로 철갑상어 양식 및 관련사업 전문 영어조합법인이다. 민간 20억원과 국고 5억원으로 총 25억원을 투자하여 책임기술직 1명과 보조 기술직 2명을 갖추고 있으며 총 28,000미의 철갑상어와 5개의 양어동을 갖추고 철갑상어 양식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인근에는 용추 자연 휴양림, 농월정 관광지, 용추 계곡, 칠선 계곡, 지리산 자연 휴양림 등의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다.

### (2) 업체 연혁

2002년 5월 1억원의 민자지원을 시작으로 2003년 부지를 매입하여 양어장을 건립하고 2003년 12월 1일에 법인을 설립하였다. 현재까지 총투자금액은 자부담 20억(대출 1억2천 포함), 국가보조 5억(철갑상어특화사업지원금-농어촌진흥기금, 특화사업시설기금)으로 총 25억원이 투입되었다.

초기 양어장 건립 당시 철갑상어 양식에 알맞은 부지를 찾아 1년을 넘게 전국을 헤메던 중 함양군이 철갑상어 양식의 최적지임을 알고 함양군 백전면에 부지를 매입한 후 양어장을 건립하였다.

2003년 7월 철갑상어를 처음으로 한국으로 들여올 당시에는 양어장조차 없어서 1996년부터 산업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철갑상어를 기르기 시작한 전남 구례군 소재의 섬진강영어조합에 기술 이전을 해주는 조건으로 양어장을 빌려서 시작하였다. 기술이전 이후 섬진강 영어조합에서는 매년 5만미 정도의 치어를 생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후 양어장을 건립하고 섬진강 영어조합에 보관했던 수정란 1만개 중 생존한 8000여개의 수정란에서 발생된 치어를 4000미씩 2번에 걸쳐 나누어 함양으로 가지고 온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① 양어현황

철갑상어는 전 세계적으로 총 26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디노빌은 6개의 어종을 가지고 있다.

[표 3-3-31] 디노빌 영어조합법인의 양어현황

보유종		수량(미)	연간생산능력	매출계획	비고
철갑상어	러시안	15,000	· 철갑상어 : 1,000미 · 캐비아:1,500kg	· 2008년 -어육 : 20,000kg -캐비아:1,500kg	· 치어분양중 · 엑기스시험 생산 중
	이탈리안	200			
	베스터	30			
	스터렛	50			
	시베리안	3,000			
	LA	10,000			
총계		28,280	-	-	-

러시안의 경우는 러시아에서 가장 가치있는 종으로 오세트라(Ossetra)라고도 불리우는데 이란과 러시아에서는 이 종으로부터 세계 캐비아 생산의 1/4이상과 젤라틴을 생산한다. 스테렛의 경우는 주로 교배, 시식용으로 하는 종으로 단기간에 증식하는 특징이 있다.

[표 3-3-32] 디노빌 영어조합법인의 시설현황

시설명		수량(동)	면적(m <sup>2</sup> )	용도 및 참고사항
양어동	성어동1	1	804	1~2년생 치어 사육
	성어동2	1	250	3~4년생 육성어 사육
	성어동3	1	540	5년생 이상 육성어 사육
	부화/치어동	1	660	부화 및 치어 순치
용수순환여과동		2	460	친환경 용수 순환여과방식 채택 (미나리, 옥잠화 등 활용)
용수펌프실		5		지하수 암반 관정
엑기스 파이롯 생산동		1	160	
관리동		1	250	사무실, 회의실, 연구실

② 시설현황

이외에도 발전실, 냉동창고동, 관정, 저수지, 사료창고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 중 관정과 저수지는 군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그림 3-3-15] 디노빌 양어동

### (3) 사업도입 배경

어릴 때부터 농장경영이 꿈이었던 박철홍씨는 이탈리아 방문시 한 농가에서 할아버지가 잡은 90년 된 철갑상어에게 손자가 사료를 주는 모습이 인상 깊어 남았다고 한다. 그때 이런 곳이야 말로 가족이 힘들 때 돌아갈 수 있는 안식처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훗날 가족단위의 농가관리를 결심을 했다.

부산소재의 수산대학교(현 부경대학교) 수산생물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학부 재학시절 지도교수를 따라 양식학과 실험실에서 어류유전학을 공부하며 양식에 관심을 가졌다. 이후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생물학 석사 취득 및 박사과정에 휴학하고 귀국하여 2001년 3월부터 철갑상어 양식을 시작하였다. 대학원에서는 ‘종보존을 위한 생식세포의 보존방법’과 철갑상어를 일반양식농가에서 양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고 지도교수는 철갑상어 연구분야의 세계적 유명인사로 알려진 Frank Chapman 교수이다.

### (4) 사업방법 및 활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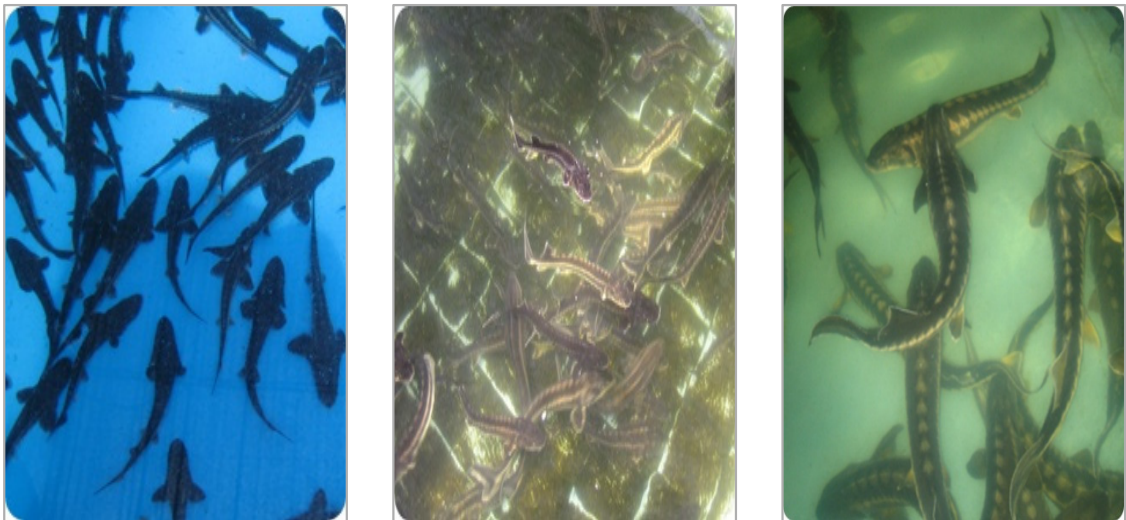
철갑상어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릴 정도로 백악기시대부터 현존하는 아주 오래된 종으로 북반구의 중위도 이북(유럽, 아시아, 북미 등)에 분포하며 26종이 알려지고 있으나 현재 거의 전종이 멸종위기 내지는 멸종위협종이다. 어족이 상어와 같이 때문에 상어라는 이름이 붙어있기는 하지만 사람을 공격하는 일반적인 상어와는 전혀 다른 연골 어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형·중형·대형종으로 나뉘며 소·중형의 경우



2m 내외로 성장하고 체중은 10~60kg이며, 대형종의 경우 6m까지 자라며 체중은 1톤을 넘는 경우도 있다. 수명은 소형종의 경우 35년 내외라고 알려져 있으며 중형종의 경우 75~120년, 대형종의 경우 170년 이상된 철갑상어도 보고된 적이 있어서 장수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성질이 매우 온순하고 이빨이 없으며 물밑에 서식하면서 뾰족하고 널따란 입 주위에 있는 4개의 수염으로, 조개와 갑각류, 작은 물고기 등을 감지하여 먹잇감으로 삼는다. 연어와 같이 대부분 회귀성으로 산란기에 담수로 돌아와 산란을 한 후 생을 마치나, 처음부터 담수에서 자라고 생을 마치는 종도 있다. 70%이상이 연골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늘은 꼬리 지느러미 부분에 약간의 편린만이 존재하고 딱딱한 등껍질이 5열로 등에 씌워져 있으며 한개의 등지느러미, 두개의 측면지느러미, 두개의 배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어류에 비해 알을 많이 가지며, 염장한 알은 세계 3대 미식으로 알려져 있는 캐비어(Caviar)이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철갑상어는 1998년부터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 국제거래협약』(CITES)에 제재를 받고 있는 종이다.



[그림 3-3-16] 철갑상어

#### ① 양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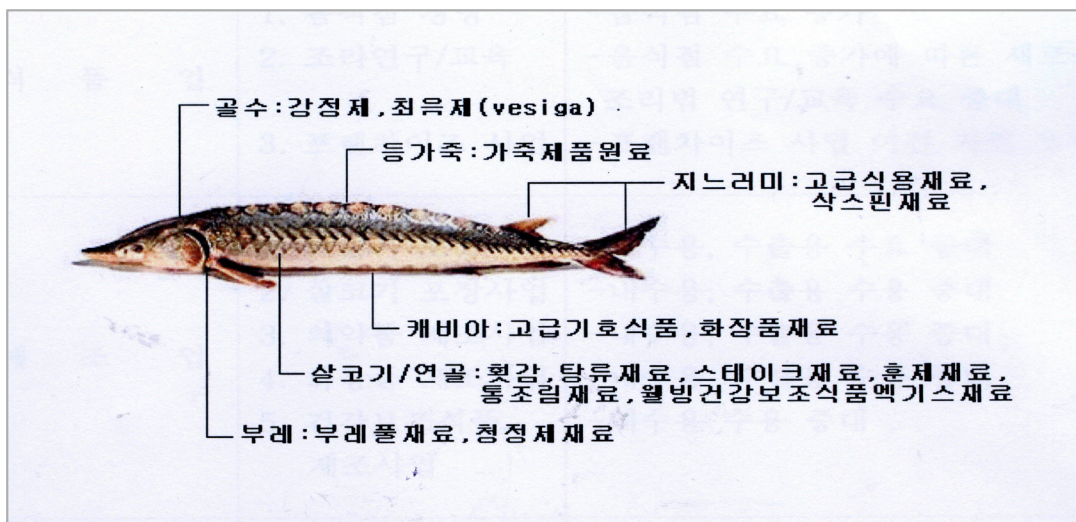
총 28,000만미 정도의 성어와 치어를 4개의 양어동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 3개의 성어동에서는 1~2년생, 3~4년생, 5년생 이상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고 부화 및 치어동이 1개동 존재한다. 그리고 미나리, 옥잠화 등을 활용한 친환경 용수순환여과방식을 채택한 용수순환 여과동이 1개동 있다. 철갑상어는 2~3급수, 18~26°에서 생육이 가



능할 정도로 비교적 양식이 용이하다. 그리고 디노빌의 한달 사료비는 250만원 정도로 다른 어종에 비해 1/3에 불과하다. 이는 철갑상어의 경우 적게 먹고 견디는 힘이 강해 자기 체중의 30%만 섭취하기 때문이다.

## ② 철갑상어의 활용도

고급기호 식품인 캐비어는 식용뿐 아니라 화장품의 원료가 되기도 하는데 Kg당 200만원(6~7년후 생산가능)선을 호가한다. 철갑상어의 암컷은 양식을 하고 수컷은 도태시켜 식용으로 사육하는데 살코기는 스테이크, 훈제, 횡감, 웰빙건강보조식품엑기스 재료로 사용되며 Kg당 5만원(30~36개월 후 생산가능) 정도로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그 외에도 등가죽은 가죽제품의 원료로 쓰이며 지느러미는 고급식용재료로 알려진 삭스핀의 재료가 되고 골수는 강정제, 최음제 등으로 사용될 정도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희귀 물고기이다.



[그림 3-3-17] 철갑상어의 부위별 용도

## (5) 목표 및 목표 달성 전략

디노빌 대표 박철홍씨의 목표는 단순 먹거리 생산이 아닌 전시, 관광, 문화와 연계한 수정란의 양어에서 부화, 육성, 판매, 체험까지 아우를 수 있는 철갑상어 테마파크 설립이다. 철갑상어는 거대어종으로 볼거리 제공이 가능하여 전시관 사업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양어장 부지내에 가재잡기 체험, 밤나무, 감나무, 더덕, 가죽나무, 표고버섯 등이 산재해 있어 체험학습장으로도 활용하고 나아가 함양군의 지역대표 브랜드를 꿈꾸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철갑상어를 보고, 배우고, 연구하고, 즐기기 위해 세계 각국 및 국내에서 찾아오는 함양 만들기 목표를 세우고 있다. 실현전략으로 첫째, 영어후계자 및 귀농자 소

득증대사업을 돕기 위한 철갑상어 아카데미를 설립할 계획이다. 아카데미에서는 영어후계자 및 귀농자에 대한 양식교육 및 치어를 분양할 예정이며 공무원, 군의회 의원, 군 관련단체, NGO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철갑상어 양식사업에 대한 홍보를 계획중이다. 그리고 철갑상어 양식기술과정, 철갑상어 산업화기술과정, 철갑상어 요리과정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둘째, 벤처기업 등록 추진을 위해 2008년 전반기에 특허 출원 및 벤처기업으로 등록할 준비 중이며 셋째, 철갑상어 산업기술연구소 및 연관기업을 설립하고 넷째, 철갑상어 건강보조식품 및 식품 가공공장을 설립하며 마지막으로 철갑상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 (6) 성공예측요인 및 파급효과

### ① 성공예측요인

먼저 사업주의 강한 사업의지이다. 미국에서 오직 철갑상어 양식만을 위해 귀국한 박철홍 대표의 철갑상어 사랑은 지극하다. 디노빌 마크로 직접 디자인한 티셔츠를 제작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및 홍보, 철갑상어 양식개발 활동에 지자체에서도 도로와 관정을 설치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으며 지역민들 또한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둘째, 수질·수온 관리기술, 수조·수배관 설계기술, 채란·부하기술, 어육·어란 고품질화를 위한 생명공학기술 등의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마케팅과 R&D를 위해 미국 ROKAVIAR, 일본 FUJIKIN INCORPORATED, 이태리 AZIENDA AGRICOLA V.I.P, 캐나다 SYINDEL INTERNATIONAL INC. 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셋째, 외식산업 발전에 따라 식품산업의 선진화, 대형화 필요성과 웰빙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식품산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캐비어의 수입은 2002년 5.5톤에서 2006년 33.9톤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디노빌은 2012년까지 연 4톤의 캐비어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캐비어 시장의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철갑상어는 산업화에 따른 오염, 서식지 감소와 세계 3대 진미인 캐비어 생산을 위한 과도한 남획으로 자원이 급감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 보호 받고 있는 어종으로 각국에서는 양식을 통한 종복원 및 양식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이 멸종위기종의 양식을 통한 종복원에 기여하는바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디노빌은 가족단위의 경영체로 보조 기술직 2명은 박철홍 대표의 동생들이다. 박철홍 대표가 꿈꿔왔던 가족농가 경영의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일시적인 눈



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을 추구하고 위기 극복의지가 강해 끈끈한 가족 문화와 우애를 유지하고 있다.

## ② 지역파급효과

디노빌이 생기면서 지역경제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디노빌 양식장으로 가는 도로가 만들어졌고 가로등도 생겼다. 노인들만 남아있던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양어장을 짓고 부산하게 움직이니 마을에 조금씩 활기가 넘쳤고 초기에 8명이던 마을 거주자가 4년이 지난 지금 35명으로 늘었다. 그리고 양어장 부지에 있는 각종 밤나무, 감나무, 더덕, 표고버섯 등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채취하여 팔기도 한다.

그 외에 향후 치어분양 농가에 대한 협동화사업 전개로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와인과 철갑상어 요리처럼 음식궁합 연구 상품화가 이루어진다면 기존 향토산업과의 연계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가 거양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인구증가와 지역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내외 전문가 교류로 지역 지명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 (7) 향후 과제

처음 1Kg 정도의 철갑상어를 들여왔을 때는 주위에서 의구심을 가졌으나 고기가 점차 자랄수록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는 철갑상어의 특성상 투자에서 매출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어육생산은 4~7Kg 성장하는데 30~36개월이 소요되고 캐비어 생산은 6~8년이 걸린다. 그렇기에 디노빌의 경우는 이제 막 생산 전 단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캐비어 가공시설, 유통, 홍보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갑상어와 같이 고부가 가치가 있는 산업의 경우 대기업이 진출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지역 브랜드화 산업으로 유치시키기는 힘들어 질 것이다. 그 외에도 태풍, 우박, 폭설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대책 부족과 아직 함양군을 오지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이 다수 존재한다.

디노빌이 안고 있는 자금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중복원이라는 가치에서 국가적으로, 함양이라는 지역 브랜드화를 위한 아이템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같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국가적으로 양식장을 지원하여 종의 번식기술과 양식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고부가가치를 발전시키고 지자체와 민관이 삼위일체가 되어 경주한다면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캐비어라는 고부가가치의 창출 및 관련 전문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다.

### 3) 미라자율관리공동체

#### (1) 개요

전남 완도군 노화읍 미라리에 위치해 있으며, 완도읍에서 20km 떨어진 노화도에 위치해 있다. 현재 노화읍 미라리에는 100여개 어가가 어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중 76개 어가에서 전복을 양식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최대의 전복양식 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완도 내 최고의 부촌으로 알려져 있다.

#### (2) 현황

##### ① 사업도입 배경

미라리 어촌계는 1997년에 이미 ‘마을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양식 기술을 체계화 했으며, 2000년 전복 도난 등에 따라 공동자율방법대를 구성하여 몇 가지 규칙을 만들었고, 어촌계 내 공평한 어장분배를 위해 기존에 있던 규칙 등을 발전시켜 마을자치법 등 자율운영체계를 조직하였다.

2002년에는 전복양식 자율관리 공동체를 구성하여 기존에 있던 어촌계, 청년회, 후계자회를 통폐합하여 조직을 일원화 시켰고, 2003년에는 3억원의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어장정리사업을 통해 공동체 개인별 어장분배 작업을 완료하였다.

2003년에 자율관리공동체로 선정되어 2억원을 받아서 마을어장 내 전복 중간패 10만미를 살포하였으며, 2005년에는 자율관리공동체로 추가 선정되어 받은 3억원으로 물양장, 직판장, 크레인, 선별기 등 전복 공동판매를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었다.

[표 3-3-33] 미라자율관리공동체 사업추진 내용

연 도	내 용
2002.	· 전복양식 자율관리 공동체 구성(91어가 참여) - 어촌계, 청년회, 후계자회를 통폐합하고 조직을 일원화
2003.	· 자율관리 공동체 주관으로 3억원 자체기금 조성 - 어장정리사업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 개인별 어장분배 작업완료
2003.	· 자율관리공동체 지원금으로 2억원 받음 - 마을어장내 전복 중간패 10만미 살포
2005.	· 자율관리공동체로 선정되어 추가 지원금 3억원 받음 - 전복 공동판매 기반시설 완료(물양장, 직판장, 크레인, 선별기)
2005.	· 전국 최초로 공동생산 및 공동판매 실시 - 전복 직판장 운영 및 규격 상품 출하



## ② 공동체 현황

미라어촌계의 전복 어가수는 '92년에 10가구, '98년에 20가구, '02년에 60가구, '06년에 76가구로 늘어났다. 이는 전복양식의 활기에 따라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 또는 자식들이 돌아와 전복양식을 시작한 결과이다. 현재의 전복양식 공동체는 76가구로 년간 300~400톤의 전복을 생산하여 이들 어가들의 평균 소득이 1억원~1억 5천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판매장에는 간사 1인과 경리 1인이 고용되어 전체 판매업무를 보고 있다.

[표 3-3-34] 미라자율관리공동체 현황

구 분	어가(호)	어업인구(명)	마을어장(ha)
어촌계 현황	100(전복76)	256	23

## (3) 사업 및 성공요인 분석

### ① 사업분석

미라자율관리공동체는 공동체 개별어가가 생산한 전복을 공동 판매하여 공동의 수익을 극대화 시키고 있는 사례이다.

생산에 있어서는 해조류 양식장에서 전복양식의 확대와 난립으로 어장환경이 악화되고 해난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어 16ha의 양식장에 대해 시설물 재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어장 간 100m 거리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시설량을 과다하게 시설할 경우 1차 경고 이후에도 시정이 없으면 강제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장환경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출하 시에는 협의 하에 순번을 정해서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어가가 먼저 출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갈등을 최소화 시키고 있다. 그리고 출하자 판매량의 0.2%를 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전복양식 어촌계로서는 유일하게 직판장을 운영하면서 노화수협의 직원이 365일 파견을 나와서 출하 사항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0.1%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동판매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사이즈 당 단가 등 표준화된 품질을 출하하는데 도움을 주어 상품판매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400톤, 380톤의 전복을 판매하였으며, 판매금액은 150억 원, 114억 원이었다. 판매형태는 중간판매상 50%, 택배 40%, 직판 10%의 비중으로 타 생산업자들과 달리 택배 판매가 40%로 매우 큰 특징을 갖고 있다.

## ② 성공요인

미라어촌계의 성공요인은 전복해상양식을 성공하기 위한 기술개발 집념이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전복 해상가두리 양식이 국내 처음으로 성공하게 되었다. 특히, 전복양식 시설물 밀식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개별판매에 따른 유통업체간의 농간으로 가격이 불안정하게 되었을 때 자율관리공동체를 구성하여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생산관리 및 유통구조를 개선한 것이 향후 공동판매가 가능하게 된 출발점이 되었다.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진행한 어장정리사업은 생산의 효율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전복의 폐사를 최소화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판매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화수협과 협의하여 수협직원이 매일 실적을 기록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공동판매 시스템을 견고히 하고, 유통업체에 대한 일정부분의 협상력을 가지고 공동체 출하량을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어 제값 받기가 일정부분 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는 고가의 전복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4인 1조로 어장감시조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치라이트 1대와 감시초소 5평을 확보하여 이용하고 있어 도난 사고가 현재까지는 없었다.

### (4) 효과와 향후 과제

미라자율관리공동체의 노력으로 인해 어장환경이 개선(불법시설물 금절)되어 생산성이 증대되었으며 공동출하방식으로의 변경으로 가격안정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어장감시조 운영에 따른 도난방지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어가 소득을 연간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타 전복생산자들과 달리 택배 판매가 40%에 달하는데 아직도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체계적인 홍보전략 및 판매전략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러한 약점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35] 미라자울관리공동체 성공요인

구 분	성 공 요 인
생 산 여 건	- 어장정리사업으로 폐사의 발생이 거의 없으며, 바둑판식으로 생산의 효율성이 높음
판매 및 마케팅	- 공동판매 방식으로 유통업자에게 대응하는 힘이 큼 - 수협직원이 매일 위판량을 체크하여 공동판매의 불신을 없애고, 통계처리가 원활 - 각종 홍보효과로 택배에 의한 판매가 40%를 차지하고 있음 - 경영상태가 열악한 회원의 상품을 우선 판매하여 공동판매를 원활하게 함
인 력	- 간사와 여직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사후관리	- 공동수익금의 재투자
조직	- 자울관리공동체 위원장과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협동하며, 강력한 어촌계법이 존재하여 질서가 있음
핵심성공요인	- 공동기금 마련을 통한 어장정리사업 및 공동판매 방식 채택

#### (5) 비즈니스 모델 제시

미라어촌계의 차별화된 전략은 수협직원을 참여시킨 공동판매 전략과 자체 어장정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4) 물치 어촌(강원도 양양 : 관광어촌)

#### (1) 개요

물치 어촌은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어촌 가운데 하나이다. 이곳은 영동고속도로 현남 IC를 빠져나와 속초방면 7번 국도를 따라 접근하기 때문에 접근성과 경관성이 뛰어난 곳이기도 하다. 물치리는 설악산 진입구에 위치하여 가을 단풍철 설악산 여행이나 여름 피서에 나선 많은 관광객들이 물치항을 찾고 있다.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조망하며 동해바다 청정해역에서 갯 잡아 올린 싱싱한 활어회를 저가로 맛볼 수 있는 곳이 물치항이기 때문이다. 특히, 물치항 주변에는 민박 및 각종 숙박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연인, 가족단위의 수도권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물치 어촌계는 36명의 어촌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어선어업으로 가자미, 넙치, 도루묵 등을 어획하여 위판하거나 횃집에서 직접 판매하여 가구당 어가소득이 3,000만 원을 상회한다.

강원도 양양군의 물치 어촌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수익시설 지원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이곳이 1998년 해양수산부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물치항 주변의 난전에서 어업인들이 회를 판매하다 보니 생선 잔여물과 냄새는 비위생적이었으며 동시에 무질서한 상행위로 복잡한 곳이었다. 하지만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해 36개의 점포와 기계실, 창고, 오수정화조 등 기반시설을 갖춘 활어회센터를 지원받아 조성하면서 물치 어촌은 어업외소득 증가, 계원들간의 협동심과 조직력 강화 등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물치 어촌의 모든 어촌계원들에게 36개의 점포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물치항 주변 환경을 획기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되면서 어업소득 뿐만 아니라 어업외소득도 이들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었다. 따라서, 물치 어촌이 정부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지역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어촌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그림 3-3-18] 물치 어촌계 전경

## (2) 사업 및 성공요인 분석

### ① 어촌종합개발사업

물치 어촌의 성공기반은 단연 어촌종합개발사업이었다. 총 사업비 11.7억 원을 투입하



여 36개의 횃집을 조성하였고, 횃집운영은 각 어촌계원들이 무상으로 임대받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였다. 횃집센터는 3층으로 건립되었으며, 1층에는 기계실, 창고, 오수정화조 등 기반시설이 조성되었고, 2층과 3층에는 각각 18개 횃집이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다.

[표 3-3-36] 어촌종합개발사업 개요

지원 년도	사업 기간	사업비(백만원)					사업집행주체/ 사업자	주요사업내용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담		
'98	'99. 1 ~ '99. 7	1,172	440	396	50	286	양양군/ 물치어촌계	1층 : 기계실, 창고, 오수정화조 2층 : 일반음식점 3층 : 일반음식점

물치 어촌계는 자체적으로 「활어장내 질서확립법 규칙」12개 조항을 만들어 위반시 영업정지를 시켜 규칙을 자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36개의 점포가 2층, 3층으로 나뉘어져 있어 3층의 매출실적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2층과 3층의 위치를 바꾸는 등 합리적인 운영방식을 통해 어촌계원간의 협동심과 단결력을 강화하고 있다. 어촌계원간 협동심과 단결력을 통해 점포당 평균 매출 1억 원 이상의 어업외소득을 창출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어촌계 발전기금을 마련하여 시설 재투자를 통해 추가 임대수입, 어촌계 회관 등을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등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 ② 성공요인 분석

- 최고의 입지여건(접근성 및 바다조망 우수, 위치 식별성 용이)

물치 어촌은 다양한 성공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입지여건에 위치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도권 관광객들은 영동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강릉-양양-속초로 이어지는 7번 국도를 따라 이동하게 되는데 물치 어촌은 7번국도 변에 바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탁 트인 조망과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활어회센터를 중심으로 전방과 후방에는 물치항과 넓은 유료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내에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다.

- 직접 잡은 수산물을 저렴하게 판매

각 점포별로 어선어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산의 경우 직접 잡은 수산물을 관광객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 물론 물치 어촌계 활어 회센터에서 판매되

고 있는 수산물은 수협의 위판가격보다 높게 관광객들에게 제공되지만, 관광객 입장에서 신선한 활어를 일반 횡집보다 훨씬 저렴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어항이나 근처 바다경관이 좋은 곳에서 회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에게는 소포장하여 판매함으로써 그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고객중심의 사고와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

한편, 물치 어촌계는 고객이 활어회센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받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협소한 공간에 많은 점포가 과열경쟁을 하다보면 호객행위, 손님과의 언쟁, 음주로 인한 싸움, 쓰레기처리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물치 어촌계는 활어장내 질서유지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계원 부녀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활어장내 질서 확립법 규칙」을 만들어 모두에게 서명을 받고 이를 위반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수단도 마련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들은 어업인들도 도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보이고 있었다.

- **재투자자를 통한 어촌 공동체 발전 극대화**

물치 어촌은 활어회센터는 어촌계원별로 1개 점포씩 운영하고 있는데 남성들은 주로 어선어업을 통해 어업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어촌계원들의 부녀자들은 횡집 운영을 통해 어업외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어촌계내 발전기금(재산권) 마련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어촌계 구관장 임대소득 1.9억 원(연간), 매운탕 2개소 임대소득 3.6억 (4년), 마을회관, 쓰레기 보관장 자체 건립 등 재투자자를 통해 더 많은 소득과 지역내 필요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발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

- **합리적인 운영방식**

활어회 센터 내에는 36개의 점포가 2층, 3층으로 나뉘어져 있어 3층의 매출실적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3층에 입점하는 것을 기피한다. 따라서 매년 2층과 3층의 위치를 바꾸는 등 합리적인 운영방식을 통해 내부적인 갈등요인을 충분히 해소하고 있다.

-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협동심**

물치 어촌은 활어회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체계화된 별도의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촌계 조직을 그대로 잘 활용하고 있다. 어촌계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리더로써



의 방향에 대해 어촌계원과 부녀자들은 신뢰와 협력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곳이 처음부터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협력이 잘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어촌의 리더가 꾸준히 헌신하고 노력하면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어업외소득 효과와 함께 합리적이고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신뢰감과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라는 결속력 역시 이 어촌의 중요한 성공요인이기도 하다. 이상 물치 어촌의 성공요인을 간략하게 정리하며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3-37] 물치 어촌의 성공요인

구 분	성 공 요 인
입지여건	- 접근성, 경관성, 관광여건 등 우수한 입지여건
판매 및 마케팅	- 직접 잡은 활어를 회센터에서 직접 판매 - 인근 해역에서 생산되는 활어를 위판하지 아니하고 위판하는 가격보다 높게 판매함으로써 높은 수익성 확보 - 횃집과 활어매운탕 전문점을 분리하여 분업화(별도의 수익구조 창출 - 임대사업) - 비어촌계원 운영 식당과의 마찰 최소화 : 회만 판매 - 활어장내 질서 확립법 규칙을 만들어 질서유지 및 고객서비스 우선 - 호객행위 등 규칙 위반시 영업정지
인 력	- 어촌계원 모두에게 기회 제공 - 부부 중심의 운영으로 인건비 최소화(남자 - 어선어업, 부녀자 - 횃집 운영) - 호당 파출부는 1인만 쓸 수 있으며, 주인과 파출부에 한해서 회판매 및 할복을 할 수 있음
사후관리	- 재투자를 통한 어촌 공동체 발전 극대화
조직	-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협동심 - 자부담 비율(24.4%)이 높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핵심성공요인	- 직접 잡은 활어를 회센터에서 직접 판매 - 국가 보조사업을 통해 관광기반 마련 - 경쟁력 있는 입지여건

### (3) 효과 및 향후과제

#### ① 효 과

물치 어촌의 활어회센터는 크게 4개 정도로 그 효과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직접 어획한 수산물을 직접 판매함으로써 어업인의 수익이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어업인의 수익성 향상도 나타났지만 관광객들 입장에서든 저렴한 수산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관광객 증가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둘째, 수산물의 위생상태가 개선되면서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어촌여성 유희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어촌지역 활성화, 마지막으로 어촌계원간 결속력 강화를 들 수 있다.

## ② 향후과제

물치 어촌은 우수한 입지여건,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협력과 자발적 노력으로 활어회센터를 통해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도 산재해 있다. 99년부터 활어회센타를 운영·관리해 오면서 전문적인 컨설팅과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물론 자구적인 노력과 규칙을 만들어 잘 해오고 있지만 보다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경영마인드를 배운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활어회센타를 조성한지 8~9년 정도가 되면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근본적인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이 필요하다. 특히 2층과 3층의 접근성과 실내공간이 협소한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 5) 정자어촌계

### (1) 개요

정자항이 속해 있는 강동동에는 8개 어촌계가 있으며, 정자어촌계가 인구수 및 어촌계원수, 선박척수에서 가장 큰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다. 수산업에 대한 직접 세력권은 행정구역 및 인근 항과의 거리 등을 감안할 때 정자동 일대 및 인근해역이 포함되며, 간접 세력권으로는 북구 해안 전체가 포함된다.

현재 어촌계원수는 150명으로 활어직판장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90명이며, 활어직판장에서는 가자미, 대게 등 정자 어업인이 직접 어획한 활어와 인근 어항에서 어획한 활어를 판매하고 있다.

정자어촌계는 1992년 어촌계 자비로 신축 물량장에 텐트형 건물의 활어직판장을 신축하여 지역 어민 32명이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1997년 어촌종합개발사업시에 어촌계 자비를 포함하여 3억원을 투자하여 활어직판장을 신축하였다. 2007년 현재 35개 코너에서 85명의 계원이 활어직판장을 운영 중이며, 제1회 강동수산물 축제를 개최하여 큰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어촌계라고 할 수 있다.



[표 3-3-38] 정자어촌계 현황

대표자 성명	이상길 어촌계장	주소 및 연락처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649 011-850-9201
경영형태	어촌계, 영어조합, 기타 : 어촌계	참여자수	어촌계원수 : 현재 150명 (활어직판장 참여 : 90여명)
주력상품	활어직판장 (가자미, 대게 등 정자어민이 어획한 활어 및 인근어항에서 어획한 활어)	어업외소득/ 관광객수 (2006년 기준)	활어직판장 순수익 27억원/ 년간 4백만명 추정 (2006년 기준)
연혁	1992년 : 어촌계 자비 0.38억원을 투입하여 신축 물량장에 텐트형 건물(200평)의 활어 직판장을 신축하여 지역 어민 32명(비계원 15명 포함) 이 운영하기 시작(비계원 15명도 추후에 전원 어촌계에 가입) 1997년 : 어촌종합개발사업비(2.7억원)과 어촌계 자비(0.3억원)를 투입하여 철골조건물(912m <sup>2</sup> )을 신축하여 36개 코너에 72명의 어촌계원이 활어직판장을 운영, 매 2년마다 재계약하여 입주자 엄선해 오고 있음 2007년 : 현재 35개 코너 (85계원) 운영중이며 제1회 강동수산물 축제 개최		

## (2) 사업 및 성공요인

### ① 활어판매장 설립 및 홍보

초기(1992~1996)에 정자지역의 관광관련 서비스업 중 현재 가장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은 활어위판장과 초장집이다. 그러나 초장집은 건축비, 시설비, 임대료, 운영비, 임금 등 막대한 금액의 개별경비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자금투자를 하지 않은 활어직판장에 비한다면, 불리한 위치에 있다. 한편 노점상은 매우 불안정한 직종이며, 횡집은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계속 쇠퇴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대응양식 중 가장 독특하며 지역 경제에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은 어촌계 회원 원주민들의 활어직판장 설치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 번째 특징은, 조직적인 대응이라는 점이다. 이는 어촌계의 자금을 이용하여 어촌계 회원들이 공동으로 설치하였고,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두 번째 특징은, 매우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점이다. 단순히 이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서비스업이라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이 시설물을 홍보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특징은 매우 배타적인 대응이라는 점이다. 이는 설립 시기부터 이주민은 물론이고, 어촌계 비회원 원주민까지 배제한 채, 종사 자격을 어촌계 회원들로 제한하였기 때문이다.<sup>11)</sup>

11) 백선희의 석사학위 논문(pp. 88~89와 pp. 103~107)을 인용

또한 위판장이 처음부터 성공적인 것은 아니어서, 위판장 설치 후 약 1년간은 수지타산이 전혀 맞질 않았다. 소규모로 행하던 영업을 대규모 시설로 옮긴데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어촌계에서는 관광객을 끌어 들여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장소마케팅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 홍보수단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는 홍보물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홍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인맥을 활용한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홍보에 가깝다. 즉, 현대중공업 및 현대자동차의 사내방송을 통해, 또는 지방방송(대구)의 기사 등을 통해 활어직판장을 홍보를 해주도록 부탁한 것이다. 자본이 없으므로 현대나 방송국 측에 돈을 주지는 못했지만, 주요인물 몇몇을 불러 활어회를 무작정 대접한 것이 그의 방법이었다. 그 후 이곳이 현대 직원들의 회식 장소로 이용이 되기도 하고, 지방방송의 촬영 배경지가 되기도 하면서, 북정자리 활어직판장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게 되었다.

활어직판장을 설립한 후, 어촌계장은 위판장의 관리를 맡게 되면서 개별적으로 영업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윤을 둘러싼 분쟁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며, 관리자는 이러한 분쟁을 중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역의 리더가 장소마케팅을 주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사례를 한국에서는 아직 찾기가 어렵다. 그 이유로는 지방자치시대의 등장과 함께 지역의 독특한 정체성 확보를 통해 지역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공공기관(시·군·구청)에서 지역마케팅을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의 리더가 중심이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새마을 운동’이 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의 리더(새마을지도자)와 비교하였을 때, 연구지역의 리더는 자생적으로 생겨났으며, 지역의 특성과 사회변화를 잘 파악하여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끌었다는 차이를 보인다.

활어직판장은 북정자리 지역에서는 어민들이 관광관련 서비스업으로 전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면서 소득의 원천을 이루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이 주도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장소마케팅 전략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미 다른 어촌들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자신들의 지역에 적용시키기 위해 북정자리 지역을 견학오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장소마케팅의 유형이 다른 지역으로까지 파급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② 운영방법

활어직판장운영 원칙을 보면, 36개 코너를 매 2년마다 입주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데 입주했던 2년 동안 물의를 일으킨 계원은 재계약시 입주자격이 상실된다. 재계약시 코너의



위치도 원칙적으로 다시 정한다. 활어직판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어촌계원의 직계존비속에 한하며, 자녀의 경우도 1명에 한정된다. 영업장 근무에 이러한 자격제한을 두는 이유는 어촌계원 직접운영하지 않고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과당 경쟁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능력껏 영업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초기에는 1개 코너에 어촌계원 2명이 동업하도록 하였으나, 최근에는 어촌계원 3명까지 동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운영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활어직판장의 코너 임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3-39] 활어직판장 임대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코너수	코너당 계원수	참여 계원수	계원당 월임대료	직판장전체 월임대료	코너당 월평균 임대료	코너당 년평균 임대료
3개월 공동운영	20	3	60	120,000	7,200,000	360,000	4,320,000
2개월 공동운영	10	2	20	350,000	7,000,000	700,000	8,400,000
1개월 공동운영	5	1	5	1,150,000	5,750,000	1,150,000	13,800,000
월간 합계	35		85	234,706	19,950,000	570,000	6,840,000
년간 합계	35		85	2,816,470	239,400,000	6,840,000	

총 36개 코너중 1개 코너는 현재 휴업중

활어직판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은 어촌계원 중에 1인이 선정되어 보안관 역할을 하는데, 현 어촌계장이 15년간 보안관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철저한 고객위주의 마케팅을 대 전제로 하고 있는 바 그 중 중요한 몇 가지 전략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이 주문한 중량을 회를 뜨는 과정에서 절대 속이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동일 품질 동일 중량의 활어는 어느 코너에 가든 가격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서 처음 오는 고객이 어느 코너에서 구입하든 가격 차이를 느끼지 못하도록 했다. 셋째, 매장에 활어 입고 시에도 입고 가격 및 입고 수량도 균일하게 관리하도록 하였다.

### ③ 소득현황

어촌계원의 어업외 소득인 활어직판장 운용소득을 분석하면 [표 3-3-40]와 같다. 코너 운영에 있어 어촌계원 3인, 2인, 1인 단독 운영의 경우가 있는 바, 3개월 공동운영의 경우를 전제로 월간 발생하는 비용을 보면, 월간임대료 360,000원, 얼음대 240,000원(=12,000원 \* 20일), 산소공급비용 300,000원(=10,000원 \* 30일), 도시락, 젓가락 등의 소모품비 336,000원(=12,000원 \* 28일)을 합하면 월간 1,236,000원의 영업비용 지출이 있다. 전기세



및 수도세도 상당액에 이르나 이들 비용은 어촌계에서 부담하고 있다. 35개 코너, 85명의 어촌계원이 산출하는 순이익이 월간 2.27억원으로 연간 27.24억원에 이른다. 이를 코너당 평균으로 환산해보면 월간순이익 6,486,000원(연간 77,829,000원)이며, 어촌계원 1가구당 월간 순이익 2,671,000원(연간 32,047,000원)에 이른다.

[표 3-3-40] 어촌계원의 활어직판장 운용 소득

(단위 : 천원)

구분	운영 등급	코너수	코너당 계원수	참여 계원수	코너당 월간 순이익	직판장전체 월간 순이익	코너당 월평균	계원당 월평균
		①	②	③=①×②	④	⑤=①×④	⑥=⑤/①	⑦=⑤/③
3개월 공동운영	상	6	3	18	9,000	54,000		3,000
	중	10	3	30	7,500	75,000		2,500
	하	4	3	12	6,000	24,000		2,000
	소계	20	3	60		153,000	7,650	2,550
2개월 공동운영	상	5	2	10	7,000	35,000		3,500
	중	3	2	6	6,000	18,000		3,000
	하	2	2	4	5,000	10,000		2,500
	소계	10	2	20		63,000	6,300	3,150
1개월 공동운영	상	1	1	1	3,000	3,000		3,000
	하	4	1	4	2,000	8,000		2,000
	소계	5	1	5		11,000	2,200	2,200
월간 합계		35		85		227,000	6,486	2,671
연간 합계		35		85		2,724,000	77,829	32,047

그리고 정자어촌계는 35개 코너의 평준화된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직판장에는 어촌계원의 직계존비속(비속의의 경우 1자녀)만 근무하게 함으로써 피용근무자의 고용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과도한 호객행위나 출혈경쟁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가족이 외지에 나가 있거나 연로한 어촌계원의 경우 직판장 참여가 불가능하고 직판장 주변에서 초장과 야채 등을 판매하게 하여 일정부분 소득이 창출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활어직판장에 참여하는 어촌계원 중 상당수가 초장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나, 초장집은 어촌계원이 직접운영하기 보다는 주로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 (4) 성공요인 및 향후 과제

##### ① 성공요인

성공요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촌 중에서도 특히 대도시 주변의 어촌지역이 관광지화하는 현상의 원인은, 크게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의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먼저 대도시 주변 어촌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외적 요인으로는, 인접 도시의 주민의 소비 양식 변화를 들 수 있다.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이 집약되어 나타나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실질임금의 증가, 근로시간의 단축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도시가구의 소득수준과 구매력, 그리고 여가활동의 증대를 낳았다. 이러한 현상이 도로의 정비 및 자가용 보급과 결합하여 어촌으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도시민의 여가공간이 도시 주변 어촌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 이러한 외적 요인은 대도시 주변 어촌의 내적 요인과 결합하여 어촌의 관광지화를 낳게 된다. 대도시 주변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내적 요인이라 하면 어촌의 어업환경 악화와 그에 따른 연근해 어업의 쇠퇴를 들 수 있다. 그에 따라 어민들은 새로운 생업기반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그중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가 관광관련 서비스업의 수용인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어촌의 경우는 이러한 어촌 관광지화 경향을 증폭시키고, 거기에 더하여 특징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특수한 내적요인을 가지고 있다. 즉, 어업소득 감소에 의한 주민의 전업 고려에 더하여, 높은 접근성과 사업부지 미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장소적 특성, 그리고 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리더와 조직의 존재 등이 그것이다.

셋째, 특히 리더의 존재는, 외적으로는 대도시민이 높은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깨끗한 자연환경을 선호한다는 점을, 그리고 내적으로는 연구지역이 이들 대도시민을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수용할만한 장소적 잇점을 가지고 있음을 가장 먼저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 활어직판장을 제안·설치하고, 장소마케팅의 일환으로 홍보를 행하여, 여가활동이 증대된 도시민을 끌어들이므로써, 관광과 관련된 3차 산업으로의 지역변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기존의 어촌계 조직은 리더와 함께, 이 변화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여 지역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이는 활어직판장 설치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관광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된 주민이 전가구의 50%에 이르는 결과를 낳았다. 넷째, 이처럼 어촌의 지역

변화가 특정 집단에 의해 주도되면서, 주민들은 각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대응양식을 나타내며, 이는 주민의 직업 변화과정으로 추적할 수 있다. 우선 원주민의 경우는, 관광관련 서비스업 집단과 관광비관련 직업 집단으로 나뉘어지는데, 후자의 경우 주로 어촌의 관광지화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전자의 경우 매우 큰 영향을 받은 집단으로, 그 직업에 따라 활어직판장 집단, 활선어요식업 집단, 노점 및 파생서비스업 집단 등으로 나뉘어진다. 이들 중 활어직판장 집단이 가장 선도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었으며, 그 이유는 앞서 밝힌 바와 같다. 한편, 이주민 집단은 관광관련 서비스업 종사가 탁월한 집단으로, 특히 횡집 경영이 가장 우세하다. 그런데, 이주민 집단은 특히 활어직판장 집단과 경쟁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집단적인 반감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 ② 파급효과

어항재개발 투자가 완료되는 2008년에는 인근 판지어촌계에도 구이타운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정자어촌계의 활어직판장과 보완관계를 유지하여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활어직판장 주변 상권 개발로 고용증대 효과와 지역주민 소득증대 효과가 기대될 뿐 아니라 활어직판장의 활성화는 강동수산물 축제로 배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결국 정자지역은 물론 강동권 전체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 ③ 향후과제

정자어촌계의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 향후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이 있다. 첫째는 활어자원의 감소문제이다. 동해안 어자원의 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자원보호형 어업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는 활어직판장 건물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의 개발건의가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셋째로 정자삼거리 부근 농지를 확보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근 감포항이 개발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경주시 소재 감포항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총 320억원이 투입되어 방파제, 호안시설, 공원 등 어항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관광어항으로 개발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감포항 개발이 마무리되면 경북 동해안 어업전진기지 역할뿐만 아니라 관광항구의 모습도 갖추게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감포항 개발이 마무리되면 기존의 활어회 중심의 어촌관광상품의 활성화 될 것이므로 정자항의 활어회 관련 관광상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6) 경기 안산 선감 어촌체험마을 사례

### (1) 위치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어촌관광이라는 마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한 선감마을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수도권을 배후로 하는 주요 관광지인 대부도 내에 있는 마을로 포도로도 유명한 반농반어의 전형적인 경기권의 어촌마을이다.

마을로 찾아가기 위해서는 영동고속도로 월곶IC를 나와 지방도 84호선을 따라 오이도와 시화방조제를 거쳐 대부도로 들어가는 길과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를 나와 306번 지방도를 따라 대부도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선감마을은 수도권에서 2시간 내에 찾아갈 수 있는 우수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강원권에서도 4시간 내에 찾을 수 있다.

선감마을이 있는 대부도는 시화방조제로 연결이 되어 육지가 된 섬이지만 아직도 섬이 가진 낭만과 서정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주: 갯벌체험(上 왼쪽), 낚시체험(上 오른쪽), 갯벌트랙터(下 왼쪽), 안산어촌민속전시관 전경임(河 오른쪽)

[그림 3-3-19] 선감어촌체험마을 전경

선감마을은 높은 산위에 있는 정결한 바위에서 신선이 내려와 맑은 물로 목욕을 하였다고 하여 '선감도'라 불린 곳으로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크고 완만한 간석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마을 주변에는 어촌민속전시관, 경기도 영어마을, 경기도 청소년수련관, 탄도항, 누에섬 전망대 등 연계 관광자원도 풍부하다.

## (2) 현황

### ① 사업도입 배경

선감마을은 원래 전형적인 반농반어의 부촌이었다. 예전에는 염전이 유명했으며 천혜의 갯벌에서는 많은 수산물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1989년 시화방조제가 건설됨에 따라 어장이 축소되면서 위기에 봉착한다. 한정면허로 어업은 지속하였지만 어장이 줄어들며 따라 어업소득의 감소가 뚜렷해진다. 1990년대 이후에는 수입수산물이 급증하면서 마을의 주 생산물인 바지락의 판로를 찾는 데 애로를 겪게 된다. 또 국민들의 소비패턴의 변화로 김장용 굴 수요가 줄어들면서 어업인들은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때 어업인 수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어업세력도 약해졌다.

그런데 시화방조제 건설 이후 대부도는 수도권의 주요 관광지로 각광을 받게 되었고 특히 마을 주변에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경기도립직업훈련원, 경기도 영어마을 등이 건립되면서 마을로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늘어났다. 또 어촌민속전시관, 누에섬 전망대가 건립되는 호재도 있었다.

이에 주민들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소득 증대를 꾀할 방법을 찾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던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유치하게 되었다.

### ② 어촌계 및 마을 현황

예전엔 염전이 유명하였으나 지금은 바지락·굴 양식과 낚지잡이, 연안통발(꽃게) 어업 등을 행하고 있으며 낚시 유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도 있다.

마을 어업권은 시화방조제 건설 시 보상을 받고 한정면허로 바지락 양식 4건 78ha, 굴 1건 48ha, 총 5건 126ha가 있으며 개인어업권은 연안꽃게 통발 3건, 낚시유어선 4건이 있으며 어선은 7척이 있다.

마을 가구수는 총 118호이며 이 중 어가가 95호, 비어가가 23호이다. 어촌계원수는 178명으로 남자 87명, 여자 91명이다. 마을 내 주요 조직은 어촌계 이외 청년회(25명), 부녀회(54명), 노인회(70명) 등이 있다.



### ③ 어가 소득 및 소득원 현황

선감마을의 경우 일부 어업인을 제외하고는 어업소득의 비중이 낮고 농업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농사 규모에 따라 소득 편차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업 소득을 살펴보면 마을 공동 양식어업인 패류양식(굴,바지락)의 경우, 고령화 등으로 공동작업은 하지 않고 어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만 어장을 개방하여 현재 40호가 참여하고 있었다. 년 평균 수입은 7백만원으로 낮은 편이었다. 어선어업의 경우 3호가 운영하고 있는데 년 평균 4천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에 비해 농업소득은 포도 농사가 대부분으로 년 평균 3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어업외 소득은 민박이 5호 27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년 평균 1천1백만원 정도의 수입을 보이고 있으며 유어선(4호)은 6천만원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대상 사업인 어촌체험마을의 운영 수입은 지난해 가구당 1백3십만원으로 집계되었으나 모두 재투자되고 있었다.

## (3) 사업 및 성공요인 분석

### ① 사업분석

선감마을이 채택한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증대 및 어촌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인에게 어촌과의 교류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감마을이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된 것은 2001년이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926백만 원(국비 2억5천만 원, 지방비 6억7천6백만 원)이 투입되어 시설조성을 하였다. 2005년부터 체험객을 받아들이며 본격적인 어촌관광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운영지원사업으로 2006년부터 농림부의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이, 2007년에는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을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이 각각 진행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어촌계 공동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참여조직은 청년회, 부녀회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노인회가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표 3-3-41] 선감 어촌체험마을 주요 투자 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주요 사업내용	
		보조		자부담	민간 투자	합계		
		국비	지방비					
선감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2002 ~ 2004	250	676	-		9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안내소</li> <li>· 갯벌체험장 진입로</li> <li>· 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고라2개, 원두막3개</li> </ul> </li> <li>· 주차시설 400평</li> <li>· 종합안내판 5개</li> </ul>	
기타 시설 투자 실적	주변조경정비	2004		156			156	· 주변조경
	마을정비	2005	-	90	-		90	· 주차장, 파고라시설
	자율관리어업지원	2007	72				72	· 갯벌트랙터 4
	체험마을지원			3.2			3.2	· 미니풀장 1, 간판 1
	민자유치					120	120	· 몽골텐트(게르) 9동 - 수익 40%(2년 계약)
운영 지원 사업	사무장 채용 지원	2006 ~	월50	월40	월10		월100	· 사무장 채용 임금
	전문가 컨설팅	2007. 6 ~	월100				월100	· 전문가 컨설팅 지원

## ② 추진전략 및 방법

## • 조직 구성 및 역할

선감마을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착수하면서 마을 청년들이 중심이 된 운영위원회를 결성했다. 운영위원회를 결성한 이유는 어촌계원수가 178명으로 많은 인원일 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고령으로 어촌계원 전원이 운영에 참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갯벌체험장까지 이동 거리가 멀어 트랙터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계원들이 참여해야 했다. 그래서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회원 14명을 선발 운영위원회를 결성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직을 어촌계장이 맡고, 감사2명, 총무 1명을 두고 있다. 운영위원



들은 어촌체험마을 운영수익금을 3년간 재투자하기로 하고 마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로 참여키로 했다. 또 부녀회에서 식사제공을 담당하는 등 적극 협조키로 했다. 체험마을의 예약 업무 등 사무업무는 사무장을 두어 진행을 맡도록 했다.

조직내 협력을 위해 부녀회, 어촌계원 등 자체조직간 체육행사 및 친목간담회를 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 또 위원장과 사무장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관광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

우선적으로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주요시설들을 조성했다. 종합안내소 2층 647.4m<sup>2</sup> (안내실,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갯벌체험장 진입로 3,200m, 편의시설(파고라2개, 원두막 3개), 주차시설 400평, 종합안내판 5개가 있다. 체험시설은 기존 바지락 양식어장 중 7ha를 갯벌유어장으로 전환했다.

2005년에는 지방비 9천만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주차장, 파고라를 설치하였으며, 2007년에는 미니풀장 1, 간판 1식이 지방비로 지원되었다. 또 자율관리어업 장려금으로 갯벌체험장까지의 이동 수단인 갯벌트랙터를 4대 구입하여 체험마을 운영에 필요한 기초를 닦았다. 특히 2007년에는 2년 동안 수익금의 40%를 갖는 조건으로 민간자본 1억2천만원을 유치, 몽골텐트 9동을 설치하여 체험마을 주변에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3)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장초기인 2005년도까지는 갯벌 조개잡이, 포도따기, 바다낚시 정도가 주 프로그램이었으나 이후 프로그램을 주제별로 개발, 학습, 체험, 놀이, 이벤트 등으로 구분하여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학습에는 갯벌생태 관찰, 포도밭 견학, 바지락 가공공장 견학, 식물 화분 만들기가 있으며 체험으로는 조개잡이 체험, 갯벌트랙터 타기, 머드체험, 갯벌 썰매타기 등이 있다. 놀이로는 머드놀이터, 야외수영장이 있으며 이벤트로는 후릿그물체험(그물로 물고기 잡기), 바다낚시, 갯벌체육행사 진행, 해병대 극기훈련, 캠프파이어, 바비큐파티, 몽골텐트 숙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표 3-3-42] 주요 체험프로그램 및 가격

체험명	가격	비고	
갯벌체험	대인 7천원, 소인5천원/1인	갯벌트랙터 탑승, 호미, 바구니 제공, 청년회 안내	
농사체험	5천원/1인	포도2송이 제공	
갯벌썰매타기	4천원/1인	썰매제공	
후릿그물 체험	2십만원/1회	그물로 고기잡기	
바다낚시체험	1만5천원/1인	예약필요	
식사	바지락칼국수	5천원/1인	현지 바지락 이용
	조개구이	깃가	
숙박(몽골텐트)	15만원/1동	10~15인 용	

운영은 예약접수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장이 전담한다.

마을 청년회 소속 14명의 운영위원이 당번제로 나와 갯벌트랙터(이동수단) 운영, 체험객 관리, 체험 안내 등을 맡고 있다. 당번 순서는 체험객 인원수에 따라 전날 배정하게 된다.

식사는 부녀회에서 전담하게 되는데 주요 메뉴는 지역 특산물인 바지락을 재료로 한 바지락 칼국수이며 조개 구이도 제공할 수 있다.

#### (4) 체험마을 운영 지원 유치(사무장 채용, 컨설팅 전문가 지원)

농림부의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사업을 유치, 2006년부터 여성 사무장 1명을 채용하여 체험마을 사무 업무를 맡기고 있다. 사무장은 안내소에서 상근 근무를 하며 운영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체험마을 운영 관련 예약접수, 사무업무, 체험 안내, 홈페이지 관리 등 체험마을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맡아본다.

2007년 6월부터는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지역의 이벤트 전문가를 마을 컨설팅전문가로 지정하여 프로그램 개발, 체험마을 운영상 애로점 해소, 마을발전 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다.

#### (5) 마케팅 및 홍보

선감어촌체험마을은 목표시장을 수도권 내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학원의 학생들을 설정했다. 이에 어린이들이 놀기에 좋은 안전한 갯벌장, 재미있는 갯벌장, 충분한 양을 캐수 있는 갯벌체험장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어촌관광 상품의 품질관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안전한 갯벌체험장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년초에 3톤의 모래를 체험장에 직접 깔아 어린이들이 쉽게 갯벌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안전한 체험장 조성 이외 바지락 치패가 안착할 수 있는 좋은 서식조건을 만드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다. 이와함께 농산어촌체험마을 보험을 가입(농촌공사 운영)하여 안정성 높은 체험마을임을 과시하고 있다.

둘째, 재미있는 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체험장까지 거리 3.2km를 이동하는 갯벌트랙터 4대를 준비하여 광활한 갯벌을 트랙터를 타고 이동하는 생경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야외수영장, 갯벌머드체험, 갯벌썰매, 갯벌운동회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셋째, 일시에 많은 체험객들이 바지락을 캐내기 때문에 체험장에는 바지락 물량이 부족하기 마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어업인들이 어장에서 잡은 바지락을 구매하여 체험장에 살포, 자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마을의 어업인들이 판로 걱정없이 어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효과를 얻고 있다.

넷째, 고객지향적 사고로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이뤄냈다. 물때가 맞지 않을 때 육상에서 할 수 있는 농사체험이나 화분갈이 체험 등을 개발했고 야외수영장, 머드체험장, 바다낚시, 후릿그물체험, 해병대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구비, 참가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했다.

그리고 어촌민속전시관, 경기도영어마을, 누에섬 전망대, 바지락 가공공장 등 주변의 자원들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체험프로그램의 가격은 낮은 편은 아니나 1~2kg은 누구나 켈 수 있도록 물량을 살포해 두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여 가격에 대한 불만을 없앴다.

사무장의 상시 근무로 예약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원이나 학교 측의 문의에 즉각적인 응대가 이뤄지고 있으며 자체 홈페이지([www.seongamdo.net](http://www.seongamdo.net))도 운영하고 있다. 홍보책자 7,000부를 제작하여 학원, 학교 등에 송부하고 내방객들에게 나눠주며 홍보하고 있다. 또 경기도 교육청에 홍보공문을 발송하여 경기도 청소년수련원과 연계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체험객 명단을 확보, 연말에 연하장을 발송하기도 한다.

또 해양관광 포털 '바다여행'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기도 하며 언론 방송 등의 취재 협조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있다.

## (6) 사업실적

2005년 사업 첫째 4천여명이 체험장을 이용했으나 2006년에는 9천명으로 늘어났고

2007년에는 상반기에만 1만명이 넘어서는 등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체험마을 운영 소득을 살펴보면 2005년 3천만원 수준에서 2006년 6천만원으로 증가했으며 2007년 상반기에 7천만원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 중 체험비가 5천만원 정도이며 식사비가 2천만원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비참여 어촌계원들로부터 양식장에서 채취한 바지락 8톤(1천만원)을 구매하여 체험장 살포용으로 사용하는 등 어업소득증대에도 직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운영위원들의 체험안내 활동에 대해서는 개장 첫해인 2005년에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못했지만 2006년 2만5천원/1일, 2007년 4만5천원의 일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외 이익금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전액 재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문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외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몽골텐트를 운영하는 등 새로운 수익원도 개발해 내었다.

### (7) 성공요인 분석

선감어촌체험마을의 성공요인은 젊은층 및 마을리더의 적극적인 의지, 정부의 선택과 집중적 투자, 목표시장 선정과 차별화, 적극적인 홍보,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적절한 운영, 지리적 여건 등을 들 수가 있다.

먼저 청년회를 중심으로 젊은층이 단기적 수익보다 마을의 발전을 위해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운영위원회를 결성했고 개장 후 3년 동안 수익의 대부분을 재투자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또한 부녀회의 식사제공 등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한 성공요인이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중적인 지원과 이를 유치하기 위한 마을 리더의 적극성도 높이 살만하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을 목표시장으로 설정한 것이 매우 주요했으며 안전, 재미, 물량을 보장하는 체험장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 다른 지역 체험마을과 차별화 시킨 것도 높이 살만하다. 또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도 성공요인이다.

수도권과 2시간 내 거리의 주요 관광지인 대부도 내에 위치한 것과 인근에 영어마을, 청소년수련원, 안산어촌민속전시관이 위치하고 있어 도움이 되었다.

### (8) 효과와 향후 과제

#### ① 효과

마을 주민들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통해 마을 분위기가 과거보다 활기차졌다는



것과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보고 있다. 과거 어업세력이 약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침체된 분위기였으나 관광객들이 마을을 찾아오고 젊은층들은 농어업 이외에 사업 구상의 대상을 찾게 됨으로써 마을 전체에 활기가 넘치고 있다. 또 노인층과 젊은층간의 약간의 갈등도 자연스레 해소되었다.

아직까진 미진하긴 하지만 비참여 계원이 양식장에서 캔 바지락을 구매하여 체험장 살포용으로 사용하고 포도밭에서 포도체험을 하며 포도 직거래를 실시하는 등 마을 생산품의 새로운 판로를 찾아냄으로써 농어업 직접 소득 증대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

어촌관광이라는 새로운 소득원이 개발되었고 실제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큰 효과이다. 지역 주민을 사무장으로 채용하고 운영위원, 부녀회원의 참가에 따른 일급 지급 등 마을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 마을이 많이 홍보되고 알려지게 된 것도 큰 효과로 볼 수 있다.

## ② 향후 과제

선감어촌체험마을의 현재 문제점과 애로 사항을 살펴보면 자원고갈 및 갯벌 훼손 우려, 급속한 성장에 따른 어촌 정취 상실우려, 프로그램 운영의 계절적 한계, 경쟁 심화, 인프라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체험객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잡기 위주의 갯벌체험이 진행됨에 따라 갯벌 훼손과 자원고갈이 우려된다. 적정 체험객 수 설정과 잡기에서 생태 교육형으로의 전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여름에 집중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계절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아쉬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생산되는 굴을 이용한 겨울철 김장 담그기 축제 등 다양한 비계절성 이벤트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급속한 성장세는 우려할 만하다. 너무 빠른 발전과 놀이위주의 진행은 자칫 어촌스러움과 여유로움의 전달이라는 체험마을 조성의 근본적인 취지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인근 화성, 강화 등지와 대부도 내에서도 어촌체험마을이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고 기 조성된 마을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경쟁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인원이 체험장을 찾고 있으나 진입도로나 좁아 위험성이 있는 것도 아쉬움이다.

## (9) 비즈니스 모델 제시

### ① 타지역과 차별화된 전략

선감어촌체험마을의 차별화된 전략은 목표시장에 맞춘 체험장의 조성, 적극적인 홍보, 젊은층들의 적극적인 의지, 체험마을 운영과 연계한 농어업소득 보전 등을 들 수 있다.

목표시장을 학생으로 선정하여 이에 맞게 안전한 체험장, 재미있는 체험장, 채취 물량이 보장되는 체험장을 조성하였다. 또 언론을 통한 홍보, 마을 홈페이지 운영, 고객관계관리(CRM), 관공서 대상 홍보공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도 타지역에서 따라하기 힘든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젊은층들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과 개장 후 3년간 수익을 재투자하기로 한 것도 높이 살만하다. 또 비어촌계원이 잡은 바지락을 구매하여 체험장에 살포하는 것과 포도따기 체험을 통해 포도판매 등, 농어업 직접소득 증대를 어촌관광을 통해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도 선감어촌체험마을의 운영상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 ② 모델 유형

안산 어촌체험마을의 성공은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갖춘 모델 유형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일단, 마을 주민들의 단합과 강력하고 헌신적인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선감마을은 어촌계원수가 많고 반농반어의 어촌마을로 구성원간 이해타산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와 헌신적인 소수의 운영위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이와 함께 목표시장이 명확하고 수요자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대도시 인근 관광지권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중적인 지원이 단기간에 이뤄진다.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농어업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새로운 판로를 모색해 준다.

이러한 유형의 체계를 갖출 경우 어업 소득사업과 어업외 소득사업을 상호보완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장기적으로 어촌체험 테마 유원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 ③ 시사점

선감어촌체험마을의 경우처럼 대도시 인근의 어촌인 경우, 목표시장을 정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면 단시일 내에 어업외 소득 사업, 특히 관광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광사업은 지역 생산품을 유통시키는 새로운 판로를 찾아낼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급속한 성장은 마을 주민 전체의 공감을 얻어내기 힘들 수 있어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으며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경우, 어촌스러움이나 마을의 자원을 쉽게 잃어 버려 마을이 조로해 버릴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어촌관광 사업을 위해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 7) 경남 사천 저도 자율공동체 사례

### (1) 위치

자율관리 공동체를 결성, 어업소득 증대와 어업외 소득사업 개발을 성공하여 새로운 어촌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저도 자율공동체는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북서쪽에서 5km떨어진 마도동에 위치하고 있는 섬마을로 일명 딱섬으로 불린다. 면적이 38,216m<sup>2</sup>(11,580평)으로 조그만 섬이다. 마을로 찾아가는 길은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남해 고속도로 사천IC를 나와 30분 정도 이동하여 사천시 실안동 실안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5분 정도 이동하면 된다. 저도는 부산광역시와 마산(창원), 진주 등 경남권 도시와 2시간권 내로 인접하고 있고 대전 진주 간 고속도로(2005. 11 개통)를 통해 수도권, 충청권 관광객들의 접근도 용이하다.

저도는 사천시 대방동과 남해군 창선면 사이 해협인 대방수도에 위치, 수려한 해안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특히 섬에서 삼천포 ~ 창선 연륙교를 바라보는 조경은 아름다운 남해 다도해의 진수 중에 하나로 꼽힐만 하다. 또 마을 앞에 있는 전통 어업인 죽방렴과 인근의 실안해안도로도 찾는 이의 눈길을 끌기에는 충분하다.



자료: 저도 뉴시바지선(上 왼쪽), 민박동(上 오른쪽), 뉴시잔교(下)

[그림 3-3-20] 저도어촌계 뉴시터 및 민박 전경

## (2) 현황

### ① 사업도입 배경

저도는 원래 연안어업이 발달한 어촌이었다. 그러나 무분별한 자원 남획과 어획강도의 증가 등으로 어획량이 급감, 소득저하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양식어업을 도입, 1989년 10ha, 1997년 15.9ha의 바지락 협동양식을 성공하였다. 그러나 개인적 이익 추구 등 어업 질서가 문란해져 소득이 격감하고 어촌계 구성원간 불신의 벽이 높아져 사업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등 어촌계 자체의 존립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마을을 지켜내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 간의 신뢰와 단합이 우선이며 적극적인 어족자원 관리와 새로운 소득 증대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후 청년회를 중심으로 주민설득 작업을 거쳐 2001년 7월 지역주민 18가구, 32명 전원이 참여하는 자율관리공동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자율관리공동체는 어장관리와 함께 어장감시체제를 구축, 주력 사업인 바지락 양식 사업의 안정화를 이루게 된다. 또 어족자원이 많은 것이 알려지자 마을(섬)에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낚시객들이 방문하는 것을 눈여겨 보던 어업인들은 이를 사업화하는 방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 ② 어촌계 및 자율관리공동체 현황

저도 어촌계는 섬이라는 폐쇄적인 특수성을 갖고 있으며 어촌계원 수도 18가구 24명으로 소규모 어촌계다.

마을의 주요 어업은 바지락 양식, 낚시 연승, 문어 단지 어업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양식은 바지락 양식 10ha 1건, 협동양식 15.9ha 2건, 마을어업 32.79ha 1건으로 해서 총 58.69ha 4건의 어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년 평균 600톤의 바지락을 생산하고 있다. 또 개인 어업권은 죽방렴 2건, 낭장망 1건, 연연어업허가 29건(연안통발 6건, 연안복합 20건, 외줄낚시 3건)이 있으며 어선척수는 29척이 있다.

자율관리공동체에는 어촌계원 및 비어촌계원을 포함, 지역주민 전원인 총 3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남녀 비율은 각각 16명씩이다.

공동체는 운영위원회를 결성하고 있는데 주요직책은 운영위원장(1), 부위원장(1), 총무(1), 감사(2), 고문(1), 위원(5)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 마을 주요 조직은 청년회와 부녀회 등이 있다.

### ③ 어가 소득 및 소득원 현황

이 마을의 어가 소득은 주민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섬의 특성상 농경지가 부족하고 종사하는 업종이 거의 비슷하여 공동어업(바지락 양식)의 비중이 크



기 때문이다. 년 어가 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가구당 바지락 양식이 4천만원 선이며 개인 어업을 통해 2천여만원의 소득을 올려 어업소득은 가구당 6천여만원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어업의 소득으로는 자율관리공동체 사업인 민박 및 낚시터 운영으로 4백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래서 총 평균 가구당 어가 소득은 6천만원 ~ 7천만원선이었다. 어업의 소득원은 낚시내방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주요 소득원은 민박과 낚시터 운영이다.

### (3) 사업 및 성공요인 분석

#### ① 사업분석

저도마을이 도입한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 사업이었다. 자율관리어업 사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구축,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어촌사회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어장관리, 자원관리, 경영개선, 질서 유지 등을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실천하는 운동으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사업은 2001년 7월 1일 시작하여 양식어장 자원조성을 통한 어획량 증대, 유로낚시터 조성, 민박운영 등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계 활로 모색을 목표로 2002년 총 2억8천6백만원(국비 1억원,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마을 자부담 1억2천6백만원) 투입, 바지락 종패 살포, 낚시터 조성, 민박시설, 관리선 구입, 어장기반 조성을 위한 모패장 조성 및 투석 등의 사업을 펼쳤다.

2005년에는 자율관리어업 장려금 1억8천만원에 마을 자부담 20천만원을 보태, 민박 시설 1동을 추가로 건립하였다.

자율 공동체 참여인원은 총 32명으로 남자 16명, 여자 16명으로 구분되며 위원장은 이 선호씨다.

[표 3-3-43] 주요 투입 사업 현황

년도	구 분	규 모	사업비(천원)	비 고
2002	낚시터 조성	1개소(167m <sup>2</sup> )	33,000	잔교, 낚시 바지사설
	민 박 시 설	2동8칸(180m <sup>2</sup> )	155,000	
	관 리 선 구 입	1 척 (3.39톤)	30,000	
	종 패 살 포	10ha(바지락13톤)	30,000	
	어장기반조성	투 석 1,550m <sup>2</sup> 모패장 10ha	38,000	노래미, 바지락 산란장 조성
2005	민 박 시 설	1동 4칸	100,000	
	낚시터 조성	1개소(90m <sup>2</sup> )	100,000	낚시 바지사설



## ② 추진전략 및 방법

사업도입 초기 마을 내 불신과 갈등이 팽배해 있던 시기라 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마을 주민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주효했다. 마을 주민 32명 전원이 자율관리공동체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립했으며 어촌계, 청년회, 부녀회의 적극적인 지원도 이끌어 내었다. 사업목표를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기반을 마련하고 어촌관광(낚시/민박)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이라고 설정했다.

우선 마을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바지락 양식 사업을 안정화시켰다. 이를 위해 어촌계가 중심이 되어 바지락 채취기간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을 설정하고 공동체 소유관리선(작업선 2척, 관리선 1척)을 도입, 채취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동체 회원 전원이 참가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모패관리를 위한 보호수면을 설정(8ha)하였고 어장감시 초소 설치, 2인1조 당번제로 운영하였다.

이와 함께 어장청소 및 해적 생물 구제는 년 중 실시하고 있으며 어장에 종패를 살포하여 자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꾸준히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낚시터 조성과 민박 운영을 통한 어업외 소득 증대 사업이라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데 주력하였다. 모든 주민들에게 역할이 주어졌고 특히 부녀회는 민박관리, 낚시터 운영과 마을까지의 도선운행은 남자회원들이 전담하기로 하였다.

남자회원 16명(위원장, 어촌계장은 제외)이 2인1개조로 7개조로 구분, 1개조 1일 근무로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주요업무는 낚시터 관리 및 관리선으로 운영하는 도선 업무였다.

낚시 관련 주요 시설은 안전하게 낚시가 가능한 낚시잔교 1식과 대방수로 중간에 바지를 띄워두는 낚시바지 3식이 있다.

부녀회는 민박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데 4인1조로 하여 4개조로 구분, 조별 1일씩 근무하고 있다. 주요업무는 민박 예약접수 및 관리, 청소, 이불 빨래, 정리 등을 맡고 있다.

민박지는 폐교를 인수하여 민박동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낚시객들에게 인기가 있는 민박이었다. 이후 2005년 민박동을 하나 더 신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표 3-3-44] 어촌관광 사업 추진 현황

구 분	낚시터 운영	민박 운영
운영주체	남자 회원	여자 회원(부녀회)
참가인원	14명(위원장, 어촌계장 제외)	16명
운영방식	2인1조로 7개조 구분 1개조 1일 근무	4인 1조로 4개조 구분 1조 2일씩 근무
주요업무	낚시터 및 관리선(도선) 운영	민박관리 (청소, 빨래, 보일러 관리 등)
규모	낚시터 257m <sup>2</sup> 낚시 잔교 1식 낚시 바지 3식	2동 12실 대5실(1실 15~20명 수용) 소7실(1실 6~8명 수용)
요금	1인 1만원(숙박객 5,000원)	대(6인 기준) 60,000원 소(3인 기준) 30,000원
기타사항	- 월별 주요 어종 3 ~ 5월 감성돔, 볼락, 도다리 7 ~ 10월 감성돔, 학꽂치 10~12월 볼락, 노래미 - 실안 선착장에서 선박으로 5분 거리	- 폐교 인수 후 개조 샤워장, 취사장, 사슴농장, 야외바베큐, 텐트장, 족구장 완비 - 죽방렴 견학, 고동 잡기 체험 알선 가능

공통: 1회/월 잡초제거, 해안가 청소 시행

저도 마을 공동체의 낚시사업은 목표시장이 전문낚시객 및 가족 낚시객이 된다. 전문 낚시객들은 조과와 어종에 민감하게 되는데 이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낚시 잔교, 청결한 숙박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낚시객들도 많이 찾고 있다.

저도 마을 공동체는 상품관리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먼저 삼천포~남해 창선 연륙교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과 대방수도의 운치있는 바다풍경 등 자연 자원을 좋은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바다낚시터의 구성에 만전을 기했다.

낚시터가 삼천포 대방수도로 조류소통이 양호하고 영양염류가 풍부하여 어족자원이 많지만 마을에서는 투석을 통해 산란장을 조성(1,550m<sup>2</sup>), 낚시객이 내방했을 때 조과가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 갯바위 낚시, 방파제 낚시, 바지 낚시, 잔교 낚시 등 한 마을에서 다양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3-3-45] 저도 마을의 마케팅 현황

구분	내용	
목표시장 설정	전문낚시객 및 가족 낚시객	
상품화	바다낚시터 조성	조과보장(산란장 조성), 다양한 낚시(갯바위, 바지, 낚시잔교), 안전한 낚시
	자연환경 활용	삼천포~남해 창선 연륙교 조망, 대방수도 바다풍경
	저렴한 가격	낚시 1만원(숙박객 5천원), 숙박비 3~10만원/1실
	질 높은 서비스	선박 수시 운행 및 야간 도선 제공 낚시장소 변경(갯바위, 잔교,바지) 서비스 제공 숙박지 청결 유지
홍보	입소문 홍보에 의존(Buzz Marketing), 재방문율 50% 이상 해양관광포털 '바다여행' 사천시 홈페이지, 해양수산부 바다로21 등에 소개	

마을 주민들은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선은 낚시객들의 요청시 마다 수시로 운행하고 있으며 야간에도 섬으로 들어오겠다는 연락을 취하는 낚시객이 있으면 즉시 도선을 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갯바위, 잔교, 바지로 이동하며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선박으로 이동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숙박지의 청결상태도 깨끗이 유지하고 있으며 마을 해안가 청소도 월 1회 실시하여 쾌적한 어촌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홍보는 입소문에 의존(Buzz Marketing)하고 있으나 재방문율이 50%가 넘는 등 상품에 대한 우수성이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체 홈페이지는 없으나 해양관광포털 '바다여행', 사천시 홈페이지, 해양수산부 바다로 21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인적네트워크 활용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사천시해양수산사무소와 사천시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사업실적

사업 시행 첫해 3천여명의 관광객들이 왔으며 2005년 이후에는 매년 6천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별 수입을 보면 어촌관광 사업에서는 2006년 기준 총 8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중 민박 운영 수입이 5천5백만원, 낚시터 운영 수입이 2천5백만원 정도였다. 이 중 시설 유지보수비, 유류비, 전기세, 수도세 등 비용이 1천여만원으로 순수익은 7천여만원 수준이었다.

바지락 양식사업의 수입을 보면 연도별 생산실적 차이는 있으나 평균 년 700여톤을 생산하여 7억 5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이 중 그물 수리 및 구입비, 선박수리비,



유류비 등 제반비용 5천여만을 제외하고 7억 정도의 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공동체 구성전에 생산한 300톤, 금액으로는 3억 2천여만원이라는 실적에 비해 상당한 신장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3-46] 연도별 마을 방문 관광객 추이

(단위 : 만원)				
년도	2003	2004	2005	2006
금액	3,000	5,000	6,000	6,000

[표 3-3-47] 사업별 수입 현황

(단위 : 만원, 3년 평균)		
구분	어촌관광사업	바지락 양식사업
총수입	8,000 (민박 5,000, 낚시 2,000)	75,000 (700 여톤 생산)
순수입	7,000	70,000
비고	운영비용 1,000 가감(시설유지보수비, 유류비, 전기세, 수도세 등) 단,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음	운영비용 5,000 가감(그물수리 및 구입비, 선박수리비, 유류구입비 등) 단,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음

#### ④ 성공요인 분석

저도 자율공동체 운영의 성공요인은 크게 적극적인 마을 주민, 선점적 시장개발 및 차별화, 관리체계의 확립, 우수한 자연조건,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성공요인은 먼저 마을 주민들의 단합 및 의지였다. 주민 모두가 만장일치로 사업에 참여한 것과 마을에서 총 사업비 중 1억4천6백만을 직접 투자하기도 하였다. 또 마을 주민 전체가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으로 마을 발전을 위한 일이라며 발벗고 나선 것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전체 참여 인원 32명 중 50대 이하가 29명이나 되는 등 비교적 젊은층이 많아 외부 변화에 적극 대처 및 수용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었다는 것도 성공요인으로 뽑을 수 있다.

바다낚시를 마을의 공동 사업으로 채택하여 어촌마을 중에서는 선점하였다는 것과 바다낚시 마을로 특화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의의가 있다.

또 우수한 바다 낚시터인 자연조건을 활용한 것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기간 내 낚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도 성공에 도움이 된 요소였다. 해양수산청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도 큰 힘이 되었다.

#### (4) 효과와 향후 과제

##### ① 효과

마을 주민들간의 신뢰회복과 결속력 강화가 가장 큰 효과로 볼 수 있으며 마을 자원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 생성도 효과였다. 이에 따라 마을에서 외부로 이주한 주민이 한 명도 없으며 오히려 마을로 들어오려는 외부인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와함께 향후 유로남시터 확충, 해수풀장, 수산물 판매장 조성, 관광 유람선 운영 등 마을 주민들간에 관련사업 구상이 이뤄지는 등 마을 활력의 중심이 되고 있다.

소득의 안정화 및 다양화도 큰 효과로 볼 수 있다. 양식장 관리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이루었고 어촌관광이라는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여 성어기 이외 시기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었다.

##### ② 향후 과제

저도 자율관리공동체가 운영하는 낚시/민박사업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수익률 저조, 프로그램의 단순화, 연계자원의 활용 미진, 홍보능력 부족 및 고객관리 부재, 경쟁 심화, 전문 인력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저가 정책(1인당 1만원의 낚시체험비 1인당 1만원, 숙박시 5천원)으로 인해 인력 투입대비 수익률이 저조하며 관광객이 년 평균 6,000명 선에서 지체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식당 운영 및 죽방멸치, 바지락 등 지역특산물 판매도 현지에서 이뤄질 수 있는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다.

섬이라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아 적극적인 홍보가 불가능한 것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홍보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도 큰 약점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찾아온 고객에 대한 관계관리(CRM)가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었다.

최근 인근 지역(사천, 통영 등)에서 낚시마을 조성과 어촌체험마을이 조성되고 있어 경쟁이 심화될 것이 우려되며 어촌체험마을의 사무장처럼 체계적인 운영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것과 전문가의 컨설팅 경험이 없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었다.

#### (5) 비즈니스 모델 제시

##### ① 타지역과 차별화된 전략

타지역과의 차별화된 전략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마을주민들의 단합과 적극성을 뽑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개발한 것과 어업소득과 어업외 소득 향상 방안을 동시에 모색했던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낚시 전문 관광마을로 선점적 포지셔



닝을 이루었다는 것과 바다낚시라는 자원을 마을공동사업으로 도입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발상, 섬(마을)이라는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것도 주목 할만하다.

## ② 모델 유형

모델유형은 자율관리 공동체 운영을 통한 어업소득 안정화 및 어업외 소득원 개발로 저도 자율공동체의 성공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완성되는 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마을 주민들간의 의견 일치를 이뤄내야 한다. 가급적 참가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파악한다.

둘째, 어촌 지역 자원의 파악이다. 어업자원을 포함하여 어촌마을의 우수한 자원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사업화 할 것인가를 파악한다.

셋째, 사업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앞 단계에서 파악된 자원을 두고 사업화 가능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긴다. 이 단계에서는 우선 어촌의 근간은 어업이기 때문에 어업 자체의 소득 증대 방안을 고려하여야 하며 동시에 어업외 소득 증대 방안도 모색한다.

어업외 소득 증대방안은 마을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것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마을의 발전에 도움을 주게된다는 공감을 주민들로부터 얻어낸다. 휴어기에 맞춰 인력관리가 가능한 사업을 발굴한다.

넷째, 사업 추진의 기본인 하드웨어적 개발의 추진이다. 이 단계에서는 마을주민의 자부담을 포함시킨다. 가급적 마을 전체 운영비를 투입한다.

다섯째는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다. 즉 상품의 운영 및 관리를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때는 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민 개인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당번제가 바람직하다.

여섯째, 직접 운영 및 마케팅/홍보 활동을 시행한다. 이러한 단계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경우, 마을 갈등을 해소하면서 어업과 어업외 소득 향상방안을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는 경우가 된다. 또 이러한 사업유형은 전 주민들이 어업에 종사하며 농업비중이 적은 폐쇄적 구조를 가진 어촌에 적용될 만하다.

## ③ 시사점

저도 자율관리공동체의 성공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참여가 마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다. 이와함께 우리 어촌마을에는 우수한 자원(Amenities)이 산재하는데 이러한 자원을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정부에서 조금만 지원해도 좋은 효과가 발휘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1차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관광사업에 관여했기 때문에 자원의 연계 활용

이 미진하여 수익률이 떨어지는 단점과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지원만 이루어지고 이차적인 운영지원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8) 전남 무안 송계어촌계

### (1) 위치

서해안의 대표적 내만인 함평만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광활한 함평만 갯벌지역을 기반으로 어촌생활공간이 조성되었다. 전형적 리아스식 해안의 절경을 자랑하는 무안반도의 서북단에 위치한 송계마을은 국도 77호선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고, 대중적 해상교통수단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무안 IC가 출구이며, 서울에서 약 3시간 30분 소요되고, 무안에서 국도 24호선을 따라 현경면에서 국도 77호선으로 교체 이동하면 30분 이내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기차는 KTX 이용시 나주역이나 목포역을 이용하고 무안읍까지 버스로 이동 후 군내버스로 송계마을에 가는 운행편이 편리하다. 새마을이나 무궁화호 열차는 함평역이나 무안역을 이용할 수 있고, 무안읍까지 군내버스로 이동한 후 송계행 군내버스로 환승하면 편리하다.



[그림 3-3-21] 송계 마을 지도

송계마을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중의 반도로서 함평만을 들고나는 조수의 영향으로 독특하게 형성된 특이한 갯벌 생태를 가지고 있는데, 무안반도 전체가 천혜의 황토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들의 침식에 의해 퇴적된 주변지역의 갯벌형성은 매우 건강하고도 풍부한 자원적 생태 특성을 만들었다.

무안반도 전지역이 육지임에도 불구하고 섬지역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게하는 해안구조로 인해 섬지역 어메니티를 완벽하게 연출해주는 육지인 것이다. 건강하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갯벌지대 형성은 다양한 해양문화를 잉태하게 하였고, 국제요트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요트장이 홀통유원지를 중심으로 광활하게 전개되어 있다. 함평만은 2006년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온 바다가 모두 갯벌생태공원이지만 체험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형 갯벌방문자센타가 건립되어 다양한 해양습지생물들의 생태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

다도해의 연륙사업이 진행되어 신안 증도의 우전해수욕장과 엘도라도 리조트 등 신안 섬문화 체험장이 신안군 지도면을 통해 이미 연륙되어 연결되어 있고, 동쪽으로는 영산강을 접하고 있어 국내 최대의 백련단지인 회산백련지가 있고, 인접한 거리에 항공우주 전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무안공항이 개항하면 명실상부한 다도해관광의 일번지로 부상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는 것이 무안반도이고 그 안에 노른자위처럼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 송계어촌마을이다.

해돋는 바다(함평만)와 해지는 바다(칠산바다)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고 있는 송계마을은 자원의 다양성과 넘쳐나는 풍부함을 최대의 자원으로 활용하여 체험객의 만족지수를 높이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림 3-3-22] 무안 송계어촌계 일출몰 광경

송계마을은 2.5km<sup>2</sup> 면적의 육지를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는 작은 마을이지만 총 113호에 257명의 주민이 모여 살고 있는 큰 마을이다. 특히 50대 이하 남자 청년회 회원수가 50명이나 되는 활기 넘치는 마을이다.



마을뒷산 이름을 成溪洞이라 불리었는데, 주변이 온통 소나무가 울창해서 송계(松溪)라 부르게 되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해송림은 송계마을 공유재산으로 10ha를 보유하고 있으며, 십리길의 백사장과 도리포구가 마을과 연결하여 수산물 집산기능과 횃집이 준비하여 관광객·체험객들이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으며 무안군 특산의 마늘·양파와 더불어 김, 송어, 돔, 황가오리, 민어, 보리새우, 굴 등의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되어 반농반어의 안정적 소득으로 부족하지 않은 풍요한 도시민의 고향 같은 어촌이다.

송계마을은 농업과 어업이 공존하는 곳으로 농업은 주로 마늘과 양파, 고추 등을 생산하고 있고(전 39.8ha, 답 10.5ha) 어업은 어촌계원 99명을 중심으로 갯벌과 바다, 양식장 등에서 바지락, 소라, 고동, 낙지, 민어, 송어, 농어 등을 채취하고 있다.

또한 국도 77호선의 확장계획에 따라 영광군과 연륙사업이 완공되면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새로운 소득창출 등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

## (2) 현황

### ① 사업도입배경

대부분의 성공사례 이면에는 인간 상록수가 필연적으로 헌신적으로 밑거름이 되고 있듯이 송계어촌마을에도 일에 흠뻑 빠져 살아온 인간상록수 P씨(52세)가 있다. 20여년 동안 이 마을의 어촌계장을 맡고 있는 그는 남보다 일찍 어촌관광사업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하고 일차로 중장년층 어촌계원들의 뜻을 모아 주변에 산재해 있는 천혜의 자원들을 관광자원화하기 시작했다.

어촌의 수산업구조가 과거의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자본과 기술집약적 첨단 산업으로 발전해 가기 때문에 노동 의존도가 높은 갯벌어장의 천혜의 수산자원들을 방치할 수 밖에 없게 된 어촌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P씨는 갯벌어장의 무궁무진한 수산자원들을 체험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노인들의 역할을 찾게 되었다.

어촌노인들의 풍부한 경험과 재담을 자원으로 활용하고, 노동강도가 높은 체험행사는 젊은 세대들이 담당하게 된다면 마을에 일거리가 늘어나 활력 넘치는 마을이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2002년 박상범 어촌계장은 50여 평의 작은 비닐하우스를 바닷가에 짓고 이곳을 간이 샤워장과 탈의장으로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후 이러한 노력을 알게 된 무안군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04년부터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기반사업들을 지원해주는 단계에 이르러 명실공히 어촌체험마을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이제는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접근해 오는 방문객의 수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적정수준으로 제한하는 상황에 이르는 정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자작일촌으로서 지금까지 패쇄적 마을문화에서 개방적인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까지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다. 노령층의 외부에 대한 배타성이 심했고, 물산이 풍부하여 경제적 궁핍이 주변의 타지역에 비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지인들을 마을에 내부까지 끌어들이는 것에 거부감이 컸고, 특히 천혜의 방풍림인 해송림이 자연상태로 방치됨에 따라 내외부 사람들에게 활동공간으로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반발감이 증폭되어 양 세대간의 갈등으로까지 전개되었으나 중장년층의 지속적인 설득에 결국 마을의 미래를 책임질 중장년층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모두가 합의하기에 이르렀고, 관광객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개선 및 부대공사를 수행하게 되어 지금은 보다 쾌적한 생활과 활동의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 ② 어촌계 현황(어업권 및 어업현황, 어촌계원수 등)

어선어업 74척, 각망어업 12건, 공동어업 4건 (154ha) 등 다양한 어업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지역특산물인 김은 146ha의 광활한 갯벌 위에서 전통적 김양식 기술인 지주식 양식법으로 생산하고 있고, 대부분의 어업소득이 김양식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113가구 257명의 마을주민들 가운데 어촌계 회원은 99명이고, 이들 가운데 60여명이 50대 이하의 청장년층으로서 일반 어촌들에 비해 젊은 세대들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의 수는 69명으로서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 ③ 어가소득(어업소득, 어업외 소득) 및 소득원 현황

74척의 소형어선을 이용하여 연간 2,500톤 규모의 각종 수산물을 채취 및 생산하여 총 3,750백만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는데, 주요 수산업은 대표적 지역 특산물인 김양식과 바지락, 소라, 고둥, 낙지, 게 등 갯벌어업 그리고 어선어업 등 다양한 어업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지역특산물인 김은 146ha의 광활한 갯벌 위에서 전통적 김양식 기술인 지주식 양식법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최고 품질의 서해바다 김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송계마을은 논(30.5ha)과 밭(39.8ha) 경지면적이 많은 전형적 농어촌의 복합적 특성을 갖는 마을이다. 양파와 마늘 그리고 간척지쌀이 주생산 품목이고, 연간 3억원의 소득을 얻고 있는데, 이들 농산물들의 일부를 관광객들에게 지역특산물로 판매하여 연간 3,200 만원 가량의 판매수익을 얻었다.

체험마을 사업을 통해 직간접 소득이 현저하게 증가하였고, 특히 노령연령층의 참여는 마을을 활력 넘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다.

2006년도 체험마을 참여 관광객 수는 3,506명으로 방문객의 67%가 체험에 참여하고 있

고, 체험소득으로 9,700만원과 민박, 식당 및 기타 판매소득으로 2억 9000만원의 가량의 소득을 얻었으며, 체험마을 운영에 따른 고용효과로서 연인원 825명의 고용과 6,835만원의 고용소득을 얻게 되었다.

[표 3-3-48] 체험마을 운영에 따른 고용효과 2006년

참여자 분 류	세부분류	고용인원 (년인원)	지급액(원) (연합계)	참 여 역 활
전 업	사무장	1	12,000,000	· 마을홍보 마케팅 · 홈페이지, 사무관리
겸 업	어촌계원	605	45,400,000	체험프로그램운영
	비어촌계원	116	5,800,000	체험프로그램운영
부 업	부녀층	68	3,400,000	체험프로그램운영
	노령층	35	1,750,000	체험프로그램운영
계		825	68,350,000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송계마을은 총 소득은 71억 4,500 만원으로, 호당 평균소득은 6,300만원, 어업외소득 총 33억 9,500만원이었으며, 특히 본 체험마을사업에 의한 직접소득은 1억 6,500만원이고, 간접소득 중 순 체험마을 사업과 연관성을 갖는 부분을 30%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10억 4,400만원으로서 전체 소득액의 15%에 해당한다.

[표 3-3-49] 송계마을 2006년 총소득 현황

(단위 : 천원)						
항목	어업소득	농업소득	체험소득	간접소득	고용소득	계
소득액	3,750,000	300,000	97,221	2,929,720	68,350	7,145,291

#### ④ 기타 현황

체험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 주민들의 안전과 관광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어촌계 자조금으로 농산어촌체험마을보험(연간 보험금 1,454천원)에 가입함으로써 체험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보다 질 높은 어촌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있고(컨설팅 비용 2,790만원, 군비지원), 마을 리더 및 주민들의 농촌체험관광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어촌관광리더가이드 교육, 농산어촌체험마을지도자과정, 농촌관광지도자교육 등).



## (3) 사업 및 성공요인 분석

## ① 사업개요

[표 3-3-50] 어촌체험마을 기반조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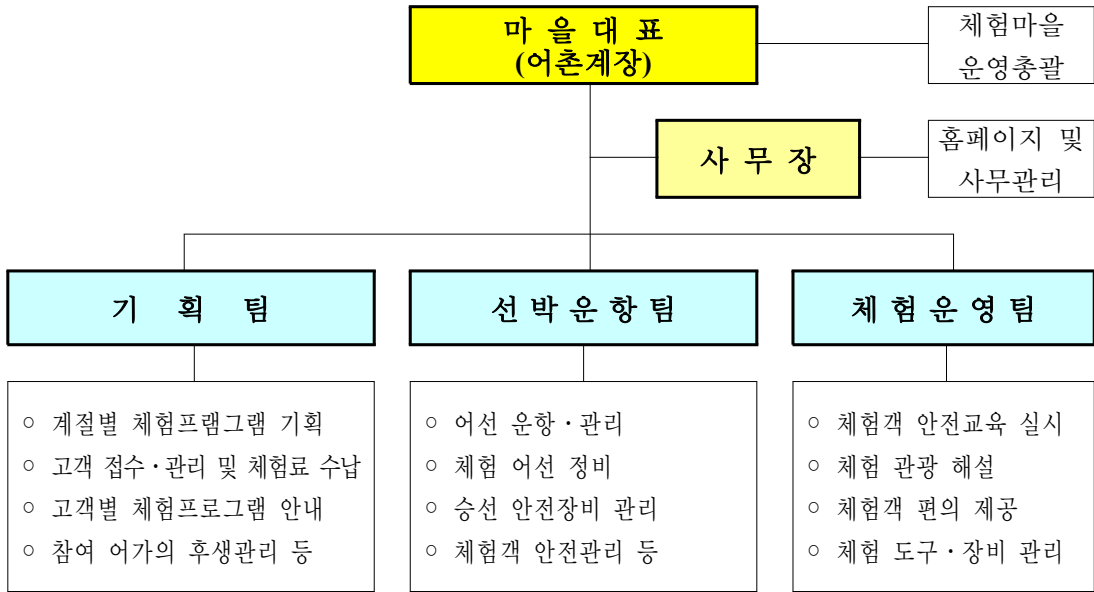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주요 사업내용
		보조		자부담	합계	
		국비	지방비			
계		1,098	552	23	1,673	
어촌체험마을조성	'03 -'05	250	250	-	500	관광안내소, 특산품판매시설, 샤워·화장실, 주차장 등
갯벌체험로시설	'06 -'07	288	72	-	360	갯벌체험로 (L = 120m)
해변산책로시설	"	160	40	-	200	해변산책로 (L = 200m)
산책로시설	"	128	32	-	160	산책로 (L = 160m)
관찰데크시설	"	120	30	-	150	관찰데크 (L = 60m)
휴게공간시설	"	80	20	-	100	파고라 2동, 정자 2동
주차시설	"	40	10	-	50	주차장 (A = 1,724m <sup>2</sup> )
다목적운동장	'05	32	8	-	40	농구, 정구, 족구시설 (A = 1,682m <sup>2</sup> )
민박지원	'04	-	10	3	13	민박 개·보수
마을관정개발	'04~'06	-	40	-	40	

[표 3-3-51] 혁신인력육성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주요 사업내용
		보조		자부담	합계	
		국비	지방비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04~'06	-	40	20	60	체험장비구입 지원
사무장 급여지급	'07	6	4.8	1.2	12	

[표 3-3-52] 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



[표 3-3-53] 체험 프로그램 내용 및 사업내역

구분	프로그램	프로그램내용 및 효과	프로그램 운영인원 (1일기준)	연간 실시 일수('06년 기준)	관광객 (방문객 총수)	체험프로그램	
						1인당 이용요금	이용객 총 수
봄	갯벌체험, 어패류 잡기체험, 어장체험, 갯바위 낚시체험	·갯벌, 어류·바지락·고등잡기, 후리질, 이각망 물보기, 가래낙지잡기, 낚시체험 등	9명	19	554	10,000 ~ 20,000	40
여름	갯벌체험 갯바위낚시체험	·갯벌, 낚시체험	4명	48	3,022	10,000 ~ 20,000	2,412
가을	갯벌체험, 어패류 잡기체험, 어장체험, 갯바위 낚시체험	·갯벌, 어류·바지락·고등잡기, 후리질, 이각망 물보기, 가래낙지잡기, 낚시체험 등	9명	27	1,445	10,000 ~ 20,000	1,054
겨울	갯바위낚시체험	·낚시체험	2명	12	223	10,000 ~ 20,000	-

② 추진전략 및 방법

사업도입단계에는 송계마을 어촌계 P 어촌계장 및 젊은층 계원들의 자조, 자립적 자세가 전통적 부존자원을 마을을 실리는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킨 계기이자 전략이 되었다.



정부의 지역개발정책 방향이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안군도 송계마을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믿음과 선택이 성공적 결실로 점차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결국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하려는 의지와 이러한 여건을 결집시켜 대내외적으로 합의를 얻어내는 노력과 열정 없이는 사업의 도입은 물론 사업의 성공도 불투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또한 전통적 자작일촌의 폐쇄된 마을에서 외지인들을 상대로 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현실적으로 개인적 이해관계에 의해 많은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어촌계 주관의 사업이 비어촌계원에게도 최소한의 공유부분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반발을 예상하고 비어촌계 마을주민들을 체험프로그램 및 수익발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 배려가 각종 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주민합의 과정에서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고 협력적 관계로 전환시킨 상생전략의 성과로 해석할 수 있다.

### ③ 사업실적

2004년 이전에 소규모 부정기적 갯벌방문자들이 체험마을사업 프로그램에 의해 사업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용객의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관광객들의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체험프로그램의 간접적 영향에 의한 증가로 분석된다. 또한 체험프로그램 이용자들로부터 얻어지는 직간접적 소득의 내용에 있어서도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일회성 방문이 아닌 재방문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은 송계마을 체험프로그램의 질적 우수성을 입증해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

[표 3-3-54] 연도별 체험마을 소득현황

구분	방문객수 (인)	체험시설 이용객수 (인)	체험소득 (원)	간접소득 (원)
2004년	1,500	-	15,000,000	140,000,000
2005년	2,400	1,300	36,000,000	214,000,000
2006년	5,244	3,506	97,221,000	292,970,000
2007년 (8월현재)	8,200	6,108	183,240,000	247,350,000

송계어촌체험마을의 체험자원은 전통적 갯벌과 어장에서의 채취 및 어획체험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생태적 부존자원들은 체험자들에 의해 쉽게 황폐화 및 고갈의 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갯벌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대량의 체험자가 발생하

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고, 1일 100명 이하의 체험규모로 조절하는 관리적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현재로서는 체험자의 증가가 필요 없고, 따라서 현재의 환경 하에서 100%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여건을 감안하여 단순하게 체험자를 모집하기 위한 홍보와 마케팅 방안이 별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비용 고품질 체험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체험프로그램의 홍보활동은 자체 홈페이지가 무안군청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어서 온라인상의 홍보채널이 되고 있고, 방문자들에 의한 구전방식의 홍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별도의 특별한 홍보가 필요 없는 실정이다.

#### ④ 성공요인

송계마을은 농어촌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다. 따라서 관광안내소 주변지역에 양호한 농촌관광 자원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자원들을 어촌체험 프로그램에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주변지역에 윈드서핑 장소로 유명한 홀통유원지와 조금나루유원지 등 해양관광 거점들과 별도의 연계된 프로그램이나 창구가 개설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나, 향후 상호연계에 의한 체험프로그램의 콘텐츠를 다양화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

결과적으로 송계마을의 어촌체험마을사업이 사업시행의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한계점에 도달할 만큼 성공적 사례로 발전하기까지는 천혜의 풍부한 갯벌생태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들 자원이 체험프로그램에 의해 손실이 있다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생태회복력이 탁월한 점이 타지역 체험마을들과 차별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광활한 갯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어촌계원들의 헌신적 봉사와 노력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인데, 체험자들을 10명단위로 분리하여 여러곳으로 분산시킴으로서 특정지역의 생태회손을 최소화하도록 배려하고 있고, 이로 인해 빠른속도로 갯벌생태가 복원되어 지속적으로 체험어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어촌계의 지혜는 생태자원형 체험마을 운영사례로서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 (4) 사업효과와 향후 과제

##### ① 파급, 고용증대, 소득증대, 지역 활성화 등의 효과분석

체험마을사업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방문객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결과로 인해 2006년 한해 동안 연인원 825명의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고용이 있었으며, 마을 전체소득의 15% 수준으로 체험마을사업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이 발생하였다. 지역내에 산



재해 있는 농업적 자원과 문화적 자원들이 현재로서는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자원들이 적극 활용되고 어촌체험프로그램도 콘텐츠의 다양성을 부가해 나간다면 고용효과 및 소득증대에 직간접적으로 큰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판단된다.

## ② 향후 과제

양적 위주의 체험보다는 질적 위주의 체험프로그램과 사업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숙박시설의 부족으로 체험객들을 수용하고 있지 못한 바, 기존의 주택을 이용하는 것 보다 고급 펜션스타일의 숙박시설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 주택들을 고급형 펜션주택으로 리모델링하든지 아니면 해안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위치에 신규로 건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광농업적 요소의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하다. 마을 및 해안 주변에 우수한 농경지들이 존재한다. 갯벌체험이 조석시간대에 맞추어야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갯벌체험 시간 전후로 농업적 요소와 자원들을 관광자원화하여 사양화된 지역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든다면 어촌관광 중심의 마을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예로서 관광안내소 주변의 넓은 밭에서 풋옥수수를 직접 수확해서 찜떡고 구워먹기 체험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수박, 참외 등의 농장을 조성하고 원두막을 지어 현지에서 판매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보완적 기능의 농업적 프로그램 수행이 가능하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체험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뿐만 아니라 마을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도입이 절실하다.

## (5) 비즈니스 모델

어촌체험마을사업에서 체험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ダイナミック한 동적 체험의 존재여부와 그 강도에 있다. 갯벌의 생태자원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유지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체험자원의 관리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 역으로 성공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촌체험마을사업은 결국 이러한 능력을 갖춘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송계마을은 먼저 천혜의 지속가능한 갯벌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성공요인의 포인트가 되고 있다. 삼면이 바다이고 배후에 함평만의 큰 내만과 서해바다로 연결되는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양한 해양생태자원들이 이동하는 길목을 형성하고 있는 천혜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언제든지 방문하는 체험객들에게 오감을 만족할만한 성취감을 주기 때문에 특



별한 홍보전략이 없어도 입소문으로 홍보가 활성화되고 있고, 재방문자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잠재적 역량과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좋은 먹거리와 편한 잠자리 문제만 해결되면 체류형 고급형 체험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송계마을의 경우도 기존의 어촌주택들은 이러한 요구에 부족함이 많다. 따라서 펜션형 어가주택으로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경우 보다 더 좋은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인허가상의 제한사항이 있는 지역에서 배려와 규제완화 조치를 자치단체가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 3. 우수사례의 특징 및 유형화

#### 가. 우수사례의 유형화를 위한 검토

앞서 수산업·어촌의 각종의 우수 비즈니스 사례에 대해 그 특징적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비즈니스 모델 사례를 유형화하기 위해 몇 가지 핵심적 사항을 중심으로 재검토 하였다. 우선 앞서 검토한 우수 사례들의 사업적 원천을 어촌지역의 본업인 수산업 혹은 수산물에 두고 있는지, 혹은 이와 달리 본업이 아닌 어촌지역의 수계(水界)·관광 자원 등에 두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특히 똑같은 수산물의 판매를 목적으로 공동 판매시설을 사업화 대상으로 하더라도 해당 수산물의 판매가 본업인 해당지역 어업인의 어획물 혹은 양식생산물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수산업연계 비즈니스 모델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활어등의 판매가 관광객 등의 유치를 위해 다른 서비스등과 함께 먹거리 제공을 위한 시설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자원(관광자원 및 수자원 포함)을 활용하는 어촌자원연계형 비즈니스 모델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로는 전복 및 활어 판매를 위한 수단으로서 공동판매시설(위판장등)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수산업연계 비즈니스 모델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물치어촌계의 사례처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소매판매하는 사업은 어촌자원연계형 비즈니스 모델로 분류하였다. 이들 어촌계원들이 직접 어획한 수산물을 공동회센터에서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해당 어촌계 주변의 어항시설, 수계 및 관광자원 등이 소비자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촌자원 연계형 사업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 나. 우수사례의 비즈니스 유형 및 특징

다음은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앞서 검토했던 우수사례들을 대상으로 그 특징을 요약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 결과에 따르면, 고창영어조합, (주)일성수산, 유명수산영어조합, 디노빌영어조합, 광천수산영어조합, 미라자울관리어촌계, 정자어촌계 등은 수산업에서 사업화의 원천을 이용하되 주로 해당 사업체 기능을 다양한 측면에서 차별화·비용절감 등을 추진하는 ‘수산업연계 공급자특화형’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그러나 곶소젓갈, 중앙씨푸드, 참바다영어조합 등은 수산업과 연계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되, 주로 수요 측면의 강점을 집중 강화시키는 ‘수산업연계 수요특화형’ 비즈니스 모델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저도, 송계, 물치어촌계는 어촌자원을 연계하여 자체적인 지역사업화를 추진한 사례로 분류되고, 선감어촌계는 인근 배후소비지를 겨냥하여 사업화 전략을 추진하는 배후시장활용형 비즈니스 모델로 분류할 수 있다.

[표 3-3-55] 수산업·어촌의 경영체 사례별 비즈니스모델 유형

우수 사례 경영체	소재지	특징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		
		개인의 자본 규모	경영 형태	세분류 유형	약어	대분류 유형
고창영어조합법인	전북 고창	중규모	오너경영	지역특산물활용형	FS-P/O	수산업연계공급자 특화형 (FS)
(주)일성수산	경북 영덕	중규모	오너경영	지역특산물활용형	FS-P/O	
유명수산영어조합법인	전남 영광	소규모	오너경영	지역특산물활용형	FS-P/O	
디노빌영어조합법인	경남 함양	대규모	오너경영	신제품·신기술도입형	FS-T/O	
광천수산영어조합법인	충남 보령	중규모	오너경영	생산·판매 통합형	FS-I/O	
(주)아침가리	전남 진도	중규모	오너경영	생산·판매 통합형	FS-I/O	
미라자울관리어촌계	전남 완도	소규모	협동경영	공동판매형	FS-JS/C	수산업연계시장 특화형 (FD)
정자어촌계	경남 울산	소규모	협동경영	공동판매형	FS-JS/C	
(주)중앙씨푸드	경남 거제	중규모	오너경영	브랜드차별형	FD-IB/O	
곶소젓갈	전북 부안	소규모	협동경영	공동브랜드형	FD-JB/C	어촌자원연계 지역사업화형 (PS)
참바다영어조합법인	전북 고창	중규모	오너경영	물류혁신및네트워크형	FD-N/O	
저도어촌계	경남 사천	소규모	공동경영	자원연계지역사업화형	PS/A	
송계어촌계	전남 무안	소규모	공동경영	자원연계지역사업화형	PS/A	어촌자원연계배후 시장활용형(PD)
물치어촌계	강원 양양	소규모	협동경영	자원연계지역사업화형	PS/C	
선감어촌계	경기 안산	소규모	공동경영	자원연계배후소비지활용형	PD/A	

다른 한편, 경영형태 측면에서 볼 때 저도, 송계, 선감 어촌계의 비즈니스모델은 사업화의 성격이 핵심 아이템(체험장 조성 등)을 공급하는 ‘공동경영’(Associated management : A)의 형태를 갖추고 명시적으로 공동체에 사업화의 모든 것을 귀속시키되 성과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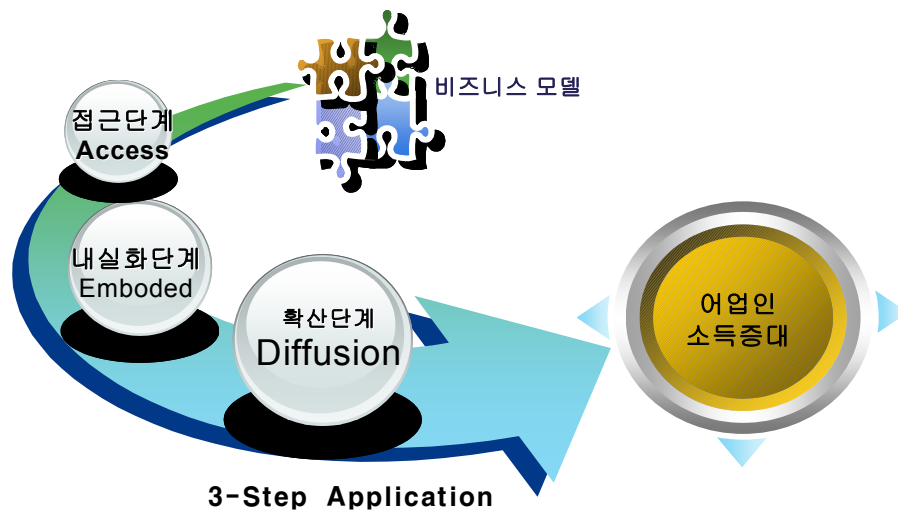
그러나 사업화의 성격이 주변 기능(시설 관리, 공동브랜드의 관리 등)에 국한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들(미라, 정자, 물치어촌계원, 곰소젓갈 회원)이 여기에 가입하여 일정 분담금을 지불하되 각 사업의 수행 및 성과는 개인사업자에게 귀속되는 ‘협동경영’(cooperative management : C)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 제4절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의 현장활용 및 확산방안

### 1. 현장활용 시스템의 개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산·어촌 분야의 우수 경영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그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최근처럼 국내외 수산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어업인들의 다양한 소득증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우수 사례 연구 결과를 실제로 현장에 활용(application)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된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의 우수 사례를 적극 활용하고자 ‘접근성’, ‘내실화’ 및 ‘확산 단계’로 구성되는 다음과 같은 3단계 활용방안(3-step application)을 제시하였다.



[그림 3-4-1] 비즈니스 모델의 3단계 활용 방안

첫째, 접근성 제고 단계로서 비즈니스모델을 정착 이용하고자 하는 어업인들이 이와 같은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사업화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소프트웨어화 하드웨어 차원에서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

이때 하드웨어 접근수단이란 어업인들이 다양한 수산·어촌 비즈니스 모델 유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접근지원 수단을 말한다. 이와 같은 장치로는 새로운 아이템을 물색하거나 창업을 추진하려는 어업인들이 손쉽게 이와 관련된 정보와 지원서비스에 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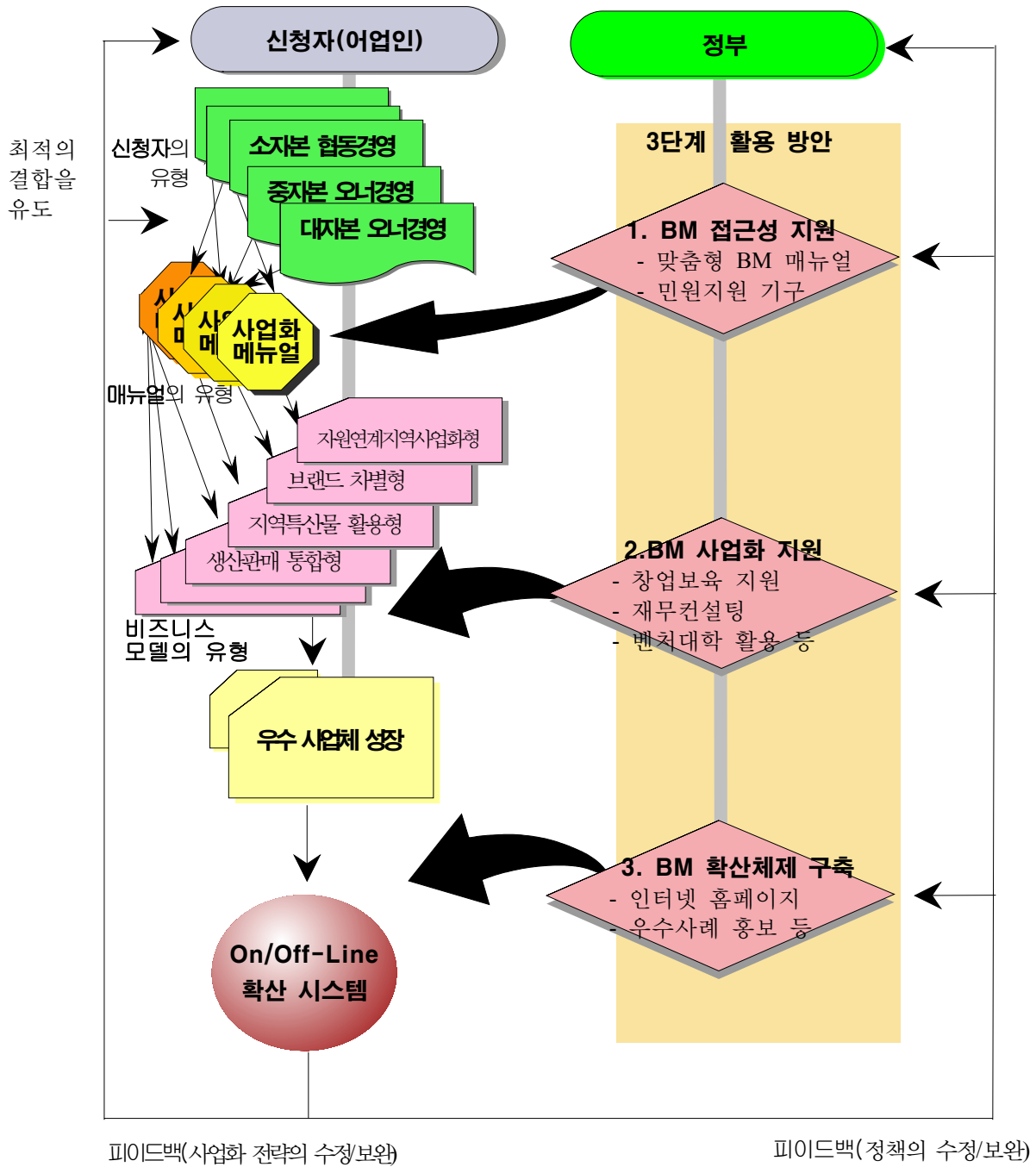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각종 창업지원 기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른 한편 소프트웨어 접근수단은 실제로 창업을 하려는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정보와 사례들을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향후 창업시 유용하게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정보 체계를 말한다.

둘째, 비즈니스 모델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내실화·체계화(embodied)하는 단계로서, 초기 사업화를 위한 인큐베이팅 지원체제 구축, 재무컨설팅, 판매지원 체제 구축 등을 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해당 비즈니스 모델의 정착 및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

셋째, 사업화 정착에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을 더욱 확산시키는 단계로서, 성공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이를 어업인들에게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3단계 활용방안을 거쳐 궁극적으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단계적 활용 방안에 기초하여 수산어촌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추진 및 정책적 지원체제의 전체적 흐름을 도식화한 것이 다음의 [그림 3-4-2]이다. 따라서 이 Flow-chart에는 사업화 주체인 ‘신청자’와 정책의 주체인 ‘정부’의 입장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현실적 활용과 연계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단계별 내용에 대해 개괄하였다. 이하 본 연구에서는 이 흐름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의 현실적용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3-4-2]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및 3단계 지원체계 개요

## 2. 비즈니스 모델의 접근성 제고 방안

최근 수산업의 국내외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많은 어업인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와 함께 상당수의 어업인들도 자신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수산업·어촌과 관련된 사업 기회가 제공될 경우, 적극적으로 전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잠재적 전업어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어업소득 이외의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러나 잠재적 전업 어업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란, 대부분 수산업과 관련된 경험과 어촌 지역에서 천혜로 물려받은 자연자원 등이 전부이다. 따라서 앞서 시도한 우수 경영체 사례분석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들 어업인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희망하는 어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쪽의 정책 수단들을 모두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매뉴얼을 구축(Software)하여 전업 어업인들이 손쉽게 사업화 단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또한 이와 같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의 창업정보 지원 시설(Hardware)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가.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매뉴얼(Software)

#### 1) 사업 희망자의 유형화

우선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어업인에게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 신청자의 특성에 따라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희망자 특성으로는 우선 이들 사업 희망자가 동원할 수 있는 사업 초기 자본금의 규모이다. 즉 신규로 추진할 사업 분야와 전략추진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창업자 자신의 동원 가능한 자본금의 규모이기 때문이다.

[표 3-4-1] 창업 희망자의 초기 투자자본금 규모 유형

구 분	초기자본규모	소규모 자본 (5천만원 미만)	중규모 자본 (5천만원~5억원)	대규모 자본 (5억원 이상)	비고
대형설비·신기술 투자		×	△	○	
공동체 사업		○	△	×	
네트워크형 사업		○	△	△	

주: ○는 추진이 용이함, △는 추진 가능함, ×는 추진하기가 곤란함



이와 함께 각종의 비즈니스 사례 분석에 따르면, 각 사업체마다 경영형태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화 추진 방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자본을 투하하는 사업자가 직접 경영하는 ‘오너경영’ 형태의 경우, 그 사업행위를 위한 투자비용 및 매출 성과 등은 전적으로 해당 어업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사업화 원천이나 재원이 공동의 소유이거나 공공재인 경우는 적합하지 않다.

다시 말해 어촌계 등의 공동체가 운영하는 ‘공동경영’ 방식의 경영형태 하에서는 생산 및 수익창출이 공동조직에게 귀속되고 사후적으로 그 성과를 소속 회원들간에 배분한다. 또한 일부 기능에 대해서는 회원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수행을 하더라도, 생산 및 수익의 창출은 개인회원에게 귀속되는 ‘협동경영’ 방식은 ‘오너경영’ 형태와 유사하지만, 공동의 기능 수행을 위해 공동 관리 하에 있는 사업화 원천 혹은 지원 기능에 대한 보답으로서 일부 분담금을 각출해야 할 것이다.

[표 3-4-2] 창업 희망자의 경영형태별 특징

구분 \ 경영형태	오너경영	협동경영	공동경영	비고
생산 및 수익창출	개인(오너)	개인(회원)	공동체	생산과정의 주요 기능
공동의 기능(관리등)	-	공동체	공동체	공동판매 시설 관리, 공동브랜드비용 등
특징	개인에게 생산비용 및 수익귀속	개인에게 생산비용 및 수익귀속 단 공동관리 기능은 공동분담	공동체에게 생산비용 및 수익귀속 사후 수익배분	

이제 이와 같은 창업 희망자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즉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 시작하려는 신청인들은 다시 소규모 초기 자본금(5천만원 미만)을 가지고 직접 경영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는 사업 희망자 유형(Type 1), 마찬가지로 소규모 초기 자본금만 가지고 일정분야의 기능은 어촌계(혹은 공동어시장)등의 공동체에게 위임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 희망자 유형(Type 2), 소자본으로 공동경영을 추진하려는 사업 희망자 유형(Type 3)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5천만원 이상에서 5억원 미만의 초기 자본금을 가지고 직접 경영하려는 사업 희망자 유형(Type 4), 5억원 이상의 대자본 오너경영형(Type 5) 등을 추가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 2) 창업 희망자 유형별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매뉴얼

이제 본 연구에서는 창업 희망자의 유형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을 통한 사업화 추진시 창업 희망자의 여건에 알맞은 맞춤형 사업화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세부적으로 사업화 추진을 위한 매뉴얼의 주요 수록 내용과 활용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해당 유형의 매뉴얼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표 3-4-3] 창업 희망자의 유형별 비즈니스모델 사업화 매뉴얼

유형		특징	비고
창업자 유형	매뉴얼의 유형		
소규모자본 오너경영형	M 1	5천만원 미만의 자기자본. 창업희망자 자신이 직접 경영	
소규모자본 협동경영형	MI 2	5천만원 미만의 자기자본 일정 분야의 기능은 어촌계등의 공동체와 협력	공동 판매기능(시설, 업무 등)을 어촌계 / 수협 등에게 위임
소규모자본 공동경영형	M 3	어촌계등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공동 경영 추진 (자기자본은 5천만원 이내)	주로 어촌계 추진 사업(체험장운영 등)
중규모자본 오너경영형	M 4	5천만원~5억원 규모 자기자본으로 창업희망자가 직접 경영	
대규모자본 오너경영형	M 5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으로 직접 경영	대규모 시설투자 등 기타 경영형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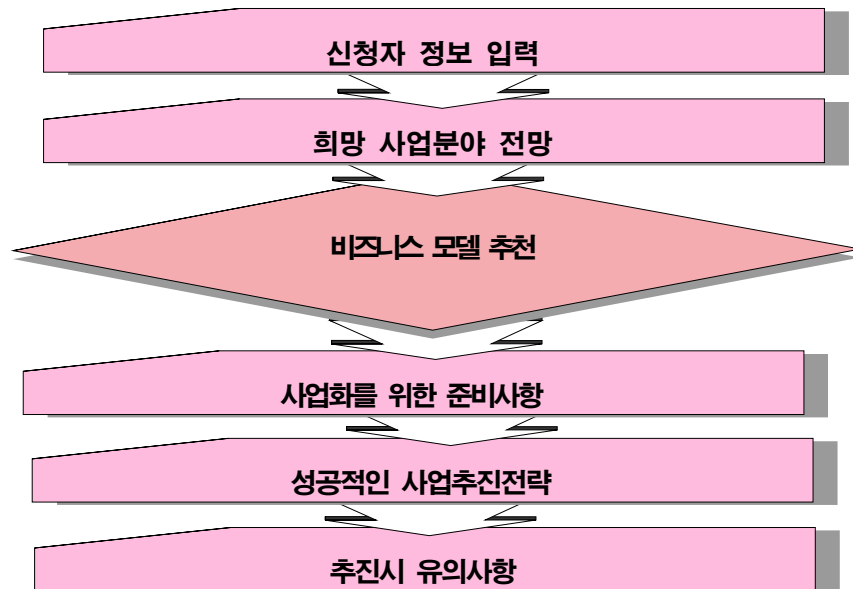
예컨대 소규모 자본을 보유한 사업신청자가 오너경영형 경영패턴을 선호한다면 「M1」 매뉴얼을 참조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을 추천받을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사업화 추진 시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 창업하고자 하는 신청 희망자는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매뉴얼」에 따라서 사업화 계획을 수립하여 초기 사업화의 각 단계를 준비해 가면 될 것이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매뉴얼」 내용 중에는 신청자가 희망하는 사업분야에 대해 신청자가 입수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개괄적인 분석과 전망을 기재토록 함으로써,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조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 수록되었다. 이와 같은 희망 사업분야 관련 사항으로는 잠정 사업화 품목의 국내외 경쟁 현황(혹은 전혀 새로운 신제품 여부), 관련 기술 혹은 노하우 등의 보유 여부, 판매처 및 판로 관련 대책, 투입요



소의 확보 가능성, 그리고 종합적인 경영위험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신청자의 역량과 사업 아이템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매뉴얼」은 해당 신청자에게 알맞은 비즈니스 모델을 추천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동「매뉴얼」에는 실제 사업화 추진 시 준비사항 및 성공적인 사업추진 전략 등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등도 제시하여 경영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을 참조하면 된다.



[그림 3-4-3] 비즈니스모델 사업화 추진을 위한 「매뉴얼」의 내용 구성

#### 나. 창업정보 지원 시설(Hardware)

앞서 살펴본 바처럼, 창업을 지원하는 어업인들을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추진을 위한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창업정보도 적절한 지원시설이나 조직 등을 통해 적시에 이를 찾는 어업인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창업지원 비즈니스 모델 매뉴얼과 함께 창업정보 지원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창업정보 지원 기구 혹은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내의 창업정보 지원 및 알선조직 설치
  - 지방해양수산청(수산사무소), 지자체 민원지원부서

- 지역 수협 내 창업지원팀 운영
- 전문연구기관의 컨설팅 사업 활용
- 관련 정보를 수록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 3.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지원 방안

#### 가. 비즈니스 모델의 창업보육 지원

수산기업 창업보육의 주요 목적은 기업발전 단계상 가장 취약한 시기인 창업 전후단계의 기업에게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여 보육 이후 기업 스스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기업의 생존율과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Smilor(1986)는 ‘보육’이란 신생기업의 발전에 유리한 ‘부화’를 위해 ‘처방되고 통제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및 의지를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창업보육시스템은 신생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통제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sup>12)</sup>

이러한 창업보육 기능은 195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어 주요 국가의 일반화된 창업보육 시스템으로 정착된 창업보육센터가 담당한다. 창업보육센터는 시설·설비, 사무·행정지원, 일반경영·마케팅·회계·재무·법률 등 각종 경영자원, 다양한 기술자원을 제공하고 창업자는 그들의 에너지를 조직의 경영이나 자금조달보다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더욱 힘을 쏟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창업인프라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998년부터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6년 말까지 총 2,330억 원을 투입하여 265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일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가 맡고 있으며<sup>13)</sup> 해양수산부는 아직 없다. 부처마다 중복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 2006년 이후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운영주체는 주로 대학·연구기관으로 수익 창출보다는 경제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한 공공 목적의 성격을 띤다.

수산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어업인도 이러한 기존의 창업보육센터를 활용하면 바람직하다. 실제로 일부 어업인은 이를 활용하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창업보육센터가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수산기업체의 사업 현장

12) Raymond W. Smilor, Michael Doud Gill, Jr, The New Business Incubator, Lexington Books, 1986.

13) 농림부의 경우 창업보육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정·관리는 중소기업청이 하고 있다.



이라 할 수 있는 어촌지역에 있는 창업희망자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기술이나 정보 등을 쉽게 얻기 어렵다.

따라서 전국 연안에 걸쳐 있는 어장(육상 양식장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수산업의 특성상 어업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산업이 융성한 시·군·구에 지역특산품목이나 지역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수행, 정보제공, 컨설팅기능을 담당하는 ‘수산기업창업보육센터’를 개발하고, 지역 내 어업인과 주민들의 창업보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산 관련 국·공립연구소, 지방대학 등에 직접 수산업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인근의 해양수산사무소와 연계하여 수산기업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수산기업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지원이나 벤처캐피탈을 통한 투자 활성화 등으로 이들 업체가 창업보육 후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갖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나. 벤처대학의 활용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을 내실화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공동으로 수산업 경영자의 재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완도군은 2007년 2월 수산벤처대학을 설립하고 그 운영을 조선대학교로 하여금 담당케 하여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센터에서 교육장소 제공 및 학사일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수산벤처대학의 교육과정은 1년으로, 연 12회, 24일간 교육하며, 교육비는 완도군과 전라남도가 공동 부담한다. 1기 신입생 46명은 전원 수산업 경영체를 경영하는 사람들로써 벤처 창업지원, 경영, 마케팅, 수산정책 정보공유, 성공사례소개 등 실무중심의 과정을 교육받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해양수산부가 각 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경영·마케팅 관련학과에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관련과정의 개설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수강하는 수산업 경영자들에게 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수산업·어촌 경영자의 경영·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수산업·어촌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각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수산업 및 수산경영관련 정규과정 또는 최고경영자과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어촌관광 비즈니스 분야와 관련한 과정은 각 대학의 관광경영 관련학과와 연계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시·도에는 신규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부산, 경남, 전남, 전북, 강원, 제주지역의 7개 대학에 18개의 수산업 및 수산경영관련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표 3-4-4] 지역 대학별 수산업 및 수산경영관련 과정 개설현황

지역	대학교	과정
부산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수산과학대학 수산해양생명과학과군 양식학과
		수산과학대학 해양산업경영학부
		산업대학원 수산양식학과
		산업대학원 테크노CEO과정
		일반대학원 수산해양학연합동과정
경남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수산경영학과
		해양과학대학부설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전남	전남대학교	식품·수산생명의학부 해양식품공학전공
		수산해양대학원 양식생물학과
		수산해양대학원 해양생산관리전공
		수산해양대학원 해양식품공학전공
	목포대학교	산업기술대학원 해양수산자원전공
전북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생산전공
강원	강릉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해양식량공학전공
		생명과학대학 해양자원육성전공
	강릉도립대학	해양생명과학과
제주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부설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

#### 다. 우수경영자 지원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의 활성화

정부 혹은 제3의 민간기구가 정기적으로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경진대회 및 성공사례 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수산업·어촌 비즈니스의 성공을 독려하고 우수경영자를 다각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분야별 우수경영자를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상금보다는 우수경영체의 경영자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하는 공로패를 수여하여 명예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자사의 상품포장에 「우수경영자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상품홍보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선정된 업체의 비즈니스모델은 성공사례집 발간을 통해 전국의 수산업·어촌분야 경영인들의 경영 및 마케팅 교재로 사용될 것이다.

또한 우수경영체로 선정된 업체의 상품에 대해서는 해외박람회 참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우수수산물의 수출을 장려하는 것도 수산업·어촌 비즈니스모델을 확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수출지원은 전문인력 상시고용이 어려운 수산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번역전문가 지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수출지원자금 대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수상자들간의 친목모임인 “수산업·어촌 우수 CEO 커뮤니티”의 결성과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수산업·어촌분야의 우수 경영인력을 관리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의 회원들은 시장정보와 경영전략 및 노하우의 공유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축은 수산업·어촌관광업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킬 것이다.

한편, 선발된 우수경영자는 자신의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자기만족과 명예심을 갖게 되어 한 업체 또는 한 어촌계의 지도자에서 수산업·어촌분야의 지역 지도자로 성장할 것이며, 이들 지역전문가 그룹은 이후 수산업과 어촌지역사회에 더욱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 라. 재무컨설팅 지원체제 구축

재무컨설팅은 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통해 자금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경영계획을 직·간접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영부실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경영관리에 도움을 주는 금융서비스활동이다. 이러한 재무컨설팅은 경영주가 매출규모, 투입경비, 자금흐름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유사업종과의 평균치와도 비교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느 비용을 줄이고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현재 농업부문에서는 농업투자의 효율성과 경영체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민간전문컨설팅을 통해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sup>14)</sup> 또한 농협이 주축이 되어 효율적인 농장 재무관리 컨설팅을 통해 농가 경영개선을 지원하고자 “농장 재무컨설팅프로그램(Farm Financial Consulting Software ; FFCS)을 개발하였으며, 농협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전문 컨설턴트가 농장을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부문의 경영(재무) 컨설팅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국제경쟁력

14)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농가신청에 의해 컨설팅 대상농가를 선정하며, 민간컨설팅공급업체를 지정, 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한 후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보조(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원예·특작, 축산분야 농가, 국산 이용 농산물가공업체, 산지유통센터, 미곡종합처리장, 쌀전업농 등이다.

을 갖춘 전문 경영체의 육성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향후 수산부문의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내실화 지원방안으로 경영체 단위별 재무컨설팅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며, 그 주요 내용으로 신규투자의 투자타당성 분석, 정밀 경영진단 및 처방, 향후의 경영설계 및 체계적 재무관리, 재무위험분석, 자금 조달 및 운용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 이상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안들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컨설팅 업체의 난립 및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가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컨설팅지원업체 등록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 어민단체, 학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산부문 컨설팅업체인증위원회(가칭)’의 구성을 통한 전문 업체의 컨설팅 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실효성있는 재무 컨설팅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산자금 대출과 경영(재무)컨설팅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경영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협중앙회의 역할 제고 방안 혹은 이에 상당하는 ‘전용펀드’를 설정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통상 자주 언급되는 방안으로서 수협자체의 예산운용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소요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 후자의 경우는 사실상 수산업·어촌 분야의 본격적인 ‘사업화’ 추진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철저하게 상업적 기준에 따라 외부의 금융자본을 유치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신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추진을 담보로 소위 ‘뮤추얼펀드(mutual fund)’ 방식의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조성하여 투입하되, 기대수익률 및 사업위험 등에 있어서 다른 부문과의 절대적인 갭이 존재할 경우 이를 메울 수 있도록 수협중앙회 및 정부 등이 일부 자본에 참여하여 원활하게 Fund raising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셋째, 경영(재무)컨설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예산지원이 절실하다. 최근 WTO/FTA 등의 수산물 시장개방, 유류비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압박으로 수산경영체의 경영여건은 매우 악화된 상황이므로 컨설팅 비용의 자부담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부 컨설팅 비용을 부담하여 사업화 추진시 실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 마. Marketing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

모처럼 새로운 사업체가 출범하여 경영체제가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상품이 판매되어 자금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이와 같은 기능이 사업체 단위에서는 마케팅활동이라 할 수 있다. 신규 사업체의 마케팅 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산분야의 마케팅 환경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 공적인 지원체제가 충분히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그중 첫째가 마케팅관련 정보를 축적·제공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들 중 제공 가능한 마케팅 관련 정보로는 마케팅 관련 기본 지식,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매뉴얼, 우수사례/기업의 마케팅 컨셉과 사례, 국내 및 해외시장 확보 전략(사업성 검토, 스폰서십, 파트너십 활용, 홍보 및 광고전략, 기타 특별한 경영 전략) 등에 관한 정보들로서, 이들 정보는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 및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Marketing 정보 제공체제 구축은 on and off line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많은 창업자가 이를 벤치마킹 하려면 현실적으로 동감할 수 있도록 정확한 DB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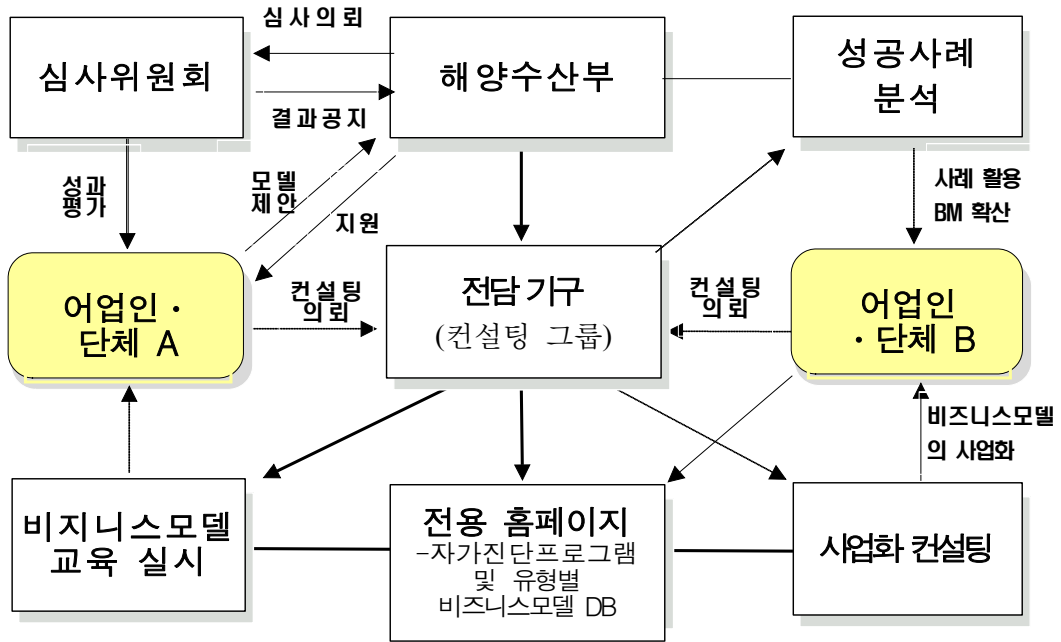
둘째, 수산업·어촌 분야 창업자의 여건과 특성상 마케팅 분야는 사실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비용과 네트워크의 활용차원에서 효율적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공동 마케팅 기구 신설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4. 확산체제 지원 방안

### 가. 초기 관리체제의 구축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 지원체제 구축은 기존에 성공했던 사업사례를 단순히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러 성공사례들의 핵심 성공요인들을 유형화하고 그 실질적 활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별 어업인 또는 어촌계가 개별적인 수익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핵심성공요인들을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창업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추어 적용하는 시스템 및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림 3-4-4]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지원을 위한 초기 관리체계의 구축(단기)

따라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구축 사업이 일회적인 사업으로 끝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모집하고 심사·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앞서 제시한 3단계의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지원정책을 총괄적으로 계획·추진 및 확산시키는 제도화 도입 초기에는 BM 전담 관리기구가 어떤 형태로든 구축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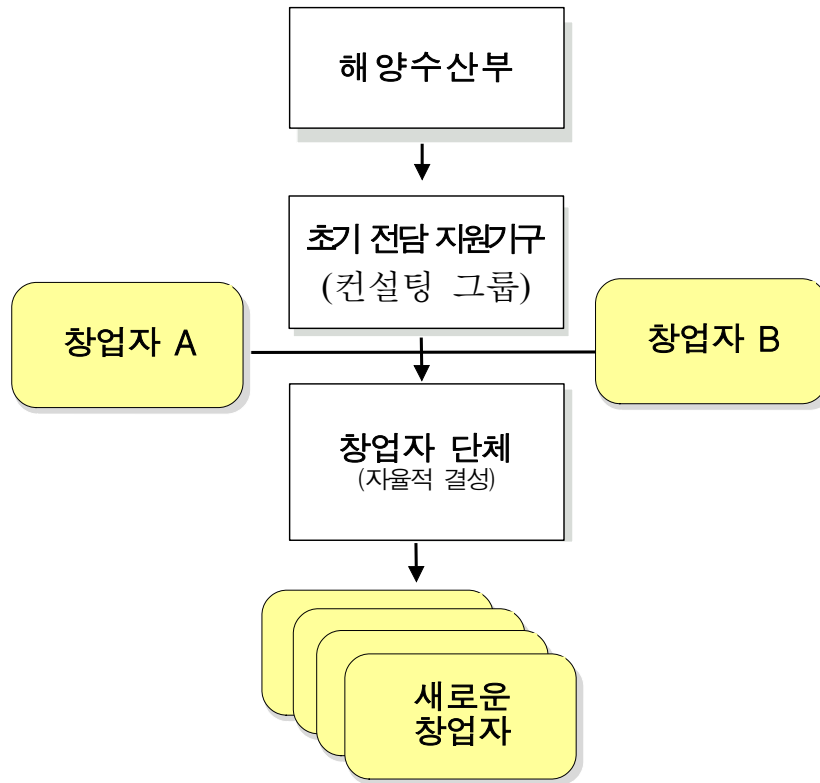
이에 비즈니스 모델 지원사업 초기 단계에는 소위 ‘BM전담관리기구’(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기구는 업계가 스스로 결성되기 이전에는 정부, 창업인, 그리고 비즈니스 환경 등의 중간에서 객관적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창업인에게 유용한 비즈니스모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그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유도를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수산업·어촌 지역의 비즈니스 활성화에 적극 기여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나. 지속적인 BM 홍보 및 확산전략의 추진

사실상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사업은 우리나라 수산업·어촌 지역의 원활한 구조조정 촉진과 어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중대한 정책 수단이므로,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더욱 많은 어업인 및 신청자들이 더욱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끊임없이 창출해



야할 것이다. 개방화·세계화 시대에는 끊임없이 창출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만이 블루오션(Blue-Ocean) 전략을 가능하게 하므로 동태적 경쟁에서 항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림 3-4-5]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 확산전략 추진(중장기)

따라서 비즈니스모델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홍보 및 확산정책의 목표도 소극적으로 기존의 성공적 비즈니스모델 사례를 모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례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On/Off-Line의 각종의 BM 홍보 및 확산전략은 정책적으로는 일단 정부가 후견인 역할을 하되, 어느 정도 도입된 이후에는 창업자 단체 형성을 통해 업계가 스스로 홍보 및 확산전략을 추진해가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다.

## 제 4 장

# 수산벤처산업 활성화 전략과 육성방안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수산벤처 현황과 비활성화 원인
제 3 절	농업부문 벤처활성화 사례와 시사점
제 4 절	수산벤처산업 활성화 전략 및 육성방안
제 5 절	벤처기업 등록 절차





## 제1절 개 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지식과 정보의 이용이 고도화됨에 의해 소자본으로 출발한 기술 집약형 기업군의 성장은 벤처라는 이름으로 산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21세기 수산업 역시 생산위주의 1차 산업에서 탈피하여 생명공학과 연계한 고차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수산물수입 개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수산업이 생존·발전할 수 있는 주요한 대안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생명 공학적 기술력의 우위와 축적된 자본과 정보망,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의 개발로 벤처산업화한다면 가격경쟁력의 열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산벤처 산업의 육성과 발전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산 관련기업인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기업이 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보다 빨리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벤처산업이 자리 잡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동시에 튼튼한 기반구축에 소요되는 자본을 영세한 수산업 경영인이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 장은 수산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과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수산벤처의 현황 및 육성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수산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수산벤처 기업의 경영현황 및 애로점 등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수산벤처 육성정책 검토, 설문조사결과 그리고 수산벤처기업 경영자와의 면담조사 등을 통하여 수산벤처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즉 수산벤처의 비활성화 원인을 도출하였다.

한편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분야의 벤처활성화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수산벤처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는데 참고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이 연구의 결론으로 수산벤처산업 육성전략과 추진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벤처기업 등록 절차를 제시하여 수산벤처를 시작하고자 수산업 경영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특히 향후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수산업 경쟁력 강화측면에서 수산벤처산업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정부의 지원방안으로 기술지원, 창업지원, 창업보육사업지원, 경영지원, 금융지원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활성화전략 및 지원방안에 입각하여 세부계획과 이를 단계별로 추진하는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향후 해양수산부의 수산벤처산업 육성정책과 관련 사업지원에 본 연구결과가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2절 수산벤처 현황과 비활성화 원인

### 1. 수산벤처기업 현황

#### 가. 벤처기업의 정의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이란 고도의 전문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창조적, 모험적 경영을 전개하는 중소기업을 말하는데, 주로 전자 및 정보기술(IT : information technology)분야와 생물공학(BT : Bio-technology)분야에서 활발한 성장을 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정의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특별히 없다.

최초 미국에서 사용된 벤처기업(Venture Business)이라는 말은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사업,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등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 나. 벤처기업의 유형과 조건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벤처법) 제2조의 2에 의하면 “기술 및 경영 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벤처확인유형별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벤처기업의 확인유형별 요건은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다.

2006년 06월 벤처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벤처기업의 유형을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신기술개발기업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었으나 동법 개정 이후 신기술개발기업이 폐지되는 대신 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평가대출기업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유형에 관계없이 2년이던 벤처기업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단축(연구개발기업 제외)하였다.

이후 2007년 4월 「대통령령 제20029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의해 벤처기업확인의 유효기간이 벤처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1년으로 단일화되었다.

[표 4-2-1] 벤처기업 유형의 변화

구 분	2006.06.04 개정이전	변 화	2006.06.04 개정이후
유형 유효기간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2년	⇒	벤처투자기업 1년
유형 유효기간	연구개발 투자기업 2년	⇒	연구개발기업 2년
유형 유효기간	신기술개발기업 2년	폐지	-
유형 유효기간	-	신설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1년

벤처법의 개정이후 벤처기업의 유형과 기준요건 및 벤처확인기관 등을 정리한 것이 [표 4-2-2]이다. 벤처 유형은 크게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그리고 예비벤처기업의 4가지로 구분된다. 이러한 벤처유형은 기준요건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확인기관이 유형별로 정해져 있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벤처법에서 정하는 기준요건을 갖추어 확인기관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기준요건은 벤처법에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각 유형의 특성에 맞게 기준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벤처투자기업의 경우는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금액이 주된 기준요건이 되며, 연구개발기업은 연구에 필요한 인프라를 주요 기준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예비벤처기업을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벤처기업 활성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준요건을 확인하는 기관으로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있는데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투자기업의 기준요건을 확인하는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다. 나머지 3개 유형의 벤처기업은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확인기관으로 하고 있다([표 4-2-2] 참조).



[표 4-2-2] 벤처기업의 유형과 기준요건 및 확인기관(2006년 6월 개편)

벤처유형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	확인기관
<p>유형1 벤처투자기업</p>	<p>(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문화상품제작자의 경우 자본금의 7%이상) ※벤처투자기관 창업투자신탁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주), 신기술금융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기업은행, 산업은행</p> <p>(2) 투자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것</p> <p>(3) 상기 (1), (2)의 투자내역을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의 직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할 것</p>	<p>한국벤처 캐피탈협회</p>
<p>유형2 연구개발기업</p>	<p>(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필수)</p> <p>(2) 창업 3년 이상의 기업인 경우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 창업 3년미만 기업의 경우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인 기업(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p> <p>(3)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은행)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p>	<p>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p>
<p>유형3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p>	<p>(1)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 기술보증기금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지원자금, 중소벤처창업자금 및 경영혁신자금중 시설개선자금과 지식기반서비스육성자금을 한함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공통 : 개정법 시행일('06. 6.4)이후 보증 및 대출에 한함</p> <p>(2) 상기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단, 10억이상 보증(대출)시 비율적용 배제)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p> <p>(3)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p>	<p>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p>
<p>유형4 예비벤처기업</p>	<p>(1) 벤처기업 창업을 위한 법인설립,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창업 후 6개월 이내인 자</p> <p>(2) 상기 (1)의 준비 중인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p>	<p>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p>



## 다. 수산벤처기업 현황

일반적으로 수산벤처기업은 수산업 생산 및 가공·유통관련 분야에서 생명공학 또는 첨단기술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산기업이라 할 수 있다. 즉 수산생물 포획 및 양식이라는 1차 생산의 개념이 아니라 가치창출의 원천이 기술·아이디어·정보 등 지식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한 수산기업을 수산벤처기업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벤처법에 의한 기준요건을 충족하는 즉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수산벤처기업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수산기업의 벤처등록은 매우 저조하여 우리나라 전체 벤처등록기업 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표 4-2-3] 참조). 해양수산부 내부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2월 현재 수산벤처기업을 포함하여 해양수산 벤처기업은 204개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12,218개 벤처기업의 약 1.7%에 해당한다. 이중 수산관련 벤처기업은 48개이다.

[표 4-2-3] 해양수산벤처기업 현황(2006년 12월 기준)

구 분	벤처기업 업종							총 계
	제조업	건설·운수업	정보처리	연구개발	도소매	농·어·임·광업	기타	
전체기업수	8,781	235	2,189	450	175	52	336	12,218
해양수산벤처	155	8	12	14	2	4	9	204(1.7%)
수산벤처	40	0	0	2	2	4		48(0.4%)

자료 : 해양수산부

한편 2007년 9월 현재 벤처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수산업관련 벤처기업의 수는 63개이며, 업종별로 수산식품 제조가공업 34개로 가장 많고, 양식관련 10개 업체, 수산관련 기기 제조업 13개 업체, 기타 6개 업체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표 4-2-4] 참조). 이들 수산관련 벤처기업의 특징은 주로 대부분 수산식품제조가공업이며, 양식 및 종묘생산이 소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에 있어서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벤처기업을 볼 수 있다.



[표 4-2-4] 수산업 관련기업의 벤처등록 현황(2007년 9월 기준)

업 종		등록 벤처기업
수산식품 제조가공업	수산동물가공 및 저장처리업	12
	식용해조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12
	원료 및 건강보조식품 제조업	10
양식(관련)업	양식 및 종묘생산	4
	사료 및 먹이생물 제조업	6
수산관련 기기제조	수산식품 가공기계 제조업	8
	어구 및 양식용 자재 제조업	5
기타	얼음제조업	1
	어류질병소독치료제 제조업	1
	어군탐지기 제조업	1
	양식어장 퇴적물 정화처리	1
	수산물생산이력시스템	1
	홍조류이용 펄프 제지 제조업	1
계		63

자료 : 벤처통계시스템 (www.venturein.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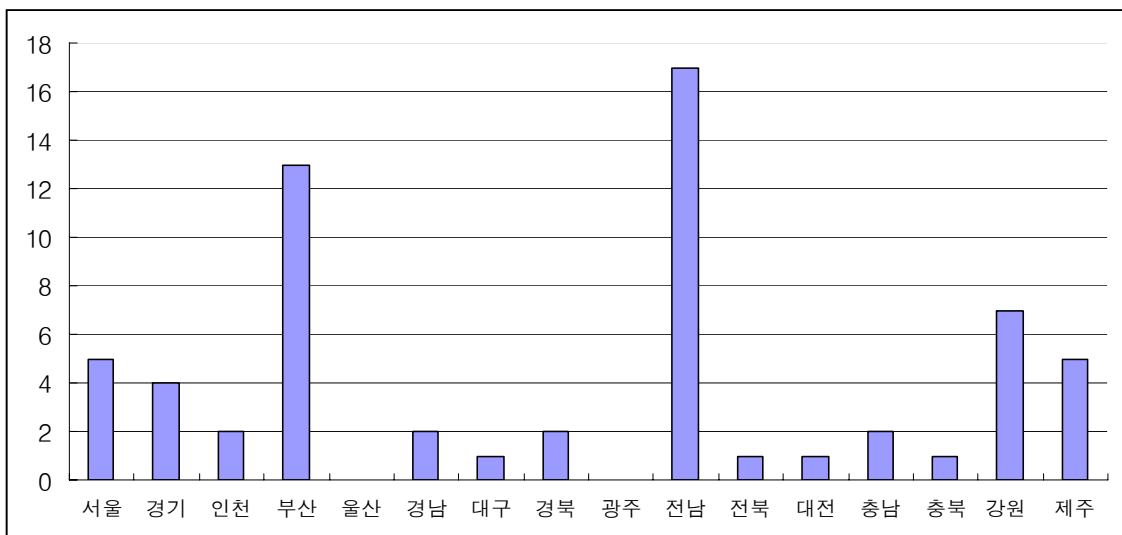
한편, 전체 63개 수산벤처기업의 벤처등록(확인)유형을 보면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이 35개 업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신기술기업이 24개 업체로 그 뒤를 잇는다. 신기술기업 중에는 특허기술과 고도기술 기반산업의 수가 타 유형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이로 미루어 우리나라의 수산벤처기업은 주로 제조업 및 가공업 관련기업으로,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에 근거하여 벤처등록을 하였으며, 벤처캐피탈에 의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4-2-5] 수산벤처기업의 유형별 등록현황(2007년 9월 기준)

확인유형		등록 벤처기업
신기술기업	이전기술	1
	고도기술 기반산업	8
	중앙행정기관출연 연구개발기술	6
	특허기술	7
	산업지원 서비스업	2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기술보증기금	34
	중소기업진흥공단	1
벤처투자기업		1
연구개발기업		2
예비벤처기업		1
계		63

자료 : 벤처통계시스템(www.venturein.or.kr)

다음 [그림 4-2-1]에서, 수산벤처기업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전남이 17개 업체로 가장 많고, 부산이 13개 업체, 강원이 7개 업체인 반면, 서울 5개 업체, 경기 4개 업체로 나타나 인구 및 산업의 집약 정도에 상관없이 수산업 생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많이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자료 : 벤처통계시스템 (www.venturein.or.kr)

[그림 4-2-1] 지역별 수산벤처기업 현황 (2007년 9월 기준)



## 2. 수산벤처 육성정책 현황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분야 중장기발전계획인 Ocean Korea 21(OK21, 1998년)에서는 지식기반을 갖춘 해양산업창출을 위해 1998년 현재 선진국의 43% 정도인 해양과학기술 수준을 2010년에는 선진국의 80%수준으로, 2030년에는 100%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계획은 해양수산분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해양수산벤처, 해양관광, 해양수산정보 등 지식산업의 창출을 유도하여 특히 2010년까지 500개의 해양수산벤처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과 해양수산 벤처창업보육센터 설립을 통하여 해양수산벤처산업을 육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의거하여 해양수산부는 2000년부터 해양수산 중소·벤처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나 해양수산 벤처창업보육센터는 아직 설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sup>15)</sup>.

여기에서는 수산벤처 육성정책 현황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가. 해양수산중소·벤처 기술개발 지원사업

#### 1) 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범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제도(KOSBIR<sup>16)</sup>: 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가 도입됨에 따라 2000년부터 해양수산분야 기업의 기술경쟁력강화와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중소·벤처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 15) 정부지원의 해양수산 창업보육센터는 아직 설립되지 않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2007년부터 전남의 해양수산 창업보육센터설립을 지원하고 있으며(2007~2010까지 50억 지원), 강원도는 자체적으로 강원도립대학 내 창업보육센터를 해양수산분야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기관으로 운영 중에 있다.
- 16)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300억원 이상의 R&D예산을 운용하는 정부부처 및 정부투자기관 등 16개 기관(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업진흥청,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소관 R&D 예산 중 일정비율(권장비율 5%)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는 제도임

## 2) 사업내용

사업의 대상 분야는 해양생명공학, 수산(해양생물자원 포함), 해운(조선포함) 및 항만건설·운영, 해양환경, 해양조사 및 해양무생물자원, 해양문화·관광·레저 등 6개 분야로서 실용화가 유망하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 해양기술(MT : Marine Technology)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표 4-2-6] 지원대상분야별 분류기준

분야	정의	예시
해양생명공학	해양과 관련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활용하는 기술 분야	어병치료제, 해양생물 유리 신기능·신물질 개발, 생명공학 이용 신제품개발, 해양미생물 이용기술, 해양생물 DNA분석 및 공정 개발 등
수산(해양생물자원 포함)	어업,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과 관련한 기술 분야	해양목장화 기술개발, 수산물유통 개선기술, 어구어업, 수산가공 및 장비 개발, 첨단 양식장비 개발, 자원조성 기술, 천연 및 배합사료 개발 등
해운(조선포함) 및 항만건설·운영	해운업, 선박의 건조, 항만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기술 분야	항만자동화, 물류시스템, 해운·항만 정보화, 기업간전자상거래, 항만시설, 선박설계, 선박 기자재, 수중비파괴 검사장비, 해양구조물 개선기술, 선원관리 및 복지시스템 등
해양환경	해양과 관련하여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유발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하고,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분야	해양환경관련 GIS 개발, 수질정화 등 해양환경 장비, 적조예방 및 방제 기술, 해양폐기물 처리기술, 갯벌 등 해양생태계 보존 기술 등
해양조사 및 해양무생물자원	해양의 자연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해저면·하층토·상부수역 및 인접대기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과 관련된 기술분야와 광물, 에너지, 공간자원 등 해양무생물자원의 탐사·이용과 관련한 기술 분야	해저지형 조사기술, 해양관측기계, 심해저 심층수 개발, 해양을 이용한 에너지 개발 기술, 해양광물 채취 기술 등
해양문화·관광·레저	해양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관광에 부수되는 시설과 관련한 기술분야	해양문화 및 관광정보, 해양레저장비 개발, 관상용 수초개발, 해양마리나, 낚시용품, 해양게임 등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제29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3조), 「해양수산물중소벤처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관리규정」등에 의거, 2000년 1월 “해양수산물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동년 3월 위탁관리기관으로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을 지정, 8월부터 사업지원을 착수하였다. 사업에 선정된 과제에 대한 지원규모와 범위는 2년간 최고 2억원(총개발비용의 75% 범위내)이내의 기술개발자금이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52개 업체에 7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 5월 사업위탁관리기관을 한국해양수산물기술진흥원(산업기술팀)으로 이관하였다([표 4-2-7] 참조). 2007년에는 중소기업청과 MOU를 체결, 각각 10억원의 메칭펀드를 조성하여 26개 과제에 대해 1년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해양수산부 예산 15억원 중 나머지 5억원은 전년도 선정과제를 계속 지원하는데 투입된다.

[표 4-2-7] 해양수산물중소·벤처기술개발 지원사업 내역

단위: 억원, 개

구 분	2003년까지	2004	2005	2006	2007
지원액	62	7	-	5	20
지원대상 기업 수	39	6	-	7	26
수산물분야 기업 수	7	1	-	5	4

자료: 한국해양수산물기술진흥원

### 3) 사업성과

2006년 12월말까지 해양수산물중소·벤처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52개사이며 총 74억원이 지원되었다. 이중 벤처기업으로 등록을 마친 업체는 23개이며, 2006년 말 현재 연구개발이 종료된 45개 과제 중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14개에 이르러 성공률은 31%정도로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나. 수산특정 연구개발 사업(수산특정과제)

### 1) 개요

수산특정 연구개발사업은 수산업을 미래 성장잠재력 산업으로 육성하여 어업인 및 수산업 종사자에 대하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독자적인 선진기술개발 보급을 목표로 1995년부터 시작되었다.

## 2) 사업내용

사업은 크게 수산기술개발사업과 수산정책연구사업으로 나누는데, 수산기술개발사업은 1994~2013년까지 농특회계재원 1,215억원이 투입되며, 1990년부터 시작하여 2005년 완료<sup>17)</sup>한 수산정책연구사업은 16년간 총 111억원이 투입되었다.

[표 4-2-8]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총사업비	'03까지	'04	'05	'06	'07	'08이후
1994~계속	132,600	54,579	6,100	6,400	5,650	5,650	54,221
누계	132,600	54,579	61,00	6,400	5,650	5,650	54,221
수산기술개발	121,484	44,963	5,350	5,650	5,650	5,650	54,221
수산정책연구	11,116	9,616	750	750	-	-	-

자료 :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표 4-2-9] 수산기술개발사업 지원내역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예정)		과제당 지원액
	과제수	금액	과제수	금액	과제수	금액	과제수	금액	
계	84	6,100	87	6,400	73	5,650	64	5,650	77
기술개발사업	69	5,350	73	5,650	73	5,650	64	5,650	80
정책연구사업	14	750	14	750	-	-	-	-	53

자료 :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수산기술개발지원은 다시 현장애로기술분야와 첨단기술개발분야로 나누어진다. 현장애로기술분야는 어업, 양식, 가공, 환경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 및 보급하여 생산성 향상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첨단기술개발분야는 유용 수산생물 소재의 신기능성 물질, 해양바이오 식품, 고급어종 종묘 개발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복합적인 첨단 수산업 육성, 해양수산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유망기술 발굴 및 지원으로 해양수산 관련사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목적으로 지원한다.

17) 수산정책연구는 '06년부터 출연금(303목)에서 용역비(206목)으로 전환하여 해당부서에서 수행



[표 4-2-10] 수산기술개발사업 지원범위

사업구분	자유공모과제		기획과제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기간	연구비
현장애로	3년 이내	3억원 이내	3년 이내	9억원 이내
첨단기술	5년 이내	10억원 이내	5년 이내	10억원 이내

### 3) 사업성과

2007년 현재 수산특정 연구개발사업의 결과 39건의 기술이 기업에 이전되어 9.5%의 기술이전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허출원 220건, 논문발표 1,039건의 사업성과가 있었다. 이 중 7개 과제는 산업화에 성공하여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하였다.

[표 4-2-11]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주요 성과(산업화한 과제)

과 제 명
• 당쇄공학 및 효소수식 기법에 의한 수산가공 폐기물로부터 고기능성 소재 개발(키토라이프 제품 생산)
• 수산물을 이용한 고기능성 콘드로이친 황산소재의 개발 및 제품화 기술연구(상어연골을 이용한 콘드로인틴 제품생산)
• 선인장 발효물을 이용한 양식 넙치의 사료첨가제 기술개발
• 벤처산업을 지향한 젤리형 해조면류 가공기술의 개발(해조국수 및 소스 제품생산)
• 해조류의 지방세포 분해성분 및 간장보호 성분의 분리정제 산업화 기술개발(맹세르 302제품생산)
• 불가사리 콜라겐의 산업적 이용기술개발(불가사리 콜라겐화장품 생산)
• 도서지역의 고밀도 양식증대를 위한 컨테이너형 용존산소 관리시스템 개발(양식용산소발생기 생산)

## 다. 마린바이오21

### 1) 개요

본 사업은 세계적으로 해양생명공학기술의 산업적 활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해양생명공학의 핵심기술 확보와 특화기술의 산업화 지원을 통해 해양생명공학산업을 21세



기 미래 주도형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연구지원사업이다.

## 2) 사업내용

동 사업의 지원대상분야는 해양생명공학기술의 해양바이오 산업화 촉진, 신의약·신소재 개발 및 해양바이오 인프라구축, 연근해, 갯벌 등 연안 해양환경에 서식하는 해양생물로부터 신물질 추출과 대량생산 공정개발 등이다. 이를 통해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현하고, 수산물 생산량 증가 및 국민의 식량문제 해결로 국가식량안보를 강화하며, 해양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해양바이오벤처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4부터 2013년까지 10년의 기간동안 총사업비 2,950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2007년까지 380억원이 투입되었다.

[표 4-2-12] 마린바이오21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년도	총 계	2004 까지	2005	2006	2007	2008 이후
사업비	295,000	10,765	6,200	10,043	11,000	256,992

자료 :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 3) 사업성과

2004년 지원사업 착수이래, 2006년까지 3년 동안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논문발표 228건(SCI급 159편 포함), 특허출원 151건(국외특허 30건 포함), 시제품 산업화 10건, 기술이전 4건 등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수산업과 직접 관련된 주요 연구지원사업의 성과로는 ① 해조류(매생이, 톳, 감태, 짝잎모자반, 청각, 미역, 산호말 등)로부터 간보호, 위보호, 항생제 대체물질, 기억학습능력 개선, 항암효과, 골다공증예방효과, Estrogen 활성 효과, 고지혈증예방효과를 확인하였으며, ② 새우백점병, 이리도바이러스 등에 대한 백신제조 기초 연구 및 재조합 단백질 사료의 성능시험, ③ 어분가공공정에서 생성되는 폐액을 이용한 발효액비 개발 및 기술이전(2006. 11.), ④ 남조류 및 해양플랑크톤의 대량배양기술 개발(20L- 20톤), ⑤ 육종용 넙치(F1)의 빠른 성장으로 넙치(F2)의 생산시기 단축과 넙치(F2) 생산을 위한 교배지침 초안 작성 등을 들 수 있다.



## 라. 한국해양수산물기술진흥원 부설 기업활성화센터(가칭) 건립

### 1) 개요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해양수산물연구개발사업 481개 과제의 연구결과에서 발생한 기술 이전은 총 50건으로, 기술이전실적은 10.4%에 불과한 수준이다. 해양수산물부는 해양수산물 기술의 산업화 제고를 위해 한국해양수산물기술진흥원 부설 기업활성화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여 2007년 11월 센터설립의 준비단계로서 기업지원팀을 신설하였으며 센터의 설립은 2009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4-2-13] 해양수산물중소벤처기업활성화센터 단계별 추진계획

단계	년도	직제	주요 추진 전략	예산 (백만원)	비고
1 단계 (설립준비)	2008	1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산업화 마인드 확산</li> <li>세부 운영 로드맵 확정</li> <li>기업지원서비스 기반 확보</li> <li>기업활성화센터(가칭) 기반 확보</li> </ul>	500	기업지원팀 주관
2 단계 (센터 구축)	2009	1센터 2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지원 서비스 구축 및 확충</li> <li>기업지원 사업 확대</li> <li>기업활성화센터 기반 구축 및 시범 운영</li> </ul>	7,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지원팀 확대 개편</li> <li>센터장 총원 및 센터개원</li> </ul>
3 단계 (안정화)	2010 이후	1센터 4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센터 사업 확장</li> <li>기업지원 교육 시스템 확충</li> <li>기업활성화 센터 위상 확보</li> </ul>	10,000	4팀으로 확대

자료 : 한국해양수산물기술진흥원

### 2) 주요임무

신설되는 기업활성화센터는 해양수산물부문의 사업화연계기술사업(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R&BD)거점으로서 타부서의 유사기관<sup>18)</sup>과 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하여 기술산업의 육성과 이를 통한 신해양산업의 창출 유도를 목표로 기술거래 지원사업, 기술상용

18) 산업자원부 산하 산업기술재단, 산업기술평가원, 기술거래소, 디자인진흥원, 부품소재산업진흥원, 문화부 산하 게임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환경부 산하 환경기술진흥원 등 12개 기관

화 지원사업, 산업정보화사업, 기술인증사업 등 4개 사업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기술거래 지원은 기술이전이 가능한 연구성과를 발굴하고 이를 기업에 이전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술이전설명회·세미나, 우수기술 발표회, 기술자료집 발간, 기술거래 마케팅, 기술가치 평가, 기술거래 컨설팅, 사이버 기술거래소 운영 등이 포함된다. 기술상용화 지원사업은 이미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을 상용화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방형 기술상용화사업과 기술이전연계 상용화사업이 포함된다. 산업정보화사업은 해양수산분야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제공하는 것으로, 해양산업정보 포털 사이트 운영, 정보 분석 및 결과제공, 정책개발 등이 포함된다. 기술인증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을 인증하는 사업으로 해양신기술인증사업과 해양우수기술인증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추진된다.

### 3) 기대효과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부설 기업활성화센터의 설립은 해양수산관련 벤처기업의 기술분야 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수산벤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의 성과를 수산벤처기업에 이전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며, 기술상용화 지원사업과 기술인증사업으로 수산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산업정보화사업으로 구축되는 해양산업정보 포털사이트를 통해 해양수산분야의 모든 지식과 최신 정보를 상호 연결해줌으로써 개별기업의 정보획득비용을 절감하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수산벤처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 마. 지방자치단체의 수산벤처시책 현황

### 1) 해양바이오 창업지원센터 건립

전라남도는 완도군에 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년간이며, 총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부지 9,900m<sup>2</sup>, 건평 3,300m<sup>2</sup> 규모의 건물과 Pilot Plant 첨단기술·장비제공 및 경영마케팅 지원시설을 갖추게 된다([표 4-2-14] 참조). 동 센터는 전남 해양생명연구센터와 연계하여 신기술의 산업화 촉진, 기술이전,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의 해양수산관련 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2008년도에 수립될 예정이다.

[표 4-2-14] 전남 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7년	'08년	'09년
사 업 량(개소)		1	1		
사 업 비	계	10,000	200	4,800	5,000
	국고보조	5,000	100	2,400	2,500
	용 자	-	-	-	-
	지 방 비	5,000	100	2,400	2,500
	자 부 담	-	-	-	-

자료 : 전라남도

## 2) 한국수산벤처대학

완도군은 2007년 2월 자체예산 5천만 원과 전라남도 지원(5천만원)을 받아 새로운 아이디어, 신기술, 벤처정신을 수산업에 접목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킬 핵심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국수산벤처대학을 설립하였다. 2007년 3월 조선대학교와 대학운영협정을 체결하여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센터에서 교육장소 제공 및 학사일정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2007년 3월 모집공고를 통해 152명이 지원하였으며 이중 46명을 최종선발하여 벤처 창업지원, 경영, 마케팅, 수산정책 정보공유, 성공사례소개 등 실무중심의 과정을 교육하고 있다.

전체 1년의 교육과정으로, 매월 1회 마지막주 토, 일요일 1박 2일간, 연 12회 24일간 교육하며, 교육비는 무료이고 숙식은 수강생 자체부담이다. 1기 신입생 46명은 전원 수산경영체를 경영하는 사람들로서, 양식업종사자 27명, 유통업 9명, 제조업 7명, 기타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수산벤처대학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수산벤처전문가 양성과정으로서 해양수산관련 기관·단체, 학회 등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며, 전자상거래시스템과 인터넷 쇼핑몰 성공전략 등 정보화교육을 강화하는 등 마케팅을 포함한 벤처경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교육을 실시하여 쇠퇴하는 수산업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 3) 강원도립대학 창업보육센터

강원도립대학은 다년간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과 최첨단 연구·실험 기자재를 보유한 교육부지정 수산관련 특성화대학이다. 동 대학이 위치한 강릉(주문진)은 강원도 수산업의 중심지로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동해수산연구소, 강원도 수산양식시험장, 강릉종묘배양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수산물 가공산업의 중심지가 될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강원도립대학내 창업보육센터는 대학과 지역의 장기발전전략 및 특성화 방향에 따라 수산분야 중소기업 창업보육을 목적으로 2000년 설립되었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사무실, 사무집기 및 기기 이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작업실, 회의실 및 세미나실과 ICP-OES시스템<sup>19)</sup> 등 공동장비사용의 혜택이 주어지며 전화료와 난방비를 제외한 전기, 인터넷, 상하수도 요금 등이 대학으로부터 지원된다. 입주기업은 보증금 1백만원과 월 임대료 12만 5천원을 부담해야 하며 입주기업의 창업성공시 성공부담금으로 매출액의 1%를 입주기간의 3배에 달하는 기간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창업보육센터에는 2명의 창업보육매니저와 1명의 행정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다. 창업보육은 전담보육닥터(창업보육매니저)체제로 운영되는데, 전담보육닥터는 입주기업의 사업타당성 평가, 지원요소 파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대내외 협력, 창업진행과정 모니터링 및 자체 BI(Business Incubator)운영평가 등 창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한다. 또한 1교수 1기업 기술지도제를 실시하여 강원도립대학의 교수가 보유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를 갖추어 마케팅, 경영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15개 업체가 입주, 이 중 5개 업체가 졸업하여 현재 10개 업체가 입주중이며 총 3개 업체가 벤처기업으로 등록하였다.

### 4)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 「산업발전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시행,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3 규정에 의해 산업자원부의 지원하에 경상북도가 2005년 설립한 비영리 법인체이다. 동 연구원은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립 연혁은 [표 4-2-15]와 같다.

19) 유도결합 플라즈마 광학방출분광계, 무기원소 분석



[표 4-2-15] 경북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설립 연혁

기 간	내 용
2001. 07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GMSP)”조성약정체결(5개 기관)
2002. 01	“해양생명환경산업지원센터“ 계획 산정(산업자원부)
2002. 12	GMSP 조성계획 타당성 조사(경상북도)
2004. 02	GMSP 조성 기본계획 수립(경상북도)
2004. 08	산업자원부와 지역특화사업 협약서체결
2005. 05	부지조성공사 착공
2005. 11	재단법인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설립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공식 연구동 및 공장동 건축 착공
2006. 12	경북해양바이오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
2007. 02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건축준공
2007. 05	창업보육 대상업체 입주(16개 업체)
2007. 10	개원식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의 설립목적은 경북 동해안 일대를 지역전략산업 집적화 단지 또는 혁신거점으로 조성하여 장비 및 시설의 공동 활용을 통해 경북지역의 해양바이오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연구원은 경북지역 내 수산식품 가공기업에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을 보급하고 기술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연구원의 구체적인 연구지원분야는 해양 생물자원을 이용한 수산가공, 건강기능식품, 생물화학제품, 신약 및 신물질 등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분야, 해양심층수자원을 이용한 응용개발 분야 등이다.

또한 동연구원은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해양바이오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총 18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16개 기업이 입주중이다. 입주한 기업은 제품의 개발 및 시험생산을 위해 연구원이 구축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시제품의 경제성/수익성 평가를 지원한다.

##### 5) 부산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을 해양생물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4년 산업자원부의 지원하에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이하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를 설립하였다. 동센터의 설립목적은 부산지역이 가진 생물산업분야의 연구기반과 우수한 지리적 여건을 이용하여 첨단 해양생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표 4-2-16] 부산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사업내용

사 업 분 류		사 업 내 용	
정보화 사업	네트워킹사업	정보교류 전자네트워크 운영사업	경영, 정책, 기술에 이르는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전자 정보망 구축·운영
		산학연 교류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개발 과제 발굴 및 사업화로의 진행을 위한 각종 교류회 개최</li> <li>산학연간의 상호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한 교류협력</li> </ul>
		생물기업 경영 및 산업정보 교류사업	기업 경영 및 산업정보의 지속적 수집과 제공
		정보교류 세미나 개최사업	경영, 정책, 기술에 이르는 다양한 정보교류를 위한 세미나 개최를 통해 기업에 최신정보 습득의 기회 제공
	경영지원사업	경영 및 마케팅 자문단 운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이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경영, 기술 자문을 통한 해결책 모색</li> <li>기업 경영자문을 통해 경영 및 기술개발전략수립으로 기업의 발전 역량강화</li> </ul>
		생물산업 소비 트렌드 및 제품만족도 조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물산업 소비트렌드 분석 지원</li> <li>개발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마케팅 전략수립에 활용</li> </ul>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외 박람회 정보의 제공 및 참가지원</li> <li>국내외 시장동향 파악 및 홍보·마케팅 기회 제공</li> </ul>
		기업인증 도우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외 규격인증획득지원</li> <li>혁신형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li> </ul>
	실용화 사업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건립사업	• 부지면적 11,507m <sup>2</sup> 에 기업지원동, 생산설비동, 기업설비 지원동 등 3개 건물 건립. 총 건축면적 5,214m <sup>2</sup> , 연면적 7,215m <sup>2</sup>
		장비 구축 및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센터 구축장비를 활용한 시제품 생산지원</li> <li>저렴한 장비사용료로 기업의 장비구축비용부담 경감</li> </ul>
인력양성사업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생산기술 실무형 인력 양성	
창업보육센터 운영		성장가능성이 검증된 우수 생물산업 분야 중소 벤처기업에 대하여 입주공간 제공 및 정부시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는 연구개발에서 생산·판매에 이르는 일괄지원체제를 통해 부산지역의 해양수산바이오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산지역 해양생물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동 센터가 실시하는 사업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표 4-2-16]과 같다. 대분류 사업으로 정보화사업, 실용화사업, 인력양성사업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이 있으며 이들 사업 내에 다양한 세부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반지원사업, 경영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사업 등등 다양한 사업이 서로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동 센터는 부산지역 생물분야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중소기업 관련법령에 의해 창업한 중소기업, 정부에서 지정한 창업보육센터(기관)를 졸업(예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입주하고 있는 5개 기업<sup>20)</sup>은 이미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다.

## 바. 시사점

수산벤처기업의 현황과 수산벤처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이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벤처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의 성장을 추구하여 벤처기업의 양적·질적 확대를 이룩하였으나, 수산업 관련기업이 전체 벤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약하다.

둘째, 현재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수산관련 기업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산물 가공 관련 제조업이 대다수이며 연구개발기업과 벤처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수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벤처투자회사의 수산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흡함을 의미한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벤처기업은 수산업 생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지역특화산업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집적지 조성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넷째, 해양수산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은 연구개발사업인 수산특정과제와 마린바이오 21사업을 통한 기술개발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연구성과의 산업화(기술이전)는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수산벤처기업의 창업과 보육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수산벤처육성정책은 기술지원과 경영 및 창업지원을 포함하는 종합지원을 추구하고 있으나, 투자의 규모가 작고 중앙정부와의 정책연계성이 부족하다.

20) 마린바이오프로세스, (주)클로랜드, (주)아이에스푸드, (주)송호식품개발, (주)생물산업연구원 등 5개 기업



### 3. 수산벤처기업 경영현황과 비활성화 원인

#### 가. 수산벤처기업의 경영현황 및 애로사항 검토

##### 1) 설문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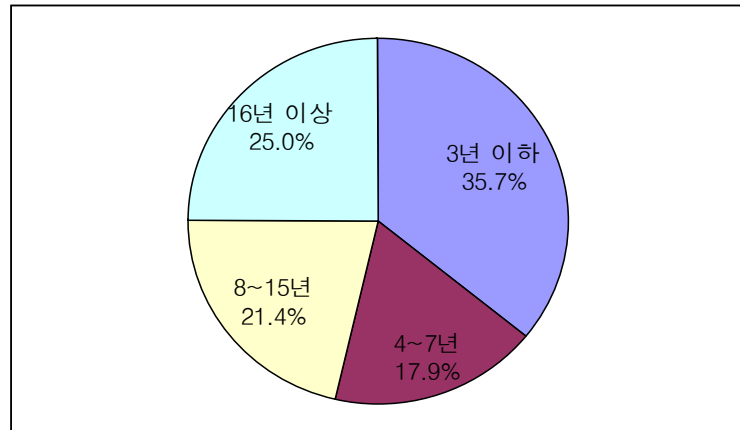
수산벤처기업의 창업과 경영상의 애로점과 정부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할 목적으로 2007년 9월말 현재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63개 수산벤처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산벤처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이메일 설문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메일 사용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전화 및 팩스설문을 병행하였다.

각 기업 최고경영자의 이메일주소와 설문참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전화조사를 실시한 후 이메일 및 팩스를 발송하였다. 2007년 10월 29일부터 동년 11월 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된 설문에서 총 28개 기업이 설문에 참여하여 응답률은 44%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기업 중 16개 기업은 이메일, 11개 기업은 전화통화, 1개 기업은 팩스를 이용하여 각 항목에 응답하였다.

설문내용은 크게 개요, 경영현황, 정부지원현황, 수산식품박람회참가 및 효과 그리고 애로점 및 건의사항으로 전체 21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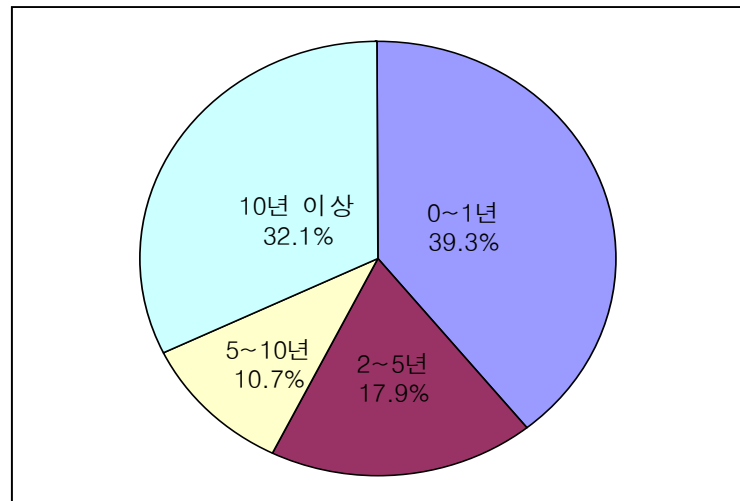
##### 2) 조사결과 분석

응답한 28개 벤처기업의 구성을 보면 주식회사 17, 개인기업 9, 유한회사 1, 영어조합법인 1개사로 나타나 주식회사의 비중이 60.7%로 가장 크다. 각 업체별 창업이후 기업경영기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 내(2005~2007)에 창업한 기업이 10개사로 전체의 35.7%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4-2-2] 참조). 또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하여 창업기업으로 간주되는 사업 개시 후 7년 미만인 업체는 15개사로 전체의 약 54%에 달한다. 반대로 창업이후 8년 이상이 된 수산벤처기업이 전체의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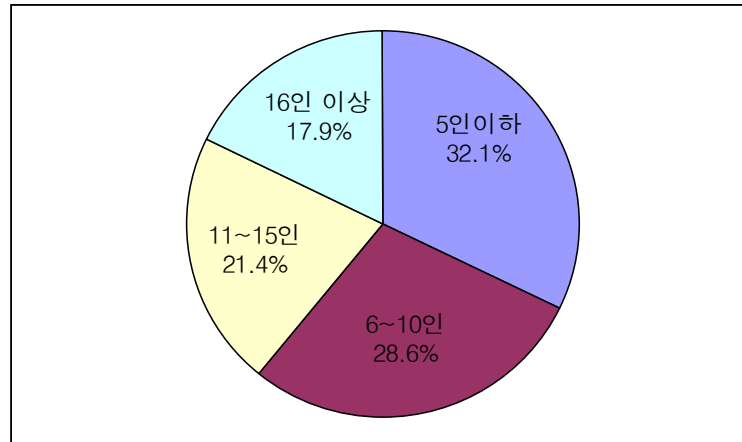
[그림 4-2-2] 수산벤처기업의 창업이후 현황

이들 기업이 창업 후 벤처등록까지 걸린 기간은 0~1년이 11개 업체로 약 39%로 집계되었으며, 1년 이상이 약 61%로 창업에서 벤처등록까지 대체로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2-3] 참조). 그리고 10년 이상 걸린 기업도 9개 업체, 32%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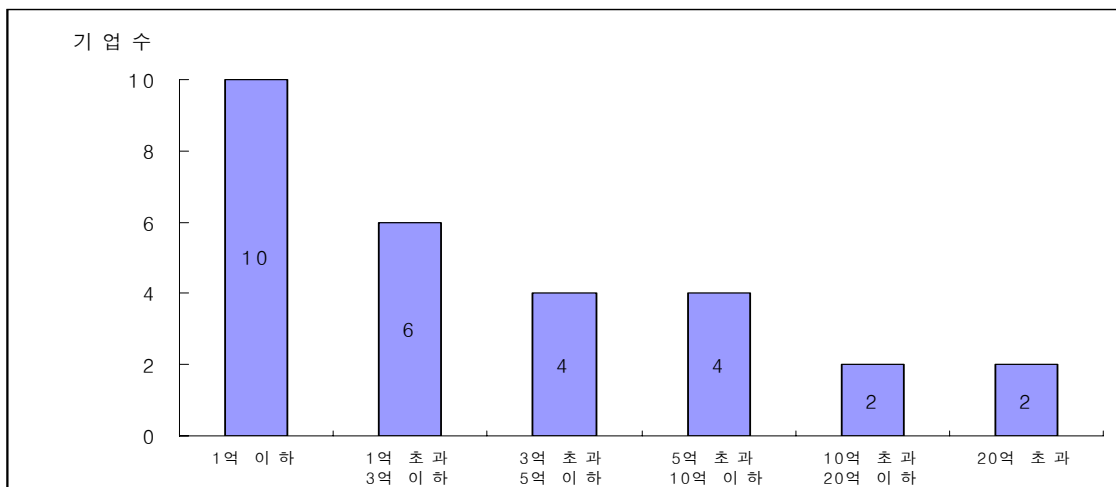
[그림 4-2-3] 창업 후 벤처등록까지 소요된 기간

28개 수산벤처기업의 종업원 규모를 살펴보면, 우선 규모별로 종업원 10인 이하인 기업이 61%이며, 10인 이상의 기업이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2-4] 참조). 그리고 종업원 16인 이상인 대체로 규모가 큰 수산벤처기업은 5개사, 18% 정도로 집계되었다. 수산벤처기업은 10인 미만 기업이 우세하지만 10인 이상기업도 약 40%정도로 10인을 중심으로 양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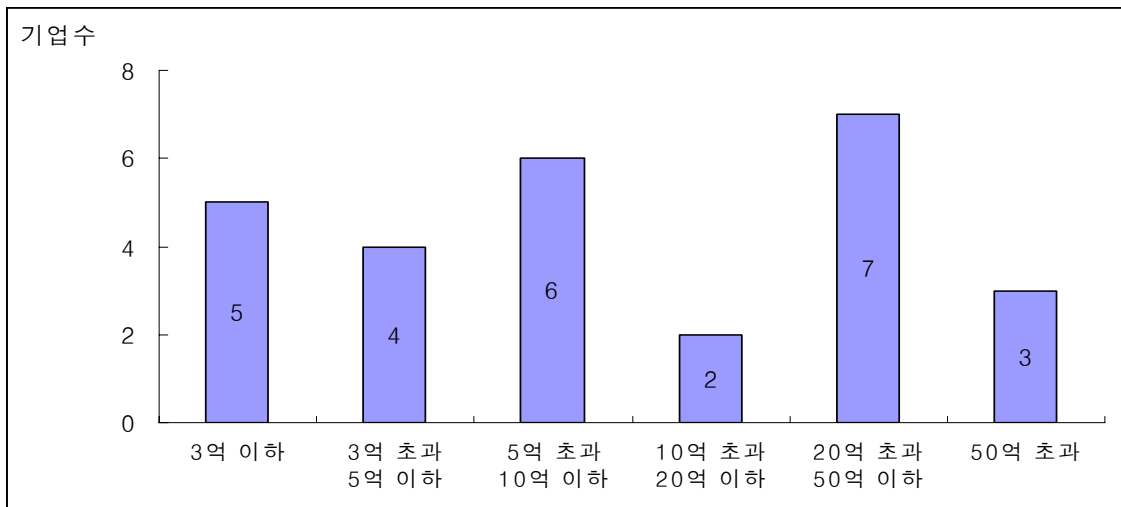
[그림 4-2-4] 수산벤처기업의 종업원 규모

수산벤처기업의 자본금 규모별로는 1억원 이하가 10개 기업으로 전체의 35.7%를 차지하고 3억 원 이상이 12개 기업으로 전체의 약 43%로 집계되었다. 자본금이 10억 원 또는 20억 원을 초과하는 초과 기업도 각 2개사로 나타났다([그림 4-2-5] 참조).



[그림 4-2-5] 자본금 규모

매출액 규모별로는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규모의 기업이 7개사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그림 4-2-6] 참조). 전체적으로 매출액 3억원 이하의 기업이 5개, 약 19%의 비중이며, 5억원 이상의 기업이 18개, 약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매출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수산벤처기업도 3개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6] 매출액 규모

한편, 수산벤처기업이 연간 투자하는 연구개발비의 규모는 5천만 원 이하가 전체의 3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5천만 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기업이 전체의 28.6%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3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회사도 3개사로 나타났다.

향후 매출액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대폭 증가 또는 증가 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19개, 70%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개 기업은 현상유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매출액의 하락과 대폭하락을 예상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수산기업은 외형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수산벤처기업 경영자는 대체로 미래 밝은 전망을 가지는 긍정적 사고의 소유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각 업체의 대표들에게 자사의 경영성공요인을 묻는 질문(복수응답 허용)에서 신기술개발과 특허 보유 등 기술적 우위를 응답한 횟수가 16회, 생산 및 유통비용의 절감이 4회, 확실한 수요처 확보 3회, 틈새시장 공략 및 소비자의 기호충족이 3회, 원활한 자금조달 2회로 나타나 수산벤처기업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 기술력임을 입증하고 있다.

수산벤처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방법에 대한 설문에서 일반금융권 용자 50%, 벤처캐피탈 용자 14.3%, 주식발행 10.7%, 정부지원금 3.6%, 기타 21.4%로 응답하였다. 기타에는 경영자 자체조달 등이 포함된다. 이로부터 수산벤처기업은 주로 일반금융권 용자에 의존하여 회사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벤처캐피탈의 수산벤처기업 투자는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28개 수산벤처기업 중에서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은 11개 업체(39%)로 나타났다. 이중 4개 업체는 산업자원부로부터, 3개 업체는 해양수산부, 1개 업체는 지방정부(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고, 산업자원부와 해양수산부 양측에서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2개,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1개로 조사되었다. 즉, 산업자원부로부터 자금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은 모두 7개 업체인데 비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자금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은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양수산부의 수산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28개 수산벤처기업 중에서 현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기업은 5개 업체,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기업은 1개 업체였으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적이 없는 기업은 전체의 78.6%인 22개 업체로 나타나 현재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수산관련 기업은 대부분 창업보육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력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서 금융지원과 기술지원을 가장 우선적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순위와 상관없이 정부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선택(복수선택 가능)설문에 대하여는 금융지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설문결과로부터 수산벤처기업에 있어 금융지원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분야이며, 그 다음이 기술분야 지원이라 할 수 있다.

벤처 창업 및 경영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서는 7가지 항목에 대한 애로정도를 1(전혀 어렵지 않음) ~ 5(매우 어려움)점의 리카도 척도 법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는데 17개 기업이 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이 설문결과에 의하면 창업단계보다는 경영부문의 점수가 높아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2-17] 참조).

[표 4-2-17] 벤처 창업 및 경영의 어려움

항 목		애로정도(5점 척도)	
창업	기술평가과정	3.2	
	행정적 절차	3.3	
	정보부족	3.2	
경영	자금부족	기술개발 이전	3.8
		기술개발 이후	3.5
	마케팅	3.8	
	홍보	3.7	



응답결과는 7개 항목 모두 3점 이상으로 조사되어 모든 항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개발 이전의 자금부족과 마케팅 분야를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이 홍보, 기술개발 이후의 자금부족 순이었다.

수산식품관련 박람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3개(전체의 46.4%), 참가경험이 없는 기업은 15개(전체의 53.6%)로 조사되었다. 참가경험이 있는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박람회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서 박람회의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7개, 박람회의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2개, 무응답 4개로 나타나 박람회 참가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박람회효과로 상품홍보효과, 시장정보·동향파악, 바이어 발굴 및 현지 주문계약 체결 등의 효과를 들고 있다.

## 나. 수산벤처의 비활성화 원인

### 1) 해양수산부 수산벤처육성정책의 미흡

앞 절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현재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수산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이유로 첫째 우리나라 전체 혹은 해양수산분야 벤처기업 중에서 차지하는 수산벤처기업의 수는 매우 적다는 것이다. 둘째, 수산벤처기업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에 근거하여 벤처등록을 하였으며, 벤처캐피탈에 의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다. 셋째, 아직까지 해양수산분야의 벤처창업보육센터가 설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벤처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여 벤처 붐 조성에 주력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벤처기업은 개인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체이므로 시장의 자율적인 환경 하에서 발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벤처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한 충격에 노출되는 특수한 조건을 맞이하게 되었으므로 중앙정부가 수산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수산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정책대상으로 지정하여 직접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벤처지원정책은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주도하여 벤처산업 전반에 대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수산업부분의 벤처기업은 수산업 자체의 산업경쟁력이 취약하여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으므로 수산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특별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수산벤처는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표 4-2-18]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3단계에서 제1단계인 벤처붐 조성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2-18]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3단계

단계	내용	
<제1단계> 벤처 붐 조성단계	정책방향	• 벤처 붐의 조성
	주요수단	• 재정지원의 규모 확대를 통한 자원배분의 직접 개입 • 이벤트성 사업을 통한 분위기 조성
	주요시책	• 벤처기업 창업 분위기 고취 • 창업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창업보육센터의 양적 확대 등) •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 용자자금 지원 • 벤처캐피탈 조성에 재정이 직접 기여 • 코스닥시장의 양적 규모 확대
<제2단계> 벤처기업 활성화단계	정책방향	• 벤처기업 성장여건 구축
	주요수단	• 재정지원 규모 유지(양적 지원의 확대에서 질적 지원 확대로 전환) • 시장기능과 정부지원의 조화 • 지원체계 정비
	주요시책	• 창업인프라 구축(창업보육사업의 내실화) • 자금, 정보, 연구 등 각종 네트워크 구축 • 민간 벤처캐피탈의 활성화·건설화 • 민간 벤처캐피탈리스트 육성 • 벤처자금 환류시스템 구축 • 코스닥시장 건전화 - 산·학·연 연계 시스템 구축 • 집적화 유도 • 경영지원 공급여건 확충 • 공공기관의 벤처제품 구매 활성화 / 벤처기업 수출지원
<제3단계> 벤처기업 토착화단계	정책방향	• 벤처기업 관련제도에 관한 경제여건 변화에의 대응적 유지·관리
	주요수단	• 재정지원 규모의 점진적 감소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벤처기업 확인제도 폐지
	주요시책	• 과학기술 토대의 강화 • 민간 벤처캐피탈에 대한 유도적 지원 지속 • 벤처자금의 안정적 환류시스템 강화 • 코스닥시장의 안정적 발전

자료 : 배광선, 주현, 송이을, 박린,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1999.12



## 2) 수산전문 창업보육센터 미 설립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창업보육센터’라 함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창업보육센터는 운영하는 기관에 따라 지원범위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지원범위는 물리적 시설 및 설비 제공, 경영·행정적 지원, 기술적 지원, 재무적 지원, 법률적 지원 등 매우 광범위하며 외부 서비스의 연계·알선·중계를 통해 간접적 지원도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창업보육센터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2007년 현재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는 민간기관을 포함하여 296개에 이르며, 이들 센터를 통해 졸업한 기업은 5,557개, 현재 각 센터에 입주하여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업은 4,337개이다([표 4-2-19] 참조).

[표 4-2-19] 지역별 창업보육센터 및 입주/졸업기업 현황 (2007년 현재)

지역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졸업기업
서울	30	555	903
부산	20	320	397
대구	9	145	136
인천	7	142	276
광주	14	295	391
대전	17	325	507
울산	3	31	89
경기	45	655	954
강원	17	292	343
충북	11	201	207
충남	18	276	468
전북	15	199	273
전남	11	149	119
경북	28	392	227
경남	20	305	415
제주	4	55	74
총계	269	4,337	5,557

자료 :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시스템 (www.bi.go.kr/center)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저렴한 임대료와 관리비로 인해 초기 운영자금을 절감할 수 있고, 창업초기에 직면하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전담교수 및 창업매니저의 지속적인 지도와 자문으로 일정수준까지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 초기 벤처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 또한 입주기업은 대학의 실험실 및 기자재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연구기관과 연계한 공공기술개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각종 특례가 보장된다([표 4-2-20] 참조).

[표 4-2-20]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특례제도

특례	관련법령	내용
공장설치의 특례	벤처법제18조의3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창업보육센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는 「건축법」제14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시설비용의 지원	벤처법 제20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역의 조성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벤처법 제21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지역(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건축할 수 있다(제2항).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는 「건축법」 제14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항).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벤처법 제22조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지관리법」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법」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초지법」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8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제1항).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건축하려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도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항).



이처럼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을 위한 창업보육 지원여건은 잘 갖추어져 있으나, 수산벤처기업을 위한 전문창업보육센터의 설립은 매우 저조하여, 대부분의 수산벤처기업은 창업당시부터 자력으로 기술개발비용을 부담하고, 전문경영자의 도움 없이 기술개발자가 유통과 마케팅을 전담함에 따라 그 성공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수산기업은 생물을 이용하는 산업의 특성상 특별한 실험·연구장비가 필요하며, 경영 및 마케팅에 있어서도 일반 공산품과는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되므로 수산벤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산기업의 창업과 보육을 전담하는 수산전문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수산업관련기업의 지원을 위해 특화된 창업보육센터는 강원도립대학내 창업보육센터가 유일<sup>21)</sup>한데, 지원범위가 연구 및 기술지원에 집중되어 경영과 마케팅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 3) 수산관련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부족

현재 수산벤처기업의 대부분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에 근거하여 유지되고 있는데 반해 벤처캐피탈에 의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설문조사에서도 수산벤처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금융지원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수산벤처기업에 있어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고도의 기술력과 잠재성은 있으나 경영기반이 약해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받기 어려운 벤처기업에 무담보 주식투자 형태로 투자하는 기업이나 그러한 기업의 자본을 벤처캐피탈이라고 한다. 일정한 담보를 요건으로 용자하여 금리 마진을 획득하는 일반 금융권 용자와는 달리 벤처캐피탈은 투자대상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잠재력 평가를 기반으로 한 무담보주식투자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투자업체가 성공할 경우 고수익을 획득하나, 실패할 경우에는 투자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는 고수익·고위험 자본이다. 벤처캐피탈의 금융수단 혹은 금융활동은 주식의 인수 외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약정투자 등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된 기업에 대한 용자, 리스, 팩토링 등 금융지원, 그리고 투자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경영관리, 기술지원 등 각종 컨설팅 활동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창업지원법이 제정되어 1987년부터 기은개발금융, 국민기술금융 등의 창업투자회사가 설립되면서 벤처캐피탈이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은

21)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재)부산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와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일부 수산벤처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나, 이들은 창업보육의 기능보다는 기술지원과 기업집적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입주기업도 창업기업이 아닌 경우가 많아, 창업보육센터라고 볼 수 없다.

크게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간접금융 위주로 지원하는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하여 상당 수준의 직접 투자를 하는 창업투자회사로 구분된다.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에는 한국종합기술금융, 산은캐피탈, 한국개발투자금융, 기보캐피탈 등이, 창업투자회사에는 기은개발금융, 국민기술금융, 한국기술투자 등이 포함된다. 기보캐피탈은 기술신용보증기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의 정부출연기관이 출자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기업의 창업에서 투자, 용자, M&A, 경영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벤처기업의 발전에 벤처캐피탈의 기여는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수산벤처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산벤처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와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의 투자로부터 소외되는 것은 단순히 자금조달의 곤란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캐피탈이 자금과 함께 제공하는 각종 유·무형의 경영지원으로부터도 소외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산벤처기업의 육성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산업 분야의 벤처기업은 타 업종에 비해 투자 위험도가 높다. 이는 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국내산 수산물의 시장경쟁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수산물의 생산이 태풍, 적조 등 시장외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특성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은 투자시 경영진 능력과 도덕성 및 투명성, 동종업계에서의 판매순위, 기술진입 장벽 및 시장 지배력, 시장규모, 수익성, 상업화 정도, 투자포트폴리오와의 시너지 효과, 투자자금 회수기간 등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판단하므로 수산업 분야의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 4) 수산벤처기업의 경영능력 부족

수산분야의 벤처기업은 우수한 제품개발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시장적응에 실패하여 수익모델을 만들지 못하고 시장에서 도태된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였으나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유통경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기술개발에 과도한 자금을 투자하여 재정적 부담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벤처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벤처기업 등록 후 안정적 성장단계까지의 육성이 더욱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일반 중소기업의 연구자금에 비해 수산업 분야는 연구비용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자금소요가 많이 되어, 생산단계에 이르렀을 때 자금부족현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수산분야의 벤처경영자는 흔히 이야기하는 발명가의 오류



(Great Mouse Trap)<sup>22)</sup>를 범하여 당초에 시장성이 없는 상품의 개발에 투자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시장적응 실패의 원인은 전반적으로 경영경험과 지식 및 경영마인드의 부족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수산벤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산벤처기업의 경영 및 마케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5) 수산업 경영자의 벤처에 대한 관심 부족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63개의 수산관련 벤처기업이 존재한다. 이 중 다수의 기업은 중소기업청의 ‘핵심중소기업 3만개 발굴사업’의 일환으로 기술보증기금에 의해 벤처등록을 권유받은 기업이므로 자발적인 벤처등록을 추진한 기업은 그보다 더 적다. 이처럼 수산업 경영체의 벤처기업 등록이 저조한 이유는 해양수산부의 수산벤처 지원규모가 적은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겠으나, 벤처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수산업 경영자들이 벤처기업에 대한 특혜와 정부의 지원내용을 자세히 인지하지 못하여 벤처기업 등록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22) 자신이 개발한 상품이나 아이디어가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자신하여 시장 수요를 잘못 예측함으로써 깊이 있는 잠재시장 분석을 하지 못하고 직관에 의존한 판단을 하게 되며 시장정보 해석 시 부정적 정보를 간과하려는 경향이 있음

## 제3절 농업부문 벤처활성화 사례와 시사점

### 1. 창업보육사업 확대

농업분야에서는 기술, 지식,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가치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창업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벤처 창업보육센터의 설립과 지원을 활성화하여 농업경영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의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2001년 이후 서울·경기지역에 3개소의 농업벤처관련 창업보육센터가 설립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에는 2005년 이후 6개소의 창업보육센터가 설립되었다. 농림부는 창업보육센터의 건축비 및 연간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 가.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창업보육센터

2000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받은 이후 농생명분야의 벤처창업과 지원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창업보육센터는 대학의 특수성을 살려 실험실 창업 및 기술이전에 의해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산·학·관 협력에 의한 대학의 유·무형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를 위해 845m<sup>2</sup> 규모의 2층 건물을 신축, 12개의 보육실, 2개의 실험실, 세미나실, 회의실 등 창업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었으며, 서울대학교는 기술 지원 및 자문 서비스를 통해 최신 연구 정보와 첨단 실험기자재 및 장비를 지원하고, 농장, 목장 등의 현장 실험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센터는 1업체 1전담 자문교수제를 지원하고 교수와 보육업체간 산학협력 및 공동연구알선,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 평가, 투자 유치, 마케팅, 기업 공개, 세무·회계분야를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었다.

2001년 처음으로 12개 보육업체가 입주하였으며, 2007년 6월 현재 보육업체의 수는 30개로 증가하였고, 현재까지 12개 업체가 벤처기업으로 등록하였다.

#### 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

2000년 6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벤처창업보육지원사업전담팀’을 구성, 2001



년 3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출연금 지원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2002년 2월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를 개소하였다. 보육센터는 입주대상분야를 농산물 생산 및 가공업체, 농자재 관련 업체,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농업정보관련 업체, 농업관련 비즈니스 모델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 경영컨설팅업체, 기타 농산, 임업, 축산 등 농기업관련업체의 6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창업 3년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2년의 기간동안 창업지원 및 보육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입주업체에 대해 정부의 정책 지원을 알선하고, 각종 시설 및 장비, 자료 제공과 함께 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입주업체의 관련제품 홍보 등 판로개척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연구원의 풍부한 전문인력을 활용한 경영컨설팅 및 사업타당성 분석 등의 지원도 하고 있다. 7개의 종합대학과 10개의 국책연구소가 밀집해 있는 흥릉연구단지 내에 위치한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새로운 경영과 기술지원을 알선함으로써 벤처농기업 육성에 산·학·연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와 더불어 센터는 벤처농업 관련 연구와 세미나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벤처농업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현재까지 9개 업체가 졸업하였고, 현재 9개 업체가 입주중이며 이 중 2개 업체가 벤처기업으로 등록하였다.

#### 다. 농산업관련 창업보육센터

한국농업대학<sup>23)</sup>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위기를 맞은 우리나라 농업·농촌을 선도할 미래 농업 CEO 양성을 목적으로 식량작물학과, 특용작물학과, 채소학과, 과수학과, 화훼학과, 축산학과의 전공과정을 개설하였으며 부속기관으로 농업인교육원, 농촌개발연수관, 농업농촌연구소, 창업보육센터, 영농실습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농업대학내 첨단농산업 창업보육센터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에 기반을 둔 벤처농업인을 육성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벤처농업인을 육성 배출한 경험을 학교 교육현장에 접목하여 대학교의 선진화와 특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업대학

23) 1994년 5월 대통령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현장중심교육을 실시할 순수한 농업대학의 설립을 건의, 1994년 6월 특수목적대학인 국립한국농업전문학교의 설립을 결정, 1995년 7월27일 「한국농업전문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14742호)이 공포되어 1997년 3월 20일 국립 3년제 전문대학으로 경기도 화성시에 개교하였으며 이후 4년제로 학제를 개편하여 한국농업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공동으로 설립을 추진하였다. 2001년 3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로 선정되었고, 2002년 10월 개소하였다. 연면적 1,092평방미터의 지상 2층 건물에 15개의 보육실과 회의실, 세미나실, 실험실이 갖추어져 있다.

2006년 2월 농림부 농업경영컨설팅기관으로 인증 받았으며 현재까지 37개 업체가 졸업하였고, 14개 업체가 입주중이며 현재 7개 업체가 벤처기업으로 등록하였다.

이 외에 경상대(2005년), 전남대(2006년)에 농업전문 창업보육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2007년에는 강원대, 충북대, 상지대, 제주대가 신규지정 되는 등 농업분야의 벤처창업보육센터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중소기업청에 의해 지정·운영되고 있는 영호남지역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BI)중 우수 BI를 선정하여 농업벤처기업 보육을 위한 보육실 확장에 필요한 건립비를 지원하는 등, 농업전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지 못하는 농업벤처기업의 보육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2. 농업전문투자펀드 조성

농림부는 2001년부터 우수 농기업을 발굴·육성하고, 농업분야의 벤처기업, 농업관련 기업 및 유통업체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할 목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농업전문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 결성된 1호 펀드는 (주)무한투자를 통해 농기업투자업무를 개시하였으나 운영실패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조기 청산되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 2002년 (주)한국바이오투자에 의해 집행된 2호 펀드는 2006년 말 청산결과 총출자금 80억원 중 68억원을 투자해 원금포함 198억원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여 147.5%의 고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RNL바이오와 바이오메드, 진바이오텍 등 3개 농기업을 코스닥에 등록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2007년에는 농업전문투자펀드 3호인 'MAF-넥서스' 조합결성을 완료하고 (주)넥서스투자를 통해 벤처농기업투자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MAF-넥서스는 농림부 40억원, 농협·산업은행 등 민간 60억원 등 총 100억원 규모로 결성되었다.

농림부는 2차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으로 2010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농업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3호펀드를 포함해 앞으로 조성되는 펀드부터는 전통적인 농산업분야의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결정하였다.



### 3. 벤처농업 저변확대

#### 가. 벤처농업창업경연대회 개최

농림부는 농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생산설비 및 자재, 생명공학기술 응용사업 등 농업관련분야의 우수 창업아이템을 선정·시상하는 ‘지식농업실현 벤처농업창업경연대회’를 2002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 대회는 농업인의 벤처농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벤처농업역량을 강화하여 농업분야의 소득증대, 농업의 고도화·첨단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업은 농림부의 주최 하에 한국식품연구원과 한국농업CEO연합회가 주관하며 9개 농업전문 창업보육센터, 전국대학생창업동아리연합회, 등이 후원한다. 대회의 참가자격은 농업인, 학생, 교수, 연구원 중 향후 벤처농업을 창업코자 하는 예비창업자뿐만 아니라 신규 아이템의 사업화를 추진 중인 기존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는 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근거로 사업아이템 평가에 의해 12명(팀)을 1차로 선정한 다음 이들을 대상으로 창업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한 교육과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한 후 각각 개별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케 하고 이에 대하여 서면 및 면접 평가를 실시하여 6명(팀)의 최종 수상대상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농업벤처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 위원회에서 참가자들의 창의성, 기술성, 사업성 등에 기초하여 확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 및 면접 평가를 실시한다. 선발된 우수자에게는 농림부장관이 수여하는 최우수상 1명에 대해 1천만원, 우수상 2명 각 5백만원, 장려상 3명 각 3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 나. 농민 자발적 노력

사단법인 한국벤처농업포럼은 민간기업의 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한 연구원<sup>24)</sup>의 주도로 설립(2000년부터 활동, 2003년 2월 사단법인 등록)한 민간단체로, 농업분야 경영혁신, 농산물 유통 및 마케팅 전략 등 벤처농업과 관련한 정보를 온라인상에 제공하고 농림부의 지원하에 농업분야 경영컨설팅사업을 실시하는 등 농업의 위기를 벤처농업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럼의 등록회원은 약 160여명이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등 지역별로 구성된 포럼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수는 약 2,000여 명에 달한다.

한국벤처농업포럼은 오프라인 활동으로 한국벤처농업대학을 설립(2001년)하여 농민들

24) 민승규 박사(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에게 농민 스스로 자기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과 네트워크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12개월로 충남 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월 1회, 주말을 이용한 1박 2일의 교육을 통해 경영전략, 마케팅, 유통관리, 고객관리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식과 전략을 수강하며 수강료는 농업인 자체부담이다. 현재까지 5기 졸업생 700여 명을 배출하였으며 이중 10명이 '1촌1명품' 업체로 선정되는 등 많은 졸업생들이 경영에 성공하여 속칭 '농업 CEO 사관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벤처농업포럼은 2005년 채택한 「한국농업 희망선언문」에서 농업경영자들이 추구하여야 할 목표로서 정부의존의 타성에서 탈피하여 자립·자성을 추구해야 하며, 농산품의 품질로 소비자의 사랑과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농업을 한국경제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시하는 등 농업인의 계몽과 농업분야의 벤처혁명에 앞장서고 있다.

#### 4. 시사점

농림부의 벤처농업 육성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여 우리나라의 농업이 농산품시장 개방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현실은 같은 1차 산업인 수산업의 벤처활성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농림부는 창업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전국에 총 9개소의 농업전문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 중에 있다. 이들 농업전문 창업보육센터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축적된 지식과 정보,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대학교수 및 연구원에 의한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농림부의 지원정책을 알선하는 등 창업초기 농업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농업벤처 활성화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는 농산업에 첨단 바이오기술을 적용하고 유통 및 마케팅에 있어서의 혁신을 실현하는 토대가 되어 1차 산업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벤처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농림부가 조성한 농업전문투자펀드를 민간투자회사가 집행하여 높은 수익을 올린 점이다. 이는 조성된 펀드가 벤처농기업에 직접투자를 통하여 자금지원을 받음으로써 벤처농기업의 금융부담을 줄인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 즉, 농업분야의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의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림부가 직접 농업벤처캐피탈의 구성에 기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사실은 향후 민간 벤처캐피탈의 농업분야 관심제고와 투자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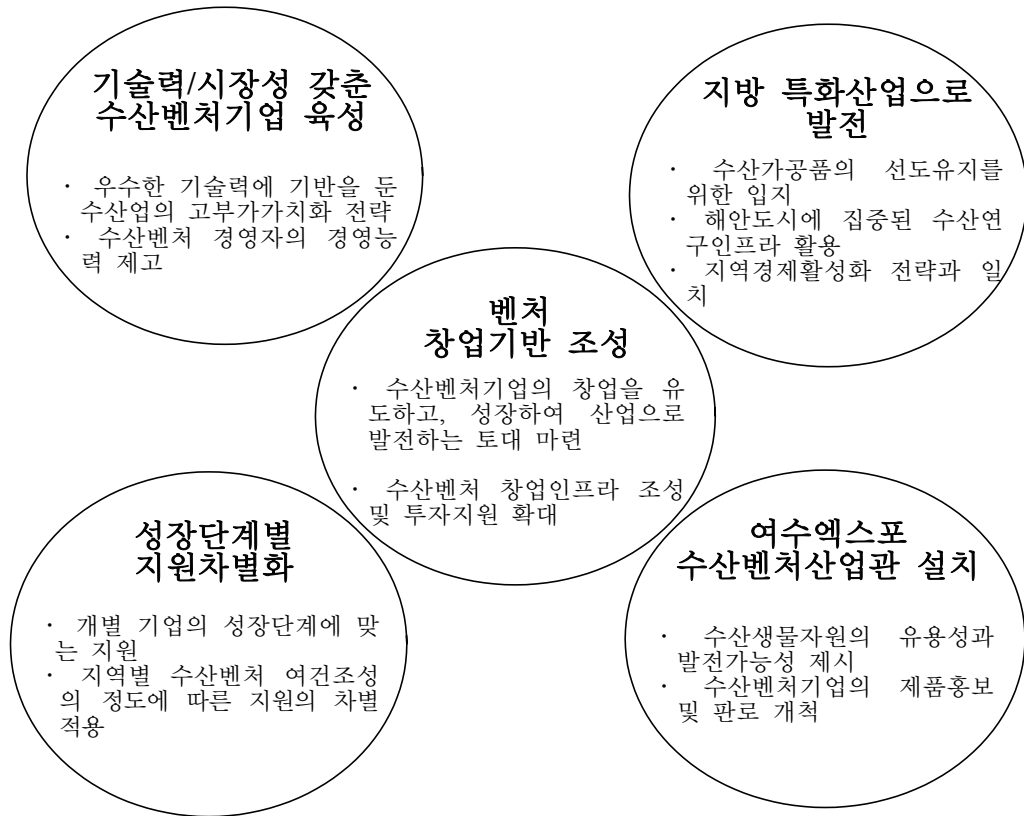


셋째, 농림부는 벤처농업창업경연대회 개최를 통하여 농업벤처 붐을 조성하고 농업인이 벤처창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회에서 1차로 선발된 12개 창업아이템을 대상으로 창업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한 교육과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한 후 각각 개별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케 하고 이에 대하여 서면 및 면접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수상자 6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창업교육과 컨설팅이 이루어지므로 대회는 단지 우수창업아이템을 발굴·시상하는 차원을 넘어서 창업지원의 효과를 얻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에 있어서의 벤처 붐을 선도한 민간단체의 노력이 다수 농민의 자발적인 벤처농업참여를 유도하였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사단법인 한국농업벤처포럼과 같은 민간단체를 정부주도로 결성할 수는 없겠지만,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농업부분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농업벤처포럼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산관련 종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의 설립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 제4절 수산벤처산업 활성화 전략 및 육성방안

### 1. 수산벤처산업 활성화 전략

수산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여 수산물 시장개방과 수산자원감소, 고유가 등의 수산업 내·외적 여건을 극복하고 국내 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갈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벤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해 보면 [그림 4-4-1]과 같다.



[그림 4-4-1] 수산벤처기업 활성화 전략

#### 가. 벤처 창업기반 조성

현 단계는 수산관련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수산벤처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하여 산업으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수산업 분야의 벤처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의 지원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수산벤처의 지원에 있어서 개별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수산업 내부적으로 혁신역량의 결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고 수산분야의 첨단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산업화 할 수 있는 여건과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수산벤처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이 수산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벤처창업의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나. 기술력과 시장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수산벤처기업 육성

21세기는 정보화·기술경쟁시대로 산업의 경쟁력은 「기술」과 「혁신」이 좌우한다. 이는 수산업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자원이 풍부하고 가격이 저렴한 중국,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과 경쟁하여야 하므로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구해야만 한다.

한편, 소비자의 기호 변화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출시하여 기업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경영자의 경영능력에 달려있다. 대부분의 수산벤처기업 경영자는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므로 수산벤처기업의 시장적응력 제고를 위해서 회계 및 재무관리, 홍보, 마케팅 등 경영전반에 걸친 재교육 및 컨설팅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

#### 다. 지방특화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유도

해양수산분야의 신기술을 개발·적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수산벤처기업은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므로 수산업 생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주로 위치한다. 수산가공품의 품질은 원료의 선도에 크게 좌우되므로 산지에 인근한 공장입지가 필수적이며, 수산물에 포함된 영양성분을 이용하여 식품첨가제나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는 해양바이오산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료를 쉽게 조달할 수 있고, 해양수산분야의 연구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는 해안도시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 지방정부는 수산업 및 수산업관련 산업을 지방의 특화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려는 의지와 노력이 충분하므로 수산벤처산업을 지방의 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수산업과 지역경제가 상호 발전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 라. 성장단계별 지원 차별화

벤처기업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창업인프라의 조성이다.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및 생명과학·식품공학 분야의 기술수준은 오랜 연구개발 투자의 결과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그러나 단순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성과가 산업부문으로 전달되는 기술이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산벤처기업의 창업은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므로 벤처산업 발전의 1단계에 해당되는 벤처 활성화 단계(벤처 붐 조성)부터 벤처기업 성장단계, 벤처기업 성숙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육성정책의 시현이 요구된다. 수산벤처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육성전략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동안 벤처기업의 성단단계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사회적 여건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우리나라는 이미 정보통신 및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벤처 붐 조성이 이루어졌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은 초기 벤처기업의 성공은 벤처 열풍으로 이어져 소위 “묻지마 벤처”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부작용을 겪은 후 다시 벤처산업 재도약의 단계에 올라와 있다. 이처럼 사회전반에 걸친 벤처의 인식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 수산벤처는 이러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양수산관련 종사자라는 소수의 벤처소외집단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창업지원을 통해 단기간에 벤처 창업을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전 지역에 있어서 균등한 성장단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여건에 따른 차별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전통적으로 수산식품 관련 산업이 활발하고, 고도기술을 이용한 수산벤처기업도 입지하고 있으며, 부경대학교와 국립수산과학원 등 수산분야 연구개발이 활발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부산광역시)의 해양수산분야 특화개발을 위한 관심과 노력정도도 높다. 이런 경우에는 벤처성장의 1, 2, 3단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며, 타 지역의 수산벤처육성을 선도하는 모델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마. 여수세계박람회에 수산벤처산업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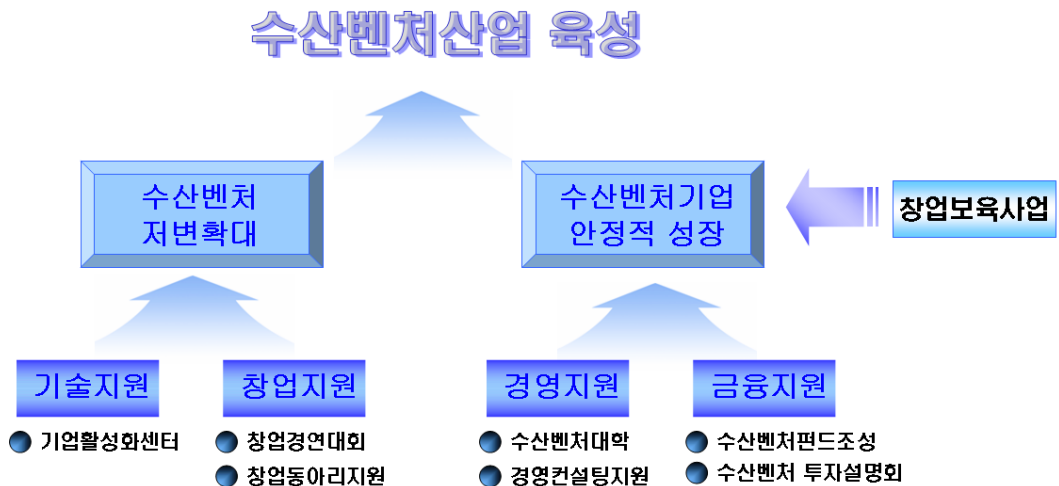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풍부한 자연 보전과 미래지향적 활동(The Living Ocean and Coast : Diversity of Resources and Sustainable Activities)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여수



세계박람회에서 수산벤처산업관을 설치하여 수산생물자원이 가진 유용성과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은 수산벤처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전시관은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생산한 미래형 수산가공식품과 수산생물자원으로부터 추출한 신물질을 이용한 식품, 의약품 및 기타 제품을 전시하여 미래 수산업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산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방문자에게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할 기회를 갖게 된다.

## 2. 수산벤처산업 육성방안

수산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림 4-4-2]과 같이, 수산벤처의 저변확대와 더불어 수산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수산벤처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기술지원과 창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산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창업보육사업의 전개와 경영 및 금융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4-4-2] 수산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 가. 기술지원(기업활성화센터 활용)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분야 기술개발을 위해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과 마린바이오21사업 등 연구개발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수산벤처기업의 수는 많지 않다. 벤처기업의 경쟁력은 과학기술의 연구 성과를 산업화하고 이를 시장에 적용시킴으로써 발생한다.

따라서 수산업계와 과학·기술의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이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산하의 기업활성화센터(가칭)」는 해양수산관련기술의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수산분야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기술거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수산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각 지방별 해양수산분야에 특화된 대학<sup>25)</sup>이 그 지역의 수산벤처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담당케 하여 수산벤처기업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연구소 등 정부연구기관이 수산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자문 및 기술평가 등 수산벤처 기술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나. 창업지원

### 1) 수산벤처창업경연대회

창업경연대회는 벤처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발굴할 기회가 되므로 초기 벤처 붐 조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수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생산설비 및 자재, 해양바이오기술 응용사업 등 해양수산관련 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수산벤처 창업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유망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수산부문의 벤처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수산벤처 창업경연대회는 수산업자뿐만 아니라, 학생, 교수, 연구원 등 수산관련 예비창업자에게 참가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선발된 창업아이템에 대한 사업계획평가를 하고 이 과정과 결과를 모든 참가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창업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2) 창업동아리 지원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미래의 창업자로서, 이들의 창업동아리활동은 이공계(수산계 포함)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고양하고, 창업에 관한 연구·조사 구상 및 실습을 통해 창업준비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벤처산업의 육성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특히 해양수산분야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수산업 및 해양생물공학기술관련 학과의 학생들에게는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타 분야로의 이탈을 예방할 수 있

25) 부산의 부경대학교, 전남의 전남대학교(여수), 전북의 군산대학교, 강원도의 강원도립대학, 제주의 제주대학교, 경남의 경상대학교(통영) 등



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창업동아리 지원에는 PC, 사무용품 등 시설품 구입비 및 동아리 운영비 지원이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창업경연대회 참가를 위한 준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비교적 소액의 지원금으로 수산벤처에 대한 관심과 벤처창업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지원방법이다.

#### 다. 창업보육사업지원(수산전문 창업보육센터 설립)

창업보육사업은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를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BI)에 입주시켜 통상 3년간 보육실이라는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전문 창업매니저를 통한 경영, 기술, 마케팅, 자금, 법률, 특허 등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는 창업기업의 설립초기단계에서 건물 임대료 및 운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기술 및 경영 등 창업전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창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창업보육센터의 형태는 정부가 대학 또는 연구소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경우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유형이 있으며, 전자가 동 사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1993년부터 창업보육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하여 2006년 말 현재 전국에 269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중소기업청의 지정을 받았으며, 4,328개 입주기업 중 955개사가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명실공히 벤처창업의 산실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창업보육센터는 해양수산분야의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수산전문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은 수산벤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 라. 경영지원

수산벤처기업의 경영자는 일반적으로 기업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사업전략 마인드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들 기업은 제품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경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고용할 여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수산벤처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산벤처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수산벤처대학 설립과 경영컨설팅 지원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수산벤처대학 설립추진

수산관련분야 경영인을 대상으로 경영, 유통, 전자상거래, 홍보, 품질인증 등 경영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완도군이 설립한 한국수산벤처대학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농업부문의 벤처경영자 교육프로그램인 농업벤처대학은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입학자 스스로 수강료를 부담하는데 비해 한국수산벤처대학은 지방정부가 수강료 전액을 지원하고 지역의 대학이 교육장소를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정책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수산벤처기업인의 경영능력제고에 활용할 수 있다. 즉, 해양수산부는 각 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수산업 및 경영관련 학과에 수산벤처대학의 개설을 위한 장소제공을 의뢰, 필요한 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수강생의 수강료를 지원토록 하여 보다 많은 수산벤처경영인이 경영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신설되는 수산벤처대학간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2) 수산벤처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경영컨설팅이란 창업, 경영, 사업전략, 품질관리, 인사관리, 각종인증, 유통 및 마케팅, 세무, 재무, 회계 등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분야의 애로사항을 전문가집단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벤처기업이 자체부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영컨설팅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전개하여 수산벤처기업의 경영능력을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sup>26)</sup>

## 마. 금융지원

### 1) 수산벤처펀드 조성

수산분야의 벤처기술은 IT 등 타 벤처기술에 비해 자금소요가 많은 편이며, 이는 기술의 개발단계 뿐만 아니라 사업화단계에서도 계속되는 문제이다. 특히, 벤처캐피탈의 수산부문에 대한 투자는 매우 저조하여 수산벤처기업은 타 벤처기업에 비해 자금유통의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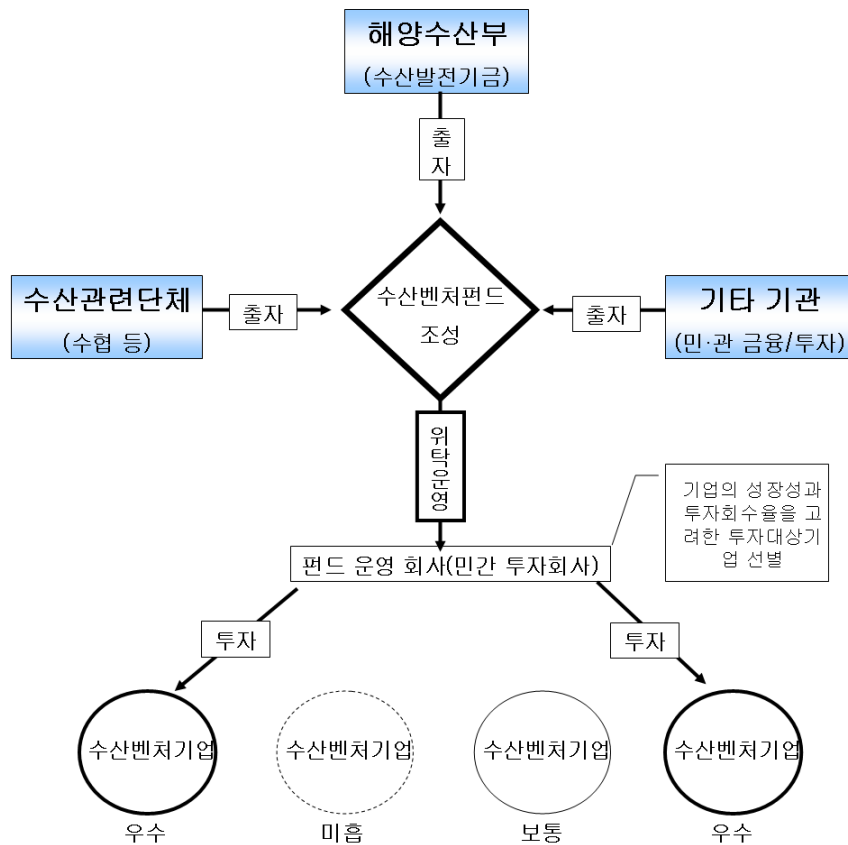
26)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쿠폰제 경영컨설팅사업을 시행, 2006년 1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611개사를 지원하였으며, 2007년 200억원, 2008년 254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한편, 농림부는 1999년부터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06년에는 농특회계 재원중 44억원을 투입하여 828농가, 181농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비용을 지원하였다.



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농림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산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의 투자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해양수산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용한 대안이 수산벤처펀드의 조성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발전기금<sup>27)</sup>의 일부를 투자하여 수산벤처펀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정부기관에 의한 전액 출자보다는 수협 등 수산업 관련단체, 중소기업청, 민간투자금융(벤처캐피탈) 등과 공동출자의 형태로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벤처펀드가 결성되면 해양수산부는 펀드의 운영에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펀드가 전적으로 경제적 동기에 의해 투자활동을 전개하고 경쟁력을 갖춘 수산벤처기업이 벤처펀드의 투자에 의해 선별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수산벤처펀드의 조성을 도식화하면 [그림 4-4-3]과 같다.



[그림 4-4-3] 수산벤처펀드의 조성과 운영

27) 수산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는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제2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수산발전기금사업의 목적은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체결, FTA 및 WTO-DDA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어업인 및 관련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발전도모임. 기금운용관리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며, 수협중앙회장이 수탁관리하고 있음. 2001년 7월 기금운용개시

펀드는 반드시 하나만 조성할 필요는 없으므로 지원대상이 되는 업종에 따라 수산식품 제조·가공업을 지원하는 펀드와 수산생명공학분야를 지원하는 펀드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펀드를 고려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해양수산부간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조성하여 지방정부의 출연 금액에 따라 중앙정부의 예산지원비율을 결정하는 방법도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 수산벤처 투자설명회 개최

벤처캐피탈은 철저히 벤처기술의 시장화 능력과 성장잠재력을 기준으로 투자를 한다. 따라서 벤처캐피탈로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산벤처기업이 기업으로서의 발전역량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수산분야의 투자위험성에 대한 선입견과 수산벤처의 기술력 및 시장성이 저평가되는 것도 벤처캐피탈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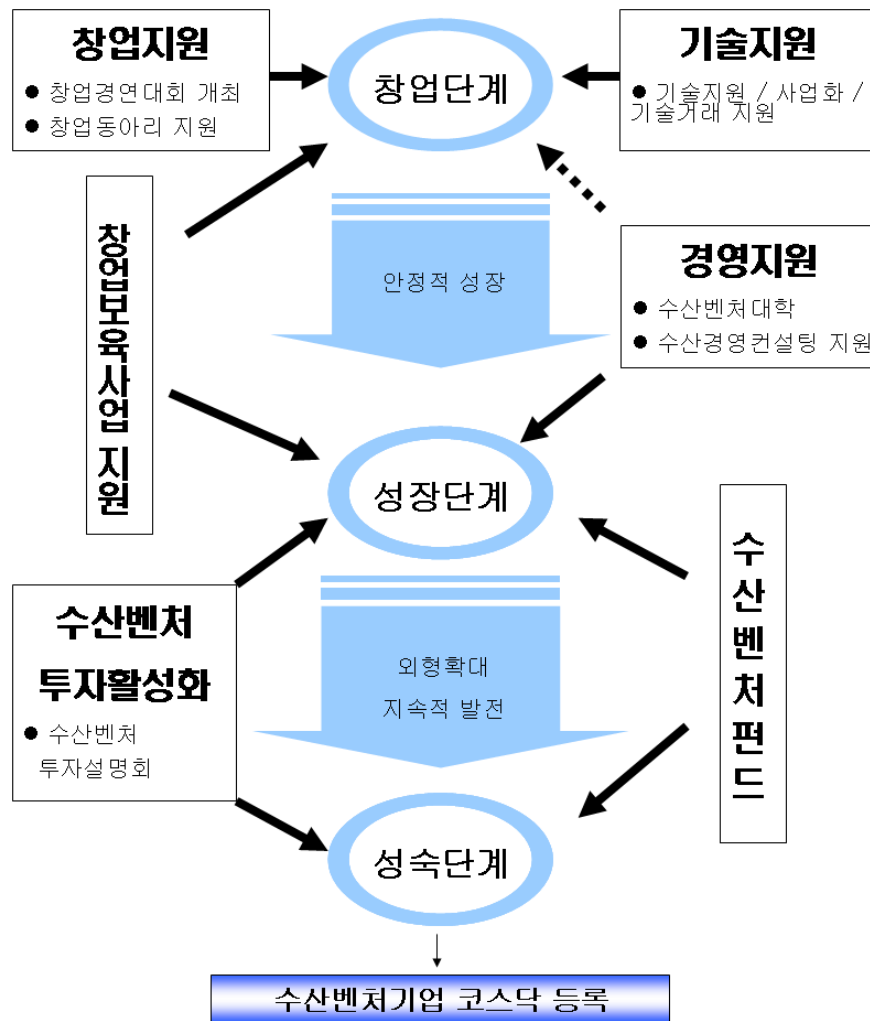
한편, 수산벤처기업의 경영자는 대체로 금융 및 투자에 있어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여 무상으로 자금투자를 제공받는데 그 대가로서 기업을 공개하고 자사의 주식지분을 포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수산분야의 벤처캐피탈 투자확대를 위해서 해양수산부는 벤처캐피탈회사가 수산분야의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개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산벤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벤처캐피탈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수산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캐피탈의 역할과 유용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 3. 세부추진계획

수산벤처산업 활성화 전략 및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은 세부추진계획에 의해 추진되어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부추진계획이란 수산벤처기업의 발전단계 즉 창업, 성장, 성숙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에 적합한 추진과제 및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림 4-4-4]에 수산벤처기업의 발전단계를 제시하였는데 창업단계→성장단계→성숙단계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과 기술지원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입주 및 경영지원 등을 통해 창업단계에서 성장단계로 발전한다. 외형확대 및 지속적 발전으로 성숙단계에 들어서고 마지막에는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다.



[그림 4-4-4] 수산벤처기업 발전단계

수산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시험하기 위한 수산벤처기업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해 보면[표 4-4-1]과 같다. 이 세부추진계획은 향후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업으로 선정하는데 주요한 근거 자료 또는 참고자료로 그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4-4-1] 수산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산벤처기업의 발전단계	사 업	내 용	비 고
창업단계	기술지원사업	기술이전 / 산업화 / 기술거래 지원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부설 기업활성화센터 시행
	수산벤처 창업경연대회	연1회	수상자 상금 지급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10개 수산벤처 창업동아리 결성지원	수산관련 과정이 개설된 대학 및 대학원 우선지원
	창업보육사업	수산전문 창업보육센터 설치 - 동·서·남해 및 제주 각 1개소 (총 4개소)	1개소 당 10개 수산관련 창 업기업 입주(총 40개 기업 입주)
	수산벤처대학 설립	완도 수산벤처대학 정부지원개시 동남해안권 수산벤처대학 1개소 추가 설립(통영)	과정 당 40인씩 총 80인의 수산벤처경영인 양성
성장 / 성숙단계	수산벤처펀드 운영	50억원 규모의 수산벤처펀드 조성	해양수산부 60% 출자 (수산발전기금) 기타기관 40% 출자유치
	수산벤처 투자설명회	연1회	향후 수산벤처박람회로 발전
	수산경영컨설팅지원	연간 50개 기업 대상 경영컨설팅비용의 일부를 국고 지원	50개사 × 1,000만원 = 5억원 소요

먼저,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창업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수산벤처 창업동아리를 지원하며, 연구개발사업의 산업화 및 기술이전촉진을 통해 벤처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킨다. 수산벤처기업을 위한 기술지원은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부설 기업활성화센터(가칭)가 전담하여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수산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창업동아리 지원사업은 10개 수산벤처 창업동아리의 결성을 목표로 수산관련 과정이 개설된 대학을 우선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한다. 수산벤처 창업경연대회는 연1회 개최하고 수상자에게는 일정한 상금을 지급토록 한다.

수산벤처기업이 창업단계에서 성장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산전문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보육사업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수산벤처기업 경영자의 경영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수산전문 창업보육센터는 동·서·남해 및 제주에 각 1개소씩, 총 4개소를 설치하며, 규모는 1개소 당 10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완도군에서 운영중인 수산벤처대학과정의 운영에 정부지원을 실시토록 하며, 동남해안권에 수산벤처대학 1개소를 신설하여 연간 80명의 수산벤처 경영인을 양성한다.

성장단계에 도달한 수산벤처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수산벤처펀드를 조



성하고, 벤처캐피탈 및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산벤처 투자설명회를 매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발전기금 중 30억원을 출자하며 나머지 20억원은 기타기관의 투자를 유치한다. 수산벤처 투자설명회는 향후 수산벤처 박람회로 발전시킬 수 있다. 한편, 수산경영컨설팅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연간 50개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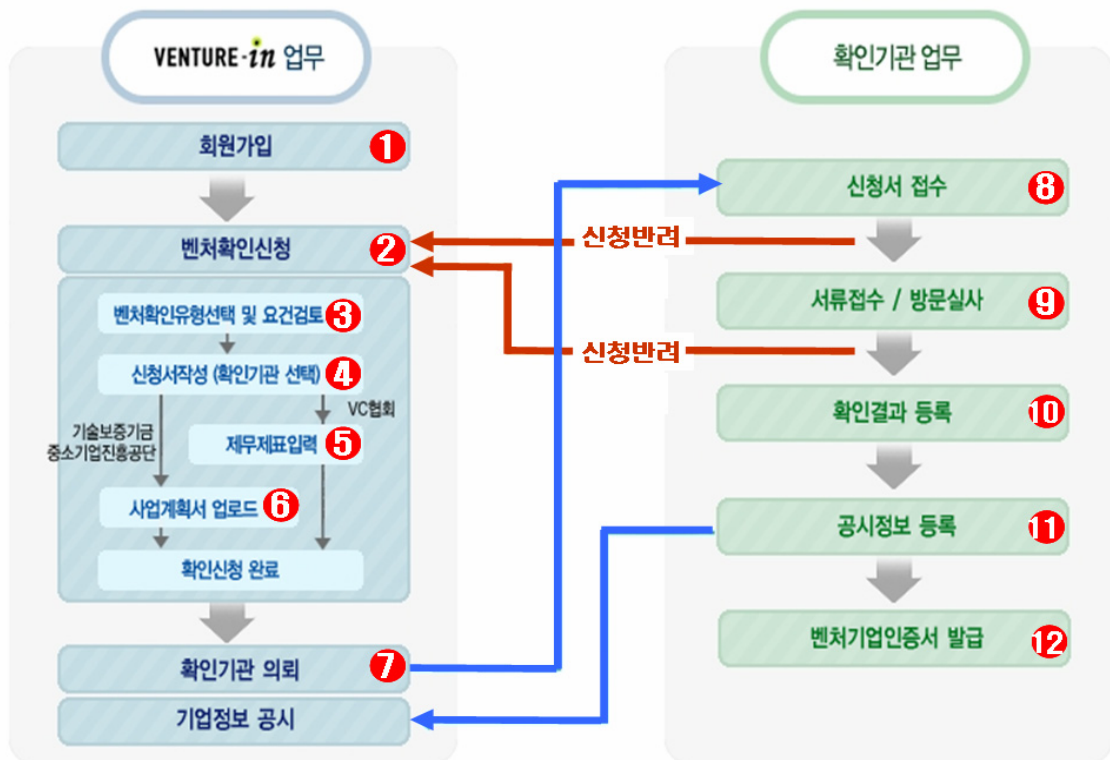
이들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4-2] 수산벤처 지원정책 추진 로드맵 Matrix

수산벤처기업 발전단계	사업	2008	2009	2010 이후
창업단계	수산벤처 창업경연대회	제1회 대회 개최 (상반기 대회준비, 9월 개최)	계속 추진	
	창업동아리 지원	창업동아리 지원방안 검토	10개 동아리 선정 운영·활동비 지원	평가후 지원확대 결정
	창업보육사업	창업보육센터 도입방안 마련 및 예산 확보	수산전문 창업보육센터 설립 (동·서·남해 및 제주 등 4개소)	창업보육사업 내실화
	기술지원사업 (KIMST)	기업지원 서비스 기반조성 및 기업활성화센터 세부 운영로드맵 확정	기업활성화센터 설립 사이버기술거래소 오픈	기술인증사업 실시
	수산벤처대학 설립지원	완도 수산벤처대학 정부지원 수산벤처대학 설립 검토 (동남해안권)	신설 수산벤처대학 신입생 모집 및 개강 (정원 40명, 1년 과정)	수산벤처대학 강의록 인터넷 열람서비스 개시
성장 / 성숙단계	수산경영컨설팅 지원	수산경영컨설팅 인력풀(전문가) 확보	수산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개시 (매년 5억 지원)	수산경영컨설팅 인증제 도입
	수산벤처펀드	수산벤처펀드 조성방안마련 (투자자 확보)	제1호 펀드 조성 및 운영시작 (50억 규모)	1호펀드 운영결과에 따른 2, 3호 펀드 조성
	수산벤처 투자설명회	제1회 대회 개최	계속 추진	수산벤처박람회로 발전 (여수엑스포 활용)

## 제5절 벤처기업 등록 절차

벤처기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수산기업은 다음 [그림 4-5-1]의 절차에 따라 벤처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림 4-5-1] 벤처기업 등록절차

출처 : [www.venturein.or.kr](http://www.venturein.or.kr)

- ① 벤처기업등록은 인터넷 홈페이지([www.venturein.or.kr](http://www.venturein.or.kr)) 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벤처기업으로 등록을 원하는 기업은 우선 벤처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 ② 회원 가입후 “벤처확인신청”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 ③ 신청 시 벤처법에서 정하고 있는 벤처기업 확인유형별로 요건을 검토한 후 4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한다(확인유형은 [표 4-2-2] 참조).
- ④ 확인기관을 선택한 후 신청서를 작성한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벤처확인기관은 1. 기술보증기금, 2. 중소기업관리공단, 3. 벤처캐피탈협회이다.



- ⑤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하지 않고 벤처확인을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 ⑥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양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해야 한다.
- ⑦ 확인유형 및 확인기관을 선택하여 확인신청이 완료되면 입력한 벤처확인신청서가 인터넷을 통해 확인기관 담당자에게 전달된다.  
연구개발기업의 경우 벤처확인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외 “한국기술거래소”,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산업진흥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은행”에서도 사업성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벤처인”에서 사업성평가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 ⑧ 인터넷을 통해 벤처확인신청서를 전달받은 확인기관 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향후 일정(서류준비 및 방문실사 등)을 결정하여 업체에 통보한다. 벤처기업 확인평가 수수료는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표 4-5-1] 벤처기업 확인평가·수수료

(단위 : 천원, 부가세별도)

구분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예비벤처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확인평가료	-	500	200	300
확인수수료	100			

- ⑨ 확인유형 및 확인기관에 따라 서류제출 및 방문실사를 받는다.
- ⑩ 각 확인기관에서 확인평가가 완료되면 벤처인에 확인결과가 등록된다.
- ⑪ 확인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기업의 경우, 기업정보를 공시하면 벤처인증서를 발급받는다.  
※ 현행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에 의하면 확인기관에서 신청 접수일로부터 벤처투자기업은 30일,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연구개발기업은 45일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 있다.  
※ 기타 벤처기업 창업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안내서 「2006 새로운 출발, 벤처&창업」 참고바람



## 제 5 장

#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방안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어업인 삶의 질 관련 정책현황과 시사점
제 3 절	어업인 삶의 질 실태
제 4 절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지원 과제



## 제1절 개 요

최근 우리 경제가 발전하면서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특히 도시 또는 농촌과 비교하여 그 격차가 벌어지는 즉 어촌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범 정부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시장개방의 진척에 따라 어촌과 도시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향후 전반적인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해양수산의 주요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하여 향후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국제무역자유화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도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어촌에서 어업인이 안정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부실천 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어업인 삶의 질과 관련하여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현황 및 관련 사업 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타 연구사례를 근거로 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 실태를 정리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 또는 농촌과 비교하여 특히 낙후된 부분에 보다 세심한 정책 및 관련 사업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 또는 대책에 대해 어촌의 어업인이 실제로 수혜 받고 있는지 또는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사업의 이행여부를 검토하였다. 동시에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어촌에는 실시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절차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그 동안 어촌 또는 어업인만을 위한 삶의 질 향상 방안은 수립하여 추진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견해를 반영하여 타 부처와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해양수산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 부지원사업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정책적으로 우선 추진해야 하는 사업별 우선순위를 부여하였으며 관련 담당부서를 명기하여 정책추진에 용이성을 기하도록 노력하였다.



## 제2절 어업인 삶의 질 관련 정책현황과 시사점

### 1. 정책 및 사업현황

어업인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범 부처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행 정책과 관련 대책 및 사업은 2004년에 제정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하 삶의질법이라 함)의 마련이 그 계기가 되었다. 동 법은 그 동안 각 부처에서 분산·지원하고 있던 농산어촌지원사업을 종합·체계화하고 범 부처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현재 삶의질법에 근거하여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5개년(’05~’09)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 계획에 의해 구체적인 대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동 5개년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 농림부, 교육부 등 15개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도출한 [그림 5-2-1]에 제시한 바와 같이 4개 부문의 중점과제와 각 부문별 전체 133개의 세부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4개 부문의 중점과제는 농어촌복지기반확충, 농어촌교육여건개선, 농어촌지역개발 그리고 복합산업 활성화이며 각 부문별로 추진해야 하는 세부계획 및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5-2-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중점과제

2006년도 추진사항을 보면 15개 부처에서 106개 과제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과제는 7개, 나머지 99개 과제는 14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다. 2006년도 동 계획에 소요된 총 예산 42,746억 원 중에서 해양수산부 예산은 1,009억원으로 전체의 2.4%의 비중이며, 타 부처는 41,737억원, 97.6%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표 5-2-1]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계획추진과제 현황(2006)

구 분	해양수산부	농림부	교육부	문광부	복지부	농진청	행자부	기 타	합 계
과 제	7	31	17	8	6	14	8	17	106
예 산 (억원)	1,009 (2.4%)	41,737(97.6%)							42,746

자료 : 신영태 외, WTO/FTA 협상이후 수산업·어촌정책방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현재 해양수산부는 소관 7개 과제 즉,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어촌종합개발사업, 국고여객선건조, 디지털어촌구축(어업인정보화교육), 어촌체험마을조성, 어촌관광활성화 및 자영수산물과급식비지원 등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들 7개 과제 중에서 어업인복지와 직접 관련되는 과제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국고여객선건조, 디지털어촌구축 및 자영수산물과급식비지원 4개 과제이며, 나머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조성 및 어촌관광활성화사업 등 3개 과제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106개 추진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농어촌 복지기반 확충분야 24개 사업,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분야 22개 사업,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 35개 사업 그리고 농어촌 복합산업 활성화 25개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106개 세부사업 가운데 농업인의 수혜범위는 100개 사업(94.3%), 어업인의 수혜범위는 68개 사업(64.2%)으로 그 수혜범위에서 어업인이 농업인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의 전반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써 농어촌의 양극화를 완화를 지향하고 균형발전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4대 과제분야별 관련사업을 살펴보면 농어촌 복지기반 확충분야 24개 사업,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분야 22개 사업,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 35개 사업 그리고 농어촌 복합산업 활성화 25개 사업 등 총 106개 세부사업 가운데 농업인의 수혜범위는 100개 사업(94.3%), 어업인의 수혜범위는 68개 사업(64.2%)으로 그 수혜범위에서 어업인이 농업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표 5-2-2] 참조).





[표 5-2-2]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과제 현황

추진과제	세부사업 (개)	수혜범위	
		농업인	어업인
소계	106	100	68
농어촌 복지기반 확충분야	24	23	12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분야	22	22	20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	35	32	25
농어촌 복합산업 활성화	25	23	11

어업인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68개 과제 중 7개 과제를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공통으로 여겨지는 과제는 관련 담당부처와 농림부에서 주로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인만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주로 농진청이 담당하는 등 농업 및 농촌 분야는 농림부와 농진청의 역할분담에 의한 보다 많은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양수산부와는 차이를 알 수 있다. 4대 중점과제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농어촌복지 관련 추진사업 및 대책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분야에는 총 24개 과제 및 사업이 있으며 크게 사회안전망 확충(4개 과제), 의료기반 확충(7개 과제), 영유아 및 여성복지(9개 과제), 노인복지(4개 과제) 등이 포함된다([표 5-2-3] 참조).

첫째, 사회안전망 확충으로는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 농작업재해보상지원, 어선원재해보상지원 4개 사업이 있고, 이 중 해양수산부가 직접 관여하는 사업은 어선원재해보상지원 1개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농림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둘째, 의료기반 확충으로는 농산어촌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농산어촌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등 7개 사업이 있다. 의료기반 확충과 관련된 사업은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농업인의 건강관리, 농작업 재해 등 농업·농촌과 관련된 특화된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어업인들의 건강증진이나 작업재해와 관련하여 특화된 사업은 아직 정책적으로 발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유아 및 여성복지는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여성가족부), 농산어촌 만 5세아 무상보육지원 2개 사업,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지원(농림부) 등 4개 사업, 농촌진흥청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등 3개 사업이다. 영유아 및 여성복지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사업이 있으며, 노인 봉사원활동 프로그램 개발,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및 경영이양직불제 등 3개 사업은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이 담당하고 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표 5-2-3]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분야 세부사업

추진과제		담당부처	수혜범위	
			농업인	어업인
소 계		24개	23	12
사회안전망 확충	○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농림·복지부	○	○
	○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 개선	농림부 이관	○	○
	○ 농작업 재해보상 지원	농림부	○	×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해양수산부	×	○
의료기반 확충	○ 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복지부	○	○
	○ 농산어촌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	○	○
	○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	○	○
	○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확충	농촌진흥청	○	×
	○ 농작업재해 원인규명 및 환경개선	"	○	×
	○ 농작업재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	×
영유아 및 여성복지	○ 안전영농구역 조성 지원사업	"	○	×
	○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여성가족부	○	○
	○ 농산어촌 만 5세아 무상보육지원	"	○	○
	○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지원	농림부	○	○
	○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	○	○
	○ 농어가 도우미 지원확대	"	○	○
	○ 취약농가 인력지원(사고농업인 영농지원)	"	○	×
	○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농촌진흥청	○	×
노인복지	○ 생산제품 품질향상 지원	"	○	×
	○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	○	×
	○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보건복지부	○	○
	○ 노인봉사원 활동 프로그램 개발	농촌진흥청	○	×
	○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	○	×
	○ 경영이양 직불제 확대	농림부	○	×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를 재구성하여 작성함





## 나. 농어촌 교육 관련 사업 및 대책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분야는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 22개 사업으로 크게 교육기회제공과 교육비 경감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교육기회 제공은 농산어촌 우수고교 집중육성, 농산어촌 실업계고 특성화·내실화, 학교군 구성·운영,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11개 사업이고 교육비 경감은 주로 교육비, 학자금 융자지원, 급식비 지원 등 11개 사업으로 교육인적 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다(<표 5-2-4> 참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분야의 수혜범위를 살펴보면, 농업인 22개 사업, 어업인 20개 사업으로 타 분야에 비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진청의 한국농업전문학교운영과 농림부의 농과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 지원 등 2개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와는 별개의 정책사업으로 독자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은 향후 수산부문에 도입 가능한 사업이라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5-2-4]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분야

추진과제		담당부처	수혜범위	
			농업인	어업인
소 계		22개	22	20
교육기회제공	○ 농산어촌 우수고교 집중육성	교육부	○	○
	○ 농산어촌 실업계고 특성화·내실화	교육부	○	○
	○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 운영	농진청	○	×
	○ 학교군 구성·운영	교육부	○	○
	○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시범지역 지원	〃	○	○
	○ 복식수업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	○
	○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	○
	○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	○	○
	○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	○	○
	○ 방학캠프 운영지원	〃	○	○
	○ 농산어촌 공립 병설유치원 신·증설	〃	○	○
교육비 경감	○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	○	○
	○ 농어업인 교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농림부	○	○
	○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	○	○
	○ 농과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 지원	〃	○	×
	○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	교육부	○	○
	○ 자영농·수산계고 급식비	농림·해수부	○	○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	교육부	○	○
	○ 농산어촌 학교 교원 근무수당 신설	〃	○	○
	○ 교원 사택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	〃	○	○
	○ 학교도서관 및 장서확충 지원	〃	○	○
	○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	〃	○	○

자료 : 상계서



#### 다.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사업 및 대책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농림부, 산림청, 행정자치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크게 마을개발, 중심지 개발, 주거환경정비,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교통여건 개선, 면단위개발, 문화복지, 정보화 기반, 정보 활용도 등으로 구별해 볼 수 있으며, 세부사업은 총 35개 사업이다([표 5-2-5] 참조).

첫째, 마을개발은 해양수산부(어촌종합개발사업), 농림부(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산림청(산촌종합개발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개발사업이다. 어촌의 경우 어촌종합개발사업 225권역에 대해 생산기반,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 소득증대 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둘째, 중심지개발로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읍단위 중심지역에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중추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도시와 농어촌을 연결하는 거점기능에 투자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연계성 제고하는 사업으로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셋째, 주거환경정비는 행정자치부 농산어촌 주거환경개선(주택개량, 마을정비, 빈집정비)과 농촌진흥청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개발·보급이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개발·보급은 민박농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주택 내부 개선, 텃밭, 담장, 정원, 건물외벽 녹화 등),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관광 활성화에 매우 유용한 정책사업이 될 수 있는 반면 어촌지역은 해양수산부 차원의 정책발굴이 미흡한 상황이다.

넷째,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는 여러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면단위 생활용수 개발(환경부), 마을단위 생활용수 개발(농림부), 면단위 하수도 사업(환경부), 소하천정비(소방방재청),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환경부),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농림부) 등이 있다. 도서어촌지역의 경우 쓰레기와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매립이나 방류가 나타나고 있어 어촌의 주거환경 조건을 고려한 정책사업 발굴이 필요한 부분이다.



[표 5-2-5]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

사 업 명		주관부처	수혜범위		
			농업인	어업인	
소 계		35개	32	25	
마을개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림부	○	×	
	어촌종합개발사업	해양수산부	×	○	
	산촌종합개발사업	산림청	○	×	
중심지개발	소도읍 육성사업	행정자치부	○	○	
주거환경 정비	농산어촌 주거환경개선 - 농어촌 주택개량(농특세 10%) - 농어촌 마을정비(마을하수도 정비) - 농어촌 빈집정비	행정자치부	○ ○ ○	○ ○ ○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개발·보급	농촌진흥청	○	×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면단위 생활용수 개발	환경부	○	○
		마을단위 생활용수 개발	농림부	○	○
면단위 하수도 사업		환경부	○	○	
소하천 정비		소방방재청	○	○	
폐기물 처리시설지원		환경부	○	○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농림부	○	×	
교통여건 개선	농어촌도로정비	행정자치부	○	○	
	교통서비스 강화 - 농산어촌 버스운행노선 운영비 지원 - 농산어촌 공영버스 구입 및 폐차비 지원	건설교통부	○ ○	○ ○	
	국고여객선 건조	해양수산부	×	○	
	면단위개발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농림부	○	×
오지개발촉진사업		행정자치부	○	○	
도서개발촉진사업		행정자치부	○	○	
문화복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문화관광부	○	○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문화관광부	○	○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문화관광부	○	○	
	지방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문화관광부	○	○	
	테마과학관, 사이언스 샵 건설	과학기술부	○	○	
	산림박물관 건립	산림청	○	×	
정보화기반	정보화마을 조성	행정자치부	○	○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정보통신부	○	○	
	정보화 인프라 구축	농림부	○	×	
	디지털어촌 구축사업(어촌정보화사업)	해양수산부	×	○	
정보활용도	농업인 정보화 교육	농림부	○	×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선정 및 활용	농림부	○	×	
	농어업 관련 정보 제공 확대	농림부	○	○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확대	농림부	○	×	

자료 : 상계서

## 라. 농어촌 복합산업 활성화 관련 사업 및 대책

농어촌 복합산업 활성화 분야는 해양수산부, 농림부, 농촌진흥청 등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크게 지역산업, 체험관광, 경관보전, 소득보전, 도농교류 등으로 구별해 볼 수 있으며, 세부사업은 총 25개 사업이 있다([표 5-2-6] 참조).

지역산업은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 구축(농촌진흥청), 지역부존 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농림부), 농어업인 고용촉진훈련(노동부) 3개 사업이 있으며, 특히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진흥청의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구축은 어촌에도 신속하게 도입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어촌의 문화 및 역사자원을 발굴하고 어촌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체험관광은 해양수산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어업인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는 문화역사마을 조성(문화관광부), 어촌체험마을 및 어촌관광활성화 사업(해양수산부), 문화 및 생태, 녹색, 관광자원개발사업(문화관광부), 농산어촌 체험박람회와 체험관광 홍보(농림부 - 한국농촌공사), 향토문화관광축제 육성(문화관광부) 등이 있다.

셋째, 경관보전은 경관보전 직불제,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 등 최근 농촌에서만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으로 향후 어촌경관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어촌에도 하루 속히 도입되어야 할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소득보전과 관련하여 농촌에서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어촌의 경우는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를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도농교류는 농림부 중심으로 도시민 농산어촌 주택 갖기 활성화, 도농교류 참여프로그램 및 마케팅 확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1사 1촌 운동이후 도농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을 시도하고 있다. 어촌 역시 도시와의 교류를 위해 다양한 정책발굴이 시급히 필요한 대목이다.

농어촌 복합산업 활성화 분야는 25개 사업 가운데 농업인 대상 23개 사업(92.0%), 어업인 대상 11개 사업(44.0%)으로 농촌과 비교하여 어촌이 가장 뒤쳐진 분야라 할 수 있다.



[표 5-2-6] 농어촌 복합산업 활성화 분야

사 업 명		주관부처	수혜범위	
			농업인	어업인
소 계		25개	23	11
지역산업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구축	농촌진흥청	○	×
	지역부존 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농림부	○	×
	농어업인 고용촉진훈련	노동부	○	○
체험관광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농림부	○	×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농촌진흥청	○	×
	문화역사마을 조성	문화관광부	○	○
	어촌체험마을 조성	해양수산부	×	○
	어촌관광활성화 사업	해양수산부	×	○
	산림휴양공간 조성 및 수목원 조성	산림청	○	×
	- 산림휴양공간 조성			
	- 수목원 조성	○	×	
	문화 및 생태, 녹색, 관광자원개발사업	문화관광부	○	○
	-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 문화관광자원개발	○	○	
	농산어촌 체험박람회 개최	농림부	○	○
	농산어촌 체험관광 홍보	농림부	○	○
중앙, 지방,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평가, 관리체계 구축	농림부	○	×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문화관광부	○	○	
경관보전	경관보전 직불제	농림부	○	×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	농촌진흥청	○	×
	농산어촌 경관주택 발굴, 보급	농림부	○	○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	산림청	○	×
- 자생식물 식재				
- 생태숲 조성	○	×		
소득보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농림부	○	×
도농교류	도시민 농산어촌 주택 갖기 활성화	농림부	○	○
	도농교류 참여프로그램 및 마케팅 확대	농림부	○	×
	도농교류센터 운영	농촌진흥청	○	×

자료 : 상계서

## 2. 시사점

현행 추진되고 있는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에 따라 범정부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농산어촌에 대한 삶의 질 향상 정책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어업인만을 위한 삶의 질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어업인 삶의 질에 관한 실태파악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2004년도에 실시한 농산어촌복지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는 농림부가 중심이 되어 실시한 것으로 주로 농업인·농촌을 대상으로 한 복지 및 지역실태조사였다. 따라서 자칫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농촌에 비해 우선순위 또는 정책개발에서 밀려날 우려가 있다.

셋째, 2006년도 현재 총 106개 세부이행과제 중 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68개 이행과제가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38개 세부이행과제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다. 이러한 이행여부 뿐만 아니라 실제 이행정도 또는 달성정도에 대하여 검토를 통하여 농업인·농촌과의 격차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농진청에서 추진하는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구축’은 그 수혜대상이 어업인과 농업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어촌에서의 이행정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넷째, 어업인 복지와 관련된 홍보부족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연구결과<sup>28)</sup>에 의하면 어가도우미를 활용한 어가는 거의 없어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파악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복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농림부 소관법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과 해양수산부 소관법인 ‘어촌어항법’에는 유사한 내용의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이 둘의 관계와 업무 및 역할 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담당부서가 수산경영과와 어촌어항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향후 어업인 및 어촌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정책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8) 최성에 등, ‘어촌여성의 노동실태와 정책과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5. 12



### 제3절 어업인 삶의 질 실태

현재 타 연구에서 수행<sup>29)</sup>되고 있는 소득, 건강·사회안전망·복지, 교육, 생활·환경, 문화·교류 등 6개 부문에 있어 실태조사 결과분석<sup>30)</sup>을 통하여 어업인 삶의 질 실태와 만족도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양극화지수 분석에 따르면 어촌의 소득양극화 정도가 농가 및 전국가계의 다른 부문보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유형별로는 취약지구 어촌의 소득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그 정도도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건강·보건의료부문에 있어 과거자료의 부족으로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어촌의 건강검진 경험자 비율은 60%로 비교적 높게 집계되었다. 그리고 어촌에서는 병원 또는 보건소보다 약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병원 이용률이 높은 농촌 및 도시와 대조<sup>31)</sup> 또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

셋째, 선박을 이용하는 보건·의료기관 접근성이 농촌과 비교하여 2배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취약지구 어촌의 경우 질병 치료시 어촌, 농촌, 도시 공히 애로사항으로 지적하는 치료비 과다보다는 의료기관이 먼 것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지구 어촌의 특히 취약한 의료부문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태풍 등 어촌의 자연재해 피해 빈도가 농촌과 도시보다 높으며 특히 대규모 태풍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취약지구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촌의 안전수준 만족도는 농촌 및 도시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다섯째, 어촌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도시와 비슷한 수준이며 농촌보다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촌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은 각각 99%, 77%로 매우 높으나 안전공제 가입률은 28%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여섯째, 어촌여성의 산전·후 휴가일수는 농촌과 도시보다 적어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필요한 여성복지정책 경우는 여성문화/복지시설 건립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 최성애, 박상우 외 '어촌사회 양극화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12

30) 실태조사는 1,006개 어가를 대상으로 지역별 어촌유형을 고려한 층화후 무작위 추출법으로 2007.6월(5개 부문 총 56개 문항)에 실시되었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는  $\pm 0.32\%$ 임

31) 농촌과 도시의 실태는 '농림어업인들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2004년)' 그리고 사회통계, 가계조사 등의 자료로 파악함

일곱째, 65세 이상 어촌 고령자의 생활은 주로 본인의 노동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농촌과 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노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비율이 68%이며 그 수단은 국민연금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은 노인 생활보조금 지원확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복지시설(경로당)에 대한 운영지원 확대로 나타났다.

여덟째, 전반적인 복지수준에 대한 어촌의 만족도는 농촌과 도시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되어 만족도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아홉째, 어업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어촌의 교육수준은 향상되고, 교육불평등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교육비 부담비율, 방과 후 교실운영비율, 교육서비스만족도 등에 있어 어촌은 농촌과 도시와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필요로 하는 교육여건 개선 정책은 교육비 부담 경감을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으로 우수교사 확보를 들고 있다.

열째, 어촌의 주택은 상대적으로 노후화되어 신축 및 개축의사가 농촌과 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어촌의 거주지 환경오염 체감정도가 농촌보다는 심하고 도시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촌의 생활·환경만족도가 농촌과 도시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열한째, 쓰레기·폐자재 처리 방식에서 분리수거가 많지만 취약지구의 경우는 매립 또는 소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생활오수 및 분뇨처리 방식에서 하수종말처리 비율은 약 40% 정도이며, 마을하수도 또는 재래식 그리고 방류 등의 처리방식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초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열두째, 어촌의 컴퓨터 보유율은 농촌과 비슷하고 도시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홈페이지 구축 및 컴퓨터 교육 경험율은 농촌과 도시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촌정보화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열셋째, 어촌경관은 보전할 가치가 있다는 응답비율이 83%로 매우 높게 집계되었는데 이는 농촌과 도시보다 높은 수준이다.

열넷째, 문화 및 여가시설 만족도는 12.5%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특히 취약지구의 문화 및 여가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로 하는 문화 및 여가시설에 대하여 찜질방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찜질방을 어촌개발사업 아이টে으로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열다섯째, 도시·어촌교류 참여에 있어 어촌의 경우는 1사1촌 자매결연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현행 어촌바우처제도를 어촌을 찾는 방문객뿐 아니라 어업인의 도시문화체험에도 지원하여 일방적인 교류에서 상호교류로 전환하여 활성화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종합해 보면 전 부문에서 어촌과 도시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을 농촌과 비교하면 의료·복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문화·여가는 농촌보다 양호하였으며 교육과 생활환경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어촌의 안전, 복지(여성, 노인), 주거·생활이 농촌과 도시보다 크게 떨어졌으나 사회안전망(연금보험 등), 정보화는 높거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따라서 향후 어촌정책에서 안전, 복지, 주거·생활 등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요청된다.

어촌 내 유형별로는 도시근교와 나머지 두 유형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취약지구와 연안촌락에 대한 어촌정책의 집중이 요청된다. 특히 취약지구형 어촌의 경우는 의료, 안전, 교육 및 문화·여가 부문, 연안촌락형 어촌은 교육부문의 개선 또는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소득 격차 즉 양극화의 주 원인은 어업자원의 고갈, 양극화 완화 정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수산업·어촌직접지불제도의 확충을 들고 있다. 사교육의 양극화 원인은 소득격차확대, 이의 완화대책으로는 저소득층 자녀 사교육비 지원, 방과후 교육확대, 학습도우미 지원확대 등을 들고 있다. 성인대상의 사회 교육 양극화 주 원인은 노인 인구 증가와 소득격차 확대, 이의 완화에 필요한 정책으로 사회교육비 지원확대, 노인 및 저학력자를 위한 성인교육상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선호하고 있다.

건강수준의 양극화 주 원인은 가구별 경제능력 차이, 이의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종합건강검진 지원확대, 건강보험료 납부지원확대 그리고 지역내 보건의료기관 지원확대 등을 들고 있다. 주거 양극화 주 원인은 역시 가구별 경제능력 차이로 나타났으며, 이의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주택개보수 자금지원,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사회의 양극화 완화·해소를 위한 거시적 정책으로 어업인들은 고령·취약계층의 생활안정, 기초생활환경개선, 의료여건개선, 어업인 연금·보험확충, 어업의 일자리 기회 확대의 순으로 정책실효성이 높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표 5-3-1] 어업인 삶의 질 실태분석 요약

구분	소구분	실태 및 문제점
인력	인구학적 실태	- 어업인의 감소 - 어촌의 고령화, 공동화
소득	소득실태	- 어촌과 도시의 소득격차 심화
생활 환경 부분	주택신개축 의사	- 어촌 노후주택 비율이 농촌,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도시로 이주의사	- 농촌에 비해 낮은 도시로의 이주의사
	생활환경 만족도	- 어촌의 전반적인 주거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남
	쓰레기·생활오수 및 분뇨처리	- 취약지구의 경우 분리수거 보다는 소각, 매립에 의한 처리비율이 높아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음
	어촌정보화	- 어촌의 컴퓨터 보유율은 55.7%로 농촌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시지역 86.3%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음 - 홈페이지 구축비율은 농촌에 비해 높은 곳으로 나타남
	어촌경관보전	- 어촌경관의 보전적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음
교육 부분	교육부분 실태	- 도시유학생의 비율이 농촌에 비해 높음 - 어촌의 88.3%는 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인식
의료 부분	의료이용 실태	- 어촌에서는 병원 또는 보건소 보다 약국에 의존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치료비 과다, 의료기관 멀리 위치)
복지 부분	여성복지 실태	- 어촌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일수는 농촌, 도시에 비해 짧았으며, 필요한 어촌 여성복지 정책으로는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 여성직업 알선 및 창업지원의 수요가 높았음
	영유아 보육	- 영유아 보육시설까지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 특히 취약지구의 지원 대책 필요
	노인복지	- 65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총당 소득원은 본인의 노동이 78%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 68.4% 정도는 노후대책 마련
	전반적인 만족도	- 어촌의 복지수준 전반적인 만족도는 11.8%로 농촌 14.8%, 도시 22.7%에 비해 현저히 낮음
문화 교류 부분	문화 및 도시어촌교류 실태	- 지역내 문화 및 여가시설 만족도는 농촌보다 다소 높으나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음 - 어촌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 및 여가시설로는 찜질방 42.4%, 스포츠센터 21%, 문화센터 및 취미센터 13% 순으로 조사됨 - 도시어촌 교류 참여여부를 조사한 결과 농촌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됨

자료 : 최성애, 박상우 외, '어촌사회 양극화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여 재구성함.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7)



[표 5-3-2] 어업인 삶의 질 실태 비교(5점 척도)

구 분	어촌·농촌·도시 비교			어촌의 입지유형별 비교		
	어촌	농촌	도시	도시근교	연안촌락	취약지구
전 체	2.70	2.76	3.65	2.65	2.41	2.11
의료·복지	2.67	2.96	3.58	1.50	1.31	1.18
의료(건강)	2.85	2.88	3.27	3.90	3.22	2.69
안전	2.35	3.11	3.54	2.34	2.33	2.00
사회안전망 (공적연금·보험)	3.22	2.72	3.06	3.22	3.22	3.22
복지(여성·노인)	2.76	3.71	4.13	2.96	2.61	2.79
교육	2.68	2.70	3.64	3.22	2.72	2.50
생활환경	2.75	2.83	3.56	3.28	3.07	2.88
주거·생활	2.53	2.97	3.59	3.02	3.07	2.82
정보화	3.34	2.43	3.48	3.98	3.09	3.06
문화·여가	2.71	2.32	3.97	2.92	2.88	1.92

주: 5점을 해당 지역의 사회실태가 최상인 것으로 1점을 최하인 것으로 표준화하였고 각 평가항목간의 점수 비교는 의미가 없음  
어촌 입지유형별 비교에서 일부 평가항목이 추가되어 있으므로 농촌·도시와 직접 비교할 수 없음

[표 5-3-3] 어업인 삶의 질 만족도 비교(5점 척도)

구 분	어촌·농촌·도시 비교			어촌의 입지유형별 비교		
	어촌	농촌	도시	도시근교	연안촌락	취약지구
전 체	2.19	2.22	2.53	2.43	2.29	2.00
의료·복지	1.96	2.06	2.21	2.15	1.95	1.78
의료서비스	2.63	2.29	2.41	3.09	2.60	2.22
안전수준	1.59	2.54	2.43	1.62	1.62	1.53
복지 전반	1.47	1.59	1.91	1.47	1.47	1.47
교육	2.17	1.84	2.27	2.42	2.17	1.79
학교교육	3.12	2.39	2.39	3.49	3.21	2.11
교육 전반	1.54	1.48	2.18	1.70	1.48	1.58
생활환경	2.80	3.10	3.40	3.16	3.10	2.77
생활 전반	2.80	3.10	3.40	2.90	2.90	2.60
주거·생활환경	3.36	-	-	3.55	3.41	3.03
문화·여가	1.50	1.38	1.87	1.56	1.55	1.27

주: 5점을 해당 지역의 사회실태가 최상인 것으로, 1점을 최하인 것으로 표준화, 만족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항목 간 점수 비교가 가능함

## 제4절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지원 과제

### 1.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사업 및 대책의 이행여부 검토

제2절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등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의한 106개 세부과제 중 68개 과제가 어업인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 68개 과제에 대하여 어업인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며, 또한 실제로 어업인이 수혜를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세부과제 사업이 실제 어업인이 수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그 실태와 아울러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여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지원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 가. 세부과제 이행여부 설문조사개요

##### 1)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

‘삶의질 기본계획’에 의한 세부사업의 어업인 대상 이행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는 어업인(어촌계 계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총 106개 세부사업 또는 과제 중에서 정책적 수혜대상이 농산어촌 또는 농어업인으로 되어 있는 사업 또는 과제들을 선정하되 그 사업시행 여부가 명확한 사업의 경우는 배제시켰다.

그리고 설문은 이들 세부사업의 인지여부와 수혜여부 그리고 어업인을 수혜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 여부 등의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인 표본의 선정방법은 지역 및 어촌유형을 고려하여 층화 후 무작위 추출된 어촌계원을 선택하는 층화임의추출법을 활용하였다([표 5-4-1] 참조).



[표 5-4-1] 표본크기 및 표본추출 방법

구 분	내 용
모집단	전국의 어촌계 계원
표본크기	1,032명 어촌계 계원(유효표본)
표본추출방법	지역 및 어촌유형을 고려한 층화 후 무작위 추출법
표본오차	± 3.05%p(신뢰수준 95%)

1,032개 표본어촌계원의 지역별 전국분포를 살펴보면 전남이 383개(37.1%)으로 가장 많고 경남이 188개(18.2%), 충남이 85개(8.2%), 제주가 78개(7.6%), 경북이 77개(7.5%), 전북·강원이 각 62개(6.0%), 울산이 29개(2.8%), 인천·경기지역이 각 25개(2.4%), 부산이 18개(1.7%)로 집계되었다.

[표 5-4-2] 표본의 지역별 분포현황

구 분	응답자(명)	응답비율(%)	
시도별	부산	18	1.7
	인천	25	2.4
	울산	29	2.8
	경기	25	2.4
	강원	62	6.0
	충남	85	8.2
	전북	62	6.0
	전남	383	37.1
	경북	77	7.5
	경남	188	18.2
	제주	78	7.6
	계	1,032	100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전화응답 조사방식이며, 설문조사는 민간 조사기관인 (주)아이알씨(IRC)에 의뢰하여 2007. 9. 21 ~ 2007. 10. 10까지 총 20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 2) 응답자의 일반사항과 특성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1,000명(96.9%), 여자 32명(3.1%)이며, 연령별로 50대 37%, 40대 34%, 60대 이상 18%순이며 20·30대가 11%로 가장 적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어촌거주기간을 보면 50년 이상 거주자가 전체 응답자의 41.6%를 차지하고, 30-50년 미만거주자가 38.9%였으나 10년 미만 거주자는 3.8%로 설문 응답자의 대부분이 오랜 기간동안 어촌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촌의 입지유형별 응답자를 살펴보면 연안촌락이 593명으로 전체의 57.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도시근교, 취약지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지유형별 어촌계의 비중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표 5-4-3] 응답자의 일반사항

구분	범주	빈도	백분비
성별	남자	1,000	96.9
	여자	32	3.1
	계	1,032	100
연령별	20-30대	112	11
	40대	349	34
	50대	381	37
	60대 이상	190	18
	계	1,032	100
거주기간	10년 미만	39	3.8
	10-30년 미만	163	15.8
	30-50년 미만	401	38.9
	50년 이상	429	41.6
	계	1,032	100
입지유형별	도시근교	300	29.1
	연안촌락	593	57.5
	취약지구	139	13.5
	계	1,032	100



## 나. 설문대상 세부사업의 개요

### 1)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사업

#### 가) 농작업 재해보상지원

-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육성
  - 주 관 : 농림부
  - 사업주체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주요내용 : 농협재해공제 가입비 지원
  - 재원형태 : 국비(농특세)50%, 자부담 50%

#### 나)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지원

- 농업인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급격한 노령화 추세 및 출산율 저하 완화
  - 주 관 : 농림부
  - 사업주체 : 시장, 군수, 구청장
  - 주요내용 : 보육료지원, 교육비 지원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다) 여성농어업인센터

-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자녀 학습지도 등 종합 복지기능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센터를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교양강좌, 문화 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배움, 모임, 나눔의 장으로 육성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역할증대에 상응한 위상 재정립
  - 주 관 : 농림부
  - 사업주체 : 시장, 군수
  - 주요내용 :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등
  - 재원형태 : 국비 85%, 자부담 15%

## 라) 농어가 도우미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어업을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의 80%수준(30일 기준 720천원)을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원
  - 주 관 : 농림부
  - 사업주체 : 시장, 군수 .구청장
  - 주요내용 : 도우미이용료지급
  - 재원형태 : 지방비 80%, 자부담 20%

## 마) 취약농가 인력지원

- 사고농가 영농지원, 고령·취약농가 가사지원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등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과 농촌생활 지원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주 관 : 농림부
  - 사업주체 : 농협중앙회
    - 사고농가영농인력지원
  - 주요내용 : 사고농가당 농촌평균임금 70% 지급
  - 재원형태 : 국비 70%, 자부담 30%
    - 고령취약농가가사인력지원
  - 주요내용 : 도별 인력지원단 운영비 70% 지급
  - 재원형태 : 국비 70%, 농협 30%

## 바)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 농산어촌 거주 등으로 인해 보건소, 복지회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이 곤란한 재가노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 관 : 보건복지부
  - 사업주체 : 시. 군. 구
  - 주요내용 : 센터 설치 지원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사) 농업인 건강관리실

-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 회복 환경을 조성하여 농업인 건강생활 실천의 장으로 활용하며 마을여건에 적합한 시설 설치 및 자율적인 운영관리 유도



- 주 관 : 농촌진흥청
- 사업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 주요내용 : 피로회복시설설치, 건강관리기구구입, 운동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실시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 신활력지역의 경우 국비 60%, 지방비 40%

#### 아)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농촌자원을 이용한 여성 보유기술을 활용하도록 지도. 또한 신기술 도입으로 고품질 제품생산 및 전문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사업주체에 대한 교육 및 우수지역 벤치마킹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주 관 : 농촌진흥청
- 사업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 주요내용 : 전통식품 등의 생산·가공·유통사업을 위한 작업장 및 기구 설치, 기술습득 등의 자금지원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자) 여성농업인 생산제품 품질향상 지원

- 지역성과 상품특성을 살린 고유 브랜드 개발 및 제품의 차별화·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며 농촌일감맞기 사업장을 중심으로 품목별 연구회 및 시군단위 공동 브랜드화 추진
- 주 관 : 농촌진흥청
- 사업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 주요내용 : 브랜드개발, 포장·용기·디자인·포장방법 개선, 홍보물제작 등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차)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 여성농업인이 소득활동을 하면서 취약한 경영, 마케팅, 제조기술 컨설팅을 지원하여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사업장의 건실한 발전 도모
- 주 관 : 농촌진흥청
- 사업주체 :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자원과
- 주요내용 : 농가별 홈페이지 보완개발, 기능개선위탁운영, 컨설팅지원
- 재원형태 : 국비 100%



#### 카) 노인봉사원활동 프로그램 개발

- 농촌지역의 다양한 노인보호자원을 발굴하고 이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인 수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촌노인 인력활용 및 복지 욕구 충족
  - 주 관 : 농촌진흥청
  - 사업주체 :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주요내용 : 농촌지역 마을 단위노인보호체계구축및운영지원을 위한 연구를 포괄적으로 지원
  - 재원형태 : 국비 100%

#### 타) 농촌 건강장수마을 조성

- 농촌노인과 예비노인에게 경제, 건강, 학습·사회활동, 환경 등 4영역을 접목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는 문화 조성
  - 주 관 : 농촌진흥청
  - 사업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주요내용 : 소득, 경제활동 지원, 건강생활프로그램 실천지원, 생활환경정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파) 농산어촌 보육시설

- 보육시설 확충을 통하여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 주 관 : 여성가족부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주요내용 : 국공립시설 신축비지원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하) 농산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

- 농산어촌지역의 취학전 만5세아 아동에 대한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을 통해 아동의 학업준비를 도모하고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 및 경제활동 지원
  - 주 관 : 여성가족부
  - 사업주체 : 여성부, 지방자치단체
  - 주요내용 : 무상보육료지원확대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2)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사업

### 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 초·중등 학생 및 교사의 영어 의사소통능력과 영어교육 수준 제고하고 농산어촌 원어민 배치를 통하여 도시와의 원어민 접근도 격차 해소
  - 주 관 : 교육인적자원부
  - 사업주체 : 시·도 교육청
  - 주요내용 : 초청 인원 확대 등
  - 재원형태 : 지방비 100%

### 나) 방과후 교육활동

-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습능력 향상, 소질·적성 개발 등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 또한 방과 후 보육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부모의 근로활동 지원
  - 주 관 : 교육인적자원부
  - 사업주체 : 시·도 교육감
    - 방과후 교육활동지원
  - 주요내용 : 보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지역교육청 단위 강사비 지원, 통학버스 등 운영비 지원
  - 재원형태 : 지방비 100%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모델 개발
  - 주요내용 : 프로그램 특화, 교육대상 확대 및 시설개방, 강사 질 관리 노력
  - 재원형태 : 지방비100%(특별교부금 50%, 지자체 부담 50%)

### 다) 방학캠프 운영

- 먼지역 이하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험학습 기회 확대 및 내실화로 교육복지 증진 및 도시문화체험학습으로 문화적 지체 현상 완화
  - 주 관 : 교육인적자원부
  - 사업주체 : 시·도 교육감
  - 주요내용 : 도시문화체험학습 실시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라) 농산어촌 공립 병설유치원

- 공립 유치원 신·증설로 질 높은 유아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주 관 : 교육인적자원부
  - 사업주체 : 시·도 교육감 및 지역교육장
  - 주요내용 : 공립 병설 유치원 신·증설을 위한 교실 개. 보수비 지원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마)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

-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확보하고 농산어촌지역 학부모 급식비 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
  - 주 관 : 교육인적자원부
  - 사업주체 : 시·도 교육감
  - 주요내용 : 급식비 일부지원(연간 180일)
  - 재원형태 : 지방비 100%

## 바) 농산어촌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

- 특수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가정·시설 및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
  - 주 관 : 교육인적자원부
  - 사업주체 : 시·도 교육감
  - 주요내용 : 순회교육 대상자 및 특수학급 학생추가 교육 지원, 지역사회 장애인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가족 상담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사)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

- ICT 활용 교육 등 e-러닝 지원체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PC 보급, 인터넷 통신회선 고도화 등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
  - 주 관 : 교육인적자원부
  - 사업주체 : 시·도 교육감
  - 주요내용 : PC 1대당 학생 5명수준으로 고도화, 모든 학교의 인터넷 통신속



도를 2Mbps로 증속

- 재원형태 : 지방비 100%

#### 아)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 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 도모

- 주 관 : 농림부

- 사업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주요내용 : 해당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재원형태 : 교부세(국비) 및 지방비에서 지원

#### 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일정부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 주 관 : 농림부

- 사업주체 : 농림부(총괄), 복지부(협조), 국민건강관리공단(집행)

- 주요내용 :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지원

- 재원형태 : 국비보조(농특세) 100%

#### 차)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 농산어촌출신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하여 농산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 주 관 : 농림부

- 사업주체 : 농림부(한국학술진흥재단)

- 주요내용 : 매학기 등록금 한도 내에서 신청한 전액을 무이자융자

- 재원형태 : 국비 100%

#### 카) 농업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지원

○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후계농업인 양성하기 위해 도시소재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학비·하숙비 등의 생활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므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 주 관 : 농림부

- 사업주체 :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

- 주요내용 : 장학금 지급
- 재원형태 :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100%

#### 타) 농업 전문학교

-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후계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주 관 : 농촌진흥청
  - 사업주체 : 농촌진흥청 한국농업전문학교
  - 주요내용 : 한국농업전문학교 교육운영, 창업농직업훈련과정 시범운영, 국내외 장기현장 실습교육생 보상금
  - 재원형태 : 국비100%(농특회계,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 3)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사업

#### 가)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확대

- 농촌지역개발리더, 참여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의 사업추진능력 배양 등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교육시행 및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 주 관 : 농림부
  - 사업주체 : 한국농촌공사(도농복합추진단), 시장·군수·구청장 등
  - 주요내용 : 농촌지역개발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 촌지역개발 관련교재 마련  
마을사무장 제도 시행 등
  - 재원형태 : 정액보조  
(사무장 채용지원 - 국고 50%, 지방비 40%, 마을자부담 10%)

#### 나) 마을단위 생활용수 개발

- 광역 및 지방상수도 등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국 면단위지역의 소규모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암반지하수를 개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
  - 주 관 : 농림부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주요내용 : 암반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



- 재원형태 : 국비 80%, 지방비 20%

#### 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

- 지자체의 폐비닐 수거 활성화 및 책임 강화 유도를 위하여 지자체의 자체지원 「폐비닐 수거보상비」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가 지원
  - 주 관 : 농림부
  - 사업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주요내용 : 폐비닐 수거비 지원, 폐비닐 수거보상비에 인센티브차원에서 추가 지원
  - 재원형태 : 국비 100%(kg당 30원 정액지원)

#### 라) 농산어촌 주거환경개선(농어촌주택개량, 마을정비, 빈집정비)

- 낡고 험했거나 불량한 농어촌 주택 개량을 촉진하고 농어촌지역에 있어서 뒤떨어진 주거환경 향상 도모
  - 주 관 : 행정자치부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주요내용 : 농어촌 주택개량, 빈집철거, 마을하수도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
  - 재원형태 : 국비 등 용자·보조(마을정비는 양여금법폐지로 국고보조로 전환)

#### 마)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

- 등산로, 약수터, 고수부지, 마을공터, 등 인근 지역주민의 활용이 용이한 곳에 소규모 간이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성화 도모
  - 주 관 : 문화관광부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주요내용 : 학교 내 간이운동 시설, 체력단련기구·휴게시설, 산책로 등 주민 선호시설 설치
  - 재원형태 : 기금 50%, 지방비 50%

#### 바)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 주민밀집지역 및 문화소외지역 주민 대상으로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적으로 편중된 문화 불균형 해소
  - 주 관 : 문화관광부
  - 사업주체 : 전국문화원연합회

- 주요내용 : 문화적수요에 부합하는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 재원형태 : 기금 100%

#### 사)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 친환경적 소재를 이용한 주택내부 개선 또는 텃밭, 담장·정원 조성, 생울타리, 건물외벽 녹화 등 마을에 어울리는 생태적 환경 조성.
- 주 관 : 농촌진흥청
- 사업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 주요내용 : 농촌 주택 리모델링 및 옥외 공간정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아)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농어촌 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을 통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정보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07년까지 50가구 미만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음영지역(11만 가구)에 대한 망 구축 추진
- 주 관 : 정보통신부
- 사업주체 : 지자체
- 주요내용 : 광케이블, 옥외 합체 등 설비 구축비용 지원
- 재원형태 : 국비 25%, 지방비 25%, 민간 50%

### 4)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사업

#### 가) 지역부존 자원을 활용한 사업

- 농촌에 공단을 조성하여 공장유치를 촉진함으로써 농촌소득증대와 농촌지역 취업기회 확대, 수도권 등 대도시소재 공장의 이전촉진, 도시 교통난, 주택난, 공장입지난 등을 완화
- 주 관 : 농림부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주요내용 : 농공단지 조성
- 재원형태 : 군특(보조), 농특(용자)



#### 나) 농산어촌 체험박람회 개최

- ‘농산어촌 체험박람회’를 통해 도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하여 농촌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사회적인 붐 조성 및 농촌주민의 소득창출 기회로 활용
  - 주 관 : 농림부
  - 사업주체 : 한국농촌공사(도농복합추진단)
  - 주요내용 : 제2회 농산어촌체험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박람회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재원형태 : 국비 100%

#### 다) 농산어촌 체험관광 홍보

-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관광의 사회적 붐 조성 및 수요창출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
  - 주 관 : 농림부
  - 사업주체 : 한국농촌공사 도농복합추진단
  - 주요내용 : 도시민의 수요창출을 위한 홍보 전개·농촌체험관광 우수 마을 선정, 농촌마을가꾸기경진대회 선발
  - 재원형태 : 국비 100%

#### 라) 경관보전 직불제

-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지자체와 마을간 협약을 체결하고, 농지에 일반작물 대신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당해 농업인에게 소득 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급
  - 주 관 : 농림부
  - 사업주체 : 시장·군수, 농업인
  - 주요내용 :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
  - 재원형태 : 국비 70%, 지방비 30%

#### 마) 농산어촌 경관주택 발굴·보급

- 농산어촌 경관주택 모델하우스 전시 및 관련 콘테스트 등을 통하여 은퇴도시민, 농산어촌 주민 등 농산어촌 경관주택의 실제 수요자가 농산어촌 경관주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건축하도록 유도



- 주 관 : 농림부
- 사업주체 : 한국농촌공사
- 주요내용 : 농산어촌 경관주택 모델하우스기반조성 및 유지관리, 건축대전행  
사비용·표준설계도개발비용
- 재원형태 : 한국농촌공사 자체부담

#### 바) 도시민 농산어촌 주택갓기 활성화

- 농촌에서 쾌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민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또는 체류공간 마련
  - 주 관 : 농림부
  - 사업주체 : 시장, 군수, 한국농촌공사
  - 주요내용 : 전원마을조성을 위한 기초생활기반 시설을 보조사업비로 조성
  - 재원형태 : 국비 80%, 지방비 20%

#### 사) 도농교류 참여프로그램 및 마케팅 확대

- 도시·농촌주민간 상호이해 증진 및 도농교류에 대한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농교류 활동을 지속화시킬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 개발·확충. 또한 도시민의 도농교류 참여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마케팅 지속적으로 전개
  - 주 관 : 농림부
  - 사업주체 : 한국농촌공사(도농복합추진단 도농교류센터)
  - 주요내용 : 도농교류체험기 공모전 개최, 농업인이 뽑은 올해의 도농 교류상 시상 등 각종 캠페인 개최
  - 재원형태 : 정액보조

#### 아) 도농교류센터 운영

-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민과 도시자본의 농촌유입 촉진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전담 지원. 또한 농촌체험관광 홍보·마케팅, 농촌체험마을 사후 관리, 교육·훈련, 도시자본 투자유치 전담
  - 주 관 : 농림부
  - 사업주체 : 한국농촌공사(도농복합추진단 도농교류센터)
  - 주요내용 :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실태 평가, 1인 1촌 전문가 컨설팅 추진 등 마을 사후관리, 1사1촌 운동 추진지원 등
  - 재원형태 : 정액 보조



#### 자) 농어업인 고용촉진 훈련

- 전직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이농예상 농어업인의 전업 및 취업 지원
  - 주 관 : 노동부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주요내용 : 직업훈련기회제공, 전업 및 취업 지원
  - 재원형태 : 국비 100%

## 2. 주요 설문결과와 시사점

### 가.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관련 사업

농산어촌 복지기반 부문의 세부사업에 대한 인지 및 수혜여부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한 것이 [표 5-4-4]이다.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관련 6개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어업인은 사업에 따라 최저15%에서 최대39%로 대체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지원, 농산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 농산어촌 재가노인 복지센터 3개 사업에 대하여는 30%를 약간 상회하는 인지정도이며, 반면에 여성농어업인센터와 농산어촌 보육시설은 20%미만의 낮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한편 인지하고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제 수혜 여부는 20% 미만으로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주요한 비 수혜 이유로는 자격조건이 맞지 않거나, 필요성을 못 느껴서 등의 이유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의 근거는 고령화 또는 어촌인구의 유출로 그 대상자의 부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주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 지원의 경우는 절차(방법)를 몰라서 응답이 많았는데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농어업인센터와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농산어촌 보육시설의 비수혜 이유로는 마을내 관련 제도(시설)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왔는데 이러한 시설들은 대부분 농촌의 읍·면 소재지에 조성되기 때문에 관심과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5-4-4]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관련 사업 어업인 인지 및 수혜 여부

주관	사업내용	인지여부				수혜여부			
		전체	도시근교	연안촌락	취약지구	전체	도시근교	연안촌락	취약지구
농림부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 지원	39.2	32.3	42.0	42.4	16.0	10.3	15.3	28.8
	여성농어업인센터	14.9	14.0	15.5	14.4	13.6	16.7	13.0	10.0
	농어가 도우미	21.7	16.0	25.1	19.4	8.0	12.5	6.7	7.4
보건복지부	농산어촌재가 노인 복지센터	31.9	28.0	34.4	29.5	16.7	13.1	20.1	7.3
여성가족부	농산어촌 보육시설	19.7	17.7	19.4	25.2	10.8	9.4	13.9	2.9
	농산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	32.7	23.0	36.4	37.4	16.0	14.5	16.2	17.3

주: 수혜여부는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한편 농어가 도우미 사업의 비 수혜 이유로는 홍보부족으로 구체적 내용을 몰라서, 지리적 여건상(오지) 지원받기 어려워서 등의 응답이 많았다. 특히, 취약지구의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상(오지) 지원받기 어려워서가 다른 어촌 입지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농산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의 비 수혜 이유로는 마을내 관련 제도(시설)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관련 시설이 읍·면 소재지에 위주로 위치하고 있어 수혜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분야에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업들 가운데 어촌 내 필요성 여부를 물어본 결과, 재해보상지원, 건강관리실, 노인봉사원 활동프로그램, 취약어가 인력지원 등의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표 5-4-5] 참조). 어촌실태에서도 나타났듯이, 어촌인구의 고령화로 찹질방, 의료시설 등 건강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의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사업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5-4-5]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관련사업 어촌 내 필요성 여부

주관	사업내용	어촌 내 필요성			
		전체	도시근교	연안촌락	취약지구
농림부	농작업재해보상지원	96.6	96.0	97.0	96.4
	취약농가 인력지원	92.7	92.7	93.1	91.4
농촌 진흥청	농업인 건강관리실	94.8	94.0	94.8	96.4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89.2	90.0	89.7	85.6
	여성농업인생산제품 품질향상 지원	92.2	91.0	94.1	87.1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87.1	88.7	87.2	83.5
	노인봉사원활동 프로그램	92.5	94.0	92.6	89.2
	농촌 건강 장수마을 조성	91.2	91.3	91.7	88.5

#### 나.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인지도는 24.3~69.6%로 높게 나타났다([표 5-4-6] 참조). 교육인적자원부의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 사업이 6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촌 유형별로는 도시 근교 어촌보다는 연안촌락과 취약지구의 어촌에서 더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농림부의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이 69.3%,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이 68.5%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교육인적자원부의 ‘방학캠프 운영’ 38.5%, ‘월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사업 34.2%, ‘방과 후 교육활동’ 31.8%, ‘농산어촌특수교육지원센터순회 교육비 지원’은 24.3% 등으로 다른 교육여건 개선 관련사업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율 면에서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이 9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밖에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 58.4%,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 46.5%, ‘방과 후 교육활동’ 40.9%순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대체로 사업 대상자 범위가 넓은 사업의 수혜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인지하고 있더라도 대상자 범위가 좁은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과 ‘농산어촌특수교육지원센터순회 교육비 지원’ 등의 수혜율은 각각 27.3%, 5.6%로 낮게 나

타났으며 유형별로는 취약지구 어촌의 수혜율이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사업부문에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취약지구 어촌의 수혜율은 96.3%로 가장 높는데 이는 수혜 가능성이 높은 고령 주민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5-4-6]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관련사업 어촌유형별 인지 및 수혜 여부

주관	사업내용	인지여부				수혜여부			
		전체	도시근교	연안촌락	취약지구	전체	도시근교	연안촌락	취약지구
교육 인적 자원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34.2	32.3	36.8	27.3	27.8	25.8	27.5	34.2
	방과후 교육활동	31.8	29.7	33.9	27.3	40.9	46.1	41.8	23.7
	방학캠프 운영	38.5	35.0	40.6	36.7	32.0	35.2	32.8	21.6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	69.6	60.3	73.4	73.4	46.5	44.8	48.5	41.2
	농산어촌특수교육지원 센터순회 교육비지원	24.3	25.3	24.8	20.1	5.6	7.9	4.8	3.6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	52.9	50.7	53.0	57.6	58.4	57.9	59.6	55.0
농림부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68.5	65.3	69.5	71.2	39.7	38.3	40.3	40.4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59.2	54.3	62.1	57.6	91.2	85.3	92.7	96.3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69.3	60.7	72.7	73.4	27.3	26.9	29.0	20.6

주 : 수혜여부는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각 사업별 주요 비수혜 이유를 살펴보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사업의 경우 ‘우리 마을에는 관련 제도(시설)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가 79.7%로 높게 나타나 어촌지역의 학교에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과후 교육활동의 비수혜 이유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40.0%, ‘우리 마을에는 관련 제도(시설)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30.0%, ‘홍보부족으로 구체적 내용을 잘 몰라서’가 15.0% 순으로 나타났다.

방학캠프 운영의 비수혜 이유는 ‘우리 마을에는 관련 제도(시설)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가 46.2%, ‘필요성을 못 느껴서’ 19.2%, ‘홍보부족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가





15.4% 순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의 비수혜 이유는 ‘지역조건에 맞지 않아서’가 40.0%로 가장 높고,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20.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근교의 경우 비수혜 비율이 61.5%인 반면 취약지구는 0%로 나타나 지역별 할당비율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산어촌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의 비수혜 이유는 ‘우리 마을에는 관련 제도(시설)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가 72.7%로 나타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 사업은 어촌지역에서 거의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의 비수혜 이유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52.7%, ‘우리 마을에는 관련 제도(시설)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27.3%, ‘홍보부족으로 구체적 내용을 잘 몰라서’ 9.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촌의 정보화가 어느 정도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취약지구에서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이 70.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용자의 비수혜 이유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각각 33.7%, 53.4%이고, ‘자격조건에 맞지 않아서’가 24.4%, 14.4%로 나타나 어촌 내에 사업 대상자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어촌내 필요성에 관해서는 90.0~98.6%로 높게 나타났다([표 5-4-7] 참조). 특히 어촌 주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사업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이 전체 9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 사업이 97.5%, 농림부의 ‘농업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지원’ 사업이 96.6%, ‘방학캠프 운영’ 94.7%,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92.2% 순으로 교육부문에 있어 어촌지역의 지원에 대한 수요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촌 유형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7]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관련사업 어촌 내 필요성 여부

주관	사업내용	어촌 내 필요성			
		전체	도시근교	연안촌락	취약지구
교육인적 자원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92.2	92.0	93.4	87.8
	방학캠프 운영	94.7	95.0	95.4	90.6
	농산어촌 공립 병설 유치원	90.0	89.3	91.2	86.3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	98.6	97.3	99.7	97.1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	97.5	97.3	98.7	92.8
농림부	농업계 대학생학자금 보조 지원	96.6	96.3	96.5	97.8
농촌진흥청	농업 전문학교	89.7	88.3	90.6	89.2

#### 다.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사업의 인지도는 17.4~64.8%로 어촌 주민들이 사업에 따라 그 인지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4-8] 참조). 그 중 행정자치부의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이 6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어촌마을정비’ 사업은 57.5%, ‘농어촌빈집정비’ 사업은 57.4%로 어촌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업 역시 57.9%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문화관광부의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17.4%로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어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개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어촌유형별로 살펴보면 행정자치부의 사업은 도시근교 어촌의 경우 연안촌락이나 취약지구 어촌지역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보이는데 이는 도시근교여서 사업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혜여부에서는 ‘농어촌 마을정비’ 사업이 73%로 가장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업이 67.1%,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이 52.2%로 높은 인지도와 함께 수혜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어촌주택개량’은 인지도에 비해서는 수혜율이 낮은 사업으로 나타났으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은 도시근교 어촌의 수혜율이 다른 유형보다 높은 특징을 보였다.

각 사업별 주요 비수혜 이유를 살펴보면,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의 경우는 ‘필요성을 못느껴서’가 50.7%로 매우 높았으며, ‘자격조건에 맞지 않아서’가 9.1%, ‘절차가 복잡해서’



가 7.4% 순으로 나타났다. 어촌의 입지유형별로 보면 도시근교와 연안촌락은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각각 53.0%, 53.5%로 나타난 반면 취약지구는 39.5%로 상대적으로 정비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농어촌마을정비(마을하수도 정비)의 비수혜 이유로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와 ‘예산이 부족해 배정을 못 받아서’가 각각 21.0%로 나타났는데, 특히 도시근교 어촌유형의 경우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이 39.4%로 높게 나온 반면 취약지구는 10.0%로 나왔다.

농어촌 빈집 정비의 비수혜 이유는 ‘빈집이 없어서’가 52.0%로 나타났고 ‘절차가 복잡해서’가 17.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집이 없어서’는 도시근교 63.5%, 연안촌락 49.4%, 취약지구 44.1%순으로 조사되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의 비수혜 이유는 ‘우리 마을에는 관련 제도(시설)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가 45.1%, ‘생계유지에 바빠서’13.5%, ‘거리가 멀어서’ 10.7%, ‘예산이 부족해

[표 5-4-8]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관련사업 어촌유형별 인지 및 수혜 여부

주관	사업내용	인지여부				수혜여부			
		전체	도시근교	연안촌락	취약지구	전체	도시근교	연안촌락	취약지구
행정 자치부	농어촌주택개량 (농특세10%)	64.8	52.3	68.6	75.5	38.0	26.1	45.5	26.7
	농어촌마을정비 (마을하수도정비)	57.5	50.7	60.4	59.7	73.0	76.3	72.3	69.9
	농어촌 빈집정비	57.4	39.3	63.6	69.8	52.2	43.2	52.8	60.8
문화 관광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36.9	36.3	38.1	33.1	39.6	53.2	35.0	30.4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17.4	16.7	19.4	10.8	35.6	42.0	33.0	33.3
정보 통신부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57.9	55.3	61.2	49.6	67.1	75.9	64.5	59.4

주 : 수혜여부는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배정을 못 받아서’ 6.0%, ‘시설 설치할 만한 공간이 부족해서’가 5.1%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의 비수혜 이유는 ‘우리 마을에는 관련 제도(시설)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가 35.4%, ‘시설 설치할 만한 공간이 부족해서’가 13.3%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약지구에서는 ‘시설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부족해서’가 40.0%로 매우 높게 나타나 가용부지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의 비수혜 이유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50.0%로 높았는데, 입지유형별는 도시근교 61.5%, 연안촌락 50.4%, 취약지구 30.8% 순으로 나타났다.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사업 부문에서 어촌 주민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업으로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이 98.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역시 어촌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엿 볼 수 있다([표 5-4-9] 참조). 다음으로는 ‘폐비닐 수거비 지원’ 97.6%,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95.6%, ‘지역개발전문인력육성 및 저변확대’가 95.2%의 선호도를 보이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사업과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업의 경우는 기존 사업임에도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지속적인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4-9]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관련사업 어촌내 필요성 여부

주관	사업내용	어촌 내 필요성			
		전체	도시근교	연안촌락	취약지구
농림부	지역개발전문인력육성 및 저변확대	95.2	93.7	95.6	96.4
	마을단위 생활용수 개발	84.6	80.7	86.5	84.9
	폐비닐 수거비 지원	97.6	98.0	97.6	96.4
문화관광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98.3	98.0	98.3	98.6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93.8	93.0	94.4	92.8
농촌진흥청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90.1	88.7	91.2	88.5
정보통신부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95.6	96.3	96.3	91.4

## 라. 농산어촌 복합산업 활성화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사업의 인지도는 12.7~38.2%로 타 분야 사업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표 5-4-10] 참조). 개별사업별로는 농림부의 ‘농산어촌 체험관광 홍보’가 38.2%, ‘농산어촌 체험박람회 개최’ 사업이 38%로 비교적 알려진 사업이라 할 수 있으나 ‘농산어촌 경관주택 발굴·보급’사업은 12.7%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사업의 수혜를 받은 비율에서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홍보’ 사업의 경우 52.3%, ‘농산어촌 체험박람회 개최’ 사업의 경우는 43.4%로 높게 나타났다. 한



편 노동부의 ‘농어업인 고용촉진 훈련’은 인지도가 27.2%인 것에 비해 사업 수혜자 비율은 15.3%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복합산업 활성화 관련사업에서는 다른 유형에 비해 취약지구의 인지율·수혜율이 저조한 특징을 보였다.

각 사업별 주요 비수혜 이유를 살펴보면, 농산어촌 체험박람회 개최와 농산어촌 체험관광 홍보 사업의 경우 ‘생계유지에 바빠서’, ‘체험, 관광자원이 없어서’가 각각 37.9%, 37.4%와 18.7%, 23.5%로 나타났다. 이는 어촌의 소득구조가 여전히 어업소득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어촌체험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수의 지역들의 고부가가치의 체험·관광자원 발굴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표 5-4-10]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관련사업 어촌유형별 인지 및 수혜 여부

주관	사업내용	인지여부				수혜여부			
		전체	도시근교	연안촌락	취약지구	전체	도시근교	연안촌락	취약지구
농림부	농산어촌 체험박람회 개최	38.0	39.3	39.0	30.9	43.4	42.4	45.0	37.2
	농산어촌 체험관광 홍보	38.2	36.7	40.5	31.7	52.3	53.6	51.3	54.5
	농산어촌 경관 주택 발굴·보급	12.7	13.3	12.6	11.5	38.2	52.5	32.0	31.3
노동부	농어업인 고용촉진 훈련	27.2	24.3	28.5	28.1	15.3	12.3	18.3	7.7

주 : 수혜여부는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사업 중 어촌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사업으로는 농림부의 ‘도농교류센터 운영’ 사업이 93.8%, ‘도농교류 참여 프로그램 및 마케팅 확대’ 사업이 93.1%,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이 91%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4-11] 참조). 반면에 ‘도시민 농산어촌 주택 갖기 활성화’사업은 84.2%, ‘지역부존 자원을 활용한 사업’은 81%로 상대적으로 약간 선호가 떨어졌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취약지구의 선호도가 다른 유형보다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표 5-4-11]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관련사업 어촌내 필요성 여부

주관	사업내용	어촌 내 필요성			
		전체	도시근교	연안촌락	취약지구
농림부	지역부존 자원을 활용한 사업	81.0	83.7	81.5	73.2
	경관보전 직불제	91.0	93.0	90.4	89.2
	도시민 농산어촌 주택 갖기 활성화	84.2	85.0	84.5	81.3
	도농교류 참여프로그램 및 마케팅확대	93.1	93.3	93.4	91.4
	도농교류센터 운영	93.8	94.3	93.9	92.1

## 마. 시사점

범 부처차원의 통합적인 농산어촌에 대한 삶의 질 향상 대책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 및 수혜여부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등을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삶의 질 향상 대책 및 관련사업 중 농림부에 비해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부분이 미흡한데 이는 농어촌공동 사업에 있어 농림부가 주관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과 비교하여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복지기반 확충과 복합산업 활성화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들 분야에서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및 농촌에 특화된 독자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해양수산부의 정책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둘째, 세부관련 사업별로 보면 홍보가 부족하여 사업의 인지여부가 현저히 낮은 경우이다. 어업인들이 사업의 시행여부를 전혀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절차(방법)를 모르거나 복잡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 지원의 경우 취약지역의 어촌에서는 ‘절차(방법)를 몰라서’가 높게 나타나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업주체가 해양수산부가 아니더라도 어촌·어업인 삶의 질 실태를 해양수산부가 파악하여 주요 사업에 대해 홍보 및 안내를 한다면 사업의 인지여부와 수혜여부는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해양수산부 이외의 타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시설의 위치가 시·군, 읍·면·동 등 행정단위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어촌의 어업인에게는 관심과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여성농어업인센터,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농산어촌 보육시설 등 복지시설과 관련된 사업이다. 즉, 복지시설은 일상생활 범위권 내에 입지하고 있어야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향후 해양수산부가 어촌, 어



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찾아가는 의료·복지 지원, 재해보상지원, 건강관리실, 노인봉사원 활동프로그램 등의 정책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어촌 내 체육시설, 문화공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설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부족해서’라는 응답도 높게 나왔는데 이는 어촌 내 가용할 부지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항의 다목적 활용 등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어촌의 쓰레기·생활하수의 처리 부분으로 폐자재 및 어구수거 등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실제 어촌실태 결과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어촌지역내 폐기물 및 오폐수는 매립되거나 방류되는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 타 부처의 사업을 통해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촌의 환경과 실정에 맞는 처리방안 등의 정책발굴이 필요하다.

여섯째, 어촌의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하드웨어 지원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육성 및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장제도, 컨설팅 제도를 보다 확대하고 내실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발굴이 필요하다.

일곱째, 어촌과 도시의 교류 활성화 부분이다. 농촌분야와 비교해서 어업인들은 도농교류센터 운영, 도농교류 참여프로그램 및 마케팅 확대 등의 필요성을 높게 제기했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도시어촌교류는 농림부의 1사 1촌 운동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차별화된 정책발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덟째, 농산어촌 체험박람회 개최와 체험관광 홍보의 실태를 살펴보면, ‘생계유지에 바빠서’와 ‘체험, 관광자원이 없어서’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촌의 소득구조가 여전히 어업소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고부가가치의 체험·관광자원 발굴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어촌의 부존자원(어메니티)을 발굴·DB화하여 자원 Map을 만들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발굴이 필요하다.

아홉째, 어촌지역이나 어업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어촌과 어업인 삶의 질에 관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삶의 질 시행계획」은 2004년도에 농림부가 실시한 농산어촌복지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업인·농촌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정책적 수혜대상을 어촌, 어업인으로 한정해서 본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범 정부차원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농촌·농업인에 비해서 우선순위와 정책개발에서 밀려날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어촌·어업인만을 위한 삶의 질 정책수립과 사업추

진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부처별 중복사업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삶의 질 실행계획」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정책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는 타 부처에서 어촌, 어업인을 포함하는 정책과 사업이 상당수 시행되고 있어 정책대상과 목표가 차별화되거나 명확하지 않다면 그 시행여부가 불투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 3.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지원 방안<sup>32)</sup>

#### 가. 기본방향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관련 정책현황분석, 어업인 삶의 질 실태 그리고 현행의 세부사업의 이행여부 및 필요한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어촌은 도시와의 비교에서 의료·복지, 교육,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 복합산업 및 문화·여가 등 대부분에서 격차가 나타난 부문과, 농촌과 비교해 보면 안전부문과 복지, 주거·생활부문에서 어촌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 부문에 대해 격차 완화를 통해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이 설정되고 세부실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표 5-4-12] 도시 및 농촌과 비교를 통한 격차가 나타난 부문

구 분	어 촌
의료·사회안전망·복지	
의료(건강)	√
안전	√
사회안전망(공적연금·보험)	
복지(여성·노인)	√
교 육	√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	
주거·생활	√
정보화	
복합산업 및 문화·여가	√

주 : √ 표시는 도시 또는 농촌과 비교하여 격차가 나타나는 부문을 나타냄

32) 최성애·박상우·김봉태 ‘어촌사회 양극화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개발원, 2007. 12(미공개))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표 5-4-12]는 도시 및 농촌과 비교하여 부문별로 어촌이 뒤떨어진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지역 간 비교를 통해 볼 때,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촌의 의료·복지 부문(안전, 여성·노인복지), 교육 부문, 생활환경 부문(주거·생활환경), 복합산업 및 문화·여가 부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발굴과 관련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특히 삶의 질 수준이 뒤떨어져 있는 취약지구형, 연안촌락형 그리고 도시근교형 순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그림 5-4-1] 참조).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의 기본방향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격차가 나는 부문 그리고 특히 취약한 어촌을 우선적으로 지원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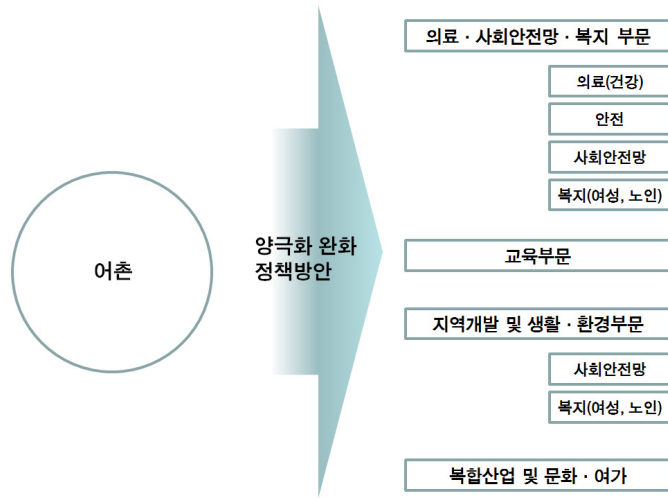
[그림 5-4-1] 어촌 입지유형별 우선 정책추진

따라서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지원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세부지원방안은 타 부처와 중복되지 않고 해양수산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으며, 또한 타 부처 사업에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 나. 세부지원방안

어업인·어촌은 농촌이나 도시지역과의 격차가 있지만 입지적으로 국토의 외곽 및 도서지역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의료·사회안전망·복지 부문, 교육 부문,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 부문, 복합산업 및 문화·여가 부문 등에 있어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지원방안을 의료·사회안전망·복지 부문, 교육부문,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 부문, 복합산업 및 문화여가 등 각 부문에 대해 구체적 사업과 연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4-2]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지원방안

### 1) 의료·사회안전망·복지부문

의료·사회안전망·복지부문은 다시 세부적으로 의료, 사회안전망, 복지로 구분되며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은 취약지역 긴급의료수송 수산보전제, 재해예방 수산보전제,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 수산작업재해보상지원, 여성어업인 양성지원사업, 맞춤형 어촌복지 바우처(Voucher) 등이 있다([표 5-4-13] 참조).

#### ① 취약지역 긴급의료수송 수산보전제

어촌 특히, 도서지역과 같은 취약지역은 병·의원과 같은 의료기관까지 도달하는데 평균 44.2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긴급환자 발생시 병원까지 수송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입지적 불리함으로 인해 의료혜택의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가칭) 취약지역 긴급의료수송 수산보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취약지역 긴급의료수송 수산보전제를 도입하여 취약지역으로부터 의료기관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부문의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② 재해예방 수산보전제

어촌은 농촌이나 도시지역에 비해 자연재해의 빈도와 그 피해규모가 크다. 매년 3.1회 정도 내습하는 태풍과 그 밖에 폭풍, 해일 등 자연재해와 선박충돌 등 재난사고의 위험도 매우 높다. 어촌지역에서 자연재해나 재난으로 인해 입는 피해규모는 연간 평균 674만 원정도



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비용지출은 열악한 어촌의 현실에서 양극화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자연재해로부터 예방을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과 안전교육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어가경영에 도움을 줌으로써 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③ 맞춤형 어촌복지 바우처 제도

어촌의 복지는 도시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부분이다.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 타 부처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에서 어촌의 여건에 부합하고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타 부처와의 중복성이 적으면서 어업인들의 건강, 안전, 노인복지 등 공동복지증진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 정책은 현재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어촌 실태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수산작업재해보상지원, 여성어업인 양성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5-4-13]과 같다.

[표 5-4-13] 의료·사회안전망·복지부문 세부지원방안

구 분		정책개선 방향	정책사업	추진 주체	우선 순위
의 료	의료기관 접근성	-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	취약지역 긴급의료 수송 수산보전제	수산경영과	4
		- 의료교통비 지원			
사 회 안 전 망	재난 및 자연재해예방	- 재해예방 및 안전교육 지원	재해예방 수산보전제	수산정책과	3
	조건불리	- 조건불리지역 소득보전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	수산경영과	2
	안전공제지원	- 안전공제 가입 장려	-	-	5
복 지	작업재해	- 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지원강화	수산작업재해보상지원	수산경영과	1
	인력지원	- 취약어가 인력지원	-	수산경영과	
	여성복지	- 여성직업 알선 및 창업지원 - 여성문화/복지시설 건립	여성어업인 양성지원사업 (확대)	수산경영과	
	노인복지	- 경로당 운영비 지원 - 어업인 건강관리실 도입 - 노인봉사원활동 프로그램	맞춤형 어촌복지 Voucher 제도	수산경영과	
	문화 여가시설	- 찜질방, 건강센터 조성	맞춤형 어촌복지 Voucher 제도	수산경영과	



(2) 교육부문

교육부문은 다시 세부적으로 어업인 특화교육, 방과후 교실, 교류확대, 학습 도우미, 교육여건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교육부문은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매우 적지만 어업인 특화 교육, 교육여건, 교통수단 지원 등 새로운 정책발굴이 필요하다([표5-4-14] 참조).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교실 운영, 방학캠프 등은 도시와의 격차가 현저히 나타나는 부문으로 이들 사업들이 어촌지역 내에서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표 5-4-14] 교육부문 세부지원방안

구 분	정책개선 방향	정책사업	추진 주체	우선 순위	
교육	방과후 교실	- 방과 후 교육 확대	-	교육인적자원부	2
	교류확대	- 방학캠프 운영	-	교육인적자원부	6
	학습 도우미	- 학습도우미 지원확대	-	교육인적자원부	4
	어업인 특화교육 (성인)	- 비어업 시기교육프로그램 - 눈 높이에 맞는 사회교육 - 노인 및 저학력자를 위한 교육	어업인 교육정보 포털 구축 추진	수산경영과	1
	교육여건	- 수산업전문학교 운영 - 수산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지원	-	해수부	5
	교통수단 교통비	- 교통수단 또는 교통비 지원	-	해수부	3

(3)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부문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부문은 기반시설(유통 및 교통), 쓰레기·생활오수·분뇨처리, 어촌정보화 등에서 농촌, 도시와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는 낙후어촌 생활환경 개선, 1어촌 1멘토 제도, 정보화사업(정보화마을, 디지털어촌 구축사업),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환경친화형 어촌주거모델 등의 새로운 정책발굴이 필요하다([표 5-4-15] 참조).





① 낙후어촌 생활환경 개선

어촌의 생활·환경은 기반시설 특히, 유통시설이나 교통시설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생활오수, 분뇨처리 등에서 매립, 방류가 많아 환경오염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낙후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해양수산부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정책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 (가칭) 낙후어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은 생활·환경 여건이 낙후된 어촌을 선정하여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② 1어촌 1멘토 제도

어촌의 지역개발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을 발굴 육성하는 제도로 기존의 사무장 제도, 컨설팅 제도를 확대·개선한 제도이다.

[표 5-4-15]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부문 세부지원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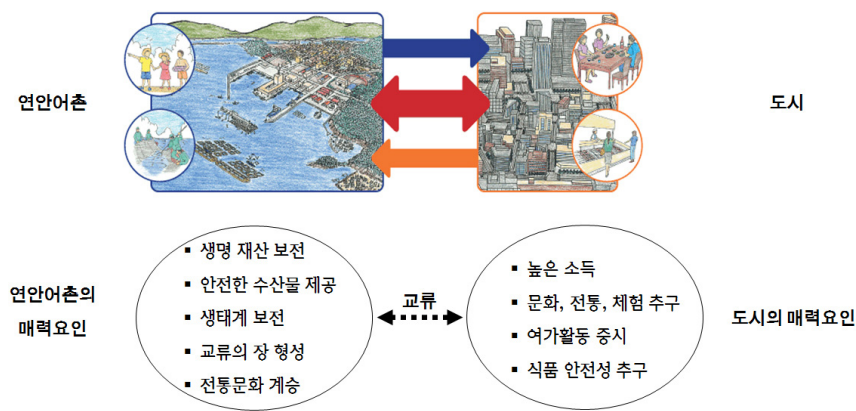
구 분		정책개선 방향	정책사업	추진 주체	우선 순위
지역 개발	기반시설	- 유통시설, 교통시설 확충	낙후어촌 생활환경 개선	어촌어항과	2
	쓰레기	- 분리수거 시스템 개편 - 매립, 소각 대체방안 마련			
	생활오수	- 방류 대체방안 마련			
	분뇨처리	- 방류 대체방안 마련			
생활 환경	어촌정보화	- 컴퓨터 보유율 제고 - 홈페이지 구축률 제고 - 컴퓨터 교육 증대	정보화마을사업 디지털어촌구축사업	행자부 해양수산부	1
	난방비 지원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	수산경영과	4
	주거모델	- 환경친화형 어촌주거모델	-	어촌어항과	5
	인적자원 육성	- 기존 사무장 제도 확대 - 컨설팅 제도 개선	1어촌 1멘토 제도	어촌어항과	3

(4) 복합산업 및 문화·여가부문

복합산업 및 문화·여가부문은 다시 세부적으로 자원 발굴, 교류 활성화, 소프트웨어 발굴 등으로 구별되며, 어촌의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으로는 어촌 부존자원 발굴 및 활용, 도시어촌교류 활성화 등이 있다([표 5-4-16] 참조).

①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활용

연안어촌은 상대적으로 자원의 발굴과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만큼 미활용 되고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다. 최근 어촌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안어촌을 찾는 도시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자원발굴과 활용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체험관광마을, 어촌관광활성화 사업 등 도시



[그림 5-4-3] 도시어촌교류 활성화 정책방향

[표 5-4-16] 복합산업 및 문화·여가부문 세부지원방안

구 분	정책개선 방향	정책사업	추진 주체	우선 순위
자원 발굴	- 어촌부존자원 발굴 및 활용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발굴 및 활용	어촌어항과	3
교류	- 도어교류센터 조성	도시어촌교류 활성화	어촌어항과	1
소프트웨어	- 프로그램 및 마케팅	도시어촌교류 활성화	어촌어항과	2

민에게 여가공간 제공과 어업인의 어업외소득 제고를 목적으로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나 어메니티의 자원발굴과 활용에 대해서는 정책발굴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안어촌 어메니티의 자원발굴과 이를 고부가가치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의 조사 및 발굴은 76개 연안 시·군·구를 대상으로 자연, 경관, 역사, 문화, 경제, 공동체 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DB화하여 연안어촌 어메니



티 지도(Amenity Map)를 만들어야 한다. 연안어촌 어메니티 자원조사의 발굴과 창출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굴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야만 정책적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자원을 발굴하는 시점에서부터 활용방안을 염두에 두고 자원으로 발굴한다면 어촌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 ② 도시어촌교류 활성화

연안어촌 어메니티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시장형성과 도시어촌교류 활성화 유도이다. 떡거리를 포함해 연안어촌의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어촌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농림부에서 추진했던 1사 1촌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연안어촌의 매력요인과 도시의 매력요인을 서로 교환시킴으로써 상생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한 수산물 시식·구매 활동, 생태환경, 전통문화 등에 대해 도시민들은 높은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시장형성과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이 필요하다.

# 제 6 장

## 수산물가공 및 유통 활성화 방안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외식산업 및 수산물 식재료 산업 육성
제 3 절	수산물가공업 현황 및 발전 방안
제 4 절	수산물가공벤처 육성 및 지원
제 5 절	FTA 추진 국가별 맞춤형 가공·유통업의 구조개편 방향
제 6 절	브랜드 중심의 수산물 소비촉진
제 7 절	원산지 표시제 강화 방안
제 8 절	산지유통시설 현황 및 육성방안
제 9 절	생산자 단체 소매 유통시설 구축 및 지원
제 10 절	수산물 판매점 및 음식점 인증제도
제 11 절	수산물직거래 시장과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한 실천계획



## 제1절 개 요

WTO/FTA 대비 어업인 어촌 지원 대책에 있어 국내 수산물 경쟁력 제고는 가격 측면과 비가격 측면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가격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국내 수산물의 1차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는 산지위판장의 경쟁력 제고이다. 그리고 비가격 측면에서는 국내 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산지가공의 활성화, 국내 수산물의 브랜드화, 원산지 표시제 강화, 이력제 등을 통한 차별화 추진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새롭게 성장 확대되고 있는 외식 및 단체 급식 시장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외식 시장에서의 국내 수산물 취급 판매에 대한 인증제 부여를 통한 명확한 포지셔닝이 요구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국내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산업 활성화 방안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장의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식품 산업 육성을 통한 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

- ① 외식산업 및 수산물 식재료 산업 육성에서는 수산물 신시장으로서 위치하고 있는 외식시장(소비자 식품지출에 있어 외식 지출 비중이 이미 50%를 넘어서고 있음)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주요 수산물 외식시장인 단체급식이나 씨푸드 레스토랑, 해산물 전문점, 생선초밥 전문점 등의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자재 공급 시스템의 선진화, 식자재 전문수산기업 육성, Seafood Valley 조성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 ② 수산가공산업 현황과 발전방안에서는 산지가공의 탈산지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전의 수산가공기지와는 달리 서울, 대구, 인천, 충남의 신장세가 뚜렷해지면서 주산지 이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내수산물의 탈가공원료로 이어지면서 저가격 수입수산물의 확대와 산지가공의 후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수산가공기술의 고도화, 국내 수산물의 품질/위생/안정성 확보, 지역수산가공 유통/물류의 SCM화, 가공시설개량자금지원, 수산가공공장 공통기준 및 표준화, 국내가공원료 구매자금에 대한 금융융자 지원책이 요구된다.
- ③ 수산가공벤처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는 단계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1단계에서는 병력특혜, 경영컨설팅, 인재발굴, 산학연 연계, 기술경영 투자육성 등과 같은 경영/인적자원 발굴 및 관리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2단계는 기술개발 자금지원 단계로 여기에서는 투자조합 설립, 고차 가공기술개발, 기능성 식품개발, 자금지원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단계는 기술의 사업화 단계로 기술자 벤처참여 확대, 보유 기술 사업화, 기술경영지원이 요구되고, 4단계에서는 벤처화 추진 단계로 가공벤처 빌딩/단지제도도입, 금융, 코스닥시장 지원이 필요하다. 5단계는 활성 및 경쟁력 강화 단계로 세제/규제완화, 공동마케팅, 공시제도 확대, 시설현대화, 수출경쟁력 강화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④ FTA 추진 국가별 맞춤형 가공 유통업 구조 개편에서는 수산물 수출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전통적인 수출국은 위축되고 중국계 신시장이 성장하고 저가격 단순가공품은 축소되고 대신 고가격 고선도 수산물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수출어종에서 전통적인 수출어종은 감소하고 국내양식수산물의 수출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주요 수출 대상국인 일본에 대해서는 공동브랜드/상품/물류체계 강화 전략이 요구되고, 미국은 현지한국인 소비확대 전략과 함께 신상품개발을 통한 현지인 소비확대 전략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수출 전문유통/무역업체를 육성하고 활어/고선도 수출을 위한 국내 활어차, 냉장차 등의 중국 내 운송 및 국내양식수산물의 고급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브랜드 중심의 수산물 소비촉진으로 내수 기반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2가지 과제를 수행하였다.

- ① 브랜드 중심의 수산물 소비촉진에서는 현재 개별회사, 어촌계별, 시장별, 무상표, 수협별로 각각의 브랜드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한 브랜드 가치 1조원 창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전략은 세부 브랜드 전략, 브랜드 확산 전략, 대표브랜드 발굴이 필요하다.
- ② 원산지 표시제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외식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이식용수산물관리규정의 부재 등으로 적용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3원화 단속체계 및 단속실적 미흡, 위장판매 성행 등에 대한 적발확률을 높이는 위해서는 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강력단속을 통한 부정이익환수 및 과태료 상향 조정이 요구된다. 한편 국내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의해 어획된 수산물의 원양국산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고품질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과제를 수행하였다.

- ① 산지유통시설 현황 및 육성방안에서는 산지수협위판장의 이중구조, 비효율성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DEA분석 결과도 전체 평균 비효율성이 42.1%를 나타내고 있다. 산지 수협별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크게 우



선 9개 산지수협에 대해서는 구조 재편을 요구하고 있고, 18개 산지수협에 대해서는 구조 재편과 기술적인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 외에도 산지위판장의 다목적용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수산관광기능, 수산물류기지기능과 같은 활용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 ② 생산자 단체 소매 유통시설 구축 및 지원에서는 특히 수협 중앙회의 바다마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매출감소, 경쟁 심화에 따른 경쟁력 상실, 차별화 실패, 포지셔닝 부재, 모호한 성격의 바다마트(일반마트, 관광상품판매, 인터넷 등) 등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회/회원조합의 공동 사업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산지직거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공동브랜드 판촉활동의 촉진,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의 도입이 요구된다.
- ③ 수산물 판매점 및 음식점 인증제 방안에서는 성급한 도입 보다는 단계별 추진이 요구된다. 특히 생선회 음식점 인증제 도입을 위한 필요 개념으로는 위생관련 인증과 생선회 품질 관련 인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④ 수산물 직거래 시장과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천 계획에서는 취급 품목의 다양화, 배송망 확보와 배송 수단의 다양화, 수산물의 품질 유지,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 고객관리 강화, 정보시스템의 활용 전략 도입이 필요하다.



## 제2절 외식산업 및 수산물 식재료 산업 육성

### 1. 서론

수산물시장에 있어 수산물 관련 외식산업 및 가공산업에 대한 통계자료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특히 수산물이 식품산업의 분류에서 농축산물과 혼재되어 수산물자체에 대한 식품산업연관관계 분석과 식품산업발전에 대한 현상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존재한다.

따라서 식품산업에서 수산물을 별도 분리하여 분석할 수 있다면 국내어업생산자 관련 정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제한적으로 접근하기로 한다.

#### 가. 수산물 제품화 단계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

제품화 단계란 일반제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생산과 같다. 즉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공급하여 중간 생산단계를 거쳐 완성품으로 생산된 제품이다. 중간에 원자재를 수입하기도 하고, 중간제품을 1, 2차 벤드를 통해 완성조립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형태로 시장에 노출되는 전단계의 물건을 제품이라 할 수 있다.

1차적으로 공급되는 수산물 역시 소비 전단계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연근해, 원양, 수입 수산물은 제품화 전단계인 공급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품화가 되면 제품에 대한 상품명, 가격, 유통단계를 거치는 소위 말하는 마케팅의 3P(price, promotion, placement)가 작동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일부 수산제품의 경우 제품의 이력이 관리되고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어 하자 없이 사용되는 과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생산자가 지게 되는 추적제가 도입되고 있다.

#### 나. 수산물 생산과 물류전반을 관리하는 SCM(Supply Chain Management) 접근

수산물의 제품화 단계를 시스템적으로 분석하여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일반제조기업이 도입하는 SCM방법을 수산물시장에 도입하여 체계적인 생산과 물류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다. SCM의 기본원리가 생산자 통합을 통한 협력관계 강화, 소비자요구에 최

대한 빠르게 반응해서 소비자 만족을 통한 매출증대와 기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이다.

## 다. 수산물 소비시장에 대한 마케팅적 접근

수산물 생산에 대한 시스템적인 접근과 SCM의 도입도 소비 활성화를 위한 주요 방안 중의 하나이다. 결국 소비자 만족과 수요가 확대되면 생산도 확대될 것이다.

생산 제품 판매를 위한 마케팅전략을 수산물시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은 판매채널의 다양화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업 확대로 소비량을 일정수준 이상 증가시키는 목표관리적인 판매 전략 도입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수산물 판매 형태는 생산 제품이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으로 도매상, 소매장, 대형판매점, 백화점, 할인점, 단체급식, 재래시장, 외식산업 등을 거치게 된다. 특히 외식시장에서 수산물식자재 수요 증대를 통한 수산물 소비 확대라는 시장접근적 마케팅 시각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 라. 수산물 외식산업 현황

### 1) 외식지출의 확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소비지출 절대 금액은 [표 6-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중 식료품 소비 지출 절대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전체소비지출에 있어 식료품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즉 엥겔지수는 2003년 26.6%에서 2006년 25.7%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수치는 1995년 29.0%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선진국형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식료품 소비지출에 있어 주요 품목별 소비 동향을 살펴보면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 곡류는 절대 금액과 비중이 동시에 감소하고 있다. 반면 육류는 7.4% 증가, 낙농 9.8% 증가, 어개류 6.6% 증가, 채소, 해조류 4.7% 증가하였다.

한편 소비자들의 식료품 지출에 있어 외식 지출은 절대 지출 금액면에서도 2003년 223,012원에서 2006년 247,859원으로 연평균 10% 증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식료품 소비 증가가 외식을 통하여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6-2-1] 품목별소비지출금액구성(가구당 월평균)

	2003	2004	2005	2006	(단위: 원) 증감률
전체소비지출액	1,862,338	1,963,316	2,035,256	2,120,122	12.2
식료품	495,204	532,452	539,260	543,864	8.9
	(26.6) "	(27.1)	(26.5)	(25.7)	
곡류 및 식빵	44,329	48,427	45,652	42,600	-4.1
	(9.0)	(9.1)	(8.5)	(7.8)	
육류	39,818	39,200	41,596	42,978	7.4
	(8.0)	(7.4)	(7.7)	(7.9)	
낙농품	19,385	20,567	22,102	21,481	9.8
	(3.9)	(3.9)	(4.1)	(3.9)	
어개류	31,583	32,690	32,632	33,800	6.6
	(6.4)	(6.1)	(6.1)	(6.2)	
채소·해조류	39,162	39,981	39,917	41,095	4.7
	(7.9)	(7.5)	(7.4)	(7.6)	
외식	223,012	244,359	246,876	247,859	10.0
	(45.0)	(45.9)	(45.8)	(45.6)	

주: 1. ( )는 전체 소비지출액에서 식료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2. ( )는 식료품 소비지출액 가운데 개별품목이 점하는 비율이고, 개별품목 중 과실류, 조미식품, 빵 및 과자류, 차와 음료, 주류, 기타식료품을 제외하여 합이 100이 되지 않음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복지통계과, 「가계조사」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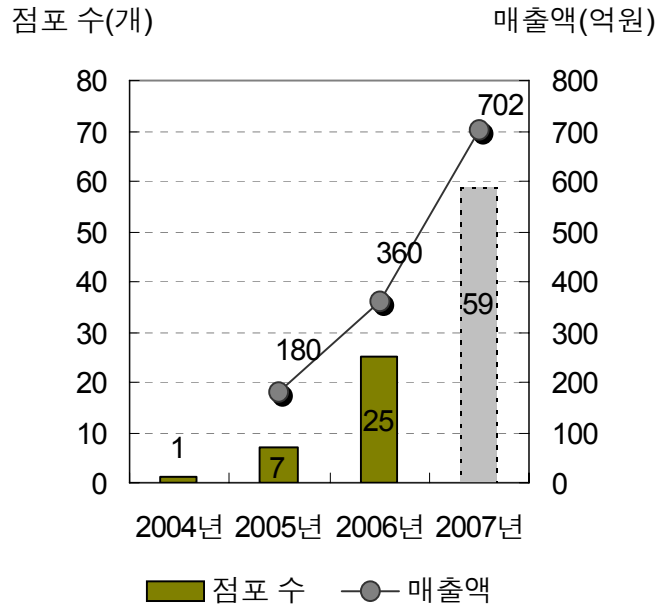
## 2) 수산물 외식산업 현황<sup>1)</sup>

### (1) 시푸드 레스토랑

외식시장에 해산물 전문음식점인 시푸드 패밀리레스토랑이 2006년부터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시푸드 패밀리레스토랑은 현재 20여개가 있으며 주로 구매력이 높은 서울 강남권과 신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외식업 전문가에 따르면, 2006년 시푸드 패밀리레스토랑의 시장규모는 패밀리 레스토랑 시장규모의 약 3.4%인 360억원이었으며, 2007년엔 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푸드 레스토랑에서 초밥, 회 등의 인기가 높아 향후 이 부분의 수산물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사대상 시푸드 패밀리레스토랑은 주로 바다가재, 초밥, 퓨전 롤 등을 중심으로 한 뷔페식이며 대부분 200석 이상의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활어 초밥이나 퓨전 롤 등의 인기로 넙치, 도미, 농어 등의 활어 이용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푸드 패밀리레스토랑이 향후 수산물의 주요 소비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표 6-2-2].

1) 수산물 외식산업 현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물관측센터 시장동향보고서에서 인용



주 1) 연도별 점포 수는 당 센터 조사자료이며, 매출액 추이는 신세계 푸드 자료임  
 2) 2007년의 점포 수 및 매출액은 예상치임

[그림 6-2-1] 연도별 시푸드 패밀리레스토랑 점포 수 및 매출액 추이





[표 6-2-2] 주요 시푸드 패밀리레스토랑의 현황

브랜드	씨푸드오션	오션스타	보노보노	바이킹스	무스쿠스	텔라시스
운영사	CJ푸드빌	제너시스	신세계푸드	아시아키친	무스쿠스인터내셔널	(주)해창시스템
창립시기	2006.5	2006.10	2006.10	2004.11	2004.12	2005.10
운영형태	메뉴형	메뉴형	뷔페형	메뉴형	뷔페형	뷔페형
메뉴 수	130여 가지	110여 가지	140여 가지	120여 가지	60여 가지	100여 가지
좌석 수	250~300석	280~300석	350석	270석	150~200석	150~230석
주 메뉴	바다가재, 초밥, 롤, 샐러드 등	바다가재, 초밥, 롤, 새우, 스테이크 등	초밥, 롤, 회, 샐러드 등	바다가재, 조개류, 전복회, 새우 등	초밥, 롤, 샐러드, 와인 등	초밥, 롤, 대게찜, 과일 등
초밥에 이용하는 활어 종류	도미	넙치, 도미, 농어,	넙치, 도미, 농어	광어, 농어, 점성어 등	넙치, 홍민어, 보리멸	넙치, 도미, 농어, 홍민어, 방어,
초밥에 이용하는 냉동어 종류	연어, 새우, 문어, 조개류	연어, 참치, 가리비 등	문어, 연어, 참치, 새우 등	참치, 새우, 연어, 장어 등	참치, 새우, 연어, 한치	연어, 참치, 새우, 학꽂치, 문어, 장어
훗감용 활어	도미	-	도미, 방어, 농어, 전복 등	방어, 참치, 새조개 등	넙치, 홍민어	넙치, 도미, 농어
점포 수	3	3	1	4	5	3
입점지역	서울	서울	서울	신도시, 경북	서울	서울
점포명	발산역점 일산 마두점 대치점	목동점 공릉점 명동점	대치점	일산점(04) 안산점(05) 분당점(05) 구미점(06)	센트럴시티(05) 역삼점(05) 삼성점(06) 잠실점(06) 여의도점(06)	화정점(05) 구리점(06) 영등포점(06)
수입산 비중	영업비밀	영업비밀	영업비밀	영업비밀	영업비밀	영업비밀
방문객 수 (토요일)	영업비밀	영업비밀	영업비밀	1500~2000명	영업비밀	영업비밀
뷔페가격 (주말기준)	23,000원	24,000~26,000원	35,000원	-	26,000원	21,000원
2007계획	8~10	3~5	3~5	4	3~5	3~5

주 : 1. 평일 점심가격은 주말의 약 24% , 평일 저녁은 9% 저렴한 가격수준임

2. 이 외에도 시푸드 패밀리레스토랑으로는 팜스팜스, 씨앤 등이 있음

그 외 중소형 시푸드 레스토랑도 운영 중인데 주로 초밥, 회, 롤, 연어, 대게 등이 주 수산물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표 6-2-3].

[표 6-2-3] 기타 시푸드 패밀리레스토랑의 현황

브랜드	팜스팜스	씨앤	보덴제	버디
운영사				
창립시기				
운영형태	뷔페형	뷔페형	메뉴형	메뉴형
메뉴 수		140여 가지		20여 가지
자석 수				332석
주 메뉴	초밥, 화, 롤, 샐러드 등	초밥, 롤, 샐러드 등	새우, 연어, 스테이크 등	대게, 스테이크, 초밥, 샐러드 등
점포 수	1	1	2	1
입점지역	서울	경북	서울	서울
점포명	서초점	대구 수성점	수성점 만경관점	광장동점
뷔페가격(주말)	27,000원	17,000원	25,000원	

## (2) 주요 퓨전 해산물 전문점의 현황

최근 주점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업태는 다양한 요리에 개성 있는 인테리어를 갖춘 퓨전 요리주점이다. 일반적으로 해당 업소 전체 매출액 중 주류 판매 비중이 30~40%선이면 주점으로 분류된다. 국내 주류 전문점 시장은 약 10조원대로 추정된다.

현재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퓨전 해산물 전문점은 [표 6-2-4]에서 알 수 있듯이 400여 곳이 활어, 선어, 패류 등의 수산물 퓨전 요리를 제공하고 있다.

[표 6-2-4] 주요 퓨전 해산물 전문점 현황

프랜차이즈 명	점포수	형태	주 메뉴	홈페이지	비고
섬마을 이야기	57	전통식	활어류, 패류, 퓨전요리	www.seommaul.com	해산물 카페형 주점
취하는건 바다	162	혼합식	선어류, 패류, 퓨전요리	www.cheebar.com	별해별미형 주점
피쉬앤 그릴	216	전통식	어묵, 꼬치, 구이류	www.richfood.net	퓨전 포장마차
씨푸드 오션	2	서구식	패류, 퓨전요리	www.seafoodocean.co.kr	뷔페식 해산물 레스토랑

주: 그 외에도 쇼부(www.shoubu.co.kr) 및 바이킹스(www.vikings.co.kr) 등에서도 활어를 메뉴로 이용하고 있음

퓨전요리와 주점을 합친 퓨전 요리주점은 전통식, 일본식, 중국식, 서구식으로 나누며 이를 혼합한 혼합식도 있다. 그 외의 퓨전 주점으로는 [표 6-2-5]에서 나타내고 있듯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표 6-2-5] 퓨전 해산물 주점 현황

주요 브랜드	점포 수	홈페이지	비고
화투	90	www.hwatoo.co.kr	꼬치구이 전문점, 호프집
쇼부	70	www.shoubu.co.kr	일본식 퓨전 주점(정통 이자카야 표방)
하이카라야	6	www.haikaraya.co.kr	일본식 퓨전 주점(일본 전통 음식점)
상하이객잔	16	www.shanghi.co.kr	중국식 퓨전 주점
쫄쫄	506	www.jjokkie.com	호프 & 레스토랑
바이킹스	1	www.vikings.co.kr	VIPS형의 패밀리레스토랑
짬구야학교가자	68	www.jjang9.co.kr	한국식 퓨전 주점

주: '이자카야'는 일식당에 호프와 민속주점, 소주방을 섞어놓은 듯한 분위기의 업태를 말함

### (3) 생선초밥전문점

전국의 생선초밥 전문점은 2002년 이후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1천여개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A사와 같은 소형매장의 프랜차이즈형 생선초밥점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초밥점의 증가는 '저렴한 가격'과 함께 '저칼로리 식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여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표 6-2-6].

생선초밥 전문점의 주요형태로는 초밥의 주재료와 점포규모에 따라 가공 냉동 처리된 회를 이용하는 '소형 생선 초밥점'과 활어 회나 선어 회를 이용하는 '대형 및 뷔페형 생선초밥점'이 있다.

[표 6-2-6] 주요 생선초밥 전문점의 현황

구 분	A 사	B 사	C 사
주요 형태	소형 생선초밥점	대형 생선초밥점	뷔페형 생선초밥점
점포 수	200여개	5개	단일점포
점포당 면적	8~15평	70~100평	300평
개점 시기	2003년	2003년	2002년
메뉴 수	50~60개	100여개	40~50개
생선초밥용 재료 상태	가공 냉동 회	활어 회	-
초밥 가격 (넙치 1pcs 기준)	700원	1,500~2,000원	정액제(중식 1인 19,000원)
주요 고객층 (1회 고객 수)	대학생, 직장인(1~3인)	가족 및 연인(4~6인)	단체 손님(15~30인)

\* 전국 15개 도시전문점 인터넷 검색 및 전화조사(2006.7.19~22) 결과

주: 생선초밥 전문점의 현황은 소형 10곳, 대형 4곳, 뷔페형 1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한 후 각 형태별 초밥점 중 1곳씩을 선택하여 전화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대형소매점 생선초밥 판매는 2~3년 전에 비해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대형소매점의 연간 활어 판매량의 15~22%가 생선초밥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대형소매점의 생선초밥은 참치나 새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전량 활어회를 숙성시켜 이용하며 어종은 대부분 넙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6-2-7].

[표 6-2-7] 주요 대형소매점이 생선초밥 판매 현황

구 분	A 마트	B 마트
연간 활어 판매량	약 800톤(넙치 700톤)	약 300톤(넙치 180톤)
생선초밥용 판매비율	15~20%	17~22%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년 전의 생선초밥용 판매비율은 10% 이내였음</li> <li>• 초밥용 어종 순위: 넙치, 도미, 농어 순</li> </ul>	

자료 : 대형소매점 2곳 전화조사(2006.7.19~22)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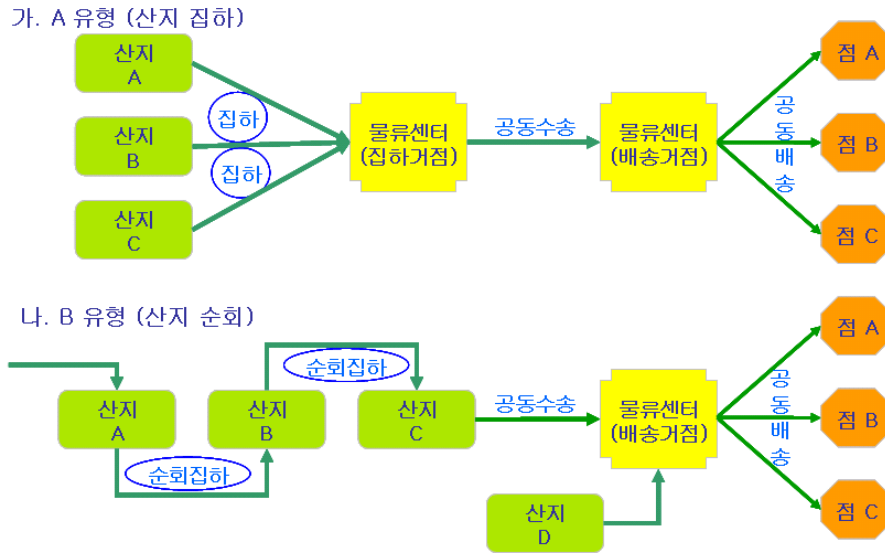
## 2. 외식산업 및 수산물 식재료 산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

### 가. 수산물 제품화 단계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

수산제품 특히 외식 식자재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과 수요가 명확한 유통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개념의 종합물류관리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수산물의 집산과 제품화 과정에 있어 지금까지 Push모델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의 신뢰성이 바탕이 되는 수산물 집하가 가능하게 되는 Pull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새로운 조직을 전문화하고 수산물류업체와의 협력관계를 두고 물류아웃소싱하는 형태를 수산부분에 도입하는 시스템이다. 수산물 종합 물류의 공동배송과 콜드체인(cold chain)시스템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공동배송은 [그림 6-2-2]와 같이 집하 장소에서 물류센터로 이동하는 경우와 순회 집하하여 물류센터로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림 6-2-2] 공동 물류 시스템 개념도

## 나. 외식식자재를 중심으로 하는 수산물 생산과 물류전반을 관리하는 SCM

앞으로 수산물에 대한 어획, 가공, 수입 등을 통한 공급부분을 기업의 생산단계로 보고 판매물류와 구분되는 조달물류전반에 대한 시스템적인 관리체계인 SCM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단 계	구축 프로세스	추진 내용
1	교육 프로그램 작성	SCM에 대한 전사적 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2	공급 사슬 비전 확립	현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변화 -핵심 역량의 결합, 공급 사슬 미래 조망
3	경쟁 전략의 평가	현재 전략의 평가 프로세스 개발, 보유 자원 평가
4	SCM의 부가가치 창출 전략 개발	공급 사슬 전략설정, 인적 기술지원 개발, 성과 측정
5	최적의 파트너 구성	최적 파트너 선정 기준 확보
6	최고 경영진의 적극 참여 확보	최고 경영진의 역할 명확화
7	SCM 조직의 개발	부서간 기업간 통합을 위한 프로세스팀 설립
8	정보 네트워크 구성	정보 통신 네트워크의 명확화, 표준화
9	SCM 구축 전략 구성	구축 프로세스의 지속적 추진
10	성과 측정 방법 개발	성과 측정 프로그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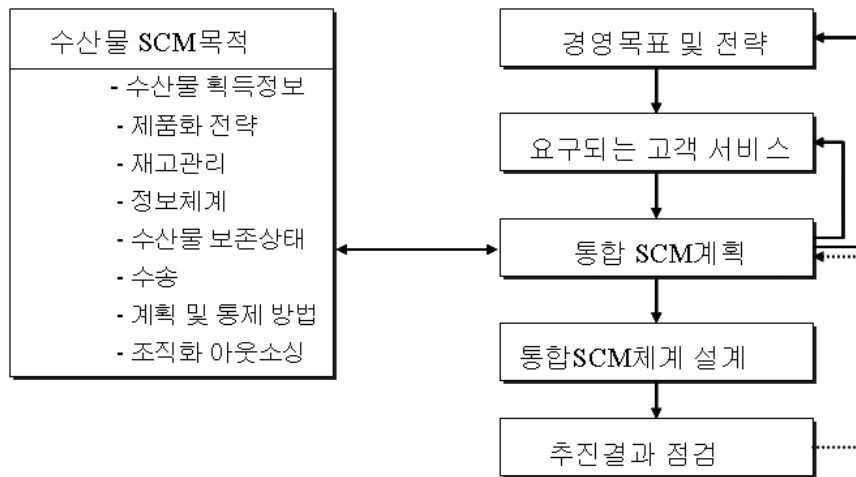
[그림 6-2-3] 외식식자재 SCM 구축 절차

특히 외식식자재 수산물의 생산과 물류를 위한 성공적인 SCM 구축을 위해서는 추구하는 목적과 사업 전략이 분명해야 한다. 이는 현재 프로세스를 자세히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해 개선안을 도출해내는 과정으로 실행된다. 프로젝트 관리 활동은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며 구성은 범위의 설정, 각 활동에 대한 계획 및 조정, 자원의 재구성, 품질 보증, 비용과 위험의 최소화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프로젝트 정의 단계는 벤치마킹이나 제안 등을 바탕으로 목적(이익)이나 범위, 솔루션 옵션, 프로젝트 구조 등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프로젝트 초반에 실시한다. 이 단계의 시작은 현재 프로세스의 상세한 분석을 통해 개선되어야 하는 프로세스를 찾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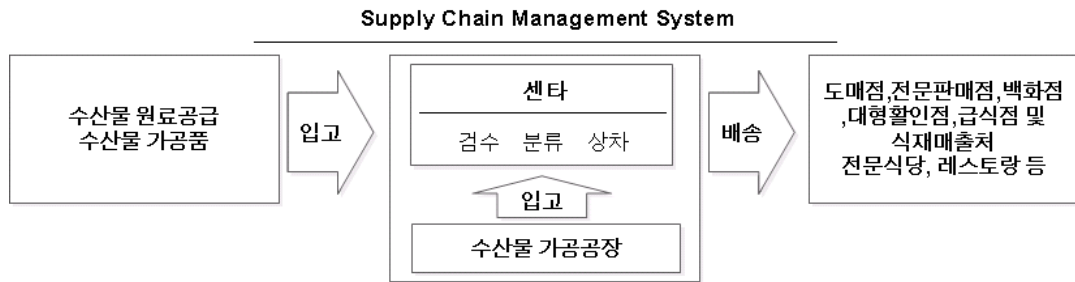
목적은 새로운 수산물 소비시장을 개척하고 재고, 구매비용, 리드타임 감소 등을 통하여 공급사슬에서 이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개선은 현재 프로세스의 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수산물생산제품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현재의 생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하면서 생산 정보 DB의 고객 접근이 용이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6-2-4] 수산물 SCM 프로세스

프로젝트 범위를 신중하게 정하고 문서화함으로써 추후 범위 확장으로 인한 비용 과다 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각 기능과 프로세스는 하부 단계의 활동으로 자세하게 분류 되어야만 솔루션의 모듈과 기능으로 대입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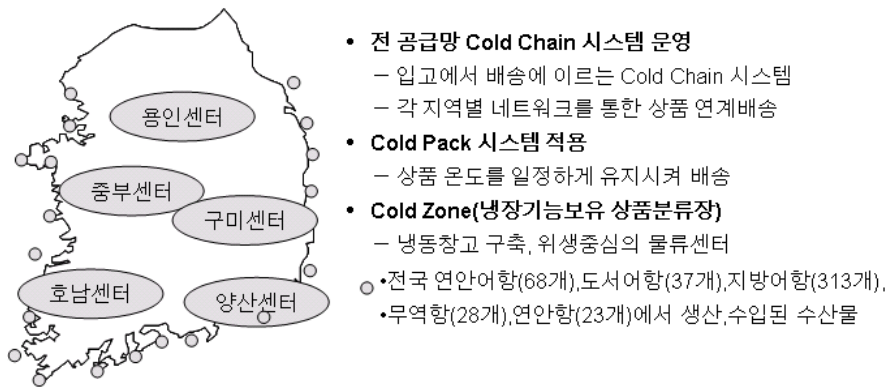
제 6 장



[그림 6-2-5] 수산물 식자재 SCM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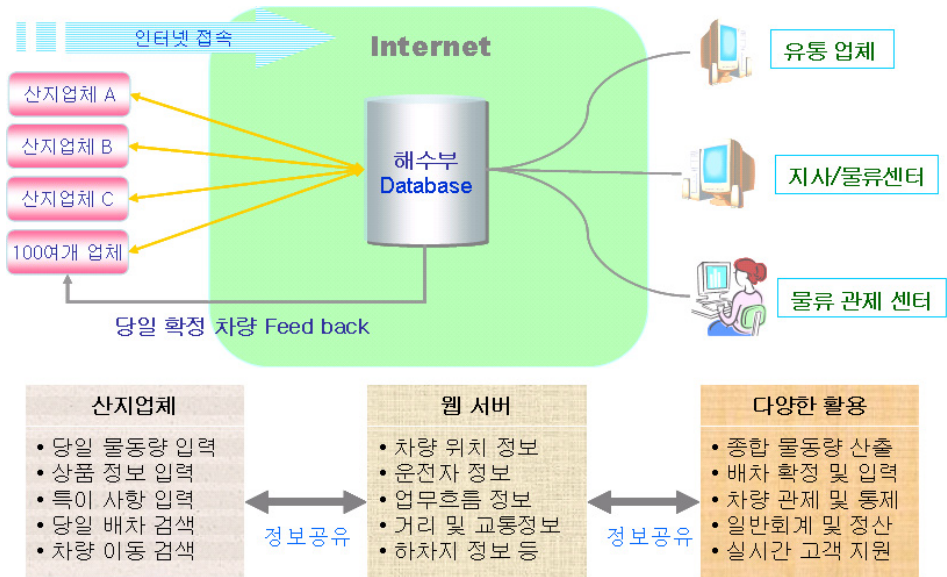
다음으로 솔루션 옵션에 대한 상위 단계의 설계와 적절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선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미래 사업 모델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고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문서화되어야 한다.

**수산물 물류 센터 Cold Chain 운영**



[그림 6-2-6] 수산물 물류센터 콜드 체인 개념도

수산물 물류센터 콜드체인 시스템은 수산물 수집과 이동에 적용이 가능한 텔레매틱스 기술을 물류산업에 연계한 것으로 △물류센터에서 차량의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기술, △본부에 차량 운전자가 추가 탑재 가부를 알려주는 기술, △냉장 차량의 온도 자동 관리 기술 등으로 실시간으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관리가 용이하다.



[그림 6-2-7] 인터넷을 통한 수산물 수집정보 시스템(Pull모델로 활용)

프로젝트 구조 설계 단계는 여러 가지 활동들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스폰서와 초기 계약자가 선정되어야 하고 팀 조직이 정해져야 하며 프로젝트 조정 및 보고 절차가 정의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운영 팀은 프로젝트 성공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때 각 팀의 역할과 조직의 필요에 따라 각 팀원의 기술적 능력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그 구조는 보통 각 부서들 간의 책임 분배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 6 장



[그림 6-2-8] 실시간 차량 위치추적 정보 시스템



온도기록보기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2002-01-26 20시 ~ 2002-01-28 21시 검색

소속: \*(주)동원물류배송 차량번호: 9753.작전점 운전자명: 최준철 핸드폰: 011-9872-9753

번호	시간	온도(앞)	온도(뒤)	시(도)	구(군)	동(면/읍)
155	01-27 03:57	3.9	4.7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2동
156	01-27 03:51	3.8	4.7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2동
157	01-27 03:45	3.8	4.7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2동
158	01-27 03:39	3.8	4.7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2동
159	01-27 03:33	3.8	4.7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2동
160	01-27 03:27	3.8	4.6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61	01-27 03:21	3.8	4.6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62	01-27 03:15	3.8	4.6	경기도	고양시	대덕동
163	01-27 03:09	3.8	4.6	경기도	고양시	대덕동
164	01-27 03:03	4	4.6	서울특별시	홍안구	한강로3동
165	01-27 02:57	4	4.6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1동
166	01-27 02:51	4.1	4.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1동
167	01-27 02:45	4.1	4.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168	01-27 02:39	4.1	4.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169	01-27 02:33	4	4.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70	01-27 02:27	4	4.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71	01-27 02:21	4	4.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72	01-27 02:15	4	4.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73	01-27 02:09	4	4.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74	01-27 02:03	4	4.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75	01-27 01:57	4	4.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76	01-27 01:51	4	4.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77	01-27 01:45	3.9	4.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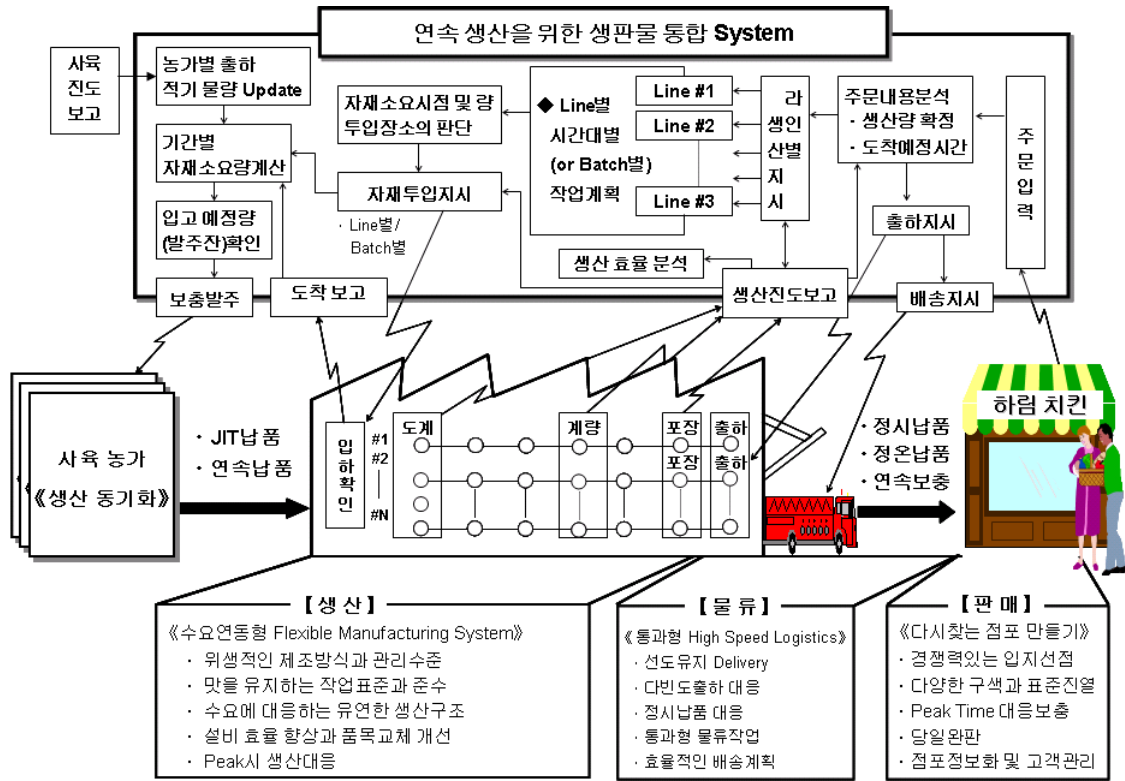
[그림 6-2-9] 실시간 차량 온도 측정 시스템

## 2) 솔루션 설계

선택된 솔루션의 상위 단계 설계를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정립하는 단계로 비용과 위험에 대한 실질적 고려가 이루어진다.

솔루션의 세부 구상은 업무 패키지나 활동으로 구성된다. 특히 여기에서는 주요 활동이 파악되어야 하고 주요 경로를 결정하기 위해 나열되어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한도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논의하여 범위를 정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하림치킨을 벤치마킹하면 하림의 경우 사육농가와 실시간으로 원료공급을 해서 가공공장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효율적인 물류관리로 판매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수산가공 물류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2-10] 하림의 SCM 체계

### 3) 공급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SCM 도입 전략

앞에서 SCM의 도입과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였는데 결국은 수산물 원료공급지역의 시스템 운영자가 참가한 공급망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한다. 수산물법인과 개인의 공급망 참가를 위한 기초정보시스템을 ASP형 ERP시스템을 제공하고, 원료와 수산물제품공급에 대한 산지 입력이 가능해져서 “(가칭)통합물류 관제 시스템”에서 수산물의 제품화작업을 진행하여 수산물제품의 정보를 판매채널과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수산물의 소비수준을 향상시키는 1차적인 목적은 수산물공급의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생산자와 수산물에 대한 제품 신뢰성을 제고하고 유통구조의 안정성을 고객에게 전달할 때 수산물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급망 시스템을 개발해서 확산하며, 사용자에 대한 정보시스템 교육을 강화 시켜 나간다면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 수산물의 경우 규격의 표준화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수산물가공의 관리감독과 품질인증제품을 중심으로 SCM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물류 정보시스템구축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 3. 시푸드 마케팅

#### 가. 수산업의 기회와 마케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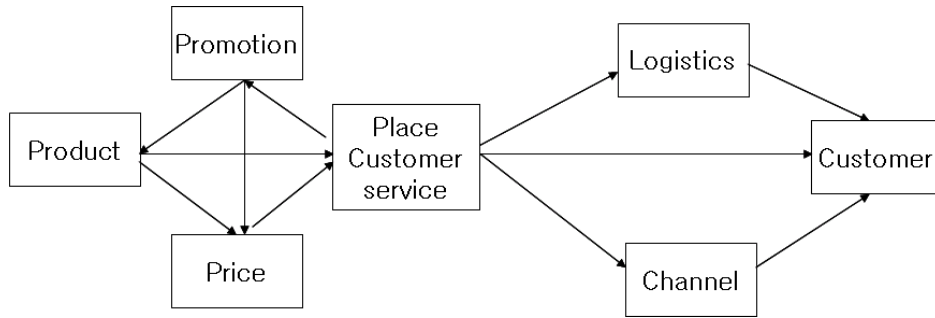
수산물공급에 대한 SCM의 도입으로 공급라인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판매 역시 중요하다. 수산정책이 주로 생산위주로 이루어져 판매 부분은 도매시장이나 장외 도매상 논리에 맡겨져 선진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수산물시장은 국내 생산보다 수입이 증대되면서 어가 감소와 함께 수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증대되고 있다. 수산물시장의 위기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2-8] 수산업의 위기와 기회

	진행 과정	결과에 대한 예측
수산업 위기	생산<수입 어가 감소 생산원가 상승(원료, 인건비) 3D업종으로 전락 기존 R&D의 미성숙 고령화 진행	자금축적의 어려움으로 영세기업 및 어업경영의 경영부실 거대수입자본 및 유통자본의 시장지배가능성 지역생산시설의 공동화 현상 생산보다 유통 소비 시장의 지배력 강화 외국Brand와 자본의 경영논리에 의해 시장지배력 상실 정부정책의 한계(가격 등에 대한 조정능력 상실) 저급 수산물 유통으로 국민식생활과 건강수준 하락
수산업 기회	R&D에 집중 수산물 시장 확대 Global수출 어가의 생산성 증대 수산식품물류산업의 확대 경영의 효율적인 조직구조와 정부지원	국내수산물의 고급화로 원가 상승률 상쇄 Global생산과 판매 체계 구축 Sea Food-valley형성 어가경영의 조직화된 기업경영화 실현 선진화된 수산물류시스템 구축

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산물시장 확대가 필수적이다.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 그림과 같이 생산된 제품을 물류(Logistic)와 다양한 판매채널(Channel)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수준을 향상시켜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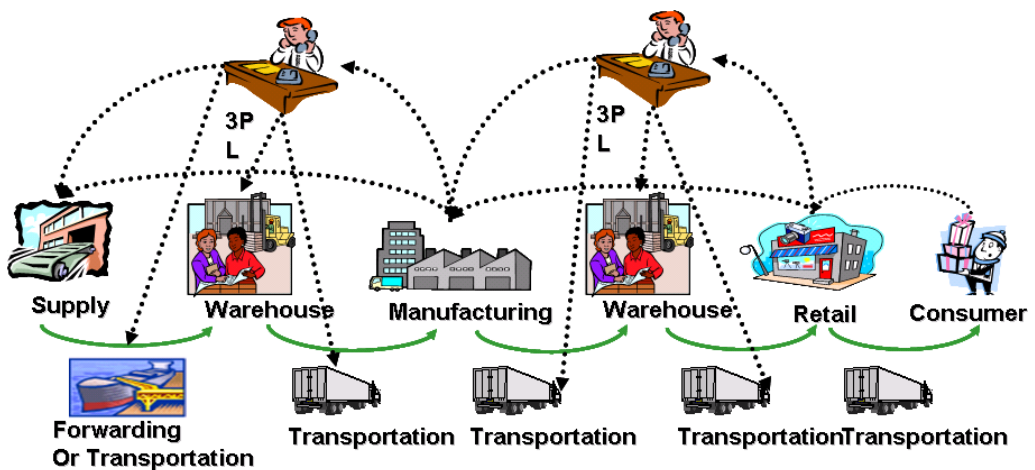


[그림 6-2-11] 수산물 마케팅 전략도

### 나. 제3자 수산 물류 기업의 육성

다양한 공급자와 제조업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소비자 선택이 어려워지고 가격경쟁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수익을 보장받기 어려운 현재의 경영환경에서 물류중심의 경영화두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수산물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앞장에서 수산물 SCM시스템의 구축으로 산지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제품화해서 소비자에게 안정되며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한 물류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게 만든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물류전문기업을 3자물류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수협이나 수산물창고시설, 운송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전문 3PL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림 6-2-12] 3PL 개념도

제 6 장



### 다. 다양한 판매 채널개발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수산물의 경우 그동안 정해진 패턴에서 새로운 모델을 추구하고 있지만, 제품의 특성상 신선도와 활어를 취급해야하는 제약으로 그동안 일반 식품관련 제품보다 시장접근성이 떨어지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마케팅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같은 측면은 반대로 수산물에 대한 개척 가능한 시장이 많이 남아 있다는 긍정적인 내용도 포함한다. 실제 현재의 시장장악능력(Market Coverage)을 10-20%만 향상 시킬 수 있다면 수산물 소비는 7-15%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중심으로 접근이 가능한 다양한 판매채널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수산물 시장은 크게 기존재래시장을 통한 수산물수요, 대형 유통점을 통한 수요, 식품전문회사를 통한 수요, 외식산업을 통한 수산물식자재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표 6-2-9]는 수산물 시장에 따른 수요 내용 및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표 6-2-9] 수산물 시장 구분

수산물 수요	수요 내용	특징	비고
재래시장	산지 직거래, 재래시장 상인	정확한 판매 내용 파악 어려움	규모가 크지 않고 수산물 정책에서 제외
대형 유통 판매점	백화점, 할인점, 전문점, 도소매점	소비자 직접 마케팅	소비자가 제품 확인 고급품, 국내산, 수입산
수산식품 전문회사	단체급식	오피스, 관공서, 산업체, 학교(초, 중, 고, 대학교), 병원	대기업의 자본과 경영참여 (시장지배, 사업다각화 : 식자재물류)
외식산업	패스트푸드, 패밀리레스토랑, 프렌차이즈 식당	수산물 식자재 일부사용	원가절감을 위해 수입수산물 많이 사용
	푸드서비스업체(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수산 전문점(씨푸드레스토랑)	웰빙 건강관심고조 붐	시장개척과 시장확대

소비자 수요 패턴중심으로 수산물 소비 규모 분석이 가능하며 각각에 대한 마케팅과 판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이들 부분의 마케팅 전략을 정리하고 있다.

#### 1) 재래시장 수요

재래시장에 대한 고객 점점 확대 전략으로 이는 기존의 상인과 상점을 수산물 판매전문점으로 승격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표 6-2-10] 재래시장 수요 확대 전략

수산물 수요 형태	수요 내용	주요 특징
재래시장 수요	산지 직거래, 재래시장 상인	정확한 판매 내용 파악 어려움, 고객과 1차적인 접근가능하고 숫자가 많다.
판매확대 전략	판매점 전문화시킴 → 기존시장상인 ↳ 전문 판매점 등록하게 지원(교육과 시설 지원) ↳ 신선제품 판매점에 판매지원(기존 판매 채널 활용)	

## 2) 대형 유통 판매점

대형 유통 판매점 형태의 수산물시장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여 구매하기에 제품의 품질과 가격을 직접 비교 선택할 수 있다. 수산물의 전체 소비 확대와 같은 점진적인 수요 확대가 가능한 시장이다.

[표 6-2-11] 대형 유통 판매점 수요 확대 전략

수산물 수요 형태	수요 내용	주요 특징
대형 유통 판매점	백화점, 할인점, 전문점, 도소매점	제품형태로 진열해서 소비자 직접 마케팅, 소비자가 제품 확인, 고급품, 국내산, 수입산 선택 → 생산자와 유통업체에서 초기 시장진입을 위해 브랜드와 제품화 작업을 진행
판매 확대 전략	판매자의 선별작업과 매장에서의 소비구조에 의해 조정되기에 수산물에 대한 자체 마케팅활동 강화로 판매를 확대할 수 있지만, 국민의 식생활 소비패턴의 변화에 의한 수산물 소비 트렌드 홍보가 필요하다. → well-being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 ↳ 수산물 이력제 도입 ↳ 수산가공에 대한 R&D 강화	

## 3) 수산식품전문회사

수산물 식재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집과 직접 소비자에 전달하는 대규모의 식품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일반 소비시장만을 통한 수산물 시장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일반 소비시장은 유통구조의 불안정성과 소비의 탄력성이 매우 적기 때문이며, 점진적으로 소비규모의 감소 현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전문회사들은 수산물의 안정성과 소비자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직적인 역할을 담당하기에 식재료 수급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산식품전문회사를 육성하여 대형수요자를 만족시키는 전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수산식품전문회사는 수산식자재 가공 유통, 외산산업진출, 단체급식 등으로 구분된다.



[표 6-2-12] 수산식품전문회사 수요 확대 전략

수산물 수요 형태	수요 내용	주요 특징
식품전문회사	단체급식	오피스, 관공서, 산업체, 학교(초, 중, 고, 대학교), 병원 대기업의 자본과 경영참여(시장지배, 사업다각화: 식자재물류)
판매 확대 전략	삼성 에버랜드, 아워홈, CJ푸드시스템, 현대푸드시스템, 신세계푸드시스템 등 상위 업체들이 수산물식자재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수산식품전문회사 지원 → 최종수요자의 수산물 선택 → 수산물 소비 확대 ↳ 수산제품의 규격화로 경쟁력 향상 → 국산수산물 구입확대 ↳ 품질과 가격 경쟁력 ↳ 구매시스템과 연동(B2B지원)	

#### 4) 외식산업의 수산물 수요

최근에 증가하는 외식산업에 대한 수산물 식재료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표 6-2-13] 외식산업 수요 확대 전략

수산물 수요 형태	수요 내용	주요 특징
외식산업	패스트푸드, 패밀리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식당	수산물 식자재 일부사용, 가공식품 선호 원가절감을 위해 수입수산물 많이 사용
	푸드서비스업체(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수산물 식자재 일부사용, 조리의 간편성을 요구
	수산 전문점 (씨푸드 레스토랑)	‘외식 열풍’에 영향 받아 해산물 요리 전문점이 급속도로 확대됨. 가맹점 숫자를 지역별로 증대시켜 수산물소비를 촉진시킴. 대표적인 레스토랑: 아시안키친의 토다이, CJ푸드빌의 씨푸드오션, 치킨점 BBQ의 제너시스 오션스타, 마리스꼬, 신세계푸드의 보노보노, 마키노 차야, 군산회집의 로하스뱅크, 일본 식자재 유통회사의 가토키치, 미나도, 무스쿠스-원가 비율은 판매 금액의 40% 이상(신선한 식재료를 공급 → 원가 비중이 수익의 45~50%)
주요 판매 확대 전략	웰빙 건강 관심 고조, 시장개척과 시장확대(국내 생산자들과 가격, 품질면을 협의하여 국산을 사용하도록 지원), 간편 요리 방법을 개발, 식자재 원료 공급물류체계 구축 ↳ 외식산업에서 사용되는 식자재에서 수산물 비율 증대(현재 10% → 30% 이상) ↳ 소비 트렌드 Shift (축산물 → 수산물)	

### 5) 수산물 공급확대 방법

수직적, 수평적 통합(식품회사와 공급업체의 M&A) -Mega carrier등장과 같이 거대 자본의 세계경영, 식품산업의 국가경쟁력(한국음식과 우수성, 식품산업의 열정, 탁월한 인프라, 뛰어난 인적 네트워크, 우수한 인력,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 Food Valley<sup>2)</sup>의 성공신화 창출 등)발휘 한다면 공급량은 충분히 늘어날 것 이다.

특히 식자재 공급부분에서 국내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국내산에 대한 집착을 갖게 하고 소비자 스스로가 국내산을 찾도록 지원하면 되는 것이다. 국내 생산 가공 공급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대형 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여 인정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한우에 대한 소비자 고집과 높은 가격유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특히 농가의 사육단계에서 생산 유통단계 전체의 이력제를 도입하여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수산물이력제도가 추진 시행되고 있고 이것이 활성화 된다면 우수 수산물에 대한 국내 생산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6-2-14] 한우 마케팅

한우의 높은 가격 유지 이유	맛,안정성,희소성,유통방식,시장세분화,등급제,판매자 능력(시설, 인적자원, 홍보 등)
한우의 생산과 유통과정	한우가격↑ → 한우 생산농가 증대 → 한우 생산량 증가 → 국민소비증대로 가격 비탄력성 유지, 물류비용감소(중간물류비용이 농가에 대한 실질소득 증대부분으로 연결)

### 6) 추진전략사업

추진전략사업은 크게 SCM 구축, 수산물 영업확대, Sea Food-Valley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SCM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기초용역 및 시스템 설계를 실시하고, 부분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TFT를 가동한다. 또한 수산물 영업확대를 위해서는 채널판매시스템 구축, e-Marketplace, 전략적인 파트너십 구축, 공동브랜드 개발, 수산물 가공 R&D, 수산물 제품관리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Sea Food-Valley 사업을 위해서는 수산업 클러스터 구축, Mega-Food Enterpriser 지원, 수산업 벤처, M&A 정책의 추진 등이 필요하다.

2) 실리콘벨리와 유사하게 네덜란드 식품산업, 바헤닝엔대학을 중심으로 식품 연구개발에 필요한 각종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이 모여 식품관련 산업단지로 발전.



[표 6-2-15] 추진전략사업

사 업 명
○ SCM 구축
- 기초 용역, 시스템 설계
- 시스템 개발
- TFT 가동(부분별 전문가)
○ 수산물 영업 확대
- 채널판매시스템 구축
- e-Marketplace
- 전략적인 파트너십 구축
- 공동브랜드 개발
- 수산물 가공 R&D
- 수산물 제품관리 강화
○ Sea Food-Valley사업
- 수산산업 clustering 구축
- Mega-Food Enterpriser 지원
- 수산업벤처, M&A정책 추진

## 제3절 수산가공업 현황 및 발전 방안

### 1. 수산가공품의 생산 현황

#### 가. 수산가공품 생산추이

2005년도 우리나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전년(2,519천 톤)보다 7.7%(195천 톤) 증가된 2,713천 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수면 어업을 제외한 연근해, 양식 및 원양어업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에 기인된다[표 6-3-1].

2005년도 연근해어업(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은 1,097천 톤으로 전년도 (1,077천 톤)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우리나라 수산물 총생산량 2,714천 톤 중 40.4%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어업으로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체 수(허가건수)는 2005년도 96,032개로서 전년(97,153개)에 비해 1.2%(1,121개)가 감소되었고, 이중 생산량의 비중이 큰 근해어업의 경영체는 2005년에 4,359개로, 전년(4,467개)에 비해 2.4%(108개)가 어선감척 등으로 감소되었으나, 전체 생산량과 경영체당 생산량은 전년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업별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져 경영체의 감소율이 높은 업종의 경우는 단위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5년도 원양어업 생산량은 참치 연승어업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콩치붕수망 및 오징어채낚기 어업의 어획 호전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한 552천 톤을 생산하였다.

[표 6-3-1] 어업생산 현황

(단위 : 톤)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근해어업	1,189,000	1,252,098	1,095,787	1,096,473	1,076,687	1,097,016
양식어업	653,373	655,827	781,544	826,298	917,715	1,041,058
내수면어업	20,585	18,141	18,511	19,680	25,299	23,738
원양어업	651,267	739,057	580,346	544,591	499,400	552,096
계	2,514,225	2,665,123	2,476,188	2,487,042	2,519,101	2,713,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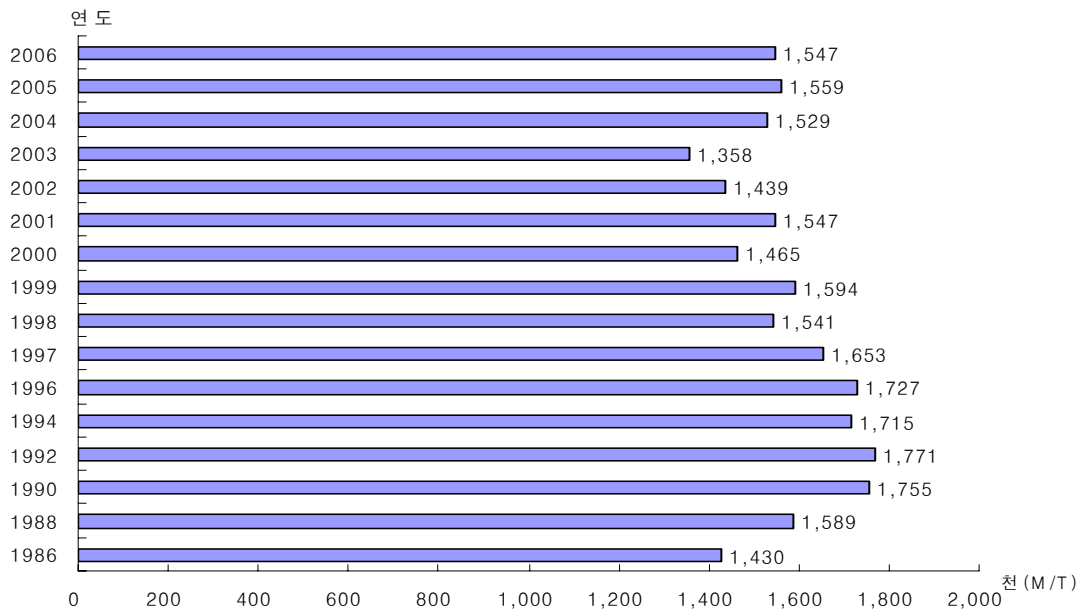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부, 2005 어업생산통계



2005년도 수산물 가공제품생산은 1,559천 톤으로 전년도의 1,529천 톤 대비 2% 증가하였으나, 2006년 가공품 생산량은 1,547천 톤으로 2005년 1,559천 톤 대비 0.8% 감소하였다[그림 6-3-1].

2006년 증가추세를 보인 가공품은 소건품, 염건품, 염장품, 통조림, 냉동품, 조미가공품이다. 염건품은 2005년(1,337톤) 대비 817%나 증가하였다. 전년도 대비 소건품은 10%, 염장품은 36%, 통조림은 8%, 냉동품은 1% 증가하였다[표 6-3-2].

2005년 대비 2006년 생산량 감소추세를 보인 가공품은 기타가공품으로 57%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자건품 6%, 연신품 5%, 해조제품 12%, 한천 26%, 연제품 22%, 조미가공품 1% 감소하였다.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통계연보, 각년호

[그림 6-3-1] 수산가공품 생산량 추이



[표 6-3-2] 품종별 수산 가공품 생산량

(단위 : M/T)

연도	소건품	염건품	자건품	염장품	염신품	통조림	냉동품	해조제품	한천	연제품	조미가공품	어유분	수산피해품	기타	계
1986	27,380	35	25,387	653	20,469	26,298	1,064,333	66,666	665	73,231	31,099	86,406	-	7,323	1,429,945
1988	13,525	87	23,188	847	19,018	43,099	1,217,582	63,924	566	94,852	28,706	73,282	-	10,677	1,589,353
1990	13,413	580	17,909	1,191	19,511	58,026	1,320,277	88,437	628	96,833	30,935	94,854	-	12,293	1,754,887
1992	10,078	650	22,989	295	16,403	55,533	1,350,793	134,887	468	93,378	13,459	64,252	-	8,102	1,771,287
1994	14,694	1,191	24,473	95	10,594	63,899	1,301,482	117,376	393	108,717	12,278	47,729	-	11,590	1,714,511
1996	42,426	2,742	40,008	775	20,349	61,902	1,265,190	88,657	563	115,808	12,265	50,716	-	26,096	1,727,497
1997	29,439	494	41,438	290	24,044	63,816	1,238,135	47,233	358	135,294	6,953	42,556	-	23,292	1,653,342
1998	17,702	700	39,653	520	42,834	48,140	1,110,160	92,375	639	121,480	6,466	50,700	-	9,880	1,541,249
1999	14,007	533	21,809	2,728	60,670	42,796	1,179,024	100,936	365	108,443	8,072	45,361	-	9,281	1,594,025
2000	17,078	416	16,300	157	56,974	50,404	1,042,648	47,662	961	166,682	14,532	37,732	-	13,546	1,465,092
2001	24,126	579	20,659	472	47,604	80,569	1,128,026	79,732	361	94,079	17,250	36,013	6	17,363	1,546,839
2002	18,402	332	23,280	3,665	38,933	83,043	996,482	82,946	397	87,015	19,343	19,843	141	64,855	1,438,677
2003	9,280	237	17,207	1,388	35,993	80,608	1,030,184	28,511	347	91,121	21,501	13,924	427	26,989	1,357,717
2004	13,976	763	37,614	1,967	32,659	159,638	1,053,077	71,265	458	96,581	22,486	8,797	938	28,576	1,528,795
2005	21,692	1,337	35,314	3,686	39,848	138,585	1,023,081	153,597	443	88,290	19,759	11,739	1,824	20,006	1,559,201
2006	23,837	12,258	33,164	5,006	37,992	149,487	1,033,060	135,668	329	69,350	19,500	7,618	794	18,721	1,546,784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개년보 1998~2006

- ① 냉동제품 : 원형동결=오징어+명태+가자미+고등어+대구+조기+꽁치+갈치+전갱이+새우+삼치+정어리+병어+복어+무새+낙지+꽃게+가리  
 처리동결=갈오징어+새우+불정어+명태+연육+새조개+굴+바지락+홍합+가리
- ② 통조림품=꽁치+정어리+고등어+굴+멸치+홍합+바지락+참치+가리
- ③ 연제품=박살+어묵+새치+튀김어묵+전어묵+구운어묵+가리
- ④ 소건품=오징어+명태+새우+삼치+문어(백치)+가리
- ⑤ 염건품=조기묵+가리
- ⑥ 자건품=굴+멸치+새우+가리
- ⑦ 해조식품=마른김+김미역+명동미역+다시마+푹+가시리류+해조류+가리
- ⑧ 한천=심한천+가리+루한천+가리
- ⑨ 조미가공품=조미김+조미오징어+조미쥐꼬리+조미명태+가리
- ⑩ 어유분=아징어유+가리+아간유+어분+비
- ⑪ 명상품=고등어+장어+멸+가리
- ⑫ 염신품=멸치+새우+정어+조개+굴(머리굴전)+성게+전+명란전+장란전+황색어젓+가리
- ⑬ 기타가공품
- ⑭ 원양제품(냉동품)=원형동결(명태+참치+태오징어+가리)+처리동결(명란+어유분)



소건품은 2005년 21,692 톤으로 2004년 13,976 톤 대비 18% 증가하였다. 주요 품목으로 2005년 명태가 전체 소건품의 6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오징어 19%, 새우 6%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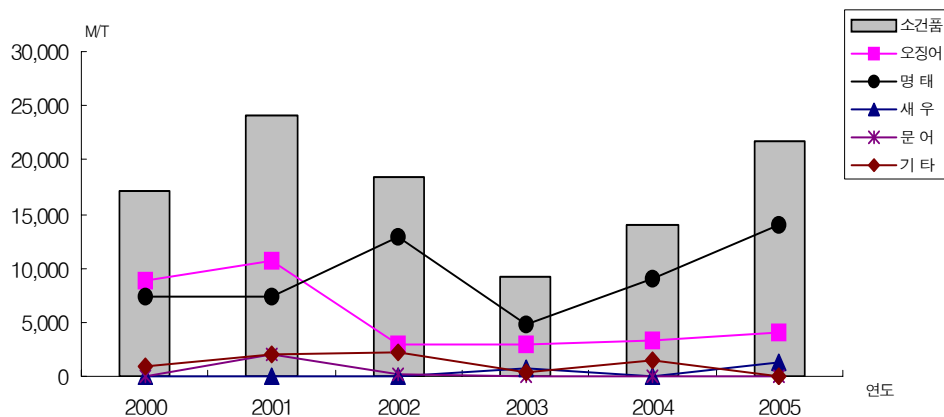
2002년을 기점으로 소건품 주생산 품목은 오징어에서 명태로 전환되면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표 6-3-3] 소건품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단위 : M/T)

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계	17,078	24,126	18,379	9,280	13,976	21,692
오징어	8,780	10,738	3,009	2,907	3,401	4,018
명태	7,300	7,275	12,927	4,731	9,069	13,945
새우	60	52	27	658	28	1,322
문어	5	2,053	135	0	0	0
기타	890	1,979	2,233	418	1,478	0

주 : 주요 품목으로만 구성하여 합계는 맞지 않으나 아래의 모든 품목의 합계가 위와 같음  
 자료 : 수산통계연보, 해양수산부, 이차 동일 별도 표기하지 않음



[그림 6-3-2] 소건품의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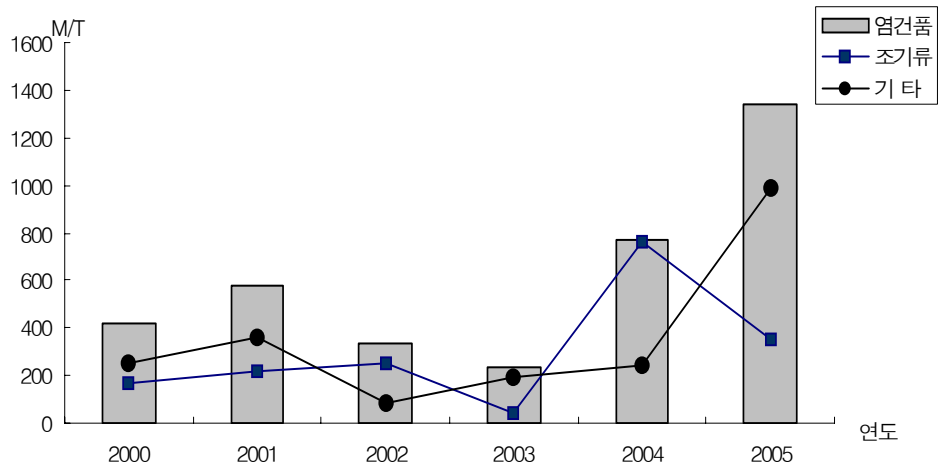
염건품은 2005년 1,337 톤으로 전년도 768톤 대비 74% 증가하였으며, 2003년을 기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주요 품목으로 조기가 전년도 대비 54% 감소하였고, 기타가 전년도 대비 299% 증가하면서 품목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3-4] 염건품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단위 : M/T)

연 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416	579	332	237	768	1,337
조기류	168	221	252	42	763	352
기 타	248	358	80	195	247	985



[그림 6-3-3] 염건품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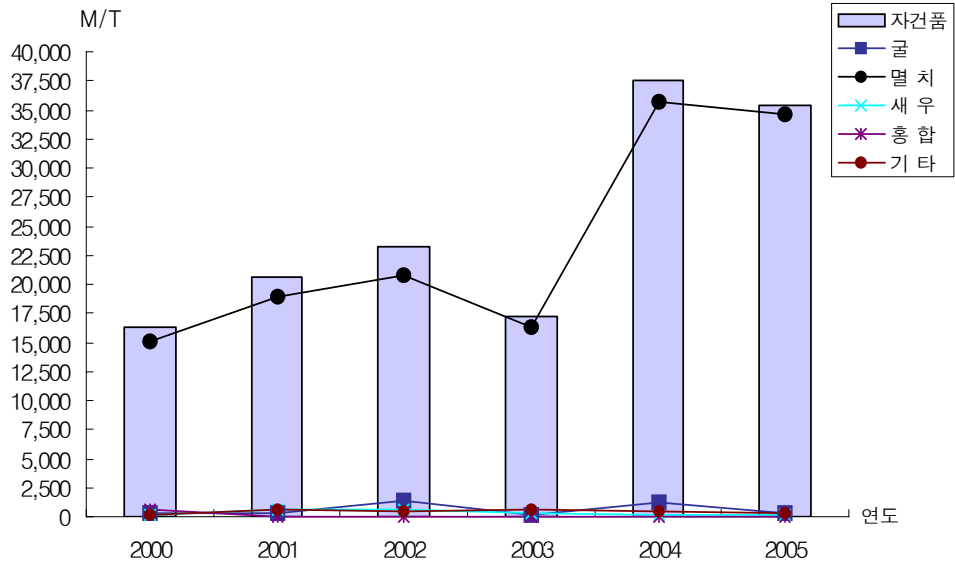
자건품은 2005년 35,314 톤으로 전년도 37,614톤 대비 6%가 감소하였다. 품목은 멸치 가공품이나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2004년에 비해 굴이 79%로 가장 많이 줄었고 대부분이 2004년에 비해 생산이 줄었다. 반면 새우는 24%로 증가하였다. 자건품은 멸치가 여전히 주요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표 6-3-5] 자건품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단위 : M/T)

연 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16,300	20,659	23,280	17,207	37,614	35,314
굴	361	384	1,368	82	1,236	260
멸 치	15,132	18,944	20,836	16,237	35,754	34,569
새 우	147	652	682	244	161	200
홍 합	547	-	-	-	-	-
기 타	113	679	394	644	463	285

주 : 자건품에서 홍합은 2001년 이후로 데이터에서 없음



[그림 6-3-4] 자건품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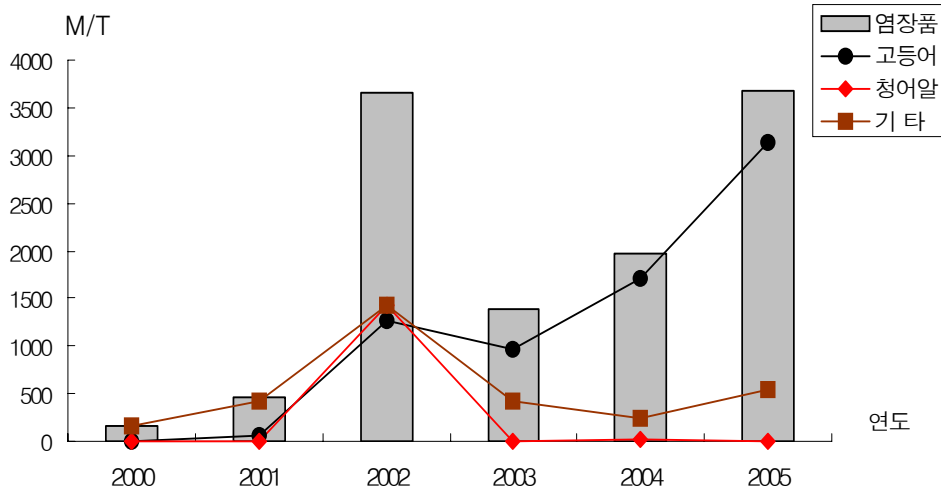
염장품은 국내원료생산의 상황에 따라 상당한 변동을 나타내는 가공품이다. 염장품은 2005년 3,686톤으로 전년도 1,976 톤 대비 87%가 증가하였다. 주요 품목은 고등어로 2004년에 비해 84% 증가하였고, 기타가 122% 증가하였다.

염장품은 과거 청어알과 같은 수출가공품에서 국내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하는 고등어 염장 생산으로 크게 전환되었다.

[표 6-3-6] 염장품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단위 : M/T)

연 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157	472	3,665	1,388	1,967	3,686
고등어	1	57	1,262	964	1,709	3,140
청어알	-	1	1,431	0	12	0
기 타	156	414	1,431	424	246	546



[그림 6-3-5] 염장품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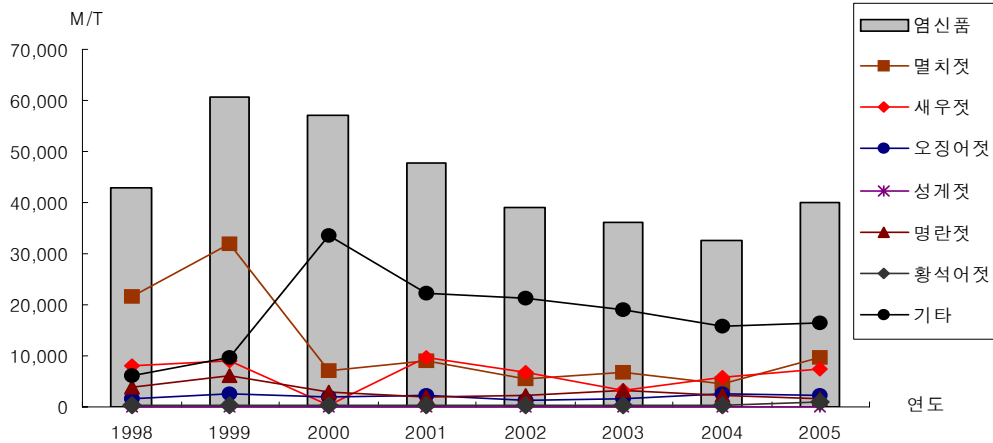
염신품은 2000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은 39,848 톤으로 전년도 32,659 톤 대비 22% 약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변화 원인으로는 황석어젓이 237% 증가, 멸치젓이 114%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게젓과 명란젓은 각각 52%, 33% 감소하였다.

염신품은 전통 젓갈인 멸치젓, 새우젓과 수출품인 명란젓, 성게젓이 후퇴하고 오징어젓이 증가하고 있다.

[표 6-3-7] 염신품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단위 : M/T)

연 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42,834	60,670	56,974	47,604	38,933	35,993	32,659	39,848
멸치젓	21,652	31,951	7,028	8,967	5,590	6,628	4,550	9,754
새우젓	8,185	8,967	237	9,738	6,844	3,230	5,675	7,553
오징어젓	1,632	2,602	1,968	2,311	1,285	1,542	2,451	2,414
성게젓	58	-	103	92	71	59	126	61
명란젓	3,804	6,048	2,759	2,051	2,361	3,093	2,315	1,544
황석어젓	215	379	356	355	177	272	247	833
기타	6,111	9,739	33,621	22,252	21,141	19,149	15,866	16,522



[그림 6-3-6] 염신품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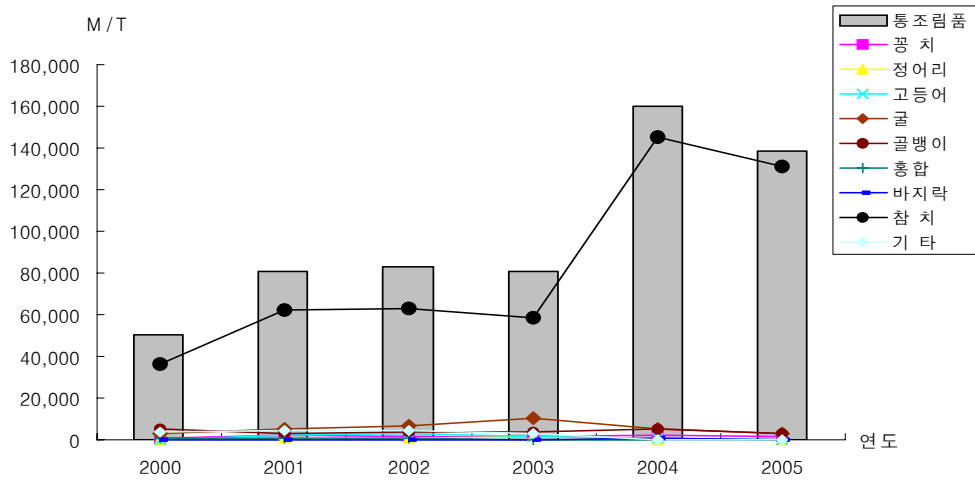
통조림은 전체적인 성장 추세이다.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참치통조림으로 2000년의 36,087 톤에서 2005년의 130,862 톤으로 약 100만톤에 상응하는 증가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갈치, 정어리, 고등어, 굴, 골뱅이 등은 정체 내지는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

통조림은 저가격 수산물 원료 가공품은 정체 내지는 하락하고 참치와 같은 고가격 가공품이 증가하여 왔다.

[표 6-3-8] 통조림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단위 : M/T)

연 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50,404	80,569	83,043	80,608	159,638	138,585
꽁 치	869	2,534	1,624	1,714	2,487	1,758
정어리	5	402	498	1,565	0	0
고등어	355	2,480	2,733	1,285	956	53
굴	3,189	5,202	6,983	10,516	5,441	2,930
골뱅이	5,435	2,960	3,429	4,051	5,157	2,688
홍합	818	440	584	54	72	101
바지락	44	135	42	0	397	193
참 치	36,087	62,186	63,042	58,301	145,018	130,862
기 타	3,602	4,230	4,108	3,122	110	0



[그림 6-3-7] 통조림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해조식품은 2005년 154 천톤으로 전년도 71천톤에 대비 116% 증가하였다. 주요품목으로 엽장미역이 2005년/2004년 대비 764%로 75 천톤 증가하였다. 건미역이 166%, 마른김 33%로 미역과 김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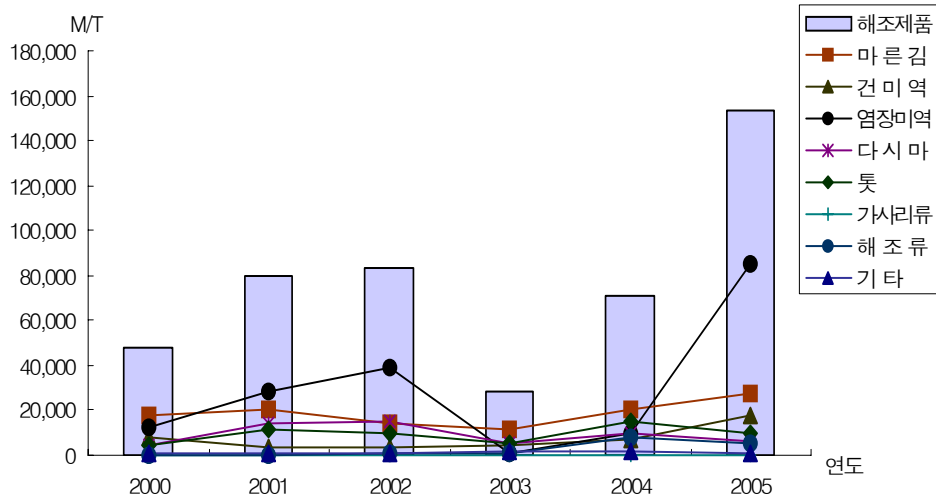
해조제품은 근년 웰빙과 건강지향에 따른 식품소비 트렌드로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6-3-9] 해조제품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단위 : M/T)

연 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b>합 계</b>	<b>47,662</b>	<b>79,732</b>	<b>82,946</b>	<b>28,511</b>	<b>71,265</b>	<b>153,597</b>
마 른 김	18,099	20,318	14,009	11,133	20,377	27,055
건 미 역	7,657	3,833	3,927	4,193	6,830	18,144
엽장미역	12,076	28,027	38,901	672	9,855	85,153
다 시 마	4,534	14,593	14,758	4,945	9,332	6,518
툇	4,472	11,707	9,630	5,270	15,107	10,184
가사리류	48	36	7	67	128	132
해 조 류	166	152	586	593	7,811	5,258
기 타	610	1,066	1,128	1,638	1,825	1,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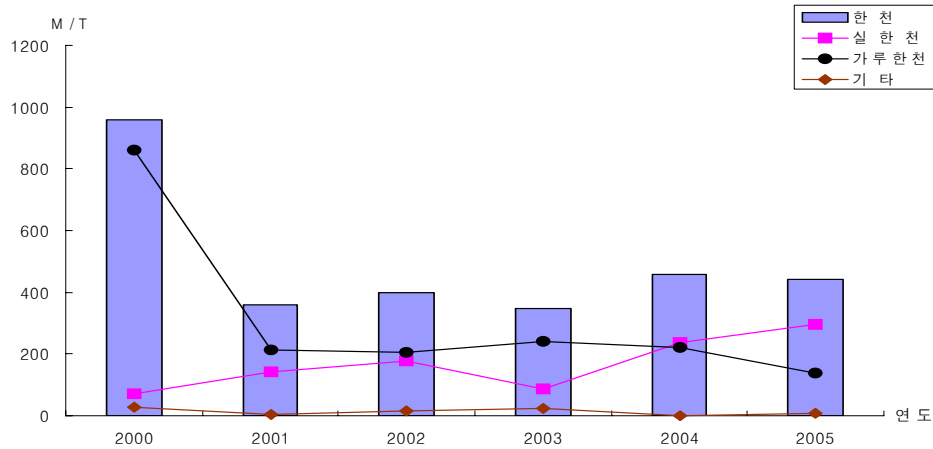
[그림 6-3-8] 해조식품의 변화추이

한천은 2005년 443톤으로 전년도 458톤으로 3% 감소하였다. 주요 원인으로서는 가루한천이 36% 감소하였다.

[표 6-3-10] 한천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단위 : M/T)

연 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961	361	397	347	458	443
실 한 천	72	144	177	86	238	296
가루한천	861	212	206	239	220	140
기 타	28	5	14	22	0	7



[그림 6-3-9] 한천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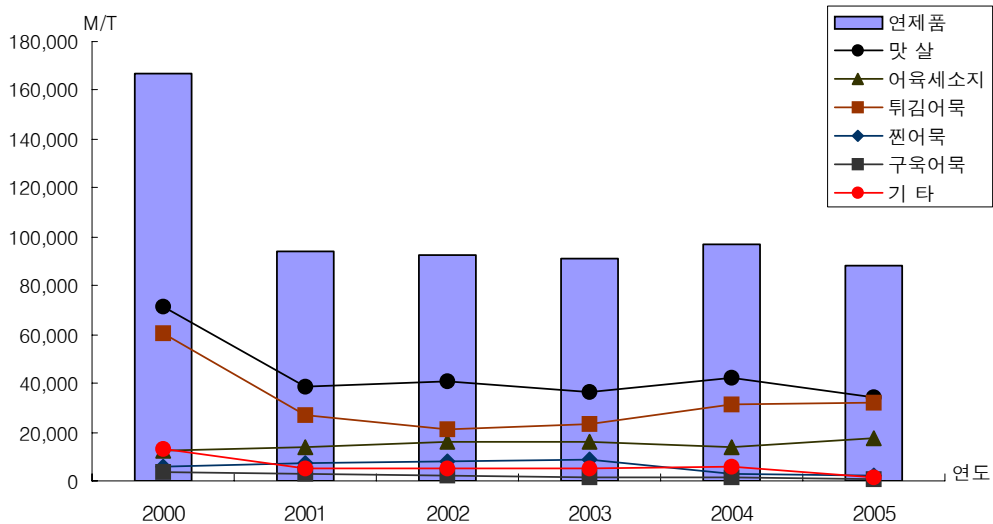
연제품은 2005년 88천톤으로 전년도 97천톤으로 9% 감소하였다. 주 요인으로는 기타가 2005년/2004년 대비 71%, 구운어묵이 47%, 맛살 18%, 찐어묵이 14% 감소하였다.

연제품은 2005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 정체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맛살, 튀김어묵, 어묵은 소비 한계에 달하고 있고 어묵소세지와 같은 신제품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표 6-3-11] 연제품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단위 : M/T)

연 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166,682	94,079	92,271	91,121	96,581	88,290
맛 살	71,574	38,494	40,762	36,263	41,915	34,265
어육소세지	12,461	13,924	15,765	16,111	13,524	17,365
튀김어묵	60,330	26,718	20,872	23,438	31,174	31,794
찐어묵	5,718	7,262	7,847	8,875	2,906	2,509
구운어묵	3,619	2,672	1,989	1,198	1,395	737
기 타	12,980	5,009	5,036	5,236	5,667	1,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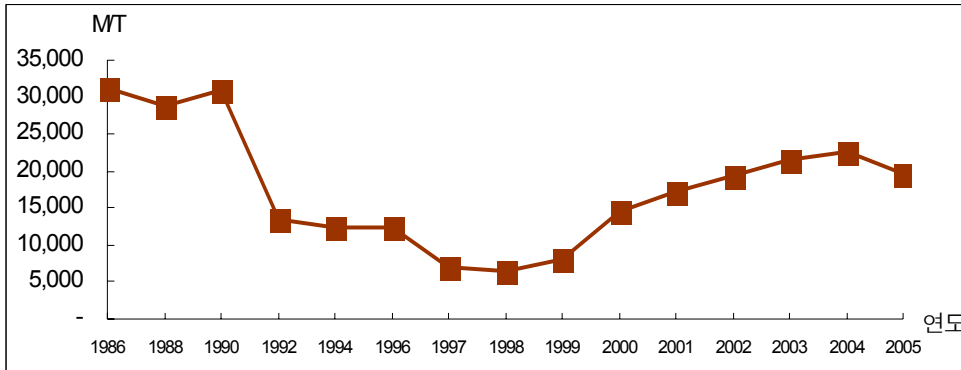
[그림 6-3-10] 연제품 변화량 추이

조미가공품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에는 20천톤으로 전년도 22천톤 대비 12% 감소하였다.

주 원인으로는 조미오징어가 2005년/2004년 대비 3,741톤 감소하면서 25% 감소하였다. 그 밖에도 기타가 16% 감소하였다. 반면에 조미명태포가 86%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조미가공품은 조미취치포가 감소한 반면 조미김, 조미오징어, 조미명태포가 증가하면서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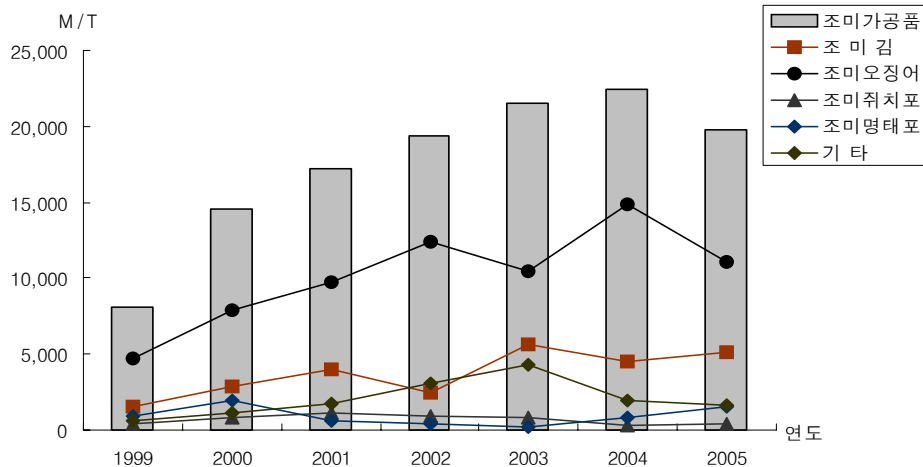


[그림 6-3-11] 조미가공품

[표 6-3-12] 조미가공품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단위 : M/T)

연 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b>합 계</b>	<b>8,072</b>	<b>14,532</b>	<b>17,250</b>	<b>19,343</b>	<b>21,501</b>	<b>22,486</b>	<b>19,759</b>
조 미 김	1,546	2,842	4,037	2,412	5,680	4,529	5,091
조미오징어	4,692	7,869	9,691	12,445	10,455	14,857	11,116
조미취치포	362	808	1,146	957	790	355	385
조미명태포	874	1,899	598	443	238	842	1,565
기 타	598	1,114	1,778	3,086	4,338	1,903	1,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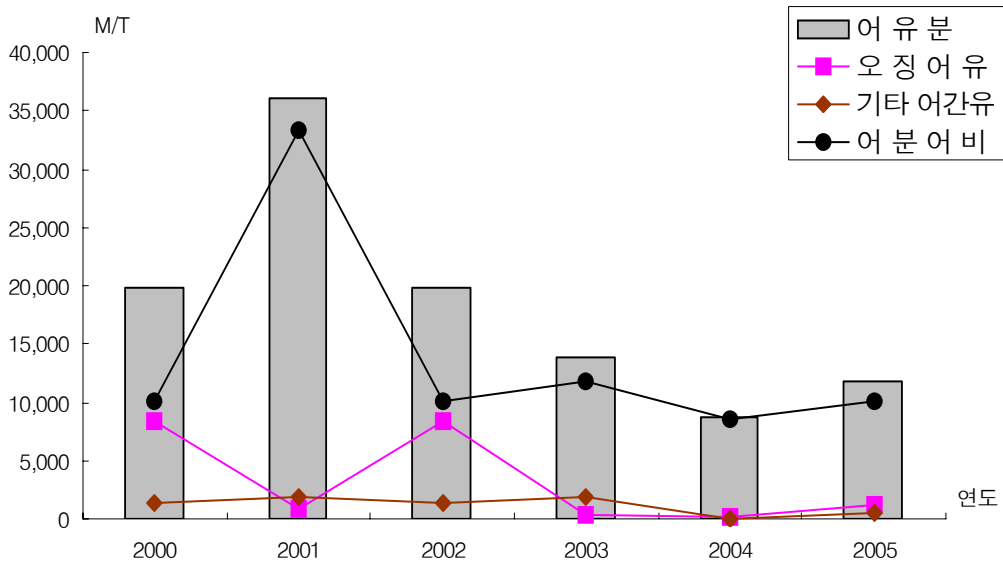
[그림 6-3-12] 조미 가공품 변화량 추이

어유분은 2005년 11천톤으로 전년도 8천톤에 비해 33% 증가하였다. 주 요인으로는 기타 어간유가 2004년에 99% 감소하였다가 2005년에 다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해어업에서 오징어 생산량의 증가로 오징어유가 447% 증가하였다. 어분어비는 전년도 대비 18% 증가하였다. 하지만 어유분은 전체적으로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표 6-3-13] 어유분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단위 : M/T)

연 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19,843	35,993	19,843	13,924	8,797	11,739
오 징 어 유	8,391	796	8,391	391	214	1,171
기타 어간유	1,310	1,938	1,310	1,811	17	498
어 분 어 비	10,142	33,259	10,142	11,722	8,566	10,070



[그림 6-3-13] 어유분의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기타는 2005년 20천톤으로 전년도 대비 29천톤에 비해 30% 감소하였다. 2003년에 58% 감소를 보인 이후 2005년도까지 20~30천톤을 유지하고 있다.

[표 6-3-14] 기타가공품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단위 : M/T)

연 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기타가공품	13,546	17,363	64,855	26,989	28,567	20,006





냉동품은 2005년도 525천톤으로 전년도 대비 475천톤에 비해 11% 증가하였다. 증가에 주 요인으로 명태가 30%, 오징어는 16%, 참치류는 9%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양 어업의 쇠퇴와 함께 냉동품 생산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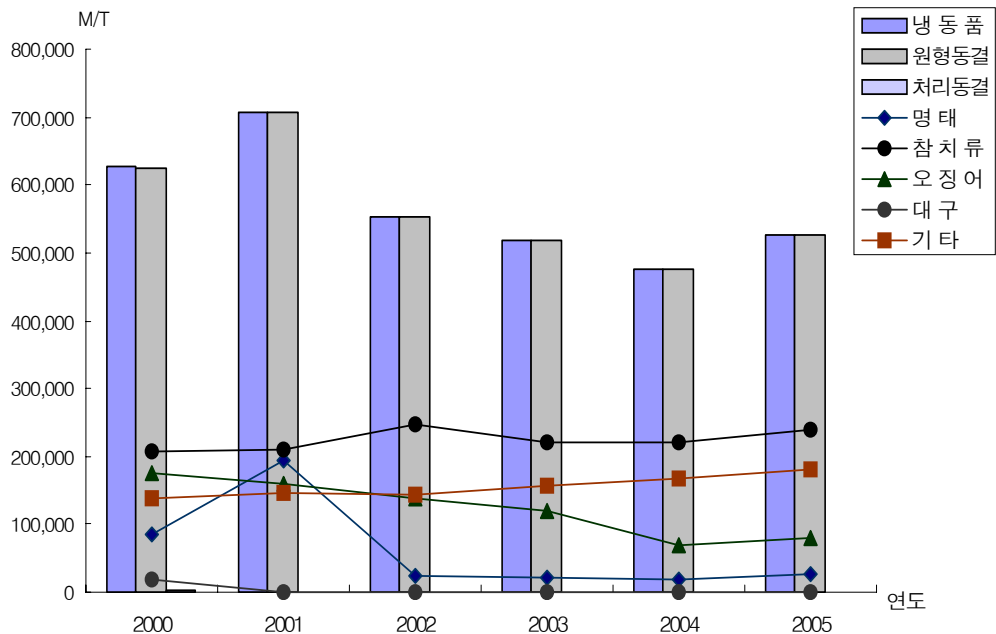
[표 6-3-15] 냉동품 생산의 연도별 변화추이

(단위 : M/T)

연 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628,028	708,207	552,290	518,736	475,093	525,433
원형동결	624,505	708,061	552,290	518,736	475,093	525,433
명 태	84,345	192,711	24,327	21,453	19,598	25,484
참 치 류	207,731	210,537	246,117	219,970	219,534	239,526
오 징 어	174,286	159,831	138,526	119,506	68,600	79,550
대 구	18,958	-	-	-	-	-
기 타	139,185	144,982	143,320	157,807	167,361	180,873
처리동결	3,523	146	0	0	0	0
명 태	-	-	-	-	-	-
연 육	3,327	-	-	-	-	-
명 란	196	146	0	0	0	0
창 란	-	-	-	-	-	-

주 : 냉동품은 원형동결+처리동결

2001년부터 원형동결에서는 대구, 처리동결은 명태, 연육, 창란, 데이터가 없음



[그림 6-3-14] 냉동품의 변화추이

## 2. BCG 매트릭스를 이용한 수산가공품 시장구조

다음은 수산가공품의 시장성장률과 점유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BCG매트릭스를 이용하기로 한다. BCG 매트릭스는 시장-점유율 매트릭스(Growth-Share Matrix)라고 불리운다. 이 방법은 기업외적 요인이 사업부들이 속한 시장의 성장률과 기업내적 요인인 상대적 시장점유율의 관계에 의해 각 사업부들을 평가하고 전략을 제시하여 주는 방법이다.

수직축의 시장성장률(MGR : Market Growth Rate)은 현재 그 사업부가 속한 시장의 연간 성장률을 나타내고 아래와 같이 구해진다.

$$MGR = \frac{S_{t+1} - S_t}{S_t}$$

$S_{t+1}$  = t+1기의 시장전체의 생산량

$S_t$  = t 기의 시장전체의 생산량

시장성장률은 보통 판매성장률(sales growth rate)로서 측정된다. 매트릭스상에서 나타내는 범위는 제일 낮은 시장성장률과 제일 높은 시장 성장률을 포함하면 된다. BCG매트릭스는 보다 높은 성장률을 가진 시장일수록 호의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러한 시장은 그만큼 타기업과의 경쟁 또한 치열한 것이므로 성장률이 높은 시장이 항상 기업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상대적 시장점유율(RMS : Relative Market share)은 그 시장에서 가장 큰 경쟁자의 시장 점유율에 대한 자사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낸 것으로서 아래와 같이 구해진다.

$$S = \frac{MS_i}{MS_c}$$

$MS_i$  = 생산량  $i$ 의 시장점유율

$MS_c$  = 생산량  $i$ 의 가장 큰 경쟁생산량의 시장점유율

[표 6-3-16]은 수산물 수입자유화 이전 기간인 1986년~1996년의 수산가공품의 평균 생산량을 정리한 것이다.

[표 6-3-17]은 수산물 수입 자유화 이후 기간인 1997년~2005년의 수산가공품의 평균 생산량을 정리한 것이다.



[표 6-3-18]은 양기간의 가공품목별 평균 시장 성장률과 상대적 시장 점유율을 계산한 것이다.

[표 6-3-1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수산가공품이 1% 미만의 저조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어유분, 조미가공품, 연제품의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BCG매트릭스는 단순한 두 개의 축으로 현재 사업부들의 상황을 평가하고 전략을 제시하여 주기 때문에 마케팅관리자가 시장상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두 개의 축의 구성요인이 지나치게 단순하여 포괄적이고 정확한 사업부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6-3-15]는 수산가공품 BCG매트릭스를 나타내고 있는데, 수산가공품은 개에 많이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장성장률도 낮으면서 상대적 시장점유율도 낮은 상황에 속하면서 제품수명주기상에서 성장 후기에서 쇠퇴기까지 속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낮은 시장성장률 때문에 그다지 많은 자금의 소요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사업활동에서 얻는 이익도 매우 적은 사업이다.

수산가공업체는 만약 이 사업이 속한 시장의 성장률이 향후 다시 고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시장내에서 자사의 지위나 점유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없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6-3-16]은 [그림 6-3-15]의 수산가공부분을 확대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염장품을 제외하고 1%의 시장성장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연제품 이외에는 개에 몰려 있는데 여기에서 연제품, 통조림, 염신품, 염장품은 약세의 상대적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장기적인 투자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해조제품, 어유분, 소건품, 조미가공품, 기타는 평균값의 변화는 없지만 상대적 시장점유율에서 0.1x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철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장기적인 상품의 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염건품은 조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기가 그해 조기의 어획량과 수입에 따라서 큰 변화를 가지지만 확장영역에서는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개(DOGS)에서 오랜 시간동안 머물고 있는 수산가공품들은 적은 투자로 장기적인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신규투자보다는 현시장에 안주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표 6-3-16] 86년~96년 가공품의 평균(수입자유화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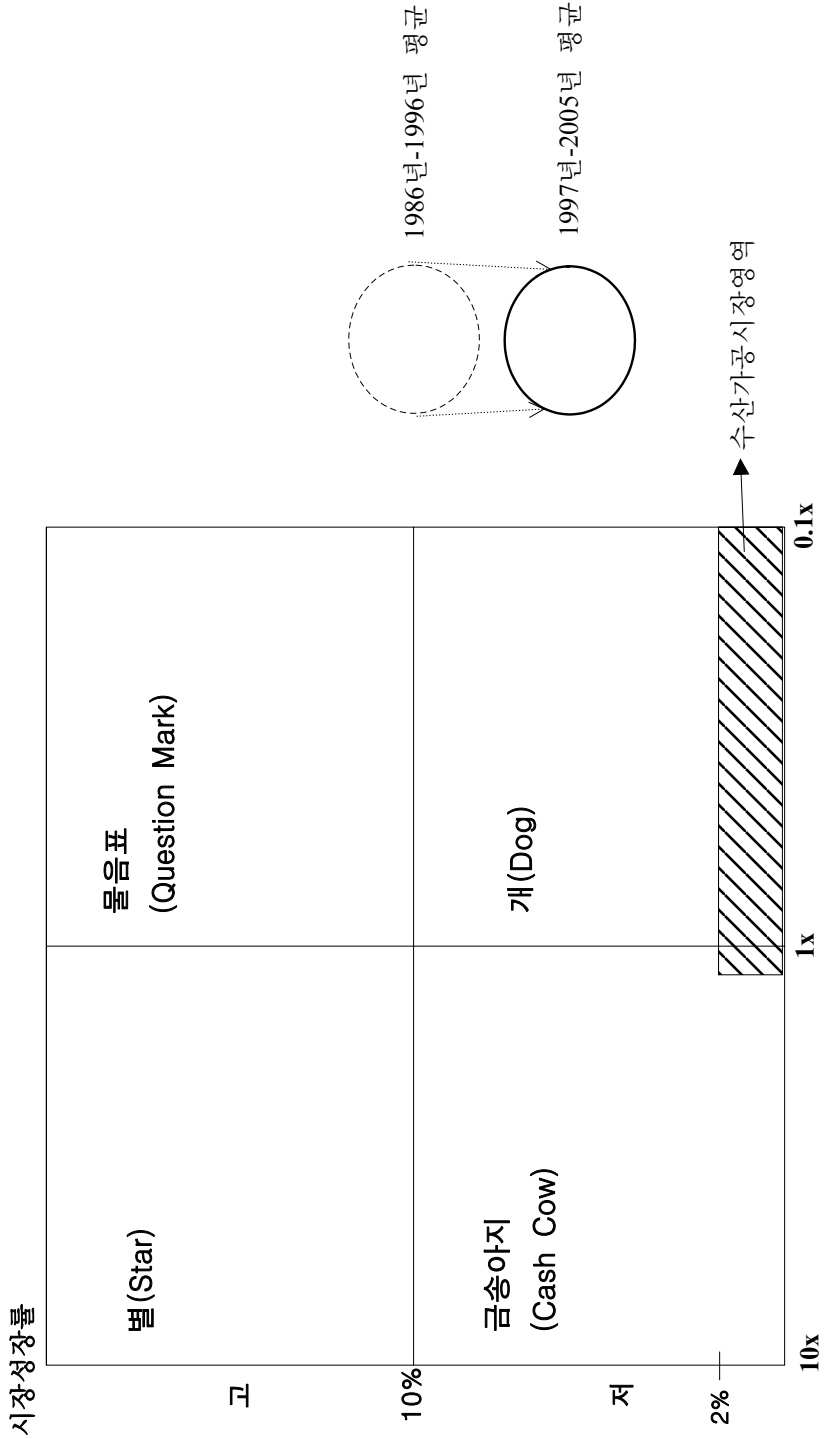
	소건품	염건품	자건품	염장품	염신품	통조림	해조제품	한천	연제품	조미가공품	어유분	기 타	계
1986	27,380	35	25,387	653	20,469	26,298	66,666	665	73,231	31,099	86,406	7,323	365,612
1988	13,525	87	23,188	847	19,018	43,099	63,924	566	94,852	28,706	73,282	10,677	371,771
1990	13,413	580	17,909	1,191	19,511	58,026	88,437	628	96,833	30,935	94,854	12,293	434,610
1992	10,078	650	22,989	295	16,403	55,533	134,887	468	93,378	13,459	64,252	8,102	420,494
1994	14,694	1,191	24,473	95	10,594	63,899	117,376	393	108,717	12,278	47,729	11,590	413,029
1996	42,426	2,742	40,008	775	20,349	61,902	88,657	563	115,808	12,265	50,716	26,096	462,307
평균	20,253	881	25,659	643	17,724	51,460	93,325	547	97,137	21,457	69,540	12,680	411,304

[표 6-3-17] 97년~05년 가공품의 평균(수입자유화 후)

	소건품	염건품	자건품	염장품	염신품	통조림	해조제품	한천	연제품	조미가공품	어유분	기 타	계
1997	29,439	494	41,438	290	24,044	63,816	47,233	358	135,294	6,953	42,556	23,292	1,653,342
1998	17,702	700	39,653	520	42,834	48,140	92,375	639	121,480	6,466	50,700	9,880	1,541,249
1999	14,007	533	21,809	2,728	60,670	42,796	100,936	365	108,443	8,072	45,361	9,281	1,594,025
2000	17,078	416	16,300	157	56,974	50,404	47,662	961	166,682	14,532	37,732	13,546	1,465,092
2001	24,126	579	20,659	472	47,604	80,569	79,732	361	94,079	17,250	36,013	17,363	1,546,839
2002	18,402	332	23,280	3,665	38,933	83,043	82,946	397	87,015	19,343	19,843	141	1,438,677
2003	9,280	237	17,207	1,388	35,993	80,608	28,511	347	91,121	21,501	13,924	427	1,357,717
2004	13,976	763	37,614	1,967	32,659	159,638	71,265	458	96,581	22,486	8,797	938	1,528,795
2005	21,692	1,337	35,314	3,686	39,848	138,585	153,597	443	88,290	19,759	11,739	1,824	1,559,201
평균	18,411	599	28,142	1,653	42,173	83,067	78,251	481	109,887	15,151	29,629	8,521	

[표 6-3-18] 수산 가공품의 시장성장과 상대적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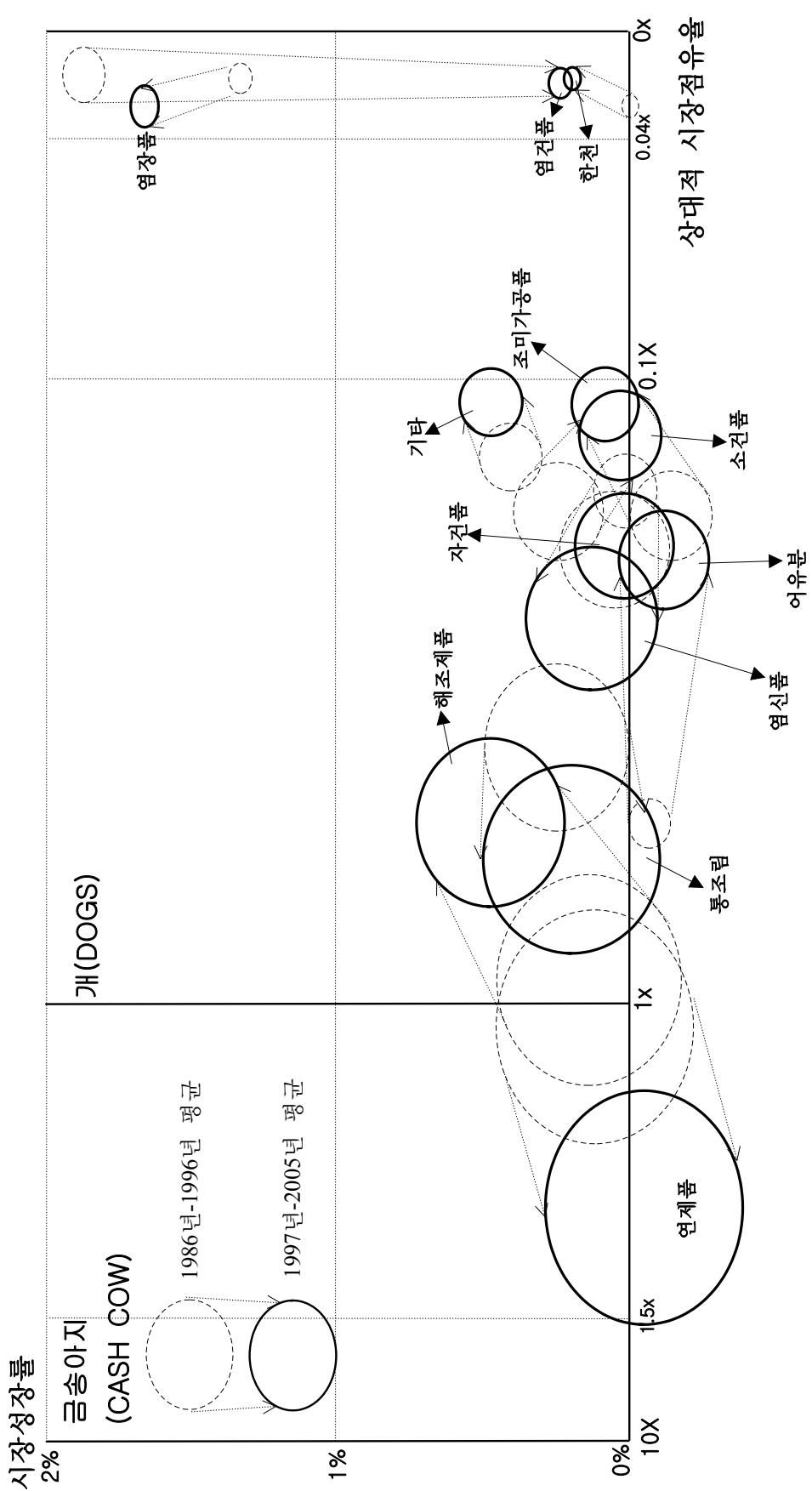
	1. 1986-1996		상대적 시장성장		2. 1997-2005		상대적 시장성장	
	소건품	시장성장	소건품	시장점유율	소건품	시장점유율	소건품	시장점유율
1. 1986-1996	0.32	1.88	0.21	0.01	0.04	0.33	0.17	0.01
상대적 시장성장	0.32	1.88	0.21	0.01	0.04	0.33	0.17	0.01
2. 1997-2005	0.21	0.01	0.04	0.33	0.17	0.01	0.01	0.02
상대적 시장점유율	0.21	0.01	0.04	0.33	0.17	0.01	0.01	0.02
연제품	0.07	0.18	0.11	0.16	0.38	0.76	0.07	0.02
통조림	0.21	0.53	0.16	0.40	0.76	0.71	0.07	0.02
해조제품	0.10	0.96	0.40	0.71	0.71	0.71	0.07	0.02
한천	0.00	0.01	0.20	0.20	0.00	0.00	0.00	0.00
연제품	0.10	1.04	-0.02	1.32	0.00	1.32	0.00	0.00
조미가공품	-0.13	0.22	0.17	0.14	0.14	0.14	0.14	0.14
어유분	-0.07	0.72	-0.11	0.27	0.27	0.27	0.27	0.27
기 타	0.39	0.13	0.41	0.08	0.08	0.08	0.08	0.08



상대적 시장점유율

[그림 6-3-15] BCG 매트릭스





[그림 6-3-16] 수산가공품의 BCG 분석



### 3. 지역별 수산가공품 생산량 동향

[표 6-3-19]는 지역별 수산가공품 생산량(2006년)을 정리하고 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적으로 부산이 가장 많은 수산가공생산량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경남, 전남, 경기, 강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역별로 특화된 수산가공품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부산은 냉동품, 경남은 통조림, 전남은 해조식품, 경기는 연제품, 강원은 소건품으로 특화되어 있다.

[표 6-3-20]은 단년도가 아닌 2001년~2006년 간의 지역별 수산가공품 생산량 평균 증가율을 정리하고 있다. 앞 [표 6-3-19]와는 달리 지역별로 생산량 기준 주요 수산가공품으로서 인식되어 온 것과는 다른 측면에서 지역별 수산 가공생산 동향을 읽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부산의 경우 냉동품가공품으로서 위치하여 오고 있으나 2000년 이후 냉동품의 생산 증가율은 14% 수준인 반면 염장품은 79%, 소건품은 43%, 어유분은 331%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가공분야의 성장세를 읽을 수 있다.

또한 경기 지역의 경우도 지금까지 연제품 생산지로서 위치하여 오고 있으나, 실제 근년 생산 증가율을 보면 연제품은 불과 5% 수준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소건물은 626%, 냉동품은 489% 증가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가공분야의 신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남 역시 생산 증가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해조제품(46% ↑)에서 조미가공품(102% ↑), 염장품(68% ↑), 소건품(48% ↑)으로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남은 통조림(21% ↑)에서 어유분(11,338% ↑), 수산피혁품(117,696% ↑), 소건품(401% ↑), 염장품(313% ↑)로 다양화가 진행 중이다.

그 외 지역에서도 지역원료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수산가공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수산가공분야로 새롭게 진출하거나 육성 발전하고 있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성과 같은 지역간 경쟁 및 육성 발전 전략의 결과에 따라서는 과거와는 다른 주산지 이동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3-19] 지역별 수산가공품 생산량(2006년)

(단위 : M/T)

	소건품	염건품	자건품	염장품	염신품	통조림	냉동품	해조제품	한천	연제품	조미 가공품	어유분	수산 파제품	기타	총계
서울	0	0	0	0	0	0	468	0	0	0	0	0	0	0	468
부산	81	52	67	2,097	1,861	0	253,437	1,951	0	21,488	1,881	1,048	794	14,746	299,503
대구	0	0	457	0	0	0	3,421	0	0	520	0	0	0	0	4,398
인천	0	0	0	0	1,967	0	17,576	106	0	0	0	1,776	0	0	21,425
광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0	19	0	0	0	19
울산	0	0	101	0	296	0	8,932	156	0	109	0	0	0	0	9,594
경기	0	0	16	0	10,555	0	3,032	2,532	0	36,711	5,534	0	0	0	58,380
강원	12,093	0	85	38	2,864	0	9,297	19	0	367	7,256	4,285	0	347	36,651
충북	5	0	0	0	0	0	473	0	0	0	299	0	0	0	777
충남	24	0	286	629	6,070	0	8,494	5,444	33	655	1,666	0	0	1,672	24,973
전북	39	64	64	76	3,466	44	5,339	852	0	6	527	0	0	9	10,486
전남	38	11,589	15,578	291	9,255	9,008	39,153	123,270	173	0	1,632	0	0	0	209,987
경북	11,170	0	0	0	1,251	1,959	10,822	0	0	2,230	653	0	0	540	28,625
경남	387	137	16,510	1,780	379	138,476	52,204	800	123	7,264	33	509	0	1,407	220,009
제주	0	416	0	95	28	0	11,735	538	0	0	0	0	0	0	12,812
계	23,837	12,258	33,164	5,006	37,992	149,487	424,383	135,668	329	69,350	19,500	7,618	794	18,721	938,107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통계연보, 2006. 주 : 냉동품 생산량에 있어 단순원동결은 제외.

[표 6-3-20] 지역별 수산 가공품 생산량 평균 증감률(2001~2006)

(단위 : %)

	소건품	염건품	자건품	염장품	염신품	통조림	냉동품	해조제 품	한천	연제품	조미 가공품	어유분	수산 피해품	기타	총계
원양	0	0	0	0	0	0	-2	0	0	0	0	0	0	0	-2
연근해	8	209	19	156	-4	19	1	38	0	-5	3	-23	216,146	52	3
서울	0	0	0	0	10	0	2	-13	0	0	0	0	33	0	-84
부산	43	10	-4	79	-1	-40	14	19	0	1	11	331	-10	42	9
대구	0	0	4,892	0	0	0	95	0	0	-4	0	0	0	0	58
인천	0	0	0	0	17	0	30	26	0	0	0	52	-25	-20	13
광주	0	0	0	0	-30	0	-35	0	0	-4	0	0	0	0	-25
대전	0	0	0	0	0	0	8,139	0	0	0	-22	0	0	0	319
울산	-16	0	32	0	-33	0	41	-6	0	2,106	0	0	0	0	19
경기	626	0	-43	0	-3	0	489	154	-20	5	32	0	-24	-20	9
강원	6	0	0	-36	18	0	-11	18	0	-7	10	-8	6	-20	-8
충북	-42	0	0	0	0	0	207	0	0	0	27	0	-17	-20	19
충남	932	0	882	-2	19	0	10	703	320	-16	203	0	75	-20	7
전북	1	-33	1	52	14	0	20	-5	0	-13	5	0	0	-20	4
전남	48	0	18	68	33	21	33	46	24	-26	102	0	0	0	33
경북	437	0	-20	44,420	-2	-12	-23	0	0	-9	-5	-20	-8	-40	-20
경남	401	-23	26	313	-16	21	0	67	-5	-12	-21	11,338	117,696	0	9
제주	0	67	0	0	-1	0	1	21	0	-20	0	0	-20	-2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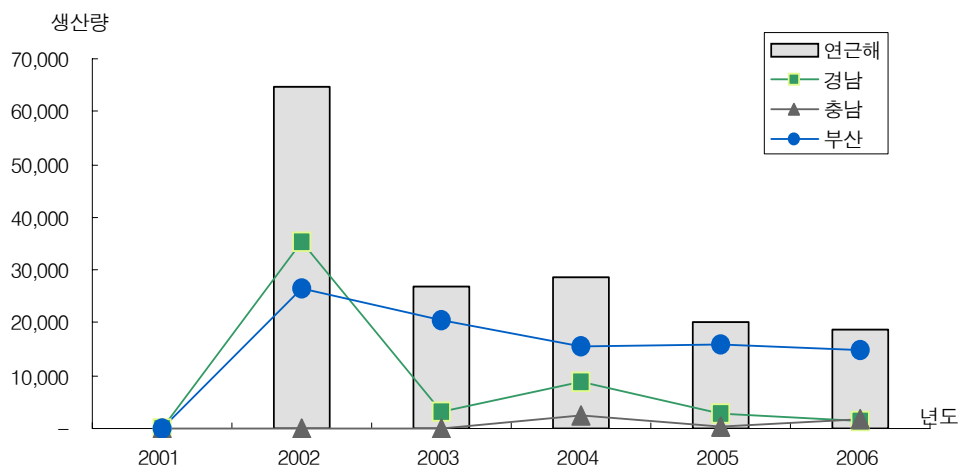
이하는 수산가공품과 주요 생산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주산지 이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기로 한다.

연근해의 경우 수산피혁품은 2002년을 정점으로 점점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주 산지는 경남에서 부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는 2002년 연근해 전체에 54%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2003년도부터 그 비중이 12%로 줄어들면서 부산이 전체 생산에 중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산은 2006년 현재 전체에 79%를 차지하고 있다.

[표 6-3-21] 수산피혁품의 연도별 생산량 변화추이

(단위 : M/T)

	연근해	경남	충남	부산
2001년	6	6	0	-
2002년	64,855	35,316	0	26,417
2003년	26,989	3,119	0	20,539
2004년	28,576	8,953	2,636	15,388
2005년	20,006	2,677	296	16,019
2006년	18,721	1,407	1,672	14,746



[그림 6-3-17] 수산 피혁품의 연도별 생산량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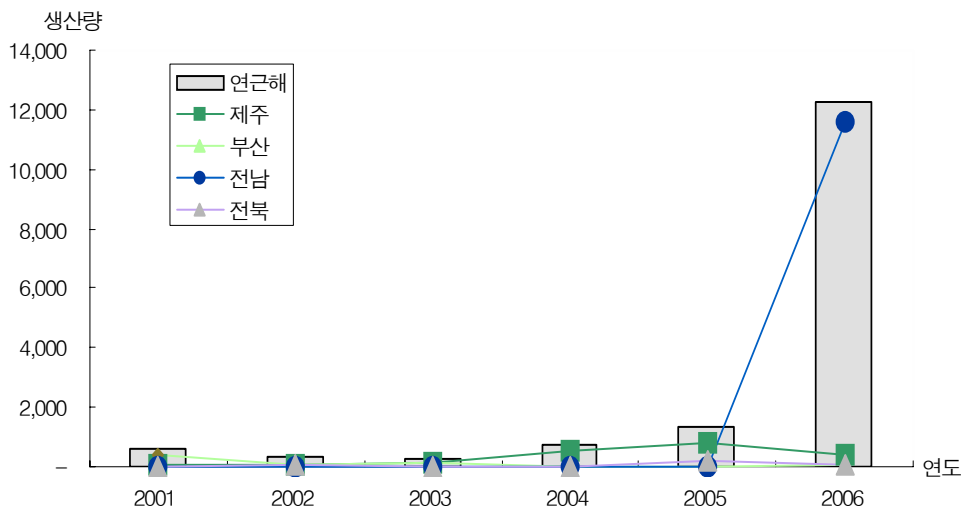
그 다음으로 염건품이 연근해서 높은 증감율을 보이고 있다. 2001년에도 생산의 65%가 부산에서 이루어지다가 2005년 제주도 이동하면서 생산에 59%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2006년에는 생산의 95%가 전남으로 이동하는 특징을 가진다.



[표 6-3-22] 염건품의 연도별 생산량 변화추이

(단위 : M/T)

	연근해	제주	부산	전남	전북
2001	579	92	378	0	0
2002	332	96	80	0	47
2003	237	131	106	0	0
2004	763	504	20	0	0
2005	1,337	783	18	0	194
2006	12,258	416	52	11,589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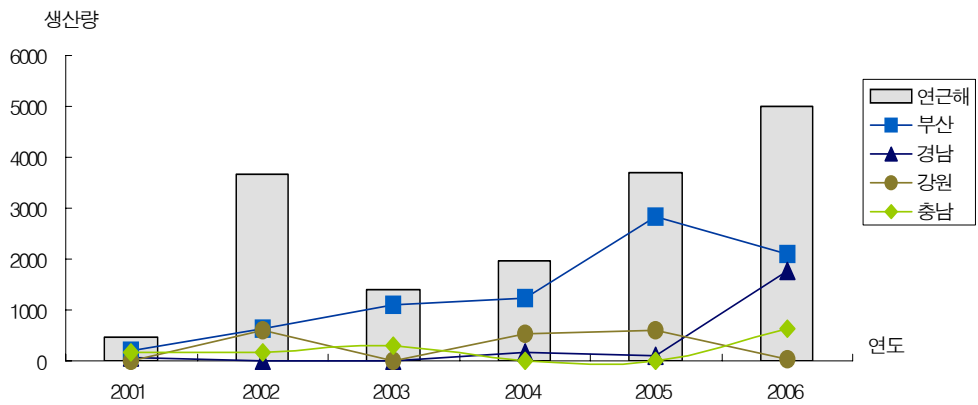
[그림 6-3-18] 염건품의 연도별 생산량 변화 추이

염장품 같은 경우 거의 모든 생산이 부산에서 이루어지다가 점점 경남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 44%가 생산하다가 생산량이 점점 늘면서 강원, 경남으로 생산지가 이동하면서 2006년에는 부산이 42%, 경남이 36%로 점점 경남으로 집중되고 있다.

[표 6-3-23] 염장품의 연도별 생산량 변화추이

(단위 : M/T)

	연근해	부산	경남	강원	충남
2001년	472	206	74	0	158
2002년	3,665	639	0	613	152
2003년	1,388	1,097	0	0	291
2004년	1,967	1,247	153	525	0
2005년	3,686	2,832	99	601	0
2006년	5,006	2,097	1,780	38	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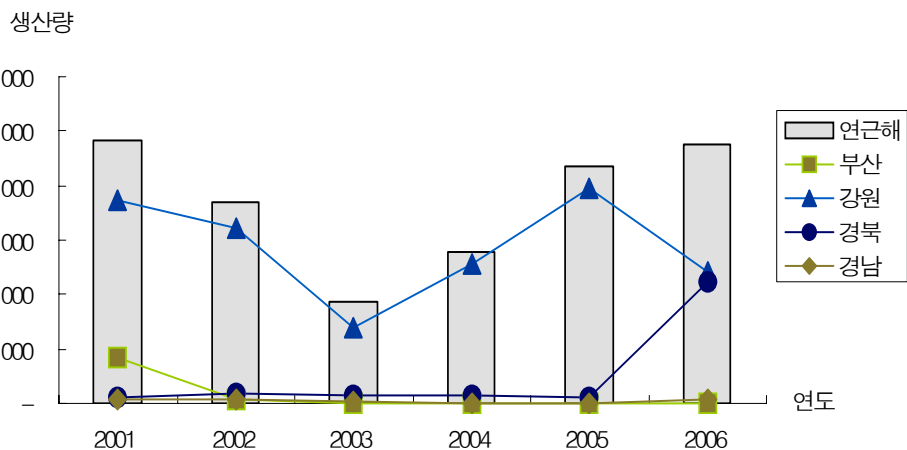
[그림 6-3-19] 염장품의 연도별 생산량 변화추이

소건품 경우 평균 평균증감율이 8%이다. 생산이 강원 중심에서 경북으로 내륙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3-24] 소건품의 연도별 생산량 변화추이

(단위 : M/T)

	연근해	부산	강원	경북	경남
2001	24,126	4,117	18,602	491	415
2002	18,402	319	16,153	993	444
2003	9,280	52	6,977	649	154
2004	13,976	42	12,880	783	24
2005	21,692	14	19,722	500	17
2006	23,837	81	12,093	11,170	387



[그림 6-3-20] 소건품의 연도별 생산량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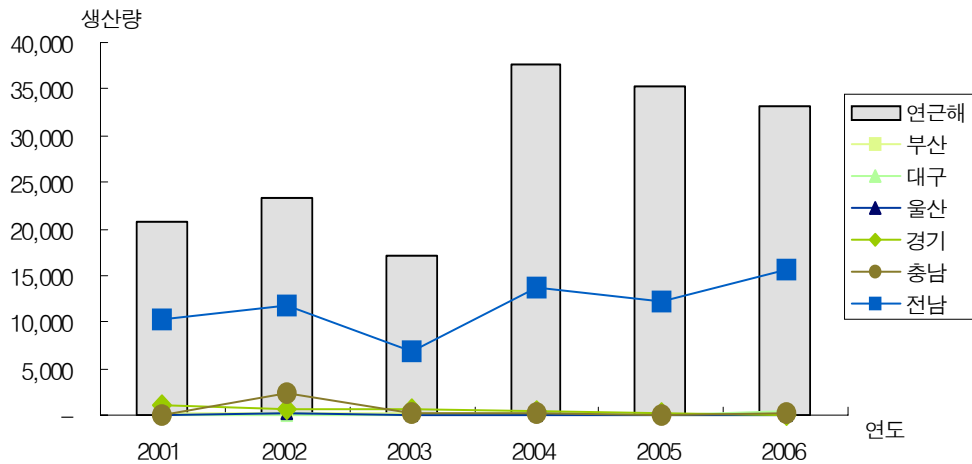


자건품의 경우 2001년에는 전남이 50%로서 생산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2006년에는 47% 감소하면서 대구, 울산으로 생산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3-25] 자건품의 생산량 변화

(단위 : M/T)

	연근해	부산	대구	울산	경기	충남	전남
2001	20,659	238	0	74	1046	83	10,365
2002	23,280	129	3	111	700	2,357	11,709
2003	17,207	305	9	31	746	196	6,815
2004	37,614	117	154	34	458	299	13,589
2005	35,314	97	2	88	197	15	12,112
2006	33,164	67	457	101	16	286	15,578



[그림 6-3-21] 자건품의 생산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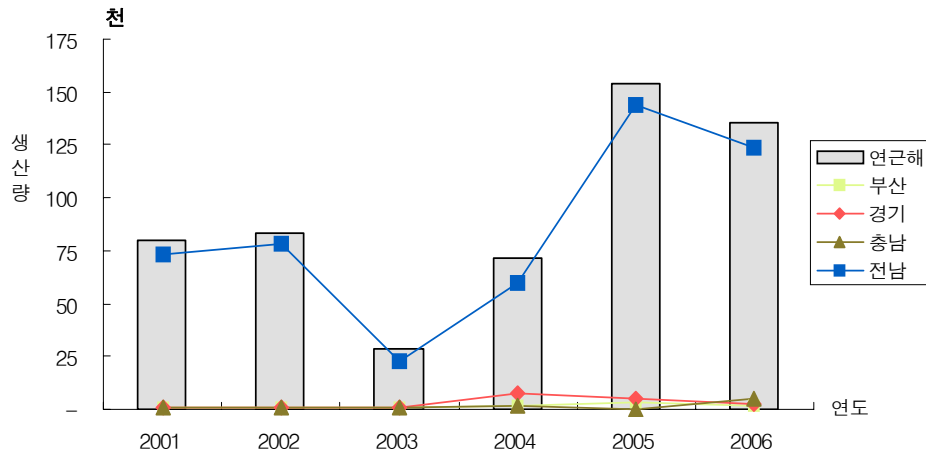
해조식품은 전남이 전체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생산은 비원료 생산자인 경기가 3%, 충남이 4%를 차지하고 있다.

[표 6-3-26] 해조식품의 생산량 변화

(단위 : M/T)

	연근해	부산	경기	충남	전남
2001	79,732	1,230	716	1,096	72,847
2002	82,946	903	716	536	78,074
2003	28,511	1,112	758	1,036	22,422
2004	71,265	1,532	7,171	1,386	59,464
2005	153,597	3,020	4,802	150	143,923
2006	135,668	1,951	2,532	5,444	123,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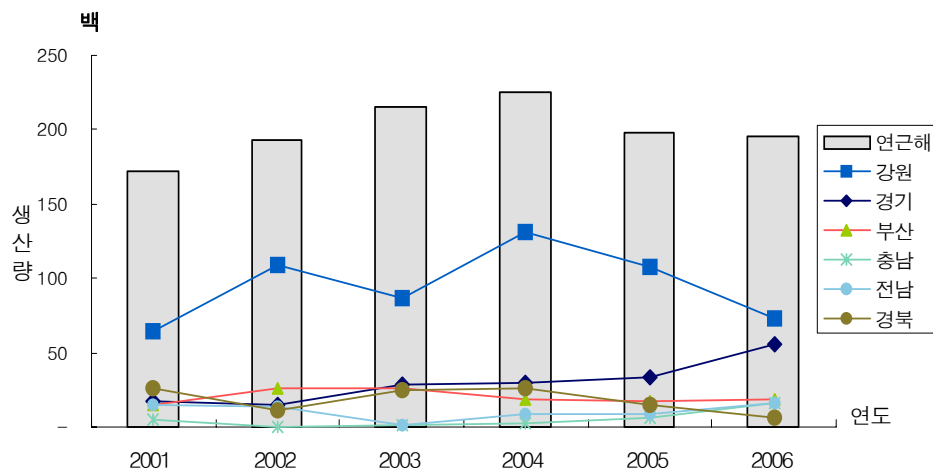
[그림 6-3-22] 해조식품의 생산량 변화

조미가공품은 강원이 전체생산량의 2006년도 기준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반면 경기 같은 경우 28%를 차지하면서 생산량이 늘어가고 있고, 경기, 충남, 전남이 증가하면서 주산지 이동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6-3-27] 조미가공품의 생산량 변화

(단위 : M/T)

	연근해	강원	경기	부산	충남	전남	경북
2001	17,250	6,430	1,745	1,431	548	1,492	2,604
2002	19,343	10,845	1,458	2,619	13	1,377	1,100
2003	21,501	8,690	2,806	2,619	93	145	2,485
2004	22,486	13,095	3,000	1,813	299	906	2,640
2005	19,759	10,792	3,291	1,793	621	876	1,434
2006	19,500	7,256	5,534	1,881	1,666	1,632	653



[그림 6-3-23] 조미가공품의 연도별 생산량 변화추이



한편 우리나라 수산 가공품의 주 생산지역인 부산, 전남의 가공품 생산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3-28]는 연근해 가공품 생산량 중 평균증가율이 높은 품목을 정리한 것이고, [표 6-3-29] 전남 가공품 생산량 중 증가율이 높은 품목, [표 6-3-30] 부산 가공품 생산량 중 증가율이 높은 품목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지역의 특징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가공품이 부산이 수산가공품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2001년에는 24%에서 2006년 3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냉동품이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공품 중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냉동품이 2001년 34%에서 2006년 60%로 증가하면서 생산량에 비해 냉동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산은 2006년 지역별 생산량의 31%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남의 경우 21%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15%에서 6%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해조식품과 냉동품의 증가로 인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6-3-28] 연근해 가공품 생산량 중 평균증가율이 높은 품목

(단위 : M/T)

	소건품	염건품	자건품	염장품	통조림	냉동품	해조제품	조미 가공품	수산 피혁품	총계
2001년	24,126	579	20,659	472	80,569	419,819	79,732	17,250	6	838,612
2002년	18,402	332	23,280	3,665	83,043	444,192	82,946	19,343	64,855	886,387
2003년	9,280	237	17,207	1,388	80,608	511,448	28,511	21,501	26,989	838,981
2004년	13,976	763	37,614	1,967	159,638	577,984	71,265	22,486	28,576	1,053,702
2005년	21,692	1,337	35,314	3,686	138,585	497,648	153,597	19,759	20,006	1,033,768
2006년	23,837	12,258	33,164	5,006	149,487	424,383	135,668	19,500	18,721	938,107

[표 6-3-29] 전남 가공품 생산량 중 증가율이 높은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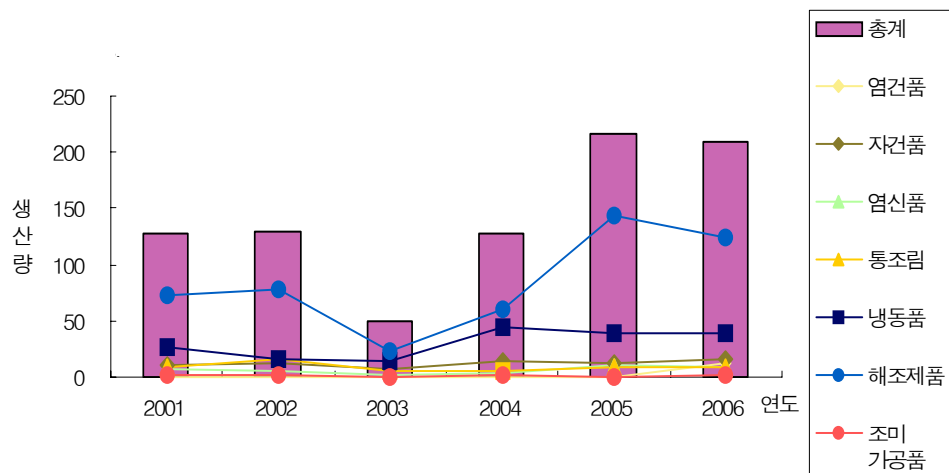
(단위 : M/T)

	염건품	자건품	염신품	통조림	냉동품	해조제품	조미 가공품	총계
2001년	0	10,365	7,604	8,555	25,862	72,847	1,492	126,933
2002년	0	11,709	5,066	16,039	16,711	78,074	1,377	129,099
2003년	0	6,815	2,086	4,553	13,607	22,422	145	49,715
2004년	0	13,589	3,647	5,020	44,817	59,464	906	127,999
2005년	0	12,112	10,886	9,053	39,533	143,923	876	217,031
2006년	11,589	15,578	9,255	9,008	39,153	123,270	1,632	209,987

[표 6-3-30] 부산 가공품 생산량 중 증가율이 높은 품목

(단위 : M/T)

	염장품	염신품	냉동품	연제품	조미 가공품	총계
2001년	206	2,327	142,302	24,059	1,431	205,621
2002년	639	2,237	219,273	18,764	2,619	276,454
2003년	1,097	2,246	244,381	26,070	2,619	298,970
2004년	1,247	1,761	297,223	18,552	1,813	338,650
2005년	2,832	1,276	261,837	22,843	1,793	310,973
2006년	2,097	1,861	253,437	21,488	1,881	299,503



[그림 6-3-24] 전남의 생산량 추이

#### 4. 지역별 수산가공품 생산고 동향

[표 6-3-31]는 2006년 지역별 수산가공품 생산고를 정리한 것이다. 앞의 생산량에서는 부산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고면에서는 전남이 전국 1위를 점하고 있다. 다음으로 부산, 경남 순이다.

[표 6-3-32]는 2001년~2006년의 지역별 수산가공품 생산고 평균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전의 수산가공기지와는 달리 서울(745% ↑), 대구(73% ↑), 인천(54% ↑), 충남(39% ↑)의 신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6-3-31] 2006년도 지역별 수산가공품 생산고

(단위 : 백만원)

구분	소진품	염건품	자건품	염강품	염신품	통조림	냉동품	제조제품	한천	연제품	조미 가공품	어유분	수산 피해품	기타	총계
서울	0	0	0	0	0	0	16,994	0	0	0	0	0	0	0	16,994
부산	410	202	2,038	6,413	21,428	0	541,588	25,895	0	40,699	21,413	300	4,411	74,587	739,384
대구	0	0	488	0	0	0	1,457	0	0	1,455	0	0	0	0	3,400
인천	0	0	0	0	5,177	0	58,926	465	0	0	0	1,095	0	0	65,663
광주	0	0	0	0	17	0	0	0	0	0	6	0	0	0	23
대전	0	0	0	0	0	0	0	0	0	0	324	0	0	0	324
울산	0	0	1,384	0	732	0	22,844	2,827	0	178	0	0	0	0	27,965
경기	0	0	161	0	27,342	0	35,982	9,044	0	118,107	45,991	0	0	26	236,653
강원	60,644	0	5,410	216	21,137	0	64,712	340	0	906	50,386	5,823	0	55,234	264,808
충북	51	0	0	0	0	0	1,679	0	0	0	11,042	0	0	0	12,772
충남	64	0	1,764	428	51,374	0	8,516	9,552	49	1,371	14,715	0	0	4,179	92,012
전북	601	1,162	1,162	215	8,132	351	30,190	8,366	0	12	12,290	0	0	193	62,674
전남	412	87,023	73,098	751	24,465	41,340	209,432	379,423	3,870	0	17,351	0	0	0	837,165
경북	23,369	0	0	0	3,492	4,331	30,901	0	0	2,904	3,909	0	0	4,157	73,063
경남	675	168	134,050	2,136	605	159,640	121,280	1,059	2,295	35,742	472	686	0	8,236	467,044
제주	0	820	0	245	49	0	45,956	2,054	0	0	0	0	0	0	49,124
총계	86,226	89,375	219,555	10,404	163,950	205,662	1,190,457	439,025	6,214	201,374	177,899	7,904	4,411	146,612	2,949,068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통계연보, 2006. 주 : 냉동품 생산에 있어 단순원형동결은 제외.

[표 6-3-32] 2001~2006 지역별 수산가공품 생산고 평균증가율

(단위 : 백만원, %)

	소진품	염건품	자건품	염장품	염신품	통조림	냉동품	제조제품	한천	연제품	조미 가공품	어유분	수산 피해품	기타	총계
서울	-20	0	0	0	2	0	196	-25	0	2,220	0	0	0	7	745
부산	47	-20	0	73	3	-40	25	47	0	1	38	-7	58	21	18
대구	0	0	1,999	0	0	0	221	0	0	0	0	0	0	0	73
인천	0	0	0	0	15	0	74	-10	0	0	0	56	0	-37	54
광주	0	0	0	0	-42	0	-27	0	0	-42	-20	0	0	0	-46
대전	0	0	0	0	1	0	215	0	0	0	-19	0	0	0	-3
울산	24	0	55	0	-19	0	42	22	0	266	0	0	0	0	21
경기	-54	0	21	0	24	0	19	29	-20	5	26	0	0	-27	6
강원	-1	0	0	-41	4	0	21	49	0	-7	11	1	0	337	7
충북	8	0	21	-20	-21	0	1,220	-39	-28	-23	99	0	-20	-47	7
충남	1,606	0	316	-18	-25	0	230	-29	5	-22	2,389	0	0	83	39
전북	-1	-27	13	-3	19	618	98	12	0	-13	-5	0	0	-20	23
전남	52	0	18	64	19	87	68	16	42	-26	299	0	0	0	30
경북	97	0	-20	16,421	-21	29	-25	0	0	-26	-6	-20	-20	-11	-22
경남	13	-38	28	337	-31	6	-3	6	-24	-6	13	-12	-20	-7	0
제주	0	4	0	0	41	0	0	-11	0	-20	0	0	0	159	-1
총계	-2	273	19	31	3	9	6	13	-10	5	11	-10	269	1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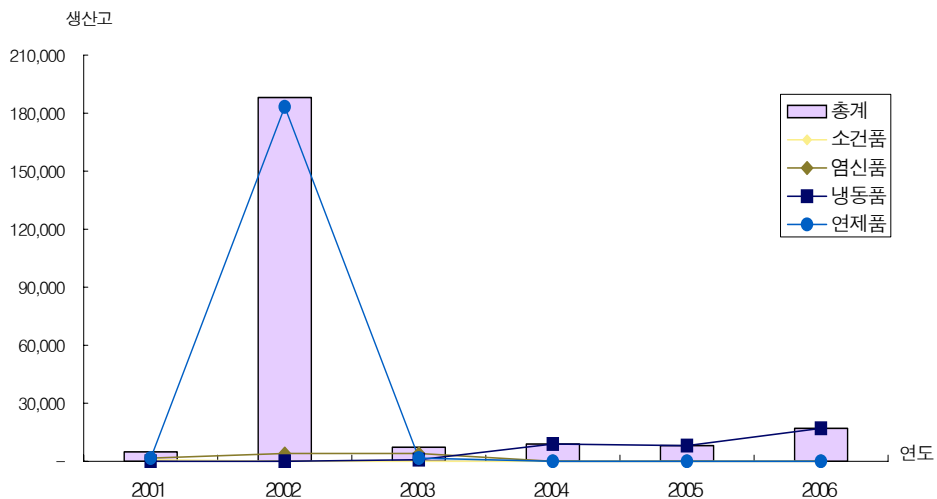


생산고 평균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경우 2002년에 연제품의 영향이 높았지만, 2003년부터 연제품의 생산량은 줄고 냉동품의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6-3-33] 서울 생산고 변화 추이

(단위 : 백만원)

	소건품	염신품	냉동품	연제품	총계
2001년	756	1,816	368	1,610	4,963
2002년	0	3,702	355	183,510	187,945
2003년	0	3,889	1,146	1,534	7,010
2004년	0	0	8,599	0	8,599
2005년	0	0	7,745	0	7,745
2006년	0	0	16,994	0	16,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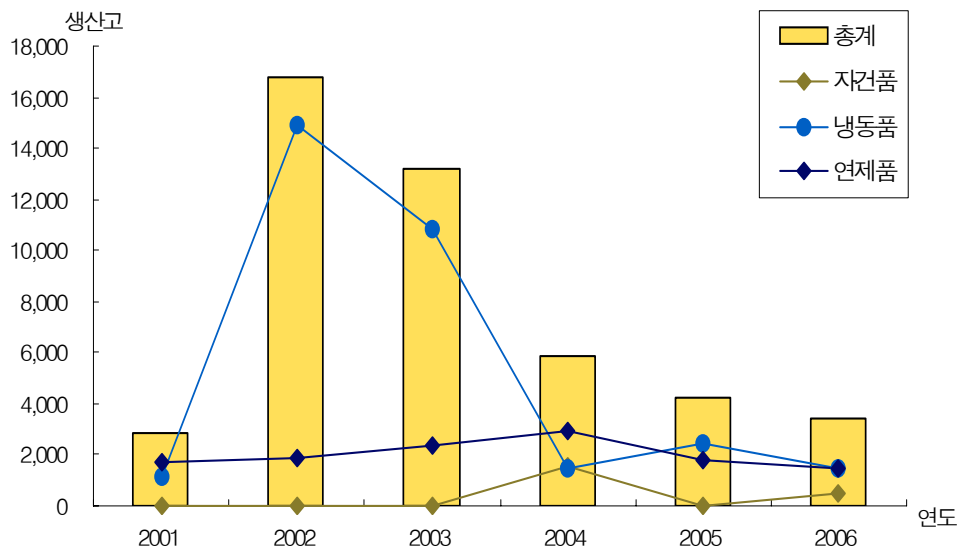
[그림 6-3-25] 서울 생산고 변화 추이

대구 같은 경우 생산고가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지만 2003년 이후 가공품 생산량을 줄고 있다. 특히 냉동품의 축소가 심화되면서 2001년에는 냉동품이 대구의 가공품의 89%를 차지하고 있지만 2006년에는 43%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냉동품을 대체할 수 있는 가공품의 출현 여부에 대구의 수산가공품 존립이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6-3-34] 대구 가공품 생산고 변화 추이

(단위 : 백만원)

	자건품	냉동품	연제품	총계
2001년	0	1,147	1,701	2,848
2002년	15	14,868	1,859	16,742
2003년	20	10,824	2,324	13,168
2004년	1,510	1,484	2,907	5,901
2005년	18	2,439	1,797	4,254
2006년	488	1,457	1,455	3,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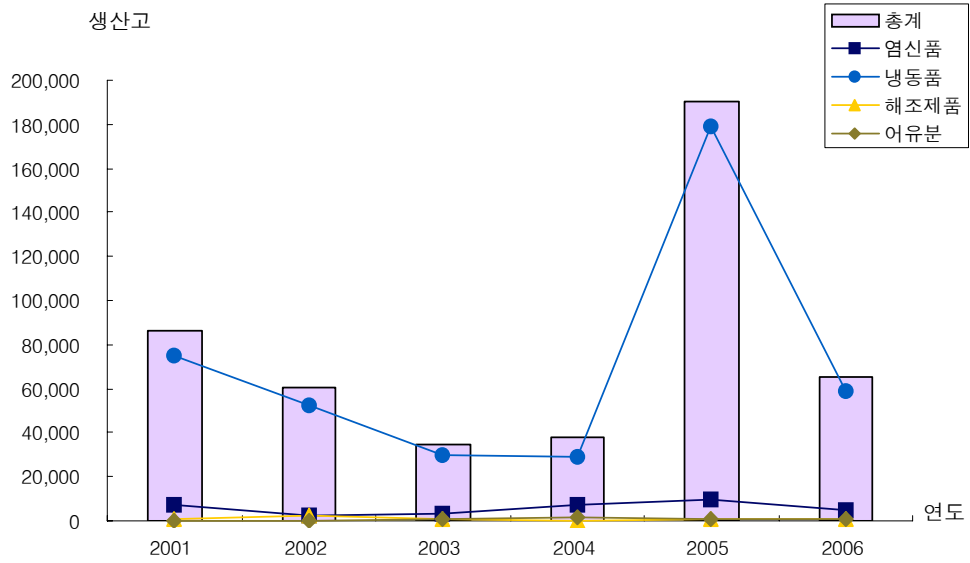
[그림 6-2-26] 대구 수산가공품 생산고 변화 추이

인천도 대구와 같은 경우로 냉동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3-35] 인천 수산가공품 생산고 변화 추이

(단위 : 백만원)

	염신품	냉동품	해조제품	어유분	총계
2001년	6,907	75,366	1,154	0	86,226
2002년	2,337	52,769	2,806	0	60,560
2003년	3,610	29,772	436	503	34,889
2004년	6,888	29,313	0	1,934	38,135
2005년	9,906	179,157	496	697	190,256
2006년	5,177	58,926	465	1,095	65,663



[그림 6-3-27] 인천 수산가공품 생산고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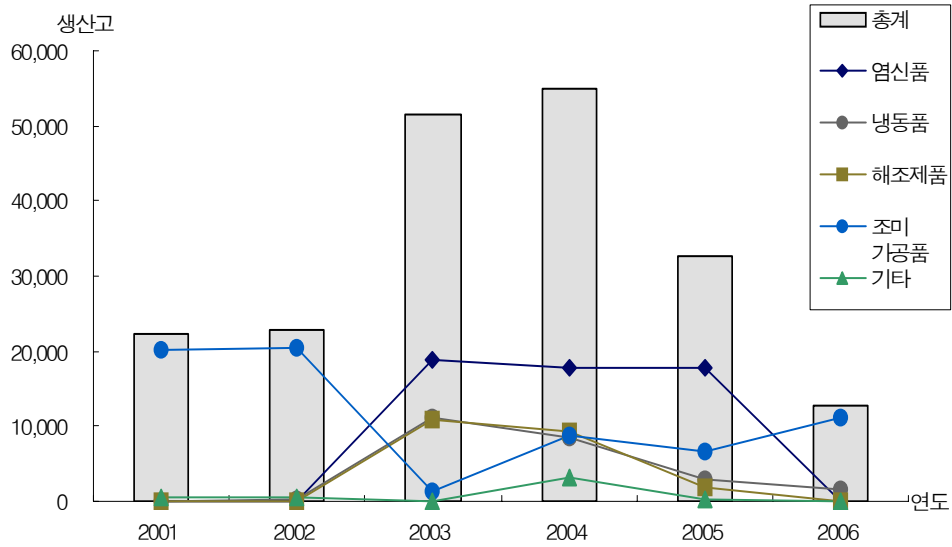
충남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징이 염신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2003년과 2004년에는 해조제품과 냉동품의 영향을 받은 것이 특징이다.

[표 6-3-36] 충남 수산가공품 생산고 변화 추이

(단위 : 백만원)

	염신품	냉동품	해조제품	조미 가공품	기타	총계
2001년	0	0	0	20,221	410	22,373
2002년	0	177	0	20,548	636	22,703
2003년	18,767	11,208	10,854	1,357	0	51,528
2004년	17,663	8,364	9,256	8,760	3,076	54,976
2005년	17,702	2,933	1,944	6,579	231	32,645
2006년	0	1,679	0	11,042	0	12,772





[그림 6-3-28] 전남 가공식품 생산고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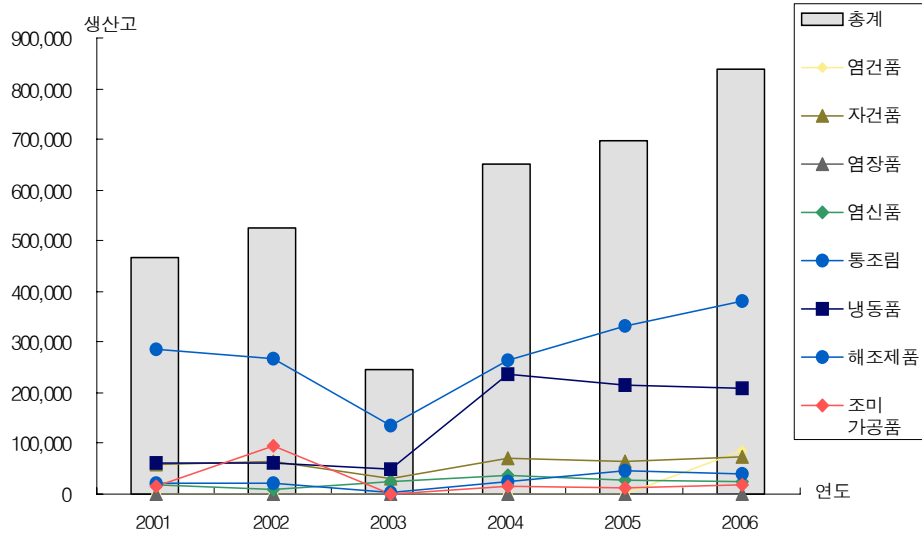
전남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냉동품 보다는 해조제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2006년 해조제품은 전남의 가공생산고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냉동품이 2004년을 기점으로 8%의 성장을 보이다가 2006년에는 전남가공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염건품은 조기류의 증가로 2006년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 6-3-37] 전남 수산가공품 생산고

(단위 : 백만원)

	염건품	자건품	염장품	염신품	통조림	냉동품	해조제품	조미가공품	총계
2001년	0	59,318	0	19,611	22,990	62,845	285,528	14,253	467,025
2002년	0	63,739	0	10,680	22,919	61,875	266,425	96,642	524,247
2003년	0	30,624	0	23,041	4,485	50,118	135,925	1,399	246,433
2004년	0	70,387	112	36,880	23,974	237,701	263,300	15,315	650,856
2005년	0	63,671	258	26,831	44,595	213,784	331,242	12,719	698,385
2006년	87,023	73,098	751	24,465	41,340	209,432	379,423	17,351	837,165





[그림 6-3-29] 전남 생산고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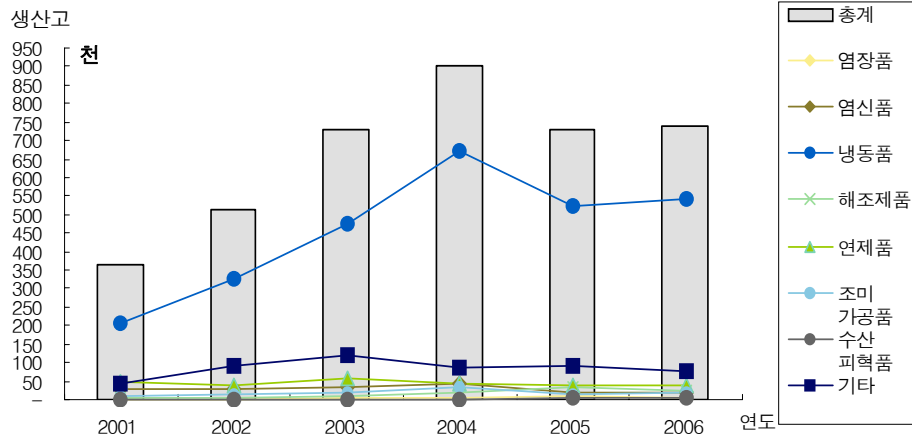
부산의 경우 주력 수산가공품은 냉동품으로 2006년 전체 가공품 중 73%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2001년에 57%에서 증가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다음은 기타로서 2006년 전체 가공품 중 1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엽장품, 해조제품, 연제품, 조미가공품, 수산피혁품 등도 생산고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6-3-38] 부산 수산가공품 생산고

(단위 : 백만원)

	엽장품	엽신품	냉동품	해조제품	연제품	조미가공품	수산피혁품	기타	총계
2001	709	27,045	206,985	6,070	46,520	7,863	0	42,484	366,274
2002	2,116	27,757	327,736	4,567	39,338	15,386	1,117	89,852	515,026
2003	3,447	32,071	477,387	7,292	58,539	19,470	2,048	121,712	728,268
2004	4,109	42,064	670,320	17,096	43,149	32,519	1,414	87,158	901,324
2005	8,701	17,693	520,913	31,501	36,178	13,392	4,882	90,086	727,225
2006	6,413	21,428	541,588	25,895	40,699	21,413	4,411	74,587	739,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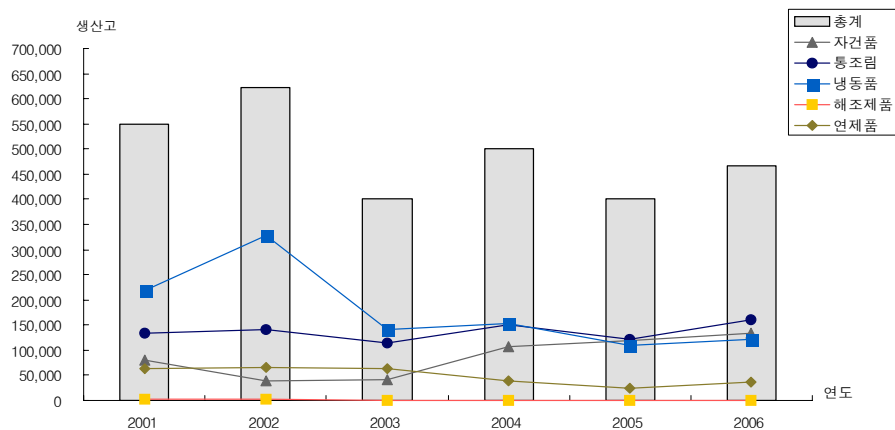
[그림 6-3-30] 부산 수산가공품 생산고 변화추이

경남은 통조림과 자건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반면 냉동품과 연제품은 생산고가 감소하고 있다.

[표 6-3-39] 경남 수산가공품 생산고

(단위 : 백만원)

	자건품	통조림	냉동품	해조제품	연제품	총계
2001	80,833	133,557	219,276	1,534	62,872	548,530
2002	38,827	140,189	328,794	1,334	64,914	622,940
2003	40,458	114,899	140,645	799	64,096	402,103
2004	106,909	151,887	153,716	442	38,005	501,154
2005	117,924	121,493	109,161	975	24,329	400,423
2006	134,050	159,640	121,280	1,059	35,742	467,0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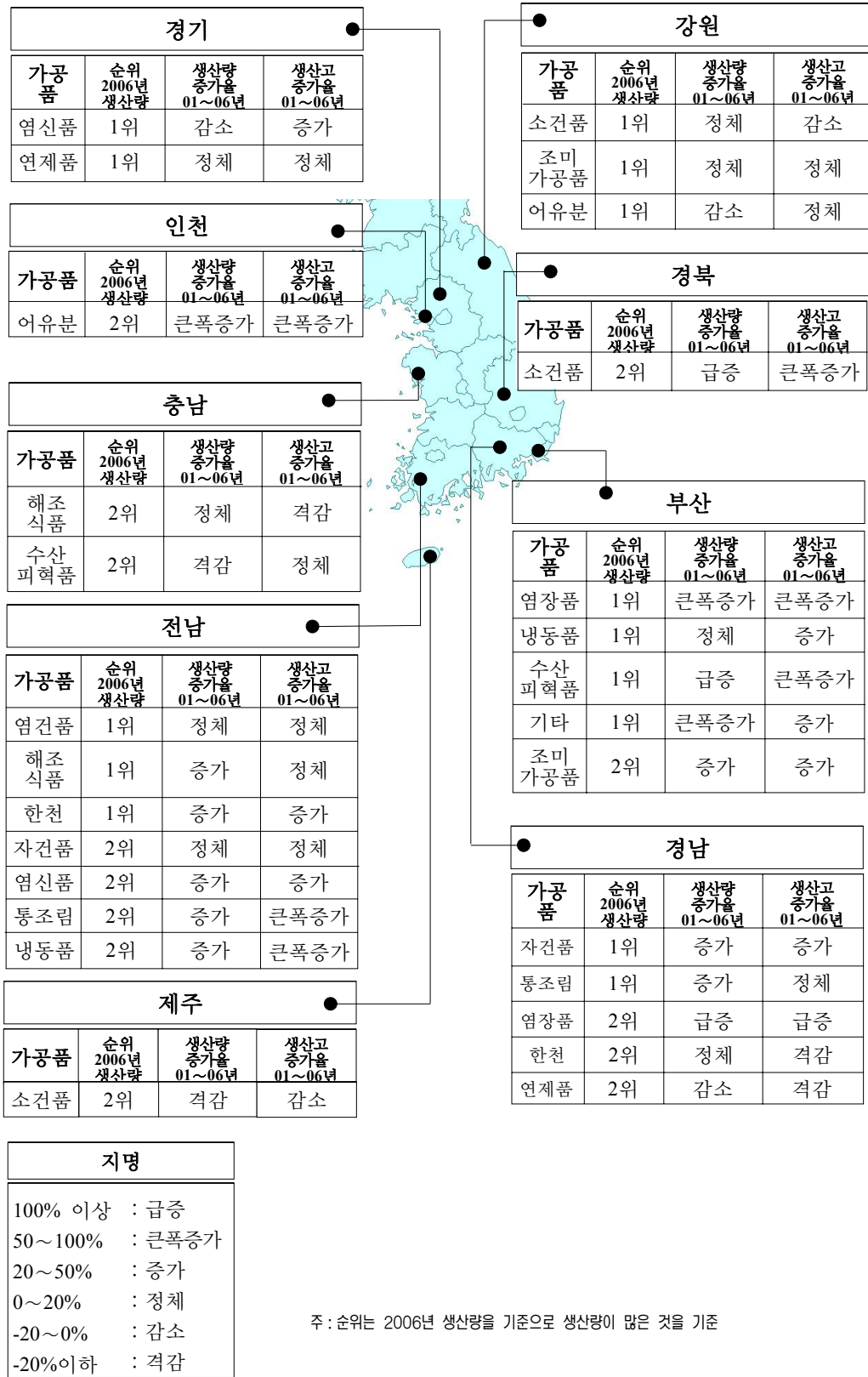


[그림 6-3-31] 경남 수산가공품 생산고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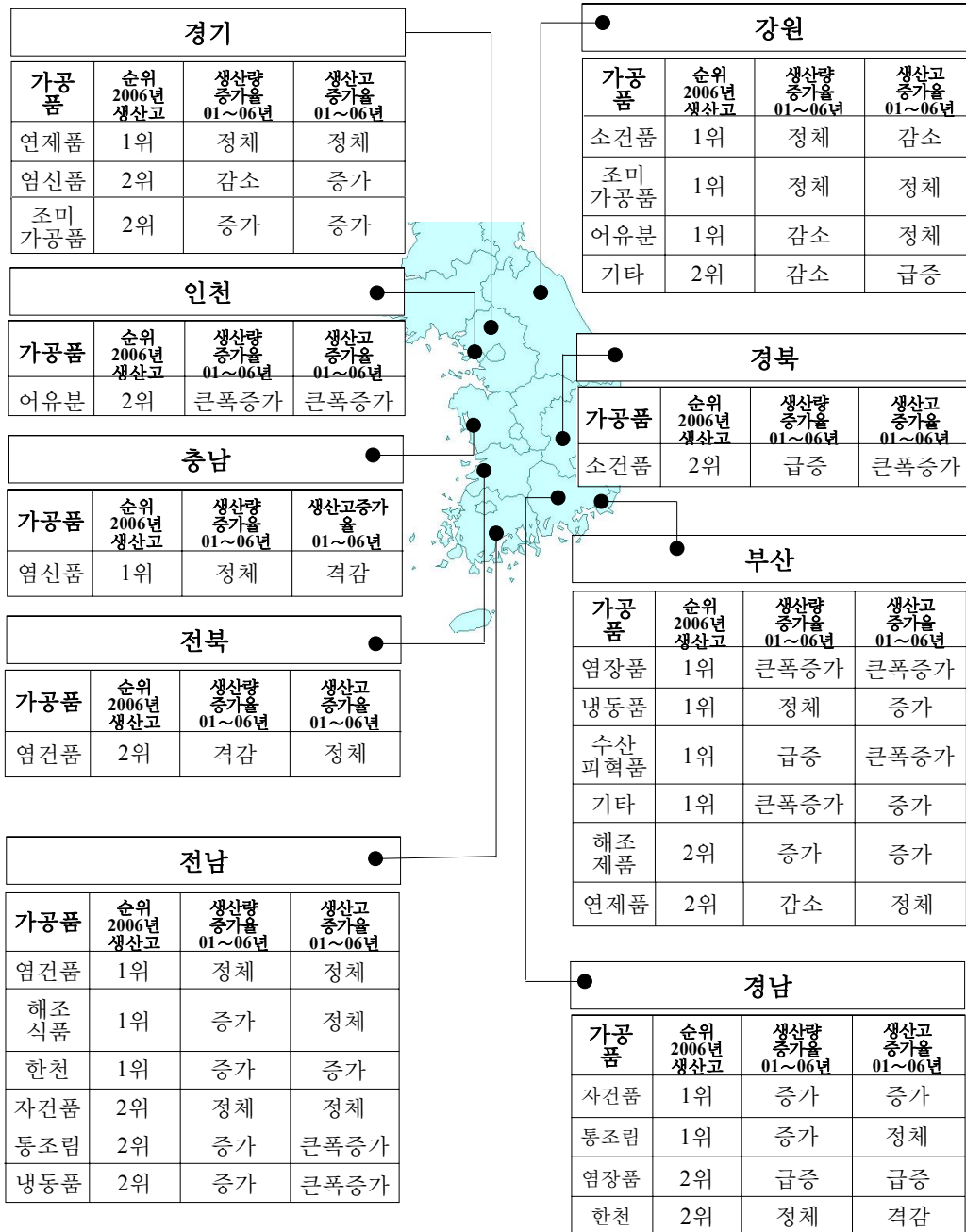
이상에서의 수산가공 결과를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하며 보면 [그림 6-3-32]과 [그림 6-3-33]과 같다. [그림 6-3-32]은 가공생산량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상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산가공품의 산지 구조 및 동향을 정리하고 있다. 한편 [그림 6-3-33]은 가공생산고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상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산가공품의 산지 구조 및 동향을 도식화하고 있다.

수산가공산업이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거나 분류에 따라서는 경합하고 있는 지역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내륙지 수산가공의 강세 동향과 주산지 이동 현상이다. 원료입지적 수산가공에서 물류, 노동, 소비지 시장 등의 입지 조건이 보다 강조되는 수산가공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 6 장

[그림 6-3-32] 가공생산량 기준 수산가공품 산지 구조



지명	
100% 이상	: 급증
50~100%	: 큰폭증가
20~50%	: 증가
0~20%	: 정체
-20~0%	: 감소
-20%이하	: 격감

주: 2006년 생산고를 기준으로 생산고가 높은 것을 기준 이에 따라 생산량·생산고 증  
가율을 대입

[그림 6-3-33] 가공생산고 기준 수산가공품 산지 구조

## 5. 수산가공업 육성 및 지원방안

### 가. 지역수산가공기술의 고도화 정책 전략

앞서 분석한 결과와 같이 기존수산가공품의 성장률은 대부분 1%이하로 이미 한계에 달하였다. 지금까지 수산물 원료의 가공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산가공업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요구됨. 즉, 기존의 수산물 원료 가공에서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는 수산식품가공산업으로서 수산가공업의 육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수산가공기술의 고도화 사업” 추진이 요구됨. 이는 다음과 같은 세부 전략으로 구성될 수 있다.

#### ① 지역수산물의 이용 확대 및 지역브랜드화 추진

이미 수산가공업의 탈산지화 즉 탈지역원료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수산물원료를 기반으로 하는 수산가공품 개발 및 지역 공동브랜드 개발을 추진한다.

#### ② 지역수산가공기술 및 품질관리의 통합화 추진

공동브랜드 개발의 전제 조건으로 지역수산가공기술 및 가공생산품에 대한 공동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한다.

#### ③ 지역수산물의 다용도 이용 소재화를 위한 기술 개발

소비자들의 새로운 건강 영양 기능성 가공품에 대한 관심 고조로 게껍질, 굴패각, 가공 부산물 등과 같은 수산가공물의 부산물이나 다시마, 미역, 매생이 등 지역수산물의 새로운 다용도 이용 소재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 ④ 수산가공업의 벤처화 추진

수산가공산업을 수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고소득 창출과 어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벤처화를 추진하여 자금 운용 및 경영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 나. 수산가공품의 품질 위생 관리 고도화 정책 전략

소비자들의 수산가공품에 대한 신뢰 회복 및 고취를 위해 HACCP 관리시스템 도입 확대가 필요함. 현재 진행되는 HACCP 관리시스템 도입 가공공장 설립을 위해서는 개별적 컨설팅 비용 지불 및 제한적 융자 지원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산가공식품의 위생 관리,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한 차세대형수산가공공장의 모델 개발과 도입, 확산을 위한 “수산가공품 품질고도화 촉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식약청 HACCP 적용 사업장을 위한 수산가공장의 공통 기준 구축 및 기준의 공개화, 비용의 표준화를 통해 실질적 확대가 요구된다.

#### 다. 수산가공업의 SCM화 추진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수산가공업의 주산지 개념이 원료지향적 수산가공업의 입지 성격에서 마케팅과 물류지향적 수산가공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가공품의 원료 공급, 가공 생산,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수산가공지역진흥을 위한 가공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위한 지역원료공급업체와 가공업체 사이의 제휴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유통업체와의 연계 제휴하여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를 즉각 반영하여 신상품 개발, Just in Time 물류망 구축, 통합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산가공업유통구조재편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추진 전략이 요구된다.

- ① 공동 구매 및 수배송 시스템 구축
- ② 소규모 가공업체를 위한 재택 유통 거래 결제 전산 정보망 구축
- ③ 대형마트와의 거래를 위해 지역도매시장의 공동 물류유통가공처리장으로 시설 개선 및 활용
- ④ 상품보존성 유지를 위한 콜드체인운송수단 도입

#### 라. 정부 지원 정책

수산가공업 시설개량자금 융자사업 추진을 통해서 앞서 언급한 품질 위생 고도화를 위한 수산가공공장의 시설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현재 약 2,900여개업체의 시설 개선을 점차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수산가공원료수매자금 융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수산물의 생산 특성상 연중 원료 수매가 어려운 만큼 수산물 원료 생산 집중시기의 일시적 가공원료 확보 부담 경감과 어업생산자의 가격 유지를 위해 원료수매자금지원사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공기술 및 경영 고도화 지원사업을 통한 벤처화 추진으로 개별 수산가공



업체의 가공기술 및 경영 고도화는 무리가 있어, 산학연을 연결하는 공동기술개발 및 경영컨설팅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는 벤처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6-3-40] 제품별 가공공장 현황

('05년말 기준)

구 분	계	해조류	절임식품	조미가공	건포류	기 타
공장수(개소)	2,937	580	524	299	265	1,269

[표 6-3-41] 가공공장 및 가공품 생산량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공 장 수(개소)	4,984	3,484	3,388	3,008	3,87	2,937
생 산 량(천톤)	1,465	1,547	1,444	1358	1,529	1,559
평균생산량(톤)	293	444	426	451	495	530

※ 가공공장의 대형화 현대화 추세로 공장은 감소하는 반면 공장당 평균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음



## 제4절 수산가공벤처 육성 및 지원

### 1. 개 요

1997년에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산업 구조의 고도화, 신규 고용창출, 수출증대에 따른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수산가공산업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벤처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 경제의 활성화와 경쟁력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2006년 연매출 1000억 원을 넘긴 벤처기업이 모두 102개인 것으로 조사됐었고, 이는 2004년 68곳, 2005년 80곳에서 꾸준한 증가 추세다. 이는 중소 벤처기업들이 주먹구구식 기업 경영에서 벗어나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2개 기업 중에는 디스플레이와 휴대전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많은 반면, 수산가공식품관련 중소기업은 전무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 발전 가능한 수산가공벤처를 발굴, 지원,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산물가공벤처기업을 육성해서 매출이 100억에서 1000억 이상 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과 지원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현황 등 기존 일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현황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수산물가공기업 중에 식약청 HAPPC 승인을 받은 기업 46개소를 대상으로 수산가공벤처기업으로 등록 및 지원받기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 2. 수산가공벤처 현황

#### 가. 벤처기업에 대한 일반적 고찰

##### 1) 벤처기업의 개념과 육성지원제도<sup>3)</sup>

벤처기업이란 대기업이 착수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에 도전하는 연구 개발형 모험 기업으로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정보·기술 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 신기술 산업 등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독립한 사람들

3) 全永鎭, 대덕밸리 벤처企業의 活性化方案, 2003. 2, 韓南大學校, 석사학위논문

이 이러한 기업의 핵심이며, 고도의 전문 능력, 신기술, 창조적 재능, 독창성, 기업가 정신이 요구된다.<sup>4)</sup>

벤처기업에 대한 학술적 개념은 정리된 것이 없으나 정책 대상으로서 기업 정의는 다음의 [표 6-4-1]과 같이 다양하다.

[표 6-4-1] 벤처의 정의

국가	정의 및 특징	관련 법규
미국	HTSF(High Technology Small Firm), NTBF(New Technology Based Firm) 등이 유사용어로 사용,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기반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	「중소기업투자법」
일본	‘중소기업으로서 R&D투자 비율이 총매출액의 3%이상인 기업, 창업 후 5년 미만의 기업’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OECD	‘R&D 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	
한국	미국과 달리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해 세계적 일류기술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함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인정제도 실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이라 하며 세계적으로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없으나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청이 발행하는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벤처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확인기준과 평가기관을 정리하면 다음 [표 6-4-2]와 같다.

[표 6-4-2] 벤처 인증기준과 평가기관

	벤처기업 확인	벤처기업 평가기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능력평가점수가 50점 이상</li> <li>- 벤처캐피탈의 투자정도와 기간</li> <li>- 업종별 연구개발비 비율</li> <li>- 신기술의 사업성 및 우수성</li> </ul>	중소기업진흥공단 · 기술신용보증기금 ·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한국디자인진흥원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관광연구원 ·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 12개 기관
비고	중소기업청의 벤처확인서	벤처기업 형태 :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4) 이재훈 외 1인, 「중소기업 경영론」, 경세원, 1999. p239.



이들 벤처기업 육성지원 제도는 자금공급의 측면에서 창투사와 투자조합의 설립, 코스닥시장의 활성화, 금융시장의 개방 등을 위한 지원,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 측면에서 우수 기술자의 벤처기업 참여확대, 산업재산권 등 기술을 근거로 보유기술의 상업화,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 등을 위한 지원, 입지공급의 지원측면에서 벤처빌딩 및 벤처단지 제도 도입, 입지관련 규제완화와 세계경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표 6-6-3].

[표 6-4-3] 벤처기업 육성 지원 제도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방안	비고
자금공급	- 창투사와 투자조합의 설립 - 코스닥시장의 활성화, - 금융시장의 개방(해외자금 유입)	-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임.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	- 우수기술자의 벤처기업 참여 확대 - 산업재산권 등 기술을 근거로 보유기술의 상업화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통해 고급기술 인력의 참여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7에 제정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입지공급의 지원	- 벤처빌딩 및 벤처단지 제도를 도입 - 입지관련 규제완화와 세계경감	- ‘기술담보제도’를 시행하여 기술개발 소요자금을 지원

## 2) 벤처기업의 현황과 애로요인

벤처기업의 현황은 중소기업청의 홈페이지 벤처넷 (<http://www.venture.smba.go.kr>)에서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경영실태현황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 현황은 연구에서 제외하고 애로요인을 정리하면 [표 6-4-4]와 같다.

[표 6-4-4] 벤처기업의 애로요인

	문제 내용	비고
창업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절차가 까다롭고 창업정보가 부족</li> <li>- 기술 집약형 창업에 있어 연구원에 대한 겸임·겸직이 허용이 된 상태이나 개발기술이 산업계로 연계되는 매커니즘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개인의 연구논문으로만 발표되고 해당기술은 사장되는 경향</li> <li>- 창업부터 기업공개까지 주요기능을 담당할 벤처캐피탈의 투자자금이 적절하게 지원되지 않음</li> <li>- 자금 확보가 어려우며 기술담보보증제도가 있으나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개발 계획 및 상품화 전략기획, 회계 및 영업력을 갖춘 인재 발굴,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및 타 분야와의 교류증진을 통한 마케팅전략 필요</li> <li>- 적극적이고 기술경영에도 자문할 수 있는 개인엔젤투자의 육성이 필요</li> </ul>
인재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과 생산에 집중한 결과 판매나 마케팅이 취약</li> <li>- 혁신적 제품이나 기술적인 도약이 있는 제품은 시장이 형성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의 조달과 자금운용, 생산, 구매, 마케팅 전략의 수립, 유통망의 확보, 광고와 판매촉진 등 전문적 지식과 능력 요구됨</li> </ul>
인프라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정보를 체계적으로 받아들여 변화를 지속적으로 대응(생존과 발전에 필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연의 연계가 필요(대기업의 인프라 강점을 극복)</li> </ul>
직접 조달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 금융시장을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함</li> <li>- 코스닥시장에의 진입과 거래활성화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시체제의 강화로 투자자들의 거래를 활성화</li> </ul>



벤처기업은 신기술과 연구개발 등 기술 개발 뿐 만 아니라 경영측면에서도 여타 중소기업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벤처기업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새로운 시장과 분야를 개척해 나아가는 데는 [표 6-4-4]에서 정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창업환경, 인재확보, 인프라 부족, 직접조달체계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애로요인에 직면하게 된다.

### 3. 수산가공벤처 현황과 지원정책

#### 가. 수산벤처 현황

현재 벤처기업은 총 11,78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업체 중 대부분이 신기술기업 벤처기업(84.7%)이고, 그 다음으로 연구개발기업(12.4%), 벤처투자기업(2.6%), 기술평가보증대출(0.3%) 순이다.



[표 6-4-5] 벤처기업 현황(2005년)

구 분	계	신기술기업	연구개발기업	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 보증대출
업체수	11,787	9,982	1,467	306	32
(%)	(100)	(84.7)	(12.4)	(2.6)	(0.3)

자 료 : 중소기업청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전체 벤처 기업의 약 72%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정보처리 S/W가 약 19%를 점하고 있다. 그 중 수산이 포함되고 있는 농어임광업은 0.3% 수준이다.

[표 6-4-6] 업종별 벤처 기업 현황

구 분	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 운수	도·소매업	농·어·임 광업	기 타
업체수	11,787	8,448	2,217	484	242	223	41	132
(%)	(100)	(71.7)	(18.8)	(4.1)	(2.1)	(1.9)	(0.3)	(1.1)

자 료 : 중소기업청

수산가공벤처 현황을 수산벤처와 가공산업 현황을 조합해서 정리 하면 다음 [표 6-4-7] 과 같다.

[표 6-4-7] 수산벤처와 수산가공업

분야	현 황
수산벤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벤처기업관련 업무는 해양수산기술진흥원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 사업화 추진 실적은 저조</li> <li>○ 해양수산 분야 산업기반 및 신기술 산업화 촉진 지원이 타 산업에 비해 매우 취약</li> <li>- 전체 벤처기업 수(11,787개)중 해양수산 벤처기업(205개)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li> <li>○ 수산인의 사업화 능력부족 및 체계적 지원시스템 등 창업 지원 인프라가 열악</li> <li>○ 높은 투자 위험도로 인해 신용도는 낮고 담보가치 불신으로 금융권의 투자기피 등 외부지원 부족</li> </ul>
가공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료 구입난과 고임금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경영애로</li> <li>○ 수산 가공품 수출은 국내 가공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원화 및 유가강세 등의 영향으로 시장 다변화 및 수출증대에 어려움</li> <li>○ 가공공장 시설 노후화 및 영세화로 품질 안전성 확보 애로</li> <li>○ 가공공장은 대체적으로 영세하고 부가가치 창출도가 낮음</li> <li>○ 수입물량의 지속적 증가로 국내 가공품을 포함한 국내수산물의 경쟁력 약화</li> </ul>
수산가공벤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특정 연구개발 사업('90~'05까지) → 411개 선정과제중 40개 기술이전(10%)및 사업화 추진</li> <li>○ 영어조합법인(가공업체 68개)을 수산가공벤처기업으로 등록 추진</li> <li>○ 기존 수산물가공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등록 지원 가능성 타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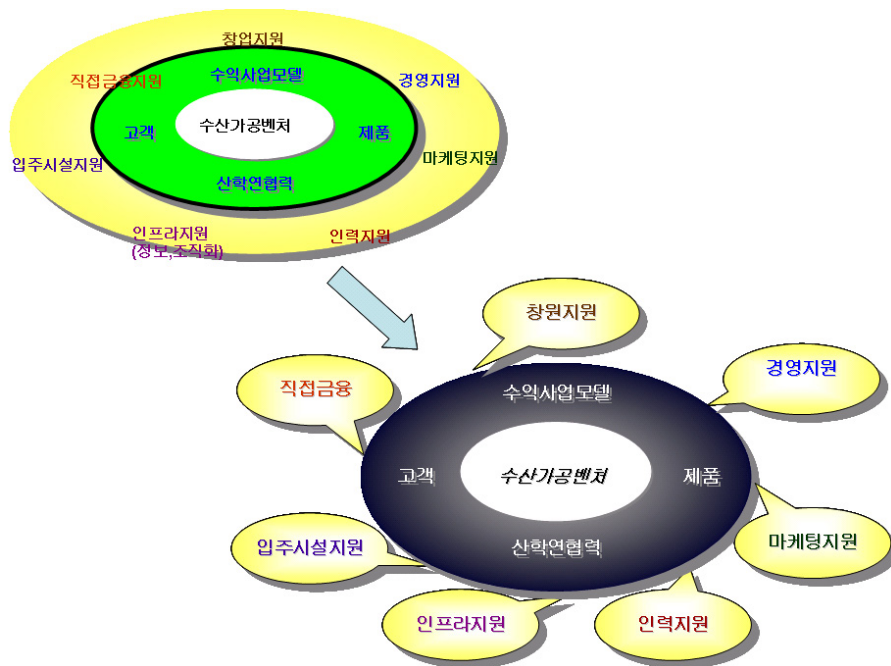
수산가공벤처기업으로 등록이 가능한 기업이나 조합에 대하여 벤처등록절차에 대한 지원과 벤처등록 후 성공적인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수산물가공벤처육성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기존의 정책과 지원방안**

수산가공기업이 벤처기업으로 등록되기 전에 창업지원, 경영지원, 마케팅지원, 인적지원, 인프라지원, 입주시설지원 등 기업내부에서 갖추어야 하는 요인들은 [그림 6-4-1]에서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기업경영전반의 부담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벤처기업으로 등록됨으로써 이들 요인은 내부자원이 아닌 외부지원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한편 벤처일반에 대한 지원형태를 수산가공분야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과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좋은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수산가공기업은 IT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2007년 벤처기업육성정책이 끝나가는 시점에 수산가공분야에서 수산가공벤처육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듯이 수산가공기업은 ‘후발업체’로 분류될 수 있다.

후발업체로 성공하기 위하여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듯이 수산가공분야에서 벤처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다음의 그림에서 보듯이 벤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제반경영활동을 아웃소싱형태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기업자체의 핵심요인에 집중하여 벤처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4-1] 수산가공벤처의 외부 지원



이와 같은 아웃소싱형태의 기업지원을 전문가로 구성해서 수산가공기업이 벤처가 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육성지원형태가 될 것이다. 또한 전문가 집단의 차별화된 개별기업지원형태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내부관리프로세스를 운영한다면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수산벤처와 가공산업, 수산가공벤처의 추진방향을 정리하면 다음 [표 6-4-8]과 같다.

[표 6-4-8] 수산벤처와 가공산업의 추진 방향

	추진 방향	비고
수산 벤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성목표 : 벤처 10개소 매년 발굴 지원(10개소×매출목표 20억=200억) ※ 농림부 경우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창업경연 대회 지원등(07년 18억)</li> <li>○ 해양수산 벤처는 초기단계로 교육을 강화하여 관심을 유도하고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한 후 벤처 지정 및 창업을 지원(한국 해양수산기술진흥원)</li> <li>○ 영어조합법인(986개소)과 신지식어업인(95명)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 및 연구개발 성공업체를 벤처기업으로 육성</li> <li>○ 성장가능성 높은 분야 집중 육성 - 신기술, 신물질·신품종·식음료·의약품, 생명공학 등</li> </ul>	친환경수산식품, 기능식품, 신선편의식품, 식품소재 분야 등 중소기업청과 수산벤처지원 확대방안을 협의하고 필요시 MOU체결, 연구기술개발의 사업화 추진, 수산벤처기업 지원, 창업지원 등 각종 교육과 지원 매칭 펀드조성
가공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공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지원으로 원가절감</li> <li>○ 가공공장의 원료 공동 구매, 공동 판매 추진 방안 검토</li> <li>○ 원료수급의 안정화와 소비자 지향 기호도 조사</li> <li>○ 핵가족 및 간편화 추세에 맞춰 소량 다품종 생산체제</li> <li>○ 기술,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여 경영 활성화 도모</li> <li>○ 판매처 다양화에 따라 공격적 마케팅 및 홍보 강화</li> <li>○ 수산물 가공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경쟁력 강화.</li> </ul>	브랜드 육성, 포장디자인 개선, 기술경영 지원. 단순가공보다 고차가공, 기능성식품에 우선 지원함으로써 고소득 창출자금 부족시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청에 자금협조 요청
수산 가공 벤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가공기업의 벤처등록과 성장 - R&amp;D을 위한 산학연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li> <li>- 기업 인프라를 위한 중소기업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li> <li>- 수산가공산업에 대한 장단기적인 비전을 갖는 우수한 인력 공급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으로 벤처기업이 성장하는데 한계 : 일반벤처기업의 문제점과 같이 창업과 인력확보, 인프라 구축, 직접금융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li> </ul>	벤처기업으로 성공적인 시장진입이 가능한 수산가공기업을 선별해서 벤처기업의 문제점 해결을 지원(스타벤처를 발굴 육성 : 사업아이템 중심)

자 료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수산벤처·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2006. 12.



해수부에서 추진 중인 해양수산벤처기업 육성지원 일정을 살펴보면, 이들 지원이 신규 소규모 사업자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6-4-9]. 이러한 추진전략은 창업을 지원하는 형태인데, 수산가공의 경우는 기존의 중소기업을 벤처로 지원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2007년 기준으로 벤처기업지원에 대한 정책이 만료되는데, 이는 제도적으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형태로, 벤처기업기준인 창업 5년 이내 기준 등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수산가공산업을 육성하는 본래 목적을 기준으로 기존의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일반 벤처기업 등록 기준이 아닌 수산가공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으로 입법화해서 수산가공산업에 대한 특별 벤처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창업기업이 수산가공산업을 발전시키기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기존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정책을 현재 벤처기업에 적용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제도적으로 현존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수산가공산업분야에서는 기존 기업에 대하여 같은 수준 혹은 그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개정까지 필요하다.

한편 기존업체가 신생기업을 만들어 벤처기업으로 등록하는 것도 수산가공벤처기업으로 지원을 받겠지만, 이는 IT분야와 달리 핵심기술로 인한 매출 100억 이상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기업이 중심이 되어 수산가공벤처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표 6-4-9] 추진전략

추진전략	1단계('06)	2단계('07)	3단계('08~)
• 체계 및 기반	• 조직개편	• 육성기반구축	• 창업확산
	• 인원보강	• 예비창업자 발표회 및 지원 • 벤처 설명회개최 • 매뉴얼 제작	• 창업확산
• 창업		• 시범사업 및 성공모델개발	• 창업확산

자 료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수산벤처·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2006. 12.



## 4. 수산가공업의 벤처기업을 위한 실증연구

### 가. 가공업체의 벤처 운영실태 파악

식품제조 가공업분야에서 수산물관련 HACCP적용 업체와 한국수산물가공협회기업 대상으로 한 수산가공벤처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HACCP적용기업의 경우 대부분 회사의 규모와 수산가공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벤처기업전환과 벤처기업의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조사대상은 식품저널의 식품유통연감 2007년 자료를 참고하여 HACCP적용업체와 한국수산물가공협회 기업을 정리하면 다음 [표 6-4-10]과 같다.

[표 6-4-10] HACCP 수산가공업체

HACCP		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	
해진물산	(주)아워홈	광천수산 영업조합법인	(주)성수
(주)동원F&B	(주)새아침	(주)경원S.T.&P	(주)세오
(주)태영씨엔디	(주)피쉬뱅크	남아수산	(주)세일물산
금성유통	성진수산(주)	(주)네오피시코리아	(주)신우농수산
(주)기린푸드시스템	태강수산	대림수산(주)	(유)신화식품
(주)해진물산	(주)바다로	(주)대원수산	영광수산 영어영농조합법인
(주)에프알시	그린씨푸드	덕화유통(주)	(주)영웅
동해수산	금강냉동(주)	(주)동남	오양수산(주)
동화수산	(주)청정세상	동명수산식품(주)	웅진영어조합법인
(주)동화오션	(주)창미푸드서비스	동명수산유통(주)	인성실업(주)
태진유통	거제수산물 종합가공공장	동원산업(주)	(주)정필
(주)현대씨푸드	참손푸드(주)	동원수산(주)	진일물산
(주)녹채원	(주)영피쉬	(주)동영콜드프라자	(주)진주햄
신성유통	우영수산(주)	만세보령영어조합법인	청해영어조합법인
동원산업(주)	(주)청룡수산	보령식품	청해식품해운
일오삼수산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	보성냉장(주)	태일수산(주)
국제해양수산(주)	제이씨태영유통(주)	부덕수산(주)	(주)태호
부경수산(주)	(주)푸드엔씨	사조산업(주)	태훈산업(주)
(주)도도수산	(주)유진수산	시조씨에스(주)	(주)프레솔
(주)한려엔초비	케이앤케이	삼양수산	한성기업(주)
(주)바다마을		(주)삼원유통	(사)한국수산회
대복수산(주)		삼호물산(주)	현산수산
더존푸드		서해명가	화인골드마린스
대양수산		서해수산식품	(주)TS우인

## 나. 수산가공기업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설문조사 개요

이들 업체에 벤처기업인정과 수산가공벤처기업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4-11] 설문조사 내용

주요 설문내용
-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정도
- 수산가공벤처의 지원 내용 파악
- 수산가공벤처 등록여부와 인정에 대한 관심도
- 수산가공벤처 지원의 우선순위
- 수산가공벤처의 발전방향
- 성공적인 수산가공벤처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요구조건
- 성공적인 수산가공벤처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요조건
- 기타 요구사항

표본은 현재 HACCP를 획득하고 있는 가공업체 44개소와 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 회원사 48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였으며, 설문기간은 2007년 9월과 10월 사이에 우편 및 방문 조사를 병행 진행하였다.

회수율은 HACCP 등록업체 44개소 중 21개소로 47.7%, 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 48개소 중 18개소로 37.5%의 회수율을 나타내고 있다.[표 6-4-12]

[표 6-4-12] 설문지 배포 및 회수 현황

구분	배포수	회수빈도	회수율(%)
HACCP 수산가공업체	44	21	47.7
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	48	18	37.5
계	92	39	42.4

### 1) 수산가공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조사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에 대한 정보 및 인식 정도는 [표 6-4-13]와 같이 전혀모른다 38.5%, 모른다 53.8%로 대부분이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 및 정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6-4-13]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에 대한 정보 및 인식 정도

구분	회답수	비율
전혀 모른다	15	38.5
모른다	21	53.8
조금 알고 있다	3	7.7
알고 있다	-	-
잘 알고 있다	-	-
계	39	100

수산가공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설문에 응답사의 46.2%가 “그렇다”, 30.8%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여 관심이 대단히 높음을 알 수 있다[표 6-4-14].

[표 6-4-14] 귀사는 수산가공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구분	회답수	비율
전혀 없다	-	-
없다	6	15.4
보통이다	3	7.7
그렇다	18	46.2
매우 그렇다	12	30.8
계	39	100

주: 비율 값은 소수점 아래 첫자리까지 반올림한 수치로서 합계는 100이 아닐 수 있음

## 2) 수산가공사업에 관한 질문

현재 사업 분야에 대한 질문에 응답사(복수응답)의 38.5%가 절단, 절신, 조미가 7.7%, 튀김이 7.7%, 냉동식품이 38.5%, 기타가 7.7%를 나타내고 있다[표 6-4-15].

[표 6-4-15] 수산가공업의 사업 분야

구분	회답수	비율
혼계	-	-
어육연제품	-	-
건포류	-	-
절단, 절신	15	38.5
염장	-	-
조미	3	7.7
튀김(생산가스 등)	3	7.7
냉동 식품	15	38.5
기타	3	7.7
계	39	100

주: 비율 값은 소수점 아래 첫자리까지 반올림한 수치로서 합계는 100이 아닐 수 있음

응답사의 사업 종사 년 수는 10-19년이 38.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년 이상이 30.8%, 5년 미만이 23.1%, 5-9년이 7.7% 순으로 나타나 수산가공업에 비교적 오래 동안 종사하여 온 회사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6-4-16].

[표 6-4-16] 수산가공업의 사업 종사 년수

구분	회답수	비율
5년 미만	9	23.1
5-9년	3	7.7
10-19년	15	38.5
20년 이상	12	30.8
계	39	100

주: 비율 값은 소수점 아래 첫자리까지 반올림한 수치로서 합계는 100이 아닐 수 있음

경영 애로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사(복수응답)의 38.5%가 자금난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고 다음으로 판로개척난과 안전위생기준강화에 따른 대응이 각각 15.4%를 나타내고 있다. 그 외에 원료가격난, 인력난, 신제품개발난, 기타가 각각 7.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원료공급난을 응답한 회사가 없다는 것은 국내원료 내지는 수입원료를 확보함에 있어서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애로가 없음을 알 수 있다[표 6-4-17].

[표 6-4-17] 수산가공업 운영에 있어 최근 경영상의 어려움

구분	회답수	비율
원료공급난	-	-
원료가격난	3	7.7
자금난	15	38.5
인력난	3	7.7
판로개척난	6	15.4
신제품개발난	3	7.7
안전위생기준강화에 따른 대응안	6	15.4
기타	3	7.7
계	39	100

주: 비율 값은 소수점 아래 첫자리까지 반올림한 수치로서 합계는 100이 아닐 수 있음

년간 매출액 규모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사의 10-30억원대가 30.8%, 70-100억원대가 23.1%, 200억 이상이 15.4%, 10억 미만이 15.4%, 40-60억원 7.7%, 110-150억원 7.7%를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와 중규모, 대규모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표 6-4-18].



[표 6-4-18] 수산가공회사의 연간 매출액

구분	회답수	비율
10억 미만	6	15.4
10-30억대	12	30.8
40-60억대	3	7.7
70-100억대	9	23.1
110-150억대	3	7.7
160-200억대	-	-
200억 이상	6	15.4
계	39	100

주: 비율 값은 소수점 아래 첫자리까지 반올림한 수치로서 합계는 100이 아닐 수 있음

이들 기업의 최근 5년간의 사업 성과는 응답사의 53.8%가 증가하였다고 답하였고 변화 없다가 30.8%, 감소가 15.4%로 사업 성과가 증가하였다고 하는 수산가공업체가 많게 나타나고 있다[표 6-4-19].

[표 6-4-19] 최근 5년간 사업 경영 성과

구분	회답수	비율
증가	21	53.8
변화 없음	12	30.8
감소	6	15.4
기타	-	-
계	39	100

주: 비율 값은 소수점 아래 첫자리까지 반올림한 수치로서 합계는 100이 아닐 수 있음

사업성과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는 응답사의 46.2%가 동종 가공업체간의 경쟁적 측면을 꼽고 있고, 다음으로 38.5%가 거래처의 증가, 감소와 같은 시장 측면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 외에도 원료가격측면과 판매가격측면이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고 있다[표 6-4-20]. 결국 수산가공업은 원료나 판매의 가격 측면보다는 거래처 확보를 위한 동종업종간의 경쟁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거래처 확보를 위해서라면 가격경쟁도 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가격 차별화 이외에는 별다른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4-20] 사업 경영 성과 변동의 주된 원인

구분	회답수	비율
원료량이 늘거나 감소하는 원료 공급량 측면	-	-
원료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원료 가격 측면	3	7.7
판매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판매 가격 측면	3	7.7
거래처의 증가, 감소와 같은 시장 측면	15	38.5
소비가 늘거나 감소하는 수요 측면	-	-
대출 등 금융권 이용의 금융 지원 측면	-	-
동종 가공 업체간의 경쟁적 측면	18	46.2
기타	-	-
계	39	100

주: 비율 값은 소수점 아래 첫자리까지 반올림한 수치로서 합계는 100이 아닐 수 있음

현재 추진 중인 수산가공정책 중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사(복수응답)의 69.2%가 HACCP 관련 제도라고 응답하고 있어 이 제도의 수산가공 적용에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수산물품질인증제가 15.4%, 원산지표시제와 첨가물표시가 각각 7.7%로 나타났다[표6-4-21].

[표 6-4-21] 현재 수산물가공과 관련된 정책 중 개선되어야 할 부분

구분	회답수	비율
수산물 품질인증제	6	15.4
HACCP관련제도	27	69.2
원산지표시제	3	7.7
안전성 조사	-	-
첨가물 표시	3	7.7
기타	-	-
계	39	100

현재 획득하고 있는 제도로 응답사(복수응답)의 53.8%가 HACCP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른 수산물품질인증제 38.5%, ISO 30.8%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6-4-22]. 이는 수산가공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HACCP 획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4-22] 획득 인증제

구분	회답수	비율
수산물품질인증제	15	38.5
HACCP	21	53.8
ISO	12	30.8
기타	21	53.8
계	39	100

주: 1. 응답자는 총 39명. 그 중에서 2개 혹은 2개 이상을 획득한 기업체가 있기에 합계와 각 제도의 회답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비율 값은 각 제도 획득자가 전체 39명의 응답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향후 운영의 중심점은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설문에 응답자의 38.5%가 판매처 개발 및 확대에 중점을 둘 것으로 답하였고, 다음으로 안전성 및 위생 확보가 23.1%, 신제품 개발, 생산규모 확대가 각각 15.4%를 나타내고 있다[표 6-4-23]. 이 같은 결과는 판매확대를 위해서는 안전성과 위생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다음으로 신제품 개발 등에 따른 생산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순서라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4-23] 향후 운영의 중점 방향

구분	회답수	비율
(신)제품 개발 및 도입	6	15.4
원료 확보	-	-
생산규모 확대	6	15.4
판매처 개발 및 확대	15	38.5
안전성 및 위생 확보	9	23.1
우수인력확보	-	-
기타	3	7.7
계	39	100

주: 비율 값은 소수점 아래 첫자리까지 반올림한 수치로서 합계는 100이 아닐 수 있음

## 다. 수산가공기업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성공 요인 분석

### 1) 요인분석

수산가공기업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어떤 요인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요구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수산가공기업의 벤처기업화에 필요한 자금공급,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 입지, 가공 산



업의 발전방향, 벤처기업 육성 지원방안 등에 대한 주요 요인 추출을 위해 26개 변수를 설문 조사를 통해 추출하였다.

[표 6-4-24]은 1차 요인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26개 변수는 총 7개 요인으로 정리되었다. 제1요인은 병역특례, 소량다품종생산, 경영컨설팅, 마케팅홍보, 인재 발굴, 산학연 연계, 기술경영투자 육성으로 구성되었다. 제2요인은 투자조합 설립, 원료수급의 안정화, 고차가공기술개발, 기능성 식품 개발, 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으로 구성되었다. 제3요인은

[표 6-4-24] 수산가공기업의 벤처육성을 위한 1차 성공요인분석 결과

구분		항목	1	2	3	4	5	6	7	
요인 1		병역특례	V18	0.424	-0.271	0.139	-0.770	0.263	0.152	0.100
		소량 다품종 생산	V24	0.781	-0.194	0.046	-0.101	0.326	0.331	0.202
		경영컨설팅	V25	0.904	0.187	0.022	0.041	0.287	0.052	0.165
		마케팅 홍보	V26	0.893	-0.073	0.079	-0.199	0.083	0.298	0.132
		인재 발굴	V35	0.655	0.52	0.134	-0.217	0.032	-0.279	0.194
		산학연 연계	V36	0.923	0.202	0.219	-0.156	-0.102	-0.034	-0.03
		기술경영투자 육성	V37	0.66	0.165	0.436	-0.359	0.246	0.197	0.005
요인 2		투자조합 설립	V13	0.279	0.688	0.112	0.307	-0.025	0.383	0.194
		원료수급의 안정화	V28	0.024	0.856	-0.098	0.237	0.265	-0.186	0.166
		고차가공기술 개발	V32	0.065	0.851	0.086	-0.398	-0.039	-0.158	-0.06
		기능성 식품 개발	V33	0.014	0.562	0.244	-0.003	0.250	-0.738	-0.038
		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	V34	0.082	0.89	0.074	-0.009	0.039	-0.018	0.005
요인 3		기술자 벤처 참여확대	V16	0.354	0.286	0.653	0.345	0.039	0.402	0.182
		보유기술의 상업화	V17	0.241	0.586	0.541	0.327	0.297	0.216	0.031
		소비자 기호도 조사	V23	0.416	0.217	0.628	-0.416	0.254	0.007	0.335
		포장디자인개선	V30	0.208	-0.096	0.861	-0.104	0.055	-0.005	-0.424
		기술경영 지원	V31	-0.079	0.158	0.610	0.133	0.652	-0.079	0.302
요인 4		코스닥시장 활성화	V14	0.153	-0.725	-0.069	0.307	-0.302	-0.367	0.290
		금융시장의 개방	V15	-0.22	0.087	0.522	0.598	0.42	-0.011	-0.355
		벤처빌딩/단지 제도를 도입	V19	-0.164	-0.219	0.063	0.94	0.164	0.057	-0.059
요인 5		세계/규제 완화	V20	0.519	0.464	-0.301	0.344	0.500	0.046	-0.124
		공동구매, 판매추진방안검토	V22	0.363	0.112	0.133	0.062	0.86	-0.084	0.028
	공시제도 확대	V38	0.467	0.446	0.237	-0.278	0.627	-0.023	0.043	
요인 6		브랜드 육성	V29	0.395	0.122	0.262	-0.042	-0.001	0.788	0.074
요인 7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V21	0.195	-0.011	-0.125	-0.160	0.075	0.123	0.938
		수출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V27	0.376	0.579	0.353	-0.020	0.099	-0.099	0.558
Eigen Value				9.698	4.570	3.175	2.293	1.859	1.546	1.222
% of Variance				37.300	17.578	12.212	8.820	7.149	5.947	4.699



기술자베처 참여 확대, 보유기술의 상업화, 소비자 기호도 조사, 포장 디자인 개선, 기술 경영 지원으로 구성되었다. 제4요인은 코스닥시장활성화, 금융시장의 개방, 벤처빌딩/단지 제도 도입으로 구성되었다. 제5요인은 세제/규제 완화, 공동구매, 판매추진방안검토, 공시제도 확대로 구성되었다. 제6요인은 브랜드 육성, 제7요인은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수출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로 구성되었다.

## 2) 신뢰성 분석

일반적으로 측정도구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1차 요인분석 결과에 묶여진 변수들에 대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4-25]와 같다. 일반적으로 크론바 알파 계수가 0.6 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항목들의 신뢰성 분석 결과 크론바 알파 계수값은 전부 0.6 이상으로 측정항목들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부 요인들 사용변수에서 최초 크론바 알파값을 높일 수 있는 제거 항목이 발견되어 이를 제거하였다. 제거된 변수는 제1요인에서는 소량다품종생산 변수, 제2변수에서는 원료수급안정화, 제3요인에서는 소비자기호도조사, 제4요인에서는 코스닥시장활성화, 제6요인에서는 브랜드육성 변수들이다.

[표 6-4-2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변수 제거 이후 최종 크론바 알파값은 최초 알파값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6-4-25] 신뢰성 분석결과

구분	설문항목수	최초Alpha	제거된 항목수	최종Alpha
요인1	7	0.8205	1(V24 소량다품종생산)	0.9096
요인2	5	0.7748	1(V28 원료수급안정화)	0.8549
요인3	5	0.7301	1(V23 소비자기호도조사)	0.8558
요인4	3	0.5387	1(V14 코스닥시장활성화)	0.8224
요인5	3	0.8095	-	0.8095
요인6	1	-	1(V29 브랜드육성)	-
요인7	2	0.6804	-	0.6804

신뢰성 분석에서 변수를 제거한 후 재차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4-26]와 같다.

2차 요인분석에서는 총 6개 요인으로 묶여지면서 제1요인은 병역특례, 경영컨설팅, 마케팅 홍보, 인재발굴, 산학연 연계, 기술경영투자 육성 변수들로 구성되어 경영·인적자원요인으로 명하였다.

제2요인은 투자조합 설립, 고차가공기술 개발, 기능성 식품 개발, 중소기업청의 자금지

원 변수들로 구성되어 자금/기술요인으로 명하였다.

제3요인은 기술자 벤처 참여 확대, 보유기술의 상업화, 포장디자인개선, 기술경영 지원 변수들로 구성되어 기술 상업화 요인으로 명하였다.

제4요인은 코스닥시장 활성화, 금융시장의 개방, 벤처빌딩/단지 제도 도입으로 구성되어 벤처조성요인으로 명하였다.

제5요인은 세제/규제 완화, 공동구매, 판매추진방안검토, 공시제도 확대로 구성되어 공동요인으로 명하였다.

제6요인은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수출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로 구성되어 경쟁력 강화 요인으로 명하였다.

[표 6-4-26] 수산가공기업의 벤처육성을 위한 2차 성공요인분석

요인명	변수	항목	1	2	3	4	5	6
경영·인적자원요인	병역특례	V18	0.424	-0.271	0.139	-0.770	0.263	0.100
	경영컨설팅	V25	0.904	0.187	0.022	0.041	0.287	0.165
	마케팅 홍보	V26	0.893	-0.073	0.079	-0.199	0.083	0.132
	인재 발굴	V35	0.655	0.52	0.134	-0.217	0.032	0.194
	산학연 연계	V36	0.923	0.202	0.219	-0.156	-0.102	-0.03
	기술경영투자 육성	V37	0.66	0.165	0.436	-0.359	0.246	0.005
자금/기술요인	투자조합 설립	V13	0.279	0.688	0.112	0.307	-0.025	0.194
	고차가공기술 개발	V32	0.065	0.851	0.086	-0.398	-0.039	-0.06
	기능성 식품 개발	V33	0.014	0.562	0.244	-0.003	0.250	-0.038
	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	V34	0.082	0.89	0.074	-0.009	0.039	0.005
기술상업화요인	기술자 벤처 참여확대	V16	0.354	0.286	0.653	0.345	0.039	0.182
	보유기술의 상업화	V17	0.241	0.586	0.541	0.327	0.297	0.031
	포장디자인개선	V30	0.208	-0.096	0.861	-0.104	0.055	-0.424
	기술경영 지원	V31	-0.079	0.158	0.610	0.133	0.652	0.302
벤처조성요인	코스닥시장 활성화	V14	0.153	-0.725	-0.069	0.307	-0.302	0.290
	금융시장의 개방	V15	-0.22	0.087	0.522	0.598	0.42	-0.355
	벤처빌딩/단지 제도 도입	V19	-0.164	-0.219	0.063	0.94	0.164	-0.059
공동요인	세제/규제 완화	V20	0.519	0.464	-0.301	0.344	0.500	-0.124
	공동구매, 판매추진방안검토	V22	0.363	0.112	0.133	0.062	0.86	0.028
	공시제도 확대	V38	0.467	0.446	0.237	-0.278	0.627	0.043
경쟁력강화요인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V21	0.195	-0.011	-0.125	-0.160	0.075	0.938
	수출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V27	0.376	0.579	0.353	-0.020	0.099	0.558



### 3) 수산가공기업의 벤처기업 성공 요인 및 단계론적 접근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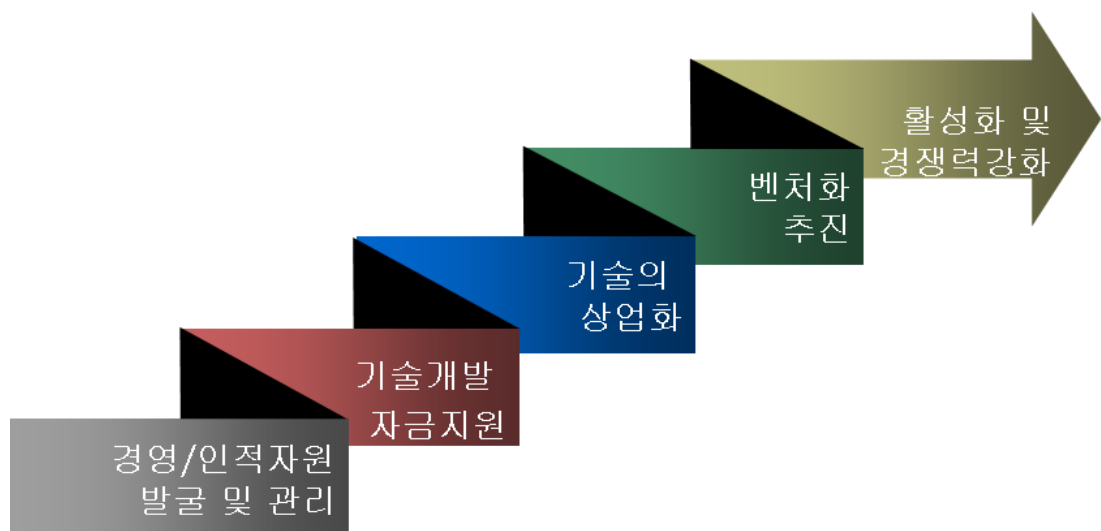
앞의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수산가공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단계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그림 6-4-2].

우선 1단계 추진전략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영·인적자원의 육성 및 관리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수산가공산업에 진출할 인재 육성을 단순한 취업 대상으로 취급한다면 우수한 인재가 진출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병역특례 등을 통한 인재 유인과 산한연과 연계된 인적 자원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경영/마케팅, 기술경영투자 육성 등과 같은 경영 인적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단계 추진 전략으로 기술개발과 이를 위한 투자 자금 마련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이나 기능성 수산식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개발 초기투자자금의 확보가 어려워 사실상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초기 기술개발을 위한 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 분야에 수산가공벤처 자금을 확보하거나 투자조합을 설립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단계 추진 전략은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 단계로 여기에는 기술개발자의 벤처 참여 기회 확대 및 기술 경영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상업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4단계 추진 전략은 수산가공기업의 벤처화를 위해 벤처기반조성이 필요한 단계이다. 이를 위해서 벤처빌딩 내지는 단지를 조성하여 집적된 경영노하우를 전수하여 코스닥시장 및 금융시장으로부터 실질적인 자금 유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6-4-2] 수산가공기업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단계론적 접근방안

5단계 추진 전략은 수산가공벤처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규제를 완화하거나, 공동구매/판매, 가공시설의 현대화,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5. 수산가공벤처 육성 및 지원 방안

### 가. 수산가공벤처 육성 방안

국내수산가공업은 영세하고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벤처기업으로 승인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농업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국면을 참고해도 충분히 파악이 된다.

또한 수산가공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승인 받아 벤처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벤처기업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 이는 그동안 수산가공벤처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없는 것을 봐서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해수부에서 중소기업청과 협력하여 수산가공벤처기업을 발굴 육성 지원하여 사업화에 성공하기 위한 지원 대책은 성공 농업분야를 참고하고, IT, BT 등 중소기업의 벤처기업화 성공사례를 많이 참고 하여야 한다.

대상기업을 찾는 작업에서 수산가공산업 특성상 영어조합이나 일반 중소기업(매출액 30억 이내)들이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들 기업들은 조직구조상 생산가공에 집중하지 R&D에 대한 조직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설사 이들 기업들이 산학으로 연계한다고 해도 부가가치 상품가능성이 10억~30억/년 가능한 수산가공식품을 개발해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벤처로 등록해도 성공가능성은 매우 낮다.

원론적으로 벤처정신을 갖고 있는 특정 수산가공기업과 매출 100억 이상의 수산가공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사업기회를 발굴하여 투자에 대한 집중이 이루어 질 때 이들 기업을 벤처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수산가공기업의 벤처기업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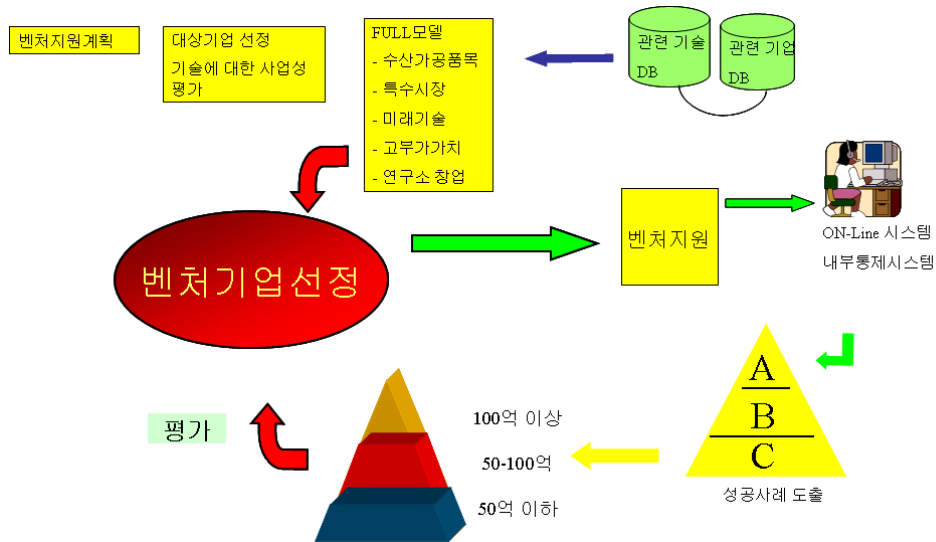
이러한 수산가공업의 벤처화 육성 방안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6-4-3]과 같다.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전체 반복과정을 시스템화 해서 On-line으로 모든 작업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수산가공기업벤처 포털사이트(open market)를 개설해서 기업과 기술DB를 등록(Full모델)<sup>5)</sup>하게 하여, 이를 전문가 집단에서 정확하게 평가한 후 벤처기업을 선정 지원

5) 수산가공관련 기업과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기존정보를 통합하고, 로드맵(road map)을 구성하여 기업과 기술개



하는 시스템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벤처로 성장하여 매출규모별로 지원형태를 차별적으로 운영하면서 육성시켜 나아가는 방안이다.



[그림 6-4-3] 수산가공업의 벤처화 과정 방안

## 나. 검토 사항

수산가공벤처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쟁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산벤처기업지원 포털을 open market으로 개발<sup>6)</sup>해서 운영하는 것이 벤처기업의 부족한 인프라구축을 지원하고 스피드경영과 행정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6-4-4].

이하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산가공벤처기업기준과 대상기업 발굴
- 벤처기업지원프로그램(아웃소싱)을 위한 전문가 집단조직과 운영전반에 대한 내용
- 벤처기업지원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공개성과 법적책임)
- 수산가공산업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강화 방안
- 산학연 연결프로그램 운영방법
- 프로젝트금융시스템 도입방법

발자가 직접 등록하게 하여 기술등록에 대한 일종의 보호 장치를 제공함. 수산가공에 대한 특허기능을 일부 담당함

6) 이는 기보에서 벤처확인고 공시 지원 사이트(<http://www.venturein.or.kr/>)를 운영 중인데 이를 참고하여 수산가공분야 포털을 구성할 뿐 만 아니라 의사결정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림 6-4-4] 벤처 확인 공지 지원 사이트 사례

### 1) 수산가공벤처기업기준과 대상기업 발굴

수산가공벤처기업을 수산가공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를 기준으로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제품과 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수산가공산업 전반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수산가공분야의 전문가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대상기업과 연구과제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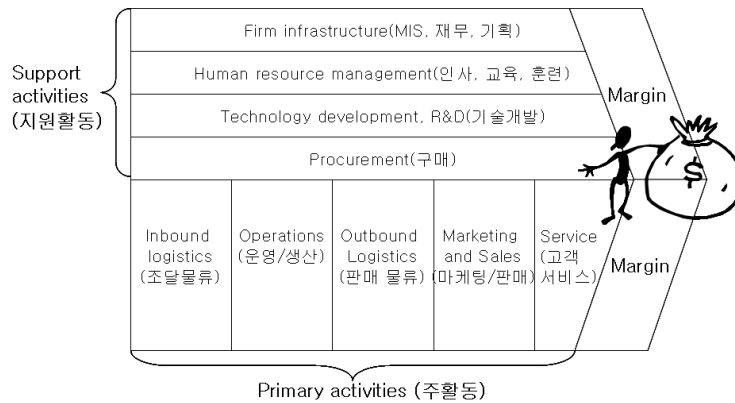
### 2) 벤처기업지원프로그램(아웃소싱)을 위한 전문가 집단조직과 운영전반에 대한 내용

벤처기업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기업을 지원하는 아웃소싱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 6-4-5]과 같이 각각의 지원형태를 회사내부의 가치사설과 연결시켜서 최적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문가집단을 통한 아웃소싱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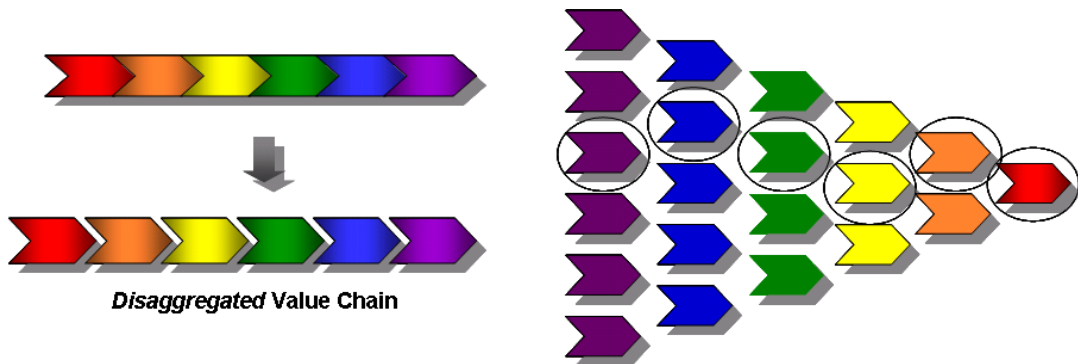
7) 지원프로그램의 표준화를 거쳐 아웃소싱 서비스를 벤처기업에 지원할 때 기업은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러한 아웃소싱의 장점을 충분히 고려할 경우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트렌드이다.





[그림 6-4-5] 기업의 가치사실 구조

기업내부의 가치사실을 분야별로 분할하여 이를 시장에서 각 분야별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치사실업체를 찾는 것이 아웃소싱이다.



[그림 6-4-6] 기업의 가치사실 분할과 시장에서 최적의 분야를 찾아 아웃소싱 하는 모델

수산가공벤처지원 분야도 벤처기업이 각 분야별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업무의 표준화를 통한 전문가집단의 지원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가집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은 검정된 전문가를 공개모집하며 업무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3) 벤처기업지원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공개성과 법적책임)

벤처기업지원은 정부자금이 투입되는 구조이다. 이를 악용해서 전용하며 나누 주기씩 낭비요소가 많았다.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성공확률과 성과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지원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벤처지원프로그램의 공정성 제고 방안으로는 벤처지원에 대한 감사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최종 의사결정자에게 지우는 방안, 평가기관의 최종의사결정자는 선택한 벤처에 대한 관리 감독으로 정확한 평가를 받아 결과가 나쁜 경우 이에 대한 과중한 책임을 지게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벤처지원을 보다 신중하게 할 것이며, 나아가 성공확률을 높이는 방안, 규정을 정하고 범위 안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운영하는 방안, 평가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있다.

#### 4) 수산가공산업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강화 방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를 맺는 경우 하청관계를 통한 수직적인 협력이 대부분이다. 이는 주종관계를 형성하고 진정한 협력관계라고 할 수 없다. 최근 윈윈(win-win)을 통한 파트너 전략을 서로가 추구하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평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객중심으로 시장에서 창출한 수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의 협력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벤처기술에 창의성을 배가하고 성공한 기술개발에 대한 대기업의 인프라 활용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의 연구과제에 대한 등록과 보호 정책(등록제 도입)
  -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여 자금과 기술지원 참여만 허용하여 일정지분을 갖게 함.
  - 상품화 성공 시 마케팅과 판매부분을 대기업에서 담당.
  - 벤처기업의 성공으로 자금시장 진입 시 대기업의 우선적 참여 지분 보장(사전협약).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인프라를 통한 대기업과 경쟁력 우위 확보
  - 프로젝트베이스로 일정관리하며 각각의 일정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
  - 대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시 인력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 중소기업의 특허뿐만 아니라 상용화를 통한 사업모델까지 특허보호
  - 중소기업(연구소)사업 모델자체를 특허수준에서 보호
  - 특허 사업모델에 대한 대기업 참여 유도(지분 등)
  - 특허모델에 대한 대기업 침범 시 중소기업을 위한 피해보상제도 도입
  - 특허관련 소송 시 정부가 경비지원 프로그램 운영

#### 5) 산학연 연결프로그램 운영방법

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가 연결되기 위하여 현재 도입되는 시스템은 클러스터제도 도입이 가장 일반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클러스터도입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서로의 이해관계에 맞물려서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현재는 다국적 경쟁체제로 스피드경영을 요구하



는데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시간이 지체된다면 결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공적인 산학연 연결 프로그램 방안은 다음과 같다.

〈'인적자원교류 중심으로 가상조직을 구성하여 스피드경영시스템 운영'〉

- 벤처기업의 연구과제와 상업화에 대한 부분을 프로젝트로 정리하고 분명한 목표관리 체계구축
  - 제품에 대한 목표관리시스템 도입
  - 각각의 프로젝트에 대한 인력풀운영(과제중심으로 인력자원 구성 : 최적의 자원 DB활용)
  - 과제 중심으로 가상의 조직(virtual organization)을 구성하여 프로젝트관리자 책임 부여
  -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시스템 도입하여 각 구성원의 업무관리
- H/W구조 보다 S/W적인 통합을 통한 스피드 경영
  - 조직간 협정서등 구조적인 협력을 지향하고 인재를 중심으로 프로젝트팀으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인사와 평가제도 운영
  - 인적자원과 장비활용에 대한 업무분장을 통한 task force team 구축
  - 업무진행에 대한 공정한 평가시스템운영하며 TOC(Theory of Constraint) 기업도입

## 6) 프로젝트금융시스템 도입방법

수산가공벤처기업제도를 도입하는 자체가 고수익성을 통한 코스닥등록을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성장구조가 결국은 자본시장과 통하게 되어있다. 가능성 있는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금융기관과 1:1매칭을 시켜 초기부터 필요자금을 모우고 성장단계별로 원활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지원시스템이 벤처기업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프로젝트금융시스템 도입 방안은 다음과 같다.

〈수산가공벤처금융회사 설립〉

- 수산가공벤처기업선별을 엄격하게 하여 금융기관의 관심유도
  - 벤처등록기업의 숫자를 최소화해서 집중적으로 관리
  - 벤처등록 시 코스닥예비등록절차처럼 기준을 금융기관의 프로토콜과 매칭시킴
  - 기업IR과 공시를 아웃소싱형태로 지원(지원토달운영)
- 수산가공금융회사를 설립하여 직접금융지원
  - 100억 펀드조성(전문금융기관의 투자펀드 활용)
  - 금융전문가 육성(병력특혜와 의무 근무기간제도 도입)
  - 해외수산금융기업과 전략적인 제휴
  - 유망 수산가공벤처기업에 대한 실제 투자

## 다. 관련법 개정방안

### 1) 벤처기업의 유형별 조건

벤처기업지정을 통한 중소기업육성정책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1980년대부터 정부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시행하고 기술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본격화하여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신기술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법들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체제를 확립하고, 1990년대에 들어 산업 활동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중소기업 관련법을 정비하였다.

1996년에는 중소기업의 지원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이 설립되었고 7월에는 코스닥시장이 설립되었다. 침체된 국내 경제에 새로운 활력과 고비용·저효율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벤처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그 동안의 여러 지원정책을 집약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997에 제정하여 대량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 만들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원활화,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 입지공급의 지원을 포함한 인프라 확충으로 IMF를 극복하고 벤처기업이 활성화를 하는데 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수산가공벤처기업에 대한 벤처기업지원정책부분은 일반제조기업과 많은 차이가 있다. 벤처기업의 유형별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6-4-27] 벤처기업의 유형별 조건

대상기업	유형별 요건
벤처 투자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투자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 다산벤처(주)의 주식(신주에 한함) 인수총액 또는 출자총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고, 그 비율을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의 직전 6월 이상(연속하여) 유지한 기업</li> </ul>
연구 개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4분기의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이 제조업과 기타산업으로 분류되어 5% 이상인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미만 기업은 연구개발비율 적용을 제외</li> <li>-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직전 2분기 2,500만원 이상으로 적용</li> </ul> </li> <li>* 연구개발비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외)를 통해 지출된 비용에 한함</li> </ul>
신기술기업 (창업하는 기업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허권(특허출원을 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포함)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과 관련된 기술 또는 외국인과의 기술도입계약의 체결에 따라 신고한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연구기관,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하여 이전(양도·양수에 의한 이전)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li> <li>*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학교·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해당 사업에 의해 개발된 기술(기술개발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한함)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기술혁신개발사업(중기청)</li> <li>나. 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부)</li> <li>다. 농업기술개발사업(농림부)</li> <li>라.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9조에 의한 기술개발 지원사업(해양수산부)</li> </ul> </li> </ul>

[표 6-4-27]을 보면, 수산가공벤처에 대한 세부내용은 없고 일반제조나 기타산업으로 분류되어 세부적인 벤처지정과 지원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따라서 수산가공벤처기업을 지정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벤처기업육성정책 참고하여 수산가공분야에 적용하는 연구, 벤처기업기준을 수산가공기업의 특수성감안해서 새로운 조항 제정하는 연구, 기존 중견기업을 수산가공벤처기업으로 인정해서 벤처기업 지원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법제화된다면 수산가공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 2) 기존의 벤처기업육성정책 참고하여 수산가공분야에 적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서 벤처 인정기준으로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9조에 의한 기술개발 지원사업(해양수산부)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해수부에서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선정하여 벤처기업인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수산가공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도 벤처기업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수산가공벤처로 성장할 수 있는 제품(기술)과 기업을 찾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수산가공기업에 대한 벤처기업지원혜택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 3) 벤처기업기준을 수산가공기업의 특수성감안해서 새로운 조항 제정

해양수산 분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9135개 중 해운·항만분야는 5025개, 수산물 수출업 및 가공업, 근해어업 등 수산·어업분야는 3905개, 해양바이오·신기술 등 벤처기업은 205개로 추산하고 있다. 수산·어업분야만 놓고 볼 때 수산물가공업이 3110개소로 가장 많고, 수산물수출업이 604개로 그 다음이다.

이들 업체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부족 특히 수산물 가공업체들은 원료수매 등을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시설투자에 자금을 쏟다보니 이를 마련할 여력이 약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에 기능성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특허나 인증을 받으려면 비용이 들고, 인력문제나 판로개척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영세한 수산물 가공업체로서는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러한 수산가공기업을 벤처로 인정해서 지원하기 위한 특별예산이나 집단 벤처시설을 위한 별도조항이 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금의 일정부분 이상을 수산가공분야에 지원하게 하는 조항이나 수산가공산지에 집단 벤처시설을 설립해서 그 곳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부가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조항을 특별시행규칙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4) 기존 중견기업을 수산가공벤처기업으로 인정해서 벤처기업지원프로그램 적용 가능한 관련법 제정

벤처기업기준에 적합한 신생벤처기업이 수산가공벤처기업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투자 여력이 있는 중견기업을 수산가공벤처기업으로 인정하는 특별조항이 필요하다.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중견기업의 자력으로 연구개발과 기업의 성공적인 발전을 요구할 수 있지만, IT기업 등에서 성공한 벤처기업신화를 수산가공산업부분에서 이룩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에 대한 벤처기업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관련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 5)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이 2006년 설립되어 해양수산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등을 담당하기 시작했는데 비록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민간 기업처럼 비용센터(Cost center)가 아닌 수익사업(Business Center)개념에서 철저한 사업평가를 통한 정부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이 자금부족으로 장기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고수익성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벤처기업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선 순환적 경제효과를 달성하는 구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 제5절 FTA 추진 국가별 맞춤형 가공·유통업의 구조개편 방향

### 1. 수산물 수출구조 변화

#### 가. 국가별 수출구조 변화

우리나라 수산물 총수출량은 [표 6-5-1]에서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2006년 현재 물량 면에서는 367,498톤, 금액면에서는 1,088,948천불이다.

전체적인 수산물 수출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표 6-5-1]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물량 면에서는 2002년 429,884톤에서 2003년 424,785톤, 2004년 406,435톤, 2005년 411,878톤, 2006년 367,498톤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금액 면에서는 2002년 1,160,435천불에서 2003년 1,143,735천불, 2004년의 1,278,638천불, 2005년 1,193,117천불, 2006년 1,088,948천불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물량의 감소 추세에 비해 금액의 증감은 주로 참치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 수산물의 가격과 환율 변동에 기인하고 있다.

한편 수출국의 순위(2006년 금액 기준)를 살펴보면, 일본이 659,523천불로 1위국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수출은 물량면에서는 2002년 179,069톤에서 2003년의 150,155톤, 2004년의 155,566톤, 2005년 136,948톤, 2006년의 113,909톤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음은 미국으로 95,613천불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물량면에서는 태국이 2위). 3위는 중국 75,414천불, 4위 태국 61,688천불, 5위 뉴질랜드 69,383천불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스페인, 대만, 홍콩, 이탈리아, 러시아, 캐나다 등 주요 20개국 이외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수산물은 많은 국가로 수출되고 있으나 이중에는 수출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곳과 수출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국가로 구분된다. [표 6-5-2]는 2002년에서 2006년의 최근 5년간 국가별 수출 변동 추이를 정리하고 있다.

우선 물량면에서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국가로는 아시아에서는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이 위치하고 있고, 유럽국으로는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그리고 오세아니아의 호주, 뉴질랜드이다.

금액면에서는 앞의 물량면에서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국가들과 동일하나, 중국, 홍콩, 러시아 3개국은 물량면에서는 감소를 하였으나 금액면에서는 증가를 보이고 있는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로의 수출 수산물의 구성이 저가격 수산물에서 비교적 가격이 높은 수산물로 변화하고 있거나 가격 상승이 있는 수산물로 전환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물량면에서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 국가는 전통적인 수출대상국이던 일본, 미국을 비롯하여 중국, 대만, 홍콩, 러시아, 멕시코, 싱가포르, 벨기에, 독일 등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국가 중 중국, 홍콩, 러시아, 독일은 수출 금액면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는 물량과 금액이 동시에 감소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국가별 수출 변동 추이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긍정적인 측면은 아시아 및 유럽, 오세아니아에 새로운 수출 신흥국들이 생겨나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홍콩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계 시장이 질적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표 6-5-1] 주요 국가별 수출 실적(2006년 금액 기준 순위)

(단위 : M/T, 천불)

순위	국가	2002		2003		2004		2005		2006	
		증량	금액	증량	금액	증량	금액	증량	금액	증량	금액
	총 계										
1	일본	429,884	1,160,435	424,785	1,143,735	406,435	1,278,638	411,878	1,193,117	367,498	1,088,948
2	미국	179,069	823,117	150,155	740,447	155,566	834,649	136,948	741,062	113,909	659,523
3	중국	25,462	77,625	22,964	80,385	20,947	81,130	22,694	88,174	20,821	95,613
4	태국	44,290	48,345	55,708	70,769	68,073	124,102	64,865	108,031	44,423	75,414
5	뉴질랜드	46,295	34,492	55,304	38,354	42,688	37,565	60,210	57,383	65,443	61,688
6	스페인	18,395	21,167	26,170	30,487	31,884	44,544	35,172	60,478	21,872	39,383
7	대만	24,071	33,077	31,555	46,148	22,606	36,702	23,237	31,519	19,488	28,167
8	홍콩	5,827	16,857	5,799	17,305	7,811	20,177	4,708	13,196	4,639	18,453
9	이탈리아	1,876	8,445	3,691	14,350	1,867	15,334	1,718	8,895	1,574	12,514
10	러시아	7,094	12,155	5,954	11,356	5,937	14,030	4,835	11,253	4,619	11,620
11	캐나다	1,985	2,340	2,570	2,714	3,016	4,249	3,346	4,468	6,602	8,015
12	멕시코	7,559	10,058	4,088	8,011	2,197	6,172	4,853	9,025	2,356	7,247
13	인도네시아	242	586	1,730	1,593	286	1,006	870	1,644	7,543	6,834
14	베트남	9,389	4,999	9,355	5,502	6,487	4,337	8,595	5,869	9,658	6,466
15	호주	2,307	1,279	5,446	3,162	6,462	4,885	7,459	4,570	8,731	5,194
16	싱가포르	2,775	6,609	2,822	6,740	1,915	6,551	1,503	5,029	1,080	4,675
17	벨기에	2,374	5,470	1,144	4,161	707	3,868	1,555	4,095	494	4,301
18	독일	1,716	2,827	1,858	3,584	1,312	3,002	858	2,338	755	2,828
19	필리핀	397	1,007	341	966	401	1,764	278	1,469	554	2,797
20	프랑스	6,224	3,659	1,800	1,783	680	849	931	1,158	3,042	2,624
	기타	1,640	3,983	1,256	3,412	679	2,838	830	3,254	700	2,480
	합계	40,897	42,338	35,075	52,506	24,914	30,884	26,413	30,207	29,195	33,112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통계연보, 주요국가별 실적



반면 부정적인 측면은 전통적인 수출국이었던 일본과 미국의 수출 감소가 지속된다는 점이다. 이들 2개국이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2006년 기준)은 물량면에서 약 37%, 금액면에서는 69%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 대한 수산물 수출 감소는 우리나라 수출 규모의 절대적인 축소로 나타나고 있어 적절한 수출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

[표 6-5-2] 국가별 수출 변동 비율

	물량	금액
증가	태국(2.9), 뉴질랜드(11.6), 스페인(9.1), 이탈리아(7.7), 캐나다(38.8), 인도네시아(375.7), 베트남(3.5), 호주(46.8), 필리핀(18.2), 프랑스(36.6)	중국(5.4), 태국(19.7), 뉴질랜드(17.3), 스페인(22.8), 홍콩(6.1), 이탈리아(18.9), 러시아(0.1), 캐나다(39.3), 인도네시아(128.5), 베트남(8.6), 호주(52.2), 독일(2.3), 필리핀(38.1), 프랑스(14.8)
감소	일본(△3.7), 미국(△10.3), 중국(△4.6), 대만(△2.7), 홍콩(△1.7), 러시아(△9.8), 멕시코(△5.7), 싱가포르(△20.0), 벨기에(△9.6), 독일(△16.9), 기타국(△15.7)	일본(△1.3), 미국(△4.9), 대만(△1.4), 멕시코(△4.2), 싱가포르(△7.8), 벨기에(△5.0), 기타국(△10.1)

주: 2002년~2006년 사이의 평균 변동값(%)임

## 나. 제품별 수출구조 변화

수산물 수출을 제품 분류별로 살펴보면 [표 6-5-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수출 수산물의 제품별 구성비는 양적으로는 냉동이 68.8%, 이외 기타 11.9%, 신선 냉장 5.9%, 기타조제 5.4%, 건조 2.5%, 염장 염수장 2.1%, 활어 1.7%, 밀폐용기에 넣은 것 1.6%, 훈제 0.1% 순이다.

금액면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양적인 측면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단가 높은 활어(6.9%), 신선 냉장(11.8%)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6-5-3] 제품별 수출실적

(단위 : M/T, 천불)

국가	2002		2003		2004		2005		2006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총 계	429,884	1,160,435	424,785	1,129,385	406,435	1,278,638	411,878	1,193,117	367,498(100.0)	1,088,948(100.0)
활 어	7,201	68,396	6,923	78,640	7,344	91,572	8,514	89,695	6,238( 1.7)	74,712( 6.9)
신선,냉장	32,158	153,268	29,195	141,837	27,076	144,090	24,237	136,795	21,648( 5.9)	128,473( 11.8)
냉 동	281,040	548,541	273,933	532,385	270,793	654,680	278,865	595,113	252,891( 68.8)	538,462( 49.4)
훈 계	233	1,189	164	955	205	4,847	114	773	71( 0.1)	631( 0.1)
건 조	11,456	78,685	10,987	76,827	10,966	80,161	9,444	64,162	9,364( 2.5)	74,681( 6.9)
염장:염수장	8,636	20,497	11,709	22,464	14,123	23,934	13,135	22,616	7,734( 2.1)	19,008( 1.7)
이외 기타	38,026	91,205	49,385	97,437	39,067	92,381	47,788	118,495	43,902( 11.9)	105,657( 9.7)
밀폐용기에 넣은 것	11,239	42,940	10,561	41,533	8,567	39,862	6,318	30,063	5,855( 1.6)	29,208( 2.7)
기 타 조 계	39,895	155,714	31,928	137,307	28,294	147,111	23,463	135,405	19,795( 5.4)	118,116( 10.8)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통계연보, 주요 제품별 실적



[표 6-5-4]는 제품 분류별 수출 수산물의 변동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외 기타를 제외하고는 전부 감소를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출 감소가 가장 현저한 제품 분류는 훈제이고 다음으로 염장 염수장, 밀폐 용기에 넣은 것 순이다. 이들 수출 수산물은 가공품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 이들 분류 제품 수출경쟁력은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신선 냉장, 활어 등 선도를 중심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나 원료 중심의 냉동 제품 수출은 감소 대열에는 있지만 감소폭이 가공 제품에 비해 높지 않다.

이상 제품 분류별로 수산물 수출 특징을 살펴보았듯이 저가격 저품질 단순 가공품을 중심으로 하는 수산가공품의 수출은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반면 고가격 고선도 원료 중심의 수산물 수출품은 감소폭이 10%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물 수출 전략 제품은 이러한 측면에서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표 6-5-4] 제품 분류별 수출 변동 비율

	물량	금액
증가	이외 기타(7.1)	이외 기타(8.7)
감소	냉동(△3.2), 신선 냉장(△10.6), 기타조제(△16.4), 활어(△5.4), 건조(△7.4), 밀폐용기에 넣은 것(△16.8), 염장 염수장(△24.1), 훈제(△41.1)	냉동(△9.3), 신선 냉장(△5.6), 기타조제(△10.4), 활어(△9.4), 건조(△1.8), 밀폐용기에 넣은 것(△13.7), 염장 염수장(△10.7), 훈제(△51.2)

주: 2002년~2006년 사이의 평균 변동값(%)임.

#### 다. 어종별 수출구조 변화

어종별 수산물 수출 구조를 살펴보면 [표 6-5-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종별 수출 수산물 구성에 있어 양적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참치로 전체의 27.3%를 점하고 있다. 다음으로 오징어 10.0%, 새우 3.2%, 미역 3.1%, 굴 2.9%, 전갱이 2.6, 돔 2.1%, 김 2.0% 등의 순이다.

[표 6-5-5] 주요 품종별 수출실적(2006년 금액 기준 순위)

(단위 : M/T, 천불)

순위	2002			2003			2004			2005			2006			
	수량	금액	중량	수량	금액	중량	수량	금액	중량	수량	금액	중량	수량	금액	중량	
총 계	429,884	1,160,435	424,785	1,129,385	1,278,638	406,435	1,193,117	367,498(100.0)	1,088,948(100.0)	411,878	1,193,117	367,498(100.0)	1,088,948(100.0)	411,878	1,193,117	367,498(100.0)
1 참 치	97,573	273,524	91,792	224,640	249,915	79,660	226,399	100,191( 27.3)	227,964( 20.9)	91,835	226,399	100,191( 27.3)	227,964( 20.9)	91,835	226,399	100,191( 27.3)
2 김	6,275	37,709	6,969	41,646	45,031	6,899	54,244	7,475( 2.0)	61,730( 5.7)	7,581	54,244	7,475( 2.0)	61,730( 5.7)	7,581	54,244	7,475( 2.0)
3 굴	17,217	76,122	16,610	74,699	76,641	14,660	61,204	10,578( 2.9)	55,508( 5.1)	11,308	61,204	10,578( 2.9)	55,508( 5.1)	11,308	61,204	10,578( 2.9)
4 넙 치	4,026	39,638	4,163	47,947	55,423	4,626	63,684	3,855( 1.0)	51,969( 4.8)	5,802	63,684	3,855( 1.0)	51,969( 4.8)	5,802	63,684	3,855( 1.0)
5 오징어	72,156	65,089	60,566	70,839	113,020	69,834	102,131	36,688( 10.0)	47,399( 4.4)	65,044	102,131	36,688( 10.0)	47,399( 4.4)	65,044	102,131	36,688( 10.0)
6 캐비아	3,184	52,891	3,174	49,240	46,817	3,102	56,741	2,897( 0.8)	44,019( 4.0)	3,760	56,741	2,897( 0.8)	44,019( 4.0)	3,760	56,741	2,897( 0.8)
7 봉장어	8,232	57,732	7,095	52,075	51,939	6,209	49,161	5,583( 1.5)	43,009( 3.9)	6,216	49,161	5,583( 1.5)	43,009( 3.9)	6,216	49,161	5,583( 1.5)
8 계 살	2,768	23,664	3,654	36,149	46,426	4,615	41,163	4,537( 1.2)	36,210( 3.3)	4,365	41,163	4,537( 1.2)	36,210( 3.3)	4,365	41,163	4,537( 1.2)
9 톳	4,682	33,588	4,723	36,325	30,614	4,524	23,939	3,447( 0.9)	23,773( 2.2)	4,138	23,939	3,447( 0.9)	23,773( 2.2)	4,138	23,939	3,447( 0.9)
10 미 역	10,218	20,400	13,271	21,900	35,885	22,549	29,868	11,356( 3.1)	21,761( 2.0)	21,455	29,868	11,356( 3.1)	21,761( 2.0)	21,455	29,868	11,356( 3.1)
11 한 천	433	7,128	447	7,821	8,550	479	15,529	734( 0.2)	18,535( 1.7)	724	15,529	734( 0.2)	18,535( 1.7)	724	15,529	734( 0.2)
12 바지락	9,510	24,188	8,322	21,177	24,998	9,474	18,040	5,894( 1.6)	17,766( 1.6)	7,012	18,040	5,894( 1.6)	17,766( 1.6)	7,012	18,040	5,894( 1.6)
13 진 북	0	14	21	970	3,375	70	9,024	415( 0.1)	17,123( 1.6)	214	9,024	415( 0.1)	17,123( 1.6)	214	9,024	415( 0.1)
14 삼 치	2,696	10,216	4,301	12,232	16,465	3,775	21,086	4,939( 1.3)	15,535( 1.4)	5,231	21,086	4,939( 1.3)	15,535( 1.4)	5,231	21,086	4,939( 1.3)
15 피조개	3,717	29,226	3,322	25,548	19,729	2,303	19,054	1,353( 0.4)	14,379( 1.3)	2,008	19,054	1,353( 0.4)	14,379( 1.3)	2,008	19,054	1,353( 0.4)
16 새 우	4,909	3,908	5,240	4,760	4,162	1,823	5,836	11,790( 3.2)	14,012( 1.3)	5,346	5,836	11,790( 3.2)	14,012( 1.3)	5,346	5,836	11,790( 3.2)
17 이빨고기	498	4,486	527	4,995	9,565	949	6,607	858( 0.2)	11,653( 1.1)	515	6,607	858( 0.2)	11,653( 1.1)	515	6,607	858( 0.2)
18 진갱이	8,136	16,795	5,639	7,971	17,712	10,036	11,848	9,543( 2.6)	11,035( 1.0)	8,241	11,848	9,543( 2.6)	11,035( 1.0)	8,241	11,848	9,543( 2.6)
19 돔	4,907	6,941	7,133	8,991	7,392	5,155	9,005	7,537( 2.1)	10,940( 1.0)	6,094	9,005	7,537( 2.1)	10,940( 1.0)	6,094	9,005	7,537( 2.1)
20 새꼬리민태	7,329	8,241	8,489	10,042	11,829	8,792	15,315	6,139( 1.7)	9,565( 0.9)	9,165	15,315	6,139( 1.7)	9,565( 0.9)	9,165	15,315	6,139( 1.7)
기 타	161,418	368,935	169,327	369,418	403,150	146,901	353,239	131,689( 35.8)	335,063( 30.8)	145,824	353,239	131,689( 35.8)	335,063( 30.8)	145,824	353,239	131,689( 35.8)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통계연보, 주요 품종별 실적



금액면에서는 참치가 2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김 5.7%, 굴 5.1%, 넙치 4.8%, 오징어 4.4%, 캐비아 4.0%, 붕장어 3.9%, 게살 3.3%, 톳 2.2, 미역 2.0% 등의 순이다. 앞의 양적인 순위와는 차이가 있다.

[표 6-5-6]은 어종별 수출 변동 비율을 정리한 것인데, 많은 어종이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물량, 금액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는 김, 넙치, 게살, 미역, 한천, 전복, 삼치, 새우, 이빨고기, 전갱이, 돔 등이다. 이 중 전복의 증가 비율(물량 133.2%, 금액 1833.4%)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고가격 수출 수산물을 대표하고 있다.

한편 참치의 경우는 물량에서는 약간의 증가가 있으나 금액면에서 감소하였고, 반면 오징어, 새꼬리 민태는 양적인 면에서는 감소하였으나 금액면에서 증가를 나타내고 있어 시장 가격의 상승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종별 수출 구조 변화는 전통적인 수출 수산물인 참치, 전갱이를 제외한 굴, 붕장어, 톳, 바지락, 피조개 등은 감소하고 국내 양식 수산물을 중심으로 김, 넙치, 미역, 한천, 전복 등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어종도 많이 있다. 따라서 국내 양식 수산물의 고품질 유지 및 고가격 수산물의 개발을 통한 수산물 수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표 6-5-6] 어종별 수출 변동 비율

	물량	금액
증가	참치(1.3), 김(4.6), 넙치(1.6), 게살(14.2), 미역(12.0), 한천(15.7), 전복(133.2), 삼치(20.1), 새우(63.8), 이빨고기(26.7), 전갱이(11.3), 돔(14.9)	김(13.2), 넙치(8.3), 오징어(1.3), 게살(14.5), 미역(6.8), 한천(30.0), 전복(1833.4), 삼치(20.1), 새우(47.4), 이빨고기(37.1), 전갱이(7.4), 돔(13.8), 새꼬리민태(7.9)
감소	굴(△11.1), 오징어(△12.8), 캐비아(△1.1), 붕장어(△9.1), 톳(△7.1), 바지락(△10.1), 피조개(△21.7), 새꼬리민태(△2.3), 기타(△4.7)	참치(△3.8), 굴(△7.2), 캐비아(△3.3), 붕장어(△7.0), 톳(△7.5), 바지락(△5.9), 피조개(△15.8), 기타(△4.7)

주: 2002년~2006년 사이의 평균 변동값(%)임.

## 2. 주요국 수산물 수출

### 가. 일본

#### 1) 수출 현황

일본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수산물 수출 대상국으로 위치하여 왔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표 6-5-7]. 2006년 현재 물량면에서는 113,909톤으로 금액면에서는 659,523천불로 이는 1998년에 비해 물량면에서는 약 68%, 금액면에서는 약 55% 감소한 수준이다.

이 같은 일본 수출 감소는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출 감소로 나타나면서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표 6-5-7] 일본 수출 추이

(단위 : kg, \$)

연도별	구 분	
	중량	금액
2006	113,909,498	659,523,135
2005	136,947,776	741,061,534
2004	155,565,660	834,649,258
2003	150,155,408	740,446,658
2002	179,069,144	823,117,449
2001	179,334,760	924,872,663
2000	215,479,250	1,125,247,889
1999	205,700,226	1,155,210,566
1998	225,609,218	895,511,698
1997	189,480,217	1,017,529,673
1996	190,887,680	1,217,476,437
1995	192,944,887	1,280,983,720
1994	200,802,342	1,278,551,603
1993	195,869,502	1,168,241,166
1992	219,782,004	1,148,567,279
1991	217,845,669	1,163,058,638
1990	263,303,440	1,140,713,084
1989	280,910,343	1,295,665,509
1988	357,880,660	1,463,830,675

자료 : 수산물 수출입 시스템(trade.suhyup.co.kr)/국가별 현황/국가별 연도별 수출입



일본으로의 주요 수출 수산물은 [표 6-5-8]에서 정리하고 있듯이 2006년 실적 기준으로 양적인 면에서는 황다랑어(냉동)가 1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눈다랑어(냉동) 11.2%, 기타어류피레트(냉동) 6.1%, 넙치(활어) 3.3%, 전갱이(냉동) 3.2%, 붕장어 피레트(신선 냉장) 2.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액면에서는 눈다랑어(13.9%), 기타어류피레트(냉동) 9.3%, 넙치(활어) 7.6%, 황다랑어(냉동) 5.9%, 붕장어피레트(신선 냉장) 3.1%, 전갱이(냉동) 1.2%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적인 측면의 상위 어종이나 금액적 측면의 상위 어종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6-5-8] 일본 수출 물량, 금액 5순위 어종

구분	국 명 및 품 명 country and commodity(2006)	중 량 weight(kg)	순 위	금 액 value(us\$)	순 위
	일본(JAPAN)	113,909,498(100.0)		659,523,135(100.0)	
1	넙치(활어)	3,729,404( 3.3)	④	50,385,478( 7.6)	③
2	황다랑어(냉동)	14,372,231( 12.6)	①	39,229,211( 5.9)	④
3	눈다랑어(냉동)	12,780,660( 11.2)	②	91,723,759( 13.9)	①
4	전갱이(냉동)	3,667,827( 3.2)	⑤	7,757,775( 1.2)	
5	붕장어피레트(신선,냉장)	2,456,192( 2.2)		20,703,351( 3.1)	⑤
6	기타어류피레트(냉동)	6,929,948( 6.1)	③	61,247,210( 9.3)	②

자료 : 수산물 수출입 시스템(trade.suhyup.co.kr)/국가별 현황/국가별 연도별 수출입

주 : 2006년 12월 기준

앞의 상위 어종 이외에도 일본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HS 코드별로 정리하면 [표 6-5-9]와 같다. 전체 수출 품목수는 대략 203 HS 코드 품목으로 구성되고 있다.

HS 코드 분류별로 살펴보면 우선 활어의 경우는 붕장어와 넙치가 주어종이다. 신선·냉장의 경우는 삼치와 참다랑어가, 냉동의 경우는 황다랑어, 눈다랑어가 주어종이다.

냉동 가공품으로는 냉동 피레트, 굴 가공품이 주요 수출품이고, 산것/신선·냉장에서는 전복, 피조개, 바지락 등이 중심이다. 건조품에서는 툇, 김, 미역, 한천 등이 주요 수출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외에도 캐비아 대용물, 게살 가공품 등이 수출되고 있다.



[표 6-5-9] 일본 수출 수산물 구성

국 명 및 품 명 country and commodity(2006)		중 량 weight(kg)	금 액 value(us\$)
일본(JAPAN)		113,909,498	659,523,135
106-90-3010	갯지렁이	2,457	88,454
301-10-9000	활어(금잉어, 열대어이외 기타/관상용/활어)	24	75
301-92-1000	실장어(앵굴라종, 활어)	607	91,999
301-92-9000	뱀장어기타(앵굴라종, 활어)	4,270	65,055
301-99-2000	방어(활어)	11,874	42,776
301-99-4000	돔(활어)	27,352	278,691
301-99-5000	붕장어(활어)	2,162,771	16,656,890
301-99-6000	갯장어(활어)	200,228	3,751,974
301-99-8000	넙치(활어)	3,729,404	50,385,478
301-99-9020	복어(활어)	8,939	371,816
301-99-9040	볼락(적어포함(활어))	14,000	215,836
301-99-9070	미꾸라지(활어)	100	575
301-99-9091	노래미(활어)	11,100	116,892
301-99-9099	기타어류(활어)	10,224	79,737
302-22-0	가자미(신선, 냉장)	11,366	25,029
302-33-0	가다랑어또는줄무늬버니토우(신선, 냉장)	8,925	12,681
302-35-0	참다랑어(신선, 냉장)	682,271	2,641,985
302-39-0	기타(신선, 냉장)	219,948	539,091
302-64-0	고등어(신선, 냉장)	94,224	404,789
302-69-2000	방어(신선, 냉장)	677,697	1,345,071
302-69-4000	돔(신선, 냉장)	18,183	41,056
302-69-5000	붕장어(신선, 냉장)	31,043	270,234
302-69-7000	전갱이(신선, 냉장)	70,072	108,632
302-69-8000	꽁치(학꽁치포함(신선, 냉장))	10,472	54,248
302-69-9010	삼치(신선, 냉장)	2,819,862	10,128,845
302-69-9020	복어(신선, 냉장)	47,247	435,994
302-69-9030	병어(신선, 냉장)	80,571	453,803
302-69-9040	아귀(신선, 냉장)	5,825	23,303
302-69-9090	기타어류(신선, 냉장)	537,564	4,202,552
302-70-2000	어란(신선, 냉장/피레트, 어육제외)	7	87
303-19-0	기타	865,419	4,794,858
303-29-0	기타연어류(냉동)	111,679	549,654
303-31-0	넙치(냉동)	15	410
303-33-0	서대솔레아종(냉동)	24,281	111,551
303-39-0	기타넙치류(냉동)	24,330	33,587
303-41-0	날개다랑어, 긴지느러미다랑어(냉동)	702,815	1,539,452
303-42-0	황다랑어(냉동)	14,372,231	39,229,211



303-43-0	가다랑어,줄무늬버니토우(냉동)	109,382	266,990
303-44-0	눈다랑어(냉동)	12,780,660	91,723,759
303-45-0	참다랑어(냉동)	55,970	712,528
303-46-0	남방참다랑어(냉동)	29,450	301,566
303-49-0	기타(냉동)	2,404,393	13,481,829
303-50-0	청어(냉동)	905,614	574,704
303-60-0	대구(냉동)	44,252	193,476
303-71-0	정어리(냉동)	27,500	26,419
303-74-0	고등어(냉동)	260,936	898,085
303-75-0	곱상어와기타상어(냉동)	4,228	2,268
303-78-0	민대구(냉동)	175	351
303-79-1000	명태(냉동)	3,000	3,300
303-79-3000	갈치(냉동)	94,824	194,708
303-79-4090	기타돔(냉동)	1,093,342	2,593,287
303-79-5000	붕장어(냉동)	54,560	385,983
303-79-6000	조기(냉동)	24,693	33,833
303-79-7000	전갱이(냉동)	3,667,827	7,757,775
303-79-9010	삼치(냉동)	677,814	2,282,702
303-79-9020	복어(냉동)	29,150	161,428
303-79-9060	임연수어(냉동)	838,323	1,081,738
303-79-9070	볼낙(적어포함(냉동))	18,360	32,863
303-79-9080	새꼬리민태(냉동)	13,692	44,178
303-79-9091	아귀(냉동)	48	35
303-79-9098	이빨고기(냉동)	2,500	29,595
303-79-9099	기타어류(냉동)	1,549,860	3,581,414
303-80-2010	명란(냉동/피레트,어육제외)	235,466	1,864,552
303-80-2090	어란(명란냉동 이외 기타/피레트,어육제외)	502,856	3,535,016
304-10-1010	붕장어피레트(신선,냉장)	2,456,192	20,703,351
304-20-2000	붕장어피레트(냉동)	639,957	4,120,394
304-20-5000	참다랑어피레트(냉동)	115,612	2,092,676
304-20-9000	기타어류피레트(냉동)	6,929,948	61,247,210
304-90-1090	기타연육(냉동)	51,260	98,766
304-90-9000	기타어육(냉동)	18,560	53,095
305-20-1000	어류간장(건조,훈제,염장,염수장)	302	4,237
305-20-4010	어란(명태/염장,염수장)	4,154	53,131
305-20-4090	란(명태,조기,청어 이외 기타/염장,염수장)	6,213	34,730
305-30-1000	어류의피레트(건조)	1,635	34,748
305-59-2000	멸치(건조)	19,358	171,684
305-59-4000	조기(굴비)	168	2,488
305-59-8000	실치(건조)	4,000	17,758
305-59-9000	기타어류(건조)	2,294	19,268

305-63-1000	멸치젓(염장, 염수장)	132,375	227,323
305-63-9000	멸치기타(염장, 염수장)	10,440	17,520
305-69-5000	고등어(염장, 염수장)	750	7,595
305-69-9000	기타어류(염장, 염수장)	24,838	149,596
306-11-0	닭새우류(냉동)	14,384	243,167
306-13-1000	새우살(새우와보리새우(냉동))	880	955
306-13-9000	기타새우와보리새우(냉동)	9,990,361	11,328,638
306-14-1000	게살(냉동)	24,075	66,762
306-14-2000	왕게(냉동)	6,755	77,038
306-14-3000	꽃게(냉동)	4,064	13,920
306-14-9000	기타게(냉동)	32,036	187,658
306-19-0	기타갑각류(냉동)	122,000	199,173
306-23-1000	새우와보리새우(산것/신선, 냉장)	33,317	672,454
306-23-2000	새우와보리새우(건조)	1,000	4,607
306-23-3000	새우와보리새우(염장, 염수장)	240	1,379
306-24-1090	기타게(산것, 신선, 냉장)	17,329	137,186
307-10-1090	굴(굴치페이외기타/산것, 신선, 냉장)	1,143,938	7,977,771
307-10-2000	굴(냉동)	3,425,162	15,244,855
307-10-3000	굴(건조)	9,000	118,861
307-21-0	가리비과의조개(산것/신선, 냉장)	750	5,755
307-29-1000	가리비과의조개(냉동)	1	4
307-29-3000	가리비과의조개(염장, 염수장)	7	78
307-39-1000	홍합(냉동)	12,000	36,468
307-49-1010	갑오징어(냉동)	19,832	63,745
307-49-1020	오징어(냉동)	849,637	1,343,178
307-49-2000	오징어(염장, 염수장)	45	450
307-49-3000	오징어(건조)	3,924	36,236
307-51-0	문어(산것/신선, 냉장)	12,135	114,809
307-9-1010	문어(냉동)	227	754
307-591020	낙지(냉동)	27,352	69,214
307-59-9000	문어(산것,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이외 기타)	6,735	19,513
307-91-1190	기타백합(산것, 신선, 냉장)	14,500	34,230
307-91-1200	전복(산것, 신선, 냉장)	402,828	16,523,500
307-91-1300	소라(산것, 신선, 냉장)	1,639,491	8,481,571
307-91-1400	진주조개(산것/신선, 냉장)	8,380	26,948
307-91-1500	피조개(산것/신선, 냉장)	1,347,195	14,330,294
307-91-1600	새조개(산것/신선, 냉장)	2,304	28,865
307-91-1700	개아지살(산것/신선, 냉장)	371,812	4,400,411
307-91-1800	바지락(산것/신선, 냉장)	5,174,742	13,527,905
307-91-1910	재첩(산것/신선, 냉장)	956,027	3,019,357
307-91-1990	기타연체동물(신선, 냉장)	1,152,327	6,954,969



307-91-9010	성게(산것,신선,냉장)	23,966	1,223,132
307-91-9020	해삼(산것,신선,냉장)	760	4,724
307-91-9090	기타수생동물(성게,해삼,우렁쉥이 이외 기타/산것/신선,냉장)	188,028	952,843
307-99-1120	개량조개(냉동)	35,560	141,866
307-99-1140	개이지살(냉동)	55,160	590,772
307-99-1150	피조개(냉동)	805	21,897
307-99-1160	소라(냉동)	22,308	150,358
307-99-1190	기타연체동물(냉동)	114,065	1,289,102
307-99-1920	우렁쉥이(냉동)	2,000	13,128
307-99-1990	기타수생동물(해삼,우렁쉥이 이외 기타/냉동)	5,756	107,351
307-99-2990	기타수생동물(해삼,우렁쉥이 이외 기타/건조)	1,500	12,581
307-99-3190	기타(염장,염수장)	40	193
307-99-3910	성게(염장,염수장)	125,458	5,612,397
307-99-3990	기타수생동물(해삼,우렁쉥이 이외 기타/염장,염수장)	30	262
511-91-1010	부화용알(브라인슈림프알)	373	22,090
511-91-2000	어류의웨이스트	35,519	396,267
511-91-9000	어류,갑각류,연체동물,수행동물의 생산품(기타)	74,589	625,759
1212-20-1010	김(마른것)	345,084	7,468,995
1212-20-1090	김(마른것,냉장,냉동 이외 기타)	44,010	839,803
1212-20-2010	미역(건조)	1,059,270	8,158,521
1212-20-2020	미역(염장)	1,621,490	2,614,696
1212-20-2040	미역(냉동)	3,858,858	3,546,259
1212-20-2090	미역(건조,염장,냉장,냉동한것 이외 기타)	120	1,118
1212-20-3010	투스(건조)	3,316,994	23,035,660
1212-20-3090	투스(건조,냉장,냉동 이외 기타)	43,831	242,701
1212-20-4090	파래(신선한것,냉장,냉동 이외 기타)	47,495	913,846
1212-20-5010	다시마(염장)	292,854	623,571
1212-20-5090	다시마(염장,냉장,냉동 이외 기타)	196,340	1,060,788
1212-20-6090	우뭇가사리(냉동 이외 기타)	571,840	5,120,844
1212-20-7019	돌가사리(냉동 이외 기타)	4,504	92,725
1212-20-7029	뜬세모가사리(냉동 이외 기타)	13,097	333,295
1212-20-7039	불등가사리(냉동 이외 기타)	100,646	1,120,196
1212-20-8019	도박	21,500	54,896
1212-20-8039	말(냉동 이외 기타)	10,830	99,995
1212-20-9099	기타해조류(냉동 이외 기타)	541,486	2,765,456
1302-31-1000	실한천	228,571	5,597,188
1302-31-2000	분한천	335,960	8,685,218
1302-31-9000	한천(실한천,분한천 이외 기타)	68,848	2,347,113
1504-10-1000	어류의간유,분획물(상어의간유)	15,300	41,456

1603-0-3000	어류의엑스	3,700	18,222
1603-0-4000	어류의즙	27,265	47,135
1603-0-9000	갑각류, 연체동물, 수생동물의 엑스,즙(어류 이외 기타)	485,675	2,401,395
1604-11-9000	연어(통조림외 조제품)	314,625	1,926,384
1604-12-1000	청어(밀폐용기에넣은것)	930	8,916
1604-14-1019	다랑어(기타(밀폐용기에넣은것))	33,247	172,203
1604-14-1029	가다랑어(기타(밀폐용기에넣은것))	92,512	406,590
1604-14-9000	다랑어,가다랑어,대서양버니토우(기타조제)	441	1,422
1604-15-1000	고등어(밀폐용기에넣은것)	3,080	10,252
1604-15-9000	고등어(통조림외 조제품)	31,687	186,459
1604-19-1010	꽂치(밀폐용기에넣은것)	18,515	89,306
1604-19-1090	기타어류(밀폐용기에넣은것)	1,780	12,922
1604-19-9010	쥐치포(통조림외 조제품)	32	1,112
1604-19-9090	기타어류(통조림외조제품)	88,486	1,282,138
1604-20-1000	생선페이스트	20	85
1604-20-3000	생선소시지	259	1,466
1604-20-4010	생선묵(게맛)	131,942	431,347
1604-20-4090	생선묵(기타)	127,987	483,388
1604-20-9000	기타조제 또는 저장처리한어류	259,822	3,753,681
1604-30-1000	캐비아	10	1,951
1604-30-2000	캐비아대용물	2,626,876	41,494,264
1605-10-1090	기타계살(통조림,훈제외)	3,444,888	29,752,720
1605-10-9000	기타계(통조림외 조제품)	6,620	51,510
1605-40-9000	기타갑각류(통조림외)	240	311
1605-90-1010	굴(밀폐용기에넣은것)	237,544	1,559,051
1605-90-1020	홍합(밀폐용기에넣은것)	69,010	173,624
1605-90-1030	바지락(밀폐용기에넣은것)	13,706	133,234
1605-90-1040	새조개(밀폐용기에넣은것)	1,712	45,759
1605-90-1070	골뱅이(밀폐용기에넣은것)	8,493	105,057
1605-90-1080	오징어(밀폐용기에넣은것)	9,699	46,661
1605-90-1091	전복(밀폐용기에넣은것)	161	2,137
1605-90-1099	기타연체동물(밀폐용기에넣은것)	103,785	384,845
1605-90-9010	조미오징어	361,474	2,788,825
1605-90-9020	해삼(기타조제)	1,654	21,157
1605-90-9040	홍합(자숙)	90,899	217,489
1605-90-9090	기타연체동물(밀폐용기에넣은것이외)	343,378	9,746,782
2104-10-2000	어류의수우프,브로드와 제조용 조제품	600	4,799
2106-90-4010	김(조제한식용해조류)	360,987	8,803,684
2106-90-4090	조제한식용해조류(김 이외 기타)	242	1,445
2301-20-1000	어류의 분.조분 및 펠리트	471,740	376,360
2301-20-9000	어류외기타 분.조분 및 펠리트	435,810	1,442,984

자료 : 수산물 수출입 시스템 (trade.suhyup.co.kr)/국가별 현황/국가별 연도별 수출입

주 : 2006년 12월 기준



## 2) 일본 수출을 위한 가공·유통업 구조 개편 방향

우리나라 수산물 소비 구조의 고도화 및 자원 감소로 인해 전체적인 일본 수출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하지만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전통적 수출 수산물 이외에 새롭게 수출 증가를 보이고 있는 품목(김, 넙치, 미역, 한천, 전복, 삼치, 전갱이 등)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향후 대일 수출 주요 품목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어종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 증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공·유통업의 구조 개편 내지는 경쟁력 강화 전략이 도모될 필요가 있다.

[표 6-5-10] 일본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가공·유통업의 대응 전략

	가공업	유통업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적인 필레트 중심의 수산물 가공</li> <li>• 다량어 수출은 거의 대부분 원어 수출로 가공 수출은 전무</li> <li>• 단순 동결 가공 중심의 원료 수출</li> <li>• 해조류를 중심으로 하는 가공품 수출이 증대하고 있으나 일본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맞춤형 고품질 가공은 약함</li> <li>• 일본 IQ제도로 수출물량 확대 한계</li> <li>• 일본 국내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고품질 냉동 가공품 개발, 생산, 수출은 전무</li> <li>• 가공생산 대부분이 일본 바이어의 OEM 생산 중심임.</li> <li>• 이미 중국으로 대부분 이전되어 저가격 가공 수출은 이미 경쟁력 상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망 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어, 전갱이, 삼치 등의 원어 수출을 위한 위판 물량 격감.</li> <li>• 수출업자의 산지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 수산물 구매 형태가 거의 없어지었음.</li> <li>• 패류를 중심으로 하는 산지 생산자 직구매 유통 형태는 존재하고 있으나 이미 자원 고갈 및 가격 문제에 봉착하고 있음.</li> <li>• 굴, 톳, 미역 등 수출 유통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함. 수출입업자를 대신하는 산지 수집상에 의존하는 유통 체계.</li> <li>• 국내 다량어 유통 구조는 장외도매시장 거래로 이루어지고 수출 물량 대부분은 일본 현지 산지 양륙 - 수출로 이루어지고 있음.</li> <li>• 비위생적 물류시스템 문제(활어차, 냉장차의 구조적 문제 등)</li> </ul>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수출 전략 상품의 공동 브랜드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li> <li>• 가공품의 일본 원산지 강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산 브랜드 고품질 인지도 제고</li> <li>• IQ제도에 대응하는 수량 조절 전략 - 초고품질 한정 판매 가공품 생산 수출 전략</li> <li>• 일본 수산물 국제 박람회 참가를 통한 한국산 홍보 전략</li> <li>• 다량어 가공 수출 등 익일 물류 배송을 전제로 하는 신선 냉장 가공 수산물 생산 수출 전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수산물 전문 유통 시장 조성을 통한 가격 협상력 강화</li> <li>• 공동 수출 유통 물류업 지원을 통한 가공비/물류비 경쟁력 강화</li> <li>• 국제 마케팅 강화 - 유통 물류 채널의 시스템화 및 구조화</li> <li>• 활어 수출을 확대를 위한 물류 장비의 현대화 사업(ex, 현대식 활어차, 냉장 수송차 등)</li> <li>• 일본 시장내(특정 대형유통업체를 지정) 한국 우수 수산물 전문 판매 코너 설치(한류와 함께 우리 수산물 요리 강좌 홍보 및 판매 전략)</li> </ul>

## 나. 미 국

## 1) 수출 현황

미국은 과거 참치 통조림을 시작으로 비교적 가공 수산물에 대한 수출 시장으로 위치하고 있었으나 1980년대 후반 약 9만톤, 200,000천불대에서 1990년대에 들어서는 급속히 감소하여 2006년 현재 20,820톤의 95,612천불로 격감하였다[표 6-5-11].

수산물 대미 수출은 약 5.6%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대미 수출 의존 비율 약10%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이러한 수산물 대미 수출을 중·단기적으로는 전체 수산물 수출의 약 10%대까지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적으로는 약 4만톤, 금액적으로 200,000천불 수준까지 증대시키는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 6-5-11] 미국 수출 추이

(단위 : kg, \$)

연도별	연도말	
	중량	금액
2006	20,820,904	95,612,657
2005	22,693,871	88,174,276
2004	20,947,486	81,129,772
2003	22,963,722	80,384,574
2002	25,462,364	77,624,913
2001	27,280,810	82,209,570
2000	29,214,888	78,711,662
1999	23,469,209	76,385,742
1998	20,099,027	62,573,248
1997	21,522,987	70,048,619
1996	29,067,005	81,625,482
1995	29,415,032	93,305,487
1994	26,095,465	94,090,138
1993	23,893,330	107,198,929
1992	26,522,747	112,128,725
1991	35,193,785	132,174,534
1990	51,927,959	140,677,755
1989	76,008,813	185,003,738
1988	93,254,016	228,137,304

자료 : 수산물 수출입 시스템(trade.suhyup.co.kr)/국가별 현황/국가별 연도별 수출입

주 : 2006년 12월 기준



미국으로의 주요 수출품은 [표 6-5-12]에서 정리하고 있듯이 양적으로는 오징어(냉동) 12.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굴(냉동) 7.9%, 멸치(건조) 4.5%, 미역(염장) 4.5%, 김(마른 것) 3.4% 등의 순이다.

한편 금액적으로는 굴(냉동)이 8.8%로 가장 규모가 있고 다음으로 이빨고기(냉동) 7.6%, 김(마른 것) 5.4%, 멸치(건조) 3.8%, 오징어(냉동) 3.4% 등의 순이다.

[표 6-5-12] 미국 수출 증량, 금액 순위 5위

구분	국 명 및 품 명 country and commodity(2006)	중 량 weight(kg)	순 위	금 액 value(us\$)	순 위
	미국(U.S.A)	20,820,904(100.0)		95,612,657(100.0)	
1	이빨고기(냉동)	517,871( 2.5)		7,264,994( 7.6)	②
2	기타어류(냉동)	190,998( 0.9)		1,624,303( 1.7)	
3	멸치(건조)	932,926( 4.5)	③	3,591,478( 3.8)	④
4	굴(냉동)	1,654,270( 7.9)	②	8,388,926( 8.8)	①
5	오징어(냉동)	2,663,225( 12.8)	①	3,232,149( 3.4)	⑤
6	김(마른것)	716,243( 3.4)	⑤	5,143,618( 5.4)	③
7	미역(염장)	930,439( 4.5)	④	2,380,053( 2.5)	

자료 : 수산물 수출입 시스템(trade.suhyup.co.kr)/국가별 현황/국가별 연도별 수출입  
주 : 2006년 12월 기준

그 외에도 다양한 수산물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HS코드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6-5-13]과 같다. 미국 수출 수산물은 약 157개 HS코드 품목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는 일본 시장에 비해서는 약 50개 정도의 HS코드 품목이 적은 수준이다.

앞의 상위 대미 수출 수산물을 제외한 주요 수출 수산물은 고등어(냉동, 염장 염수장), 꽁치(냉동, 염장 염수장), 기타어류(냉동, 염장 염수장), 생선묵(계맛, 기타) 등이 차지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대미 수출 수산물은 굴과 같은 미국 현지인을 위한 수출보다는 미국 거주 한국인을 1차 시장이 중심으로 이루지는 수출이 특징이다.



[표 6-5-13] 미국 수출 수산물 구성

미국(U.S.A)		20,820,904	95,612,657
106-903010	갯지렁이	2,004	52,909
301-10-9000	활어(금잉어, 열대어이외 기타/관상용/활어)	293	207,182
301-99-8000	넙치(활어)	32,071	776,280
301-99-9070	미꾸라지(활어)	80	684
302-22-0	가자미(신선,냉장)	1,536	40,699
302-29-0	기타넙치류(신선,냉장)	4,517	110,663
302-39-0	기타(신선,냉장)	8,020	99,201
302-40-0	청어(신선,냉장)	68	2,445
302-66-0	뱀장어앵กุล라종(신선,냉장)	1,062	6,223
302-69-1000	명태(신선,냉장)	17,387	153,805
302-69-3000	갈치(신선,냉장)	616	7,010
302-69-5000	붕장어(신선,냉장)	333	3,976
302-69-8000	꽁치(학꽁치포함(신선,냉장))	2,992	12,740
302-69-9010	삼치(신선,냉장)	10	101
302-69-9090	기타어류(신선,냉장)	422	9,037
303-31-0	넙치(냉동)	67,077	507,941
303-39-0	기타넙치류(냉동)	27,409	53,047
303-44-0	눈다랑어(냉동)	190,532	2,817,410
303-45-0	참다랑어(냉동)	348	14,967
303-49-0	기타(냉동)	39,853	493,823
303-60-0	대구(냉동)	3,674	19,923
303-74-0	고등어(냉동)	198,800	770,562
303-79-1000	명태(냉동)	36,406	95,558
303-79-3000	갈치(냉동)	6,321	23,267
303-79-4010	옥돔(냉동)	120	2,570
303-79-6000	조기(냉동)	3,269	29,936
303-79-8000	꽁치(학꽁치포함(냉동))	194,126	252,902
303-79-9010	삼치(냉동)	3,303	9,825
303-79-9060	임연수어(냉동)	65,425	133,129
303-79-9070	볼락(적어포함(냉동))	21,137	45,658
303-79-9091	아귀(냉동)	6,000	14,340
303-79-9094	밀크피쉬(냉동)	3,510	49,870
303-79-9095	민어(냉동)	41,673	235,630
303-79-9098	이빨고기(냉동)	517,871	7,264,994
303-79-9099	기타어류(냉동)	190,998	1,624,303
303-80-2010	명란(냉동/피레트, 어육제외)	17,246	112,553
303-80-2090	어란(명란냉동 이외 기타/피레트, 어육제외)	5,786	65,049
304-10-1010	붕장어피레트(신선,냉장)	111	3,535



304-10-9000	기타어육(신선,냉장)	16	906
304-20-1000	명태피레트(냉동)	13,241	83,935
304-20-2000	붕장어피레트(냉동)	35,242	328,981
304-20-3000	대구피레트(냉동)	17,161	89,478
304-20-9000	기타어류피레트(냉동)	78,781	673,146
305-20-4010	어란(명태/염장,염수장)	90,283	672,908
305-20-4090	어란(명태,조기,청어 이외 기타/염장,염수장)	38,372	166,875
305-30-1000	어류의피레트(건조)	336	5,028
305-49-1000	멸치(훈제)	6,040	46,340
305-49-9000	기타어류(훈제)	4,668	15,165
305-51-0	대구(건조)	41	818
305-59-2000	멸치(건조)	932,926	3,591,478
305-59-3000	명태(북어(건조))	31,669	337,394
305-59-4000	조기(굴비)	25,305	250,040
305-59-8000	실치(건조)	340	1,194
305-59-9000	기타어류(건조)	27,874	262,908
305-63-1000	멸치젓(염장,염수장)	44,722	116,581
305-63-9000	멸치기타(염장,염수장)	10,563	39,539
305-69-3000	갈치(염장,염수장)	52,949	263,919
305-69-5000	고등어(염장,염수장)	129,869	802,262
305-69-6000	조기(염장,염수장)	1,940	70,300
305-69-8000	꽂치(염장,염수장)	4,252	16,169
305-69-9000	기타어류(염장,염수장)	134,913	767,338
306-13-9000	기타새우와보리새우(냉동)	3,041	3,274
306-14-1000	계살(냉동)	12,247	69,988
306-14-2000	왕게(냉동)	8	62
306-14-3000	꽃게(냉동)	10,340	72,560
306-14-9000	기타게(냉동)	23,742	29,558
306-23-2000	새우와보리새우(건조)	1,230	14,617
306-23-3000	새우와보리새우(염장,염수장)	21,114	53,245
306-24-1020	대게(산것,신선,냉장)	0	0
306-24-1090	기타게(산것,신선,냉장)	41,617	810,830
306-24-3000	게(염장,염수장)	36	247
306-29-3000	기타갑각류(염장,염수장)	13,015	127,414
307-10-1090	굴(굴치패이외기타/산것,신선,냉장)	135,433	369,414
307-10-2000	굴(냉동)	1,654,270	8,388,926
307-10-3000	굴(건조)	6,000	97,250
307-21-0	가리비과의조개(산것/신선,냉장)	55	286
307-39-2000	홍합(건조)	40	800
307-41-2000	오징어(산것/신선,냉장)	78,612	201,536
307-49-1020	오징어(냉동)	2,663,225	3,232,149

307-49-2000	오징어(염장, 염수장)	25,168	163,496
307-49-3000	오징어(건조)	49,610	316,855
307-51-0	문어(산것/신선, 냉장)	294	3,528
307-59-1010	문어(냉동)	7,163	24,662
307-59-1020	낙지(냉동)	8,206	51,905
307-59-2000	문어(건조)	51	540
307-59-9000	문어(산것,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이외 기타)	3,633	30,740
307-91-9020	해삼(산것, 신선, 냉장)	24,115	317,838
307-91-9030	우렁챙이(산것, 신선, 냉장)	24,167	216,905
307-91-9090	기타수생동물(성게, 해삼, 우렁챙이 이외 기타/산것/신선, 냉장)	821	9,027
307-99-1140	개아지살(냉동)	8,301	114,375
307-99-1910	해삼(냉동)	167	1,473
307-99-1920	우렁챙이(냉동)	18,288	80,365
307-99-1990	기타수생동물(해삼, 우렁챙이 이외 기타/냉동)	10,030	57,224
307-99-3930	해파리(염장, 염수장)	5,503	28,648
511-91-1010	부화용알(브라인슈림프알)	380	14,652
511-91-2000	어류의웨이스트	1,560	19,303
1212-20-1010	김(마른것)	716,243	5,143,618
1212-20-1030	김(냉동한것)	27,722	303,878
1212-20-1090	김(마른것, 냉장, 냉동 이외 기타)	122,264	490,274
1212-20-2010	미역(건조)	484,348	2,046,145
1212-20-2020	미역(염장)	930,439	2,380,053
1212-20-2030	미역(냉장)	7,492	8,095
1212-20-2090	미역(건조, 염장, 냉장, 냉동한것 이외 기타)	6,854	63,663
1212-20-3010	툇(건조)	488	11,851
1212-20-3030	툇(냉동)	1,000	950
1212-20-3090	툇(건조, 냉장, 냉동 이외 기타)	535	3,773
1212-20-4010	파래(신선한것)	14	105
1212-20-4030	파래(냉동)	60,281	284,446
1212-20-4090	파래(신선한것, 냉장, 냉동 이외 기타)	54,123	195,393
1212-20-5010	다시마(염장)	197,044	732,094
1212-20-5030	다시마(냉동)	3,742	7,205
1212-20-5090	다시마(염장, 냉장, 냉동 이외 기타)	351,031	1,254,129
1212-20-9019	코토니밋스피노잠(냉동 이외 기타)	170	3,640
1212-20-9099	기타해조류(냉동 이외 기타)	10,306	26,446
1302-31-1000	실한천	200	6,777
1302-31-2000	분한천	1,080	39,710
1603-0-4000	어류의죽	46,063	75,441
1603-0-9000	갑각류, 연체동물, 수생동물의 엑스즙 (어류 이외 기타)	11,740	32,660



1604-11-1000	연어(밀폐용기에 넣은것)	26,186	189,108
1604-12-9000	청어(통조림외조제품)	150	663
1604-14-1011	다랑어(기름담근것(밀폐용기에 넣은것))	157,039	707,058
1604-14-1012	다랑어(보일드한것(밀폐용기에 넣은것))	1,575	8,770
1604-14-1019	다랑어(기타(밀폐용기에 넣은것))	76,369	368,266
1604-14-1021	가다랑어(기름담근것(밀폐용기에 넣은것))	95,524	591,038
1604-14-9000	다랑어,가다랑어,대서양버니투우(기타조제)	1,765	14,672
1604-15-1000	고등어(밀폐용기에 넣은것)	144,030	290,233
1604-16-1000	멸치(밀폐용기에 넣은것)	7,414	66,077
1604-16-9000	멸치(통조림외 조제품))	3,265	87,562
1604-19-1010	꽁치(밀폐용기에 넣은것)	415,800	809,270
1604-19-1090	기타어류(밀폐용기에 넣은것)	36,829	371,811
1604-19-9010	쥐치포(통조림외 조제품)	18,636	183,606
1604-19-9090	기타어류(통조림외조제품)	17,891	131,653
1604-20-1000	생선페이스트	4,000	38,244
1604-20-3000	생선소시지	38,451	201,396
1604-20-4010	생선묵(게맛)	359,955	959,747
1604-20-4090	생선묵(기타)	1,372,644	4,099,712
1604-20-9000	기타조제 또는 저장처리한어류	63,307	557,209
1604-30-2000	캐비아대용물	32,653	766,750
1605-10-1010	계살(밀폐용기에 넣은것)	120	930
1605-10-1090	기타계살(통조림,훈제외)	786,283	4,687,584
1605-20-1000	새우와보리새우(밀폐용기에 넣은것)	200	1,061
1605-90-1010	굴(밀폐용기에 넣은것)	2,247,852	9,137,299
1605-90-1020	홍합(밀폐용기에 넣은것)	1,614	7,120
1605-90-1030	바지락(밀폐용기에 넣은것)	5,549	34,249
1605-90-1070	골뱅이(밀폐용기에 넣은것)	215,121	1,456,967
1605-90-1080	오징어(밀폐용기에 넣은것)	20,282	105,586
1605-90-1099	기타연체동물(밀폐용기에 넣은것)	14,789	55,899
1605-90-2010	오징어(훈제)	29,164	302,984
1605-90-9010	조미오징어	92,612	711,105
1605-90-9020	해삼(기타조제)	3,027	76,608
1605-90-9040	홍합(자숙)	1,325	4,990
1605-90-9090	기타연체동물(밀폐용기에 넣은것이외)	161,425	893,208
2104-10-2000	어류의수우프,브로드와 제조용 조제품	7,648	23,937
2106-90-4010	김(조제한식용해초류)	2,910,006	13,647,321
2106-90-4090	조제한식용해초류(김 이외 기타)	171,834	1,262,477

자료 : 수산물 수출입 시스템(trade.suhyup.co.kr)/국가별 현황/국가별 연도별 수출입

주 : 2006년 12월 기준

## 2) 미국 수출을 위한 가공·유통업 구조 개편 방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미국 수출은 굴 등 일부 미국 현지인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수출 수산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미국 거주 한국인을 위한 수출이 중심적이다.

따라서 미국 수산물 수출 확대(중단기적으로는 현재보다 100% 증대 목표)를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은 전략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표 6-5-14] 수산물 미국 수출 확대 전략

	기존제품	신제품
기존시장	<시장침투전략> •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미국 거주 한국인 교포 시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 • 미국 현지인 중심의 굴 시장 확대 전략	<제품개발전략> • 미국 거주 한국 교포 시장을 타겟으로 수산물 신제품을 출시 판매하는 전략 • 미국 현지인을 위해 수산물 신제품을 생산 수출 판매하는 전략
신시장	<시장개발전략> • 기존 한국 교포에게 제공된 수산물을 미국 현지인을 중심으로 마케팅하는 전략	<다각화전략> • 완전히 신제품을 생산하여 미국 현지인 또는 한국 교포 시장 내의 틈새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 판매하는 전략

상기 전략 중 중·단기적으로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침투전략과 시장개발전략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침투전략으로는 한미FTA 체결에 따라 수산물 관세는 철폐되면서 실질적인 가격 인하로 인한 가격효과로 기존 수산물로 미국 현지 교포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수 수출 수산물의 품목 선정 및 공동브랜드화로 우리나라 수산물의 품질에 대한 평가제고 노력을 통한 시장 확대가 가능하고, 시장 확대를 위한 경쟁가격 지지정책으로서 달러환율변동헤징에 관련한 외국환관리정책(예를 들면 수산물 수출 환변동 보험 등)을 수립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수출 굴에 대한 FDA 승인과 HACCP 인증 지원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 수산물의 안전성 제고 노력을 통한 시장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미국 수출을 위한 연결 정보 제공, 수산물 수출입 전문 통관 대행사 지정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시장개발전략은 일본의 스시바와 같이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한 친숙화 및 고급



동양 식문화를 통한 웰빙 시푸드 소비확대 전략으로 미국 시장 확대를 위한 한국 수산물의 안전성 및 건강성 홍보(예를 들면, 출산부를 위한 우리나라 미역(Soup)의 우수성 홍보 등), 김을 활용한 캘리포니아 롤과 같이 기존 수산물을 활용하는 시장개발 전략, 미국 현지 한국식품 판매 소매점을 통한 시식회 및 음식 요리 교실, 일본의 스시와 같은 일등 대표 우리나라 수산물 선정 및 관련 식품 집중 지원 등의 전략이 있다.

## 다. 중 국

### 1) 수출 현황

수산물 중국 수출은 근년에 들어 시작된 새로운 수출시장으로서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6-5-15]은 우리나라에서 중국 수출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IMF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산물이 대량으로 수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에 의한 수입으로 한국 수산물의 상대적 저가격 평가에 따른 수출 증대 현상이다.

중국 수산물 수입 즉 한국의 중국 수출은 2006년 현재 물량면에서는 44,422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물량의 약12%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면에서는 75,413천불로 전체 수출의 약 6.9%를 점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중국의 수산물 수입 형태는 가격을 중시하는 수입으로 어종에 고집하기 보다는 가격에 보다 중점을 두는 수입이었다.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이기 보다는 년도마다 상당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어 중국 국내의 안정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성격의 수입은 아직 아닌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시장은 아직은 불안정적이고 고가격 수산물 보다는 저가격 수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6-5-15] 중국 수출 추이

(단위 : kg, \$)

연도별	연도말	
	중량	금액
2006	44,422,727	75,413,985
2005	64,864,711	108,030,950
2004	68,072,919	124,101,909
2003	55,707,737	70,768,851
2002	44,290,421	48,344,967
2001	53,672,978	55,708,787
2000	93,133,872	84,089,645
1999	53,099,966	58,854,358
1998	138,241,607	97,041,274
1997	131,721,660	114,392,759
1996	51,401,394	68,060,226
1995	46,484,122	64,228,557
1994	6,771,144	18,524,173
1993	3,373,524	9,551,931
1992	69,508	644,182
1991	548,426	495,183

자료 : 수산물 수출입 시스템(trade.suhyup.co.kr)/국가별 현황/국가별 연도별 수출입  
 주 : 2006년 12월 기준

중국으로의 주요 수출 수산물은 [표 6-5-16]에서 정리하고 있듯이 2006년 실적 기준으로 양적인 측면에서는 오징어(냉동)가 23.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명태(냉동) 9.9%, 기타 넙치류(냉동) 6.9%, 어류의 분. 조분 및 펠리트 6.8%, 미역(염장) 6.2% 순으로 상위를 점하고 있다.

금액면으로는 역시 오징어(냉동)가 14.3%로 1순위이고, 다음으로 대구(냉동) 7.1%, 기타 넙치류(냉동) 6.8%, 명태(냉동) 5.8%, 기타 어류(냉동) 4.5% 순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수출 어종 구성에서 냉동 형태의 명태, 대구, 넙치는 가공 원료로 수출되는 어종으로 중국 국내 소비 시장을 위한 수출보다는 가공 원료로서 수출되어 중국 현지 가공 후 재차 한국이나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원자재로서의 수산물 수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5-16] 중국 수출 중량, 금액 순위 5위

	국 명 및 품 명 country and commodity(2006)	중 량 weight(kg)	순 위	금 액 value(us\$)	순 위
구분	중국(PR.CHNA)	44,422,727(100.0)		75,413,985(100.0)	
1	기타넙치류(냉동)	4,246,457( 6.9)	③	5,104,704( 6.8)	③
2	대구(냉동)	1,334,918( 3.9)		5,320,123( 7.1)	②
3	명태(냉동)	4,396,917( 9.9)	②	4,337,428( 5.8)	④
4	기타어류(냉동)	2,527,859( 5.7)		3,385,439( 4.5)	⑤
5	오징어(냉동)	10,596,951( 23.9)	①	10,816,125( 14.3)	①
6	미역(염장)	2,741,270( 6.2)	⑤	907,421( 1.2)	
7	어류의 분. 조분 및 펠리트	3,012,000( 6.8)	④	1,632,835( 2.2)	

자료 : 수산물 수출입 시스템(trade.suhyup.co.kr)/국가별 현황/국가별 연도별 수출입

주 : 2006년 12월 기준

앞의 상위 어종 이외에 중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HS 코드별로 정리하면 [표 6-5-17]와 같다. 전체 수출 품목수는 대략 110개 HS코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앞의 일본 203품목, 미국 157개 품목에 비해 아직은 다양성이 적은 수준이다.

냉동 갈치, 냉동 삼치, 냉동 새꼬리민태, 김(마른것) 등이 수출되고 있다. 이러한 수산물 중국 현지임은 물론이고 중국 거주 한국인을 위한 수산물 공급과 겹치면서 앞으로 증대할 가능성은 있다.

[표 6-5-17] 중국 수출 수산물 구성

중국(PR.CHNA)		44,422,727	75,413,985
301-10-9000	활어(금잉어, 열대어이외 기타/관상용/활어)	36	120
301-99-9099	기타어류(활어)	1,574	10,066
302-29-0	기타넙치류(신선,냉장)	2,200	3,300
302-69-9090	기타어류(신선,냉장)	160	1,007
303-19-0	기타	121,201	86,335
303-21-0	송어(냉동)	178,553	107,850
303-29-0	기타연어류(냉동)	95,285	168,575
303-31-0	넙치(냉동)	9,287	70,447
303-32-0	가자미(냉동)	22,094	16,351
303-33-0	서대솔레아종(냉동)	110,747	79,362
303-39-0	기타넙치류(냉동)	4,246,457	5,104,704
303-41-0	날개다랑어,긴지느러미다랑어(냉동)	48,827	93,718



303-42-0	황다랑어(냉동)	152,810	802,786
303-44-0	눈다랑어(냉동)	46,707	379,463
303-49-0	기타(냉동)	162,842	766,711
303-50-0	청어(냉동)	269,316	167,433
303-60-0	대구(냉동)	1,334,918	5,320,123
303-74-0	고등어(냉동)	750,298	1,241,449
303-75-0	곱상어와기타상어(냉동)	25,114	58,656
303-78-0	민대구(냉동)	931,328	627,294
303-79-1000	명태(냉동)	4,396,917	4,337,428
303-79-3000	갈치(냉동)	1,067,512	1,478,570
303-79-4090	기타돔(냉동)	440,552	817,871
303-79-5000	붕장어(냉동)	6,446	4,174
303-79-6000	조기(냉동)	5,940	3,297
303-79-7000	전갱이(냉동)	534,914	890,360
303-79-8000	꽂치(학꽂치포함(냉동))	252,888	146,847
303-79-9010	삼치(냉동)	1,387,388	3,081,797
303-79-9060	임연수어(냉동)	287,762	385,201
303-79-9070	불낙(적어포함(냉동))	237,907	382,026
303-79-9080	새꼬리민태(냉동)	2,013,729	3,332,799
303-79-9095	민어(냉동)	122,286	90,565
303-79-9096	가오리(냉동)	134,780	170,233
303-79-9098	이빨고기(냉동)	29,944	432,138
303-79-9099	기타어류(냉동)	2,527,859	3,385,439
303-80-2010	명란(냉동/피레트, 어육제외)	29,172	177,175
303-80-2090	어란(명란냉동 이외 기타/피레트, 어육제외)	145,368	483,675
304-20-1000	명태피레트(냉동)	39,038	41,531
304-20-2000	붕장어피레트(냉동)	183,956	489,747
304-20-4000	가자미피레트(냉동)	3,600	6,661
304-20-5000	참다랑어피레트(냉동)	6,095	146,608
304-20-9000	기타어류피레트(냉동)	55,010	239,918
305-20-4090	어란(명태,조기,청어 이외 기타/염장,염수장)	20,740	69,071
305-51-0	대구(건조)	1,120	5,699
305-59-3000	명태(북어(건조))	118,155	655,830
305-59-9000	기타어류(건조)	44	561
305-63-1000	멸치젓(염장,염수장)	117,000	96,249
306-13-9000	기타새우와보리새우(냉동)	225,457	341,550
306-14-1000	계살(냉동)	2,025	9,741
306-14-2000	왕게(냉동)	137,959	1,129,346
306-14-3000	꽃게(냉동)	62,885	162,640
306-14-9000	기타게(냉동)	734,975	4,241,065
306-23-1000	새우와보리새우(산것/신선,냉장)	8,520	52,560



306-23-2000	새우와보리새우(건조)	10,000	49,955
306-24-1090	기타게(산것,신선,냉장)	47,998	577,399
307-10-2000	굴(냉동)	255,223	1,074,296
307-29-1000	가리비과의조개(냉동)	16,580	40,953
307-49-1010	갑오징어(냉동)	904,230	2,395,330
307-49-1020	오징어(냉동)	10,596,951	10,816,125
307-49-2000	오징어(염장,염수장)	69,000	48,990
307-49-3000	오징어(건조)	23,742	100,909
307-51-0	문어(산것/신선,냉장)	9	148
307-59-9000	문어(산것,신선,냉장,냉동,건조 이외 기타)	12,325	9,244
307-91-1500	피조개(산것/신선,냉장)	3,500	10,951
307-91-1910	재첩(산것/신선,냉장)	6,000	17,204
307-91-9020	해삼(산것,신선,냉장)	200	3,224
307-99-1190	기타연체동물(냉동)	278,059	2,433,320
307-99-2920	해삼(건조)	523	124,872
511-91-2000	어류의웨이스트	204,933	72,130
511-91-9000	어류,갑각류,연체동물,수행동물의 생산품(기타)	84,300	22,576
1212-20-1010	김(마른것)	277,010	2,704,403
1212-20-1090	김(마른것,냉장,냉동 이외 기타)	19,494	726,417
1212-20-2010	미역(건조)	436	13,477
1212-20-2020	미역(염장)	2,741,270	907,421
1212-20-2090	미역(건조,염장,냉장,냉동한것 이외 기타)	132	900
1212-20-3010	투스(건조)	81,267	450,669
1212-20-5010	다시마(염장)	116,547	38,547
1212-20-7039	불등가사리(냉동 이외 기타)	1,500	27,059
1212-20-9099	기타해조류(냉동 이외 기타)	9,665	205,442
1302-31-1000	실한천	12,320	272,029
1302-31-2000	분한천	850	21,232
1504-20-0	어류의유지,분획물(간유 제외)	201	6,834
1603-0-3000	어류의엑스	199,725	229,222
1603-0-4000	어류의즙	419,569	929,538
1604-14-1011	다랑어(기름담근것(밀폐용기에넣은것))	19,236	117,523
1604-14-1012	다랑어(보일드한것(밀폐용기에넣은것))	15,138	204,291
1604-14-1019	다랑어(기타(밀폐용기에넣은것))	140,378	1,198,359
1604-14-1021	가다랑어(기름담근것,밀폐용기에넣은것)	562	10,930
1604-14-1039	버니토우(기타(밀폐용기에넣은것))	100	5,100
1604-14-9000	다랑어,가다랑어,대서양버니토우(기타조제)	13,363	121,460
1604-15-1000	고등어(밀폐용기에넣은것)	28,493	67,099
1604-15-9000	고등어(통조림외 조제품)	453	2,925

1604-19-1010	꽂치(밀폐용기에넣은것)	98,010	369,425
1604-19-1090	기타어류(밀폐용기에넣은것)	1,804	8,767
1604-19-9090	기타어류(통조림외조제품)	55,034	412,319
1604-20-4090	생선목(기타)	28,755	214,295
1604-20-9000	기타조제 또는 저장처리한어류	13,474	75,993
1604-30-1000	캐비아	2	272
1604-30-2000	캐비아대용물	201,982	1,391,231
1605-20-9090	새우와보리새우(기타)	42,874	164,419
1605-90-1070	골뱅이(밀폐용기에넣은것)	43,697	516,786
1605-90-1080	오징어(밀폐용기에넣은것)	5,040	16,189
1605-90-1099	기타연체동물(밀폐용기에넣은것)	31,212	110,053
1605-90-9010	조미오징어	6,184	48,515
1605-90-9020	해삼(기타조제)	3,457	512,846
1605-90-9090	기타연체동물(밀폐용기에넣은것이외)	144,510	260,466
2104-10-2000	어류의수우프,브로드와 제조용 조제품	8,452	86,963
2106-90-4010	김(조제한식용해조류)	92,143	1,008,058
2106-90-4090	조제한식용해조류(김 이외 기타)	13,118	51,750
2301-20-1000	어류의 분.조분 및 펠리트	3,012,000	1,632,835
2301-20-9000	어류의 기타 분.조분 및 펠리트	162,000	80,178

## 2) 중국 수출을 위한 가공·유통업 구조 개편 방향

우리나라 수산물 소비 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저가격 수산물을 중심으로 중국 수출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현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전형적인 수출 수산물 이외에 가공 원료로서 수출되는 부분이 아직은 상당히 차지하고 있어 순수한 의미로서의 수산물 수출은 그리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새롭게 수출 증가를 보이고 있는 품목(김, 미역, 굴, 고등어, 삼치 등)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향후 대 중국 수출 주요 품목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 시장을 겨냥하는 저가격 수산물과 고가격 수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공·유통업의 구조 개편 내지는 경쟁력 강화 전략이 도모될 필요가 있다.



[표 6-5-18] 중국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가공·유통업의 대응 전략

	가공업	유통업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 냉동 수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동결 가공</li> <li>• 전통적인 펠레트 중심의 수산물 가공</li> <li>• 해조류를 중심으로 하는 가공품 수출이 증대하고 있으나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맞춤형 가공은 약함</li> <li>• 중국 국내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냉동 가공품 개발, 생산, 수출은 전무</li> <li>• 중국 내의 저가격 가공은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어, 전갱이, 삼치, 오징어 등의 원어 수출을 위한 위판 물량은 매년 변동이 심함.</li> <li>• 중국 수입업자의 국내 시장 직접 개입수산물 구매 형태는 아직 본격적이지 않음.</li> <li>• 원양 오징어를 중심으로 하는 대형 생산 수산물의 거래가 확대되고 있음.</li> <li>• 굴, 톳, 미역 등 수출 유통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함.</li> <li>• 중국 현지 수산물 도매시장의 형태가 점점 현대화 되어가고 있음.</li> <li>• 중국 현지 직접 진입을 위한 물류 시스템이 부재(수출 수산물을 위한 국내 냉동차, 활어차 운송, 이틀 운송 수단이 중국 수입수산물의 국내 운송 등을 담당).</li> </ul>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수출 전략 상품의 공동 브랜드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li> <li>• 전복, 해삼, 김, 미역 등 초고품질 한정 판매 양식 가공 수산물 생산 수출 전략</li> <li>• 양식 가공품의 한국산 브랜드 고품질 인지도 제고</li> <li>• 중국 수산물 국제 박람회 참가를 통한 한국산 홍보 전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수출 수산물 전문 유통 무역업체 육성을 통한 수출 시장 확대</li> <li>• 공동 수출 유통 물류업 지원을 통한 가공비/물류비 경쟁력 강화</li> <li>• 활어 수출을 확대를 위한 국내 물류의 중국 진입 사업(활어차, 냉장 수송차 등의 중국 운송)</li> <li>• 중국 시장 진출 국내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한국 우수 수산물 전문 판매 코너 설치(한류와 함께 우리 수산물 요리 강좌 홍보 및 판매 전략)</li> </ul>

## 제6절 브랜드 중심의 수산물 소비촉진

### 1. 서론

수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작업이 생산자, 협회와 단체, 정부 등에서 끊임없이 추진되어 왔다. 최근에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브랜드 중심의 수산물제품화 규격화 표준화가 이루어져 소비자의 신뢰성을 획득하여 소비 확대를 위한 노력을 도모하고 있다.

농축산물분야에서 브랜드개발과 마케팅 및 수출증대를 위한 연구개발과 판매촉진을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에 수산물 소비와 수출증대를 위한 브랜드 확산 전략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수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 전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브랜드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브랜드 작업에 대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의 소비홍보정책과 지원을 통해 한국형 수산물 소비특성을 개발할 수 있다면 수산물 소비의 새로운 장이 열려 수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기존 농산물 및 수산물의 홍보 전략을 분석하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홍보 전략을 찾아서 새로운 소비특성을 개발하여 수산물 소비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산물 소비홍보와 한국형 수산물 소비특성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브랜딩작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브랜드 유형을 발굴하고 소비촉진을 통한 새로운 소비 특성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은 기존의 농축산물 브랜딩작업에 대한 자료 연구, 브랜드 내용정리와 수산브랜드 분석, 수산물소비홍보와 브랜딩 전략, 한국형 수산물 소비특성 개발 등이다.

### 2. 농산물 브랜드 연구

#### 가. 농축산물브랜드 현황

농축산물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소비자에게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홍보하는 사이트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농축산물 브랜드사업을 지원하



는 사이트가 있다. 여기에서는 농산물브랜드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http://www.afmc.co.kr/home/agribrand/index.html>

[그림 6-6-1] 농산물 브랜드 전시관 사이트

본 사이트는 브랜드의 일반내용정리, 농축산물 브랜드 현황과 정책, 농산물 브랜드에 대한 의식실태조사와 지역별 부분별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와 소개 자료를 정리하여 일반인들에게 농산물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되었다.

아직 브랜딩작업이 진행되는 단계에 있는 수산물에 비교하여 앞선 지원 사이트이지만 농산물자체 브랜드 난립으로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농산물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공급과잉기조 현상과 대형 유통업체의 확산 및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으로 유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농산물시장에서도 상품의 차별화를 통한 마케팅 전략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농산물도 브랜드화를 통해 상품차별화 및 경쟁우위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산지의 생산자조직을 규모화, 전문화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정확한 품질관리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 우리 농산물이 외국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 품목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 나. 농축산물브랜드화 추진과 문제점

농축산물 브랜드화 추진에 있어 아직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개별브랜드 및 유사브랜드의 혼재로 브랜드 인지도 및 차별성 저하되거나 소규모 생산자조직이나 농가 중심의 브랜드 개발로 브랜드 차별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브랜드화 전략 대부분이 브랜드 네이밍이나 포장디자인 개발과 같은 단순 활동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포장재 업체나 비전문가 등이 심볼 위주로 단순 제작하여 유사브랜드가 난립하고, 브랜드의 이미지 저하로 생명력이 짧고 제값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복잡한 농산물 유통구조와 완전하지 못한 시장기능으로 인해 브랜드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이 미흡하고, 시장에 따라서는 물량마진이나 품질마진을 위해 표준규격화된 브랜드 농산물을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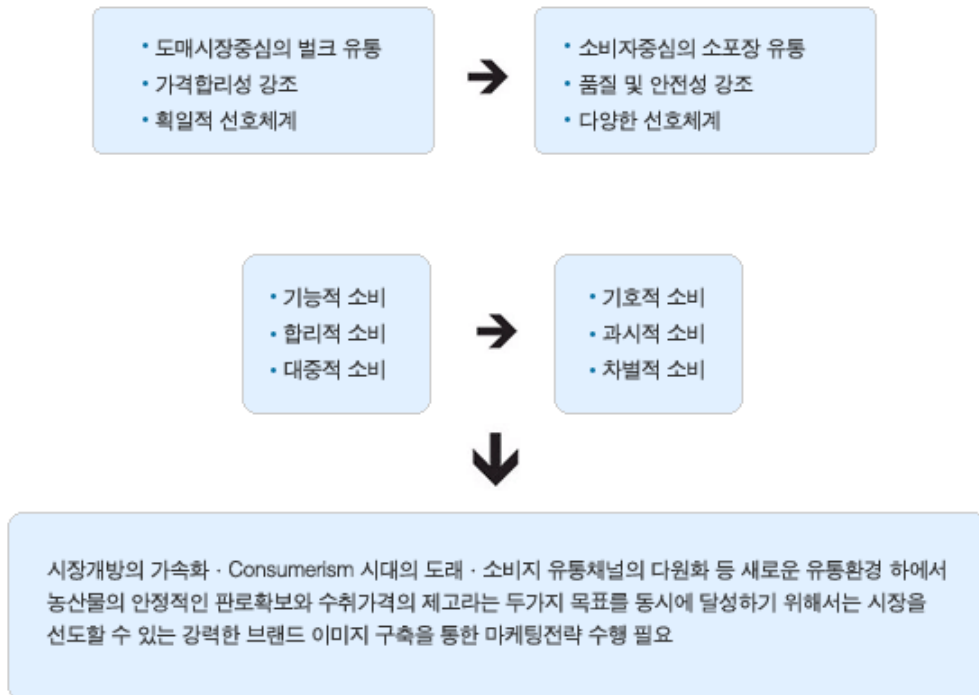
도매시장 중심의 다단계 경로와 소비자의 날개 구매성향으로 소비자단계에서는 브랜드 접촉빈도가 줄어들어 브랜드화의 유인 부족, 속박이, 산지둔갑 등으로 브랜드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브랜드화 핵심요소인 일관적인 품질유지(Quality Control)와 안정적인 물량공급(Quantity Control) 체계 구축 미비로 소농·다품목의 생산체제로 지속적인 물량공급이 어렵고, 농가 및 조직간 품질차이로 규격화가 곤란하여 대형유통업체에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생산 및 유통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조직화가 미흡하고, 개인중심의 선별포장과 시설활용도의 저하로 품질유지의 일관성 부족하며, 공동판매체제의 미 정착으로 물량의 규모화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유통과정 중 부패와 감모율이 적은 과실류 등의 포장 및 브랜드화는 진전되었으나 유통량이 많은 무, 배추 등 채소류의 포장화율은 미흡하고, 개발브랜드의 등록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소비자 구매패턴의 다변화, 고급화로 선도 브랜드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면서 브랜드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력 제고에 의한 농가소득 증진에는 한계를 보임에 따라 수입개방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지닌 소수의 브랜드만이 생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농축산물의 소비패턴의 변화와 유통구조의 혁신으로 시장개방이 가속화가 활발히 진행되기에 브랜드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인 지원과 마케팅 활동은 지속되고 있다.



[그림 6-6-2] 식품 브랜드화 필요성

### 3. 수산브랜드

#### 가. 브랜드

##### 1) 브랜드 정의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회사의 동일한 제품임을 알게 해주는 수단이다. 이러한 브랜드는 제품의 사용경험, 광고경험 등 제품과 관련된 모든 경험의 기억을 담는 그릇이 된다. 이러한 브랜드에 적절한 연상 또는 이미지를 줌으로써 회사는 경쟁자보다 높은 가격, 충성스러운 고객의 확보, 안정적인 매출의 확보 등 회사의 경영상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한 브랜드는 커다란 가치를 지닌다.

브랜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브랜드란 특정회사의 제품임을 알리는 수단으로서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모든 경험이 축적되어 기억되는 매체이다.”<sup>8)</sup>

8) 브랜드의 정의 -“히트 브랜드 상품창조 전략” . P18~19. (김훈철, 장영렬 외 공저)



## 2) 브랜드 요소들(Brand Elements)

브랜드란 특정회사의 제품임을 알리는 수단이다. 이러한 수단은 한가지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이들 각각이 조화를 이루면서 특정회사의 제품임을 알린다. 이때, 각각의 형태를 브랜드 요소(Brand Element)라 한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브랜드 요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 브랜드 네임(Brand Name)
- \* 심볼(Symbol), 로고(Logo)
- \* 슬로건(Slogan)
- \* 패키지 디자인(Package Design)
- \* 캐릭터(Character)
- \* 소리(Sound)

## 3) 수산브랜드 분석

공업제품이라면 품질은 시스템의 표준화에 기초해서 규격화되는 것으로 보증되지만 일차산품<sup>9)</sup>에 있어서 생선식품의 경우는 상품특성이 애초부터 대량생산, 규격화에 익숙하지 않는 성질을 가진다. 특히 생선식품 가운데서도 수산물은 품질의 규격화로 하는 브랜드화는 가장 늦은데, 이것은 수산물이 부패성이 높고, 계획적인 생산이 되지 않는 등 수산물의 일반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일차산품가운데서도 가장 브랜드화가 어려운 대상이기 때문이다.

수산물 브랜드에 대한 유형과 형성에 대하여 기존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0)</sup>

### ● 내셔널 브랜드

「품질보증」으로서의 브랜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로 된다. 「표준타입의 저가격 모델 = 스탠다드」에 의해서 형성되는 제품특성을 가진 것이다. 대형시장의 성립, 대량생산, 유통시스템 등이 성립하는 것이 여건으로서 필요하다.

### ● 중급품(selected brand)

대량이 아닌 특정의 수요층인 차별적 시장(segment market)에 대응한 내셔널 브랜드와 상대적으로 차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내셔널 브랜드 보다 우수한 제품특

9) 일차산품(primary product) : 쌀, 참밀, 주석, 석유 등 곧 식량생산, 농산원료, 연료 등 가공하지 않은 원료형태 그대로의 생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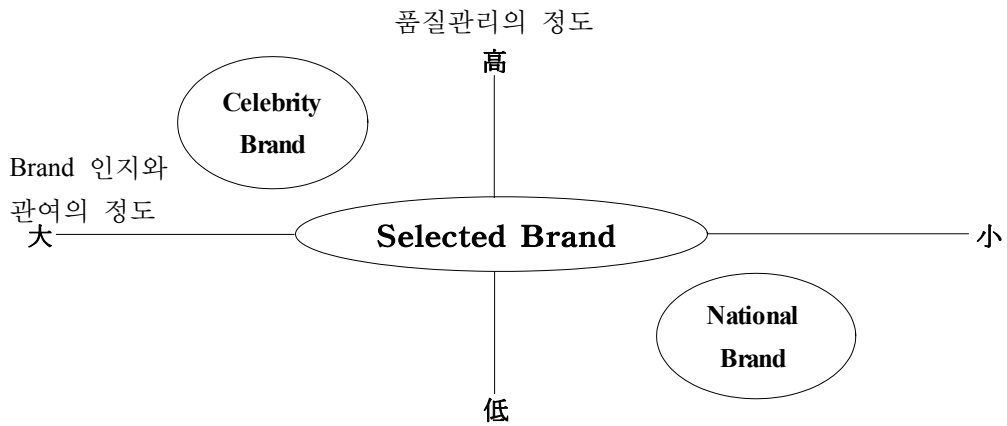
10) 波一積理眞, 「一次産品におけるブランド理論の本質」, 白桃書房, p87,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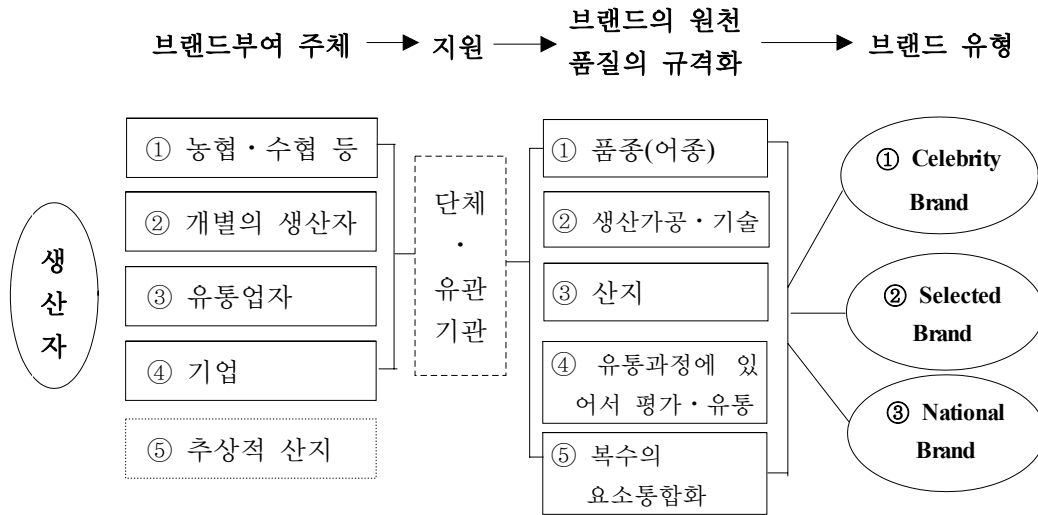
성을 가진 중급품이 대두한다.

● 고급품(celebrity brand)

생산자등에 의한 의도적인 식별로서 브랜드가 부여된 결과 브랜드 기능은 「차별화」로 작용한다. 제품특성은 「고가이고, 세련되고, 희소성인 것」이다.



[그림 6-6-3] 브랜드 유형의 포지셔닝



[그림 6-6-4] 일차산품의 브랜드 형성의 틀

자료: 波一積理眞, 「一次産品におけるブランド理論の本質」, 白桃書房, p87, 2002

브랜드 전략(Brand Strategy)으로서 사회의 전문화, 분업화, 개성화와 소비자 니즈 다양화로 인해 IB(Individual Brand)쪽 비중이 커지고 있다.

[표 6-6-1] 브랜드 전략

전 략	상 황
브랜드 선행 전략	* 제품 차별 포인트가 있을 때 (전문화, 개성화, 혁신 제품) * 욕구 충족의 제품 * 타사의 시장 침입 방어 시
브랜드 대항 전략	* 타사의 시장 침입 시 - 자체 브랜드 강화/타사 브랜드 모방
브랜드 철수 전략	* 죽은 브랜드에 대한 신속한 철수 - 과잉 손실, 기회손실 최소화
브랜드 보완 전략	* 장기적 육성의 차원에서 브랜드 일부 속성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 * 인지는 올라가지만 매출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호감도(선호도)가 높지 않을 때 그 원인을 찾아서 속성별로 보완

자료 : 인터넷사이트-<http://user.chollian.net/~wangki/>

#### 4. 브랜드 마케팅 전략의 응용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신뢰와 소비확대를 가져오기에 브랜드를 개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마케팅 방법이 개발되었다. 삼성전자와 같은 첨단산업분야에서 기업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 [표 6-6-2]와 같다.

기업의 브랜드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마케팅전략이 결국은 기업 가치를 증대하며 매출의 신장을 이룩하게 한다. 이상의 마케팅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최고경영자의 브랜드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조직의 집중적인 추진과 내부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가능한 브랜드 마케팅 전략이다.



[표 6-6-2] 삼성전자 브랜드 마케팅

방법	내용 및 전략	비고
구전 마케팅	입소문을 통해 마케팅전략은 광고를 통해 익숙해진 고객에게 제품을 사용해 봄으로써 자발적인 사용자로 바꾸는 전략이다. 실제 사용고객의 제품의 편익과 신뢰에 대한 증언은 잠재고객의 중요한 구매판단 자료가 된다.	- ‘후광(後光)효과’ ‘송곳 전략’ 또는 ‘일점(一點) 돌파전략’ 전체 브랜드가 중저가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우선 신제품의 브랜드 이미지를 초일류로 올리는 데 집중한 뒤 개선된 이미지를 다른 제품으로 확산시키는 전략. - 포장, 디자인 브랜드의 확립 ‘디자인 경영 센터’ 경영전략의 핵심
체험 마케팅	소비자 체험단을 모아 주부·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아이디어 그룹’을 별도 모집, 현장조사와 아이디어 개선 등 마케팅 실무에 직접 참여시킴	
스포츠 마케팅	젊은 층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인데 특히 축구, 야구를 후원하거나 런닝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초청 경기 등의 행사 진행	
온라인 브랜드 마케팅	검색엔진 브랜드 마케팅을 통하여 브랜드를 찾는 고객에게 관련 웹사이트로의 빠른 접속이 가능한 고객 편의성을 제공하는 한편, 검색 1, 2위에 노출되는 효과로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더욱 향상시켜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 높임	
문화행사 협찬 (이벤트 마케팅)	음악회(공식 스폰서로 관련방송에 최대한 노출) 영화제(‘부산국제영화제’ 등에 참가해서 고객과 친밀한 브랜드로 자리매김)	
대외교류 마케팅	학술교류사업(초청사업, 학술회의지원 사업), 장학사업, 교육기금 조성, Community구성, Fellowship 프로그램, 국내공익사업(사회공헌 활동)	

이러한 브랜딩전략을 수산물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수산물 개별제품에 대한 마케팅방법이기 보다는 수산물전체시장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수산물전체시장의 소비를 증대할 수 있는 수산물홍보차원에서 브랜드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기업의 로고 변천사의 예를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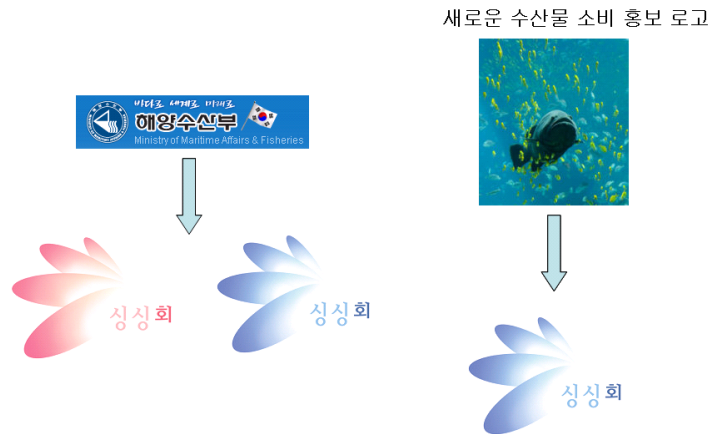


[그림 6-6-5] 기업의 로고 변천 사례

국내 삼성이 1992년 신 경영과 제2의 창업을 선포하면서 새로운 로고로 바꾸었다. 세계적인 IT기업들 역시 시대와 경영환경에 따라서 로고를 변경하여 왔다. 아래 그림에서 IBM, Cisco, Fuji film의 로고 변천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새로운 CI를 선포하면서 들어간 돈이 최소 200억에서 500억 원 정도인데, 회사의 모든 로고를 바꾸는 작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성브랜드를 상징하는 디자인로그를 새로운 경영선포와 함께 변경하였다.

이처럼 수산물의 브랜드작업은 새로운 경영선포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 로고 안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창조해내는 것은 브랜드의 집중과 새로운 사업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수산물홍보를 대표하는 새로운 브랜드 로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수산물 소비촉진을 전담하는 로고로 일괄된 브랜드마케팅을 추진하여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수산물홍보에 대한 로고체계를 기존의 싱싱회 로고와 비교해서 새로운 로고 체계를 구성하는 모양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해양수산부에서 싱싱회를 홍보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로고를 중심으로 수산물소비 전반에 대한 브랜드를 창조해서 앞에서 정리한 브랜드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 6-6-6] 싱싱회 로고

## 5. 수산물 소비홍보와 브랜딩 전략

수산물브랜드화 사업계획과 일본의 수산물 소비촉진 활동을 [표 6-6-3]과 같이 정리 하였다. 산지 브랜드화와 소비촉진전략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을 비교 정리하였는데 목적과 활동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수산물소비촉진을 위해 구상할 수 있는 제반 방향과 활동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이를 누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정부와 조합, 기업이 함께 소비촉진을 실천해 나가야 하고 국내에서는 소비촉진을 위한 새로운 비전선포식을 갖고 새로운 수산물 브랜드를 창조해서 일괄적인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모든 홍보수단과 마케팅전략을 실천해 나아간다면 수산물 소비확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표 6-6-3] 수산물 브랜딩 전략

브랜드	목표	방법	비고
개발	수산물 단체(업체)와 연계하여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주요 수산물 품목 중심으로 공동 브랜드를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랜드는 전문가에 의뢰, 공모</li> <li>• 브랜드 관리는 정부 또는 단체에서 직접 하도록 함</li> </ul>	1~2개 공동브랜드 개발 및 관리
	정부와 어업협동조합은 산지의 브랜드화 (일본)	선어와 수산가공품에 관해 현의 어업협동조합연합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후원에 적극적으로 관촉	브랜드상품 인증 시스템(치바현)
관리	생산규약 및 품질기준 제정 및 관리 수산물 유통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를 위한 기준마련</li> <li>• 사후관리 강화하여 브랜드 사용업체의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 사전예방 활동</li> </ul>	브랜드 사용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산이력관리 및 안전성검사체계 구축·운영
	고품질 어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월등히 높은 가격에 거래 (일본)	수산업계와 공공단체가 일반적인 어류식품 보급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기업의 자사제품 판매 촉진
홍보	브랜드에 대한 지속적 홍보로 인지도 제고(우리수산물의 우수성, 맛과 안전성, 이달의 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집중적인 홍보활동 전개</li> <li>•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시식회 등 개최</li> </ul>	국고와 자담으로 재원의 효과적 운영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산물 공급과 홍보 (일본)	대일본수산회 주축으로 각종 강연회 및 회보발행, 어류 상담실 상설운영	기업, 일반 소비자, 출판사, TV, 인터넷 등 매스컴 지원
확대	철저한 자체 품질관리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우수업체 발굴 육성	업체 원료구입 및 운영자금 우선 지원방안 마련	수산물브랜드 지원인터넷 사이트 운영





브랜드중심의 수산물과 소비촉진홍보인 魚라 水요일에 대하여 세부적인 실천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魚라 水요일 세부실천 내용〉

- 브랜드 중심의 수산물
  - 브랜드의 기능(정의+대표브랜드+세부브랜드)
  - 대표브랜드 : 기업 CI형태로 해양수산부 공동 브랜드  
예시) ‘바다愛찬’ 수협중앙회 바다마트 판매 공동브랜드  
‘어기여찬’ 수협급식사업 전용브랜드  
‘싱싱회’ 해양수산부 수산물 소비 촉진 브랜드
  - 세부브랜드 : 해수부내 사업부별, 제품별, 지역별 브랜드
  - 브랜드 확산 : 사업계획(미션+홍보전략+고객반응 체크+장단기 목표설정+구체적인 실천계획+자원할당+피드백 프로세스 개발)
- 미션 : 수산물 소비브랜드를 수산물소비로 확대시켜 생산자에게 실질적인 부를 증가시킨다.
- 장단기 목표 설정
  - 장기목표 :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로 육성(브랜드 가치 1조원)
  - 단기목표 : 스타급 브랜드 선정 및 집중육성(판매액 1억 원 이상)
    - 수산물 대표브랜드 발굴과 CI작업(수산물특성+소비자 반응+고유 아이덴티티+디자인+재질선정)
    - 수산물 브랜드 전문 reference site운영(해수부 브랜딩과 브랜드중심의 포털 사이트 운영)
    - 공동 브랜드와 세부브랜드 분류체계 형성하여 단일 홍보 채널 육성
    - 수산물 인증제, 이력관리 시스템, 지역의 명품브랜드를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 개발
    - 수산물 인정 세부브랜드에 대한 분류와 콘텐츠 DB 시스템 구축(pull 모델 : 실질적 도움, 등록유도)
    - DB작업의 표준화
    - 우수 브랜드 기업에 대한 on-line마케팅(사이버 우수 수산물 전시회 출품기회 제공, 분기별 진행)
    - 전문 브랜드 홍보와 판매지원 사이트 아웃소싱

이상의 제반활동으로 수산물소비촉진의 새로운 홍보과정을 상징적 표현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기존 수산물거래 산업현실과 홍보과정 → 새로운 수산물거래 프로세스와 홍보 시스템

[그림 6-6-7] 수산물 홍보 촉진 활동 상징도

魚라 水요일 소비촉진 홍보 전략을 다음과 같다.

〈魚라 水요일 소비촉진 홍보전략〉

- 수산물 소비세부 요인 분석(기능성+편리성+가격+문화적 특성+첨가제+대체재+노출빈도+FS 업체의 역할+공공수요)
- 장단기 홍보 전략수립(수요요인에 따른 세분화+다른 식품 대비 차별화)
- 생산자중심의 홍보전략(생산자와 소비자일체 : 어업관련가계 집합체를 초기에 활용)
- 판매자중심의 홍보전략(판매자와 소비자일체 : 판매관련 집합체를 초기에 활용)
- Community개발(수산물가치의 발굴과 확산 시스템 구축+정보공유+자발적인 참여+참여 인센티브 제공 : 해외여행과 무료시설이용권제공+블로그+UCC+M-marketing)
- 소비 캠페인 추진(선거홍보방식 도입+실버인력동원+거리마당놀이 제공)
- 수산물 전문 방송 설립(주부 모니터 활용+수산물 비화 발굴+수산물 캐스팅+전문 음악방송 도입 : 청소년의 새로운 문화 탈출구 제공) → 선도적이며 수익사업추진(initiative & profit business)
- 소비촉진학술대회 지원



## 6. 한국형 수산물 소비특성 개발

수산물 브랜딩작업으로 소비촉진과 촉진되면 수산물에 대한 소비특성이 개발될 것이다. 소비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한국적 특성을 만들어 낼 것이다. 현재 한국적인 소비특성으로 매운맛을 중심으로 하는 탕, 구이, 찜, 조림 등과 활어 소비와 같은 특성이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한국인들의 수산물 소비특성을 연구하면 이런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수산물 식문화의 스토리 및 역사성을 중심으로 한국형 수산물 소비문



화를 새롭게 발굴하고 개발함으로써 수산물 소비는 확대될 것이다.

비근한 예로 해양수산부에서 최근에 ‘싱싱회’를 새로운 소비 형태로 개발코자 하나 아직 확대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이러한 소비특성이 단기간에 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단기적인 특성개발전략과 지속적인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다. 이는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며 식문화가 창조되면 또한 쉽게 바뀌지 않은 확실한 소비촉진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수산물소비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가능한 많이 소비자에게 노출되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브랜드 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정리하였는데 보다 장기적인 소비문화형성을 위한 제반 활동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6-4] 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 아이디어

소비문화 형태	주요 전략과 활동	비고
Well-being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의 우수성 홍보(맛과 건강성)</li> <li>- 수산물 요리법 소개</li> <li>-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수산물 역할</li> <li>-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li> <li>- 수산물 홍보 사이트 개설</li> <li>- 국민적 홍보대사 선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성 식품으로 국민건강 증진</li> <li>- 성장발육 도움</li> <li>- 암 예방</li> <li>- 성인병 예방</li> </ul>
외식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기관과 제휴:철도청, 중소기업청, 지방정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등 (예 : KTX와 함께 하는 수산물)</li> <li>- 기관의 시범적인 외식문화 캠페인 진행</li> <li>- 주요 수산물 브랜드 전문식당의 수산물소비 인센티브 제공</li> <li>- 간편 요리법 개발(학생 간식용, 안주, 꼬지, 철판 등)</li> <li>- 수산물 간편 음식 개발(해물탕, 소라죽, 전복죽, 김초밥, 매운탕, 수산물 라면, 학생간식용 우동, 꼬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 점심특선</li> <li>- 어린이 간식</li> <li>- 다이어트 식</li> <li>- 단체급식용</li> <li>- 군용 파우치</li> </ul>
회식문화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인 회식문화 선도(예 : 회식일정에 대한 사전등록과 특별 할인가격에 싱싱회 제공)</li> <li>- 상징적인 사건을 매개로 홍보 확대</li> <li>- 수산물 중심의 회식 Package 시스템 도입(소주+매운탕, 맥주+취포, 양주+전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치 전문점</li> <li>- 매운탕 전문점</li> <li>- 싱싱회 할인점</li> </ul>
식품 컨벤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음식 국제대회 : 국제 우수 수산물음식 경진대회 개체(부산)</li> <li>- 같은 재료로 맛과 모양 경쟁(참고 : 국제적인 베이커리 경진대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 요리 왕</li> <li>- 요리사 등급인정</li> </ul>

## 7. 브랜딩과 소비특성 개발에 대한 추진 계획

수산물 소비촉진과 소비특성을 개발하기 위한 선순환적인 마케팅활동들은 순환적(loop) 구조로 연결되며 지속적인 향상을 이룩할 수 있다([그림 6-6-8] 참조).



[그림 6-6-8] 수산물 소비 촉진 전략 흐름도

[표 6-6-5] 추진 사업명 및 접근방법

사업명
○ 수산물 브랜드 개발
- 수산물 소비 촉진 공동브랜드
- 브랜드 통합과 관리 사이트
- 브랜드 홍보 전략 수행
- 수산물 브랜드 홍보 지원 협회 구축
○ 수산물 소비 촉진 홍보
- 수산물 요리법 개발
- 수산물 음식 개발
- 홍보 미디어 활용
- 수산 전문 방송채널 추진
- 지원정책 발굴 및 개선
-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
○ 수산물 소비특성 개발
- Well Being 전략
- 수산물 외식문화
- 수산물 회식문화
- 수산물 컨벤션
- 국제협력 시스템 구축



선순환적인 수산물 홍보와 마케팅활동이 관리되고 시스템적으로 발전해 나갈 때 수산물 소비는 증대될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 수산물소비의 연도별곡선을 보여주는데, 평균적인 상승이 아닌 소비의 수직적인 상승을 가능케 하는 소비 곡선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혁신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며 소비자의 소비습성에 깊숙이 접근해야 한다.

## 8. 수출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사업 추진방안

### 가. 공동브랜드 개요

#### 1) 공동 브랜드(brand) 개념

브랜드(brand)는 판매자 또는 판매자 집단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확인하거나 다른 경쟁자의 것과 차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brand name), 용어(term), 표시(sign), 상징(symbol, 기호 또는 도형),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을 의미하며, 배타적 사용이 법적으로 보증되어 있는 것을 상표(商標 : 트레이드마크)라고 한다.

두 개 이상 품목 또는 기업(조합)이 연합하여 공통의 특징이나 속성을 표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브랜드를 공동브랜드라 한다(가파치, Sunkist 등).

반면, 한 가지 제품의 특징이나 속성을 표현하여 만든 브랜드를 해당 제품에 사용하는 브랜드를 개별브랜드라 한다.(양반김, 안동간고등어 등)

특히, 브랜드는 시장에서 제품의 얼굴이나 이름으로 소비자에게 인식되고 품질을 어필함으로써 기업 이미지와 제품 구매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2) 브랜드의 가치

브랜드는 무형의 자산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가치 형성에 많은 노력과 세월이 걸린다. 한 예로, 스위스의 시계, 프랑스의 향수, 한국의 김치 브랜드는 그 자체로 많은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이다. 특히,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품질개선과 홍보가 병행되어야 하며,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생산과 그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 추진배경

WTO 협상의 진전 및 각국과의 FTA협정 체결 등 자유무역체제하에서의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상품의 경쟁우위 확보가 절실하고, 이에 따라 수출 진흥 워크숍 및 업체 간담회 시 수출업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동브랜드사업계획을 중장기 수산물 수출 진흥 종합대책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수산물 공동브랜드사업은 수산물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대책의 하나로 고유의 국가브랜드 파워 형성을 통해 수산물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 2) 필요성

수산업 여건의 악화와 국제무역질서의 재편 등으로 수산물 수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 수산물 생산국가와의 경쟁 심화

그 동안 우리 수산물 수출은 대기업의 개별브랜드 위주로 이루어져 대기업 브랜드 인지도는 높은 편이나 중소기업 제품군은 저가에 낮은 인지도, 품질 및 위생기준도 상이하여 시장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김의 경우 고·중저가 제품간 상호경쟁, 유사상호 사용 등 시장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브랜드에 의한 차별화 필요

수출 비중이 큰 참치, 김, 굴, 넙치, 전복, 오징어 등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한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이 필요한데, 농산물은 “휘모리”라는 공동브랜드로 배, 국화, 파프리카 등 4개 품목에 대한 공동브랜드사업을 추진 농산물 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수 수산물을 대상으로 품질의 고급화, 효율적 마케팅을 이끌어갈 매개체로 수출용 국가공동브랜드를 개발·실용화하여 우수수산물 수출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증대기 필요하다.

## 다. 공동브랜드 개발 및 사업 추진방안

### 1) 목적

공동브랜드 개발의 목적은 우리 수산물의 독자적이고 대표적인 수출용 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한 고급화 및 차별화로 대외경쟁력을 제고시켜 수산물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 2) 추진근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16조(농림수산물의 수출촉진)

## 3) 추진방향

- 사업 추진 전에 전문가 및 수출업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 한국산 수산물의 포괄하는 브랜드 네이밍, 이미지 개발
- 가장 한국적인 그로벌 상품인 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 공동브랜드 개발 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 조기 정착
- 공동브랜드사업 대상품목 및 참여업체에 수출지원 연계 추진

## 4) 사업 추진방안

- 기본방향
  - 한국산 수산물의 청정·웰빙 이미지 및 우수수산물 가치 지향
  - 세계시장에서의 한국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수출증대 의지 표현
  - 편향된 이미지 지양, 호감이 가는 브랜드 네이밍 및 디자인
  - 네이밍 및 디자인 후보(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 후 최종안 확정
  - 브랜드개발과 함께 시범사업 대상품목의 품질위생안전 기준 마련
- 개발 개요
  - 사업명칭 : 우수 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 사업기간/주관기관 : '08. 2~7월(6개월)/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 예산소요 : 200백만원(개발비 1억원, 품위기준 50백만원, 사후관리 50백만원)
  - 사업내용
    - 브랜드 네이밍(brand name), 상징(symbol), 디자인 등 개발
    - 시범사업 대상인 조미 김의 품위기준 마련
    - 공동브랜드 상표 국제 등록 등 사후관리
  - 추진방식 : 사업주관기관에 위탁하여 용역 추진
  - 기대효과 : 공동브랜드 적용 대상품목의 상품 확인 및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파워를 형성시켜 수산물 수출증대 도모

○ 추진일정

- 공동브랜드 개발(수특과제) 기술제안서 제출('07.10월말/기술진흥원)
- 공동브랜드 개발에 관한 수요자 의견수렴('07. 11~12월)
-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지정공모과제로 선정 개발 추진('08. 3~8월)
- 공동브랜드 홍보 및 관리 소요예산 요구('08 부터 매년)
- 개발 완료시 공동브랜드 사업 추진지침 마련('09. 12)
- 공동브랜드 사업 본격 추진(2009부터)

[표 6-6-6]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구분	담당업무	비고
관리기관 (해양수산부)	○운영위원회 주관 ○관련기관 사업수행 관리·감독	※ 운영위원회 - 품목선정 및 사업방향 등
운영기관 (공사 또는 수출입조합)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운영총괄 ○사업자 선정, 지원 및 사후관리 ○품위확인 관리감독 ○관련기관간 협력체제 구축·관리 ○브랜드사용권 및 ID부여 관리 ○공동브랜드 홈페이지 구축·운영	
협조기관 (수검원, 지자체)	○품목별 공동브랜드 품위기준 관리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지원 - 품질 및 안전성 교육 및 지도 - 잔류농약검사	○잔류농약검사증명서 발급
협력기관 (수협, 조합, 품목별협의회)	○공동브랜드 개선 및 발전방향 협의 ○품목별 공동브랜드 품위기준 준수지도	
수출업체	○사업수행 및 성과보고 ○자사제품의 공동브랜드 품위기준 준수	○생산이력 공사 통보

○ 사업대상품목 및 사업자 선정

- 해양수산부, 공사, 수검원, 수협, 수출입조합, 품목별 협의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1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사업조정 통제
- 공동브랜드 대상품목 및 사업 참여업체 선정기준 설정·관리
- 사업대상품목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사업자는 운영기관 선정

○ 대상품목의 안전성 및 품위관리

- 유관기관 간 역할분담에 의한 관리체제 구축·운영





- 품위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한해 공동브랜드 적용
- 품위기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검원 등 전문기관 점검
- 수출업체가 자체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품위기준 자율적 준수
- 사업운영기관은 월 1회 이상 사전에 불시 점검 실시
- 공동브랜드 관리 및 상품화 지원
  - 공동브랜드 개발 완료시 주요 타깃시장에 국제상표등록, 참여업체 사용권 부여 등 사후관리
  - 공동브랜드사업 참여품목 및 사업자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 및 우수수산물 지원사업 인센티브 제공
- 공동브랜드 마케팅 및 홍보관리
  - 공동브랜드 런칭시 차별화된 고품질 수산물로서의 이미지 확립을 위한 시장접근과 고급화 지향의 마케팅 전개
  - 공동브랜드의 이미지(고급화, 차별화) 정착을 위해 일관된 컨셉의 효과적인 광고와 홍보(PR)활동 전개
    - 제품의 속성보다는 브랜드의 컨셉과 이미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접근
  - 제품 속성을 “가정” “행복” 등 감성에 접목하거나 “판매액 일부 사회 환원”이라는 캠페인 등을 구사하여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 형성

## 5) 연도별 투자계획

- 공동브랜드 네이밍 및 로고 개발, 타깃시장 상표등록 및 홍보 등 초기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
- 공동브랜드 관리에 소요되는 관리기관의 인건비 및 필요경비는 참여업체 부담원칙 (참여업체의 수출실적에 따른 일정수수료 형식)

[표 6-6-7] 해외상설판매장 개설운영 투자계획

	'06결산	'07예산	'08요구	'09계획	'10계획	'11계획
해외상설판매장 개설운영	-	-	-	200	100	100



## 제7절 원산지 표시제 강화 방안

### 1. 원산지표시제도에 관한 체계와 현황

#### 가. 원산지표시제도의 의의와 체계

##### 1) 원산지제도의 의의

원산지표시제도란 수출입 상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판정하고, 확인하고, 표시하는 제도이다. 원산지 판정이란, 예를 들면 A국이 B국 물품을 수입해 상품을 생산한 후 한 국에 수출할 경우 상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원산지 확인이란, 통합공고에 의한 수입제한 물품,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등을 단속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제출받는 것이다. 원산지표시란, 판정된 원산지 국가를 수입상품에 보기 쉽고 견고하게 표시(인쇄, 주조, 라벨 등)하는 것이다.

특히 원산지표시제도의 의의는 수출입되는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로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라벨링 제도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원산지표시제도는 [표 6-7-1]과 같이 의무사항이며, 현품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위반 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표 6-7-1] 품질 표시와 원산지 표시와의 차이

구분	품질표시	원산지표시
규제성격	권고사항	의무사항
대상물품	소수(30개품목)	다수(수출입 물품의 53%)
표시방법	스티커 가능	현품표시(각인) 원칙
위반시 처벌	없음	과징금, 벌금 등

##### 2) 원산지 표시의 필요성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특정지역의 생산품이 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덤핑관세 부과, 긴급수입제한조치, 쿼



터제도 등 각종 무역제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원산지 표시는 제품 가격 및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소비자 행동 및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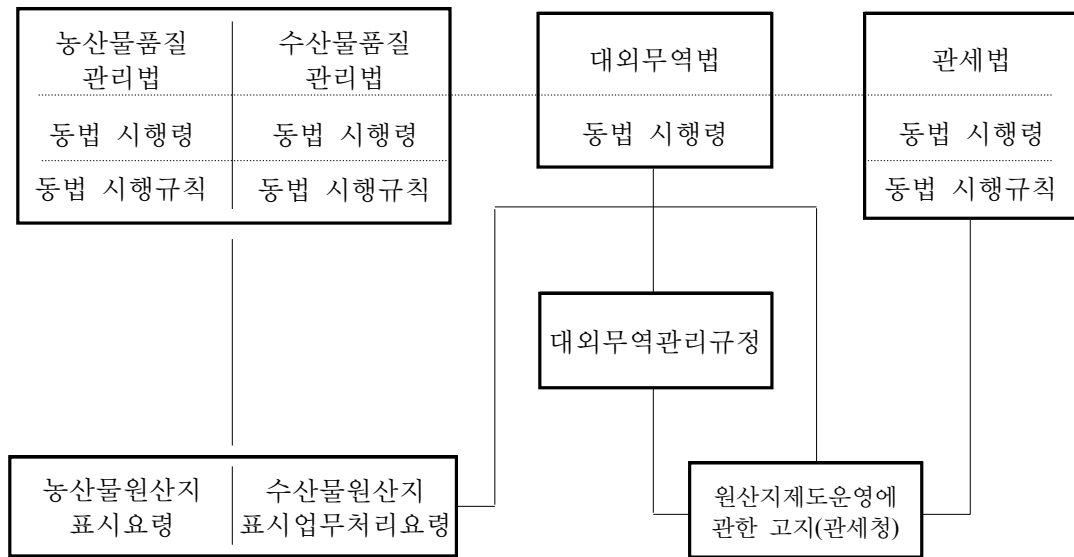
### 3) 원산지제도의 관계법령 체계

#### (1) 관계법령

대외무역법·시행령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판정, 확인에 관한 기본법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 고시)에서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원산지세부표시방법, 세부판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그림 6-7-1] 참고).

관세법·시행령·시행규칙 : 수입물품의 관세 부과, 징수를 위한 원산지 결정(판정) 및 확인을 하기 위한 법규로 원산지허위표시물품의 통관을 제한하고 있음.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국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판정, 조사를 위한 규정을 정하고 있고,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판정에 있어 통관 후 국내 판매 농수산물에 대한 관리 규정을 정하고 있다. 단,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판정은 대외무역법령의 표시, 판정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의 원산지 표시는 원칙적으로 국산 물품에 대한 표시 규정으로서 무역정책수단은 아니다.



[그림 6-7-1] 원산지제도 관련법령 체계

## (2) 유통단계별 적용법률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판정 기준은 수출입되는 물품 또는 농수산물 원료의 원산지 표시에 적용되고 있으며, 국산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판정, 표시 기준은 개별법 즉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또한 수입 원료를 가져와 국내에서 가공 제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개별법 시행령 즉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에서는 가공품의 원산지를 가공품에 제공된 수입수산물 또는 수입가공품을 원산지로 규정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표 6-7-2]는 상품 분류별 통관·유통 단계에서의 적용 법률을 나타내고 있다.

[표 6-7-2] 상품 분류별 통관·유통 단계에서의 적용 법률

구분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해외생산물품 수입	통관단계	대외무역법(산자부장관이 세관에 위임)		
	국내유통단계	대외무역법(산자부장관이 시·도에 위임)		
국내생산물품	국내유통단계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독립규정없음

## 4) 원산지표시제도

### (1) 개요

현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부터 동 제도를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수입시 원산지표시제도 대상물품은 HS 4단위 기준으로 653개 품목(농수산물 170개, 공산품 483개)으로 총품목수 1,244개의 52.5%를 점하고 있다.

### (2) 표시 원칙

- 원칙 : 수입하고자 하는 당해물품에 원산지 표시
- 예외 : 다음의 경우 당해 물품이 아닌 포장, 용기에 표시 가능
  - 냉동옥수수, 밀가루, 무포장 냉동수산물, 활어 등과 같이 당해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당구공, 콘택츠 렌즈, 식용수산물 등 원산지표시를 인해 당해물품이 크게 훼손되



는 경우.

- 귀걸이 등 패션상품과 같이 원산지 표시로 인해 당해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원산지 표시 비용이 당해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
- 상거래 관행상 최초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 않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
-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 (3) 원산지 표시방법

- 최종구매자가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시결하기 용이한 위치
-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식
-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의 약어를 사용하여 원산지 표시 가능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 사항이 라벨, 스티커, 꼬리표의 방법으로 부착되는 경우에는 그 표시 사항에 원산지 항목을 추가하여 기재

### (4)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

수입 물품의 원산지 위반 행위 적발시는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표 6-7-3].

[표 6-7-3]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위반관련 처벌내용

위반유형	제재내용	처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방법 위반</li> <li>• 미표시</li> <li>• 허위 및 오인표시</li> <li>• 표시 손상 및 변경</li> </ul>	시정조치, 과징금(3천만원이하), 형사고발(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세관 시·도
국내 단순 가공 후 유통시킬 경우 당초 원산지 미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세관, 시·도
원산지위반물품 수출입 행위	시정조치, 과징금(3천만원이하), 형사고발(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세관, 산자부

## 2.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 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규정

수산물에서 원산지 표시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 동법은 수산물에 대한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상품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수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원산지”라 함은 수산물이 생산·채취 또는 포획된 국가·지역 또는 해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1 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일 2005.7.1]]

10. “원산지”라 함은 수산물이 생산·채취 또는 포획된 국가·지역 또는 해역을 말한다. 동법에서는 수산물 생산, 판매업자에 대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 (원산지의 표시) ①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7.1]]

1.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표시를 한 경우
3.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대상 품목의 선정,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중 수입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인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규정에 의해 공고한 품목으로 하고 있다.

시행령 제17조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의 선정)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대상품목은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중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그 품목이 수입



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인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으로 한다.

동법 시행령 원산지 표시사항 및 방법에서는 농산물과 달리 3원체계를 가지고 있다. 즉, “국산”으로 표시함에 있어 상품 특성 상 필요한 경우에 “연근해” 및 시군명 또는 해역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산수산물 중 원양어선이 어획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해역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수입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18조 (원산지 표시사항 및 방법 등)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산수산물중 제2호의 수산물을 제외한 수산물은 “국산”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거나 그 수산물을 생산한 시·군명 또는 해역명을 표시할 수 있다.
2. 국산수산물중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어획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역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3. 국내 수산가공품(수입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원료를 사용(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가공한 경우에는 배합비율 순위를 고려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수입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원산지 판정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되, 국내 수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분은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위반 처분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3조의2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0조·제11조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2. 표시위반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업체명, 업주명, 주소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공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명령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8.1.27]]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산지 표시에 관한 권한을 품질검사원장, 시·도지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 시행령 제6장 보칙 제40조 (권한의 위임)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한다.
    6.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원산지표시에 관한 시정명령은 수산가공품에 관한 시정명령에 한한다)
    26. 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확인(수산가공품에 한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의 시정명령(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한한다)
    8. 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확인(수산물에 한한다)
- 제41조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에 대한 효율적인 원산지표시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산물의 원산지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등을 조사·확인하거나 품질검사원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여금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품질검사원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 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령위반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품질검사원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진흥원장, 품질검사원장,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조사 확인 결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위반 사실을 적발할 시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조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품질검사원장,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자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시행령 제41조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에 대한 효율적인 원산지표시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산물의 원산지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등을 조사·확인하거나 품질검사원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여금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품질검사원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 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령위반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품질검사원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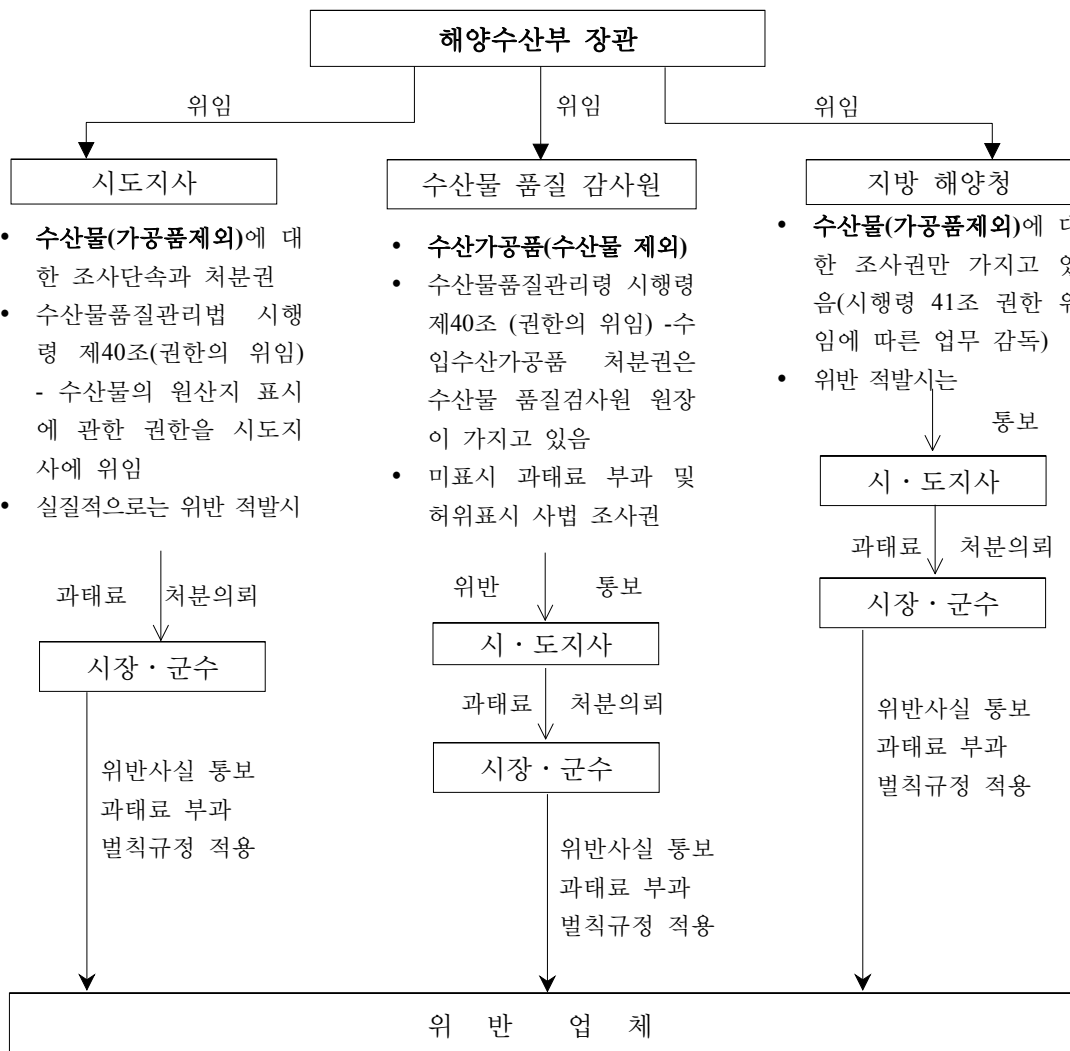


야 한다.

### 나.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체계

현재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하고 있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체계는 [그림 6-7-2]와 같다.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수산물품질검사원, 지방 해양청이 모두 조사, 단속을 하고 있다.



[그림 6-7-2]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체제

제 6 장



### 3.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운영 현황

#### 가.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국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다음 표에 의해 정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비식용수산물은 제외하고 있다[표 6-7-4].

[표 6-7-4] 원산지 표시 대상 국산 수산물

구분	품목
어류	가오리류, 가자미류, 까나리, 갈치류, 감펭류, 강달어, 갯장어, 고등어, 꼬치, 꽂치, 넙치류, 노래미, 농어, 능성어, 다랑어류, 달고기, 대구류, 도루묵, 돔류, 망둥어류, 매통이류, 먹장어, 메기류, 멸치, 명태, 방어류, 뱀장어, 병어, 보리멸, 복어류, 볼락류, 붕장어, 삼치, 새치류, 상어류, 서대류, 송어류, 송어류, 실치, 아귀, 양미리, 양태, 어란류, 연어류, 임연수어, 전갱이, 전어, 정어리, 조기류, 준치, 쥐치, 청어, 통치, 홍어, 기타어류
갑각류	가재류, 게류, 새우류, 기타 갑각류
패류	가리비, 개랑조개, 고동류, 고막류, 골뱅이류, 굴류, 논우렁이, 동죽, 맛류, 바지락류, 백합류, 새조개, 소라, 오분자기, 재첩, 전복류, 키조개, 피조개, 홍합, 기타패류
연체동물	갑오징어류, 꼴뚜기, 낙지, 문어류, 오징어류, 쭈꾸미, 기타 연체동물
해조류	김, 다시마, 미역, 우무가사리, 청각, 툇, 파래, 기타해조류
수생동물	미더덕, 우렁쉥이, 해삼, 해파리, 기타 수생동물

주: 저리형태를 불문하고 산것, 신선·냉장, 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수산물. 단, 비식용수산물은 제외  
 자료: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자료: 인터넷사이트-<http://user.chollian.net/~wangki/>

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산원료나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수산가공품의 경우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표 6-7-5].

[표 6-7-5]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가공품

구분	품목
조미품	오징어류, 쥐치포류, 학공치포, 뱀장어류, 명태류, 보리멸류, 맛김, 구운김, 새우류, 패류, 기타 조미식품류
혼제품	오징어류, 연어류, 뱀장어류, 청어류, 기타혼제류
어육제품	어묵류, 어육소시지류
통·병조림	수산물을 원료로 한 통·병조림류
젓갈류	새우젓, 조개젓, 오징어젓, 창란젓, 명란젓, 꼴뚜기젓, 굴젓, 게장, 어류를 사용한 식해류, 멸치젓, 액젓, 기타 젓갈류
레토르트식품	재첩국, 추어탕, 기타 수산물을 원료로 한 레토르트 식품류

자료: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국내 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시행규칙에서 가공원료의 배합비율 순으로 표시, 원료의 국산, 원양, 수입(원산지 국가)의 표시,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23조 (국내 수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방법) ①영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 수산가공품의 원료의 배합비율에 따른 원산지표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이 경우 물·식품첨가물·당류 및 식염은 배합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용된 당해 원료중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할 것
2. 특정원료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특정원료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이 아닌 때에는 그 특정원료를 함께 대상으로 할 것. 다만, 여러 가지 원료에 대한 총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에 대하여만 대상으로 한다.

②수산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 원료 외의 원료에 대하여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원료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국산원료중 제2호를 제외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국산”으로 표시한다.
2. 국산원료중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어획한 수산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원양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역명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3. 수입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 국가명을 표시한다.
4. 동일한 종류의 원료로서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한다. 다만, 동일한 종류의 원료를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2개국까지의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④동일한 종류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별 혼합비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증감범위가 30퍼센트 이내인 경우에는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표시된 포장재를 혼합비율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⑤가공품원료의 수급사정으로 인하여 원료원산지의 잦은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1. 특정원료의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되거나 최근 1년 동안에 3회 이상 변경된 경우
  2. 1년 이내에 3회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 장관이 원산지 표시방법을 달리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국내 수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입수산물은 대외무역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공고한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실적

### 1)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추이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1,898건에서 2006년 4,316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단속횟수 및 단속인원, 지도단속업소수는 2004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6-7-6]. 그러나 지도단속 업소 수 대비 위반율은 2001년 3.05%에서 감소하다가 2006년에는 4.61%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이것을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위반율이 4%대라는 것은 원산지표시율이 96%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지도단속회수 대비 적발현황에 대한 단속효율성은 2001년 0.35에서 2006년 0.69로 늘었고, 단속인원 대비 적발현황에 대한 단속효율성은 2001년 0.13에서 2006년 0.23으로 늘었다.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과태료 처분은 2001년 1,739건에서 2003년 4,250건으로 증가한 반면 고발 건수는 2001년 159건에서 2006년 66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다시 말해 고발에 의한 형사 처벌 보다는 과태료 처분이 늘어가고 있다.

한편 총과태료는 약 2억6천만원으로 과태료 처분 건당 과태료는 2006년 기준 61.9천원 수준이다. 최고로 많을 때가 2003년 100.5천원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6-7-6] 연도별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추이

연도 별	지도 단속 회수 ①	단속 인원 ②	지도 단속 업소수 (D)	적발현황 (C) 위반율 ③	조치현황				단속효율성	
					과태료처분			고발 건수 (B)	③/①	③/②
					건수 (A)	금액 (천원)	건당 과태료 (천원)			
2001	5,493	14,617	62,300	1,898 <sup>㉔</sup> (3.05) <sup>㉕</sup>	1,739	110,367	63.5	159	0.35	0.13
2002	2,570	17,172	103,217	2,072 (2.01)	1,946	79,024	40.6	126	0.32	0.12
2003	6,250	16,910	75,712	1,801 (2.38)	1,650	165,792	100.5	151	0.29	0.11
2004	19,130	45,084	139,856	1,987 (1.42)	1,854	149,949	80.9	133	0.10	0.04
2005	6,646	20,127	101,659	1,870 (1.84)	1,776	159,179	89.6	94	0.28	0.09
2006	6,251	18,490	93,666	4,316 (4.61)	4,250	262,883	61.9	66	0.69	0.23

주: ㉔ 적발현황은 A(건수)+B(고발건수)의 합, ㉕ 위반율은 C(적발현황)/D(지도단속업소수)의 비율임.  
자료: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2) 유형별 제품별 위반건수

2006년 단속 건수 4,316건 중 수산물 54.7%, 활어 42.2%, 수산가공품 3.1%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위반 유형으로는 미표시 위반건수가 4,250건으로 전체 4,316건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고, 허위표시 위반건수가 66건으로 약 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7] 수산물별 위반건수(2006년)

	소계	활어	가공품	수산물
미표시 위반건수	4,250 (98.5)	1,815 (99.7)	120 (89.6)	2,315 (98.1)
허위표시 위반건수	66 ( 1.5)	6 ( 0.3)	14 (10.4)	46 ( 1.9)
합계	4,316 (100.0)	1,821 (100.0)	134 (100.0)	2,361 (100.0)

주: 원산지표시제 시행 경과 - '94.1.1(수입수산물), '95.1.1(국산수산물), '02.7.1(국산활어), '04.9.1(수입활어)  
자료: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3) 시·도별 위반 건수

2006년 수산물 및 활어 위반건수 4,095건<sup>11)</sup>중 지역별로는 부산은 655건으로 1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충남 449건으로 10.4%, 전남 445건으로 10.3%, 경기 436건으로 10.1%, 인천 377건으로 8.7%, 경남 323건으로 7.5%, 울산 279건으로 6.5%, 서울 231건으로 5.4%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6-7-8].

이 중에는 검사원에서 수산물(활어) 미표시 위반 단속 후 시·군으로 과태료 처분 의뢰한 959건 (활어 261건 포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검사원에서는 가공품을 제외한 전체 단속(4,095건)의 23% 단속하고 있다.

가공품 미표시 과태료처분 120건 및 허위표시 47건을 포함할 경우 검사원에서는 전체 위반건수 4,316건 중 26% 인 1,126건을 단속하고 있다.

[표 6-7-8] 지역별 원산지 위반 건수 (2006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품질원
4,316	231	655	180	377	60	106	279	436	219	53	449	245	445	40	323	51	167
(100)	(5.4)	(15.2)	(4.2)	(8.7)	(1.4)	(2.5)	(6.5)	(10.1)	(5.1)	(1.2)	(10.4)	(5.7)	(10.3)	(0.9)	(7.5)	(1.2)	(3.9)

주: 시·도별 위반건수는 품질검사원에서 단속후 과태료 처분권한이 있는 해당 시·군으로 이첩한 수산물(활어) 959건 포함

자료: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표 6-7-9]는 시·도별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인 반면 위반 적발율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율은 울산이 2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구 17.7, 부산 12.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고발 건수는 총 66건으로 그 대부분이 품질검사원(47건)에 의해 이루어고 있다.

과태료 처분에 의해 과태료 금액은 약 2.6억원으로 그리 많지 않은 금액이고 시도별로 보면 가장 많은 위반율을 보인 부산이 약 3천2백만원이고 나머지 시도는 그 이하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11) 검사원에게 직접 처분한 가공품 미표시120건 및 허위표시 10건 제외

[표 6-7-9] 시·도별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현황 (2006년)

기관명	지도 단속 회수	단속 인원	단속 대상 업소수	적발건수 (A+B)	조치현황			위반율(%) (적발건수/단속 대상업소수)*100
					과태료처분		고발건수 (B)	
					건수(A)	금액(천원)		
계	6,251	18,490	93,666	4,316	4,250 (100.0)	262,883 (100.0)	66	4.6
서울특별시	804	1,795	16,568	231	230 (5.4)	23,672 (9.00)	1	1.4
부산광역시	348	818	5,299	655	655 (15.4)	32,795 (12.48)	-	12.4
대구광역시	106	227	1,017	180	180 (4.2)	9,000 (3.42)	-	17.7
인천광역시	324	409	6,168	377	377 (8.9)	24,320 (9.25)	-	6.1
광주광역시	67	177	826	60	60 (1.4)	3,990 (1.52)	-	7.3
대전광역시	44	89	695	106	106 (2.5)	5,980 (2.27)	-	15.3
울산광역시	58	91	1,184	279	279 (6.6)	19,026 (7.24)	-	23.6
경기도	398	1,308	3,987	436	432 (10.2)	26,294 (10.00)	4	10.9
강원도	347	810	5,033	219	219 (5.2)	12,315 (4.68)	-	4.4
충청북도	238	525	1,740	53	53 (1.3)	2,900 (1.10)	-	3.1
충청남도	704	802	14,704	449	449 (10.6)	23,907 (9.09)	-	3.1
전라북도	194	756	3,350	245	244 (5.7)	12,130 (4.61)	1	7.3
전라남도	315	1,063	4,196	445	445 (10.5)	32,310 (12.29)	-	10.6
경상북도	70	586	950	40	40 (0.9)	2,595 (0.99)	-	4.2
경상남도	388	663	5,135	323	311 (7.3)	22,290 (8.48)	12	6.3
제주도	139	365	2,366	51	50 (1.2)	4,490 (1.71)	1	2.2
품질검사원	1,707	8,006	20,448	167	120 (2.8)	4,869 (1.85)	47	

주 : 품질검사원 적발건수(미표시 과태료)는 활어(전체 1,815건중 검사원 261건으로 14%차지) 및 수산물(전체 2,315건중 검사원 698건으로 30%차지)을 제외한 순수가공품 적발(과태료) 건수이며, 실제 검사원에서 단속한 건수(여위표시 포함)는 전체 4,316건중 1,126건으로 26%차지.

자료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3) 업태별 위반 사항

2006년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업태별 위반사항은 총 4,316건 중 횡집이 1,666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반시장 1,619건의 37%, 노점상 405건의 9%, 중소형마트 320건의 7%, 도매시장 208건의 5%, 대형할인 매장 61건의 1.4%, 가공업체 30건의 0.7%, 백화점 7건의 0.2% 차지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횡집 및 일반 시장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약 7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표 6-7-10].

[표 6-7-10] 업태별 원산지 위반 건수 (2006년)

연도별	계	백화점	대형할인 매장	중소형 마트	도매시장	일반시장	가공업체	횡집	기타 (노점상)
2005	1,870	18	97	385	190	285	30	824	41
	(100)	(1.0)	(5.2)	(20.6)	(10.2)	(15.2)	(1.6)	(44.1)	(2.2)
2006	4,316	7	61	320	208	1,619	30	1,666	405
	(100)	(0.2)	(1.4)	(7.4)	(4.8)	(37.5)	(0.7)	(38.6)	(9.4)

자료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4.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한 이론적 배경

### 가. 소비자 지각 태도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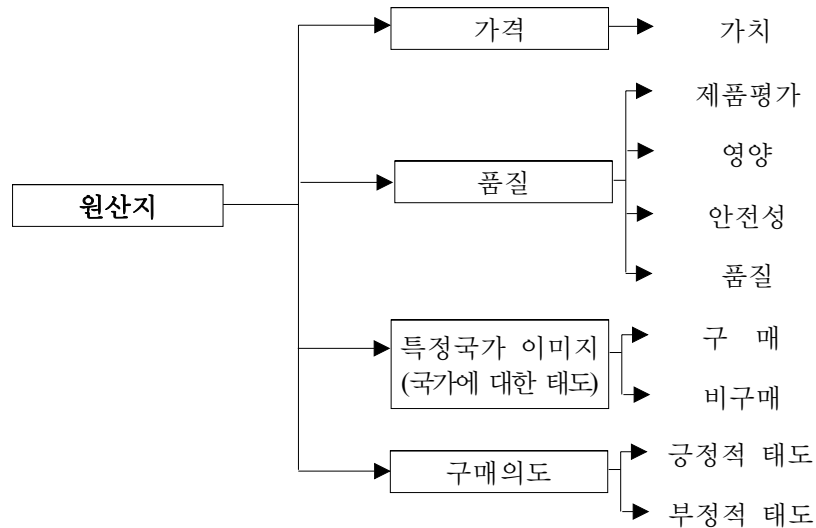
#### 1) 소비자의 수산물에 대한 태도

소비자의 수산물에 대한 태도는 수산물 품질 등과 관련한 정보의 습득수준, 영양학적 측면과 가족 건강 등을 고려한 수산물의 중요성, 판매시장에서의 수산물 가격, 수산물 안전성 관련 확산, 객관적인 기관에서의 수산물 인정 여부에 따라 정(+), 부(-)의 반응을 나타낸다.

- 정보의 습득수준 (육안으로 품질을 평가할 정도의 정보습득수준)
- 수산물의 중요성 (식사에 수산물이 꼭 필요한가)
- 가격의 중요성 (구매시 가격수준)
- 지각된 안전성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확산)
- 신뢰도 (공공기관의 인정 정보에 대한 신뢰)



특히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들의 수산물 태도에 대해 다음 [그림 6-7-3]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6-7-3]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 지각·태도 모형

소비자는 원산지 표시를 통해 가치(현실적으로는 가격)와 품질(제품평가, 영양, 안전성, 품질)을 평가하게 된다. 나아가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에 표시된 특정국가명을 통해 국가가 가지는 이미지에 따라 구매, 비구매로 연결되는 의사결정 및 구매행동을 나타낸다. 또한 선호 원산지 여부에 따라 구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 나. 부정상품 유통의 동기와 영향인자 이론

### 1) 부정상품 유통이익

부정상품의 거래동기 - 부정상품의 거래시 정상거래에 비해 더 많은 이익을 획득

이론적 배경 - 기대효용이론 (Expected Utility Theory)

기대이익이론 (Expected Profit Theory)

전망이론 (Prospect Theory)



부정상품으로 유통 시키다가 적발되지 않을 경우의 이익

$$\pi_{uc} = P(1+\alpha) \cdot Q - C \cdot Q - \alpha c \dots\dots\dots \text{식(1)}$$

- $\pi_{uc}$  : 부정유통업자의 부정상품 유통시 적발되지 않을 경우의 이익
- $\alpha$  : 부정유통업자가 상품 원산지를 속이고 올려 받는 가격 상승의 정도(%)
- $P$  : 정상 거래의 상품 가격
- $Q$  : 유통업자가 유통시키는 유통량
- $C$  : 제품의 단위당 구입비용
- $\alpha c$  : 부정상품 둔갑을 위한 유통업자 추가비용

부정상품으로 유통시키다가 적발될 경우의 이익

$$\pi_c = P(1+\alpha) \cdot Q - C \cdot Q - \alpha c - F \dots\dots\dots \text{식(2)}$$

- $\pi_c$  : 부정유통업자가 원산지를 속이고 부정상품으로 유통시키다가 적발될 경우의 이익
- $\alpha$  : 부정유통업자가 상품 원산지를 속이고 올려 받는 가격상승의 정도(%)
- $P$  : 정상 거래의 상품 가격
- $Q$  : 유통업자가 유통시키는 유통량
- $C$  : 제품의 단위당 구입비용
- $\alpha c$  : 부정상품 둔갑을 위한 유통업자 추가비용
- $F$  : 부정상품으로 유통시키다가 적발될 경우의 금전적 벌과금과 비금전적 처벌에 상응하는 벌과금 합계

## 2) 판매업자의 거래선택

$$E(\pi) - \pi_h = P \cdot \alpha \cdot Q - \alpha c - F \cdot p$$

- $E(\pi)$  : 부정상품 유통 예상이익
- $\pi_h$  : 정상품 유통 확정이익
- $p$  : 적발될 확률

$$\sigma[E(\pi) - \pi_h] / \sigma\alpha > 0 \dots\dots\dots \text{①}$$

$$\sigma[E(\pi) - \pi_h] / \sigma\alpha < 0 \dots\dots\dots \text{②}$$

- ①의 경우 : 부정이익 발생, 원산지 위반 거래
- ②의 경우 : 부정거래비용이 발생하여 원산지 위반을 억제

①의 경우와 같이 원산지표시 위반 등과 같은 부정적 방법에 의한 상품 유통 예상이익이 원산지 표시와 같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품 유통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클 경우는 판매업자는 부정상품 유통을 시도할 것이다.

반면, ②의 경우와 같이 부정적 방법에 의한 상품 유통이익이 정상적 방법에 의한 상품

유통이익보다 적을 경우는 판매업자는 정상적 방법으로 상품을 유통시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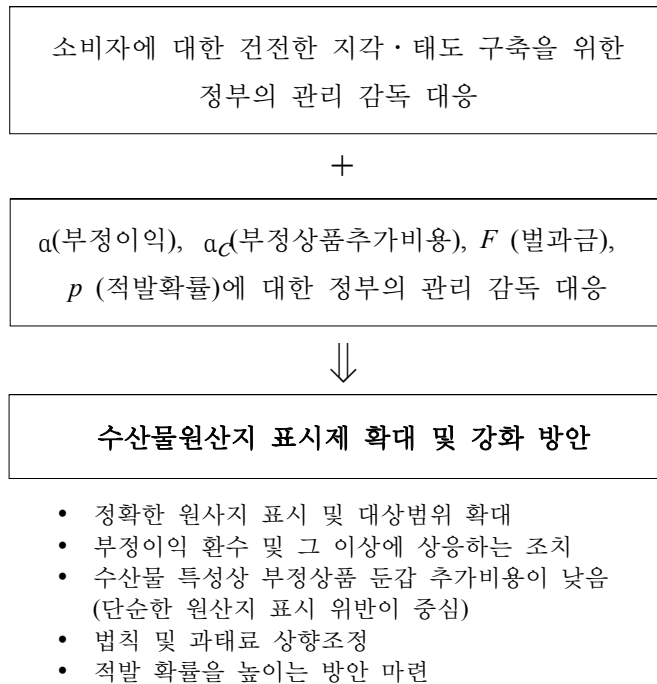
따라서 ②의 경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alpha$ (부정이익),  $\alpha_c$ (부정상품추가비용),  $F$  (벌과금),  $p$  (적발확률) 값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 5. 수산물원산지 표시제 강화 방안

### 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강화 논리

#### 1) 원산지 표시제의 확대 및 강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들의 수산물 태도에 대해 중요한 요인임과 동시에 판매업자들에게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정상 이윤 추구를 위한 관리 방안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 6-7-4]와 같다.



[그림 6-7-4] 원산지 표시제 확대 및 강화 논리



## 나. 원산지 표시제 강화 방안

### 1) 정확한 원산지 표시 및 대상 범위 확대

#### (1) 외식수산물 및 즉석수산가공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적용 방안

소비자들의 식품 소비 구조는 가정내 소비에서 가정외 소비 그리고 즉석 수산물의 구매 후 소비 등으로 변하고 있다. 이같이 확대되는 즉석수산가공품, 외식수산물식자재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는 중요한 문제이다.

[표 6-7-11]과 같이 현재규정과 적용대상 수산가공품에서 벗어나 있는 외식식자재 및 즉석수산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

[표 6-7-11] 외식식자재 및 즉석수산가공식품

생선초밥	Sea Food Restaurant	대형할인점	싱싱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가공냉동처리된 수입원료 사용</li> <li>• 소형생선초밥집</li> <li>• 대형 및 부폐형 생선초밥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바닷가재, 초밥, 퓨전롤 등 중심</li> <li>• 생선초밥, 퓨전롤 등에는 주로 수입 돔, 농어, 방어, 홍민어, 새우, 연어, 조개류 등을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ake-out 생선초밥</li> <li>• 즉석 생선초밥</li> <li>• 즉석어묵류, 어육 소세지 판매</li> <li>• 즉석젓갈류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산넙치 싱싱회와 함께 수입 활어로 가공한 싱싱회가 유통</li> <li>• 주로 수입 돔, 농어, 점성어, 민어등의 필렛가공, 싱싱회</li> </ul>

현재 수산가공품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제도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모호한 상태이다.

#### 〈수산가공품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제도의 적용범위〉

- 현행규정 : 수산물 가공품의 기준 (수산물 품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1.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2. 제1호 해당하는 제품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2차 이상 가공한 제품
  3. 수산물·수산가공품 및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함께 원료·재료로 사용한 가공품인 경우에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함량의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보다 많은 가공품

#### (2) 이식용 수산물에 대한 관리 규정 마련 방안

현재 미꾸라지, 실뱀장어와 같은 이식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비식용 이식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관리 규정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

으므로 이식용 수입 수산물에 대한 어종별 적정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참고로 소, 돼지의 원산지 규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기준에 따르고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6-2] 특정 수입물품의 원산지 품목명 원산지 판정기준〉

HS 0102 소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다만, 출생국과 사육국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당해국가에서 6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당해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고, 6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HS 0103 돼지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다만, 출생국과 사육국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당해국가에서 2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당해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고, 2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소와 돼지 이외의 기타 가축으로서 HS 01류의 것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다만, 출생국과 사육국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당해국가에서 1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당해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고, 1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 2) 적발 확률을 높이는 방안

2006년 현재 적발 확률은 4%대 수준이다. 위반율 4%대 라는 것이 원산지 표시 준수율이 높아서 라기 보다는 적발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단속 효율성은 2001년 35%에서 2006년 69%로 높아지고 있다.

### ① 수산물 품질 관리법 제12조(표시 정지 등의 처분)의 확대 개정

농산물 품질 관리법과 제3장 원산지 등의 표시와 같이 독립된 원산지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과 같이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원산지 표시 조사·처분을 할 수 있도록 2원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물에 있어서도 시·도지사의 강력한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② 신고포장제의 적극 활용

신고포장제의 적극적인 유도로 원산지 위반에 따른 적발 확률의 제고와 이에 따른 부



정이의 획득에 대한 위험요소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③ 단속 및 과태료 관리체계의 단순화

위반 적발시 시·도지사 경유가 아닌 시장, 군수에게 바로 통보하고 처분 의뢰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④ 주요 과학적 원산지 판별기준 마련

축산물과 같이 유전자 감식에 따른 과학적 원산지 판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⑤ 원산지 표시 단속 전담반제도의 도입

(가칭) 원산지 특별사법 경찰관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⑥ 위장판매에 대한 단속 규정 마련

미표시와 함께 구두로 원산지를 위장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단속 조항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 3) 부정이익 환수 및 과태료 상향 조정 방안

현재 부과되는 과태료가 미표시의 경우 건당 평균 61,000원(2006년) 수준으로 지극히 낮음. 이러한 사실은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강력한 단속과 부정 이익 환수 및 그 이상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부정 판매를 추가 가공비용이 제로인 미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2006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의 98.5%가 미표시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 4) 국산수산물의 경쟁력 강화 방안

WTO의 원산지 규정에서는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고, 각종 무역정책수단에 사용되는 법적 행정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직 수산물에 대해서는 미합의된 상태이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연안에서 12해리 내에 있는 영해에서 잡은 수산물은 연안국에, 200해리 밖의 공해에서 잡은 수산물은 선박기국에 원산지를 부여하는데 동의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자연산 수산물의 원산지는 어선의 국적(flag)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어획된 수산물의 경우도 어선의 국적에 의해 원산지를 부여하여 자국 어업생산자의 경쟁력 강화라는 무역정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현행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방안인 3원화 체계(국산, 원양, 수입)를 2원화 체계(국산, 수입)로 재편하여 국내 원양어업생산자의 어획물은 국산(원양)으로 표기함에 따라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 국산(연근해 또는 지역명), 원양(해역명), 수입(수입국 또는 원산지)에서 국산(연근해 또는 원양) 필요시 지역명, 해역을 표기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시행령 제18조 (원산지 표시사항 및 방법 등)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산수산물중 제2호의 수산물을 제외한 수산물은 “국산”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거나 그 수산물을 생산한 시·군명 또는 해역명을 표시할 수 있다.
2. 국산수산물중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어획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역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시행령 제18조 (원산지 표시사항 및 방법 등)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산수산물중 제2호의 수산물을 제외한 수산물은 “국산”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국내 경제수역 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국산(연근해산)”과 같이 표시하거나 그 수산물을 생산한 시·군명 또는 해역명을 표시할 수 있다. 국산수산물 중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어획한 수산물은 “국산(원양산)”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역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 제8절 산지유통시설 현황 및 육성방안

### 1. 산지시장의 정의 및 역할

#### 가. 수산물 산지시장의 정의

수산물산지시장은 소비지도매시장을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이 구체적인 목적, 형태, 기능, 운영 방법 등에 의해 규정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동법 제49조 산지판매제도의 확립에서 농림수협 등 또는 공익법인은 생산지에서 출하되는 주요품목의 농수산물에 대하여 산지경매제를 실시하거나 계통출하를 확대하는 등 생산자보호를 위한 판매대책 및 선별·포장·저장시설의 확충 등 산지유통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50조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에서는 농림수협 등은 농수산물을 대량소비지에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산지시장이 개설 운영되고 있는 법적 근거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사업의 종류 2. 경제사업에서는 구매사업, 보관·판매 및 검사사업, 이용·제조·가공 사업, 수산물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6조 판매사업 규정에 의해 실질적인 수산물판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2)</sup>. 하지만 여기에서 수산물산지시장에 대한 정의는 내리고 있지 않다.

한편 수산물유통에 있어 산지시장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50년대 후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당시 수산물유통문제의 관심은 어민의 주체성 회복이라 시점에서 어민과 전기적상업자본의 관계규명 그리고 이 같은 시점의 연장위에서 어업협동조합<sup>13)</sup>의 공판론(共販論)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면서 산지시장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

12) 동법시행령 제36조 판매사업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어 ① 조합 및 중앙회(법 제6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는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 65 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별 조합 및 업종별조합이 공동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정관·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감독하며, 그 감독에 관하여는 법 제44조 제2항 및 법 제6장(제 151조 내지 제163조 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판매사업을 행하는 조합 및 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위탁자가 소속한 조합에 위탁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위탁판매조성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일본의 어업협동조합이라함은 우리나라 수산업협동조합과 동일한 개념이다.



였다. 특히 岡本清造(1952)는 산지에 존재하고 있는 상업자본의 전기성(수탈적 상업자본)에 연구의 중점을 두었고, 黑澤一清(1958)은 소생산어민의 경제적인 지위상승의 일환으로 어업협동조합이 어업권 관리기능에서 공동판매운동을 주로하는 경제사업에 전개 변용해 가는 과정을 규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당시 산지에 있어 어획물의 판매과정 대부분이 도매시장제도를 통해 거래되게 되었고, 특히 어업협동조합의 산지어시장이 지배적으로 됨에 따라 전기적상업자본이 어업자를 부당히 수탈하는 현상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어업협동조합의 공동판매형태는 주로 근대적 유통기구 정비에 따른 산지시장의 위탁판매가 중심적이었다. 여기에서는 산지시장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관념적으로는 산지에 위치하고 있는 도매시장 그리고 어업협동조합이 어업생산자의 위탁판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초기적 연구 이후에는 산지도매시장의 전개 과정이나 산지직판유통기구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근년에 와서는 Lou Xiaobo(1994)의 수산물산지유통의 경쟁구조에 관한 연구가 산지시장 문제를 정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산지시장을 수산물유통단계 상의 생산·출하단계, 산지시장단계, 산지출하단계의 범위를 산지유통단계로 규정하고 있고, 이 중 산지시장단계에서의 산지시장은 어획물을 도매하는 시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법적형태로는 지방도매시장, 공동판매장, 어획물처리장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장영수(1997)는 수산물산지시장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산지시장이란 어업생산의 기점으로 어선이 접안할 수 있는 어항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어획물의 양륙과 1차적인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면서 유통 배분되는 시장을 말한다. 산지시장은 그 대부분이 수산업협동조합이 개설 운영하는 산지위판장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202개소가 있다. 이 곳에서는 어업생산자, 시장도매업자(수협), 중도매인, 매매참가인들 사이에서 거래가 형성되면서 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수행되고 있다. 이처럼 산지시장은 수산물 생산지에 위치하여 생산자들이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산지시장은 다음과 같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 나. 산지시장의 역할과 기능

### 1) 산지시장의 역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근해 어획물의 약 50% 전후가 양륙 어항에 위치하고 있는 산지시장에서 가격을 형성하여 출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수산물의 대부분이 일 단 산지시장을 경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 ① 산지시장이 어장에 근접한 연안에 위치하고 있다.

수산물 공급의 주력은 어선어업으로 한정된 규모의 어선으로는 정해진 성어기에 어장과 어항 간을 신속히 이동함으로써 그 왕복 횟수가 곧 어획량의 다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장과 어항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소비지에 직접 판매한다면 이동시간이나 판매 소요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그만큼 정해진 어기에 조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② 산지도매시장의 신속한 판매 및 대금결제 기능은 곧 어업생산 증대에 직결된다.

‘어장 조업, 어획, 귀항, 산지도매시장에 양륙, 판매, 대금결제, 연료·어구·이료·선원 식료 보급·선원임금 지불, 재출항, 조업’이라는 어업 생산 사이클의 시간단축은 곧 조업 횟수의 증가로 어업생산 증대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어획물의 신속한 판매와 대금결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과정이다.

#### ③ 어획물의 다양한 형태의 이용 배분이 가능하다.

양륙된 어획물의 대부분이 선어·냉동 등의 형태로 소비지에 출하되는 것은 아니다. 어획물은 어종에 따라, 크기에 따라 대·중·소 등으로 분류되어 일부는 사료와 같은 비 식용 용도로 이용되며, 또 한편으로는 가공원료 내지는 수출용으로 이용된다. 산지에는 이 같은 가공 공장이나 다수의 가공업자가 모여 있으며, 이들 업자는 소비재로서가 아닌 원자재로서 어획물을 산지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다.

### 2) 산지시장의 기능

산지시장은 주로 연안에 위치하고 있고, 어업생산자는 어획물의 판매를 시장도매업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수협에 위탁 판매하는데 생산자를 대신하여 수협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수요자의 대표로서 등록된 중도매인들과 경매 및 입찰에 의해 가격을 결정한다. 이

때 어업생산자가 수협에 판매를 위탁할 때는 무조건 위탁 판매조건(또는 최저가격 제시)이 일반적이며, 수협과 중도매인들에 의한 가격결정 방법은 경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어획물을 구입한 중도매인은 구입대금을 수협에 납입하고, 이 때 납입 기일 조건은 즉일 납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수협은 중도매인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그 중에서 수협에서 정한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후 어업생산자에게 지불한다.

이상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산지시장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협의 산지어시장은 어업생산을 위한 전초 기지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① 생산지 어획물의 양륙과 진열기능, ② 거래형성기능, ③ 대금결제기능, ④ 판매기능 등을 수행하여 왔고, 이러한 산지시장의 실질적인 거래기능은 산지중도매인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산지시장의 구조는 지역생산규모에 따라 규정되면서 대규모 어업 생산물과 소규모 어업 생산물의 양륙과 이용·배분에 맞는 산지중도매인의 기능과 역할이 수행되어 왔다.

## 2. 산지시장의 구조

### 가. 수산물 산지시장의 구조

#### 1) 수협의 위판사업

산지시장은 구체적인 형태로는 수협의 공판 내지는 위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산지위판장이다. 이곳은 생산자의 수산물을 위탁판매하는 곳으로 이를 통상 계통판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계통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표 6-8-1]과 같다.

1997년 자유판매제의 전면 실시 이후 산지 수협을 중심으로 하는 계통 판매 물량은 변동은 있지만 축소하고 있다. 특히 2001년을 제외한 2000년 이후는 위판량과 위판금액의 계통판매 비율이 감소하여 2005년에는 물량면에서는 54.7%, 금액면에서는 53.2%까지 떨어지고 있다.



[표 6-8-1] 수산물 생산량 및 계통판매 현황

(단위 : 톤, 백만원, %)

연도별	물량			금액		
	어업생산량	위판량	비율	어업생산액	위판금액	비율
1997	2,382,540	1,489,110	62.5	3,405,168	2,119,336	62.2
1998	2,084,967	1,370,341	65.7	3,239,139	2,023,295	62.5
1999	2,100,091	1,482,266	70.6	3,111,855	2,039,989	65.6
2000	1,862,958	1,337,756	71.8	3,136,780	2,131,779	68.0
2001	1,926,067	1,446,237	75.1	3,228,773	2,286,678	69.5
2002	1,895,842	1,338,966	70.6	3,395,836	2,233,559	65.8
2003	1,942,451	1,244,003	64.0	3,698,203	2,101,975	56.8
2004	2,019,701	1,244,003	61.5	3,994,034	2,287,488	57.2
2005	2,161,954	1,181,533	54.7	4,230,090	2,251,119	53.2

주 : 어업생산량은 연근해 및 양식생산량(원양제외)

자 료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특히 단순한 위판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양식수산물의 경우는 [표 6-8-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계통판매가 중심이다. 양식생산물의 생산량 73.7%, 생산금액 80.71%가 비계통 즉 산지위판장을 경유하지 않고 생산자와 수요자(중간상인을 포함)간의 거래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의미로서 수협의 적극적인 마케팅기능을 수행하는 공동판매기능보다는 소극적 의미의 위탁판매기능이 주로 수행되고 있는 산지 위판장에 대한 어업 생산자의 평가는 점점 축소되는 계통판매비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높지 않다.

[표 6-8-2] 양식수산물의 비계통 판매 현황

(단위 : 톤, 백만원, %)

연도별	물량			금액		
	생산량	비계통	비계통비율	생산액	비계통	비계통비율
2000	653,373	347,914	53.3	683,856	484,173	70.8
2001	655,827	334,064	50.9	717,163	471,229	65.7
2002	781,519	411,525	52.7	794,517	547,382	68.9
2003	826,245	506,062	61.3	1,165,675	917,494	78.7
2004	917,715	625,780	68.2	1,217,105	946,792	77.8
2005	1,041,074	767,898	73.8	1,348,407	1,088,303	80.7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시스템

## 2) 산지위판장의 구조

산지위판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은 기본적으로 해당 수협이 수산물생산과 위판실적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소극적인 위판기능에 의존하고 이를 탈피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과 노력 개발이 미흡한 결과에 따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 수산물 시장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면 [표 6-8-3]과 같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형태의 수산물 시장이 총 257개소가 존재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수협의 산지위판장 169개소, 소비지에 위치하고 있는 수협 공판장 8개소, 도매시장 16개소, 수산물직매장 41개소, 수산물종합판매장 23개소로 구분되고 있다.

특히 수협의 산지 위판장이라고 할 수 있는 169개소는 각 지구별 조합, 업종별 조합 등이 복수 위판장을 개설하고 있는 결과 수협의 수보다 위판장의 수가 더 많은 것이다.

[표 6-8-3] 수산물 시장의 종류와 분포

구분	계	위판장 (산지)	공판장 (소비지)	도매시장	수산물 직매장	수산물 종합판매장
서울	15	-	2	2	-	11
부산	12	12	-	-	-	-
대구	3	-	1	1	-	1
인천	7	7	-	-	-	-
광주	2	-	1	1	-	-
대전	2	-	-	1	-	1
울산	2	-	1	1	-	-
경기	16	3	2	4	1	6
강원	26	20	-	-	3	3
충북	2	-	-	2	-	-
충남	14	13	-	-	1	-
전북	15	7	1	2	5	-
전남	65	46	-	-	19	-
경북	20	16	-	2	2	-
경남	44	38	-	-	6	-
제주	12	7	-	-	4	1
계	257	169	8	16	41	23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2006년 수산정책 업무편람



산지 위판장의 경우는 전남 46개소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다음으로 경남 38개소, 강원 20개소, 경북 16개소, 충남 13개소, 부산 12개소, 인천, 전북, 제주가 각각 7개소, 경기 3개소가 존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각각 위판장의 위판실적에 대한 통합된 통계자료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수협들 위판실적을 기초로 우선 분석하기로 한다.

[표 6-8-4]은 수협에서 수행하고 있는 위판사업의 규모를 양륙량 기준으로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2000년에서 2006년 사이의 위판실적이 있는 수협 중에서 연간 양륙량이 1만톤 미만인 산지수협이 7년 평균으로 45.00개소로 이는 76.29개 수협의 58.99%를 차지하고 있어 절반을 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1만톤 미만의 수협 중에서 연간 양륙량이 2,000톤 미만이 수협이 21개소, 2,000톤이상 5,000톤 미만 수협이 12개소에 이르고 있어 1만톤 미만을 보다 세분 계층화하여 보면 훨씬 소규모 수협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만~2만톤미만 수협이 18.43개소로 전체의 24.16%를 차지하고 있어 앞의 1만톤 미만 수협을 포함한 2만톤 미만의 수협은 전체의 83.15%를 점하고 있게 된다.

[표 6-8-4] 양륙량 기준 규모별 산지 수협의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②	비율③
1만톤미만	36	39	43	50	50	46	51	45.00	58.99
1만~2만미만	22	17	16	18	18	22	16	18.43	24.16
2만~3만미만	6	7	5	3	3	4	4	4.57	5.99
3만~4만미만	1	1	2	2	4	1	2	1.86	2.43
4만~5만미만	1	2	1	2	0	1	1	1.14	1.50
5만~6만미만	0	0	0	0	1	0	0	0.14	0.19
6만~7만미만	1	0	2	0	2	0	0	0.71	0.94
7만~8만미만	0	0	0	1	1	1	1	0.57	0.75
8만톤이상	4	5	4	4	2	4	4	3.86	5.06
합계①	71	71	73	80	81	79	79	76.29	100.00

주 : ① 양륙실적이 없는 산지수협은 제외하고 있어 매년 합계가 다름.

② 2000년에서 2006년간의 7년 평균임

③ 비율은 평균에 대한 비율임.

자료 : 수협중앙회, 수산물계통판매연보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2000년 이후 1만톤 미만의 수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주로 다음 계층인 1만~2만톤 미만의 수협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 여기로부터의 가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2만~3만톤 미만의 수협 역시 감소하면서 여기에서 탈락한 수협이 1만~2만톤 미만의 수협으로 가입하고 있어 소규모 수협 위판사업의 도미노 축소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산지 수협이 복수의 위판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약 200여개소의 위판장이 개설 운영되고 있고 이를 약 76개 수협으로 나누어 보면 1개 수협이 평균 2.6개 위판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협별이 아닌 위판장별 양륙량으로 재구분한다면 이보다도 훨씬 소규모인 위판장이 산재하고 있는 것이 현주소이다.

[표 6-8-5]는 양륙금액별 산지수협의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연간 양륙금액(2000년-2006년 평균)이 100억 미만의 수협이 24.00개소로 전체 76.29개소의 31.46%, 100억~200억 미만 수협이 18.14개소로 전체의 23.7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두 계층 수협이 차지하는 비중이 55.2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역시 1개 수협이 복수 위판장을 개설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액면에서도 소규모 위판장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00억 이상의 양륙금액을 나타내고 있는 수협은 4.43개소로 전체의 5.81%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표 6-8-5] 양륙금액 기준 규모별 산지 수협의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	비율
100억원미만	19	17	23	28	29	25	27	24.00	31.46
100억~200억미만	17	20	19	18	16	19	18	18.14	23.78
200억~300억미만	15	15	10	11	10	11	9	11.57	15.17
300억~400억미만	4	1	5	8	9	9	9	6.43	8.43
400억~500억미만	3	3	3	5	6	2	4	3.71	4.87
500억~600억미만	5	8	5	3	2	6	3	4.57	5.99
600억~700억미만	3	1	1	1	3	1	4	1.43	1.87
700억~800억미만	2	1	1	2	3	1	0	2.00	2.62
800억이상	3	5	6	4	3	5	5	4.43	5.81
합계	71	71	73	80	81	79	79	76.29	100.00

자료 : 수협중앙회, 수산물계통판매연보



한편 100억 미만의 수협 증가, 100억~200억미만의 수협 감소, 200억~300억미만의 수협 감소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양륙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산지수협의 현황 역시 앞의 양륙량 기준으로 살펴본 산지 수협 위판사업의 축소 움직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표 6-8-6]는 2006년을 기준으로 양륙금액 규모별 해당 수협을 정리한 것으로, 100억 미만 수협이라 하더라도 울촌수협 2억, 광양수협 6억, 사랑수협 8억 등 10억 미만 수협을 포함하여 분포가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800억 이상 수협에는 기선권현망수협 826억, 삼천포수협 1001억, 여수시수협 1056억, 부산시수협 1194억, 부산공동어시장 2588억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형어선어업기지로서 역할하고 있는 수협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6-8-6] 양륙금액 규모별 수협

규 모	해당 수협
100억원미만	울촌수협(2억), 광양수협(6억), 사랑수협(8억), 진동수협(11억), 경기남부수협(17억), 장흥군수협(17억), 영흥수협(22억), 경인북부수협(22억), 부산수협(37억), 사천수협(39억), 신희수협(43억), 태안남면수협(44억), 대포수협(46억), 부산동부수협(51억), 근해통발수협(56억), 죽왕수협(56억), 명계수하식수협(56억), 원덕수협(57억), 나로도수협(59억), 안면수협(73억), 양양군수협(74억), 금일수협(76억), 서천군수협(77억), 진해시수협(81억), 영광군수협(81억), 삼척수협(88억), 제1,2잠수기수협2(96억)
100억~200억미만	제3,4구잠수기수협(101억), 흑산도수협(107억), 강진군수협(112억), 소안수협(118억), 하동군수협(126억), 제1,2구잠수기수협(128억), 거문도수협(129억), 추자도수협(129억), 의창수협(139억), 서남해수어류수협(148억), 고성군수협<경남>(151억), 모슬포수협(157억), 거제수협(157억), 축산수협(165억), 고성군수협<강원>(175억), 울릉군수협(182억), 용진수협(195억), 서면수협(198억)
200억~300억미만	동해시수협(202억), 인천공판장(204억), 강구수협(204억), 해남군수협(247억), 진도군수협(264억), 죽변수협(275억), 제주시수협(280억), 강릉시수협(292억), 군산시수협(298억)
300억~400억미만	후포수협(312억), 인천수협(319억), 남해군수협(321억), 울산수협(327억), 완도군수협(336억), 서산수협(362억), 포항수협(372억), 마산수협(376억), 경주시수협(380억)
400억~500억미만	고흥군수협(431억), 보령수협(472억), 통영수협(475억), 신안군수협(485억)
500억~600억미만	서귀포수협(521억), 속초시수협(562억), 성산포수협(590억)
600억~700억미만	굴수하식수협(612억), 구룡포수협(617억), 한림수협(664억), 목포수협(689억)
700억~800억미만	
800억이상	기선권현망수협(826억), 삼천포수협(1001억), 여수시수협(1056억), 부산시수협(1194억), 부산공동어시장(2588억)

주 : 수협중앙회, 수산물통계연보(2006년 기준)



[표 6-8-7]은 산지 수협의 규모 계층별 양륙량·양륙금액 비중(2006년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1만톤미만의 수협이 51개소로 전체 79개소의 64.5%를 차지하고 있고, 1만톤 ~ 8만톤 미만 수협은 24개소로 30.4%, 8만톤 이상 수협은 4개소로 5.1%를 점하고 있어 숫적 구성 측면에서는 파라미트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양륙량 1만톤 미만의 산지수협 51개소 수협의 양륙량 합계는 197,086톤으로 전체 양륙량 1,240,749톤의 15.1%에 지나지 않고 있다. 반면 양륙량 8만톤 이상의 산지수협 4개소의 양륙량 합계는 591,973톤으로 전체 양륙량의 47.7%를 차지하고 있어 4개 수협의 집중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역삼각형의 이중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표 6-8-7] 산지 수협의 규모 계층별 양륙량·양륙금액의 비율

년간 양륙량 규모	산지 수협 (개소)	양륙량 비율 (톤, %)	양륙금액 비율 (천원, %)
1만톤 미만	51 (64.5)	197,086 (15.1)	634,873,029( 28.7)
1만톤 ~ 8만톤 미만	24 (30.4)	451,690 (37.2)	1,049,586,356( 47.6)
8만톤 이상	4 ( 5.1)	591,973 (47.7)	521,950,066 ( 23.7)
계	79 (100.0)	1,240,749 (100.0)	2,206,409,451 (100.0)

주 : 각 산지수협의 양륙량, 양륙금액은 2006년 실적임.  
 자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물계통판매고통계연보.

한편 양륙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1만톤미만의 수협의 양륙금액 합계는 634,873,029천원으로 전체 합계의 28.7%를 차지하고 있고, 1만톤 ~ 8만톤 미만 수협은 1,049,586,356천원의 47.6%, 8만톤 이상 수협은 521,950,066천원의 23.7%를 차지하고 있어 다이어몬드형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산지수협은 양륙에 의존하는 위판사업을 중심으로 판매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숫적으로는 소규모 산지수협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으나 양륙량 기준에서는 부산공동어시장, 부산시수협, 여수시수협, 삼천포수협, 기선권혁망 수협과 같은 소수의 대규모 산지수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지수협의 이중구조 개선 및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 나. 산지 수협 위판장의 효율성 분석

### 1) 이론적 배경

#### ① 연구모형

오늘날과 같은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조직이 살아남고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대한 정확한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현재 효율성 분석에 있어 가장 매력적인 기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모형을 통한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DEA 모형은 단일 투입물과 단일 산출물에서 생산 단위의 효율성을 측정하려 한 Farrell(1957)의 연구의 개념에서 나왔다. 이러한 개념은 다수의 투입물과 다수의 산출물의 효율성을 평가하기에는 어렵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다수의 투입물과 다수의 산출물의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DEA 모형이 1978년에 Charnes, Cooper, Rhodes에 의해 소개되었고, 현재까지 많은 모형이 개발되어 오고 있다.

DEA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법론이며, 평가대상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DEA는 비율분석과 회귀분석과 같은 전통적인 효율성 분석보다 많은 이점을 제공하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생산과정에서 다방면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DEA는 은행, 보험사, 경찰소, 병원, 세무서, 형무소, 군대, 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는 국내외에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EA 모형을 산지 수협 위판 사업에 적용하기로 한다.

#### ② 효율성의 개념

효율성은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효율성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생산성으로 언급되는 투입량과 산출량의 비율로 정의되고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ext{효율성} = \frac{\text{산출물}}{\text{투입물}} \quad (2.1)$$

생산성의 예로는 “노동시간당 산출물”, “종업원 1인당 산출물”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러

나, 이러한 개념은 “개별 생산성 측정(partial productivity measures)”인 단일 투입물과 단일 산출물의 효율성의 평가에는 유용하나 “총요소 생산성 측정(total factor productivity measures)”인 모든 투입물과 산출물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다수의 투입물과 다수의 산출물을 고려하기 위해서 식(2.2)와 같이 투입물과 산출물의 가중합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text{효율성} = \frac{\text{산출물의가중합}}{\text{투입물의가중합}} \quad (2.2)$$

이 효율성 측정의 초기 가정은 모든 단위에 공통의 가중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어떻게 공통의 가중치를 구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공통의 가중치를 구하는데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 첫 번째는 투입물이나 산출물의 가치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재화를 생산하는데 노동력과 비용이라는 투입물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이러한 노동력이나 비용의 가중치를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두 번째로 각 조직은 경영방식과 경영환경이 다르므로 공통의 가중치를 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Charnes, Cooper and Rhodes(1978)는 상대적 효율성을 결정하기 위해 가중치의 공통 집합을 찾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각 DMU(Decision Making Unit, 평가대상)에 따라 각자에게 최선의 가중치를 선택해야한다고 하며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모형을 제시했다. DEA 모형은 다수의 투입물과 다수의 산출물을 가진 조직의 상대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선형계획기법으로 식(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ext{DMU}_j \text{의 효율성} = \frac{u_1 y_{1j} + u_2 y_{2j} + \dots}{v_1 x_{1j} + v_2 x_{2j} + \dots} \quad (2.3)$$

여기서,  $u_1$  = 산출물 1의 가중치

$y_{1j}$  = DMU<sub>j</sub>의 산출물 1의 산출량

$v_1$  = 투입물 1의 가중치

$x_{1j}$  = DMU<sub>j</sub>의 투입물 1의 투입량

### ③ DEA 모형

DEA 모형에는 CCR(Charnes - Cooper - Rhodes), BCC(Banker - Charnes - Cooper), 가법형 모형(additive model), 슬랙 중심 측정모형(slacks-based measure) 등 많은 종류가 개발되



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규모에 대한 수익(Return to Scale) 일정을 가정한 CCR 모형, 규모에 대한 수익(Return to Scale) 가변을 가정한 BCC 모형, 규모의 효과를 측정하는 규모(Scale) 효율성, 정적인 분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DEA/Window 분석, 각 평가대상의 경영 환경을 고려하는 유형별(Categorical) DMU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먼저 Charnes 등이 개발한 CCR 모형을 살펴보겠다. CCR 모형은 투입물 중심(CCR - I) 모형과 산출물 중심(CCR - O)모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CCR - I 모형부터 살펴보겠다.<sup>14)</sup>

## 다. CCR 모형

### 1) CCR - I 모형

CCR 투입물 중심 모형부터 살펴보면  $DMU_o$ 는 평가대상을 의미하고 분수계획(fractional programming)모형으로 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FP_o) \quad \max \theta = \frac{u_1 y_{1o} + u_2 y_{2o} + \dots + u_s y_{so}}{v_1 x_{1o} + v_2 x_{2o} + \dots + v_m x_{mo}} \quad (2.4)$$

$$\text{제약식} \quad \frac{u_1 y_{1j} + \dots + u_s y_{sj}}{v_1 x_{1j} + \dots + v_m x_{mj}} \leq 1 \quad (j = 1, \dots, n)$$

$$v_1, v_2, \dots, v_m \geq 0$$

$$u_1, u_2, \dots, u_s \geq 0$$

위의 모형에서 입력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x_{mj}$  :  $DMU_j$ 의 투입물  $m$ 의 투입량

$y_{sj}$  :  $DMU_j$ 의 산출물  $s$ 의 산출량

의사결정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v_i$  : 투입물  $i$ 의 가중치

$u_j$  : 산출물  $j$ 의 가중치

제약 조건은 산출물대 투입물의 비율이 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최적의 목적함수 값은  $\theta^*$ 로 표시한다.

14) Cooper 등(2000)의 Data Envelopment Analysis와 Cooper 등(2004)의 Handbook on Data Envelopment Analysis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위의 분수계획 모형을 (2.5)와 같이 선형계획 모형으로 전환해 계산의 복잡성을 완화할 수 있다.

$$\begin{aligned}
 (LP_o) \quad & \max \quad \theta = u_1 y_{1o} + \cdots + u_s y_{so} & (2.5) \\
 \text{제약식} \quad & v_1 x_{1o} + \cdots + v_m x_{mo} = 1 \\
 & u_1 y_{1j} + \cdots + u_s y_{sj} \leq v_1 x_{1j} + \cdots + v_m x_{mj} \quad (j = 1, \cdots, n) \\
 & v_1, v_2, \cdots, v_m \geq 0 \\
 & u_1, u_2, \cdots, u_s \geq 0
 \end{aligned}$$

위의  $(LP_o)$  모형은 (3.6)과 같이  $(LP'_o)$  모형으로 간단히 나타낸다.

$$\begin{aligned}
 (LP'_o) \quad & \max \quad u y_o & (2.6) \\
 \text{제약식} \quad & v x_o = 1 \\
 & -vX + uY \leq 0 \\
 & v \geq 0, u \geq 0
 \end{aligned}$$

최적해는 쌍대문제를 통해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다. 첫 번째 제약조건에 실수  $\theta$ 와 두 번째 제약조건에 비음 벡터  $\lambda = (\lambda_1, \dots, \lambda_n)^T$ 로 쌍대문제로 변환하면 (2.7)과 같다.

$$\begin{aligned}
 (DLP_o) \quad & \min \quad \theta & (2.7) \\
 \text{제약식} \quad & \theta x_o - X\lambda \geq 0 \\
 & Y\lambda \geq y_o \\
 & \lambda \geq 0
 \end{aligned}$$

Cooper 등(2000)에 따르면 CCR 모형의 생산가능집합은 식(2.8)과 같이 정의 된다.

$$P = \{(x, y) \mid x \geq X\lambda, y \leq Y\lambda, \lambda \geq 0\} \quad (2.8)$$

여기서 생산가능집합  $P$ 와  $(DLP_o)$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theta x_o, y_o)$ 가  $P$ 에 속하고 목적함수는 투입물 벡터  $x_o$ 를  $\theta x_o$ 로 줄이는 최소값  $\theta$ 를 찾는 것이다. 즉  $DMU_o$ 의 최소 산출



물 수준  $y_o$ 를 보증하는 생산가능집합에서 투입물을 가능한 작은 값으로 줄이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theta^* < 1$ 일 때  $(X\lambda, Y\lambda)$ 는  $(\theta x_o, y_o)$ 보다 우수한 값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에 관하여 투입물 잉여  $s^- \in R^m$ 와 산출물 부족  $s^+ \in R^s$ 로 (3.9)과 같이 정의한다.

$$s^- = \theta x_o - X\lambda, s^+ = Y\lambda - y_o \quad (2.9)$$

여기서  $(DLP_o)$ 의 실행가능해  $(\theta, \lambda)$ 에 대해  $s^- \geq 0, s^+ \geq 0$ 이다.

투입물 잉여(input excess)와 산출물 부족(output slack)을 구하기 위해 다음의 두 단계로 LP문제를 풀면 된다.

(단계1)

$(DLP_o)$ 를 풀고 최적 목적함수값을  $\theta^*$ 로 두면 LP의 쌍대정리에 의해  $(LP_o)$ 의 목적함수 값과 일치한다.

(단계2)

$\theta^*$ 를 이용하여  $(\lambda, s^-, s^+)$ 를 사용하여 다음의 LP를 구한다.

$$\max \omega = es^- + es^+ \quad (2.10)$$

$$\text{제약식 } s^- = \theta^* x_o - X\lambda$$

$$s^+ = Y\lambda - y_o$$

$$\lambda \geq 0, s^- \geq 0, s^+ \geq 0$$

여기서  $e = (1, \dots, 1)$  (1로 이루어진 벡터)이며

$$es^- = \sum_{i=1}^m s_i^-, es^+ = \sum_{r=1}^s s_r^+ \text{이다.}$$

(정의1) 최대슬랙 해(Max-slack Solution), 영슬랙활동(zero-slack activity)

단계 2의 최적해  $(\lambda^*, s^{*-}, s^{*+})$ 는 최대슬랙해(max-slack solution)라 한다. 또한 최대슬랙해가  $s^{*-} = 0, s^{*+} = 0$ 이면 영슬랙(zero-slack)이라 한다.

(정의2) CCR-효율성(CCR-Efficiency), 기술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

위의 두 단계 LP의 최적해  $(\theta^*, \lambda^*, s^{*-}, s^{*+})$ 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평가대상

DMU<sub>o</sub>는 CCR-효율적이라 하고, 그 외의 경우는 CCR-비효율적이라 한다.<sup>15)</sup>

$$\textcircled{1} \theta^* = 1$$

$$\textcircled{2} \text{ 모든 슬랙이 } 0(s^- = 0, s^+ = 0)$$

효율성의 개념에서 보면  $\theta^*$ 가 1보다 작다는 것은 모든 투입물을 혼합 비율을 바꾸지 않고 동시에 줄일 수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조건 ①을 기술 효율성이라 한다.<sup>16)</sup>

(정의3) 참조집합(Reference Set)

단계1과 단계2에서 구한 최대슬랙해로부터, 비효율적인 DMU<sub>o</sub>에 대한 참조집합  $E_o$ 를 (2.11)과 같이 정의한다.

$$E_o = \{j | \lambda_j^* > 0\} \quad (j \in \{1, \dots, n\}) \quad (2.11)$$

한편 단계2의 최적해는 (2.12)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heta^* x_o = \sum_{j \in E_o} x_j \lambda_j^* + s^{-*} \quad (2.12)$$

$$y_o = \sum_{j \in E_o} y_j \lambda_j^* - s^{+*}$$

(2.12)로부터 다음과 같은 관계를 알 수 있다.

$$x_o \geq \theta^* x_o - s^{-*} = \sum_{j \in E_o} x_j \lambda_j^* \quad (2.13)$$

$$y_o \leq y_o + s^{+*} = \sum_{j \in E_o} y_j \lambda_j^*$$

따라서 어떤 DMU<sub>o</sub>에서  $(x_o, y_o)$ 의 효율성은, 투입물 값을 비율  $\theta^*$ 의 값으로 줄이고 투입물 잉여  $s^{-*}$ 를 제거하거나, 산출물 값에 산출물 부족분  $s^{+*}$ 를 추가하면 개선 될 수 있

15) CCR-효율성을 파레토-쿠프만(Pareto-Koopmans Efficiency) 효율성 또는 완전 효율성(full efficiency)이라고도 한다.

16) 기술효율성을 방사형 효율성(radial efficiency) 또는 약한 효율성(weak efficiency)이라고도 한다.



음을 알 수 있다. 즉, 총투입물 개선량  $\Delta x_o$ 와 총산출물 개선량  $\Delta y_o$ 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Delta x_o &= x_o - (\theta^* x_o - s^{-*}) = (1 - \theta^*)x_o + s^{-*} \\ \Delta y_o &= s^{+*}\end{aligned}\quad (2.14)$$

$\Delta x_o$ 와  $\Delta y_o$ 를 이용하면 DMU<sub>o</sub>를 효율적 프론티어에 투사(projection)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hat{x}_o, \hat{y}_o)$ 를 CCR투사라고 한다.

$$\begin{aligned}\hat{x}_o &= x_o - \Delta x_o = \theta^* x_o - s^{-*} \leq x_o \\ \hat{y}_o &= y_o + \Delta y_o = y_o + s^{+*} \geq y_o\end{aligned}\quad (2.15)$$

이 모형은 산출물 중심 모형으로 CCR - I 모형에서 CCR - O 모형으로 변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CCR - I 모형을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DLP_o) \quad & \min \theta \\ \text{제약식} \quad & \theta x_o - X\lambda \geq 0 \\ & Y\lambda \geq y_o \\ & \lambda \geq 0\end{aligned}\quad (2.16)$$

여기서 CCR - O 모형으로 바꾸기 위해  $\theta = \frac{1}{\eta}$ ,  $\lambda = \mu \theta$  라 정의하고 (2.16)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begin{aligned}(DLPO_o) \quad & \max \eta \\ \text{제약식} \quad & x_o - X\mu \geq 0 \\ & \eta y_o - Y\mu \leq 0 \\ & \mu \geq 0\end{aligned}\quad (2.17)$$



최적해는 투입물 중심 모형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ta^* = 1/\theta^*, \mu^* = \lambda^*/\theta^* \quad (2.18)$$

(2.18)식에 따라  $\theta^* \leq 1$  작으면  $\eta^* \geq 1$  이 됨을 알 수 있다. 즉  $\eta$  값이 증가할수록 DMU가 비효율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모형으로부터 투입물 중심 CCR모형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산출물 중심 CCR모형이 효율적이라는 것과 필요충분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할 프로그램인 DEA-SOLVER에서는 효율성 값을  $\theta^* = 1/\eta^* (\leq 1)$ 로 나타낸다. 이것은 산출물 중심 모형과 투입물 중심 모형의 효율성 값을 비교하기 위함이다.

산출물 중심 모형의 슬랙을 정의하면 슬랙은  $(t^-, t^+)$ 로 나타내고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begin{aligned} t^- &= x_o - X\mu \\ t^+ &= Y\mu - \eta y_o \end{aligned} \quad (2.19)$$

이러한 값들은 투입중심 모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t^{-*} &= s^{-*}/\theta^* \\ t^{+*} &= s^{+*}/\theta^* \end{aligned} \quad (2.20)$$

$(DLPO_o)$ 의 쌍대문제는 벡터 각 제약조건식에 각각  $p$ 와  $q$ 를 이용하여 다음 선형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LPO_o) \min \quad & px_o \\ \text{제약식} \quad & qy_o = 1 \\ & -pX + qY \leq 0 \\ & p \geq 0, q \geq 0 \end{aligned} \quad (2.21)$$

$(LP_o)$ 의 최적해를  $(v^*, u^*)$ 라 하면  $(LPO_o)$ 의 최적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 = v^*/\theta^*, q^* = u^*/\theta^* \quad (2.22)$$

또한 최적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p^* x_o = v^* x_o / \theta^* = \eta^* \quad (2.23)$$

총투입물 개선량  $\Delta x_o$ 와 총산출물 개선량  $\Delta y_o$ 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elta x_o = -t^- \quad (2.24)$$

$$\Delta y_o = (\eta y_o + t^+) - y_o$$

$\Delta x_o$ 와  $\Delta y_o$ 를 이용해 효율적 프론티어에 다음과 같이 투사(projection) 할 수 있다.

$$\hat{x}_o = x_o - \Delta x_o = x_o - t^- \leq x_o \quad (2.25)$$

$$\hat{y}_o = y_o + \Delta y_o = \eta y_o + t^+ \geq y_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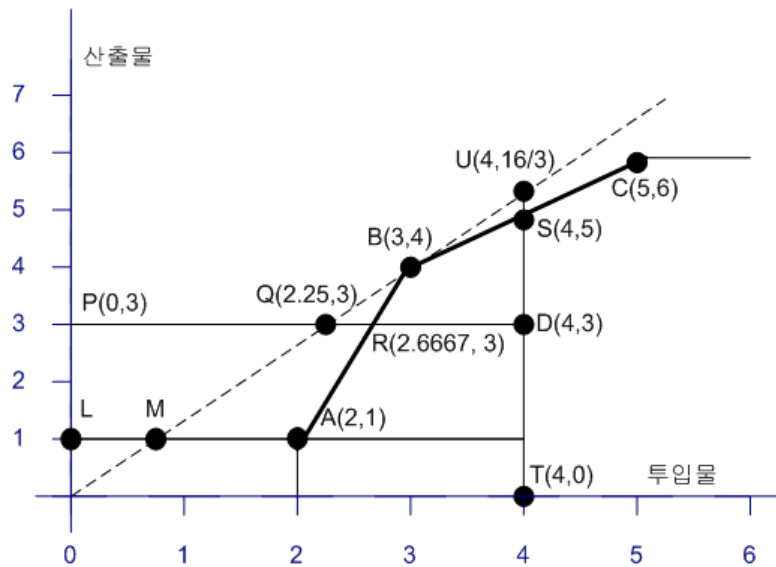
DEA연구의 초기부터 CCR 모형의 대안으로서 다양한 확장모형이 개발되었으며 그 중 BCC 모형이 대표적이다. CCR 모형은 규모의 수익(return to scale)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BCC에서 효율적 프론티어는 주어진 DMU들의 볼록집합(convex hull)로 구성되므로 규모의 수익이 변동한다고 본다.

규모의 수익(return to scale)이란 규모의 변화에 의한 산출량의 반응 정도를 나타낸 것이며 세 가지 특성을 가진다. 첫째, 규모가  $\lambda$ 배 증가할 때 산출량도 똑같이  $\lambda$ 배 증가하는 특성을 가진 경우로서 규모에 대한 수익이 불변(constant return to scale)이라 한다. 둘째, 규모가  $\lambda$ 배 증가할 때 산출량이  $\lambda$ 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가진 경우로서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increasing return to scale)하고 있다고 한다. 셋째, 규모가  $\lambda$ 배 증가할 때 산출량이  $\lambda$ 배 보다 작게 증가하는 특성을 가진 경우로 생산기술은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감(decreasing return to scale)한다고 한다.

CCR모형에서는 동질적인 모든 DMU가 규모수익성이 일정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본다. 즉, 투입물을  $x$ , 산출물을  $y$ 라 할 때 활동  $(x, y)$ 가 실행가능하다면 스칼라 크기

$t$ 배만큼 곱해진 활동  $(tx, ty)$ 도 실행가능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DMU 중 일부가 규모 수익 감소나 규모수익 증가의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면, 이 DMU들의 상대적 효율성은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 차이는 규모의 효과가 DMU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기술적 효율성과 규모의 효과에 의한 효율성(scale efficiency)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

CCR모형과 BCC모형을 비교하기 위한 단순한 예<sup>17)</sup>로서 [그림 6-8-1]과 같은 하나의 투입물과 하나의 산출물을 가진 네 개의 DMU A, B, C, D를 보자. CCR모형의 효율적 프론티어는 원점으로부터 B를 통하는 일직선이고 BCC모형의 효율적 프론티어는 A, B, C를 연결하는 굵은 선이다.



[그림 6-8-1] BCC 예제

D의 투입 중심 BCC효율성은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frac{PR}{PD} = \frac{2.6667}{4} = 0.6667$$

D의 투입 중심 CCR효율성은 다음과 같다.

$$\frac{PQ}{PD} = \frac{2.25}{4} = 0.5625$$

17) Cooper 등(2000)이 사용한 예제이다.





일반적으로, 규모의 효과에 의해 CCR효율성은 BCC효율성 값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은 CCR 모형은 단순히 기술 효율성만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반해, BCC 모형은 기술 효율성 이외에도 규모 효율성까지도 포함하여 측정하기 때문이다.

D는 산출물 중심 BCC모형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frac{ST}{DT} = \frac{5}{3} = 1.6667$$

D의 산출물 중심 CCR효율성은 다음과 같다.

$$\frac{UT}{DT} = \frac{16/3}{3} = 1.7778$$

이것은 D의 산출물 값을 1.6667배 함으로서( $1.6667 \times 3 = 5units$ ) BCC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고, D의 산출물을 1.7778배 함으로서 ( $1.7778 \times 3 = 16/3units$ ) CCR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D가 규모 수익성이 일정한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CCR 효율적 프론티어상의 U가 될 것이고 규모 수익성이 가변하는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S가 될 것이다. 따라서 CCR 효율적 프론티어에 투영시켰을 때와 BCC 효율적 프론티어에 투영시켰을 때의 차이 SU가 규모의 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CRS(constant return to scale) 모형으로 측정된 효율성은 순수한 기술적 효율성과 규모의 효율성으로 분해됨을 알 수 있다. 한편 VRS(variable return to scale) 모형으로 측정된 효율성은 규모의 효과가 배제된 기술적 효율성만을 의미하게 된다.

Cooper 등(2000)에 의하면 규모효율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의 4) 규모효율성(Scale efficiency)

DMU의 CCR 효율성과 BCC 효율성을 각각  $\theta_{CCR}^*$ ,  $\theta_{BCC}^*$  라고 할 때, 규모 효율성은 다음과 같다.

$$SE = \frac{\theta_{CCR}^*}{\theta_{BCC}^*} \quad (2.26)$$

CCR 효율성은 BCC 효율성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규모 효율성은 1보다 작거나 같다. CCR 효율성은 규모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이라 하는 반면에 BCC 효율성은 규모에 대한 수익가변(variable return to scale)을 가정하기 때

문에 순수 기술 효율성(pure technical efficiency)이라 한다. 이러한 개념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text{기술효율성(TE)} = \text{순수기술효율성(PTE)} \times \text{규모효율성(SE)} \quad (2.27)$$

이러한 분해는 비효율성의 원인이 비효율적인 운영에 의한 것인지 규모로 인한 불리한 상황에 의한 것인지 혹은 둘 다에 의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규모 효율성을 [그림 6-8-1]에서 살펴보자. BCC 효율적인 DMU A의 규모효율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SE(A) = \theta_{CCR}^*(A) = \frac{LM}{LA} < 1$$

여기서 DMU A는 규모의 효과를 배제하고 효율적(PTE=1)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체 비효율성(TE)은 LM/LA으로 표현된 규모 비효율성에 의한 것이다.

DMU B에서는 규모효율성이 1이므로 최대 생산성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비효율적인 DMU D를 식(2.26)과 같이 투입물 중심으로 규모효율성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SE(D) = \frac{PQ}{PD} \times \frac{PD}{PR} = \frac{PQ}{PR} = \frac{2.25}{4} \times \frac{4}{2.6667} = 0.8437$$

여기서 DMU D의 규모효율성(0.8437)은 투입중심 BCC 투사의 규모효율성  $\left(\frac{PQ}{PR}\right)$ 과 같음을 알 수 있다.

DMU D의 투입물 중심 효율성 분해는 식(3.27)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TE(D) = PTE(D) \times SE(D)$$

$$\frac{PQ}{PD} = \frac{PR}{PD} \times \frac{PQ}{PR} ; \frac{2.25}{4} = \frac{2.6667}{4} \times 0.8437$$

그러므로 DMU D의 전체 비효율성은 D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동시에 D의 불리한 상황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Banker 등(1984)에 따르면 BCC모델에서 생산가능집합  $P_B$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_B = \{(x, y) | x \geq X\lambda, y \leq Y\lambda, e\lambda = 1, \lambda \geq 0\} \quad (2.28)$$

위 식에서  $X = (x_j) \in R^{m \times n}$ ,  $Y = (y_j) \in R^{s \times n}$ 는 주어진 자료이고,  $\lambda \in R^n$ ,  $e$ 는 1로만 이루어진 행 벡터이다. BCC의 생산가능집합 식(3.28)을 CCR모형의 생산가능집합 식(2.8)과 비교했을 때  $e\lambda = \sum_{j=1}^n \lambda_j = 1$ 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투입물 중심 BCC모형은  $DMU_o$ 의 효율성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BCC_o) \min \theta_B \quad (2.29)$$

$$\text{제약식 } \theta_B x_o - X\lambda \geq 0$$

$$Y\lambda \geq y_o$$

$$e\lambda = 1$$

$$\lambda \geq 0$$

위 모형을 CCR-I 모형 ( $DLP_o$ )과 비교할 경우 두 모형간의 차이는 각 DMU에 대한 참조집합  $\lambda$ 의 크기를 1로 제한하는 볼록성(convexity) 조건에 의해 발생됨을 알 수 있다. 즉,  $e\lambda = 1$ 이라는 제약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규모의 보수증가·불변·감소 상태를 모두 포괄했다. 이 선형모형 ( $BCC_o$ )의 쌍대 모형은 다음과 같다.

$$\max z = uy_o - u_o \quad (2.30)$$

$$\text{제약식 } vx_o = 1$$

$$-vX + uY - u_o e \leq 0$$

$$v \geq 0, u \geq 0$$

또한 쌍대 모형으로부터 분수계획 모형을 구할 수 있다.

$$\max \frac{uy_o - u_o}{vx_o} \quad (2.31)$$

$$\text{제약식 } \frac{uy_j - u_o}{vx_j} \leq 1 (j = 1, \dots, n)$$

$$v \geq 0, u \geq 0, u_o : \text{무제약변수}$$

일반적으로  $\theta_B^* < 1$  일때  $(X\lambda, Y\lambda)$ 는  $(\theta_{B^*}x_o, y_o)$ 보다 우수한 값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에 관하여 투입물 잉여  $s^- \in R^m$ 와 산출물 부족  $s^+ \in R^s$ 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s^- = \theta_{B^*}x_o - X\lambda, \quad s^+ = Y\lambda - y_o \quad (2.32)$$

투입물 잉여(input excess)와 산출물 부족(output slack)을 구하기 위해 다음의 두 단계로 LP문제를 풀면 된다.

(단계1)

$(BCC_o)$ 를 풀고 최적 목적함수값을  $\theta_B^*$ 로 두면 LP의 쌍대정리에 의해  $(LP_o)$ 의 목적함수값과 일치한다.

(단계2)

$\theta_B^*$ 를 이용하여 다음의 LP를 구한다.

$$\max \omega = es^- + es^+ \quad (2.33)$$

$$\text{제약식 } s^- = \theta_B^*x_o - X\lambda$$

$$s^+ = Y\lambda - y_o$$

$$\lambda \geq 0, s^- \geq 0, s^+ \geq 0$$

여기서  $e = (1, \dots, 1)$  (1로 이루어진 벡터)이며

$$es^- = \sum_{i=1}^m s_i^-, \quad es^+ = \sum_{r=1}^s s_r^+ \text{이다.}$$

(정의5) BCC-효율성(BCC-Efficiency)

위의 두 단계 LP의 최적해  $(\theta_B^*, \lambda^*, s^{*-}, s^{*+})$ 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평가대상 DMU<sub>o</sub>는 BCC-효율적이라 하고, 그 외의 경우는 BCC-비효율적이라 한다.

- ①  $\theta_B^* = 1$
- ② 모든 슬랙이 0 ( $s^- = 0, s^+ = 0$ )

(정의6) 참조집합(Reference Set)

단계1과 단계2에서 구한 최대슬랙해로부터, 비효율적인 DMU<sub>o</sub>에 대한 참조집합  $E_o$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_o = \{j | \lambda_j^* > 0\} \quad (j \in \{1, \dots, n\}) \quad (2.34)$$

한편 단계 2의 최적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heta_B^* x_o = \sum_{j \in E_o} x_j \lambda_j^* + s^{-*} \quad (2.35)$$

$$y_o = \sum_{j \in E_o} y_j \lambda_j^* - s^{+*}$$

총투입물 개선량  $\Delta x_o$ 와 총산출물 개선량  $\Delta y_o$ 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elta x_o = x_o - (\theta_B^* x_o - s^{-*}) = (1 - \theta_B^*) x_o + s^{-*} \quad (2.36)$$

$$\Delta y_o = s^{+*}$$

$\Delta x_o$ 와  $\Delta y_o$ 를 이용하면 DMU<sub>o</sub>를 효율적 프론티어에 투사(projection)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hat{x}_o, \hat{y}_o)$ 를 BCC투사라고 한다.

$$\hat{x}_o = x_o - \{(1 - \theta_B^*) x_o + s^{-*}\} = \theta_B^* x_o - s^{-*} \quad (2.37)$$

$$\hat{y}_o = y_o + s^{+*}$$

산출물 중심 BCC 모형은 산출물 중심 CCR모형에  $e\lambda = 1$ 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BCCO_o) \max \eta_B \quad (2.38)$$

$$\text{제약식 } x_o - X\lambda \geq 0$$

$$\eta_B y_o - Y\lambda \leq 0$$

$$e\lambda = 1$$

$$\lambda \geq 0$$



산출물 중심 모형의 슬랙( $t^-, t^+$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begin{aligned} t^- &= x_o - X\lambda \\ t^+ &= Y\lambda - \eta_B y_o \end{aligned} \quad (2.39)$$

( $BCCO_o$ )의 쌍대문제는 벡터 각 제약조건식에 각각  $v, u, v_o$ 를 이용하여 다음 선형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min z &= vx_o - v_o & (2.40) \\ \text{제약식 } & uy_o = 1 \\ & vX - uY - v_o e \geq 0 \\ & v \geq 0, u \geq 0, v_o : \text{무제약변수} \end{aligned}$$

또한 이 모형을 분수계획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min \frac{vx_o - v_o}{uy_o} & & (2.41) \\ \text{제약식 } \frac{vx_j - v_o}{uy_j} & \geq 1 \quad (j = 1, \dots, n) \\ & v \geq 0, u \geq 0, v_o : \text{무제약변수} \end{aligned}$$

총투입물 개선량  $\Delta x_o$ 와 총산출물 개선량  $\Delta y_o$ 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Delta x_o &= -t^- \\ \Delta y_o &= (\eta_B y_o + t^+) - y_o \end{aligned} \quad (2.42)$$

$\Delta x_o$ 와  $\Delta y_o$ 를 이용해 효율적 프론티어에 다음과 같이 투사(projection) 할 수 있다.

$$\begin{aligned} \hat{x}_o &= x_o - \Delta x_o = x_o - t^- \leq x_o \\ \hat{y}_o &= y_o + \Delta y_o = \eta_B y_o + t^+ \geq y_o \end{aligned} \quad (2.43)$$



## 2) 효율성 분석

### (1) 표본의 특성

분석의 대상은 수협중앙회 유통사업부의 최근 3년간 위판실적이 있는 69개 수산물 위(공)판장을 대상으로 해서 위판장수, 경매장수(유개+무개), 중도매인수, 경매사수(자격증보유자+미보유자), 사무실(평)의 5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여기에 산출변수는 물량(톤), 금액(백만원)의 2개 변수로 하였으며, 자료 분석기간은 2004년, 2005년, 2006년 3개년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표 6-8-8] 투입변수 및 산출변수

조합별	산출변수		투입변수				
	물량(톤)	금액(백만원)	위판장수	경매장(평)	중도매인(명)	경매사수	사무실
경인북부	667.667	1,896.667	1.000	226.667	7.333	1.000	33.333
용진	2,418.667	21,532.667	4.667	1,057.333	43.667	4.667	438.000
인천	3,583.333	30,381.333	2.000	1,102.000	48.333	4.667	107.000
경기남부	3,245.000	7,737.667	2.000	447.667	41.333	5.000	74.000
영흥	800.000	4,987.000	1.000	143.333	10.000	1.000	3,789.000
고성	5,652.333	15,869.000	3.000	2,487.667	17.333	4.667	15.333
속초	10,095.000	27,226.667	1.333	292.000	14.000	2.000	5.000
대포	857.667	4,961.333	1.000	276.667	2.000	2.000	0.001
양양	1,743.667	7,437.333	3.000	393.000	24.333	4.333	59.333
강릉	9,813.333	30,704.000	2.000	2,096.333	18.667	6.000	33.000
동해	8,586.667	24,798.333	1.000	1,174.000	19.000	1.000	371.333
삼척	6,069.333	13,384.000	1.000	268.000	16.667	2.000	0.001
원덕	2,121.667	6,120.000	3.000	1,678.667	8.333	0.667	0.001
죽왕	1,106.667	5,564.333	5.000	232.667	5.667	1.000	0.001
보령	9,616.333	33,604.000	1.667	576.667	53.000	5.000	19.667
서천	1,135.000	7,713.000	1.000	442.000	25.000	1.000	86.000
서산	8,314.000	28,161.000	2.667	857.333	26.000	2.333	20.000
서면	6,839.333	16,262.333	2.000	236.667	25.667	1.667	6.000
태안남면	379.667	3,930.333	3.000	93.000	13.000	1.333	5.333
안면	709.333	5,778.333	2.000	67.667	16.000	1.333	40.333
신흥	1,053.000	3,980.667	1.000	152.667	27.667	1.333	12.000
군산	8,445.667	28,341.000	5.000	2,030.000	91.333	6.333	291.667
부안	714.000	4,313.667	2.000	518.333	49.333	4.000	7.000
강진	1,181.667	12,017.000	2.000	224.000	24.333	3.333	32.000
목포	27,346.000	75,902.000	2.000	2,137.000	43.667	7.667	435.667
신안	14,122.667	41,138.333	5.000	342.667	58.667	3.000	140.000
완도	10,410.333	44,545.333	3.667	1,301.333	80.667	4.000	29.333
영광	872.000	6,847.667	3.000	161.000	31.333	5.000	52.000
금일	2,886.667	6,982.333	1.667	689.667	15.667	0.333	10.000
소안	7,782.000	7,927.667	2.000	167.000	17.667	0.333	0.001
진도	16,197.000	24,319.333	4.333	616.000	30.667	4.667	234.000

해남군	31,638.333	29,540.667	4.333	160.000	56.333	5.333	60.667
흑산도	1,423.333	16,378.667	1.333	16.667	41.667	1.000	0.001
거문도	4,367.667	12,286.667	1.000	243.000	11.667	3.000	0.001
고흥	8,155.000	41,979.667	6.333	660.000	127.333	9.333	91.333
나로도	854.000	7,493.333	1.000	163.667	17.000	1.000	10.000
여수	42,953.000	101,026.333	3.667	5,142.000	156.667	7.667	1,745.000
제3,4구	2,218.000	10,752.667	1.000	460.000	36.333	2.000	17.000
경주	21,046.333	36,857.333	1.000	623.667	20.667	1.333	10.000
영일	30,333.667	66,656.667	5.000	2,218.000	112.667	5.000	25.000
포항	9,414.000	33,481.667	2.000	1,136.000	61.000	21.667	53.667
강구	11,043.333	24,667.000	2.000	763.667	21.333	2.000	3.000
축산	12,066.667	22,196.000	1.000	389.667	31.000	2.667	93.000
후포	10,663.000	30,701.667	2.333	755.667	27.667	4.333	53.333
죽변	12,422.333	34,027.667	2.000	1,251.333	26.333	2.667	315.333
울릉	15,228.667	23,002.000	3.667	1,418.667	44.333	5.667	33.333
거제	12,107.667	15,567.333	7.000	832.667	49.667	7.333	12.000
고성	1,955.000	10,340.333	3.667	410.333	46.333	2.333	39.667
마산	30,110.333	44,086.667	1.333	1,780.000	73.000	5.000	46.000
삼천포	34,650.667	94,577.667	4.000	2,058.667	94.333	9.000	134.333
울산	12,877.333	31,386.000	2.000	1,356.667	50.667	6.667	165.000
의창	7,252.667	14,418.333	1.000	102.333	28.000	2.667	42.000
진해	957.667	8,634.333	2.000	133.000	22.000	2.333	35.000
통영	37,629.667	50,003.333	3.000	1,212.333	60.667	6.000	42.000
하동	2,619.333	13,536.000	1.667	102.667	25.000	2.333	3.333
남해	15,118.000	34,560.333	6.000	400.667	69.333	8.000	194.000
사천	693.333	3,282.000	1.000	53.667	13.000	2.667	5.000
굴수하	11,646.667	49,844.333	1.000	206.333	32.333	3.000	21.000
권혁망	19,392.667	83,332.333	2.000	342.667	73.000	4.000	271.000
진동	365.667	1,512.667	2.000	150.000	21.000	2.000	52.000
부산시	77,513.000	133,292.000	5.000	1,380.333	172.667	9.000	94.333
부산 동부	4,664.667	6,558.667	1.333	191.000	21.333	1.000	59.667
제1,2구	12,841.000	25,821.000	5.000	360.667	75.333	6.000	113.667
서귀포	7,611.000	52,532.000	2.000	455.667	49.333	6.000	29.000
모슬포	7,390.667	17,685.333	1.333	181.333	36.333	4.000	41.667
성산포	14,091.667	68,723.333	1.333	283.000	44.000	3.000	23.333
제주시	4,433.333	22,720.000	1.000	366.667	27.333	2.000	120.000
추자도	2,771.000	14,366.333	1.333	233.667	11.000	0.001	10.333
한림	15,545.667	61,048.333	1.333	618.333	37.667	2.333	158.000

주 : 산출변수와 투입변수값은 2004년, 2005년, 2006년 실적의 평균값임, 소수 넷째자리 반올림.  
 자료 : 수협중앙회, 수산물위(공)판장 현황 각년호



## (2) 효율성 점수에 따른 수협별 순위

효율성 점수가 1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평가대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 효율성 점수가 1미만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을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료포락분석 결과로 나타나는 효율성 점수가 1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의미이며 이들이 절대적으로 효율적인 DMU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즉 이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효율성의 개선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효율성 결과를 요약하면 69개 수협의 효율성 평균은 0.579이며, 효율성 점수가 1(100%)인 곳은 18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효율적 수협 중  $0.80 \leq E \leq 0.99$ 의 경우가 3개,  $0.60 \leq E \leq 0.79$ 의 경우가 10개,  $0.40 \leq E \leq 0.59$ 의 경우가 11개,  $0.20 \leq E \leq 0.39$ 의 경우가 18개,  $0 \leq E \leq 0.19$ 의 경우가 9개로 나타났다. (참조 [표 6-8-9])

[표 6-8-9] CCR 효율성 점수에 따른 위(공)판장 분류

효율성 점수 구분	위(공판장)	총계
E=1	속초, 대포, 삼척, 원적, 죽왕, 소안, 해남군, 흑산도, 거문도, 경주, 강구, 마산, 굴수하, 권혁망, 부산시, 성판포, 추자도, 한림	18개
$0.80 \leq E \leq 0.99$	목포(0.992), 강릉(0.839), 동해(0.81)	3개
$0.60 \leq E \leq 0.79$	의창(0.785), 통영(0.772), 신안(0.716), 축산(0.704), 죽변(0.695), 하동(0.687), 여수(0.662), 서귀포(0.655), 서면(0.641), 진도(0.622)	10개
$0.40 \leq E \leq 0.59$	서산(0.59), 삼천포(0.587), 후포(0.582), 영일(0.566), 모슬포(0.543), 제주시(0.509), 보령(0.508), 고성(0.456), 남해(0.454), 부산동부(0.449), 완도(0.428)	7개
$0.20 \leq E \leq 0.39$	울산(0.372), 금일(0.371), 인천(0.37), 거제(0.368), 제1,2구(0.368), 포항(0.351), 울릉(0.337), 안면(0.318), 강진(0.302), 나로도(0.287), 영흥(0.286), 용진(0.265), 진해(0.264), 서천(0.251), 고흥(0.25), 사천(0.229), 제3,4구(0.226), 태안남면(0.217),	18개
$0 \leq E \leq 0.19$	군산(0.18), 양양(0.168), 영광(0.167), 고성(0.159), 경기남부(0.14), 신흥(0.136), 경인북부(0.134), 부안(0.103), 진동(0.046)	9개

주: 괄호안은 효율성 점수, 순위는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었음.

### (3) 효율적 DMU들의 참조횟수

분석결과 비효율적인 수협들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DMU들인 속초(21회), 대포(2회), 삼척(1회), 원덕(1회), 죽왕(0회), 소안(9회), 해남군(12회), 흑산도(12회), 거문도(0회), 경주(33회), 강구(0회), 마산(0회), 굴수하(7회), 권혁망(2회), 부산시(6회), 성산포(31회), 추자도(6회), 한림수협(3회)을 참조하여야 한다([표 6-8-10] 괄호안의 수치는 비효율적인 DMU가 이들 효율적인 DMU를 참조기관으로 사용한 횟수이다).

가장 많이 참조기관으로 사용된 곳은 경주수협으로 33번, 그 다음으로 성산포 수협으로 31번 사용됨. 따라서 이들 DMU들의 경영형태에 주목하여야 한다.

반면에 죽왕, 거문도, 강구, 마산수협 등은 효율성 점수는 비록 1로 나타났으나 한 번도 참조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음으로써 경영형태가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6-8-10] 효율적 DMU들의 참조횟수

참조집단	빈도	참조집단	빈도
경주	33	한림수협	3
성산포	31	대포	2
속초	21	권혁망	2
해남군	12	삼척	1
흑산도	12	원덕	1
소안	9	죽왕	0
굴수하	7	거문도	0
부산시	6	강구	0
추자도	6	마산	0

### (4) 효율성 점수의 경제학적 의미

DEA/CCR모형(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의 가정)에 의한 분석결과에서 비효율적 수협이 의미하는 바를 예를 들면 사천수협(58위)의 효율성 점수가 0.229이므로 참조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22.9% 효율적이라는 의미이다. 이 경우 사천수협이 참조집단만큼 효율적이 되려면 산출물을 감소시키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투입요소를 77.1%를 감소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가장 낮은 효율성 점수를 나타내는 진동수협(69위)은 참조집합인 속초, 굴수하, 성산포 수협과 같이 효율적인 수협이 되기 위해서는 투입요소를 95.4% 줄여야 함을 의미한다.



[표 6-8-11] CCR모형을 이용한 투입지향적 효율성 분석결과 및 참조기관

순위	DMU	효율성	참조기관(잠재가격)
1	속초	1.000	
1	대포	1.000	
1	삼척	1.000	
1	원덕	1.000	
1	죽왕	1.000	
1	소안	1.000	
1	해남군	1.000	
1	흑산도	1.000	
1	거문도	1.000	
1	경주	1.000	
1	강구	1.000	
1	마산	1.000	
1	굴수하	1.000	
1	권혁망	1.000	
1	부산시	1.000	
1	성산포	1.000	
1	추자도	1.000	
1	한림	1.000	
19	목포	0.992	경주(1.797), 성산포(0.141)
20	강릉	0.839	속초(1.086), 대포(0.231)
21	동해	0.810	경주(0.212), 추자도(0.223), 한림(0.226)
22	의창	0.785	해남군(0.121), 굴수하(0.166), 부산시(0.019)
23	통영	0.772	해남군(0.158), 경주(1.325), 부산시(0.061)
24	신안	0.717	소안(0.551), 해남군(0.060), 권혁망(0.333), 성산포(0.106)
25	축산	0.704	경주(0.239), 굴수하(0.043), 부산시(0.084)
26	죽변	0.695	속초(0.614), 경주(0.470)
27	하동	0.686	속초(0.164), 흑산도(0.290), 성산포(0.063)
28	여수	0.663	경주(1.649), 성산포(0.586)
29	서귀포	0.655	속초(0.347), 경주(0.042), 성산포(0.604)
30	서면	0.641	속초(0.069), 소안(0.488), 흑산도(0.006), 경주(0.015), 성산포(0.144)
31	진도	0.622	해남군(0.125), 경주(0.582)
32	서산	0.590	속초(0.353), 경주(0.503)
33	삼천포	0.587	속초(0.028), 경주(1.726), 성산포(0.439)
34	후포	0.582	속초(0.882), 경주(0.181)
35	영일	0.566	속초(0.105), 소안(0.164), 흑산도(0.750), 경주(1.363)
36	모슬포	0.542	해남군(0.082), 굴수하(0.235), 부산시(0.027)
37	보령	0.509	흑산도(0.098), 경주(0.339), 성산포(0.284)
38	제주시	0.509	속초(0.018), 경주(0.191), 성산포(0.221)
39	고성	0.456	속초(0.396), 대포(0.632), 경주(0.053)
40	남해	0.454	속초(0.162), 해남군(0.260), 굴수하(0.450)
41	부산동부	0.449	소안(0.175), 해남군(0.019), 경주(0.023), 부산시(0.029)
42	완도	0.429	소안(0.058), 흑산도(0.233), 경주(0.749), 성산포(0.155), 추자도(0.143)
43	울산	0.372	경주(0.478), 성산포(0.201)
44	금일	0.371	소안(0.062), 경주(0.077), 추자도(0.284)
45	인천	0.370	경주(0.531), 성산포(0.158)
46	거제	0.368	소안(0.591), 해남군(0.019), 경주(0.329)
47	제1,2구	0.368	소안(0.094), 해남군(0.268), 경주(0.008), 성산포(0.245)

48	포항	0.352	경주(0.189), 성산포(0.386)
49	울릉	0.337	경주(0.724)
50	안면	0.318	흑산도(0.045), 성산포(0.073)
51	강진	0.302	속초(0.101), 성산포(0.135)
52	영흥	0.286	속초(0.088), 경주(0.010), 성산포(0.032)
53	나로도	0.286	경주(0.012), 성산포(0.090), 추자도(0.060)
54	웅진	0.265	속초(0.445), 경주(0.236), 성산포(0.010)
55	진해	0.264	흑산도(0.009), 성산포(0.124)
56	서천	0.251	추자도(0.081), 한림(0.107)
57	고흥	0.250	흑산도(0.158), 성산포(0.573)
58	사천	0.229	해남군(0.001), 흑산도(0.026), 굴수하(0.027), 성산포(0.022)
59	제3,4구	0.226	경주(0.060), 성산포(0.122), 한림(0.002)
60	태안남면	0.217	속초(0.026), 흑산도(0.013), 성산포(0.044)
61	군산	0.180	속초(0.055), 경주(0.507), 성산포(0.118)
62	양양	0.168	속초(0.197), 성산포(0.030)
63	영광	0.167	흑산도(0.027), 성산포(0.093)
64	고성	0.159	성산포(0.123), 추자도(0.129)
65	경기남부	0.140	속초(0.011), 해남군(0.027), 경주(0.059), 굴수하(0.090)
66	신항	0.136	소안(0.028), 해남군(0.001), 권혁망(0.001), 부산시(0.001), 성산포(0.052)
67	경인북부	0.134	속초(0.064), 경주(0.004)
68	부안	0.103	삼척(0.050), 흑산도(0.066), 경주(0.059), 성산포(0.005)
69	진동	0.046	속초(0.004), 굴수하(0.027), 성산포(0.001)
	평균	0.579	

참조집합의 잠재가격은 비효율적인 수협을 평가하는데 있어 DEA에 의해 할당된 가중치를 나타내고 그 값이 클수록 비효율적 수협의 점수를 평가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집합의 값을 참조집합 수협의 실제투입물과 실제산출물에 곱하고 이들 값을 합산하면 효율적이기 위하여 필요한 이상적인 투입, 산출 규모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비효율적인 DMU가 얼마만큼 비효율적인가를 평가받을 수 있다.

비효율적인 평가대상 DMU의 적정투입량과 효율적으로 되기 위한 투입요소의 조정율은 [표 6-7-12]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표 6-7-13]에서는 비효율적인 DMU의 적정산출량과 효율적이기 위한 산출요소의 조정율을 나타내고 있다.

영일수협(35위)의 경우, 참조집합은 속초, 소안, 흑산도, 경주 수협이며, 이 수협들의 잠재가격은 속초 0.105, 소안 0.164, 흑산도 0.750, 경주 1.363으로 여기에 실제 투입물, 예를 들면 위판장수 속초 1.333개, 소안 2개, 흑산도 1.333개, 경주 1개를 곱한 후에 합하면 2.831  $[(0.105 \times 1.333) + (0.164 \times 2) + (0.750 \times 1.333) + (1.363 \times 1)] = 2.831$ 로 영일수협의 적정 위판장 수가 된다.



이와 같이 평가된 영일수협외의 경우 효율성 점수가 1인 수협이 되기 위해서는 위판장수는 5개에서 2.831개로 43.38%줄여야 하며, 경매장은 2218평에서 920.606으로 58.49%줄여야 하고, 중도매인은 112.667명에서 63.786명으로 43.39% 줄여야 하며, 경매사수는 5명에서 2.832명으로 43.36%줄여야 하고, 사무실평수는 25평에서 14.156평으로 43.38%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일수협은 물량을 30,333.667 톤에서 32,081.229로 5.761% 증가시켜야 한다.

[표 6-8-12] 단위 위(공)판장의 투입요소의 절감 목표치

단위수협	효율성 점수	위판장			경매장(평)				중도매인(명)			경매사수			사무실		
		위판장수	목표치	격차(%)	경매장(평)	목표치	격차(%)	중도매인(명)	목표치	격차(%)	경매사수	목표치	격차(%)	사무실	목표치	격차(%)	
경인북부	0.134	1.000	0.090	91.000	226.667	21.230	90.634	7.333	0.982	86.609	1.000	0.134	86.600	33.333	0.361	98.917	
용진	0.265	4.667	0.843	81.936	1057.333	280.008	73.518	43.667	11.565	73.515	4.667	1.237	73.493	438.000	4.824	98.899	
인천	0.370	2.000	0.740	63.000	1102.000	376.154	65.866	48.333	17.894	62.978	4.667	1.178	74.757	107.000	8.977	91.610	
경기남부	0.140	2.000	0.280	86.000	447.667	62.693	85.996	41.333	5.788	85.997	5.000	0.513	89.740	74.000	4.160	94.378	
영흥	0.286	1.000	0.170	83.000	143.333	41.026	71.377	10.000	2.862	71.380	1.000	0.286	71.400	3789.000	1.295	99.966	
고성	0.456	3.000	1.213	59.567	2487.667	323.895	86.980	17.333	7.902	54.412	4.667	2.129	54.379	15.333	2.514	83.604	
속초	1.000	1.333	1.330	0.250	292.000	292.000	0.000	14.000	14.000	0.000	2.000	2.000	0.000	5.000	5.000	0.000	
대포	1.000	1.000	1.000	0.000	276.667	276.670	0.000	2.000	2.000	0.000	2.000	2.000	0.000	0.000	0.000	0.000	
양양	0.168	3.000	0.302	89.933	393.000	66.011	83.203	24.333	4.087	83.204	4.333	0.484	88.831	59.333	1.690	97.152	
강릉	0.839	2.000	1.677	16.150	2096.333	381.667	81.794	18.667	15.659	16.113	6.000	2.639	56.017	33.000	5.427	83.555	
동해	0.810	1.000	0.810	19.000	1174.000	323.951	72.406	19.000	15.341	19.258	1.000	0.810	19.000	371.333	40.078	89.207	
삼척	1.000	1.000	1.000	0.000	268.000	268.000	0.000	16.667	16.670	0.000	2.000	2.000	0.000	0.000	0.000	0.000	
원덕	1.000	3.000	3.000	0.000	1678.667	1678.670	0.000	8.333	8.330	0.040	0.667	0.670	0.000	0.000	0.000	0.000	
죽왕	1.000	5.000	5.000	0.000	232.667	232.670	0.000	5.667	5.670	0.000	1.000	1.000	0.000	0.000	0.010	0.000	
보령	0.508	1.667	0.849	49.060	576.667	293.179	49.160	53.000	23.649	55.379	5.000	1.401	71.980	19.667	10.000	49.153	
서천	0.251	1.000	0.251	74.900	442.000	85.283	80.705	25.000	4.933	80.268	1.000	0.251	74.900	86.000	17.781	79.324	
서산	0.590	2.667	0.973	63.513	857.333	416.998	51.361	26.000	15.345	40.981	2.333	1.375	41.071	20.000	6.798	66.010	
서면	0.641	2.000	1.282	35.900	236.667	151.701	35.901	25.667	16.454	35.894	1.667	0.757	54.580	6.000	3.846	35.900	
태안남면	0.217	3.000	0.109	96.367	93.000	20.167	78.315	13.000	2.819	78.315	1.333	0.196	85.300	5.333	1.156	78.325	
안면	0.318	2.000	0.157	92.150	67.667	21.530	68.182	16.000	5.091	68.181	1.333	0.265	80.125	40.333	1.714	95.750	
신홍	0.136	1.000	0.136	86.400	152.667	20.717	86.430	27.667	3.022	89.077	1.333	0.180	86.500	12.000	1.628	86.433	
군산	0.180	5.000	0.739	85.220	2030.000	366.038	81.969	91.333	16.468	81.969	6.333	1.141	81.984	291.667	8.109	97.220	
부안	0.103	2.000	0.205	89.750	518.333	53.166	89.743	49.333	5.060	89.743	4.000	0.263	93.425	7.000	0.718	89.743	
강진	0.302	2.000	0.314	84.300	224.000	67.646	69.801	24.333	7.347	69.807	3.333	0.607	81.790	32.000	3.651	88.591	
목포	0.992	2.000	1.984	0.800	2137.000	1161.133	45.665	43.667	43.331	0.769	7.667	2.812	63.322	435.667	21.249	95.123	
신안	0.716	5.000	2.166	56.680	342.667	245.505	28.355	58.667	42.034	28.351	3.000	2.149	28.367	140.000	96.066	31.381	
완도	0.428	3.667	1.572	57.127	1301.333	557.523	57.158	80.667	34.561	57.156	4.000	1.714	57.150	29.333	12.566	57.161	
영광	0.167	3.000	0.160	94.667	161.000	26.834	83.333	31.333	5.222	83.334	5.000	0.307	93.860	52.000	2.176	95.815	
금일	0.376	1.667	0.591	64.540	689.667	125.553	81.795	15.667	5.888	62.417	0.333	0.124	62.800	10.000	3.757	62.430	
소안	1.000	2.000	2.000	0.000	167.000	167.000	0.000	17.667	17.670	0.000	0.333	0.330	1.000	0.000	0.000	0.000	
진도	0.622	4.333	1.123	74.085	616.000	382.855	37.848	30.667	19.062	37.841	4.667	1.440	69.143	234.000	13.396	94.275	



해남군	1.000	4.333	4.330	0.077	160.000	160.000	0.000	56.333	56.330	0.006	5.333	5.330	0.062	60.667	60.670	0.000
흑산도	1.000	1.333	1.330	0.250	16.667	16.670	0.000	41.667	41.670	0.000	1.000	1.000	0.000	0.000	0.000	0.000
거문도	1.000	1.000	1.000	0.000	243.000	243.000	0.000	11.667	11.670	0.000	3.000	3.000	0.000	0.000	0.000	0.000
고흥	0.250	6.333	0.972	84.653	660.000	164.849	75.023	127.333	31.803	75.024	9.333	1.878	79.879	91.333	13.374	85.357
나로도	0.287	1.000	0.212	78.800	163.667	46.907	71.340	17.000	4.872	71.341	1.000	0.287	71.300	10.000	2.844	71.560
여수	0.662	3.667	2.428	33.782	5142.000	1193.987	76.780	156.667	59.855	61.795	7.667	3.950	48.478	1745.000	30.154	98.272
제3,4구	0.226	1.000	0.226	77.400	460.000	73.774	83.962	36.333	6.704	81.549	2.000	0.452	77.400	17.000	3.839	77.418
경주	1.000	1.000	1.000	0.000	623.667	623.670	0.000	20.667	20.670	0.000	1.333	1.330	0.250	10.000	10.000	0.000
영일	0.566	5.000	2.830	43.400	2218.000	919.655	58.537	112.667	63.769	43.400	5.000	2.830	43.400	25.000	14.150	43.400
포항	0.351	2.000	0.702	64.900	1136.000	227.037	80.014	61.000	20.883	65.766	21.667	1.409	93.497	53.667	10.892	79.704
강구	1.000	2.000	2.000	0.000	763.667	763.670	0.000	21.333	21.330	0.016	2.000	2.000	0.000	3.000	3.000	0.000
축산	0.704	1.000	0.704	29.600	389.667	274.233	29.624	31.000	20.900	32.581	2.667	1.206	54.775	93.000	11.253	87.900
후포	0.582	2.333	1.355	41.929	755.667	370.443	50.978	27.667	16.097	41.818	4.333	2.007	53.685	53.333	6.221	88.336
죽변	0.695	2.000	1.288	35.600	1251.333	471.693	62.305	26.333	18.300	30.506	2.667	1.856	30.400	315.333	7.759	97.539
울릉	0.337	3.667	0.724	80.255	1418.667	451.274	68.190	44.333	14.956	66.265	5.667	0.962	83.024	33.333	7.236	78.292
거제	0.368	7.000	1.593	77.243	832.667	306.687	63.168	49.667	18.294	63.166	7.333	0.731	90.032	12.000	4.420	63.167
고성	0.159	3.667	0.337	90.809	410.333	65.327	84.080	46.333	6.855	85.205	2.333	0.371	84.100	39.667	4.221	89.359
마산	1.000	1.333	1.330	0.250	1780.000	1780.000	0.000	73.000	73.000	0.000	5.000	5.000	0.000	46.000	46.000	0.000
삼천포	0.587	4.000	2.349	41.275	2058.667	1209.027	41.271	94.333	55.399	41.273	9.000	3.672	59.200	134.333	27.645	79.421
울산	0.372	2.000	0.744	62.800	1356.667	354.602	73.862	50.667	18.697	63.098	6.667	1.237	81.445	165.000	9.455	94.270
의창	0.785	1.000	0.785	21.500	102.333	80.338	21.494	28.000	15.509	44.611	2.667	1.315	50.688	42.000	12.631	69.926
진해	0.264	2.000	0.176	91.200	133.000	35.103	73.607	22.000	5.806	73.609	2.333	0.379	83.757	35.000	2.882	91.766
통영	0.772	3.000	2.316	22.800	1212.333	936.005	22.793	60.667	46.842	22.788	6.000	3.156	47.400	42.000	28.616	31.867
하동	0.687	1.667	0.688	58.720	102.667	70.493	31.338	25.000	17.165	31.340	2.333	0.807	65.414	3.333	2.286	31.420
남해	0.454	6.000	1.793	70.117	400.667	182.004	54.575	69.333	31.493	54.577	8.000	3.063	61.713	194.000	26.057	86.569
사천	0.229	1.000	0.096	90.400	53.667	12.271	77.135	13.000	2.972	77.138	2.667	0.178	93.325	5.000	1.143	77.140
굴수하	1.000	1.000	1.000	0.000	206.333	206.330	0.002	32.333	32.330	0.010	3.000	3.000	0.000	21.000	21.000	0.000
권혁망	1.000	2.000	2.000	0.000	342.667	342.670	0.000	73.000	73.000	0.000	4.000	4.000	0.000	271.000	271.000	0.000
진동	0.046	2.000	0.033	98.350	150.000	6.911	95.393	21.000	0.967	95.395	2.000	0.092	95.400	52.000	0.610	98.827
부산시	1.000	5.000	5.000	0.000	1380.333	1380.330	0.000	172.667	172.670	0.000	9.000	9.000	0.000	94.333	94.330	0.004
부산동부	0.449	1.333	0.597	55.225	191.000	85.781	55.088	21.333	9.580	55.094	1.000	0.449	55.100	59.667	4.113	93.107
제1,2구	0.368	5.000	1.683	66.340	360.667	132.763	63.190	75.333	27.729	63.192	6.000	2.209	63.183	113.667	22.097	80.560
서귀포	0.655	2.000	1.310	34.500	455.667	298.465	34.499	49.333	32.311	34.505	6.000	2.567	57.217	29.000	16.243	43.990
모슬포	0.543	1.333	0.722	45.850	181.333	98.436	45.715	36.333	16.809	53.737	4.000	1.380	65.500	41.667	12.407	70.223
성산포	1.000	1.333	1.330	0.250	283.000	283.000	0.000	44.000	44.000	0.000	3.000	3.000	0.000	23.333	23.330	0.014
제주시	0.509	1.000	0.509	49.100	366.667	186.811	49.052	27.333	13.924	49.059	2.000	0.954	52.300	120.000	7.154	94.038
추자도	1.000	1.333	1.330	0.250	233.667	233.670	0.000	11.000	11.000	0.000	0.000	0.000	0.000	10.333	10.330	0.032
함림	1.000	1.333	1.330	0.250	618.333	618.330	0.001	37.667	37.670	0.000	2.333	2.330	0.143	158.000	158.000	0.000





[표 6-8-13] 단위 위(공)판장의 산출요소의 증대 목표치

단위수협	효율성 점수	물량(톤)			금액(백만원)		
		물량(톤)	목표치	격차(%)	금액(백만원)	목표치	격차(%)
경인북부	0.134	667.667	732.273	9.676	1,896.667	1,896.667	0.000
웅진	0.265	2,418.667	9,606.040	297.163	21,532.667	21,532.670	0.000
인천	0.370	3,583.333	13,386.292	273.571	30,381.333	30,381.333	0.000
경기남부	0.140	3,245.000	3,245.000	0.000	7,737.667	7,737.667	0.000
영흥	0.286	800.000	1,552.987	94.123	4,987.000	4,987.000	0.000
고성	0.456	5,652.333	5,652.333	0.000	15,869.000	15,869.000	0.000
속초	1.000	10,095.000	10,095.000	0.000	27,226.667	27,226.667	0.000
대포	1.000	857.667	857.667	0.000	4,961.333	4,961.333	0.000
양양	0.168	1,743.667	2,412.463	38.356	7,437.333	7,437.333	0.000
강릉	0.839	9,813.333	11,157.776	13.700	30,704.000	30,704.000	0.000
동해	0.810	8,586.667	8,586.667	0.000	24,798.333	24,798.333	0.000
삼척	1.000	6,069.333	6,069.333	0.000	13,384.000	13,384.000	0.000
원덕	1.000	2,121.667	2,121.667	0.000	6,120.000	6,120.000	0.000
죽왕	1.000	1,106.667	1,106.667	0.000	5,564.333	5,564.333	0.000
보령	0.508	9,616.333	11,276.694	17.266	33,604.000	33,604.000	0.000
서천	0.251	1,135.000	1,892.552	66.745	7,713.000	7,713.000	0.000
서산	0.590	8,314.000	14,156.466	70.273	28,161.000	28,161.000	0.000
서면	0.641	6,839.333	6,839.333	0.000	16,262.333	16,262.333	0.000
태안남면	0.217	379.667	897.386	136.362	3,930.333	3,930.333	0.000
안면	0.318	709.333	1,098.509	54.865	5,778.333	5,778.333	0.000
신흥	0.136	1,053.000	1,053.000	0.000	3,980.667	3,980.667	0.000
군산	0.180	8,445.667	12,903.772	52.786	28,341.000	28,341.000	0.000
부안	0.103	714.000	1,725.476	141.663	4,313.667	4,313.667	0.000
강진	0.302	1,181.667	2,919.430	147.060	12,017.000	12,017.000	0.000
목포	0.992	27,346.000	39,802.455	45.551	75,902.000	75,902.000	0.000
신안	0.716	14,122.667	14,122.667	0.000	41,138.333	41,138.333	0.000
완도	0.428	10,410.333	19,116.655	83.632	44,545.333	44,545.333	0.000
영광	0.167	872.000	1,352.100	55.057	6,847.667	6,847.667	0.000
금일	0.376	2,886.667	2,886.667	0.000	6,982.333	7,406.748	6.078
소안	1.000	7,782.000	7,782.000	0.000	7,927.667	7,927.660	0.000
진도	0.622	16,197.000	16,197.000	0.000	24,319.333	25,134.600	3.352
해남군	1.000	31,638.333	31,368.333	0.853	29,540.667	29,540.660	0.000
흑산도	1.000	1,423.333	1,423.333	0.000	16,378.667	16,378.667	0.000
거문도	1.000	4,367.667	4,367.667	0.000	12,286.667	12,286.667	0.000
고흥	0.250	8,155.000	8,302.159	1.805	41,979.667	41,979.667	0.000
나로도	0.287	854.000	1,686.795	97.517	7,493.333	7,493.333	0.000
여수	0.662	42,953.000	42,953.000	0.000	101,026.333	101,026.333	0.000
계3,4구	0.226	2,218.000	3,020.448	36.179	10,752.667	10,752.667	0.000
경주	1.000	21,046.333	21,046.333	0.000	36,857.333	36,857.333	0.000
영일	0.566	30,333.667	32,081.229	5.761	66,656.667	66,656.667	0.000
포항	0.351	9,414.000	9,414.000	0.000	33,481.667	33,481.667	0.000

강구	1.000	11,043.333	11,043.333	0.000	24,667.000	24,667.000	0.000
축산	0.704	12,066.667	12,066.667	0.000	22,196.000	22,196.000	0.000
후포	0.582	10,663.000	12,720.318	19.294	30,701.667	30,701.667	0.000
죽변	0.695	12,422.333	16,084.836	29.483	34,027.667	34,027.667	0.000
울릉	0.337	15,228.667	15,228.667	0.000	23,002.000	26,669.161	15.943
거제	0.368	12,107.667	12,107.667	0.000	15,567.333	17,348.816	11.444
고성	0.159	1,955.000	2,097.671	7.298	10,340.333	10,340.333	0.000
마산	1.000	30,110.333	30,110.333	0.000	44,086.667	44,086.667	0.000
삼천포	0.587	34,650.667	42,801.033	23.522	94,577.667	94,577.667	0.000
울산	0.372	12,877.333	12,877.333	0.000	31,386.000	31,386.000	0.000
의창	0.785	7,252.667	7,252.667	0.000	14,418.333	14,418.333	0.000
진해	0.264	957.667	1,753.190	83.069	8,634.333	8,634.333	0.000
통영	0.772	37,629.667	37,629.667	0.000	50,003.333	61,653.784	23.299
하동	0.687	2,619.333	2,952.571	12.722	13,536.000	13,536.000	0.000
남해	0.454	15,118.000	15,118.000	0.000	34,560.333	34,560.333	0.000
사천	0.229	693.333	693.333	0.000	3,282.000	3,282.000	0.000
굴수하	1.000	11,646.667	11,646.667	0.000	49,844.333	49,844.333	0.000
권혁망	1.000	19,392.667	19,392.667	0.000	83,332.333	83,332.333	0.000
진동	0.046	365.667	365.667	0.000	1,512.667	1,512.667	0.000
부산시	1.000	77,513.000	77,513.000	0.000	133,292.000	133,292.000	0.000
부산동부	0.449	4,664.667	4,664.667	0.000	6,558.667	6,601.488	0.653
제1,2구	0.368	12,841.000	12,841.000	0.000	25,821.000	25,821.000	0.000
서귀포	0.655	7,611.000	12,902.661	69.526	52,532.000	52,532.000	0.000
모슬포	0.543	7,390.667	7,390.667	0.000	17,685.333	17,685.333	0.000
성산포	1.000	14,091.667	14,091.667	0.000	68,723.333	68,723.333	0.000
제주시	0.509	4,433.333	7,313.032	64.956	22,720.000	22,720.000	0.000
추자도	1.000	2,771.000	2,771.000	0.000	14,366.333	14,366.333	0.000
한림	1.000	15,545.667	15,545.667	0.000	61,048.333	61,048.333	0.000

DEA/BCC모형(규모에 대한 수확가변의 가정)에 의한 분석결과 CCR효율성은 규모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이라 하고, 반면에 BCC효율성은 규모에 대한 수확가변을 가정하기 때문에 순기술효율성(Pure Technical Efficiency)이라 한다. 이 두 효율성간의 관계를 통하여 계산된 규모효율성과 수협별 규모의 수확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6-8-14] BCC모형을 이용한 투입지향적 효율성 분석결과

조합별	기술적효율성 (TE)	순기술적효율성 (PTE)	규모의효율성 (SE)	규모의 수확효과
속초	1.000	1.000	1.000	-
대포	1.000	1.000	1.000	-
삼척	1.000	1.000	1.000	-
원덕	1.000	1.000	1.000	-
죽왕	1.000	1.000	1.000	-
소안	1.000	1.000	1.000	-
해남군	1.000	1.000	1.000	-
흑산도	1.000	1.000	1.000	-
거문도	1.000	1.000	1.000	-
경주	1.000	1.000	1.000	-
강구	1.000	1.000	1.000	-
마산	1.000	1.000	1.000	-
굴수하	1.000	1.000	1.000	-
권혁망	1.000	1.000	1.000	-
부산시	1.000	1.000	1.000	-
성산포	1.000	1.000	1.000	-
추자도	1.000	1.000	1.000	-
한림	1.000	1.000	1.000	-
목포	0.992	1.000	0.992	drs
강릉	0.839	0.867	0.968	drs
동해	0.810	1.000	0.810	irs
의창	0.785	1.000	0.785	irs
통영	0.772	1.000	0.772	drs
신안	0.717	0.718	0.999	drs
축산	0.704	1.000	0.704	irs
죽변	0.695	0.705	0.986	drs
하동	0.686	0.941	0.729	irs
여수	0.663	0.850	0.780	drs
서귀포	0.655	0.655	1.000	irs
서면	0.641	0.755	0.849	irs
진도	0.622	0.662	0.940	irs
서산	0.590	0.605	0.975	irs
삼천포	0.587	0.982	0.598	drs
후포	0.582	0.584	0.997	drs
영일	0.566	1.000	0.566	drs
모슬포	0.542	0.750	0.723	irs
보령	0.509	0.600	0.848	irs
제주시	0.509	1.000	0.509	irs
고성	0.456	0.458	0.996	drs
남해	0.454	0.473	0.960	irs
부산동부	0.449	0.940	0.478	irs
완도	0.429	0.447	0.960	drs

울산	0.372	0.500	0.744	irs
금일	0.371	0.807	0.460	irs
인천	0.370	0.500	0.740	irs
거제	0.368	0.372	0.989	irs
제1,2구	0.368	0.423	0.870	irs
포항	0.352	0.500	0.704	irs
울릉	0.337	0.355	0.949	irs
안면	0.318	1.000	0.318	irs
강진	0.302	0.586	0.515	irs
영흥	0.286	1.000	0.286	irs
나로도	0.286	1.000	0.286	irs
웅진	0.265	0.281	0.943	irs
진해	0.264	0.715	0.369	irs
서천	0.251	1.000	0.251	irs
고흥	0.250	0.262	0.954	irs
사천	0.229	1.000	0.229	irs
제3,4구	0.226	1.000	0.226	irs
태안남면	0.217	1.000	0.217	irs
군산	0.180	0.208	0.865	irs
양양	0.168	0.412	0.408	irs
영광	0.167	0.461	0.362	irs
고성	0.159	0.359	0.443	irs
경기남부	0.140	0.500	0.280	irs
신흥	0.136	1.000	0.136	irs
경인북부	0.134	1.000	0.134	irs
부안	0.103	0.500	0.206	irs
진동	0.046	0.709	0.065	irs
평균	0.579	0.789	0.737	

[표 6-8-15]에서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순기술적 효율성 결과를 요약하면 69개 수협의 효율성 평균은 0.789이며, 효율성 점수가 1(100%)인 곳은 34곳으로 나타났으며, 비효율적 수협 중  $0.80 \leq E \leq 0.99$ 의 경우가 6개,  $0.60 \leq E \leq 0.79$ 의 경우가 10개,  $0.40 \leq E \leq 0.59$ 의 경우가 13개,  $0.20 \leq E \leq 0.39$ 의 경우가 6개,  $0 \leq E \leq 0.19$ 의 경우가 0개로 나타났다.



[표 6-8-15] 순기술적 효율성 점수에 따른 위(공)판장 분류

효율성 점수 구분	위(공판장)	총계
E=1	경인북부, 영흥, 속초, 대포, 동해, 삼척, 원덕, 죽왕, 서천, 태안남면, 안면, 신희, 목포, 소안, 해남군, 흑산도, 거문도, 나로도, 제3,4구, 경주, 영일, 강구, 축산, 마산, 의창, 통영, 사천, 굴수하, 권혁망, 부산시, 성산포, 제주시, 추자도, 한림	34개
$0.80 \leq E \leq 0.99$	삼천포(0.982), 하동(0.941), 부산동부(0.940), 강릉(0.867), 여수(0.850), 금일(0.807)	6개
$0.60 \leq E \leq 0.79$	서면(0.755), 모슬포(0.750), 신안(0.718), 진해(0.715), 진동(0.709), 죽변(0.705), 진도(0.662), 서귀포(0.655), 서산(0.605), 보령(0.600)	10개
$0.40 \leq E \leq 0.59$	강진(0.586), 후포(0.584), 인천(0.500), 경기남부(0.500), 부안(0.500), 포항(0.500), 울산(0.500), 남해(0.473), 영광(0.461), 고성(0.458), 완도(0.447), 제1,2구(0.423), 양양(0.412)	13개
$0.20 \leq E \leq 0.39$	거제(0.372), 고성(0.359), 울릉(0.355), 용진(0.281), 고흥(0.262), 군산(0.208)	6개
$0 \leq E \leq 0.19$	-	

주: 괄호안은 효율성 점수, 순위는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내림자순으로 정렬되었음.

BCC모형 분석결과에 의한 효율성 점수를 타나내는 순기술효율성이 1인 도매시장은 34 곳으로 CCR모형 분석결과로 나타난 18곳보다 16곳이 더 많다. 이는 순기술적 요인은 효율적이거나 부적절한 규모로 인하여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수협이 16곳(경인북부, 영흥, 동해, 서천, 태안남면, 안면, 신희, 목포, 나로도, 제3,4구, 영일, 축산, 의창, 통영, 사천, 제주시)으로 현재의 규모를 적정규모로 조정하면 위(공)판장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규모의 효율성 결과를 요약하면 69개 수협의 효율성 평균은 0.737이며, 효율성 점수가 1(100%)인 곳은 19곳으로 나타났다.

비효율적 수협 중  $0.80 \leq E \leq 0.99$ 의 경우가 19개,  $0.60 \leq E \leq 0.79$ 의 경우가 9개,  $0.40 \leq E \leq 0.59$ 의 경우가 8개,  $0.20 \leq E \leq 0.39$ 의 경우가 11개,  $0 \leq E \leq 0.19$ 의 경우가 3개로 나타났다(참조 [표 6-8-16]).

[표 6-8-16] 규모의 효율성 점수에 따른 위(공)판장 분류

효율성 점수 구분	위(공)판장	총계
E=1	속초, 대포, 삼척, 원덕, 죽왕, 소안, 해남군, 흑산도, 거문도, 경주, 강구, 마산, 굴수하, 권혁망, 부산시, 서귀포, 성산포, 추자도, 한림	19개
$0.80 \leq E \leq 0.99$	신안(0.999), 후포(0.997), 고성(0.996), 목포(0.992), 거제(0.989), 죽변(0.986), 서산(0.975), 강릉(0.968), 남해(0.960), 완도(0.960), 고흥(0.954), 울릉(0.949), 웅진(0.943), 진도(0.940), 제1,2구(0.870), 군산(0.865), 서면(0.849), 보령(0.848), 동해(0.810)	19개
$0.60 \leq E \leq 0.79$	의창(0.785), 여수(0.780), 통영(0.772), 울산(0.744), 인천(0.740), 하동(0.729), 모슬포(0.723), 포항(0.704), 축산(0.704)	9개
$0.40 \leq E \leq 0.59$	삼천포(0.598), 영일(0.566), 강진(0.515), 제주시(0.509), 부산동부(0.478), 금일(0.460), 고성(0.443), 양양(0.408)	8개
$0.20 \leq E \leq 0.39$	진해(0.369), 영광(0.362), 안면(0.318), 영흥(0.286), 나로도(0.286), 경기남부(0.280), 서천(0.251), 사천(0.229), 제3,4구(0.226), 태안남면(0.217), 부안(0.206)	11개
$0 \leq E \leq 0.19$	신항(0.136), 경인북부(0.134), 진동(0.065)	3개

주 : 괄호안은 효율성 점수, 순위는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내림자순으로 정렬되었음.

수협이 평균 기술효율성은 0.579, 순기술효율성은 0.789, 규모효율성은 0.737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평균비효율성 42.1% 중 규모적 요인에 의한 비효율성이 26.3%, 순기술적요인에 의한 비효율성은 21.1%로 수협의 평균 비효율성은 규모적요인에 의한 부분이 순기술적요인 보다 조금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체 효율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투입 산출요소의 적정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를 통한 순수기술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규모의 개선에 따른 효율성의 제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술효율성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 51개의 위(공)판장 가운데 비효율성의 원인으로 순기술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DMU 즉, 순기술효율성(PTE)이 규모효율성(SE)보다 작은 값을 나타낸 DMU는 22개임. 반면에 순기술효율성이 규모효율성 보다 크게 나타난 DMU는 29개로 개별적인 DMU의 입장에서는 비효율성의 원인이 부적절한 규모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분석결과 규모의 효율성을 달성한 위(공)판장은 19곳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50곳은 규모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모에 대한 수확의 효과를 살펴보면 규모에 대한 수확증가 구간(IRS : Increasing Returns to Scale)에 위치한 위(공)판장이 39곳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규모의 증대를 통한 효율성의 제고를 권고할 수 있음. 반면에 규모에 대한 수확감소 구간(DRS : Decreasing Returns to Scale)에 위치한 위(공)판장은 11곳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전자와는 반대로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나머지 19곳은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CRS : Constant Returns to Scale)의 구간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규모의 효율성이 1로 나타나고 있어 규모면에서는 적정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다. 산지 수협 위판장의 효율성 제고 방안

### 1) 경영 혁신 방안

#### ① 효율성점수 평가결과 최하위그룹( $0 \leq E \leq 0.19$ )인 9개 위(공)판장에 대한 경영 혁신권고안

9개 위(공)판장 가운데 경인북부(0.134), 신희(0.136)의 경우 순수 기술적 효율성의 점수는 1로 나타나 비효율성의 원인이 모두 규모의 비효율성에 기인하고 경영활동의 특성도 규모에 대한 수확 체증의 형태를 보이므로 우선적으로 구조재편의 대상이 된다.

나머지 7개소 가운데 6개소인 진동(0.046), 부안(0.103), 경기남부(0.14), 영광(0.167), 양양(0.168), 고성(0.159)의 순으로 비효율성의 원인이 규모의 비효율성에 우선하고 있으므로 구조재편 가능성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이들 역시 모두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의 구간에서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도 참조).

다만, 군산의 경우는 비효율성의 원인이 규모의 측면보다는 순수기술성의 측면에 기인하므로 투입요소들의 재결합을 유도하는 기술적인 경영혁신안이 권고된다.

#### ② 효율성점수 평가결과 차하위그룹( $0.2 \leq E \leq 0.39$ )인 18개 위(공)판장에 대한 경영 혁신 권고안

먼저 이들 18개소의 경우도 최하위그룹과 마찬가지로 모두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의 구간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구조재편을 통한 규모의 확대가 효율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태안남면(0.217), 제3,4구(0.226), 사천(0.229), 서천(0.251), 영흥(0.286), 나로도(0.286), 안면(0.318)의 7개소의 경우 최하위그룹의 경인북부나 신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효율성의 원인이 100% 규모의 비효율성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인 구조재편의 대상으로



고려하여야만 한다.

진해(0.264), 금일(0.371)의 2개소의 경우도 비효율성의 원인이 순수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규모의 비효율성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므로 구조재편을 고려할 수도 있다.

강진(0.302), 포항(0.352) 인천(0.37) 울산(0.372), 제1,2구(0.368), 용진(0.281), 울릉(0.337) 고흥(0.25) 거제(0.368)의 나머지 9개소의 경우는 비효율성의 원인이 규모의 측면보다는 투입요소의 결합상에 나타나는 순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비효율성의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구조재편을 통한 효율성의 제고보다는 기술적인 경영혁신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2) 산지 위판장 다기능 역할 방안

### ① 수산관광기능

실질적인 산지위판장의 기본 유통기능(양륙-진열-경매-분산)을 수행하기 어려운 소규모 위판장은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역수산관광기능과 연계하여 아침/주말수산시장을 열어 지역 수산물의 판매, 홍보를 담당하게 하면서 지역수산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수산 체험(갯벌체험, 스킨스쿠버, 다이빙 등)을 위한 준비장으로 활용하거나 체험 후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장으로서의 기능 수행도 검토할 수 있다.

### ② 수산물류기지기능

산지위판장의 기본 기능은 어업자 생산물의 유통기능으로 현실적으로 타지역/수입수산물의 반입 및 경매 등은 어렵다. 오늘날 대형할인점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소매점의 구매 형태는 산지 구매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산지시장으로서 역할 하는 산지위판장의 개방화 요구는 높은 게 현실이다.

이러한 수요 측의 요구를 반영하여 산지위판장을 수산물류기지로써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경매와 같은 가격/거래기능을 제외한 타지역수산물, 수입수산물의 상품구색기능, 선별, 재포장 등과 같은 유통 가공 기능, 배송 및 운송기능 등을 수행하는 산지물류기지로써 활용 가능하다.

여기에서 창출되는 부가 사업(예를 들면 선별, 포장 가공업 등)은 지역어업인이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 ③ 지역수산물도매시장화 방안

산지위판장의 종합 다기능화 - 지금까지 어업자의 생산물 공동판매기능을 수행하여 온 산지위판장 기능을 보다 종합적이고 다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도매시장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지역도매시장화란 수협법상에서 이루어지는 수산물판매사업장으로서의 산지위판장을 농안법(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의 도매시장화를 추진하는 의미이다. 이를 통하여 지역도매시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곳에서는 산지위판장의 도매시장화를 추진함에 따라 지역수산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타지역수산물의 반입 및 거래, 수입수산물의 반입 및 거래 등이 가능하게 되면서 산지위판장의 실질적인 수산물종합시장화가 가능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산지위판장의 도매시장화 전환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신중히 검토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어업생산자들의 공동판매를 위한 공판기능의 약화
- 타지역 수산물, 수입 수산물과의 가격, 품질 경쟁 강화로 지역 수산물의 판로 및 가격 하락
- 도매시장화로 전환되지 못한 산지위판장의 기능 약화 및 도산 우려
- 어업생산자를 위한 어업인 시장에서 상업자본시장으로 성격 전환

## 제9절 생산자 단체 소매 유통시설 구축 및 지원 - 수협 바다마트를 중심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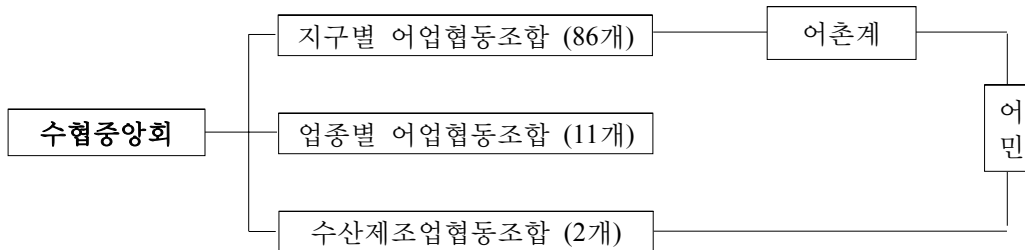
### 1. 바다마트 구성

#### 가. 중앙회 바다마트

바다마트는 수협중앙회 중심으로 운영하는 25개의 수협마트가 있다. 여기에서 경인과 수도권 중심의 18개 마트와 지방은 7개 마트를 구성하고 있다.

중앙회 바다마트는 서울에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역세권 보다는 주거단지 위치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앙회 바다마트는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마트와의 경쟁 관계로 수산물보다는 공산품 위주의 상품구색을 가지고 있다.



(9개 : 경기, 충남, 전북, 전남서구, 전남동구, 경남, 경북, 강북, 강원, 제주)

[그림 6-9-1] 수협계통 조직도

제 6 장



[표 6-9-1] 수협 중앙회에서 관리하는 마트

중앙회 매 장 명		비 고
경인 / 수도권 (18개소)	잠 실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 등 1차상품은 수협바이어들이 물품을 구입하는 형식이다</li> <li>- 모든 상품구성은 전산망으로 이루어져서 수협중앙회에서 관리한다.</li> <li>- 대부분의 부품은 6개월에 한번씩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지만 주별, 한달에도 최저가격을 입찰을 통해서 상품을 수협바이어가 관리하고 구매하는 형식이다</li> </ul>
	동대문점	
	노량진점	
	노량진시장점	
	신 내 점	
	상 계 점	
	신도림점	
	강 서 점	
	종 압 점	
	원 효 점	
	서 초 점	
	일산점	
	탄 현 점	
	미 금 점	
	서 현 점	
	김 포 점	
신 장 점		
수원유통점		
지 방 (7개소)	춘 천 점	
	원 주 점	
	강 룡 점	
	(옥 천 점)	
	둔 산 점	
	희망로점	
	제 주 점	

자료 : 수협중앙회, 바다마트 사업부 판매관리과

## 나. 회원조합 바다마트

회원조합 바다마트는 37개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운영과 관리체계에 따라서 폐쇄될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생길 수도 있을 정도로 구조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곳이 많다. 회원조합 바다마트 운영 실적 현황은 중앙회에 보고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표 6-9-2]는 회원조합들의 바다마트 매장과 취급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회원조합은 중앙회와는 달리 어촌이나 해안중심 도시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 유통 환경여건에 따라서는 수산물보다는 공산품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일반 마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다.

[표 6-9-2] 회원조합 바다마트

지역	조합별	매장	취급상품
서울	강진	강남직매장	
	추자도	서울유통사업소	
경인	경인북부	수산물직매장	
	인천	연안회백화점	꽃게세트(인천수협), 우리굴비세트(근해안강망수협)
강원	고성군	수산물(젓갈류)	
	동해시	목호집	
	속초시	동명동직매장	
	양양군	낙산백화점	
	강릉	수산물본소매장 수산물1직매장	
충남 전북	당진	회센터	
	부안	부안수협마트	뽕잎절임고등어세트, 꽃게장세트(군산시수협)
전남	완도	완도바다마트	
	목포	보길직매장	당일굴비세트, 새우육젓세트(신안군수협)
	흑산도	예리직매장	
	제3·4구잡수기	여수회타운	
	고흥군	운남동지점회센터	건어물세트, 은갈치수협(거문도수협)
	서남해수어류	수산물종합판매장	
	진도	진도군수협직매장	멸치세트(완도군수협), 영광굴비세트(영광군수협)
근해유망	근해유망수협직매장	참조기세트,	
경북	강구	안동바다마트	
	울릉도	도동직매장	
	죽변	주전직매장	전복세트(경주시수협)
	후포	후포바다마트	주전동미역세트
경남	사천	상봉수산물백화점	
	거제	거제수협마트고현점	건어명품세트
		거제수협마트옥포점	양녕명게세트(명게수하식수협)
	사량	바다마트	마른멸치세트
	남해군	창선유통사업소회센터	
근해유망	근해유망수협삼천포직매장		
부산	공동어시장	대형기선저인망수협	
		기선권형망수협	멸치세트
		대형선망수협	고등어세트
제주	서귀포	서귀포수협직매장	
	제주도	수협직매장	토막갈치세트
	모슬포	활어직판장	은갈치세트,
	성산포	수산물직매장	갈치세트
		어민복지사업소	
추자도	추자도바다마트		

자료 : 수협중앙회, 바다마트 사업부 판매관리과

주 : 취급상품은 수협 홈페이지 참조, suhyup.chzero.com



회원조합 바다마트 경우 주거지 중심보다는 유동인구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입지 조건도 교통편이나 예식장, 은행과 같이 운영하고 있고 있기도 한다.

바닷가나 관광지로서의 지역 성격을 지니고 있는 곳은 매장 상품 구성을 지역특산품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상품판매소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한다. 또한 매장 운영 방식은 조합 직영과 임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조합에 따라서는 인터넷 판매, 카탈로그 판매, 우편판매를 병행하고 있기도 하다.

회원조합은 위탁 바이어에게 상품구매를 맡기고 있는 형식으로 소량구매, 소량판매 중심으로 마트를 운영하는 형식이다.

## 2. 매출추이

대부분의 바다마트가 매출이 줄고 있는데, 중앙회 바다마트의 경우는 10~20% 매출이 감소하고 있고 회원조합도 평균 5% 정도 매출이 줄고 있는 실정이다. 그 주요원인으로 특히 중앙회 바다마트는 주변에 대형마트가 계속 생기면서 상품구색 및 매장면적 등 소핑 환경 측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6-9-3]은 중앙회를 중심으로 연도별 실적현황으로 매출액과 매출이익, 경상이익, 순이익으로 대부분의 바다마트가 실적이 줄어들다가 2006년에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다마트 전체 매출액은 평균 1,000억원 전후이고, 이익 발생 영업점과 손실 발생 영업점으로 구분되고 있다.

[표 6-9-3] 바다마트 연도별 실적현황

(단위 : 백만원)

점명	구분	2004	2005	2006
합계	매 출 액	103,213	96,879	94,547
	매출이익	18,828	18,179	18,952
	경상이익	△253	△73	2,180
	순 이 익	△253	△73	2,180
잠실점	매 출 액	5,921	5,275	5,584
	매출이익	1,286	1,228	1,421
	경상이익	2	3	168
	순 이 익	2	3	168
동대문	매 출 액	2,887	3,051	3,537
	매출이익	710	720	837
	경상이익	126	150	217
	순 이 익	126	150	217
일산점	매 출 액	3,723	3,770	3,224
	매출이익	615	610	664
	경상이익	93	48	114
	순 이 익	93	48	114
미금점	매 출 액	3,609	3,725	3,642
	매출이익	680	719	687
	경상이익	△25	28	21
	순 이 익	△25	28	21
신장점	매 출 액	5,032	4,556	4,080
	매출이익	779	708	711
	경상이익	14	△51	59
	순 이 익	14	△51	59
노량점	매 출 액	7,164	7,285	7,108
	매출이익	1,271	1,270	1,227
	경상이익	150	195	204
	순 이 익	150	195	204
신내점	매 출 액	5,221	5,077	4,382
	매출이익	764	764	783
	경상이익	40	32	170
	순 이 익	40	32	170
상계점	매 출 액	5,519	5,173	4,793
	매출이익	1,000	977	971
	경상이익	104	54	108
	순 이 익	104	54	108



점명	구분	2004	2005	2006
탄현점	매 출 액	4,214	4,355	4,793
	매출이익	720	744	971
	경상이익	△75	54	108
	순 이 익	△75	54	108
원주점	매 출 액	3,883	2,916	2,323
	매출이익	690	539	436
	경상이익	△259	△198	△98
	순 이 익	△259	△198	△98
서현점	매 출 액	3,869	4,261	3,806
	매출이익	644	748	701
	경상이익	△218	△139	△90
	순 이 익	△218	△139	△90
신도립점	매 출 액	4,340	4,184	3,985
	매출이익	724	767	778
	경상이익	△204	△80	42
	순 이 익	△204	△80	42
노량진 시장점	매 출 액			2,523
	매출이익			362
	경상이익			59
	순 이 익			59
종암점	매 출 액	3,706	3,667	3,573
	매출이익	660	642	624
	경상이익	△5	21	77
	순 이 익	△5	21	77
김포점	매 출 액	4,745	3,838	3,965
	매출이익	779	617	665
	경상이익	△276	△322	81
	순 이 익	△276	△322	81
원효점	매 출 액	4,535	3,773	3,565
	매출이익	860	755	647
	경상이익	△119	△154	△20
	순 이 익	△119	△154	△20
서초점	매 출 액	3763	2461	1815
	매출이익	744	520	387
	경상이익	△211	△297	△256
	순 이 익	△211	△297	△256
춘천점	매 출 액	9,855	9,266	7,932
	매출이익	1,997	2,044	1,971
	경상이익	719	763	721
	순 이 익	719	763	721



점명	구분	2004	2005	2006
강릉점	매출액	4,553	4,036	3,379
	매출이익	612	584	512
	경상이익	50	12	40
	순이익	50	12	40
둔산점	매출액	1,638	2,284	2,026
	매출이익	519	621	673
	경상이익	△96	△130	△31
	순이익	△96	△130	△31
희망점	매출액	3,277	2,715	1,824
	매출이익	402	334	155
	경상이익	△345	△313	△146
	순이익	△345	△313	△146
제주점	매출액	4,143	4,030	4,178
	매출이익	607	548	622
	경상이익	176	138	212
	순이익	176	138	212
수원점	매출액	5,789	5,660	5,752
	매출이익	1,415	1,413	1,466
	경상이익	345	403	416
	순이익	345	403	416
강서점	매출액			3,602
	매출이익			907
	경상이익			9
	순이익			9
답십점	매출액	1,827	1,520	
	매출이익	350	302	
	경상이익	△239	△257	
	순이익	△239	△257	

자료 : 수협중앙회, 바다마트 사업부 판매관리과

### 3. 바다마트 수산물 구성

바다마트 경우 대형마트에 비해 규모가 작아서 취급하는 어종과 상품이 적다. 이로 인해 다양성과 상품의 상품구매력이 떨어지다고 할 수 있다. [표 6-9-4]은 일반 대형 마트에서 취급하는 수산물들이다.

일반 대형마트의 경우 수산물 상품구색은 약 200여개 수준으로 다양한 상품 구색을 가지고 있다.



[표 6-9-4] 일반 마트 수산물 SKU의 구성

SKU의 종류	범위		어종 및 상태
대중선어(73)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대중적이 어종		고등어, 갈치, 삼치, 오징어, 생태 등과 같이 조림, 구이 탕류용으로 식단에 자주 오르는 어종
생선회(16), 고급선어(11), 간편조리생선(6)	생선회	포장용 생선회, 초밥	모듬회, 활전복, 톨초밥, 광어초밥
	고급선어	선어 중에서도 고가의 어종을 고급선어	민어조기, 연어-특히 부위별로 판매
	간편조리생선	국, 탕, 찌개, 등을 위해 손질된 생선과 재첩국과 같이 데워서 바로 먹을 수 있는 Prepared food	재첩국, 울갱이국, 대구탕, 해물탕 등 조리가 간편한 제품을 지칭
해물연체류, 냉동반건	해물연체류	패류, 갑각류, 연체류 등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어종들을 소비자 기호에 따라 손질 상품 또는 전처리 상태로 판매	새우, 오징어, 굴, 조개류 등을 지칭
	냉동반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어종을 냉동/반건 상태에서 판매하는 제품	코다리, 동태,

주 : SKU(Stock Keeping Unit) - 상품 분류단위 재고단위, 개수별순위, 현재 200여개 수산물 SKU를 가지고 있다.

일반 대형 마트는 일반적으로 공산 60%, 농산 20%, 축산 12%, 수산 8%의 매출구성비를 형성하고 있다.

수협바다마트의 전체매출 구성은 평균적으로 수산물은 활어를 포함하여 25~30%, 농산품은 양곡을 포함하여 15%, 공산품은 40~45%, 축산은 8~10%, 기타는 반찬, 유기농식품 등을 포함하여 2% 정도이다.

이는 시중 유통업체보다 월등한 수산품 매출비중이 높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 수협바다마트가 수산물 전문매장으로서 차별화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앙회 바다마트 수산물의 대부분은 국내산으로 상품구색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수산물의 생산 한계로 새우, 명태 가공품 등과 국내산 공급이 어려운 경우는 수입산을 구입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산 중심의 상품 구색은 수협 바다마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회원조합마트 같은 경우는 일반마트와 같이 50 대 50으로 수입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역 위치 소매점으로서 성격이 어업인 생산물 판매소라는 성격보다 전면에 위치하고 있어 수입수산물을 비롯하여 공산품 등 다양한 상품구색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표 6-9-5] 바다마트 상품구성

분류	대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선어냉동	일반어류	갈치, 고등어 외	(01)
	냉동연체류	산낙지 외	(02)
	냉동패류	꽃게, 새꼬막 외	(03)
	냉동살류	바지락 외	(04)
	젓갈류	새우젓 외	(06)
	수산가공류	해물탕, 동태전 외	(07)
	해조류	매생이 외	(08)
	세트류	참조기세트 외	(09)
	식자재류	칠레산홍어 외	(89)
건어	멸치류	멸치 외	(01)
	건패류	홍새우 외	(02)
	어포류	황태채 외	(03)
	통건어류	건오징어 외	(04)
	반건어류	옥돔 외	(05)
	해조류	김 외	(06)
	세트류	굴비 외	(08)
	건어가공류	약과 외	(09)
	식자재류	식자재 외	(89)
야채	김치류	배추 외	(01)
	양념류	마늘 외	(02)
	샐러드류	양상추 외	(03)
	나물류	참나물 외	(04)
	엽채류	시금치 외	(05)
	근채류	감자 외	(06)
	과채류	오이 외	(07)
	버섯류	팽이버섯 외	(08)
	특수야채류	유기농 외	(09)
	포장상품류	두부 외	(10)
과일	국산과일류	사과 외	(01)
	수입과일류	바나나 외	(02)
	건과류	대추 외	(03)
축산	국산한우	한우갈비 외	(01)
	국산육우	한우불고기 외	(02)
	브랜드한우	한우사골 외	(03)
	수입우육	수입등심 외	(04)
	수입냉동우육	수입LA갈비	(05)
	국산돈육	국산삼겹살 외	(06)
	브랜드돈육	브랜드육사 외	(08)
	국산계육	통닭 외	(08)
	부산물	한우사골 외	(11)
가공육	수세소제지 외	(13)	

자료 : 수협중앙회, 바다마트 사업부 판매관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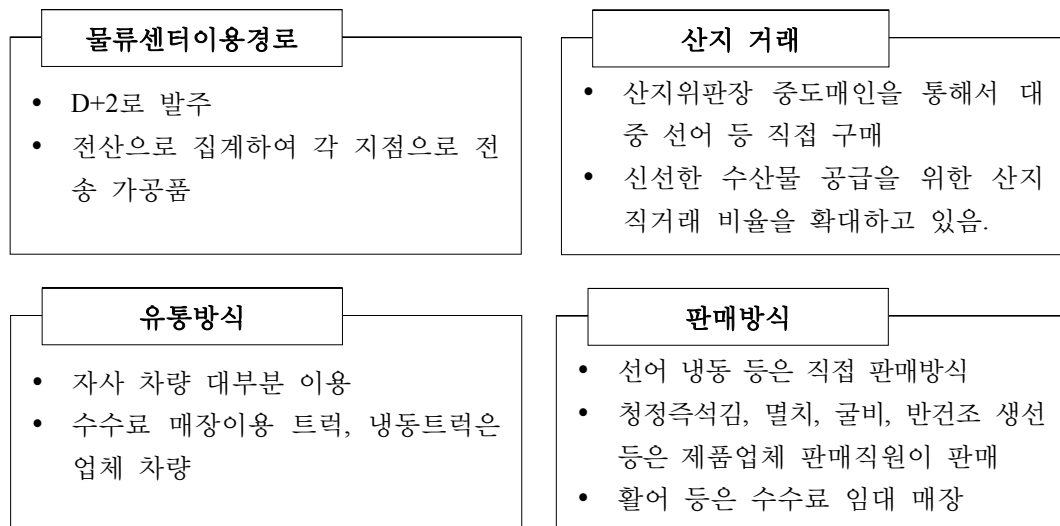
## 4. 유통과정

일반적인 대형 마트의 수산물 유통과정은 [그림 6-9-2]와 같다. 일반 마트는 하루 전 (D-2)에 판매, 소비 동향을 분석해서 각 지점 발주를 전자상 집계하여 물량을 확보한다.

D-2 발주가 끝나면 각 위판장에서 물류센터로 상품을 입고하는 방식이 있고, 소량구매는 도매시장을 통해서 바이어들이 물량을 직접 구입하거나 벤더를 통해서 구매하는 방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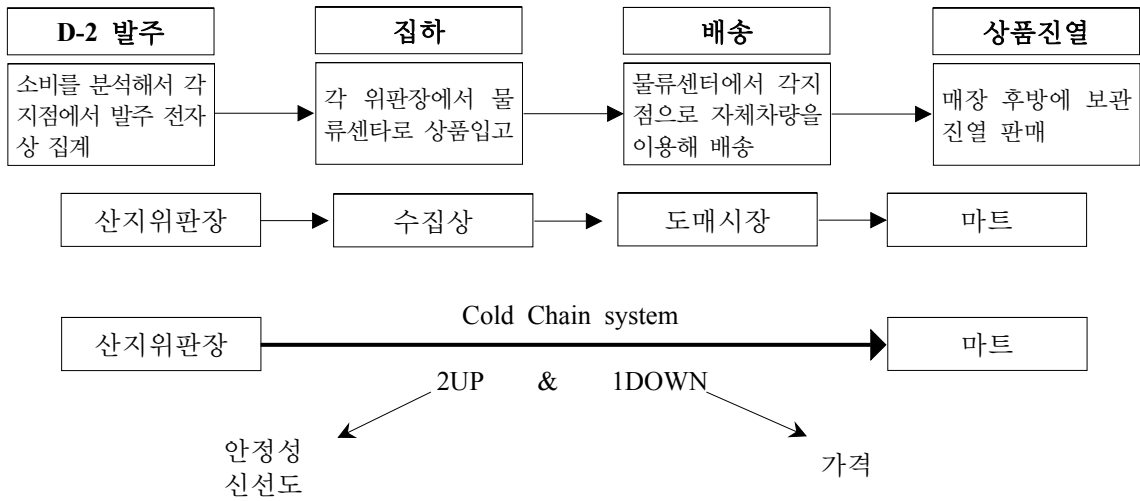
상품진열은 수수료나 각 브랜드에 따라서 진열하거나 매장 후방이나 창고에 보관하여 진열 판매하는 방식이 있다.

일반마트 경우 냉장·냉동의 경우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구입하고, 가공품 같은 경우 특정업체를 선정하여 수수료 20%를 받고 판매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다.



[그림 6-9-2] 일반 대형 마트의 수산물 구매 경로 및 판매 방식

일반마트는 산지어판장과 마트 사이에 Cold Chain system을 도입하고 있다. 그 목적은 2up은 안정성과 신선도는 높이고, 1down은 가격을 다운시키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고품질 수산물의 판매를 강화하면서 가격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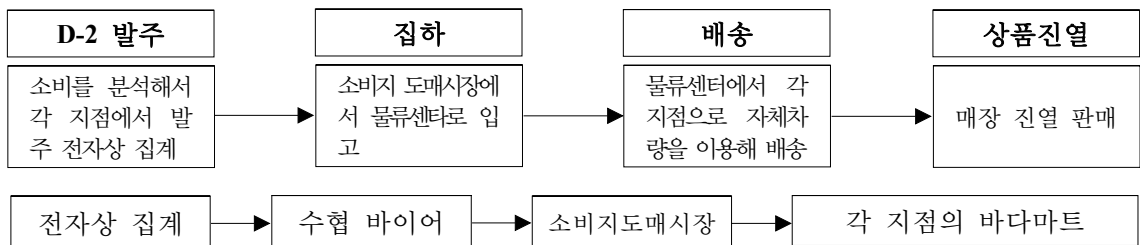


[그림 6-9-3] 일반 대형 마트의 유통과정과 경로

한편 수협은 일반적인 상품 구매는 각 지점에서 전자상 집계를 통해서 필요한 물량을 수협 바이어들에게 신청한다. 수협의 각 바이어(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공산품)는 소비지도매시장이거나 벤더, 납품업체를 통해서 물량을 확보한 후 각 지점으로 배송한다.

이 때 수협 바이어들은 평균적으로 6개월에 한번 씩 입찰을 통해서 벤더나 하청업체,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기준은 최저금액이다. 상품에 따라서는 주별, 월별로 입찰하는 것도 있다.

수협 중앙회 바다마트 경우 대중 선어 수산물은 대부분 소비지도매시장(가락, 노량진, 구리, 강서농수산물)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다. 활어의 경우도 대부분 소비지도매시장에서 바이어를 통해서 구입되어 바다마트로 배송하지만, 화, 목요일에 열리는 산지 직송 판매 행사시는 산지에서 직송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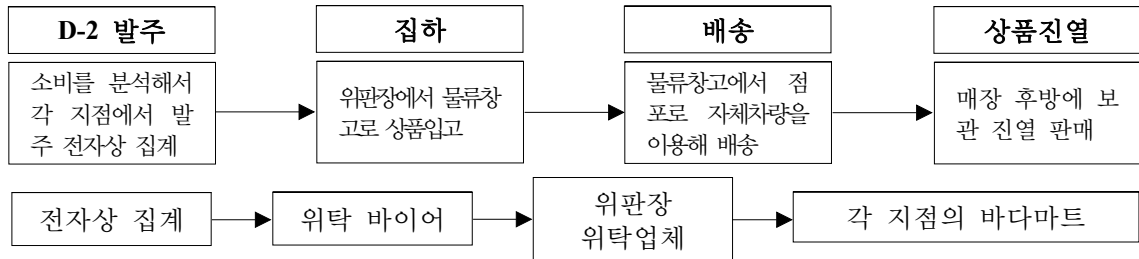


[그림 6-9-4] 중앙회 수협 바다마트 유통경로

제 6 장



한편 수협 회원조합 바다마트의 경우는 중앙회 수협마트와 비슷한 형식을 있지만 주로 지역 수산물을 지역 위판장을 중심으로 구입 취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6-9-5] 회원조합마트 유통경로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앙회 바다마트의 경우, 수산물 구입경로는 산지보다는 소비지도매시장을 중심으로 구입하고 있다.

## 5. 차별화 전략 및 경영전략

일반마트 경우 수산물 브랜드 중심의 판촉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동 재첩국, 제주도 갈치로 물류비 절감과 신선도로 판매하고 있다. 가격행사와 대면판매가 중심이다.

바다마트 같은 경우 수협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수산물을 믿을 수 있다는 이미지 전략을 세우고 있다. 특히 중앙회 바다마트의 “바다애찬”이라는 공동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신성도와 안전성을 더욱 강조하는 브랜드 전략을 세우고 있다. “바다애찬” 같은 경우 수협이 각 어촌계나 도매시장에서 품질심사와 엄격한 검사를 통해서 선택하여 바다마트에 납품하는 체계로 가고 있다. 이러한 수협 공동브랜드 상품 개발과 판매 관리는 의도된 목적은 상당히 의미가 있으나 매장 관리나 홍보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특판사업부에서 바다마트의 세트상품을 인터넷 판매 주문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것은 바다마트와 회원조합마트간에 연결로서 소비자들에게 가깝게 다가 갈 수 있는 판매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실적면에서는 그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수협중앙회는 다음과 같은 바다마트 사업 추진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여 보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 6-9-6] 바다마트 사업추진방향과 전략수립

Vision	수산물 파워 유통 전문회사로 육성	
Mission	경제사업 비전 달성을 위한 수산물 소비 최점점의 유통채널 역할 제고	
Coal	수산물을 주력으로 하는 소매유통 자립기반 구축	
Core	수산물이 좋은 바다마트, 신선함이 있는 바다마트, 풍성함이 있는 바다마트	
Base	기본에 충실한 현장실천 점포운영	기본중시
		실천중시
		현장중시

자료 : 수협중앙회, 바다마트 사업부 판매관리과

2007년 추진전략으로서 U-fresh 2007 운동전략이 있다 U는 Unification의 약자로 고객, 직원, 거래처 모두가 상호 협동하고 참여하여 동반성장하는 점포로 운영하자는 전략이고, Fresh는 상품환경을 신선하게, 영업환경을 새롭게, 매장환경을 깨끗하게 하자는 전략이다. 이것은 기초를 건실하게 구축하자는 현장중심 실천 운동으로서 바다마트가 Go! Best 2006 운동의 계승 정착화의 일환으로 하는 중심적인 추진전략이다.

추진배경은 바다마트 고객 이탈방지와 새로운 고객창출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 임직원의 전사적 의식개혁운동으로 전개된 것으로 지역고개에 대한 다양한 외부 행사 전개와 더불어 점포운영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기초부분에 대하여 작은 것 한가지부터 단계적으로 체계화 습관화 될 때까지 새롭게 출발할 필요성이 긴박하게 대부되면서 시작하게 되었다.

추진내용의 Core 부분은 상품 환경을 신선하게 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바다마트의 주요 추진내용〉

- 신선상품 취급
- 상품구색 강화
- 전략상품 운영
- 수산물 상품력 강화 및 진열 표준화
- 지역단위 정기 직거래장터 개발
- 우수 협력업체 선정 평가기준 마련





또한 영업환경 개선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환경 개선 주요 추진내용〉

1. 기본에 충실한 현장 실천 점포운영 주력
  -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매장환경 조성
  - 지역고객 친화적 관계마케팅 지속 전개
2. 안정적 영업 기반환경 조성과 정비 시행
  - 회센터 부분 : 비효율 회센터 구조정비/ 전문 회센터 기반확충/ 슈퍼와 회센터 운영분리
  - 슈퍼 부분 : 점포 운영환경 개선/ 점진적 점포개발 확대/ 영업환경 변화점포 매각추진
  - 물류 부분 : 광주 물류사업부 직영운영
3. 점포 책임운영 정착과 자립성장 기반조성
  - 목표관리 평가체계 구축
  - 권역별 책임 관리자 지정 운영

매장환경을 깨끗하게 주요 추진내용은 Clean 프로젝트와 점포운영 범규준수의 기본실천이다.

이상과 같은 전략으로 바다마트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다음과 같은 측면의 근본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바다마트 활성화를 위한 대응전략〉

- 바다마트의 점포 포지셔닝(수산물매장/슈퍼)
- 수산물 상품구색의 포지셔닝과 차별화 전략(일반마트와의 차별성)
- 상품구색 수산물과 구입 유통경로와의 연계성(90% 이상의 소비지도매시장 의존도/산지거래비율의 확대문제)
- 기획 전략 상품의 개발 개념 및 차별화 전략(바다에찬의 활성화 전략 부재)
- 상품구색 및 판매방식의 다원화(소비자 대면 판매에만 의존하는 판매 전략)

## 6. 활성화 방안

중앙회 바다마트와 회원조합 바다마트 간의 교류가 전혀 없어, 공동기획, 상품구매, 공동판매 등과 같은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바다마트 기획팀 구성(중앙회+회원조합)하고, 공동수산상품기획, 공동구매, 공동판매(카탈로그,



우편, 인터넷 등), 공동배송, 공동점포관리 등을 추진하며, 슈퍼마켓 성격의 바다마트와 특산물 판매 바다마트의 구분 전략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산지직거래 비중을 확대하여 가격(물류비 상승)보다는 선도, 품질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공동브랜드 판촉 활동 촉진으로 바다애찬 브랜드의 촉진 활동을 통해 수협 브랜드 가치의 제고가 요구되며, 수협경제사업 중 유통사업단의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신유통 물류기법의 습득 및 정신 고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내부 승진 등의 인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제10절 수산물 판매점 및 음식점 인증제도

### 1. 연구 대상

#### 가. 수산물 판매점

##### 1) 수산물도매업

본 연구에 있어 연구대상인 수산물 판매점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보다 현실적인 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수산물 관련 도매업과 소매업의 범주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6-10-1]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수산물도매업의 범위를 정리한 것으로 수산물도매업은 중개업, 사료도매업, 식품도매업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상품중개업에서의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내에 생선 및 물고기 중개, 수산물(신선, 냉동, 건조, 염장) 중개, 조리 가공 식품 중개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도매업에서는 어류용 사료도매업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에서는 수산물도매업과 수산물가공식품도매업으로 대별하고 있으며, 수산물도매업은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의 산것·신선한 상품이나 냉동·건조·염장 등과 같이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도매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산가공식품도매업은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 수산물의 가공식품을 도매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수산물도매업의 구조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통계청에서 공표하고 있는 도소매업조사 통계자료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까지는 알 수 없고, 소분류의 구조는 파악할 수 있다.

[표 6-10-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수산물도매업

분류번호	산업
G (대분류)	도매 및 소매업
51 (중분류)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11 (소분류) 상품 중개업	<p><b>5110 (세분류) 상품 중개업</b>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의 활동이 포함된다. 이들은 통상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주어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한다.</p> <p><b>51102 (세세분류)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b> 미가공 수산물, 과일, 채소를 포함하여 각종 가공 음·식료품 및 담배의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lt;예 시&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류 및 비알콜 음료 중개</li> <li>• 도축고기 중개</li> <li>• 수산물(신선, 냉동, 건조, 염장) 중개</li> <li>• 빵 및 과자 중개</li> <li>• 생선 및 물고기 중개</li> <li>• 조리가공 식품 중개</li> </ul> </p>
512 (소분류)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p><b>5120 (세분류)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b> 가공하지 않은 농축산물 및 수렵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되며 산동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lt;제 외&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 및 가공품 도매(513)</li> </ul> <p><b>51203 (세세분류) 사료 도매업</b> 사료용 농산물 및 각종 사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lt;예 시&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미사료 도매</li> <li>• 보조사료 도매</li> <li>• 배합사료 도매</li> <li>• 어류용 사료 도매</li> </ul> </p> </p>
513 (소분류)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과실, 채소, 식용유지, 도축고기, 수산물, 설탕, 설탕과자 및 빵류, 음료, 커피, 차, 코코아 및 조미료, 가공담배 등을 도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p><b>5131 (세분류) 비가공 식품 도매업</b> 과실, 채소, 육류, 수산물 등의 신선식품이나 건조, 염장, 분쇄 등의 단순 가공한 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낙농제품 및 조제 가공 식품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lt;제 외&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시지, 햄, 통조림식품, 낙농제품 및 기타 가공식품 도매(5132)</li> </ul> <p><b>51313 (세세분류) 수산물 도매업</b>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의 산것·신선한 상품이나 냉동·건조·염장 등과 같이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lt;예 시&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다물고기 도매</li> <li>• 열대어 도매</li> <li>• 어란 도매</li> <li>• 건어물 도매</li> <li>• 해조류 도매</li> <li>• 관상어(바다 및 민물고기) 도매</li> <li>• 어개류 도매</li> <li>• 젓갈류 도매</li> </ul> <p><b>5132 (세분류) 가공식품 도매업</b> 과실, 채소, 육류, 수산물 등을 가공하여 만든 가공식품 및 낙농품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lt;제 외&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실, 채소, 육류 및 수산물 등 비가공식품 도매(5131)</li> <li>• 조제음료 도매(5133)</li> </ul> <p><b>51322 (세세분류)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b>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 수산물의 가공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lt;예 시&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고기 통조림 도매</li> <li>• 수산물 액젓 도매</li> <li>• 맛살 도매</li> <li>• 어묵 및 오뎅 도매</li> <li>• 구운김 도매</li> <li>• 훈제어류 도매</li> </ul> </p> </p></p></p>

자료 : 한국표준산업분류





[표 6-10-2]은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통계자료 중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수산물중개업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 중개업 사업체수는 7,060개소(2004년)로 2000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이 중 수산물중개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개별 사업체총조사를 확인하기 전에는 파악하기 어렵다.

도매업 중 음식료품 및 담배도매업은 43,300개소(2004년)로 2000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구성은 수산물도매업이 포함되어 있어 비가공식품도매업이 26,345개소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수산물가공식품도매업이 포함되어 있는 가공식품도매업이 12,266개소로 약28%를 점하고 있다.

[표 6-10-2] 식품 중개업 및 도매업 사업체수(개소)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89,452	-	195,188	205,321	205,442
상품 중개업	9,181	-	7,894	7,220	7,060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37,993	-	40,876	42,683	43,300
비가공 식품 도매업	-	-	-	-	26,345
가공식품 도매업	-	-	-	-	12,266
음료 및 담배 도매업	-	-	-	-	4,689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 2) 수산물 소매업

수산물소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앞의 도매업보다도 더 분류하기 어렵다. 중분류상의 수산물소매업 관련 경우는 종합소매업,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식료품소매업으로 3가지로 분류 속에 존립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표 6-10-3].

종합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대형마트와 같은 대형종합소매업 내의 수산물판매코너, 백화점내에서의 수산물소매뿐만 아니라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내의 슈퍼마켓, 체인화된 편의점,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속에 존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수산물소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세세분류 52213은 바다 및 민물의 신선·건조·냉동 및 염장 등의 수산물을 소매하는 산업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산물소매업 구조를 파악하려면 앞의 도매업과 마찬가지로 세세분류까지 통계자료를 정리 공표하여야 하나 현재로서는 이것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표 6-10-4]는 세분류 식료품소매업 사업체수를 정리한 것으로, 식료품소매업 사업체는 103,869개소(2004년)가 존립하고 있으며 이중 수산물소매업 사업체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업체총조사를 확인하기 전에는 파악하기 어렵다.

[표 6-10-4] 식료품 소매업 사업체수(개소)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소매업(자동차 제외)	693,701	-	668,658	653,752	638,017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134,534	-	116,653	111,981	108,689
식료품 소매업	-	-	-	-	103,869
음료 및 담배 소매업	-	-	-	-	4,820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 나. 수산물 음식점업

### 1) 수산물 음식점업

수산물 음식점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다음 [표 6-10-5]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우선 수산물음식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점업은 소분류 음식점업, 세분류 일반음식점업, 세세분류 한식점업, 일반음식점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세세분류의 한식점업에서는 일본식이 아닌 횃집을 포함하고 있고, 일본 음식점업에서는 초밥집(일식전문점), 일식횃집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 6-10-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수산물 음식점업

H(대분류)	숙박 및 음식점업
55(중분류)	숙박 및 음식점업
552 (소분류) 음식점업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 및 계약급식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 별도의 독립된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접객시설없이 개별 행사단위로 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을 행사장에서 직접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5521 (세분류) 일반 음식점업	각종의 정식을 제공하는 한식당, 일식당, 중식당, 서양식당 등의 음식점 및 기관구내 식당을 운영하거나 행사장단위의 출장급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5211 (세세분류) 한식점업	한국식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렁탕집</li> <li>• 해물탕집</li> <li>• 보쌈집</li> <li>• 회집(일본식이 아닌)</li> <li>• 해장국집</li> <li>• 냉면집</li> </ul>
55213 (세세분류) 일본 음식점업	정통 일본식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밥집(일식전문점)</li> <li>• 로바다야끼</li> <li>&lt;제 외&gt;</li> <li>• 일식 회집</li> <li>• 일식 우동집</li> <li>• 한국식으로 운영되는 회센터 및 복집(55211)</li> </ul>

[표 6-10-6]은 표준산업분류에서 수산물음식점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업태가 포함되어 있는 음식점업의 사업체수를 정리하고 있으며, 통계청 도소매업조사에서는 직접적으로 회집, 초밥집, 일식회집으로 분류 정리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 일반음식점은 323,977개소(2004년)가 존립하고 있고, 이중 회집, 초밥집, 일식회집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업체총조사의 개별 통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파악하기 어렵다.

[표 6-10-6] 음식점업 사업체수(개소)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음식점업	570,576	-	595,791	605,614	600,233
일반 음식점업	-	-	-	-	323,977
기타 음식점업	-	-	-	-	98,115
주점업	-	-	-	-	138,475
다과점	-	-	-	-	39,666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 2. 음식점인증제

### 가. 부산시 생선회집 ISO 인증제

#### 1) 추진목적

부산시 생선회집 ISO 인증제는 부산대표의 먹거리 생선회의 국제화를 통한 관광 상품화, 매년 발생하는 수인성질병 피해최소화,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ISO 인증에 따른 신뢰감 확보를 통한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 2) 생선회집 ISO 인증제도의 개념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즉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개념 즉 제품자체에 대한 표준화가 아닌 제품의 품질관리와 품질보증 규격을 생선회집에 적용하였으며, 생선회집의 ISO 인증제 획득은 제품의 조리, 취급과정을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효과적 취급의 국제화된 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 3) 기대 효과

생선회집 ISO 인증제의 기대효과는 ISO 인증에 따른 차별화된 업소이미지 및 신뢰감 확보로 매출 증대, 고객요구사항의 적극적인 반영을 통한 영업활동 강화로 고객 증가, 효율적 경영과 고객관리 강화로 영업이익 극대화 등이 있다.

#### 4) 추진체계

생선회집 ISO 인증제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 〈생선회집 ISO 인증제의 추진체계〉

- 사업주체 : 부산광역시
- 인증기관 : 국내외 ISO 등록 인증기관
- 지도기관 : 부산시 선정, 식품에 관한 ISO, HACCP, 지도 유경험 컨설팅 기관
- 인증기간 : 3년(1번 재검사 필수)
- 사업기관 : 2005.9부터 실시
- 사업내용 : 사업희망업체 조사 및 모집 → 컨설팅 참여업체 선정 및 통보 → 컨설팅실시(메뉴얼, 위생관리, 시설관리 등) → 인증획득 및 시 지원금 지급
- 지원내용 : ISO인증지도 경비 지원(총사업의 50% 지원, 250만원 이내), ISO인증업소 홍보 광고 판 및 사후관리 심사비용(1회) 지원(80만원 이내)



## 5) 추진 현황

생선회집 ISO 인증제의는 2005년 9월부터 실시하여 생선회집 총 42개업소에 대해 인증하였으며, 매년 ISO인증업체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유지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 6) 평가

생선회집 ISO 인증제의 평가결과 도입 개념 및 목적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고, 추진체계도 비교적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 추진경과는 양호한 편이었으나 사후관리의 미흡, 인증비용의 부담 및 재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감, 실질적인 매출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태 등으로 재인증업체가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경상남도 국내산 활어전문 모범횃집 지정 제도

### 1) 국내산 활어전문 모범횃집 지정기준

국내산 활어전문 모범횃집의 지정기준은 “국내산 활어전문 모범횃집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모범업소 지정관리지침”에 따라서 지정하고 있으며 지역별 모범횃집지정 상한 개소수(기존 횃집의 5%내외 조정)를 정하고 있다.

[표 6-10-7] 지역별 모범횃집 지정 상한 업체수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15	25	10	15	6	10	10	7	15	7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3	3	3	7	7	8	3	3	3	3

국내산 활어전문 모범횃집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수족관 시설 및 재료보관, 종업원 서비스, 가격 등 표시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조건에 충족되어야지 활어전문 모범횃집으로 인증될 수 있다.



#### 〈국내산 활어전문 모범횃집 지정기준〉

- 건물의 구조 및 환경  
건물은 오·폐수 기타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주방  
- 주방의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되어야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칼, 도마 등은 과제 및 어패류를 분리하여 조리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 수족관 시설 및 재료보관  
- 수족관에는 원산지표시 되어야 한다.  
- 수족관은 청결하고 여름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자외선 살균장치 또는 냉각장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원재료 및 반제품이 바닥과 벽에 직접 닿지 않게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종업원 서비스  
-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현란한 머리모양이나 화장 등 식품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도록 개인위생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 및 겸손하고 교양 있는 대화로 손님 주문에 응하여야 한다.
- 가격 등 표시  
- 차림표를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객실 및 객실에는 가격이 포함된 음식차림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 3) 수산물 원산지표시 모범업소(거리) 지정기준

수산물 원산지표시 모범업소(거리)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원산지표시 모범업소 지정기준〉

- 관련 법령이 정한 규격과 기준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한다.
- 원산지표시판은 쉽게 훼손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수입산과 국내산은 별도로 진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모범거리지정은 자율협약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체 등이 구성운영중인 경우 협의체가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신설 2006. 7.>

### 4) 모범횃집 지정 현황

경상남도 모범횃집 지정 현황은 [표 6-10-8]와 같으며, 2006년 12월 까지 총 38개소가 모범횃집으로 지정을 받고 있고 이는 경상남도 모범횃집 총 정한수 168개소의 약 23% 수준이다.

[표 6-10-8] 모범횃집(업소) 지정현황(2006.12.31)

시군명	국내산 활어전문 모범횃집			수산물원산지 표시모범업소 (B)	비 고
	상한수	지정수(A)	잔여수		
계	163	38			
창원시	15	9			
마산시	25			(1)	(모범거리)
진주시	10				
진해시	15				
통영시	6	3			
사천시	10	10			
김해시	10	10			
밀양시	7				
거제시	15				
양산시	7				
의령군	3	3			
함안군	3				
창녕군	3				
고성군	7	1			
남해군	7	2			
하동군	8				
산청군	3				
함양군	3				
거창군	3				
합천군	3				

주: 상한 수는 기존횃집의 5%내외로 조정, 3개소이하는 일몰 3개소로 정함

### 5) 평가

경상남도의 모범업소 지정은 2006년 2월부터 실시되고 있어 아직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 특징으로는 모범업소의 상한수를 정하고 있어 일정 기준을 갖춘 업소라고 해도 상한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음. 이것은 인증업체와 비인증업체간의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으나 비탄력적으로 운영할 경우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부작용이 우려된다.

모범업소의 가장 큰 기준으로 국내산 활어전문 모범횃집이라는 원산지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음. 물론 일정한 위생기준은 두고 있으나 이는 정량적인 기준 보다는 정성적인 기준으로 생선회의 안전성 확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개별 모범업소와 함께 자율협의회 구성에 의한 모범거리라는 일정 영역을 인증하는 제도도 병행하고 있어 일정 지역의 전체적인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인식 제고에는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활어



모범제도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차별화에 도움이 되고 개별Hits로서는 비교적 지정받기 쉬운 기준(1차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없으면 됨)이나, Hits경영상 국내산만으로 상품 구색을 다 갖추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음. 또한 국내산과 수입산의 원산지에 따른 상품 차별화도 가능한 반면 활어 원어의 가격차에 따른 판매가격경쟁력이 낮다는 단점도 있다.

### 3. 수산물 판매점 및 음식점 인증제 방안

#### 1) 수산물판매업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증제를 도입 대상 수산물판매업은 크게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대별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도매업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도매업의 경우는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거래 단위가 일반 소매거래단위보다 훨씬 크며, 일정 매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체도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세분류 51313의 수산물도매업 중 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는 활어도매업은 활어 거래의 특성 상 일정 시설을 갖추고 있는 도매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증제 도입 대상 수산물도매업은 활어도매업을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수산물소매업의 경우에도 수산물전문소매점 이외의 종합소매점내의 수산물판매코너 등 다양한 형태의 소매업태가 존재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1단계로 인증제 도입 가능한 소매업태는 일정 시설을 갖추고 있는 종합소매점인 대형마트, 2단계는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표 6-10-9]. 3단계로는 수산물전문소매점을 대상으로 하되 활어소매점을 우선 실시하고, 4단계에서는 수산가공품소매점, 젓갈소매점, 신선 냉장 냉동수산물 소매점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6-10-9] 수산물판매업 및 음식점업의 인증제 대상 및 추진단계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산물도매업	활어도매업	나머지 수산물도매업 검토	나머지 수산물도매업 검토	나머지 수산물도매업 검토
수산물소매업	종합소매점 (대형마트)내의 수산물판매코너	체인 형태의 슈퍼마켓 내의 수산물 판매코너	활어소매점	수산가공품소매점, 젓갈소매점, 신선 냉장 냉동수산물 소매점
수산물음식점업	Hits	일식Hits	생선초밥집	확대 적용 검토

## 2) 수산물음식점업

수산물음식점의 경우는 한식점업 중의 찌집, 초밥집, 일식찌집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1단계로는 가장 대중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찌집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일식찌집, 3단계에서는 생선초밥집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생선회 음식점 인증제에 필요한 개념

생선회 음식점 인증제를 위해서는 어떠한 개념으로서 인증제를 도입 시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표 6-10-10]과 같다. 가장 많은 응답을 하고 있는 개념으로는 위생관련 모범 인증으로 응답자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생선회 품질에 대한 인증이 응답자의 약 30%, 기타가 15%, 활어 원산지 표시 인증은 약 7%, 활어 생산자/공급자 이력제 표시 관련 인증은 약 5% 수준이다. 여기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생선회 음식점 인증제를 위해서는 위생 관련 인증과 생선회품질 관련 인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제11절 수산물직거래 시장과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한 실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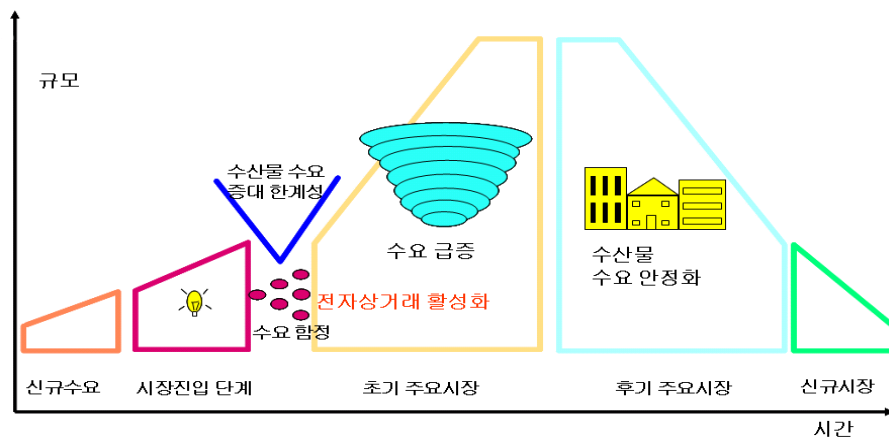
### 1. 필요성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많은 연구 및 시도가 이루어 졌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수산분야보다 훨씬 많은 연구와 투자가 진행된 농산물직거래시장 역시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한 초기 진입단계라고 볼 수 있겠다.

시장여건이 마련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고객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지 못한 부분도 있다. 또한 기존산업에 적용된 방식으로 직거래에 대한 대응은 수산물 특성상 그대로 적용하기에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소비자 식생활 구조는 쉽게 변화하지 않지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IT기술을 수산물직거래와 전자상거래에 활용한다면 소비자의 니즈에 빠르게 대응하면 원하는 수요에 대한 1차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6-11-1]은 수산물 시장의 수요확대를 점진적으로 진행하면서 결국 수요증대의 한계성(수요함정)에 도달아 더 이상 증대가 되지 않을 때 함정을 뛰어 넘는 방법으로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는 전략을 나타내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요확대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수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확보와 새로운 수산물 유통 채널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11-1] 수산물 전자상거래의 life cy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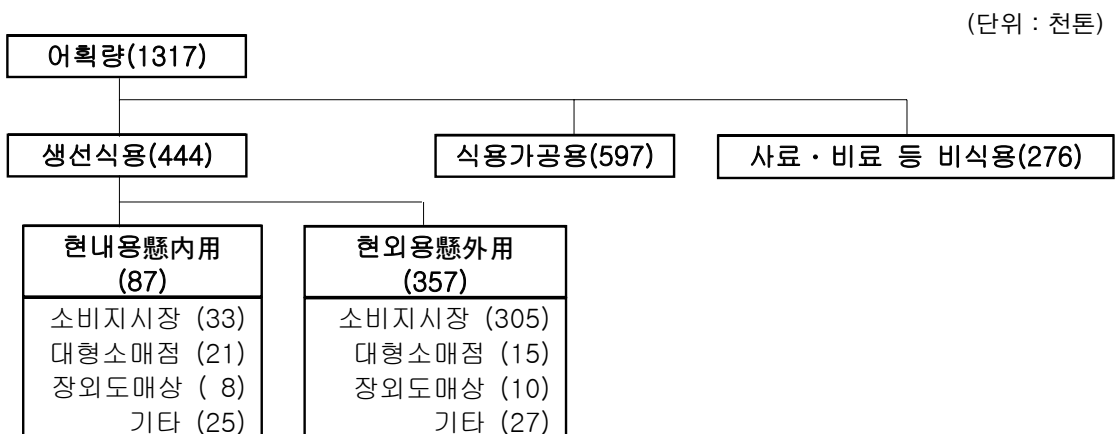
## 2. 실천계획

수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과정을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경우를 유통·물류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수입수산물을 제외한 각각의 주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생산 주체는 어민, 어업인 단체(수협, 영어조합 등)로 하고, 가공 주체는 가공기업 혹은 개인, 어업인 단체 가공(수협, 영어조합 등), 소비 주체는 직매장, 대형판매점, 백화점, 대형식품전문 업체, 일반 최종 소비자, 중간단계는 유통기관 및 개인으로 한다. 이들 주체들이 수산물 흐름의 시장원리에 의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기준으로 수산물소비활성화를 위한 직거래장과 전자상거래실천 계획에 대해 정리 하고자 한다.

### 1) 수산물 유통구조의 현안 분석

수산물의 유통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일본의 수산물 이용 배분 사례를 참고하면 [그림 6-11-2]와 같다. [그림6-11-2]는 2000년 일본의 어획량이 분배, 유통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생산되어 식용으로 일부 지역에서 소비되고 대부분의 물량은 이동하여 원거리 시장에서 소비됨을 알 수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어획량이 줄어들고 비슷한 구조로 매입되어 유통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매입상과 판매상의 유통 방법과 가격 차이에 의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방법들이 적용이 된다. 거래 시장과 전자상거



주 : 33개 이상 어획량의 매입상향  
 자료 : 수산물유통의 변화와 산지 대응(2000) - 일본농림중앙금고 종합 연구소 데무라 마사하루(山村雅晴)

[그림 6-11-2] 일본의 수산물 생산 및 이용여분구조



래형태는 이러한 유통구조를 최적화하며, 비용적으로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발생되었다. 직거래 시장의 가격할인과 신선도 유지가 소비자에게 어필하듯이 전자상거래 역시 편리성과 가격 장점을 무기로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 (1) 수산물직거래

수산경제연구원연구에서 수협직거래 형태를 아래 [그림 6-11-3]과 같이 분류하였다. [그림 6-11-3]에서 나타내고 있듯이 5가지 방법으로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통채널의 개입 단계론 보다는 결국 소비자가 확인이 가능해서 좋은 품질의 수산물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태	수 산 물 의 흐 름
A	어업인 → 매장 및 직거래장
B	어업인 → 산지위판장 → 매장 및 직거래장
C	어업인 → 소비지공판장 → 매장 및 직거래장
D	어업인 → 산지위판장 → 소비지공판장 → 매장 및 직거래장
E	어업인 → 산지위판장 → 소비지도매시장 → 매장 및 직거래장

[그림 6-11-3] 수협직거래의 수산물 수매거래 형태

최근 A형태로는 원양어업이 자사 원양물의 판매를 위해 대형할인점에 입점해서 판매하는 형태가 있다.

#### ① 수산물 직거래 현황

생활의 서양화·근대화 속에서 외식이 등장하고 여성의 사회진출, 핵가족화로 식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한 식생활의 변화는 최종유통채널의 다양화와 ‘가정소비에서 업무소비로’라는 수산물소비형태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가정소비의 측면에서는 슈퍼마켓과 생협 등과 더불어 그러한 곳에서는 대응할 수 없는 고객니즈를 대상으로 섬세하게 대응하는 선어전문점과 생산자직판소가 대두하거나, 인터



넷을 이용한 판매확대 등 구입처의 다양화가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판매업자의 매입루트도 다양화되고 있다. 업무소비는 4정 조건(정량, 정질, 정가, 정시)을 요구하는 양판점의 판매특성에 덧붙여 한정된 식재비용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저가를 요구한다. 이는 수입수산물에 수입증가를 초래하거나 비용절감을 위해 가공수산물의 수입으로 이동하는 등 시장외거래라는 형태로 기존의 도매시장시스템과 상존할 수 없는 거래를 확대한다.

[표 6-11-1] 직거래 비중

구분	유형	농 산 물					축산물	수산물	기타	계
		곡류	과일류	채소류	기타	소계				
판매비중 (%)	정기장터 (광역장터)	20.7 (32.9)	21.5 (25.2)	14.5 (14.2)	17.5 (27.7)	74.2 (100.0)	16.5 (-)	3.9 (-)	5.5 (-)	100.0
	순회판매	48.1	12.4	33.1	5.5	99.1	-	-	0.9	100.0
	임시장터	14.3	9.3	48.5	6.3	78.4	11.3	6.9	3.5	100.0
	자매결연	92.5	1.0	6.5	-	100.0	-	-	-	100.0
	조합간직거래	90.7	3.6	5.0	0.7	100.0	-	-	-	100.0
	대량수요처	96.9	0.4	0.7	0.1	98.1	1.9	-	-	100.0
	농협직판장	41.7	34.3	5.1	4.4	85.5	13.2	-	1.3	100.0
	신토불이창구	66.5	0.8	6.7	15.2	89.2	0.3	1.1	9.4	100.0
	평균	58.9	10.4	15.0	6.2	90.5	5.4	1.5	2.6	100.0
품목수 (계)	정기장터 (광역장터)	4 (4)	11 (13)	23 (25)	22 (31)	60 (73)	2 (-)	2 (-)	1 (-)	65 (73)
	순회판매	2	5	13	6	26	-	-	1	27
	임시판매	4	7	22	18.1	214	18	13	25	270
	자매결연	2	-	2	-	4	-	-	-	4
	조합간직거래	1	3	6	1	11	-	-	-	11
	대량수요처	2	1	1	2	6	1	-	1	8
	농협직판장	3	1	12	17	33	1	-	28	62
	신토불이창구	4	2	7	45	58	1	2	5	66
	평균	3	4	11	34	52	3	2	7	64

주 : 1998년 5월말 기준. 농업 직거래사업장의 유별 판매액 비중 및 취급품목 수  
 자료 : 조용운, 수협의 수산물 직거래사업 추진방안,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1998. 12

한편, 국내어업 생산자에 대해서는 소량다품종의 어획물에 관한 새로운 판매채널의 개척과 고부가가치라는 과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게 된다. 지금까지 선어소매점에 의한 수산



물판매가 주류였던 시대에는 소량 유통을 전제로 소량다품종의 어획물도 「매수인 → 소매점 → 소비자」의 유통경로가 확보되어 그 나름대로의 시장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량다품종어획물의 시장성은 업무소비의 증대에 따라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농협의 직거래 유형과 취급품목에 대한 참고자료 역시 수산경제연수원 자료를 참고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농협에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직거래 사업장을 통해 판매하는 품목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기 좋은 자료이다. 정기장터, 임시장터를 순회해서 판매하며, 조합원과 연계, 직판장을 통해서 농협이 직거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판매의 장을 다양하게 해서 소비자의 구매 편리성을 제공하고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농협의 노력이다. 농협에서의 수산물 판매비중이 3.9%에 미치고 있어 직거래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②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어업에 있어 중요한 것은 수산물이라는 구체적인 물품의 획득 및 생산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사업체계를 어떻게 환경변화에 대응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또 물품 서비스 시스템을 통합하고 컨트롤하는 경영관리의 구조를 어떻게 재구축하는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한 관리의 중심에 수협이 위치하고 있으며 직거래의 방향도 이러한 각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공통의 목표, 공통의 가치관하에서 정보 네트워크로 연결된 자주적 커뮤니티를 만들어 육류와의 경합문제, 수입수산물과의 경합문제, 개성화·다양화 되어가는 소비구조의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제품차별화 전략과 시장세분화의 사고로서 마케팅전략이 더욱 필요하고 나아가 물류(logistics)가 중요시 된다. 또한 수협이 생산 및 판매에 주력하고 경영과 마케팅 전문회사를 아웃소싱 할 필요성이 대두 된다.

### (2) 전자상거래 시장

수산물의 새로운 유통경로로 B2C 혹은 B2B로 표현되는 전자상거래시장이 있다. 전자상거래의 시장규모는 기업소비자간(B2C), 기업간(B2B) 모두 급성장하고 있지만 수산물의 경우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에 있고도 볼 수 있다. 특히 B2C는 상품의 표준화와 결제·배달 등 시스템 상의 문제도 많아, 당분간은 커다란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기업간거래는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식재료달에 나서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① 전자상거래 형태

전자상거래를 운영주체에 의해 4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표 6-11-2] 전자 상거래 유형

형 태	특 징	비 고
조달사이트(Buy-side System)	대량구매자가 직접운영 사전 등록된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 조달청등 대기업에서 조달업무에 사용함	대규모 식품회사에서 글로벌 소싱에 활용
판매 사이트(Sell-side System)	판매자가 운영 구매자 이용에 대한 편리성 제공	쇼핑몰형태로 판매목 적으로 구축
전자거래 사이트 (on-line trading community)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이용 제3자가 시스템 운영 오픈마켓	정보공유와 다수의 판매 자와 구매자거래 지원
마켓플레이스 (Electronic Marketplace)	제3자에 의해 운영 전자 카탈로그 정보제공 구매자들을 위해 다양한 판매업자 매칭	생산자, 판매자, 소비 자 통합 사이버 공간



수산물을 구매와 판매하는 주체에 의해 직접 운영되는 사이트와 제3자에 의해 정보교류와 판매가 이루어지는 오픈마켓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로 구분한다.

② 수산물 전자상거래의 실태

통계청에서 내놓은 “전자상거래통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품군별 매출액을 살펴보고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수산물 전문 쇼핑몰업체 30곳을 조사하여 판매유형에 따른 분류를 살펴봄으로써 수산물 전자상거래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통계청에서 내놓은 “2006년 전자상거래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2/4분기 648억 거래액으로 나타났다.

[표 6-11-3] 농산물 전자상거래액

구 분	(단위 : 십억원, %)		
	2005년 2/4분기	2006년 1/4분기	2/4분기
농수산물	54.8	86.3	64.8



e-Marketplace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수와 거래 금액은 농축수산물 및 식음료를 포함해서 16개 업체에 6,270억 거래금액으로 나타났다.

[표 6-11-4] 사업부문별 E-마켓플레이스 수 및 거래금액

(단위 : 개, 십억 원, %)

구 분	2005. 2/4 분기				2006. 2/4분기			
	업체 수	구성비	거래액	구성비	업체 수	구성비	거래액	구성비
농축수산물 및 식음료	16	8.0	435	13.3	16	9.5	627	16.3

아직까지 전자상거래에서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앞으로 수산물 전자상거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된다면 전자상거래에서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③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관주도형 수산물전자상거래 장의 현황

인터넷의 대두는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시장의 형성을 가속화시켰다. 전자상거래 시장은 기존의 유통채널을 변하게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미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은 기존의 유통단계를 축소함은 물론 24시간 쌍방향 교류가 가능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다. 1차 품목인 수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 및 각종부대비용을 절감하여 소비자에게 신선한 수산물을 적시에 공급함을 수산물 전자상거래의 목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수산물 전자상거래를 수산기관 주도로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없지 않다. 수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이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으며 시대적인 조류에 따라서 추진하는 판매정책들이 주도적이지 못하고 민간의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판매채널에 편승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수협의 전자상거래 현황을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상거래 주요업체와의 전략적인 제휴노력을 통해서 수산기관주도형 수산물전자상거래의 현주소를 알 수 있겠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11-5] 수산기관주도형 전자상거래 장의 현황

전자 상거래	주요 내용	현 황	비고
B2C형태	완도군수협 ( <a href="http://www.wandosh.co.kr">www.wandosh.co.kr</a> ) 웅진수협 ( <a href="http://www.ongjinfc.co.kr">www.ongjinfc.co.kr</a> ) 경인북부수협 ( <a href="http://www.kanghwa.co.kr">www.kanghwa.co.kr</a> ) 인천수협 ( <a href="http://www.i-suhyup.co.kr">www.i-suhyup.co.kr</a> )	수산물 구입매장, 다양한 수산물 정보제공, 수산물에 함유된 영양분석과 수산물 요리소개, 지역 관광코스 소개	일반 쇼핑몰과 차별되지 못하고 거래가 활발하지 못함, 체계적인 마케팅 부재로 소비자 인식 낮음. 오픈마켓과 경쟁관계에서 경쟁력 부족(고객숫자, 제품구색,이용의 편리성,사이트 신뢰성 등)
	피쉬세일 (.fishsale.co.kr) 어선어업인, 양식어업인,영어조합법인, 어촌계, 가공업체 등 입점	한국수산물유통, 인터넷 수산시장, 생선, 조개 및 해조, 젓갈류 등 판매.	
	e - 바다마트 ( <a href="http://shop.suhyup.co.kr">shop.suhyup.co.kr</a> )	건어,굴비, 멸치, 활어회, 옥돔 등 판매.	
B2B형태	인터넷생선사세요 ( <a href="http://kfb2b.com">kfb2b.com</a> )	'팝니다', '삽니다'게시판도 그리 활성화되지 않고 경매/입찰 게시물 빈약	현재로서는 구축자에 마의 의미

## 2) 전자 상거래를 통한 수산물 유통에 대한 분석

최근 전자상거래를 실시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수산물을 취급하는 쇼핑몰도 차츰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산물만을 취급하는 전자상거래 업체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농산물과 함께 다루어지거나 기타품목 정도로 취급되고 있어 우리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치고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수산물이 다른 품목과 달리 수산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소비자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하여 같은 1차 품목인 농산물 전자상거래에 비해서도 훨씬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수산물은 상품가격에 비해 부피와 중량이 크고 무거우며, 부패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규격화·표준화가 어렵고, 소규모 생산자와 소비자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등 전자상거래를 실시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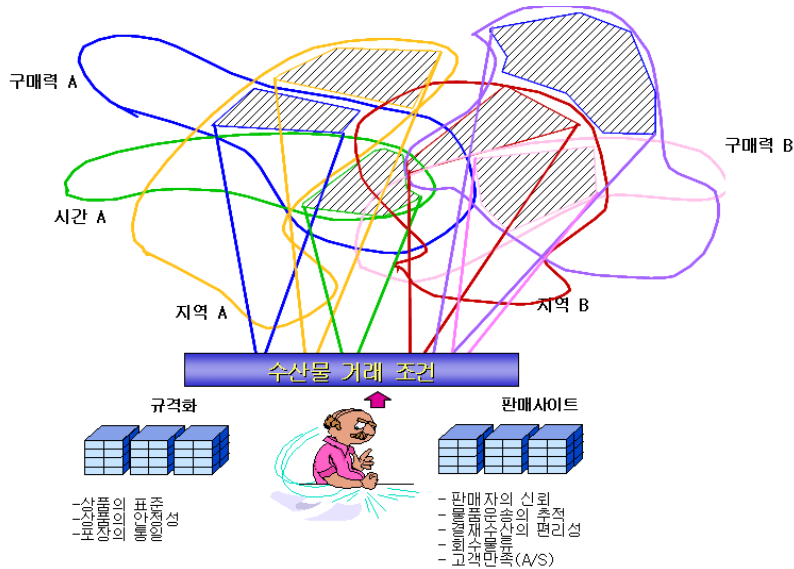
따라서 수산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관련법·제도의 정비와 신용카드 수수료의 인하 등과 같은 제도 및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며, 관련기업 또한 다양한 상품 및 콘텐츠제공, 안전한 배송 망과 수송수단, 인터넷 마케팅강화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1) 거래 성사 모델의 요구조건

수산물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조건들은 상품에 대한 규격화



와 판매 사이트의 노력으로 가능하다. 현재 개별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이트를 보면 거래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판매량이 미진하고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은 사이트와 상품규격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림 6-11-4] 수산물 전자 상거래 성립 조건 모델

소비자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수산물의 특징과 유통구조를 정리하며 다음 [표 6-11-6]과 같다.

[표 6-11-6] 수산물 특징과 유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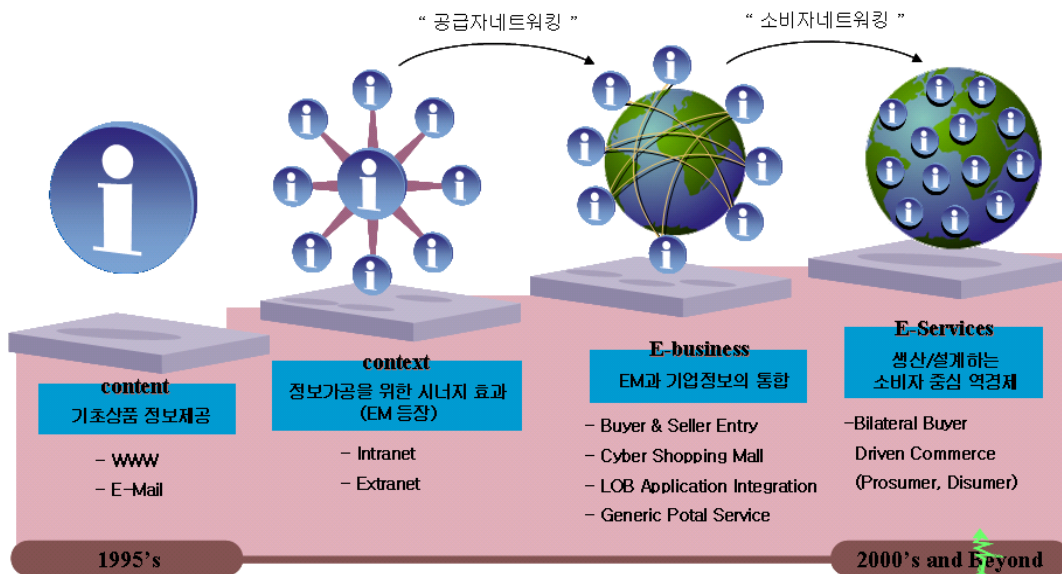
특징	활어, 선어, 냉동, 건어물, 패류, 해조류에다가 어종별까지 조합시키면 상품수 너무 다양
	부패성 때문에 저장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유통범위가 협소함
	공급이 해황이라는 자연조건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생산량이 불확실
	생산, 양륙되는 수산물의 양에 따라 그 가격변동이 심하다.
유통 구조	소량, 소규모의 생산과 판매가 지배적으로 유통의 다단계의 수집과정과 분산과정
	소규모 분산성과 품질, 규격, 형태의 통일성, 복잡성 때문에 거래방식의 불합리한 관습거래
	공급의 불안정과 변동 때문에 가격변동이 크고 시황이 불안정
	유통체계가 복잡하고 유통 참여인의 수가 많다

이상의 수산물 특성과 유통구조의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제도를 정립하고 소비자 홍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품등록과 규격에 대한 감독기관의 인정을 먼저 받게 하고 공인된 제품에 대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제품소비에 대한 안정감을 갖게 한다면 현재 개별기업의 노력으로 진행되는 제품의 규격화에 대한 노력과 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인된 제품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수산물의 거래성사 규모는 크게 확대 될 것이다.

(2) 주요 전자상거래 형태와 주요사이트

앞장에서 전자상거래 형태에 대하여 정리하였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단순히 제품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 소비자중심의 쌍방향 네트워크환경으로 기술이 발전되었다.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전자상거래 시장은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단순히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형태에서 인터넷이 고객을 위해 서비스 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그림 6-11-5] 인터넷 서비스 단계

수산물관련 전자상거래 쇼핑몰 주요 포털과 오픈마켓인 G-market, 옥션 수산물, 야후, 네이버, 엠파스 등을 조사해 보면 다음의 [표 6-11-7]과 같다. 오픈마켓인 G-market과 옥션 수산물은 다양한 수산물 제품과 전문상점이 입점하여 활발한 상거래를 하고 있으며, 야후, 네이버, 엠파스 등은 포털사이트의 등록사이트 숫자로 개별적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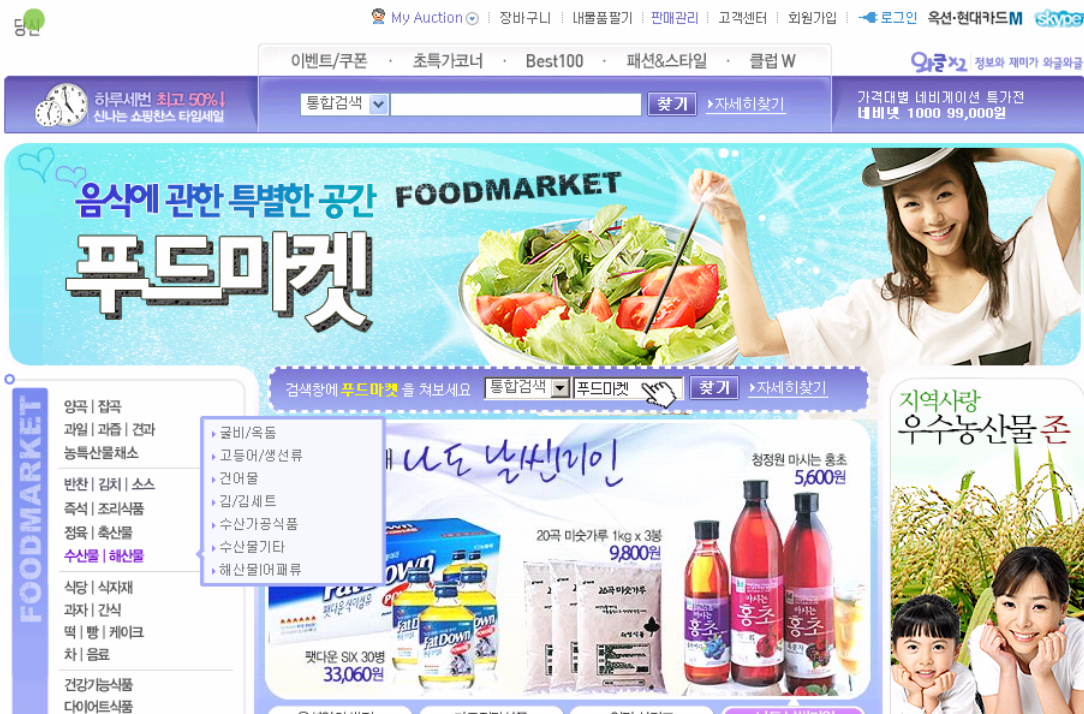


[표 6-11-7] 수산물 관련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 마켓 현황

주요 E-market	주요 경로	수산물 사이트 현황	비고
G-market	전체 > 신선/조리/농수축산물 > 수산물 수산물 (1318개)	기타수산물 (1203개), 계/킹크랩/바다가재 (29개) 생선세트 (21개) 조개류 (16개) 고등어 (9개) 굴비(10만원 미만) (9개) 새우 (9개) 연어/알류 (6개) 오징어/낙지/쭈꾸미 (5개) 갈치/은갈치 세트 (4개) 전복 (2개) 굴비(10~30만원) (2개) 옥돔 (1개) 굴 (1개) 굴비(30만원 이상) (1개) 기타수산물에 다양한 수산물 판매 업체와 품목이 존재	오픈마켓으로 다양한 수산물제품과 전문 상점이 입주해서 활발한 상거래
옥션 수산물	식품/농수축산물>수산물/생선 (9443개)	건어물 [2908] 고등어/생선류 [2295]굴비/옥돔 [1653]수산물기타 [1257] 수산가공식품 [832]김/김세트 [498]해산물/어패류(2180)	오픈마켓으로 수산물제품과 전문상점이 입주해서 활발한 상거래
야후	쇼핑과 서비스 (B2C, C2C) > 식품, 음식 > 수산물	건어물 (65)계 (50)과메기 (17)굴비 (28) 기업간거래(B2B) 전복 (26)젓갈 (38)해초, 김 (63)홍어 (22)	포털사이트의 등록 사이트 숫자로 개별적인 쇼핑몰
네이버	기업, 쇼핑 > 음식, 식품 > 수산물 (769)	젓갈 (50) 건어물 (218) 계 (81) 고등어 (20) 과메기 (46) 굴 (7) 굴비 (33) 멸치 (30) 미역, 다시마 (17) 바다가재, 랍스타 (4) 바지락 (3) 복어 (5) 새우 (6) 오징어 (18) 옥돔 (7) 장어 (7) 전복 (44) 참치, 다랑어 (11) 홍어 (30)	포털사이트의 등록 사이트 숫자로 개별적인 쇼핑몰
엠파스	기업 > 식품, 음식 > 수산물	해산물 (259) 해산물 (338) 농수산물시장 (36)해조류 (83) 건어물 (57) 굴비, 조기 (29)	포털사이트의 등록 사이트 숫자로 개별적인 쇼핑몰

또한 주요 오픈마켓은 다음의 [그림 6-11-6]에서 같은 형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림 6-11-6] 오픈 마켓

### (3) 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필요성

수산물은 자연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급조절이 어렵고 수산물의 유통특성상 소규모 분산적인 소비, 강한 부패성으로 인해 시간적, 공간적 이동상의 제약성 등의 이유로 유통구조가 복잡하여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었고 필요이상으로 높은 마진율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산물 전자상거래를 적극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수산물 전자상거래가 전통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매체의 활용과 정보의 공유, 수산물의 표준화 및 규격화, 물류시스템화, 마케팅활동, 고부가가치 상품의 개발, 관리운영 시스템 등 수산물 유통과 관계된 근본적인 변화가 먼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반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수산물 유통은 고객 지향적 유통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즉 소비자는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자신의 욕구에 적합한 상품을 구매하고 공급자는 소비자의 선호에 대한 정보를 DB화함으로써 지속적인 관계마케팅이 가능하여 소비자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소비량과 선호하는 품목의 파악이 쉬워 소비자의 욕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신선수산물을 더 찾게 될 것이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예상되는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11-8]

[표 6-11-8] 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내 용	비고
필요조건	디지털매체의 활용과 정보의 공유, 수산물의 표준화 및 규격화, 물류시스템화, 마케팅활동, 고부가가치 상품의 개발, 관리운영 시스템	고객 지향적 유통 소비자요구정보 DB 고객만족 증대
부가산업의 발전	수산물 저온유통체계의 발전, 산지종합처리장, 가공공장 등이 물류거점으로 부상 소비자 대량구매처와 직거래 활성화 냉동 탐차, 거점별 냉동 창고(규격화, 소포장)축진	수산물을 신선한 상태로 소비 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유통 시스템 간소화

#### (4) 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발전 방안

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황을 파악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자상거래자체가 정보시스템위에 구축되기에 급격히 변해가는 정보기술을 따라잡아야 하는 문제를 감안하여 주변 인프라와 프로세스를 장 단기적으로 기획하여 갖추어야 하고, 유연하게 새로운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항상 앞서가는 전자상거래 장을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열어 주어야 한다. 세부 발전방안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표 6-11-9] 수산물 전자상거래 발전방안

세부 항목	현황	발전 방안	비고
취급품목의 다양화	대부분의 수산물 쇼핑몰이 취급하고 있는 품목은 배송과 취급이 편리한 건어물, 반건조식품, 젓갈류, 수산가공식품등	생물판매(생낙지,생문어,생태,생고등어 등),활어판매(광어,우럭,도미,농어 등), 활패류(활꽃게,대하,낙지,소라 등)등으로 취급상품을 다양화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 넓어짐
배송망 확보와 배송수단의 다양화	대부분이 택배회사를 통해 배송, 고객에게 상품의 배달현황을 알려줄 수 있으며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신속한 배달이 가능	취급상품의 종류와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택배회사, 우체국, 자체배송, 산지직송 시 소요비용을 비교하여 최적의 배송망확보	생물, 활어, 활패류 등으로 취급품목이 다양화 된다면 냉장, 냉동차 활어차등의 다양한 배송수단 필요
수산물의 품질유지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되므로 웹사이트 상에서 제공되는 품질과 실제 수령했을 때의 품질의 차이가 발생	소비자 불신이 수산물 전체로 이어져 구매 욕구를 창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에 제품의 품질유지에 엄격한 기준	생산자 배상 책임 정책, 품질검사 제도 마련(인증, 이력관리 강화)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전략수립	종합쇼핑몰에 비해서 수산물쇼핑몰은 상품소개와 간단한 수산상식 그리고 게시판운영등 대체로 단순하고 획일적으로 운영	수산물 쇼핑몰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어 단순히 물건만 사고파는 전시기능의 차원을 넘어 수산물소비문화 창조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로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어 모아 앞으로 더욱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고객관리 강화, 홍보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DB를 구축, 일 대 일 마케팅과 회원제 도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생산자, 유통기한 및 보관 방법 등 표시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재 구매 유도	수산물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인식 향상
정보시스템의 활용	정부주도에 의한 민간 참여방식으로 기술비용과 시스템의 낙후성(투자개념보다 비용으로 작용, 농업부분 등 답습하여 후발시스템)	전문가 집단을 통한 시스템 아웃소싱, 선진 정보시스템 회사 지분 인수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예: 인터넷 경매, 무선정보)	선도적인 신기술 도입으로 새로운 서비스제공 (생산자, 중간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

### 3) 주요 성공사례 분석을 통한 수산물 전자상거래 전략 수립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2007년 1/4분기 사이버쇼핑몰 거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년 1/4분기 국내 사이버쇼핑몰 거래액은 전년동기 대비 21.6% 늘어난 3조 8,281억원으로 집계됐다.



[표 6-11-10] 사이버 쇼핑몰 거래액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거래액	취급상품범위별		운영형태별	
		종합몰	전문몰	online	on/offline 병행
2001년	3,347,067	2,259,715	1,087,352	1,390,662	1,956,405
2002년	6,029,876	4,389,126	1,640,751	1,973,686	4,056,191
2003년	7,054,817	5,108,126	1,946,692	2,401,107	4,653,711
2004년	7,768,105	5,620,687	2,147,418	3,824,930	3,943,175
2005년	10,675,595	7,415,033	3,260,563	5,913,345	4,762,175
2006년	13,459,595	9,570,678	3,888,917	8,285,365	5,174,229

자료 : 통계청

사이버쇼핑몰의 사업체수와 거래액 대한 통계자료는 [표 6-11-11]과 같다.

[표 6-11-11] 사이버 쇼핑몰 사업체수와 거래액

(단위 : 개, 십억원, %)

구 분	2006년			2007년			전기비		전년동기비	
	3월	1/4분기	4/4분기	2월	3월	1/4분기	월	분기	월	분기
사업체수	4,403	4,388	4,524	4,523	4,513	4,522	-0.2	0.0	2.5	3.1
사이버쇼핑 몰 거래액	1,103.4	3,147.6	3,625.1	1,224.9	1,297.5	3,828.1	5.9	5.6	17.6	21.6

자료 : 통계청

수산물관련 쇼핑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수산물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대부분이 B2C유형을 취하고 있는데 B2C유형으로 운영함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B2C의 경우 대부분이 중간 유통 상이거나 생산자가 직판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상품이 다양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쇼핑몰이 상품 전시기능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으며, 또한 소규모 위주로 판매 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인터넷 이용기반이 취약하여 접근도가 떨어지고 상품 및 서비스정보 부족, 교환환불 및 AS등에 대한 신뢰감 부족으로 전자상거래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B2C유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산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산물 전자상거래도 개별 생산자들이 소비자들과 직접 거래하는 B2C시장 보다는 오픈마켓에 쇼핑몰을 등록하여 몰인몰(Mall in Mall), 몰온몰(Mall on Mall) 형태로 접

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일정한 상품공급 능력을 갖춘 생산자단체와 대형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B2B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들을 결합한 B2B2C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각각에 대한 내용과 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 방법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표 6-11-12] 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략

형태	주요 현황	수산물 전자상거래 적용 방안	비고
B2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 전시기능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으며, 또한 소규모 위주로 판매 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어렵다.</li> <li>• 접근도가 떨어지고 상품 및 서비스정보 부족, 교환환 불에 대한 신뢰감 부족</li> </ul>	개별적으로 구축된 쇼핑몰을 통합할 수 있는 e-Marketplace 구축 : 검정을 마친 제품에 대하여 자동등록 기능 추가	기존 쇼핑몰의 제품 DB를 자동으로 주요 오픈마켓에 등록되도록 기술지원 <sup>18)</sup>
B2C (몰인몰) (몰온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몰인몰(Mall in Mall)은 종합쇼핑몰에 입점한 소규모 서브 쇼핑몰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단일품목의 상품을 취급하며 오픈마켓플레이스로 알려져 있다.</li> <li>• 몰인몰의 유행으로 소규모 몰인몰 쇼핑몰의 운영자가 많이 생기고 있으며 G마켓, GSeStore 같은 몰인몰만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쇼핑몰도 생긴다.</li> <li>• 몰온몰(Mall on Mall)은 여러 종합쇼핑몰의 상품을 한 곳에서 매장별, 상품군별로 둘러보며 쇼핑할 수 있는 거대한 메타쇼핑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마켓, 옥션에 수산물 전문종합쇼핑몰을 만들어 우수 수산물 쇼핑몰을 입점 시킴.</li> <li>(참고) 롯데닷컴의 유기농 전문매장 ‘이그린마트’</li> <li>• G 마켓과 옥션내 2001아울렛과 홈에버의 인터넷 전문매장 ‘모던하우스’</li> </ul>	인터파크, 롯데닷컴, 엠플, GS이숍, G마켓, 옥션 등 주요 오픈마켓에 몰인몰, 몰온몰 형태로 수산물 전문매장을 입점 시켜, 소비자의선택과 가격비가교가 편리하게 서비스 가능
B2B	상품공급 능력을 갖춘 생산자단체와 대형 유통업체가 참여, 수산물 전문 정보, 관련 콘텐츠 제공하고 공동 마케팅 및 홍보하며, 수산물 수출입업무, 경매방식을 도입 수산물 거래 활성화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수요자가 참가, SCM과의 연계, 인프라 구축 : e-Marketplace	유통단계 단순화, 대규모 : 수송비,냉동비 등 유통비용 절감(가격경쟁력 확보)
B2B2C	대규모 수산물수요업체가 자체 조달을 전자상거래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후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직접 판매와 배송	수산물생산과 소비구조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과 조직을 통해 경영	공공의 성격을 띤 민간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한편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수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주요 인터넷·TV 등 온라인 쇼핑업체와 농수산물 공동 마케팅을 확산 시키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들은 판로를 넓힐 수 있는 차세대 유통채널로, 온라인 업체들은 값싸고 우수한 농수산물의 공급원으로 상대방을 인식하여 ‘윈-윈’을 모색한 결과이다.

18)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5장의 전문기업 아웃소싱에서 설명





특히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농촌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어 낮은 비용에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려는 지자체들의 온라인 제휴 노력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주요 온라인쇼핑몰 지자체 제휴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6-11-13] 지자체 제휴 사례

쇼핑몰	지자체 제휴 현황	주요 판매 제품
GS홈쇼핑	제주 모슬포수협 등 특산물 판매, 함양 마천농협, 해남 협산농협 등	‘지리산 토종꿀 2+1병’, ‘해남 호박고구마’, ‘원북농협 으뜸쌀’
GS이숍	목포 수협, 안성농협	토종꿀, 굴비, 꽃감
옥션	경기, 충남, 전남 제휴	‘경기 G마크’, ‘충남 도지사 추천 Q마크’, ‘프리미엄 식품관’
G마켓	경기, 강원, 전남, 충남 등 제휴 및 입점	‘전남쌀 특별관’, ‘충남 농수축산물 특별관’ 보성녹차, 보성잡곡, 벌교꼬막
인터파크	농협과 제휴, 농산물 과일 등	할인쿠폰, 무료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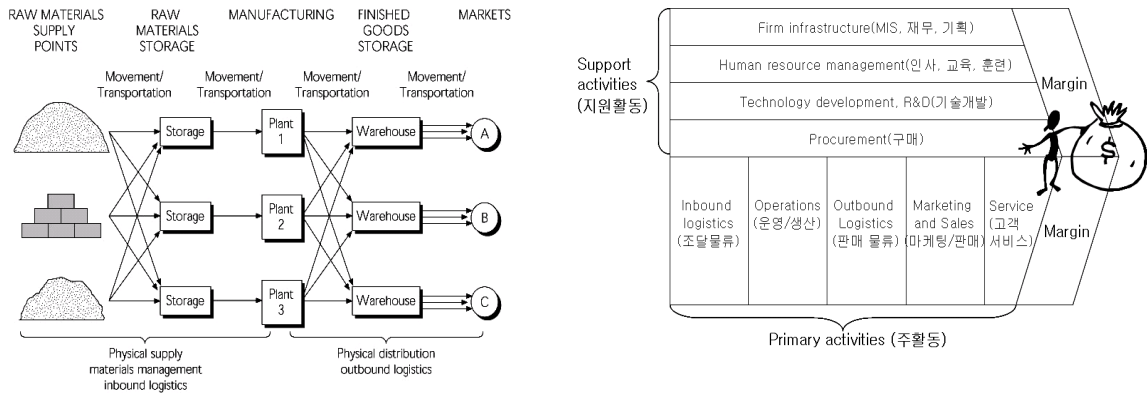
이러한 제휴와 노력들은 전자상거래 상위 업체들과 협력해서 소비자의 관심과 판매를 유도하는 마케팅방법인데, 소비자 우선주의와 주요 오픈마켓의 정책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정도의 수준임을 알 수 있게 한다.

#### 4) 제3자, 4자 전자상거래 전문기업에 대한 아웃소싱 전략

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접근 방법은 앞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솔루션업체와의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정의하면 현 IT트렌드인 아웃소싱 방법이다. 아웃소싱을 정리하고 수산물전자상거래에 적용하기 위해 요즘 3자물류, 4자물류가 형성되는 과정을 참고하여 발전적인 전자상거래 모습을 구상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아웃소싱에 대한 정리

기업의 주요생산 판매활동(서비스 사업포함)은 최근 SCM(Supply chain mgt.)와 가치체인(Value chain)의 조합으로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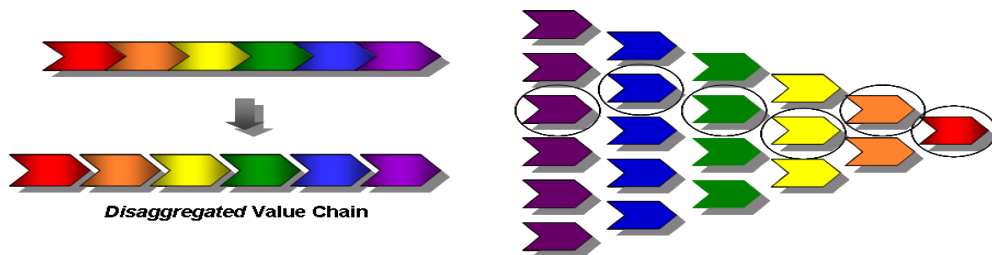


참고 : Michael Porter, Competitive Advantage(New York: The Free Press, 1985)

[그림 6-11-7] SCM과 Value Ch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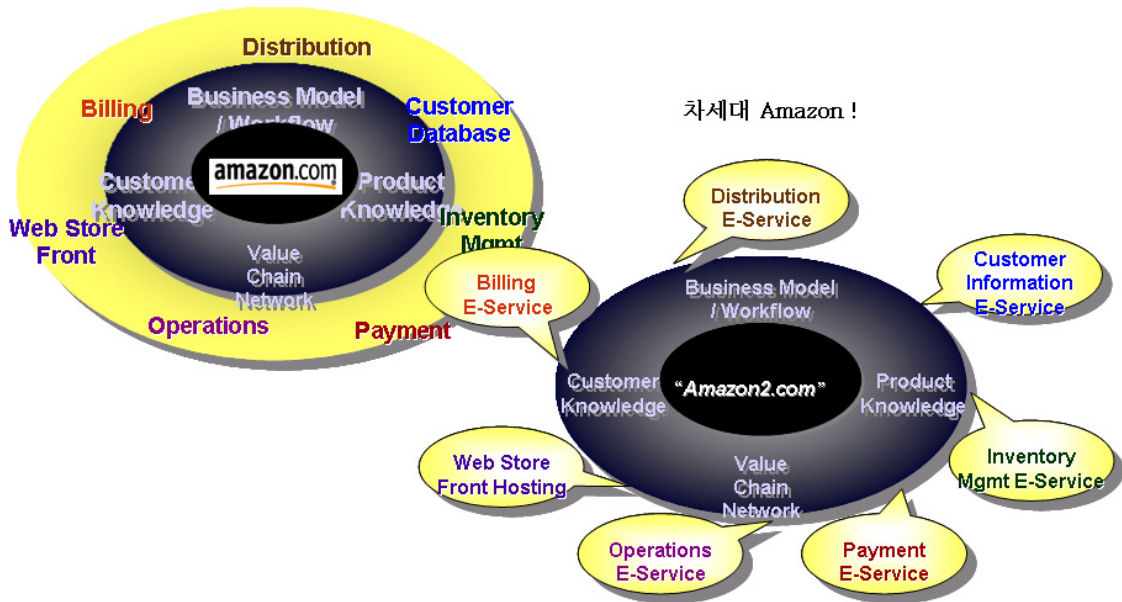
가치체인 상에서 최적의 경영파트너를 찾는 작업이 아웃소싱이다. 즉 가치체인의 선별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outsourcing 단계인 것이다. 기업의 가치사실에서 이전에는 주 활동과 지원활동전부를 회사내부자원으로 진행하여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았다. 이를 구분하여 외부업체로부터 서비스 받는 형태로 전환하면서 업무의 효율과 비용을 절감하며, 기업의 핵심역량에 집중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아웃소싱에 대한 많은 연구와 사례가 나와 있어 현대 경영의 트렌드라 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가치사실 단계를 구분하여 각 부분별 최적의 가치사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6-11-8] 최대의 가치사슬 개념도

전자상거래 기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의 경우도 초기에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고객서비스, 물류관리, 회계 관리 등 가치사실의 모든 부분을 기업내부에 두어 과다한 비용을 발생시켜 결국은 어려운 국면으로 흘러갔는데 이러한 부분을 모두 아웃소싱형태로 외부 서비스 형태로 변형함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핵심역량에 집중하므로 새로운 발전을 가능케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11-9] 아마존의 아웃소싱

이 처럼 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아웃소싱을 도입하는 부분이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전문가를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아웃소싱의 방법이 다양하고 업체선정에 대한 부분부터 일단의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IT발전과 맞물려 수산물 전자상거래는 크게 발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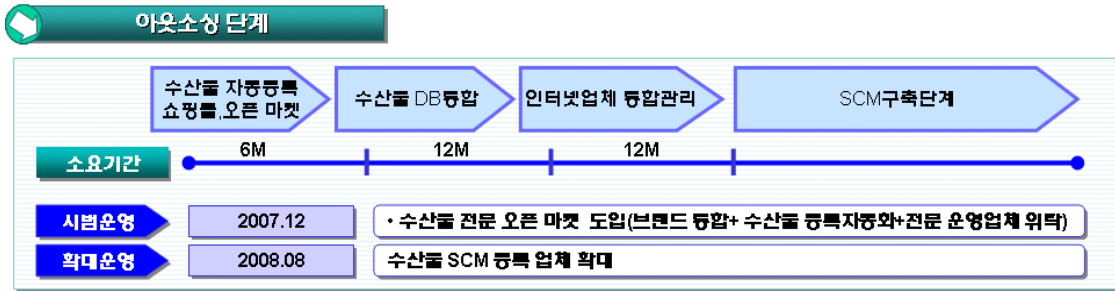
## ② 수산물 아웃소싱 방법

앞장에서 수산물관련 B2C, B2B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결국 개별적이고 집중화되어도 일반소비자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결국은 메타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 상품을 등록하여 일부 활성화 된 정도를 알 수 있었다. 결국은 메이저급 쇼핑몰과 오픈마켓에게 주도권을 넘겨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업체들과 아웃소싱관계를 잘 활용하면 가능성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수산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1차적으로 기존의 수산물 쇼핑몰의 상품들을 자동으로 주요 마켓에 등록하는 솔루션을 도입하여 수산물이 소비자에게 가능한 많이 노출되어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수산물관련 DB가 모이면 자체적으로 오픈마켓을 열어서 운영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 올 수 있지만 전체관리는 정책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필요가 있다. 이후 인터넷 전문 기업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상품을 모으는 수협물류 SCM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각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11-10] 수산의 전자상거래 아웃소싱 개념도

③ 1단계 구축 방법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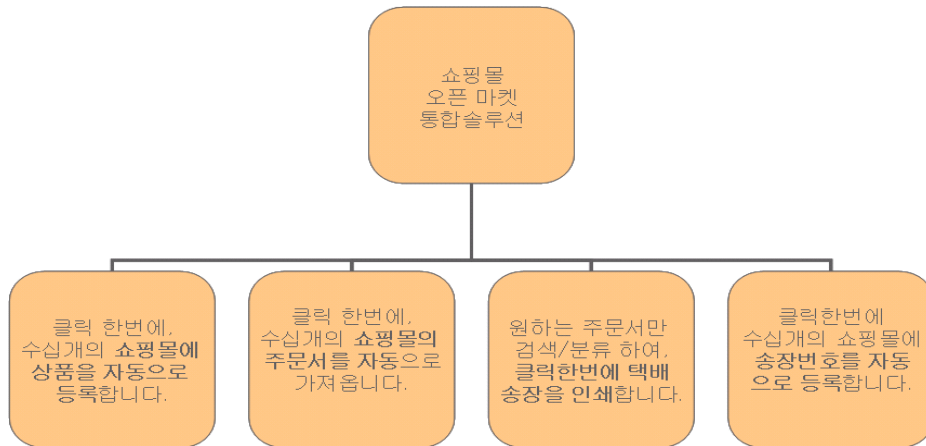
1단계에서 수산물 자동 등록 방법은 현재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이다. 국내 한 인터넷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업체는 현재 개별 쇼핑몰업체의 상품을 주요 오픈마켓(아래그림)에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쇼핑몰	사이트명	사이트 구분	상품/주문/문의관리
AUCTION	옥션	오픈마켓	
Gmarket	G마켓	오픈마켓	
OnKor	온켓	오픈마켓	
인터파크	인터파크-오픈마켓	오픈마켓	
GS@store	GS-e스토어	오픈마켓	
다음 OnKor	다음-온켓	오픈마켓	
mple	엠플	오픈마켓	
cywOrld 마켓	싸이마켓 (+네이트몰)	오픈마켓	

[그림 6-11-11] 오픈 마켓과의 연결

이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www.playauto.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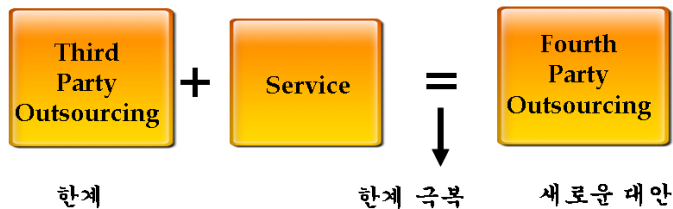
[그림 6-11-12] 쇼핑몰 오픈 마켓 통합 솔루션 서비스 사례

이와 같이 기존 서비스를 사용해서 수산물 공동 DB가 구축이 된다면, 자체적으로 수산물 오픈마켓을 주도적으로 이용해서 수산물 전문 오픈마켓으로 G마켓과 같은 기존의 오픈마켓과 차별화해서 경쟁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

④ 전문 아웃소싱 단계(4자 아웃소싱 단계)

수산물 전자상거래에서 블루오션에 해당되는 물류차원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다. 3자 물류에서 4자 물류기업이 등장하였듯이 3, 4자 아웃소싱 기업이 수산물 전자상거래 부분에서도 생겨날 것이다(그림참고). 물류부분과 수산물 전자상거래 아웃소싱부분과 4자 아웃소싱의 발전 가능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4자 아웃소싱의 출현



[그림 6-11-13] 4자 아웃소싱

[표 6-11-14] 수산물 전자 상거래 아웃소싱과 물류

구분	제3자, 4자 전자상거래 아웃소싱	3자물류	4자물류
서비스 범위	수산물 오픈 마켓의 운영과 e-Marketplace & SCM 서비스	창고나 수송 등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	SCM, 컨설팅, 물류네트워크 개선 등 물류 전반을 서비스
특징	3자, 4자 물류내용과 동일 수산물 전문가 집단의 참여로 특화된 서비스 제공, 기존 마켓과 차별화해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	특정부문의 비용절감에 치중할 뿐 공급체인 전반의 지속적인 비용절감 및 효율증진에는 한계가 있고 IT, 보관, 운송 등 물류활동의 최적조합에 의한 통합서비스 제공	제3자물류에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물류회사, 컨설팅회사, IT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물류비 절감과 서비스 증대에 주력하는 전략. 전체적인 공급연쇄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기업의 경영자원, 능력, 기술을 관리하고 결합하는 공급연계 통합
발전 방향	SCM형태로 발전해서, 수산물 규격화 제품화하여 소비자 신뢰성을 확보함.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수산업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현실화시킴. 수산물 전자상거래 사업모델, 생산과 소비에 대한 통합적인 시스템을 세계에 수출함. 브랜드파워를 유지하며, 글로벌한 수산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하주기업이 고객센터의 향상, 물류관련비용의 절감, 그리고 물류활동에 대한 운영효율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공급체인(supply chain)의 전체 혹은 일부를 특정 물류전문업체에게 위탁하는 고도의 물류 서비스(outsourc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점유율이 낮고, 물류가 핵심기능이 아니며, 여러 부문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발전 가능성이 많다.</li> <li>- 인터넷에서 물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이다.</li> <li>- SCM의 아웃소싱이다. 기술발전 및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라 SCM의 통합을 위해 4자물류가 등장(위탁자의 경영자원 및 기술과 수탁자의 경영자원, 능력, 기술 등을 결합하여 공급체인 전반을 관리)</li> </ul>



5) 성공적인 전자 상거래의 CSF(Critical Success Factor)

전자상거래가 성공하기 위한 환경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는데, 성공하기 위한 핵심 요인들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조건들은 기본조건이고 이를 활용하는 충분조건으로 많은 수산물 전자상거래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



[표 6-11-15] 수산물 전자상거래를 위한 CFS

	현 황	개선방안	비고
수산정보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정부 및 민간의 정보화 마인드 부족</li> <li>- 수산정보화 전문 인력 및 운영요원 절대부족</li> <li>- 수산정보공유(공동 활용)체계 미흡</li> <li>- 수산정보시스템의 기술적 결합, 시스템간의 정보연계 미 구축으로 수산정보 활용 저조</li> <li>- 원시자료 제공자와의 협력체계 미흡으로 다양한 수산정보제공의 한계</li> <li>- 민간위탁 정보화사업의 경우, 운영비용 과다 발생</li> <li>- 수산정보 생산주체가 다양하여 통신망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복투자 우려와 제공되는 상이한 정보로 수산정보 신뢰성 문제</li> </ul>	수산정보를 통합하여 관리·운영하는 전문 전담조직을 설립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제공되고 있는 수산정보를 중복투자 없이 타 기관에서도 활용 가능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고 수산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접속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운영 → 수산물유통정보화 사업 강화, 수협의 수산물유통정보 사이트 활성화	농업부분보다 10년 정도 뒤져있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 어촌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 개발(공동구매, 콘텐츠개발, 교육지원금). 기업 사회참여지원(KT,SK등의 특활 활동)
수산물의 단위 화와 규격화 추진	어종별, 상품속성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부피와 중량이 크고 무거우며, 부패하기 쉬운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수산물의 규격화·표준화가 어려운 실정	산지생산자, 수협, 도매시장법인, 도소매업자간의 거래단위를 단위화 및 규격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통일된 표준규격을 규정	정부의 정책 집행의지 요구
수산물 물류표준화와 물류시스템 구축	수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와 관련된 기기, 용기, 설비를 규격화 기계화와 단위화물적재시스템 (ULS:Unit Load System)에 맞는 장비 시설을 보급되지 않아 소비자 구매단가가 일반유통채널과 비슷함	산지에서부터 파렛트 적재, 하역기계화를 할 수 있도록 일관수송체계 구축 향운노조의 독점 노무 공급에 따른 경영 수익원 상실 및 물류 현대화에 따른 편익 상쇄의 불합리성	전자상거래 확대(소비자 구매단가 하락)
수산물품질인 증과 원산지 표시	거래상품에 대해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품질과 원산지에 대한 신뢰부족(부패하기 쉬워 신선도 유지어려움) 수입수산물이 많이 유통	단계별로 진행(소비자의 구매원가에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고객의 신뢰성 제고
유통전문가의 육성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이 대체로 고령화이며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점차 감소 추세	수산물의 상품화 개발 및 마케팅활동과 전자상거래를 이해하는 유통전문가 육성	어업후계자 교육, 수산 벤처대학운영
정보화 교육	어촌의 정보인프라 구축과 어업인 정보화 교육, 전자상거래, 응용서비스의 보급이 적절히 구현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부재	수산물유통정보 사이트	사용하지 쉬운 시스템개발 보급

## 6) 추진사업과제

수산물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산물 전자상거래 솔루션을 개발하고,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는 제품 규격화 및 표준화 작업, 대형유통업체 상설매장 개설 등을 한 이후, 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체제를 구

축하여 운영하여 수산물 전자상거래 진흥회의를 운영하고, 산관학연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설립 등의 사업의 필요하다.

[표 6-11-16] 추진사업 과제명

사 업 명
○ 수산물 전자상거래 솔루션 개발
- 오픈마켓운영
- 솔루션 발굴(선진사례 벤치마킹)
- 전자상거래 원천기술 확보(지분확보)
- 주요 오픈마켓업체와 협력
○ 마케팅 전략 강화
- 제품 규격화, 표준화 작업
- 우수 수산물 등록 및 홍보
- 우수 수산물 브랜딩 작업
- 대형유통업체 상설매장 개설
○ 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체제 구축운영
- 수산물 전자상거래 진흥회의 운영
- 산관학연 협력시스템 구축 운영
- 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설립



# 제 7 장

## 결론 및 건의사항

제 1 절 결론요약

제 2 절 건의사항







본 연구는 WTO/FTA에 대비하여 수산·어촌부문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연구과제로 작년에 이어 수행된 2차년도 연구로서 1차년도에서 도출된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정부의 시책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세부실천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는 본 연구는 매우 기획적인 연구로 연구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정책사업으로 실천하기 위한 타당성과 여러 조건 및 여건을 분석·파악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아울러 2차년도 본연구는 WTO/FTA에 대응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강화에도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내용의 범위는 다양하고 광범위한데 우선 크게 5개의 과제로 분류된다. 첫째, 수산보전제 도입세부방안 마련 둘째,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개발 및 확산방안 셋째, 수산벤처산업 활성화 전략 및 육성방안 넷째,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방안 다섯째, 수산가공 및 유통 활성화 방안 등이다. 그리고 이들 5개 연구과제 각각에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어 큰틀 차원에서 향후 정책방향과 추진계획 등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 일부 연구내용은 정책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세부실천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론으로 5개의 각 과제별로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고 이들 과제가 향후 정책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 제1절 결론요약

### 1. 수산보전제 도입 세부방안 마련

수산보전제는 국가재정에서 어업인 또는 관련 단체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의 수산보조금 중에 자원, 시장 또는 무역왜곡을 초래하는 수산보조금을 철폐하자는 WTO의 수산보조금 규범을 수용하고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 할 수 있다.

수산보전제는 농업분야의 직접지불제와 유사한 것으로 10년 전에 도입한 농업에 비해 매우 늦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7개의 수산보전제 즉 조건불리지역, 친환경부표, 재해 예방, 고령어가 은퇴, 휴어 그리고 어장휴식의 수산보전제에 대한 도입 세부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내용은 각 보전제별 시행을 위한 사업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도입의 필요성, 추진방안, 추진방식, 관련 법제도 검토, 기대효과 그리고 고려 및 건의사항 등이었다.

이 연구수행 중에 조건불리지역 및 친환경부표지원의 2개 수산보전제는 사업예산이 확보되는 등 수산보전제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향후 추진을 위한 단계별 세부실천 계획을 제시하였고 정책사업으로 시행하기 용이하도록 수산보전제별로 우선순위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수산보전제가 농업분야처럼 주요 수산정책으로 확대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 2. 수산업·어촌비즈니스 모델개발 및 활용방안

WTO/FTA 등의 수산시장 개방화에 대응하고, 자원감소 및 고유가 등 어려운 어업경영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수산업·어촌의 자생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개인별 능력 또는 어촌지역 특색에 따라 다양한 수익창출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대표적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확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과제의 목적이다.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사업은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공사례의 발굴, 유형화, 홍보, 적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대적 변화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용이하도록 할 뿐 아니라 수산업·어촌부문에서 성공할 수 있는 본질적인 요인을 밝혀내서 어업인, 어촌계에서 실정에 맞게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컨설팅

기능 등을 포함한다.

이 과제에서는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제시, 10개의 성공모델 사례분석 그리고 모델의 현장 활용방안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아울러 10개 성공 모델사례는 별도 책자로 발간하여 실제 어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3. 수산벤처산업 활성화 전략 및 육성방안

21세기 수산업은 생산위주의 1차 산업에서 탈피하여 생명공학과 연계한 고차산업으로 까지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산벤처산업은 수산물 수입 개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수산업이 생존·발전할 수 있는 주요 대안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 수산업이 생명공학 기술력의 우위와 축적된 자본과 정보망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의 개발로 벤처산업화한다면 가격경쟁력의 열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과제에서는 수산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과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벤처의 현황 및 육성정책, 수산벤처기업 대상 설문조사 실시, 수산벤처 기업의 경영현황 및 애로점 그리고 수산벤처의 비활성화 원인 등을 분석·검토하였다. 이들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수산업 경쟁력 강화측면에서 수산벤처산업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정부의 지원방안으로 기술, 창업, 창업보육, 금융 그리고 금융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수산벤처산업 활성화 전략 및 지원방안에 근거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세부실천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로 인해 수산벤처산업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를 여수 엑스포에서 수산벤처산업관 등을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 4.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방안

이 과제에서는 국제무역자유화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도시와 비교하여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어촌에서 어업인이 안정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세부실천과제의 제안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어업인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 및 관련사업의 현황파악, 어업인 삶의 실태를 도시와 농촌과 비교분석 그리



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어업인·어촌에서 필요로 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실천방안을 각 부문별로 제안하였다.

## 5. 수산가공 및 유통 활성화 방안

이 과제는 WTO/FTA 대응하여 국내 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갖는 이 과제는 우선 가격측면과 비가격 측면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큰 시각에서 출발한다.

우선 가격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국내 수산물의 1차 가격이 형성되는 산지위판장의 경쟁력 제고이다. 그리고 비가격 측면에서는 국내 수산물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산지가공의 활성화, 국내 수산물의 브랜드화, 원산지 표시제 강화, 이력제 등을 통한 차별화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새롭게 성장 확대되고 있는 외식 및 단체 급식시장에 대한 대응책 마련, 외식시장에서의 국내 수산물 취급판매에 대한 인증제 부여를 통한 포지셔닝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에 대한 현 상황의 인식에서 이 과제는 크게 3개의 주요과제와 각 과제별로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식품산업 육성차원에서 ‘외식산업 및 수산물 식재료 산업 육성’, ‘수산가공산업 발전방안’, ‘수산가공벤처 육성 및 지원’ 그리고 ‘FTA 추진 국가별 맞춤형 가공 유통업 구조개편’을 제안하였다.

둘째, 브랜드 중심의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내수기반 구축차원에서 ‘브랜드화 전략 및 확산 방안’, ‘원산지 표시제 강화방안’ 등 2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였다.

셋째, 고품질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차원에서 ‘산지유통시설 육성방안’, ‘생산자 단체 소매유통시설 구축 및 지원’, ‘수산물 판매점 및 음식점 인증제도’ 그리고 ‘수산물 직거래 시장과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천계획’ 등을 제안하였다.

## 제2절 건의사항

본 연구 대상인 5개 연구과제별로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정책과제 등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들 연구결과가 정책화되고 시책으로서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향후 정부가 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 조건불리지역 및 친환경부표지원 등 2개의 수산보전제는 예산이 확보되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기본원칙, 기준 및 대상 등 본 연구에서 확정짓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본문에 검토사항으로 정리하여 제시해 두었다. 이들 검토사항은 사업시행 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기타 수산보전제에 대한 예산확보의 노력이 요구된다. 수산보전제는 향후 주요한 수산정책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생산이라는 1차 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가공-유통-판매 등 2·3차 산업을 수산업에 접목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수행된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개발 및 현장 활용방안을 효율적으로 정책화하고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1·2·3차 산업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구성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산벤처산업 활성화 전략과 육성을 위하여 중단기 실천계획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노력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여수 엑스포와 연계하여 수산벤처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타 부처와 중복이 되지 않는 사업 중심으로 세부실천과제를 제안하였고 우선순위 및 담당부서를 명시하였다. 어업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들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조치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수산가공 및 유통 활성화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여러 주제와 세부과제를 다루고 있는데 향후 식품산업육성과 관련하여 참고자료 또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내용이 정책화로 이어지기 위한 보다 심화된 내용이 요구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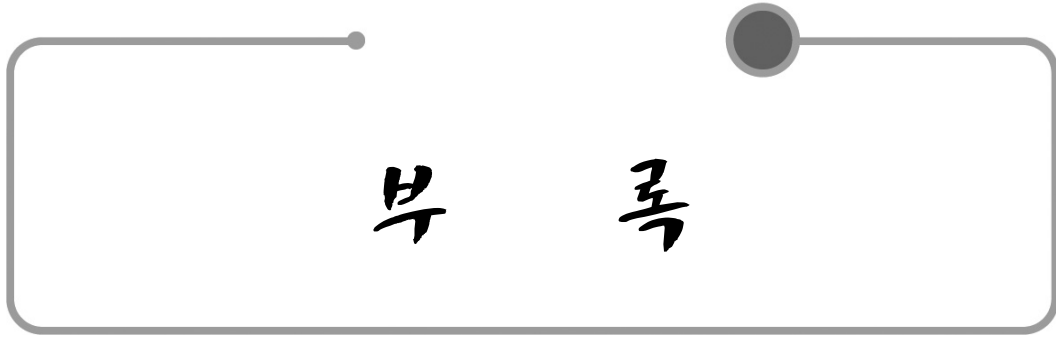
## 참고 문헌

- 고현정, 「SCM에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 김정호, 최경환, 이용호, 「고령 은퇴농의 생활안정 지원제도 도입방안」, 농촌경제연구원, 2007. 8.
- 농촌정보문화센터, 「농자천하지대박, 농자천하지대박」, 2005.
- \_\_\_\_\_, 「홍로원 사과나무엔 만원짜리 돈이 열린다」, 2006.
- 민승규, 「기상재해의 경제학」, 삼성경제연구원, 1998.
- 박대식 외, 「농촌노인의 사회안전망 실태와 개선대책」, 농촌경제연구원, 2006.
- 배광선, 주현, 송하울, 박린,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1999. 12.
- 배광선, 주현, 송하울, 박린, 최생림, 「벤처기업의 발전전략」, 산업연구원, 2000. 5.
- 송미령 외, 「농촌 지역혁신 사례」, 농촌경제연구원, 2006.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물계통판매고통계연보」, 각 연도.
- 신영태 외, 「WTO/FTA 협상이후 수산업·어촌정책방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 이규천, “환경보전농업을 위한 직접지불제”, 「농촌경제」, 제22권 제1호, 1999.
- 이명현, 「농촌지역정책에 대한 검토」, 재정포럼, 2002. 6.
- 조덕희, 「벤처산업의 성과와 과제 - 부문별 주요 논점 및 제도개선 과제」, 산업연구원, 2002. 12.

- 주현, 송하울, 박린, 「벤처기업 육성정책과 산·연 연계」, 산업연구원, 1999. 12.
- \_\_\_\_\_,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2001. 12.
- 최성애, 박상우 외, 「어촌사회 양극화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부문 사례분석을 통한 성공모형 도출」, 2005.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각 연도.
- 허덕, 임성진,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실태 분석”, 「농촌경제」, 제28권 제2호, 2005.
- GS&J인스티튜트, 「잘팔리는 농축산물 만들기 : 성공전략과 실천방안」, 2007.
- 波一積理眞, 「一次産品におけるブランド理論の本質」, 白桃書房, 2002.
- FAO, *Expert Consultation on Identifying, Assessing and Reporting on Subsidies in The Fishing Industry*, 2002. 12.
- Linder, J.C., & Cantrell, S., *Changing Business Models : Surveying the Landscape*, Institute for Strategic Change, Accenture, 2000.
- Timmers, P., “Business Models for Electronic Markets”, *Journal on Electronic Markets*, Vol. 8(2), pp. 3~8, 1998.
- Vickers, M, “Models from Mars”, *Business Week*, pp. 58~59, 4. Sep, 2000.
- <http://suhyup.chzero.com>  
<http://trade.suhyup.co.kr>









## <부록 1> 수산보전제 도상연습결과

### 1.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

#### 가. 도상연습의 개요

##### 1) 목적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사전 도상연습을 실시하였다. 본 도상연습은 2009년 사업시행 이전에 행정적인 도상연습과 DB화를 전제로 한 연구상의 도상연습으로 수산보전제에 대한 사업내용을 시군 및 대상자에게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 2) 추진방향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에 대한 도상연습은 취약지구 중 규모가 작아 전원 도상연습 참여가 가능하고 사업시행이 용이한 홍성 죽도어촌계를 대상으로 도상연습을 실시하였다.

##### 3) 도상연습 일정

계획내용	참여자	일정
◦ 도상연습 준비 관계자 회의	해수부, KMI	8월 23일
◦ 수산보전제(안) 지자체 배포 및 의견수렴	해수부, KMI	9월 7일
◦ 참가 대상자 선정 및 관계자 교육	KMI	9월 10일
◦ 도상연습 실시공고, 신청접수, 사정	해수부, 경남도, 통영시, 굴양식업자	10월 17~21일
◦ 대상자 및 보조금 지급 결정통보	통영시, 굴양식업자	10월 28일
◦ 이의 신청 검토 및 결과송부	통영시, 경남도	11월 5일
◦ 종합평가(전체 공청회)	관계자 전원	11월 20일



## 나. 도상연습의 평가

### 1) 주요 단계별 진행경과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의 각 단계별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상연습 관계자회의에서 수산경영과의 조건불리지역(안)은 수협분류평정상의 취약지구였으나 연구진의 조건불리지역(안)은 지정도서였으므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개념이 상이하여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다. 또한 예산처와의 협의과정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도상연습을 실시하여 협의과정의 변경사항이 공유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졌다.

둘째, 시군을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의 주요 해결 상황인 대상자의 범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군 담당자와의 면담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범위를 조율하였으나 신고어업까지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고어업자를 대상으로 하면 통제가 힘들다는 의견, 해녀 등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신고어업자를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셋째, 홍성군 죽도어촌계를 대상으로 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교육에서 교육시기가 주요 대하잡이철로 어업인을 모으는데 힘이 들었으며, 교육·홍보자료가 미흡하여 사업을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넷째, 어촌계에는 거주 어촌계원뿐 아니라 도시에 거주하는 비거주 어촌계원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상연습 대상지인 홍성 죽도어촌계의 경우에는 등록 어가수가 24개 어가이지만 실제 거주 어업인은 19개 어가였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어촌계 계원이 적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확인이 가능하지만 규모가 큰 어촌계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을 판단되었다.

다섯째, 어촌계원들의 대부분은 어업인과 어촌계에 주는 보조금 비율을 50 대 50으로 주기를 희망하고 있었고, 어촌계 내 신고어업자들이 주로 고령의 노인들이 많으므로 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섯째,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의 관리협약의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요구사업이 종패살포사업, 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희망하였으나 어촌계발전계획을 적도록 하는 항에 대해서는 작성의 어려움을 겪었다.

### 2) 개선 및 건의사항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의 개선 및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부문의 직불제가 농어민에게 잘 홍보되어 있는 반면에, 유사한 성격의 수산보전제는 거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수산보전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의 지원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어촌계 명부상에 등록된 어가수와 실제 어업인의 수가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한 예로 부적격 대상자가 보조금 수행 시에는 어촌계장과 이장이 이러한 경우에 공동책임을 지도록 하고, 당해 어촌계에 지급된 보조금 전체를 환수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화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는 취약지구 어업인 소득안정의 목적이 있으나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의 보조금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므로 이로 소득안정을 달성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으므로 개인의 보조금 비율을 높이는 것 보다는 오히려 마을공동사업의 보조금 비율을 높여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을 개발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공동체와 개인의 비율을 7 대 3으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 관리협약에서 어촌계 발전계획서의 작성이 어촌계원들이 작성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빈칸으로 홍성군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어촌계 발전계획은 홍성군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 부분은 삭제하고 수산보전제 사업신청서, 어촌계 구성원현황, 보조금수령자명단만을 제출하게 할 필요가 있다.

## 2. 친환경부표 수산보전제

### 가. 도상연습의 개요

#### 1) 목적

2009년부터 도입을 추진 중인 「친환경부표 수산보전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사전 도상연습을 실시하였다. 본 도상연습은 2008년 사업시행 이전에 행정적인 도상연습을 전제로 한 연구상의 도상연습으로 수산보전제에 대한 사업내용을 시군 및 대상자에게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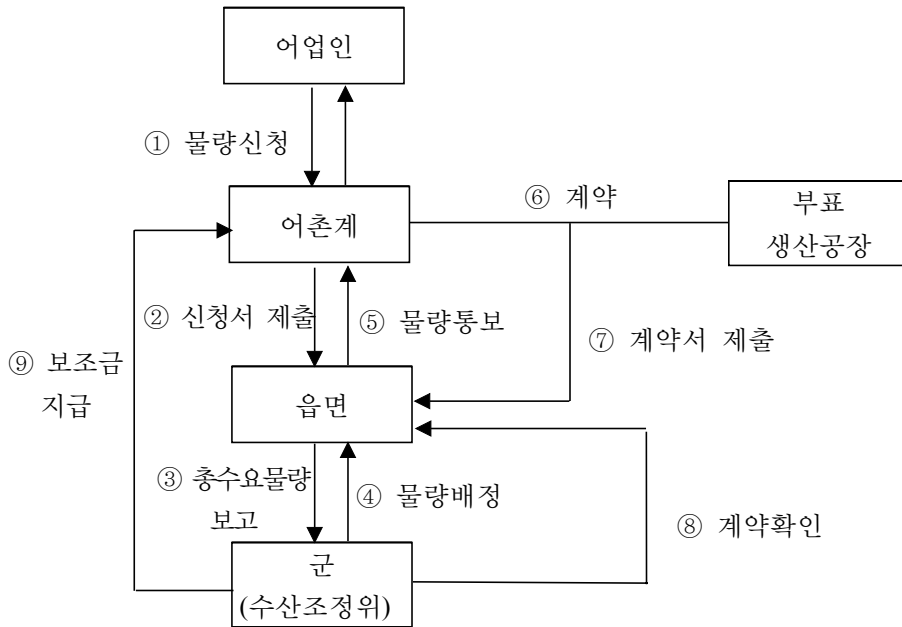
## 2) 추진방향

친환경부표 수산보전제에 대한 도상연습은 최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양식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굴양식업자가 가장 많은 통영시의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도상연습을 실시하였다.

## 3) 도상연습 일정

계획내용	참여자	일정
◦ 도상연습 준비 관계자 회의	해수부, KMI	8월 23일
◦ 수산보전제(안) 지자체 배포 및 의견수렴	해수부, KMI	9월 7일
◦ 참가 대상자 선정 및 관계자 교육	KMI	9월 10일
◦ 도상연습 실시공고, 신청접수, 사정	해수부, 경남도, 통영시, 굴양식업자	10월 17~21일
◦ 대상자 및 보조금 지급 결정통보	통영시, 굴양식업자	10월 28일
◦ 이의 신청 검토 및 결과송부	통영시, 경남도	11월 5일
◦ 종합평가(전체 공청회)	관계자 전원	11월 20일

#### 4) 사업시스템



#### 나. 도상연습의 평가

##### 1) 주요 단계별 진행경과

친환경부표 수산보전제의 각 단계별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상연습 준비관계자 회의에서 현재 수산보전제를 추진하는 부서(통상협력팀)와 실제 시행부서(양식개발과)의 2원화로 친환경부표 수산보전제의 사업시행과 관련한 사업 시행방법과 예산상의 문제 등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추진되어 해양수산부 내부에서의 협의과정이 길었다.

둘째, 수산보전제(안) 지자체 배포 및 의견수렴결과 지자체에서는 친환경부표에 대한 개념을 스티로폼이 아닌 개량부자로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지방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량부자보급사업과의 정책상 중복성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개량부자에 대한 지원을 받더라도 기존 부표와의 가격차이가 커서 비용부담에 따라 개량부자 사용이 힘들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서 중복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셋째, 통영의 굴수하식수협을 중심으로 한 어업인, 스티로폼 부자 생산업체, 경상남도 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도상연습결과 최근 굴양식 어업인들의 경우 고밀도 스티로폼





사용자가 많아서 기존 사용자가 고밀도 스티로폼을 사용할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밀도 스티로폼의 기준을 법적인 기준보다 높여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스티로폼 제작업체도 도상연습에 참여하여 스티로폼 제작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넷째,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행정적인 부문은 개량부자 지원사업과 유사하여 경상남도 및 시군에서 사업시행의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최근 개량부자사업의 경우 부표 생산공장에 바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편리하여 어촌계에 지급하기 보다는 생산공장에 바로 지급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 2) 개선 및 건의사항

친환경부표 수산보전제의 도상연습 결과 단계별 유형화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부표 수산보전제는 양식개발과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통상협력팀에서 조속히 사업을 이관시켜서 2009년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2012년 이후의 친환경부표수산보전제 사업(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친환경부표 수산보전제는 저밀도 스티로폼 부표를 고밀도 스티로폼 부표로 전환을 위한 사업으로 개량부자 사업과는 유사하지만 동일한 사업은 아니다. 따라서 저밀도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2011년까지는 두 제도를 병행해서 실시하여 친환경부표 사용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그 이후에는 제도를 통합확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굴수하식 수협을 중심으로 한 어업인 면담에서 최근 많은 어업인들이 고밀도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밀도 스티로폼의 규격을 상향조정해서 지원규모를 크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규격의 상향조정은 2012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넷째, 보조금의 지급을 부표생산공장에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어업인 소득안정의 목적으로 두고 있는 소득보전제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어업인에게 직접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어촌계 발전계획서

### □ 어촌계 발전 계획

#### ○ 발전목표 설정

- 목표설정 이유
- 어촌계내 지역특화자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
- 시·군 발전계획 등 관련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 마을 주민 전체의 참여를 통해 작성

#### ○ 향후 5년간 추진계획

- 발전목표를 토대로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작성
- 소득증대를 위한 어촌계 경관 조성 및 환경개선 노력, 주민참여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 어촌계기금 활용 계획

- 어촌계원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기금이 조성될 경우 투자계획을 작성

#### ○ 어촌계 발전계획 작성 경과

- 계획 작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활동(마을회의 개최 등)을 상세히 서술

#### ※ 작성요령

- 어촌계발전계획은 마을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이 직접 작성
- 필요에 따라 사진 등을 첨부하는 등 상세히 설명
- 계획서 양식은 본 시행지침에 주어진 범위내에서 작성하되, 분량은 A4용지 10매 이내 (사진 등은 별도)





##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 관리협약

어촌계명	도 시·군 읍·면 어촌계
어촌계협약 참가자	총 명 (어가수 )
면허면적	총 ha

(어 촌 계 협 약 일 :       년       월       일  
 협 약 변 경 일 :       년       월       일  
 협 약 변 경 일 :       년       월       일)

##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 관리 협약

○○ 시장·군수

○○○ 어촌계

조건불리지역 어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수산업을 유지케 함으로써 어촌 지역 사회를 유지하고 마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건불리지역수산보전제”를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 어촌계)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한 :       년       월       일부터 사업종료시까지

## 2. 약정내용

제1조(구성원의 자격 및 어촌계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을”의 구성원은 조건불리지역직 접지불을 신청한 어업인으로 한다.

② 어촌계대표는 본 어촌계협약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 및 회계담당자를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③ 어촌계대표는 본 어촌계를 대표하며, 조건불리지역수산보전제와 관련하여 신청, 이행여부의 확인, 어촌계공동기금관리 등 마을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조건불리지역수산보전제와 관련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④ 운영위원은 어촌계공동기금 관리, 어촌계공동사업 추진 및 각종 어촌계 대표 확인서 등 조건불리지역수산보전제와 관련하여 어촌계 대표 및 “갑”의 업무에 협조한다.

⑤ 회계담당자는 어촌계 공동기금의 입출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며,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제2조(책임과 의무) ① “을”의 각 구성원은 “갑”이 제시하는 어촌계 관리,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관리,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실천 등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 1. 어촌계공동기금 조성(필수 의무)

가. 어촌계 구성원은 보조금으로 어촌계공동기금을 조성한다.

나. 조성된 어촌계공동기금은 공동수익사업, 환경개선사업, 어업 및 어업외 소득 증대 기반사업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다. 기타 어촌계공동기금과 관련된 사항은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 2. 어촌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실천(선택적 의무)

가. 어촌계 구성원은 어촌계원의 의사에 따라 마을활성화 실천과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을 어촌계 발전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실천한다.



- ② 어촌계 대표는 구성원 개개인이 제①항 1에서 2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지도하고, 이행표를 작성하여 매년도 9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 ③ “을”의 구성원은 마을대표와 합심하여 제①항에서 규정한 의무 이행사항을 준수한다.
- ④ 제①항에서 규정한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조건불리지역수산보전제 시행지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갑”은 “을” 또는 “을”의 구성원에게 보조금 지급중단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자격 상실) “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을”의 대표를 경유하여 해당 구성원에게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을”에게 구성원의 자격 상실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을”은 “갑”의 요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시킨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① “갑”은 “을” 및 “을”의 각 구성원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것을 확인하여 조건불리지역수산보조금을 지급한다.

- ② “갑”은 조건불리지역수산보전제 시행지침에 근거한 지급기준에 따라 “을”의 각 구성원이 신고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조건불리지역수산보조금을 지급한다.
- ③ 어촌계공동기금은 마을협약을 통해 합의된 금액을 시장·군수가 공제하여 마을공동기금계좌에 직접 입금한다.

제5조(제한 사항) “을”의 각 구성원은 제3조 규정에 의거 자격이 상실되거나 제2조에 규정된 의무이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갑”으로부터 조건불리지역수산보전제 시행지침에서 정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제6조(특약사항) 조건불리지역수산보전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과 본 마을협약 제1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갑”과 “을”사이 또는 “을”구성원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장·군수 :	인
“을” 어촌계대표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 200 년도 어촌계협약 합의내용

### 1. 어촌계의 공동 목표(미래상)

가. 어촌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장기목표)

○

나. 장기목표실현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사업기간 내)

○

### 2. 어촌계 운영위원회 명부

직 책	성 명
어촌계대표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회계담당	

### 3. 어촌계 공동기금 조성 및 사용 용도

가. 조성액 : 보조금 수령액

나. 사용용도

구체적 사업내용 (어촌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계 획	
	추진 기간	예 산
		원
		원
		원







## 실거주자 확인서

### 〈실거주자 확인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실거주지	거주형태	주민등록 미전입 사유

\* 거주형태란은 자택, 전세, 월세 등을 표시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 어촌계대표(읍·면장) (인)  
           어촌계운영위원 (인)  
           어촌계운영위원 (인)  
           어촌계운영위원 (인)

##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 통지서

○ 200 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1. 어촌계 현황

어촌계명		대표자 성명	
------	--	--------	--

## 2. 선정자(변경)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조금 예상액(원)
합 계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대상자별 총지급면적을 기재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어촌계장 귀 하



## <부록 3> 수산업 · 어촌 비즈니스모델 우수사례의 요약

### 1) 중앙씨푸드(주)

기업 및 대표자 프로필	주요상품	생굴, 냉동굴, 굴가공품		
	주 소	경남 거제시 둔덕면 어구리 142		
	기업형태	일반법인	설 립 일	1998-03-01
	전 화	055-633-5104	팩 스	055-633-5086
	종업원수	50명	홈페이지	www.sea-central.com
	대표자명	장 석	생년월일	1957-08-19(남)
	종사기간	3년 9월	출신학교	서울대 국문학
	이 메 일	j.jchoh@sea-central.com	주요경력	1979. 2월부터 중앙수산(주) 이 사
연혁 및 경과	1969.06 - 중앙수산 주식회사 설립 1990.11 - 제27회 무역의 날 500만불 수출의 탑 및 대통령표창 수상 1992.03 - 폐수 정화처리시설 준공 (일 300M/T 처리) 1995.09 - 굴 박신공장 신축 준공 1998.03 - 국내판매전문 자매회사 중앙씨푸드(주) 설립 2001.11 - 냉동굴제품 산업자원부주관 <세계일류화상품>선정 (산자부2001-179호) 2004.02 - 한국능률협회인증원(KMAR)에서 품질경영시스템(ISO9001)인증 획득 - 한국능률협회인증원(KMAR)에서 품질경영시스템(ISO14001)인증 획득 2004.02 - 중앙씨푸드 웹사이트 개편 오픈 2004.03 - 온라인 쇼핑몰 싱싱샵 오픈			
재무적특성 (백만원)	자본규모	총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648	3,349	13,564	97
사업성공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어장 보유 및 생산자 지원</li> <li>•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및 환경경영시스템 인증</li> <li>• 굴 브랜드 ‘숨’을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li> <li>• 소비자 직거래를 통한 매출비중 확대</li> </ul>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랜드 차별형 비즈니스 모델</li> </ul>			





## 2) 참바다영어조합법인

기업 및 대표자 프로필	주요상품	고등어, 새우, 장어 외		
	주 소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세곡리 525-1번지		
	기업형태	일반법인	설 립 일	1997-01
	전 화	063-564-0880	팩 스	063-564-8889
	종업원수	106 명	홈페이지	http://www.chambada.com
	대표자명	김종학	생년월일	1958-11-09(남)
	중사기간	1년 7개월	출신학교	조선대 기계학
	이 메 일	-	주요경력	
연혁 및 경과	<p>1997. 1 - 후포수산물가공공장 준공</p> <p>1999. 1 - 현대택배 참바다영업소 개설</p> <p>2002. 1 - 참바다영어조합법인 상호변경</p> <p>2002. 1 - ISO9001인증 획득</p> <p>2003. 1 - HACCP인증 획득</p> <p>2005. 1 - 2005년을 이끌 기업선정, 신지식인 선정</p> <p>2007. 3 - 특허 획득(바나나잎을 이용한 염장식품 및 제조방법)</p> <p>2007. 4 - 식약청 HACCP 지정업소</p> <p>2007. 5 - 부산사무실(암남동) 및 베트남(호치민) 사무실 개소</p>			
재무적특성 (백만원)	자본규모	총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1,571	5,301	12,621	159
사업성공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쇼핑 특화(농수산 홈쇼핑에서 최우수업체상 및 대상수상)</li> <li>• 다수의 특허보유(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개발)</li> <li>• 노동집약적 제품 생산위해 베트남, 중국에 OEM</li> <li>• ISO9001 인증, HACCP 국제인증, 식약청 HACCP 적용</li> <li>• 씨푸드 사업으로 확대</li> </ul>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류혁신 및 네트워크형 비즈니스 모델 (택배영업소 직영을 통한 고객만족 극대화)</li> </ul>			

3) 광천수산영어조합법인

기업 및 대표자 프로필	주요상품	젓갈, 마른멸치, 조미 김		
	주 소	충남 보령시 남곡동 899-2		
	기업형태	일반법인	설 립 일	2001-02
	전 화	041-934-7667	팩 스	041-931-6657
	종업원수	7 명	홈페이지	http://www.kwangchen.com
	대표자명	전성기	생년월일	1959-07-29(남)
	중사기간	7년 2월	출신학교	안면고등학교
	이 메 일	jsk7835@hanmail.net	주요경력	1997~2001 광천수산 대표
연혁 및 경과	<p>1984. - 까나리 액젓절임 가공시작(광천수산)</p> <p>1998. 4 - 한성기업(주) 새우, 조개젓 원재료 납품</p> <p>2001. 2. - 광천수산영어조합법인 설립 (증좌:105,000,000)</p> <p>2001. 7. - 우체국 쇼핑센터 입점</p> <p>2002. 3. - 해양수산부 바다로21 쇼핑 젓갈업체 선정</p> <p>2004. 4. - 농협중앙회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납품</p> <p>2004. 4. - 해양수산부 efishvil 쇼핑센터 입점</p> <p>2006. - 해양수산부 신지식인 선정</p>			
재무적특성 (백만원)	자본규모	총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500			
사업성공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재료 직접조달, 엄선구입</li> <li>• 품질경영인증, 각종 품질인증</li> <li>• 다양한 판매경로(온오프라인판매, 택배판매)</li> </ul>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 및 판매 통합협 비즈니스 모델 (원재료 조달 능력, 멸치 건조기술, 다양한 판매 경로의 결합)</li> </ul>			





## 4) 고창영어조합법인

기업 및 대표자 프로필	주요상품	풍천장어구이(간장, 고추장), 복분자숙성장어구이, 장어뼈튀김, 장어증탕 등		
	주 소	전북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996번지		
	기업형태	영어조합법인	설 립 일	1997-01
	전 화	063-561-2244	팩 스	063-561-1530
	종업원수	13 명	홈페이지	http://www.poongchun.co.kr
	대표자명	이재정	생년월일	1957-12-03(남)
	종사기간	9년 11월	출신학교	-
	이 메 일	webmaster@poongchun.co.kr	주요경력	9년 11개월
연혁 및 경과	<p>1984. 3 - 성내양식장 개시 운영</p> <p>1997. 1 - 고창영어조합법인 설립</p> <p>1997. 5 - 뱀장어 양식장 자동화 시설 도입</p> <p>2000. 9 - 대표이사 신지식인 선정</p> <p>2003. 2 -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획득</p> <p>2004. 3 - 특허획득(장어구이 제조방법 및 그 장치)</p> <p>2004. 12 - 장어뼈 스펙(튀김) 개발(전북대 연구용역)</p> <p>2005. 9 - ISO 14001인증 획득</p> <p>2007. 5 - 대한민국 철탑산업훈장 수훈</p>			
재무적특성 (백만원)	자본규모	총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943	2,477	2,957	87
사업성공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협력을 통한 끊임없는 연구개발</li> <li>• 생산·가공·유통·판매 시스템의 일원화</li> <li>• 셀프식당을 운영하여 오프라인으로 제품판매</li> </ul>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산물 활용형 비즈니스 모델</li> </ul>			



## 5) 일성수산

기업 및 대표자 프로필	주요상품	과메기, 명태, 가자미, 학꽂치		
	주 소	경북 영덕군 강구면강구리 67-6		
	기업형태	주식회사	설 립 일	1998-08
	전 화	054-733-0600	팩 스	054-733-8010
	종업원수	35 명	홈페이지	<a href="http://www.ganngu.net">http://www.ganngu.net</a>
	대표자명	서원영	생년월일	1965-02-08(남)
	종사기간	14년 3월	출신학교	안동대 경영
	이 메 일	webmaster@ganngu.net	주요경력	-
연혁 및 경과	<p>1988. 8 - 일성수산 설립</p> <p>1997.3 - 영덕군수 추천상품 인증</p> <p>1998.1 - 우체국 통신판매 등록(과메기, 오징어, 양미리)</p> <p>2002.5 - 영덕군 수산특산물생산영어법인조합 설립</p> <p>2003.9 - 과메기 냉,건 훈연법으로 특수 가공 제품생산</p> <p>2004.5 - 일성수산·상사 및 건어물 대학교 통합</p> <p>2004.9 - 키토산 과메기 생산시작</p> <p>2007.6 - 이노비즈 기업인증, ISO 9001 : 2000인증, KSA 9001 : 2001인증</p> <p>2007.7 - 벤처기업 인증</p>			
재무적특성 (백만원)	자본규모	총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1,800	2,600		
사업성공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어장 보유 및 생산자 지원</li> <li>•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및 환경경영시스템 인증</li> <li>• 굴 브랜드 ‘숨’을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li> <li>• 소비자 직거래를 통한 매출비중 확대</li> </ul>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산물 활용형 비즈니스 모델</li> </ul>			





## 6) 유명수산물영어조합법인

기업 및 대표자 프로필	주요상품	갈아만든 고추장 굴비		
	주 소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1149-4		
	기업형태	영어조합법인	설 립 일	2005-06
	전 화		팩 스	
	종업원수	6 명	홈페이지	http://www.gulbimoa.co.kr
	대표자명	배현선	생년월일	
	종사기간	년 월	출신학교	광주대 마케팅과 박사
	이 메 일		주요경력	-
연혁 및 경과	1996.06 - 유명수산물 설립 2001.05 - 갈아만든 고추장굴비 제조방법 특허등록 (특허제0296790호) 2003.03 - HACCP 인증 (k1077.03) 2003.11 - 미국 수출 시작 2005.01 - 전라남도 공동브랜드인 '남도미향' 지정업체 선정 2005.08 - ISO9001 인증획득			
재무적특성 (백만원)	자본규모	총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57	90	396	4
사업성공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추장굴비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생산비 절감</li> <li>제조기간을 단축하고 대량생산을 가능케 함</li> <li>소비자직거래 위주의 판매전략</li> </ul>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특산물 활용형 비즈니스 모델</li> </ul>			

7) 아침가리

기업 및 대표자 프로필	주요상품	김, 멸치		
	주 소	전남 진도군 고군면 향동리 321-5		
	기업형태	주식회사	설 립 일	1994-04
	전 화	061-542-8933	팩 스	061-542-8936
	종업원수	95명	홈페이지	www.sanjiro.co.kr
	대표자명	김영수	생년월일	-
	종사기간	-	출신학교	서울대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이 메 일	-	주요경력	-
연혁 및 경과	1994 -주식회사 아침가리 설립.(동산농어민유통 승계 통합)			
	1996 -직영바다목장 멸치류, 미역류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 품질인증 획득			
	2002 -해양수산물 지정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획득. - (해양수산물 전통제 2002-53호) -중소기업진흥공단 선정 이전기술 개발사업 수행기업(연구과제:천연조미료 가공)			
	2003 -ISO9001:2000(국제표준화기구)시스템 인증(인증번호:K/Q00138) -한국수산물품질인증대전 대상 수상 : 조미김부문 -중소기업청 선정 Inno-Biz기업 인증 획득(제4041-0220호)			
	2004 -제2회 광주·전남 중소기업대상 수상(경영혁신부문)			
	2005 -2005년도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1순위 사업 선정			
	2006 -(주)GS홈쇼핑(GSshop.co.kr) 2006년 1/4분기 서비스우수업체 선정(식품부문 1위)			
재무적특성 (백만원)	자본규모	총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1,200	6,500	12,000	410
사업성공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영어장과 물류혁신으로 생산비용 절감</li> <li>• 자체식품 연구소 보유</li> <li>• 도소매 직매장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판매 다각화</li> </ul>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 및 판매 통합형 (낭장망 5틀과 4척의 어선과 대형멸치건조기를 갖추어 싱싱한 원재료를 조달, 온라인 및 대형할인점 직송 체제 구축)</li> </ul>			





## 8) 곰소젓갈협회

기업 및 대표자 프로필	주요상품	까나리액젓, 멸치액젓 및 각종 젓갈류		
	주 소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곰소		
	회 원 수	45명	설 립 일	2005년
	대표자명	이 영 주	연 락 처	016-609-7852
연혁 및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0년경 14여가의 주부 젓갈 모임에서 출발</li> <li>• 2005 영어조합법인 등록(45명 회원 포함 총 57개 젓갈점포 개장)</li> </ul>			
사업성공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적인 수작업에 의한 젓갈생산으로 젓갈제품 다양화</li> <li>• 관광객 대상 판매전략(70%)</li> <li>• 협회차원의 위생관리 등 공동대응 능력 갖추</li> </ul>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브랜드형 비즈니스 모델(어촌자원을 이용한 시장 특화)</li> </ul>			

## 9) 디노빌영어조합법인

기업 및 대표자 프로필	주요상품	철갑상어		
	주 소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오천리 280-1		
	회원수	3 명	설 립 일	2003년 12월 1일
	대표자명	박 철 홍	연 락 처	
연혁 및 경과	<p>2002. 05. 민자지원 시작</p> <p>2003. 12. 2003년 12월 1일에 법인을 설립 (민간 20억원, 국고 5억원 투자)</p>			
사업성공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 양식기술의 도입</li> </ul>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품종신기술도입형(희귀품종의 대중화)</li> </ul>			

10) 미라자율관리공동체

기업 및 대표자 프로필	주요상품	전복		
	주 소	전남 완도군 노화읍 미라리		
	회 원 수	76 가구	설 립 일	1997년
	대표자명	박 정 대	연 락 처	061-553-5962
연혁 및 경과	<p>2002. · 전복양식 자율관리 공동체 구성(91어가 참여) - 어촌계, 청년회, 후계자회를 통합하고 조직을 일원화</p> <p>2003. · 자율관리 공동체 주관으로 3억원 자체기금 조성 장정리사업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 개인별 어장분배 작업완료</p> <p>2003. · 자율관리공동체 지원금으로 2억원 받음 - 마을어장내 전복 중간패 10만미 살포</p> <p>2005. · 자율관리공동체로 선정되어 추가 지원금 3억원 받음 - 전복 공동판매 기반시설 완료(물양장, 직판장, 크레인, 선별기)</p> <p>2005. · 전국 최초로 공동생산 및 공동판매 실시 - 전복 직판장 운영 및 규격 상품 출하</p>			
사업성공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로 전복 해상가두리 양식 성공</li> <li>· 자율관리공동체를 통한 어장정리사업으로 효율적 어장이용</li> <li>· 견고한 공동판매 시스템 구축</li> <li>· 효율적인 도난감시시스템 마련</li> </ul>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판매형(어촌자원을 이용한 공동 판매)</li> </ul>			





11) 물치어촌계

기업 및 대표자 프로필	주요상품	관광						
	주 소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회 원 수	36 명	설 립 일					
	대표자명	이 봉 섭	연 락 처		019-39-5018			
사업추진 내역	1998년 해양수산부의 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							
	지원 년도	사업 기간	사업비(백만원)				사업집행주체/ 사업자	주요사업내용
			계	국비	도비	군비		
'98	'99. 1 - '99. 7	1,172	440	396	50	286	양양군/ 물치어촌계	1층 : 기계실, 창고, 오수정화조 2층 : 일반음식점 3층 : 일반음식점
사업 성공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근성, 경관성, 관광여건 등 우수한 입지여건</li> <li>• 직접 잡은 활어를 회센터에서 직접 판매</li> <li>• 남자는 어선어업, 부녀자는 횃집운영을 하는 등 부부중심의 운영으로 인건비 최소화</li> <li>• 활어장내 질서 확립법 등 강력한 내부규칙</li> <li>• 끊임없는 재투자</li> </ul>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연계지역사업화형(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한 자원연계 판매사업)</li> </ul>							

## 12) 정자어촌계

기업 및 대표자 프로필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회 원 수	어촌계원수 : 현재 150명 (활어직판장 참여 : 90여명)	설 립 일	
	대표자명	이 상 길	연 락 처	052-295-9201 011-850-9201
연혁 및 경과	1990.	· 국고 182.8억원의 사업비 투입하여 방파제공사와 매립공사 - 주요항만공사(142.5억원)와 신설 매립지에 호안, 물량장 및 선양장 등의 부대공사(40.3억원)가 완료되어 국가어항으로 면모를 갖추.		
	1992.	· 어촌계 자비 0.38억원을 투입하여 신축 물량장에 텐트형 건물 - (200평)의 활어직판장을 신축하여 지역 어민 32명(비계원 15명 포함)이 운영하기 시작(비계원 15명도 추후에 전원 어촌계에 가입)		
	1997.	· 어촌종합개발사업비(2.7억원)와 어촌계 자비(0.3억원)를 투입하여 - 철골조건물(912m <sup>2</sup> )을 신축하여 36개 코너에 72명의 어촌계원이 활어직판장을 운영, 매 2년마다 재계약하여 입주자 엄선		
	2007.	· 현재 35개 코너 (85계원) 운영중이며 제1회 강동수산물 축제 개최		
사업성공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도시 주변이라는 입지적 여건</li> <li>· 활어직판장의 관리자 상주로 철저한 직판장 관리</li> <li>· 출혈경쟁을 원천적으로 방지</li> <li>· 지역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유대관계 유지(무료 주차장 운영가능)</li> </ul>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판매형(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한 자원연계 판매사업, 협동경영)</li> </ul>			





## 13) 선감어촌체험마을

기업 및 대표자 프로필	주요품목	체험마을 및 패류 양식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회 원 수	178명	설 립 일	2001년		
	대표자명	신 상 철	연 락 처	016-9534-8865		
연혁 및 사업추진 내역	1989.	· 1989년 시화방조제 건설이후 수도권의 주요 관광지로 각광 - 마을 주변에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경기도립직업훈련원, 경기도 영 어마을, 어촌민속전시관, 누에섬 전망대 건립				
	2001.	·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던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유치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보조		자부담	민간투 자	합계
	국비	지방비				
2002 ~ 2004	250	676	-		926	· 종합안내소 · 갯벌체험장 진입로 · 편의시설 (파고라2개, 원두막 3·개), 주차시설 400평) · 종합안내판 5개
사업성공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시장을 맞추어 체험장 조성</li> <li>· 적극적인 홍보전략 마련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li> <li>· 마을주민들의 단합과 강력하고 헌신적인 운영위원회 구성</li> <li>· 마을의 젊은 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3년간 수익을 재투자함</li> </ul>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연계배후소비지 활용형 비즈니스 모델 (차별화된 어촌체험마을 사업 및 공동 어업 외 소득 창출)</li> </ul>					



## 14) 저도자율공동체

기업 및 대표자 프로필	주요상품	바지락		
	주 소	경남 사천시 마도동		
	회 원 수	32 명	설 립 일	2001년
	대표자명	김재봉	연 락 처	055-835-2164
연혁 및 경과	2001. 07 자율관리공동체 구성			
사업성공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들의 단합과 의지로 관리체계의 확립</li> <li>• 어촌마을 중에서는 낚시 관광객을 대상으로 선점적 시장개발을 통해 바다낚시 마을로 특화</li> <li>• 마을 자부담을 투입하고 가급적 마을 전체 운영비를 투입함</li> </ul>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연계지역사업화형(어촌자원을 활용한 공동생산)</li> </ul>			

## 15) 송계어촌계

기업 및 대표자 프로필	주요상품	체험마을 및 김		
	주 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회 원 수	99 명	설 립 일	2004년
	대표자명	박상범	연 락 처	061-454-0619
사업추진 내역	2004. 어촌체험마을기반조성 사업 착수			
	사 업 비 (백만원)			주요 사업내용
	보 조		자부담 합 계	
	국비	지방비		
1,098	552	23	1,673	어촌체험마을조성, 갯벌체험로, 해변산책로, 산책로, 관찰데크, 휴게공간, 주차시설 등
사업성공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어촌계 주민과 협력관계 마련 (비어촌계 주민을 수익프로그램에 참여시킴)</li> <li>• 혁신인력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사무장 급여를 지급함</li> <li>• 기획팀, 선박운영팀, 체험운영팀 등 조직을 구성하여 체험프로그램 지원</li> </ul>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연계지역사업화형 (차별화된 어촌체험마을 사업 및 공동 어업 외 소득 창출)</li> </ul>			



## <부록 4>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매뉴얼

### 1. 소규모자본 오톨경영형 매뉴얼(M1 유형)

#### ① 신청자 정보

성명		<input type="checkbox"/> 초기투자 가능 자본금 : 5천만원 미만(총 _____ 원)
핸드폰		<input type="checkbox"/> 희망하는 경영형태 : (오톨직접경영, 기타 )
주소		<input type="checkbox"/> 사업 목표 : (생계, 성장, 지역사회 기여)
e-mail		<input type="checkbox"/> 신청자의 경력 : (분야:_____, 직책:_____, 기간:___년)

#### ② 희망사업 분야 정보 (다음 질문에 대해 0~10점의 점수를 기재하시오)

희망사업 분야 : 취급 품목(\_\_\_\_\_)

희망사업 분야에 대한 평가

- ▶ 국내외 경쟁의 정도(혹은 신제품 여부) ( \_\_\_\_ 점)
  - 희망하시는 사업 분야는 국내 시장 및 해외 시장에서 경쟁 상품 및 경쟁업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쟁이 전혀 없는 신제품이면 10점을, 경쟁이 매우 치열하면 0점을 기재하시오.)
- ▶ 관련 기술 혹은 노하우의 보유 ( \_\_\_\_ 점)
  - 귀하는 희망하시는 사업과 관련된 기술이나 혹은 경영 노하우 등을 이미 보유하고 계십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술·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면 10점을, 전혀 없으면 0점을 기재하시오)
- ▶ 판매처 혹은 판매 경로의 확보 ( \_\_\_\_ 점)
  - 희망하시는 취급 품목의 판매처 혹은 판매경로를 이미 확보하고 있거나, 혹은 확보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까? (이미 확보하고 있으면 10점,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0점을 기재하시오)
- ▶ 취급품목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투입요소의 확보 가능성 ( \_\_\_\_ 점)
  - 희망하시는 품목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원재료 혹은 반제품의 조달은 용이합니까?
- ▶ 희망하시는 사업 분야의 경영위험은 얼마나 심각하다고 예상하십니까? ( \_\_\_\_ 점)
  - 경영위험이 거의 없을 경우 10점, 매우 위험이 높을 경우 0점을 기재하시오 )

▶ 총점 (총 \_\_\_\_\_ 점)

#### ③ 추천하는 비즈니스 모델

- ▶ 다음의 추진 모델을 참조하시되, 세부적으로는 관련 전문 컨설팅기관과 협의 하십시오.
- ☞ 지역특산물 활용형 비즈니스 모델(FS-P/O)

## ④ 사업화를 위한 준비 사항

## □ 창업 자세의 재확인

- ▶ 창업가는 모든 창업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 주체이다. 따라서 창업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영이념을 설정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인지, 최악의 상황에서도 모든 개인적 역량을 투입할 만한 각오가 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의미있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 □ 사업 아이템의 선정

- ▶ 창업을 마음 먹었을 때 잠정적으로 생각해둔 사업 아이템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화 전략 마련 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 창업환경과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 시대의 흐름과 자신에게 맞는 업종 혹은 사업아이템을 찾아내야 한다. 성공적인 사업아이템 혹은 업종 선정을 위해서는 우선 시장조사를 통해 시장규모를 예상하고 주요 경쟁자 및 창업 시 자신의 시장점유율과 예상 매출액 등을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출하도록 한다.
- ▶ 사업아이템 혹은 업종의 선정 시 시장성과 수익성 등의 기준 이외에도 기술적으로 생산 혹은 조달 가능한지, 자금 조달능력의 범위 내에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 인허가 관련 사항의 점검

- ▶ 누구나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필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창업 시 이와 관련된 인허가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하여 창업과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 □ 사업계획서의 수립

- ▶ 선정된 사업아이템의 생산 및 판매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마련해야 한다.
  - 사업계획서(Business Plan)에 포함시킬 주요 내용 : 산업, 기업 및 제품 / 마케팅 계획 / 시장조사 및 분석 / 설계 및 개발계획 / 사업채산성분석 / 공장입지 및 생산계획 / 경영팀 구성 및 운영계획 / 재무계획 / 특수사항 및 위험도 / 전반적 사업추진 일정

## □ 사업자금의 마련

-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산출되는 소요 자금의 규모를 확인하고, 이중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 하는 부분과 대출 등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부분 등을 사전에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자금 조달계획을 마련하고 일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 □ 유능한 인력 등 확보

- ▶ 중·소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중요한 기능에 대해 전문성이나 경험이 많은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여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성공적인 사업 추진 전략

#### □ 사업의 비전(Vision) 수립

##### ▶ 기업의 목적과 사명 등 큰 그림 확정

- 기업가치 또는 경영이념(행동지침), 사업목표의 설정(현실적 목표)

#### □ 목표 고객의 선정

##### ▶ 목표로 삼는 고객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시장의 매력도를 비교 평가하라 !

☞ 지역특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 계층, 연령계층 등에 대해 세분화하고, 이들 세부 계층 고객의 소비행태를 항상 주시하라.

##### ▶ 자사의 목표와 자원이 이들 목표 고객을 대상으로 현실적으로 판매 가능한가?

☞ 자사 지역특산물의 고객 접근성 확보 수단을 검토하라.

#### □ 생산 및 구매전략

##### ▶ 생산입지를 결정하는 방법

☞ 해당 지역특산물의 특허 및 등록이 가능한 지역, 원료 조달 등이 유리한 입지를 고려하라.

##### ▶ 시설설치 및 생산원가 계산

##### ▶ 원재료 구매 전략 수립

☞ 특히 「② 희망 사업 분야정보」의 투입요소 확보가능성 점수가 낮은 신청자들은 유의해서 생산 및 구매전략을 수립해야 함

#### □ 핵심 성공요소의 선정 및 집중

##### ▶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핵심요소를 찾아라.

☞ 귀하의 비즈니스모델 유형, 「② 희망 사업 분야정보」에 기재된 각 항목별 평가점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성공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정하여 집중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핵심 성공요소의 사례 : 특허 등 신기술, 인재(기술자), 원재료 확보, 가격전략, 비용절감, 품질관리(표준화 등), 상품차별화, 시설보수 및 유지, (우수)고객 확보, 입지 및 접근성, 사업자간의 경쟁우위, 자금조달 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으로 선정

☞ 지역특산물 활용형 비즈니스 모델(FS-P/O)

→ 특허 등 신기술, 원재료 확보, 품질관리, 상품차별화 등

#### □ 핵심 요소의 전략화 및 통제 시스템 구축

##### ▶ 핵심 요소의 전략화·집중화

##### ▶ 핵심 요소의 개발, 추진, 평가, 통제 등의 시스템 구축

##### ▶ 핵심요소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

#### □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의 설계 및 구성

##### ▶ 중소기업 규모에 적합한 조직 운영 방안 수립

- 사람·직위 중심이 아닌 일 중심 조직
- 팀(Team)의 자율성과 팀 리더십(Leadership)으로 창의성 유도
- ▶ 전사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Program)
  - 인재 육성, 소요인력 산출 및 업무절차 적립
- ▶ 시장 변화·위험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구축
  
- 판매 촉진 전략
  - ▶ 판매촉진의 목표를 구체화하라
    - 기존 시장 확대, 고객로열티 제고, 신규시장의 확보 등
  - ▶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에 따라 판매촉진 전략을 달리하라
    - ☞ 지역특산물 활용형 (FS-P/O)
      - 기존 시장 확대, 고객로열티 제고를 목표로 제품의 특성·품질 홍보 전략

#### ⑥ 비즈니스 모델 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대상이 되는 목표 소비자(구매자)를 매우 구체적으로 선정하십시오.
  - ▶ 소비자는 누구인가?
  - ▶ 그들은 제품과 서비스에서 무엇을 바라는가?
  - ▶ 그들에게 품질과 가격이 어떻게 중요한가?
  - ▶ 제품 또는 서비스를 어디서 어떻게 구매하는가?
  - ▶ 어떤 판매촉진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 ▶ 소비자들이 우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특별히 구매한다면 무엇 때문인가?
  - ▶ 기존 제품을 어떻게 개발해야 소비자가 좋아할 것인가?
  - ▶ 시장의 규모와 미래의 성장에 관하여 추정할 수 있는가?
  
- 사업의 원천과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십시오. 비즈니스 모델이란 바로 귀하의 사업의 원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 ▶ 생산자 혹은 산지의 장점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소비자 계층의 특징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분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업의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 사업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자금조달의 방법에 따라서 운용 형태도 달라야 합니다.
  - ▶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가장 위험이 높은 자산에 투자해야 하고, 대출 등 타인자본으로 조달되는 자금은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자산 운영에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다.
  
- 초기 투자자본 중에는 시설비 외에 적어도 1년 이상의 운영비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 ▶ 사업화 초기의 1~2년간의 운영비는 ‘창업비’에 해당되는 자산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초기에 조달되어야 한다.





- 인력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 모든 일을 되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 잘되던 일을 그르치는 것도 사람입니다. 인적 자원은 모든 일의 출발점이므로 교육, 훈련 및 관리 등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대적 관계보다 전략적 파트너를 광범위하게 만들어 놓으십시오.
  - ▶ 전략적 파트너는 모든 경제적·사회적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의 추진 시 각 단계별로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컨설팅기관을 선정하여 상시로 컨설팅 서비스를 받도록 하십시오.

## 2. 소규모자본 협동경영형 매뉴얼(M2 유형)

### ① 신청자 정보

성명		<input type="checkbox"/> 초기투자 가능 자본금 : 5천만원 미만(총 ____ 원)
핸드폰		<input type="checkbox"/> 희망하는 경영형태 : (협동경영, 기타 )
주소		<input type="checkbox"/> 사업 목표 : (생계, 성장, 지역사회 기여)
e-mail		<input type="checkbox"/> 신청자의 경력 : (분야:____, 직책:____, 기간:__년)

### ② 희망사업 분야 정보 (다음 질문에 대해 0~10점의 점수를 기재하십시오)

희망사업 분야 : 취급 품목(\_\_\_\_\_)

희망사업 분야에 대한 평가

- ▶ 국내외 경쟁의 정도(혹은 신제품 여부) ( \_\_\_\_점)
  - 희망하시는 사업 분야는 국내 시장 및 해외 시장에서 경쟁 상품 및 경쟁업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쟁이 전혀 없는 신제품이면 10점을, 경쟁이 매우 치열하면 0점을 기재하십시오.)
- ▶ 관련 기술 혹은 노하우의 보유 ( \_\_\_\_점)
  - 귀하는 희망하시는 사업과 관련된 기술이나 혹은 경영 노하우 등을 이미 보유하고 계십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술·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면 10점을, 전혀 없으면 0점을 기재하십시오)
- ▶ 판매처 혹은 판매 경로의 확보 ( \_\_\_\_점)
  - 희망하시는 취급 품목의 판매처 혹은 판매경로를 이미 확보하고 있거나, 혹은 확보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까? (이미 확보하고 있으면 10점,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0점을 기재하십시오)
- ▶ 취급품목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투입요소의 확보 가능성 ( \_\_\_\_점)
  - 희망하시는 품목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원재료 혹은 반제품의 조달은 용이합니까 ?
- ▶ 희망하시는 사업 분야의 경영위험은 얼마나 심각하다고 예상하십니까? ( \_\_\_\_점)
  - 경영위험이 거의 없을 경우 10점, 매우 위험이 높을 경우 0점을 기재하십시오 )

▶ 총점 (총 \_\_\_\_ 점)

### ③ 추천하는 비즈니스 모델

- ▶ 귀하는 소규모 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 중 특정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힘을 모아 협동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선호하므로 다음의 유형을 참조하시되, 세부적으로는 관련 전문 컨설팅기관과 협의 하십시오

☞ 공동판매형(FS-JS/C), 공동브랜드형(FD-JB/C), 자원연계지역사업화형(PS/C)





#### ④ 사업화를 위한 준비 사항

##### □ 창업 자세의 재확인

- ▶ 창업가는 모든 창업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 주체이다. 따라서 창업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영이념을 설정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인지, 최악의 상황에서도 모든 개인적 역량을 투입할 만한 각오가 되어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의미있는 출발점으로 삼아야한다.

##### □ 사업 아이템의 선정

- ▶ 창업을 마음 먹었을 때 잠정적으로 생각해둔 사업 아이템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화 전략 마련 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 창업환경과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 시대의 흐름과 자신에게 맞는 업종 혹은 사업 아이템을 찾아내야 한다. 성공적인 사업아이템 혹은 업종 선정을 위해서는 우선 시장조사를 통해 시장규모를 예상하고 주요 경쟁자 및 창업 시 자신의 시장점유율과 예상 매출액 등을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출하도록 한다.
- ▶ 사업아이템 혹은 업종의 선정 시 시장성과 수익성 등의 기준 이외에도 기술적으로 생산 혹은 조달 가능한지, 자금 조달능력의 범위 내에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 인허가 관련 사항의 점검

- ▶ 누구나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필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창업 시 이와 관련된 인허가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하여 창업과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 □ 사업계획서의 수립

- ▶ 선정된 사업아이템의 생산 및 판매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마련해야 한다.
  - 사업계획서(Business Plan)에 포함시킬 주요 내용 : 산업, 기업 및 제품 / 마케팅 계획 / 시장조사 및 분석 / 설계 및 개발계획 / 사업채산성분석 / 공장입지 및 생산계획 / 경영팀 구성 및 운영계획 / 재무계획 / 특수사항 및 위험도 / 전반적 사업추진 일정
  - ☞ 판매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사업자가 협동하여 추진해야 하므로 공동판매계획과 공동의 사업계획도 작성해야 한다.

##### □ 사업자금의 마련

-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산출되는 소요 자금의 규모를 확인하고, 이중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 하는 부분과 대출등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부분 등을 사전에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자금 조달계획을 마련하고 일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 □ 유능한 인력 등 확보

- ▶ 중·소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중요한 기능에 대해 전문성이나 경험이 많은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여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성공적인 사업 추진 전략

## □ 사업의 비전(Vision) 수립

## ▶ 기업의 목적과 사명 등 큰 그림 확정

- 기업가치 또는 경영이념(행동지침), 사업목표의 설정(현실적 목표)

☞ 본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공동판매, 공동브랜드 등의 협력이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전을 세워야 한다.

☞ 지역자원연계사업화형 모델의 경우, 해당 지역의 종합개발계획 등을 검토하여 장기적인 지역 사회 개발과 합치하는 방향으로 사업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 □ 공동브랜드의 선정과 차별화

## ▶ 목표로 삼는 고객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시장의 매력도를 비교 평가하라 !

☞ 수요특화형 비즈니스 모델(공동브랜드형)의 경우, 타 업종·타지역의 공동브랜드와 차별화를 위해 목표 고객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 □ 생산 및 구매전략

## ▶ 생산입지를 결정하는 방법

☞ 해당 지역특산물의 특허 및 등록이 가능한 지역, 원료 조달 등이 유리한 입지를 고려하라

## ▶ 시설설치 및 생산원가 계산

## ▶ 원재료 구매 전략 수립

☞ 특히 「② 희망사업 분야정보」의 투입요소 확보가능성 점수가 낮은 신청자들은 유의해서 생산 및 구매전략을 수립해야 함

## □ 핵심 성공요소의 선정 및 집중

## ▶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핵심요소를 찾아라.

☞ 귀하의 비즈니스모델 유형, 「② 희망사업 분야정보」에 기재된 각 항목별 평가점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성공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정하여 집중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핵심 성공요소의 사례 : 특허 등 신기술, 인재(기술자), 원재료 확보, 가격전략, 비용절감, 품질 관리(표준화 등), 상품차별화, 시설보수 및 유지, (우수)고객 확보, 입지 및 접근성, 사업자간의 경쟁우위, 자금조달 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으로 선정

☞ 자원연계지역사업화형-협동경영(PS/C)

→ 품질관리(표준화 등), 시설보수 및 유지, 사업자간의 경쟁우위

☞ 공동판매형-협동경영(FS-JS/C)

→ 비용절감, 가격전략, 품질관리, 사업자간 경쟁우위

☞ 공동브랜드형-협동경영(FD-JB/C)

→ 품질관리, 상품차별화, (우수)고객 확보, 사업자간의 경쟁우위 등



- 핵심 요소의 전략화 및 통제 시스템 구축
  - ▶ 핵심 요소의 전략화·집중화
  - ▶ 핵심 요소의 개발, 추진, 평가, 통제 등의 시스템 구축
  - ▶ 핵심요소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
  
-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의 설계 및 구성
  - ▶ 중소기업 규모에 적합한 조직 운영 방안 수립
    - 사람·직위 중심이 아닌 일 중심 조직
    - 팀(Team)의 자율성과 팀 리더십(Leadership)으로 창의성 유도
  - ▶ 전사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Program)
    - 인재 육성, 소요인력 산출 및 업무절차 적립
  - ▶ 시장 변화·위험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구축
  
- 판매 촉진 전략
  - ▶ 판매촉진의 목표를 구체화하라
    - 기존 시장 확대, 고객로열티 제고
  - ▶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에 따라 판매촉진 전략을 달리하라
    - ☞ 공동판매형, 공동브랜드형, 자원연계지역사업화형
    - 기존 시장 확대, 고객로열티 제고를 목표로 제품의 특성·품질 홍보 전략

#### ⑥ 비즈니스 모델 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대상이 되는 목표 소비자(구매자)를 매우 구체적으로 선정하십시오.
  - ▶ 소비자는 누구인가?
  - ▶ 그들은 제품과 서비스에서 무엇을 바라는가?
  - ▶ 그들에게 품질과 가격이 어떻게 중요한가?
  - ▶ 제품 또는 서비스를 어디서 어떻게 구매하는가?
  - ▶ 어떤 판매촉진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 ▶ 소비자들이 우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특별히 구매한다면 무엇 때문인가?
  - ▶ 기존 제품을 어떻게 개발해야 소비자가 좋아할 것인가?
  - ▶ 시장의 규모와 미래의 성장에 관하여 추정할 수 있는가?
  
- 사업의 원천과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십시오. 비즈니스 모델이란 바로 귀하의 사업의 원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 ▶ 생산자 혹은 산지의 장점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소비자 계층의 특징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분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업의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 사업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자금조달의 방법에 따라서 운용 형태도 달라야 합니다.
  - ▶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가장 위험이 높은 자산에 투자해야 하고, 대출 등 타인자본으로 조달되는 자금은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자산 운영에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다.
  
- 초기 투자자본 중에는 시설비 외에 적어도 1년 이상의 운영비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 ▶ 사업화 초기의 1~2년간의 운영비는 ‘창업비’에 해당되는 자산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초기에 조달되어야 한다.
  
- 인력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 모든 일을 되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 잘되던 일을 그르치는 것도 사람입니다. 인적 자원은 모든 일의 출발점이므로 교육, 훈련 및 관리 등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대적 관계보다 전략적 파트너를 광범위하게 만들어 놓으십시오.
  - ▶ 전략적 파트너는 모든 경제적·사회적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의 추진 시 각 단계별로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컨설팅기관을 선정하여 상시로 컨설팅 서비스를 받도록 하십시오.





### 3. 소규모자본 공동경영형 매뉴얼(M3 유형)

#### ① 신청자 정보

대표성명		<input type="checkbox"/> 공동경영 시 규모(예상인원수 및 자금 규모) : _____천만 원(1인당) × _____명 = 총_____억원 <input type="checkbox"/> 공동경영 시 참여 대상자 : (어촌계원 대상, 기타 단체, 희망자 모집, 기타 ) <input type="checkbox"/> 참여조건 (의무 가입, 자금여력 있는 회원 중 의무가입, 희망자 가입) <input type="checkbox"/> 사업 목표 : (지역사회 기여, 생계 주 수입원, 생계 부수입원)
핸드폰		
주소		
e-mail		
공동경영 참여단체	단체명 : ( )	

#### ② 희망사업 분야 정보 (다음 질문에 대해 0~10점의 점수를 기재하십시오)

희망 사업 분야 : 지역 자원(\_\_\_\_)을 활용한 관광 상품 등(\_\_\_\_)의 개발

희망사업 분야에 대한 평가

- ▶ 지역 내에서 유사 상품의 공급 여부 ( \_\_\_\_점)
  - 희망하시는 사업 아이템과 유사한 것을 공급하는 지역사업자가(시군 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쟁이 전혀 없는 신제품이면 10점을, 경쟁이 매우 치열하면 0점을 기재하십시오.)
- ▶ 인근에 해당사업 분야와 패키지로 상품화가 가능한 연계 상품이 많이 있습니까? ( \_\_\_\_점)
  - 소비자(관광객)의 유입 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계 관광 상품 등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 ▶ 가까운 인근 지역(인근 시군 포함)에 유력한 배후 소비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 \_\_\_\_점)
  - 귀하 사업지로부터 2시간 이내(철도 및 승용차 기준)에 대도시가 있습니까? (해당 대도시와의 교통편(5점)과 동 소비지 규모(5점)를 고려하여 10점 만점 중 상대적 점수를 기재하십시오.)
- ▶ 관련 기술 혹은 노하우의 보유 ( \_\_\_\_점)
  - 귀하를 포함한 공동경영자들 중에 희망하시는 사업과 관련된 기술, 경영 노하우 혹은 경험 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 ▶ 소비자의 원활한 접근 용이성 ( \_\_\_\_점)
  - 희망하시는 사업개발 지역으로의 이동시 편리성, 도로 형편, 소요 시간, 교통수송 수단 등
- ▶ 취급상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의 확보 가능성 ( \_\_\_\_점)
  - 희망하시는 상품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원의 유지 및 보수 등은 용이합니까?
- ▶ 희망하시는 사업 분야의 경영위험은 얼마나 심각하다고 예상하십니까? ( \_\_\_\_점)
  - 경영위험이 거의 없을 경우 10점, 매우 위험이 높을 경우 0점을 기재하십시오 )

▶ 평점 (총 \_\_\_\_ 점 / 평균 \_\_\_\_ 점)

## ③ 추천하는 비즈니스 모델

▶ 다음의 추진 모델을 참조하시되, 세부적으로는 관련 전문 컨설팅기관과 협의 하십시오.

- ☞ 자원연계지역사업화형 비즈니스 모델(PS/A)
- ☞ 자원연계배후소비지 활용형 비즈니스 모델(PD/A)

## ④ 사업화를 위한 준비 사항

□ 배후 자원 혹은 시장을 고려한 사업 아이템의 선정

- ▶ 지역의 각종 자연자원 혹은 인문자원 등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수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사고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 ▶ 사업아이템의 기반이 되는 인문 혹은 자연자원 등은 추가적인 시설보완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는 반면, 상당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 공동경영을 위한 파트너의 모색

- ▶ 개인적으로는 소자본 창업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대자본사업이므로 공동경영을 위한 파트너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 아이템이 지역 공동 생활주변의 환경이나 공공자산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해당 지역 내의 공동체들 중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공공자산의 점유 혹은 사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특정의 공동체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공동경영 파트너는 지역 내 주요 공동체 회원이 될 수 있다.
- ▶ 대상의 경관이나 공공자산이 특정 공동체와 연계가 불분명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 조건의 지역 내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파트너를 모집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 인허가 관련 사항의 점검

- ▶ 지역 자연자원 혹은 인문자원 등을 사업화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허가 등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 지역 내 공공자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관청을 통해 그 활용 범위와 활용 방법 등을 조건으로 인허가 관련 사항을 점검하도록 한다.

□ 사업계획서의 수립

- ▶ 선정된 사업아이템의 생산 및 판매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마련해야 한다.
  - 사업계획서(Business Plan)에 포함시킬 주요 내용 : 활용 지역자원에 대한 인허가 관련 사항 / 공동경영시 파트너의 자격조건 및 구성 / 생산되는 상품 혹은 서비스의 내역 / 마케팅 계획 / 시장조사 및 분석 / 설계 및 개발계획 / 사업채산성분석 / 공장입지 및 생산계획 / 경영팀 구성 및 운영계획 / 재무계획 / 특수사항 및 위험도 / 전반적 사업추진 일정

□ 사업자금의 마련

-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산출되는 소요 자금의 규모를 확인하고, 이중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경영진으로 참여할 파트너의 자격 등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그리고 대출 등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부분은 사전에 구분해 놓고, 자금 조달계



획에 따라 사업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유능한 인력 등 확보

- ▶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모델을 추진하는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유능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성공적인 사업 추진 전략

사업의 비전(Vision) 수립

- ▶ 해당 사업의 목적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명 등 큰 그림 확정
  - 사업의 가치 또는 경영이념(행동지침), 사업목표의 설정(현실적 목표)

목표 고객의 선정

- ▶ 인근 배후 소비지 대도시가 있을 경우, 대상 도시민을 목표 고객으로 선정
- ▶ 일반적 소비자(관광객)를 목표고객으로 삼을 경우, 이들 고객을 세분화하여 시장의 매력도를 사전에 비교 평가하라!
  - ☞ 사업아이템을 소비하는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에 시장매력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 ▶ 자사의 목표와 자원이 이들 목표 고객을 대상으로 현실적으로 판매 가능한가?
    - ☞ 자사 상품 혹은 서비스의 고객 접근성 확보 수단을 검토하라.

생산 및 구매전략

- ▶ 생산입지를 결정하는 방법
  - ☞ 해당 지역 자원의 활용가치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
- ▶ 시설설치 및 생산원가 계산
- ▶ 관련 운영 및 관리비 등 산정

핵심 성공요소의 선정 및 집중

- ▶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핵심요소를 찾아라.
  - ☞ 고객의 현장 유치를 위한 연계상품 혹은 서비스의 개발, 고객에 대한 사후적 관리 등
  - ☞ 활용 자연자원 및 상품 등의 유지·보수 등의 철저한 관리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의 설계 및 구성

- ▶ 중대형 자본규모에 적합한 조직 운영 방안 수립
  - 사람·직위 중심이 아닌 일 중심 조직
  - 팀(Team)의 자율성과 팀 리더십(Leadership)으로 창의성 유도
- ▶ 전사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Program)
  - 인재 육성, 소요인력 산출 및 업무절차 적립
- ▶ 시장 변화·위험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구축

## □ 공동 경영진의 역할 분담

- ▶ 공동 경영진(어촌계원 등)간의 역할 분담 방안을 도출
- ▶ 수직적(경영진, 회원 등의 구분) 및 수평적(마케팅 등 고객관리, 사업장 유지 및 보수관리 등) 역할의 구분과 분담

## ⑥ 비즈니스 모델 추진 시 유의사항

## □ 사업대상이 되는 목표 소비자(구매자)를 매우 구체적으로 선정하십시오.

- ▶ 소비자는 누구인가?
- ▶ 그들은 제품과 서비스에서 무엇을 바라는가?
- ▶ 그들에게 품질과 가격이 어떻게 중요한가?
- ▶ 제품 또는 서비스를 어디서 어떻게 구매하는가?
- ▶ 어떤 판매촉진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 ▶ 소비자들이 우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특별히 구매한다면 무엇 때문인가?
- ▶ 기존 제품을 어떻게 개발해야 소비자가 좋아할 것인가?
- ▶ 시장의 규모와 미래의 성장에 관하여 추정할 수 있는가?

## □ 공동경영 파트너의 선정 시 고려 사항

- ▶ 자기 책임 하에 자본을 투자하는 협동경영 체제와 달리, 하나의 사업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파트너의 범위나 구체적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 ▶ 공동경영자 개개인의 역량과 책임의식 등이 상당한 격차가 있어서 합리적 경영이 곤란할 경우에는 기여자본금 규모 및 파트너 책임과 의무의 크기 등에 따라 몇 단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 자금조달의 방법에 따라서 운용 형태도 달라야 합니다.

- ▶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가장 위험이 높은 자산에 투자해야 하고, 대출 등 타인자본으로 조달되는 자금은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자산 운영에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다.

## □ 초기 투자자본 중에는 시설비 외에 적어도 1년 이상의 운영비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 ▶ 사업화 초기의 1~2년간의 운영비는 ‘창업비’에 해당되는 자산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초기에 조달되어야 한다.

## □ 인력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 모든 일을 되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 잘되던 일을 그르치는 것도 사람입니다. 인적 자원은 모든 일의 출발점이므로 교육, 훈련 및 관리 등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대적 관계보다 전략적 파트너를 광범위하게 만들어 놓으십시오.

- ▶ 전략적 파트너는 모든 경제적·사회적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촌지역의 자원연계형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 시에는 동 사업과 연계가 될 수 있는 보완적 관계의 사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4. 중규모자본 오너경영형 매뉴얼(M4 유형)

##### ① 신청자 정보

성명		<input type="checkbox"/> 초기투자 가능 자본금 : 5천만원~5억원 (총 _____ 원)
핸드폰		<input type="checkbox"/> 희망하는 경영형태 : (오너직접경영, 기타 )
주소		<input type="checkbox"/> 사업 목표 : (생계, 성장, 지역사회 기여)
e-mail		<input type="checkbox"/> 신청자의 경력 : (분야:____, 직책:____, 기간:__년)

##### ② 희망사업 분야 정보 (다음 질문에 대해 0~10점의 점수를 기재하시오)

희망사업 분야 : 취급 품목(\_\_\_\_\_)

희망사업 분야에 대한 평가

- ▶ 국내외 경쟁의 정도(혹은 신제품 여부) ( \_\_\_\_점)
  - 희망하시는 사업 분야는 국내 시장 및 해외 시장에서 경쟁 상품 및 경쟁업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쟁이 전혀 없는 신제품이면 10점을, 경쟁이 매우 치열하면 0점을 기재하시오.)
- ▶ 관련 기술 혹은 노하우의 보유 ( \_\_\_\_점)
  - 귀하는 희망하시는 사업과 관련된 기술이나 혹은 경영 노하우 등을 이미 보유하고 계십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술·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면 10점을, 전혀 없으면 0점을 기재하시오)
- ▶ 판매처 혹은 판매 경로의 확보 ( \_\_\_\_점)
  - 희망하시는 취급 품목의 판매처 혹은 판매경로를 이미 확보하고 있거나, 혹은 확보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까? (이미 확보하고 있으면 10점,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0점을 기재하시오)
- ▶ 취급품목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투입요소의 확보 가능성 ( \_\_\_\_점)
  - 희망하시는 품목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원재료 혹은 반제품의 조달은 용이합니까 ?
- ▶ 희망하시는 사업 분야의 경영위험은 얼마나 심각하다고 예상하십니까? ( \_\_\_\_점)
  - 경영위험이 거의 없을 경우 10점, 매우 위험이 높을 경우 0점을 기재하시오 )

▶ 총점 및 평점 (총 \_\_\_\_ 점/ 평균 \_\_\_\_ 점)

##### ③ 추천하는 비즈니스 모델

- ▶ 다음의 추진 모델을 참조하시되, 세부적으로는 관련 전문 컨설팅기관과 협의 하십시오
  - 투자자본 규모에 알맞은 모델로서,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Blue-Ocean전략이 적합
- ☞ 지역특산물 활용형(FS-P/0)
- 생산·판매 통합형(FS-I/0)
- 브랜드차별형(FD-IB/0)
- 물류혁신 및 네트워크형(FD-N/0)



## ④ 사업화를 위한 준비 사항

## □ 창업 자세의 재확인

- ▶ 창업가는 모든 창업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 주체이다. 따라서 창업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영이념을 설정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인지, 최악의 상황에서도 모든 개인적 역량을 투입할 만한 각오가 되어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삼아야한다.

## □ 사업 아이템의 선정

- ▶ 창업을 마음 먹었을 때 잠정적으로 생각해둔 사업 아이템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화 전략 마련 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 창업환경과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 시대의 흐름과 자신에게 맞는 업종 혹은 사업 아이템을 찾아내야 한다. 성공적인 사업아이템 혹은 업종 선정을 위해서는 우선 시장조사를 통해 시장규모를 예상하고 주요 경쟁자 및 창업 시 자신의 시장점유율과 예상 매출액 등을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출하도록 한다.
- ▶ 사업아이템 혹은 업종의 선정 시 시장성과 수익성 등의 기준 이외에도 기술적으로 생산 혹은 조달 가능한지, 자금 조달능력의 범위 내에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 인허가 관련 사항의 점검

- ▶ 누구나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필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창업 시 이와 관련된 인허가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하여 창업과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 □ 사업계획서의 수립

- ▶ 선정된 사업아이템의 생산 및 판매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마련해야 한다.
- 사업계획서(Business Plan)에 포함시킬 주요 내용 : 산업, 기업 및 제품 / 마케팅 계획 / 시장조사 및 분석 / 설계 및 개발계획 / 사업채산성분석 / 공장입지 및 생산계획 / 경영팀 구성 및 운영계획 / 재무계획 / 특수사항 및 위험도 / 전반적 사업추진 일정

## □ 사업자금의 마련

-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산출되는 소요 자금의 규모를 확인하고, 이중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 하는 부분과 대출 등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부분 등을 사전에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자금 조달계획을 마련하고 일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 □ 유능한 인력 등 확보

- ▶ 중·소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중요한 기능에 대해 전문성이나 경험이 많은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여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성공적인 사업 추진 전략

#### □ 사업의 비전(Vision) 수립

##### ▶ 기업의 목적과 사명 등 큰 그림 확정

- 새로운 가치 창출, 이를 위한 기업 및 사업목표의 설정(현실적 목표)

#### □ 새로운 목표 고객의 선정

##### ▶ 목표로 삼는 고객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시장의 매력도를 비교 평가하라!

##### ▶ 자사의 목표와 자원이 이들 목표 고객을 대상으로 현실적으로 판매 가능한가?

- ☞ 국내외 새로운 고객층의 개발

#### □ 생산 및 구매전략

##### ▶ 생산입지를 결정하는 방법

##### ▶ 시설설치 및 생산원가 계산

##### ▶ 원재료 구매 전략 수립

#### □ 핵심 성공요소의 선정 및 집중

##### ▶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핵심요소를 찾아라.

- ☞ 귀하의 비즈니스모델 유형에 기재된 각 항목별 평가점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성공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정하여 집중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지역특산물 활용형(FS-P/O)

- 특허 및 신기술, 상품차별화, 품질관리, 원재료 확보

##### 생산·판매 통합형(FS-I/O)

- 비용절감, 품질관리, 가격전략

##### 브랜드차별형(FD-IB/O)

- 특허 및 신기술, 상품차별화, 품질관리, 우수고객의 확보

##### 물류혁신 및 네트워크형(FD-N/O)

- 입지 및 접근성, 비용절감, 원재료 확보 등

#### □ 핵심 요소의 전략화 및 통제 시스템 구축

##### ▶ 핵심 요소의 전략화·집중화

##### ▶ 핵심 요소의 개발, 추진, 평가, 통제 등의 시스템 구축

##### ▶ 핵심요소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

#### □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의 설계 및 구성

##### ▶ 대규모 자본 규모에 적합한 조직 운영 방안 수립

- 사람·직위 중심이 아닌 일 중심 조직

- 팀(Team)의 자율성과 팀 리더십(Leadership)으로 창의성 유도

##### ▶ 전사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Program)

- 인재 육성, 소요인력 산출 및 업무절차 적립

##### ▶ 시장 변화·위험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구축

## □ 판매 촉진 전략

- ▶ 판매촉진의 목표를 구체화하라
  - 신규시장의 확보, 고객로열티 제고 등
- ▶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에 따라 판매촉진 전략을 달리하라
  - ☞ 브랜드차별화형
    - 기술특화형 제품차별화의 홍보·판촉

## ⑥ 비즈니스 모델 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대상이 되는 목표 소비자(구매자)를 매우 구체적으로 선정하십시오.

- ▶ 소비자는 누구인가?
- ▶ 그들은 제품과 서비스에서 무엇을 바라는가?
- ▶ 그들에게 품질과 가격이 어떻게 중요한가?
- ▶ 제품 또는 서비스를 어디서 어떻게 구매하는가?
- ▶ 어떤 판매촉진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 ▶ 소비자들이 우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특별히 구매한다면 무엇 때문인가?
- ▶ 기존 제품을 어떻게 개발해야 소비자가 좋아할 것인가?
- ▶ 시장의 규모와 미래의 성장에 관하여 추정할 수 있는가?

□ 사업의 원천과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십시오. 비즈니스 모델이란 바로 귀하의 사업의 원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 ▶ 생산자 혹은 산지의 장점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소비자 계층의 특징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분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업의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 사업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자금조달의 방법에 따라서 운용 형태도 달라야 합니다.

- ▶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가장 위험이 높은 자산에 투자해야 하고, 대출 등 타인자본으로 조달되는 자금은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자산 운영에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다.

□ 초기 투자자본 중에는 시설비 외에 적어도 1년 이상의 운영비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 ▶ 사업화 초기의 1~2년간의 운영비는 ‘창업비’에 해당되는 자산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초기에 조달되어야 한다.

□ 인력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 모든 일을 되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 잘되던 일을 그르치는 것도 사람입니다. 인적 자원은 모든 일의 출발점이므로 교육, 훈련 및 관리 등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대적 관계보다 전략적 파트너를 광범위하게 만들어 놓으십시오.

- ▶ 전략적 파트너는 모든 경제적·사회적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의 추진 시 각 단계별로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컨설팅기관을 선정하여 상시로 컨설팅 서비스를 받도록 하십시오.





## 5. 대규모자본 오톨경영형 매뉴얼(M5 유형)

### ① 신청자 정보

성명		<input type="checkbox"/> 초기투자 가능 자본금 : 5억원 이상 (총 _____ 원)
핸드폰		<input type="checkbox"/> 희망하는 경영형태 : (오톨직접경영, 기타 )
주소		<input type="checkbox"/> 사업 목표 : (생계, 성장, 지역사회 기여)
e-mail		<input type="checkbox"/> 신청자의 경력 : (분야:____, 직책:____, 기간:__년)

### ② 희망사업 분야 정보 (다음 질문에 대해 0~10점의 점수를 기재하시오)

희망사업 분야 : 취급 품목(\_\_\_\_\_)

희망사업 분야에 대한 평가

- ▶ 국내외 경쟁의 정도(혹은 신제품 여부) ( \_\_\_\_점)
  - 희망하시는 사업 분야는 국내 시장 및 해외 시장에서 경쟁 상품 및 경쟁업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쟁이 전혀 없는 신제품이면 10점을, 경쟁이 매우 치열하면 0점을 기재하시오.)
- ▶ 관련 기술 혹은 노하우의 보유 ( \_\_\_\_점)
  - 귀하는 희망하시는 사업과 관련된 기술이나 혹은 경영 노하우 등을 이미 보유하고 계십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술·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면 10점을, 전혀 없으면 0점을 기재하시오)
- ▶ 판매처 혹은 판매 경로의 확보 ( \_\_\_\_점)
  - 희망하시는 취급 품목의 판매처 혹은 판매경로를 이미 확보하고 있거나, 혹은 확보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까? (이미 확보하고 있으면 10점,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0점을 기재하시오)
- ▶ 취급품목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투입요소의 확보 가능성 ( \_\_\_\_점)
  - 희망하시는 품목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원재료 혹은 반제품의 조달은 용이합니까?
- ▶ 희망하시는 사업 분야의 경영위험은 얼마나 심각하다고 예상하십니까? ( \_\_\_\_점)
  - 경영위험이 거의 없을 경우 10점, 매우 위험이 높을 경우 0점을 기재하시오)

▶ 총점 (총 \_\_\_\_\_ 점)

### ③ 추천하는 비즈니스 모델

- ▶ 다음의 추진 모델을 참조하시되, 세부적으로는 관련 전문 컨설팅기관과 협의 하십시오
  - 투자자본 규모에 알맞은 모델로서,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Blue-Ocean전략이 적합
- ☞ 신제품·신기술 도입형(FS-T/O)

## ④ 사업화를 위한 준비 사항

## □ 창업 자세의 재확인

- ▶ 창업가는 모든 창업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 주체이다. 따라서 창업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영이념을 설정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인지, 최악의 상황에서도 모든 개인적 역량을 투입할 만한 각오가 되어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삼아야한다.

## □ 사업 아이템의 선정

- ▶ 창업을 마음 먹었을 때 잠정적으로 생각해둔 사업 아이템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화 전략 마련 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 창업환경과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 시대의 흐름과 자신에게 맞는 업종 혹은 사업 아이템을 찾아내야 한다. 성공적인 사업아이템 혹은 업종 선정을 위해서는 우선 시장조사를 통해 시장규모를 예상하고 주요 경쟁자 및 창업 시 자신의 시장점유율과 예상 매출액 등을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출하도록 한다.
- ▶ 사업아이템 혹은 업종의 선정 시 시장성과 수익성 등의 기준 이외에도 기술적으로 생산 혹은 조달 가능한지, 자금 조달능력의 범위 내에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 인허가 관련 사항의 점검

- ▶ 누구나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필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창업 시 이와 관련된 인허가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하여 창업과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 □ 사업계획서의 수립

- ▶ 선정된 사업아이템의 생산 및 판매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마련해야 한다.
- 사업계획서(Business Plan)에 포함시킬 주요 내용 : 산업, 기업 및 제품 / 마케팅 계획 / 시장조사 및 분석 / 설계 및 개발계획 / 사업채산성분석 / 공장입지 및 생산계획 / 경영팀 구성 및 운영계획 / 재무계획 / 특수사항 및 위험도 / 전반적 사업추진 일정

## □ 사업자금의 마련

-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산출되는 소요 자금의 규모를 확인하고, 이중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 하는 부분과 대출 등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부분 등을 사전에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자금 조달계획을 마련하고 일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 □ 유능한 인력 등 확보

- ▶ 중·소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중요한 기능에 대해 전문성이나 경험이 많은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여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성공적인 사업 추진 전략

#### □ 사업의 비전(Vision) 수립

##### ▶ 기업의 목적과 사명 등 큰 그림 확정

- 새로운 가치 창출, 이를 위한 기업 및 사업목표의 설정(현실적 목표)

#### □ 새로운 목표 고객의 선정

##### ▶ 목표로 삼는 고객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시장의 매력도를 비교 평가하라!

##### ▶ 자사의 목표와 자원이 이들 목표 고객을 대상으로 현실적으로 판매 가능한가?

- ☞ 국내외 새로운 고객층의 개발

#### □ 생산 및 구매전략

##### ▶ 생산입지를 결정하는 방법

##### ▶ 시설설치 및 생산원가 계산

##### ▶ 원재료 구매 전략 수립

#### □ 핵심 성공요소의 선정 및 집중

##### ▶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핵심요소를 찾아라.

- ☞ 귀하의 비즈니스모델 유형, 「② 희망사업 분야정보」에 기재된 각 항목별 평가점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성공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정하여 집중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핵심 성공요소의 사례 : 특허 등 신기술, 인재(기술자), 원재료 확보, 가격전략, 비용절감, 품질관리(표준화 등), 상품차별화, 시설보수 및 유지, (우수)고객 확보, 입지 및 접근성, 사업자간의 경쟁우위, 자금조달 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으로 선정

- ☞ 신제품·신기술 도입형(FS-T/O)

→ 자금조달, 특허 등 신기술, 비용절감, 품질관리, 인재(기술자)

#### □ 핵심 요소의 전략화 및 통제 시스템 구축

##### ▶ 핵심 요소의 전략화·집중화

##### ▶ 핵심 요소의 개발, 추진, 평가, 통제 등의 시스템 구축

##### ▶ 핵심요소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

#### □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의 설계 및 구성

##### ▶ 대규모 자본 규모에 적합한 조직 운영 방안 수립

- 사람·직위 중심이 아닌 일 중심 조직

- 팀(Team)의 자율성과 팀 리더십(Leadership)으로 창의성 유도

##### ▶ 전사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Program)

- 인재 육성, 소요인력 산출 및 업무절차 적립

##### ▶ 시장 변화·위험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구축

## □ 판매 촉진 전략

- ▶ 판매촉진의 목표를 구체화하라
  - 신규시장의 확보, 고객로열티 제고 등
- ▶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에 따라 판매촉진 전략을 달리하라
  - ☞ 신제품 · 신기술도입형(FS-T/O)
    - 기술특화형 제품차별화의 홍보 · 판촉

## ⑥ 비즈니스 모델 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대상이 되는 목표 소비자(구매자)를 매우 구체적으로 선정하십시오.
  - ▶ 소비자는 누구인가?
  - ▶ 그들은 제품과 서비스에서 무엇을 바라는가?
  - ▶ 그들에게 품질과 가격이 어떻게 중요한가?
  - ▶ 제품 또는 서비스를 어디서 어떻게 구매하는가?
  - ▶ 어떤 판매촉진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 ▶ 소비자들이 우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특별히 구매한다면 무엇 때문인가?
  - ▶ 기존 제품을 어떻게 개발해야 소비자가 좋아할 것인가?
  - ▶ 시장의 규모와 미래의 성장에 관하여 추정할 수 있는가?
  
- 사업의 원천과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십시오. 비즈니스 모델이란 바로 귀하의 사업의 원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 ▶ 생산자 혹은 산지의 장점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소비자 계층의 특징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분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업의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 사업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자금조달의 방법에 따라서 운용 형태도 달라야 합니다.
  - ▶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가장 위험이 높은 자산에 투자해야 하고, 대출 등 타인자본으로 조달되는 자금은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자산 운영에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다.
  
- 초기 투자자본 중에는 시설비 외에 적어도 1년 이상의 운영비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 ▶ 사업화 초기의 1~2년간의 운영비는 ‘창업비’에 해당되는 자산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초기에 조달되어야 한다.
  
- 인력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 모든 일을 되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 잘되던 일을 그르치는 것도 사람입니다. 인적 자원은 모든 일의 출발점이므로 교육, 훈련 및 관리 등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대적 관계보다 전략적 파트너를 광범위하게 만들어 놓으십시오.
- ▶ 전략적 파트너는 모든 경제적·사회적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의 추진 시 각 단계별로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컨설팅기관을 선정하여 상시로 컨설팅 서비스를 받도록 하십시오.



## <부록 5> 수산 가공 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와 부경대학교에서는 수산 가공 기업을 벤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인의 고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우리 수산가공기업의 장기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한 주요 분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써 정확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사는 개인에 관한 사항은 일체 밝히지 않으며 본 연구 목적에만 사용되므로 응답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귀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 통상협력팀

임 태 훈 사무관

부경대학교 해양산업경영학부

담당교수 : 장 영 수

연락처 : 051-620-6517, 011-552-6517



### 작성요령

- ① 각 설문 항목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느낌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 ②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적 목적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③ 본 설문에서 문항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기재해주십시오.
- ④ 설문지에 응답하시던 중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위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사업의 경영 성과가 증가 또는 감소하였다면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요인 하나만을  하여 주십시오

- ① 원료량이 늘거나 감소하는 원료 공급량 측면
- ② 원료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원료 가격 측면
- ③ 판매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판매 가격 측면
- ④ 거래처의 증가, 감소와 같은 시장 측면
- ⑤ 소비가 늘거나 감소하는 수요 측면
- ⑥ 대출 등 금융권 이용의 금융 지원 측면
- ⑦ 동종 가공 업체간의 경쟁적 측면
- ⑧ 기타( )

10. 현재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중인 수산물가공과 관련된 정책 중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네 가지를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주십시오.(우선 순위 1, 2, 3, 4 표시)

- ① 수산물 품질인증제 ( )      ② HACCP 관련제도 ( )
- ③ 원산지표시제 ( )      ④ 안전성 조사 ( )
- ⑤ 첨가물 표시 ( )
- ⑥ 기 타 ( )

11. 귀하는 다음 제도 중 획득하고 있는 것을 전부 하여 주십시오?

- ① 수산물품질인증제      ② HACCP
- ③ ISO\_\_\_\_\_      ④ 기타( )

12. 향후 운영에 있어 어디에 중점을 두실 생각입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네 가지를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주십시오.(우선순위 1, 2, 3, 4 표시)

- ① (신)제품 개발 및 도입( )      ② 원료 확보 ( )
- ③ 생산규모 확대 ( )      ④ 판매처 개발 및 확대 ( )
- ⑤ 안전성 및 위생 확보 ( )      ⑥ 우수인력확보 ( )
- ⑦ 기 타( ) ( )

□ 수산가공벤처기업 육성 지원 제도

귀하는 수산가공벤처기업 관련 시책을 위해 다음에 제시되고 있는 항목들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모든 질문은 느끼시고 계시는 중요성 정도에 하시면 됩니다.





	매우중요	중요	보통	중요않음	전혀중요않음
13. 자금공급 중에서					
☞ 창투사와 투자조합의 설립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코스닥시장의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금융시장의 개방(해외자금 유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 중에서					
☞ 우수기술자의 벤처기업 참여 확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산업재산권 등 기술을 근거로 보유 기술의 상업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통해 고급기술 인력의 참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입지공급의 지원 중에서					
☞ 벤처빌딩 및 벤처단지 제도를 도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입지관련 규제완화와 세제경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6. 가공 산업의 발전방향					
☞ 가공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지원으로 원가절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가공공장의 원료 공동 구매, 공동 판매 추진 방안 검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소비자 지향 기호도 조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시장 추세에 맞춰 소량 다품종 생산체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기술, 경영 컨설팅을 지원 경영 활성화 도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공격적 마케팅 및 홍보 강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가공수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경쟁력 강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원료수급의 안정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7. 가공벤처기업 육성 지원 방안					
☞ 브랜드 육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포장디자인 개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기술 경영 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단순가공보다 고차가공 기술 개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기능성 식품 개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기술개발 계획 및 상품화 전략기획, 회계 및 영업력을 갖춘 인재 발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 산·학·연의 연계
- ☞ 기술경영에도 자문할 수 있는  
개인엔젤투자의 육성이 필요
- ☞ 공시체제의 강화로  
투자자들의 거래를 활성화

18. 귀사는 벤처기업에 속합니까? 예( ), 아니오( )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 벤처기업으로 지정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수산벤처기업의 성공사례 : 수산가공벤처의 탄생을 위해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뒷면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 <부록 6> 음식점 인증제에 대한 실증분석

### 가. 생선횃집 인증제에 대한 인식조사

#### 1) 조사개요

생선횃집 인증제에 대한 인식조사의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 조사대상 : 부산광역시 생선횃집 105개업소
- 표본추출방법 : 표본크기는 부산광역시내에 생선횃집의 모집단을 확인하기 어려워 단순무작위표본추출법으로 실.
- 조사방법 : 방문조사
- 조사기간 : 2007년 5월1일 - 20일

#### 2) 설문결과

##### (1) 생선회ISO인증제에 대한 인식조사

생선회 ISO 인증제도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약 65%는 들은 적이 있거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증제 인지 여부>

	빈 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모른다	35	33.333	33.333	33.333
들은적 있다	38	36.190	36.190	69.524
조금 알고 있다	13	12.381	12.381	81.905
잘 알고 있다	19	18.095	18.095	100.000
합계	105	100.000	100.000	

주 : 소수 넷째자리 반올림

## 〈인증제 획득유무〉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없다	101	96.190	96.190	96.190
있다	4	3.810	3.810	100.000
합계	105	100.000	100.000	

주 : 소수 넷째자리 반올림

인증제 획득 여부를 묻는 설문에서 조사대상 대부분이 인증제를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제를 획득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약 38%가 몰라서 획득을 하고 있지 않고, 약 30%가 사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 반면 비용부문이나 불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증제 미획득 이유〉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몰라서	40	38.095	42.105	42.105
비용이 비싸서	9	8.571	9.474	51.579
사업에 도움 안될거 같아	32	30.476	33.684	85.263
인증자체 불필요	9	8.571	9.474	94.737
기타	5	4.762	5.263	100.000
합계	95	90.476	100.000	

주 : 소수 넷째자리 반올림

인증제 획득 의사는 약 22%가 인증제 획득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조금있다 약 50%”에서 “있다 21%” 등 획득 의사가 있는 업체는 약 78% 정도임. 따라서 어느 정도 동기 부여와 조건이 맞으면 인증제를 획득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인증제 획득 의사〉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없다	23	21.905	23.000	23.000
조금있다	52	49.524	52.000	75.000
있다	21	20.000	21.000	96.000
많다	3	2.857	3.000	99.000
매우많다	1	0.952	1.000	100.000
합계	100	95.238	100.000	

주 : 소수 넷째자리 반올림

인증제 획득을 위한 비용 지불 의사는 앞의 인증제 획득 의사와 약가의 차이는 있으나 “전혀없다”가 약 37%인 반면, “조금있다” 약 45%, “있다” 약 10% 등 인증제를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은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인증제 획득을 위한 비용 지불 의사〉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없다	39	37.143	40.206	40.206
조금있다	47	44.762	48.454	88.660
있다	10	9.524	10.309	98.969
많다	1	0.952	1.031	100.000
합계	97	92.381	100.000	

주 : 소수 넷째자리 반올림



인증제를 받은 업체들의 인증제 획득 이유는 이미 인증제를 획득한 업체들 중에서 설문조사 대상이 된 업체는 4개소로 이들이 인증제를 획득 이유는 품질위생관리시스템 확보, 매출증대, 기타 등이다.

#### 〈인증제를 획득하고 있는 이유〉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품질위생관리시스템 확보	2	1.905	50.000	50.000
매출증대	1	0.952	25.000	75.000
기타	1	0.952	25.000	100.000
합계	4	3.810	100.000	

주 : 소수 넷째자리 반올림

만족도 정도 - 인증제 획득에 대한 만족도는 4개업소 중 만족 1개소, 보통 1개소, 불만족 2개소로 나타났다.

#### 〈인증제 획득에 대한 만족도〉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만족	1	0.952	25.000	25.000
보통	1	0.952	25.000	50.000
불만족	2	1.905	50.000	100.000
합계	4	3.810	100.000	

주 : 소수 넷째자리 반올림

### 3) 생선회 음식점 경영 형태

생선회 음식점 경영 형태는 105개 조사 대상 업체 중 약 32%인 34개소만 자가소유이고, 나머지 62%인 66개소는 임대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무응답 5개소가 있음. 따라서 생선회집의 경영형태는 자가소유 음식점 보다는 임대영업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생선횃집 경영형태〉

	빈 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자가소유	34	32.381	34.000	34.000
임대영업	66	62.857	66.000	100.000
합계	100	95.238	100.000	

주 : 소수 넷째자리 반올림

### 4) 생선회 음식점 경영요인 요인

생선회의 신선도는 대부분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선도〉

	빈 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중요하다	27	25.714	25.714
아주중요하다	76	72.381	98.095
무응답	2	1.905	100.000
합계	105	100.000	

주 : 소수 넷째자리 반올림

생선회의 맛도 아주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맛〉

	빈 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보통	1	0.952	0.952
중요하다	27	25.714	26.667
아주중요하다	76	72.381	99.048
무응답	1	0.952	100.000
합계	105	100.000	

주 : 소수 넷째자리 반올림

수산물 안전성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산물 안전성〉

	빈 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그렇지않다	1	0.952	0.952
보통	2	1.905	2.857
중요하다	48	45.714	48.571
아주중요하다	52	49.524	98.095
무응답	2	1.905	100.000
합계	105	100.000	

주 : 소수 넷째자리 반올림

활어 원산지도 중용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원산지〉

	빈 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그렇지않다	5	4.762	4.762
보통	24	22.857	27.619
중요하다	46	43.810	71.429
아주중요하다	29	27.619	99.048
무응답	1	0.952	100.000
합계	105	100.000	

주 : 소수 넷째자리 반올림

생선회 가격도 경영요인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 〈가격〉

	빈 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보통	10	9.524	9.524
중요하다	50	47.619	57.143
아주중요하다	44	41.905	99.048
무응답	1	0.952	100.000
합계	105	100.000	

주 : 소수 넷째자리 반올림

종업원接客 태도도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종업원接客 태도〉〕

	빈 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보통	8	7.619	7.619
중요하다	41	39.048	46.667
아주중요하다	54	51.429	98.095
무응답	2	1.905	100.000
합계	105	100.000	

주 : 소수 넷째자리 반올림

생선회의 다양한 메뉴는 앞의 요인에 비교 중요성이 조금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양한 수산물 메뉴〉

	빈 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그렇지않다	2	1.905	1.905
보통	28	26.667	28.571
중요하다	47	44.762	73.333
아주중요하다	26	24.762	98.095
무응답	2	1.905	100.000
합계	105	100.000	

주 : 소수 넷째자리 반올림

메뉴에 대한 정보 즉 모듬안내, 제공음식안내표시 등도 비교적 중요하나 앞의 요인들에 비해 조금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메뉴에 대한 정보〉

	빈 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그렇지않다	2	1.905	1.905
보통	29	27.619	29.524
중요하다	44	41.905	71.429
아주중요하다	26	24.762	96.190
무응답	4	3.810	100.000
합계	105	100.000	

주 : 소수 넷째자리 반올림

종업원의 메뉴 추천 행위도 비교적 중요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종업원 메뉴 추천 행위〉

	빈 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그렇지않다	7	6.667	6.667
보통	32	30.476	37.143
중요하다	46	43.810	80.952
아주중요하다	17	16.190	97.143
무응답	3	2.857	100.000
합계	105	100.000	

주 : 소수 넷째자리 반올림

고객의 추가 음식 요구에 대한 서비스는 비교적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객 요구 추가음식 서비스〉

	빈 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그렇지않다	1	0.952	0.952
그렇지않다	3	2.857	3.810
보통	14	13.333	17.143
중요하다	53	50.476	67.619
아주중요하다	31	29.524	97.143
무응답	3	2.857	100.000
합계	105	100.000	

주 : 소수 넷째자리 반올림

고객 불만 종업원 태도의 시정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 〈고객 불만 종업원 태도 시정〉

	빈 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보통	12	11.429	11.429
중요하다	46	43.810	55.238
아주중요하다	44	41.905	97.143
무응답	3	2.857	100.000
합계	105	100.000	

주 : 소수 넷째자리 반올림

고객불만요소에 대한 시정 요인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고객 불만 요소 시정〉

	빈 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보통	11	10.476	10.476
중요하다	48	45.714	56.190
아주중요하다	44	41.905	98.095
무응답	2	1.905	100.000
합계	105	100.000	

주 : 소수 넷째자리 반올림

음식점의 명성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명성〉

	빈 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보통	12	11.429	11.429
중요하다	53	50.476	61.905
아주중요하다	37	35.238	97.143
무응답	3	2.857	100.000
합계	105	100.000	

주 : 소수 넷째자리 반올림

음식점의 청결한 위생 상태는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청결한 위생상태〉

	빈 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보통	4	3.810	3.810
중요하다	34	32.381	36.190
아주중요하다	65	61.905	98.095
무응답	2	1.905	100.000
합계	105	100.000	

주 : 소수 넷째자리 반올림

○ 기관이 인증하는 음식점 인증제에 대한 인식은 보통과 중요로 반반 나뉘어지고 있다.

〈기관이 인증하는 음식점 인증제 획득〉

	빈 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그렇지않다	1	0.952	0.952
그렇지않다	11	10.476	11.429
보통	51	48.571	60.000
중요하다	28	26.667	86.667
아주중요하다	10	9.524	96.190
무응답	4	3.810	100.000
합계	105	100.000	

주 : 소수 넷째자리 반올림

음식점 간판 디자인 역시 보통과 중요로 나뉘어지고 있다.





### 〈음식점 간판 디자인〉

	빈 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그렇지않다	7	6.667	6.667
보통	44	41.905	48.571
중요하다	40	38.095	86.667
아주중요하다	11	10.476	97.143
무응답	3	2.857	100.000
합계	105	100.000	

주 : 소수 넷째자리 반올림

기관의 인증제 마크 부착이 경영에 어느 정도 중요한지도 보통과 중요로 나뉘어지고 있다.

### 〈기관의 음식점 인증 마크 부착〉

	빈 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그렇지않다	1	0.952	0.952
그렇지않다	9	8.571	9.524
보통	47	44.762	54.286
중요하다	34	32.381	86.667
아주중요하다	10	9.524	96.190
무응답	4	3.810	100.000
합계	105	100.000	

주 : 소수 넷째자리 반올림

## 나. 생선회 음식점 경영과 인증제

### 1) 생선회 음식점 경영 요인 분석

앞의 생선회음식점 경영요인을 가지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생선회음식점 경영요인은 크게 서비스 요인, 생선회 음식점 경영 요인, 생선회 요인, 인증 요인 등 4대 요인으로 구성되고 있다.

우선 서비스 요인은 고객 불만 종업원 태도 시정, 고객 불만 요소 시정, 종업원接客 태도 등 종업원의 고객접객에 필요한 서비스 요인으로 구성되고 있다.

생선회 음식점 경영 요인은 메뉴 추천, 추가 음식 서비스, 메뉴의 다양성, 간판디자인, 음식점 명성, 가격, 메뉴정보 등 생선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 구성 요인이다.

생선회 요인은 생선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인 즉, 신선도, 안전성, 맛, 원산지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인증 요인은 인증획득, 인증마크 부착 등 생선회 음식점에 대한 보증 요인으로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 요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생선회 음식점 인증제는 생선회 음식점 경영에 필요한 독립된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생선회음식점 경영 요인 분석〉

요인명	변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서비스 요인	고객 불만 종업원 태도 시정	.886	.163	.170	.040
	고객 불만 요소 시정	.857	.039	.106	.193
	종업원接客 태도	.796	.090	.302	-.036
생선회 음식점 경영 요인	메뉴 추천	.412	.681	.090	.163
	추가 음식 서비스	.386	.639	-.214	-.010
	메뉴 다양성	.473	.594	.127	.081
	간판 디자인	-.143	.585	.091	.483
	음식점 명성	-.042	.552	.160	.248
	가격	-.110	.547	.437	-.078
	메뉴 정보	.466	.517	.408	.094
생선회 요인	신선도	.214	.089	.749	.030
	안전성	.162	.079	.682	.162
	맛	.214	.102	.679	-.061
	원산지	-.207	.391	.554	.330
인증 요인	마크부착	.046	.147	.106	.904
	인증획득	.203	.185	.022	.838
Eigen Value		5.543	2.202	1.703	1.450
분산비		32.6	12.9	10.0	8.5

KMO: 0.764, Bartlett 구성형 검정: 787.875, 유의확률 0.000









